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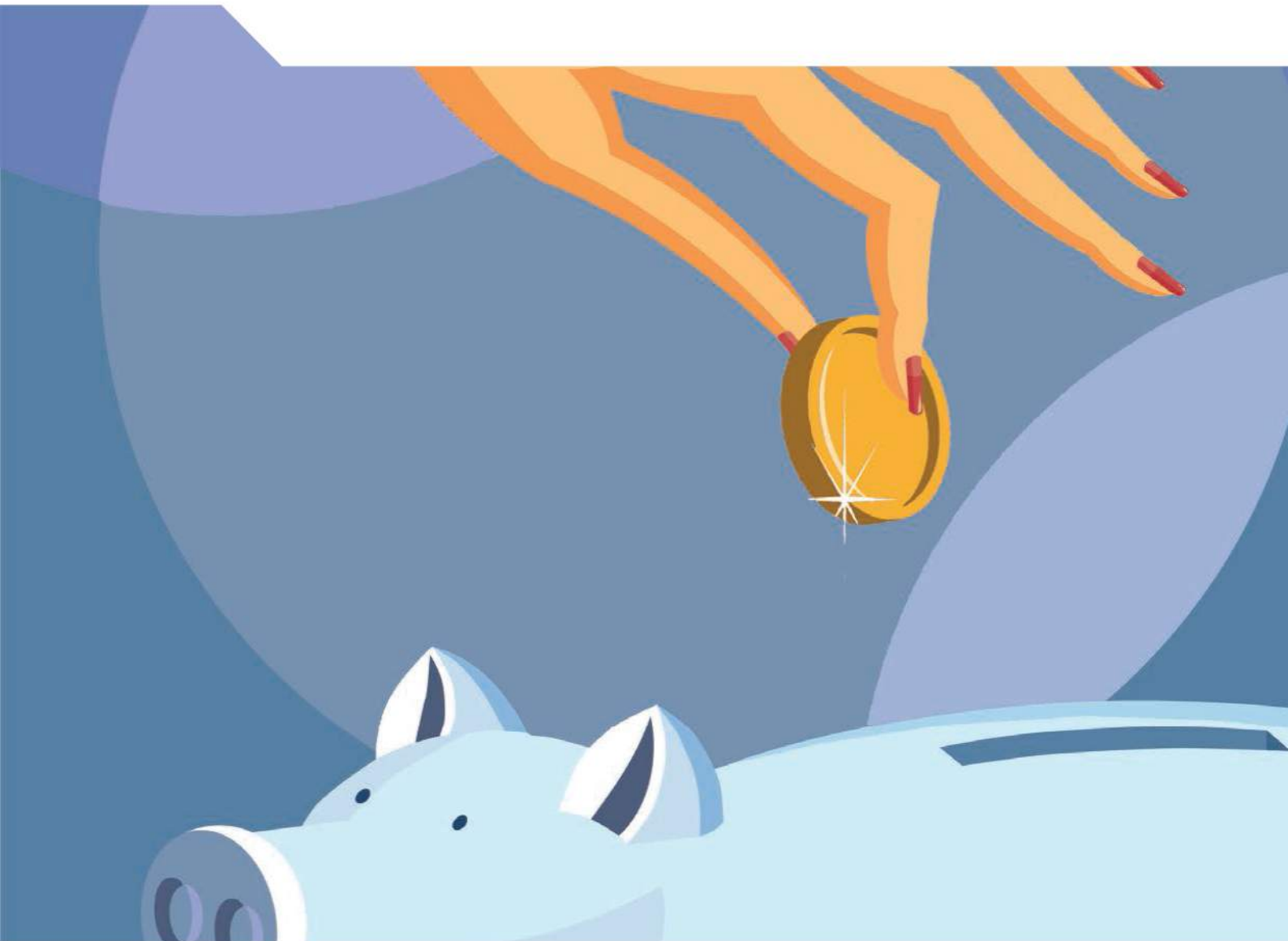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9

OECD 회원국과 G20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9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OECD의 공식적인 번역물이 아닙니다. 번역의 질과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사항이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의견 및 논의들이 OECD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자료,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 2019 OECD, Paris

본 출판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간행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htm](http://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본 출판물의 한국어판 파일(pdf)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ecdkorea.org/user/nd3855.do>

##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 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한 눈에 보는 연금 2019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OECD가 2005년 이후 여덟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로 OECD 국가 간의 연금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적용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형운태 부분부장, 김지연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과 문현경 부연구위원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연금제도관련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황승현

## 서문

‘한 눈에 보는 연금’ 제8판은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G20 회원국인 기타 주요 국가들의 지표도 함께 제공한다. 3개의 특별 장은 최근의 연금 개혁(제1장)과 비표준적 노동형태(non-standard forms of work: 제2장 및 제3장)와 관련하여 OECD 국가의 연금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수석보좌관이자 G20 세르파인 Gabriela Ramos의 감독 하에 고용노동사회정책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사회정책과(Social Policy Division) 내 연금팀과 OECD 금융기업국(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내 보험 및 사적연금팀이 작성하였다. 각국 공무원, 특히 OECD 사회정책 작업반(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대표들과 OECD 연금 전문가들이 본 보고서에 귀중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제1장 “최근의 연금 개혁동향”은 Boele Bonthuis와 Tomoko Onoda가 작성하였다. 제2장 “비표준적 노동형태와 연금”은 Maciej Lis, Marius Luske, Tomoko Onoda가 작성하였다. 제3장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적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는 EU 집행위원과 Principal International Group의 재정 지원을 받아 Stephanie Payet과 Pablo Antolin이 작성하였다. 제4장부터 8장까지의 작성과 지표는 Christian Geppert와 Andrew Reilly가, 그리고 제9장은 Romain Despalins, Stéphanie Payet, Pablo Antolin이 제공하였다. Hervé Boulhol이 팀을 이끌고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을 담당하였다. Maxime Ladaique가 방대한 표와 그림을 지원했다. 출간을 위한 원고는 Lauren Thwaites가 준비하였고, Fatima Perez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각국의 공무원들과 OECD 사무국 동료들, 특히 Andrea Garnero, Herwig Immervoll, Marguerita Lane, Horacio Levy, Mark Pearson, Monika Queisser, Stefano Scarpetta (ELS), Anna Milanez (CTP), Stéphanie Payet (DAF)이 유용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본 보고서는 EU와 OECD가 함께 연구자금을 지원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되었다.

## 목차

논평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	9
요약 .....	11
제1장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	13
서론 .....	14
인구 고령화: 인구통계학적 경향, 소득, 고용 .....	16
지난 2년간의 연금 개혁 .....	22
연금 개혁의 장기적 경향 .....	33
부록 1.A.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결정된 연금개혁 개요 .....	45
제2장 비표준 노동과 연금 .....	63
서론 .....	64
비표준 노동의 경향과 특징 .....	65
비표준 노동은 왜 연금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	70
비표준 노동에 대한 연금 규정 .....	78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규정 개선 .....	88
결론 .....	93
제3장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 .....	103
서론 .....	104
적립식 연금의 공식적, 실질적 이용 .....	105
기여 수준 .....	113
연금소득 결과 .....	116
결론 .....	121
제4장 연금제도의 설계 .....	125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	126
기초연금, 선별적연금, 최저연금 .....	128
의무 소득비례연금 .....	130

현재 연금수급연령 .....	132
미래 연금수급연령 .....	134
<b>제5장 연금수급액</b> .....	137
산정방법 및 가정 .....	138
총 연금대체율 .....	140
진입연령별 총 연금대체율 .....	142
총 연금대체율: 공적 vs 사적, 의무 vs. 임의가입제도 .....	144
연금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	146
순 연금대체율 .....	148
순 연금대체율: 의무 및 임의가입 제도 .....	150
총 연금자산 .....	152
순 연금자산 .....	154
부부의 총 연금수급액 .....	156
육아휴직이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	158
실업이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	160
<b>제6장 인구 및 경제적 측면</b> .....	163
출산율 .....	164
기대수명 .....	166
인구학적 노인부양비 .....	168
고령 노동자의 고용률 .....	170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 .....	172
은퇴 후 기대수명 .....	174
<b>제7장 노인인구의 소득과 빈곤</b> .....	177
노인 소득 .....	178
노후 소득빈곤 .....	180
노후 소득 불평등 .....	184
평균 근로자 소득 .....	186
<b>제8장 연금제도의 재정</b> .....	189
의무연금기여금 .....	190
공적연금지출 .....	192
사적연금지출 .....	194
공적연금지출의 장기 전망 .....	196



제9장 적립식 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기금	199
적립식 사적연금의 가입률	200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납부 기여금	202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적립기금의 자산	204
자산 배분	206
투자 성과	208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210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212
확정급여형 제도의 기금 적립률	214
부 록. 국가별 현황	217
아르헨티나	218
호주	221
오스트리아	227
벨기에	231
브라질	236
캐나다	240
칠레	245
중국	249
체코	252
덴마크	256
에스토니아	262
핀란드	266
프랑스	271
독일	276
그리스	280
헝가리	284
아이슬란드	288
인도	291
인도네시아	296
아일랜드	299
이스라엘	302
이탈리아	305
일본	309
한국	313
라트비아	317
리투아니아	320
룩셈부르크	324

멕시코 .....	328
네덜란드 .....	332
뉴질랜드 .....	336
노르웨이 .....	340
폴란드 .....	344
포르투갈 .....	348
러시아 .....	355
사우디아라비아 .....	359
슬로바키아 .....	362
슬로베니아 .....	367
남아프리카공화국 .....	371
스페인 .....	374
스웨덴 .....	378
스위스 .....	384
터키 .....	389
영국 .....	392
미국 .....	396

**OECD 간행물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twitter.com/OECD\\_Pubs](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library>




<http://www.oecd.org/oecdirect/>

**이 책에는...**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표 또는 그래프 하단의 StatLinks  를 보십시오. 관련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로드 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를 입력하거나 전자책에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논평

###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근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화, 세계화, 인구통계적 변화 및 기후변화 등의 광범위한 물결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뒤바꾸고 있다.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떠오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정하지 못하고 낮은 급여를 받는 등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분명한 해결 과제도 눈에 띈다. 새로운 기술 덕택에 구인구직 활동은 온라인으로 쉽고 값싸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도 비록 OECD 전체 고용에서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수 년 사이 큰 성장을 이룩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비표준 노동은 OECD 국가의 총 일자리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한다. 비표준 노동자는 매우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그리고 특히 연간 소득이 적은 편이다. 가령 OECD 평균 전일제 중위 자영업자의 소득은 전일제 근로자보다 16% 적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회적 보호 제도는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경력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며, 한 명의 고용주를 가정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비표준 노동자에게 적절한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영업, 단기간 근로, 기고, 플랫폼 노동, 클릭 노동 등 대부분의 비표준 노동은 사각지대의 위험을 안고 있다.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란 없겠지만, 장기적 효과로 인해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노령연금 제도다. 연금 분야에서 근로의 미래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국가가 기여와 급여의 관계를 엄격히 가져가면서, 연금을 수급하려면 기여를 일찍 시작하여 경력 기간 내내 지속해야 한다. 이 사실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은 대부분의 노동자에 대하여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발적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 가입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늘 그렇듯 함정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 계약직의 규정을 표준 일자리의 규정과 맞추는 국가가 많으므로 계약직 노동자도 이론적으로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높지 않은 액수의 기여금을 일정하지 않게 납부한 결과 돌아오게 될 예상 수급액의 수준이 주된 문제다. 그러나 일부 국가, 일부 특정 집단에서는 자영업자, 기간제 파견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계절 노동자, 수습생, 견습생은 기여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자영업자의 연금 가입은 훨씬 어렵다. 정형화된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여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피고용인의 경우 총 임금을 바탕으로 기여금을 산정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중 어떤 분류도 그와 유사하지 않다. 또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자영업자에게 강제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금 가입은 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영업자는 연금 제도의 일원이지만 비슷한 소득을 버는 피고용인보다 종종 기여율이 낮다. 또한 자영업자는 기여 기반(contribution base)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에 납부하는 기여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기여와 급여의 관련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표준 피고용인보다 상당히 낮은 연금액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창업 지원이나 농업 종사자 및 예술가의 실제 소득 향상 등의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영업자의 기여금 부담을 덜어 주는 경우도 있다. ‘한 눈에 보는 연금’ 이번 판에서는 평균 소득을 버는 경우를 가정하여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피고용 근로자의 규정을 비교한다. 경력 기간 내내 기여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도 자영업자의 연금 수급액은 OECD 평균 피고용인이 강제 연금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액의 79%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비표준 노동자는 불리한 상태에 처해있다. 기업의 연금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직이 잦으면 연금 수급권 인정 기간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되며, 한 일자리에서 획득한 연금 수급권은 이직 시 완전히 이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는 기업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인 안전망 제도와 개인적으로 저축한 노후 자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이 가진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생애주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연금 수급액을 적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소득 전망, 경력 안정성, 승진 기회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강제적 연금제도와 자발적 연금제도 모두 자영업자를 피고용 근로자와 유사하게 간주하고 참여 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 정책적으로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 보다 유리한 기여 상황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로 연금 수급액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대신 적어도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다른 출처로부터 보조금을 출원해 연금 기여를 지원할 수도 있다.

올해 초, OECD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9년판을 출간하며 ‘모두에게 효과적인 미래를 위한 전환 의제(Transition Agenda for a Future that Works for All)’를 주장했다. 이 의제는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전반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을 사용하여 교육과 기술, 공적 고용 서비스, 사회적 보호와 가족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규제, 과세, 심지어는 주택 문제, 교통, 경쟁 관련법, 산업 정책 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노동자의 소득 향상뿐 아니라 연금 수급액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OECD는 2018년에 ‘중요한 리스크(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1개국 국민에게 가장 큰 미래의 고민을 물었다. 55~70세의 응답자 중 평균 약 82%가 가장 큰 장기적 고민 3가지 중 하나로 은퇴 후 재정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응답자들도 이 항목을 주요 고민으로 선택했다.

각국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환 의제의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 전망 개선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포용적으로 잘 조직된 기여형, 비기여형, 공적, 퇴직, 개인 사적 연금제도 관련 정책은 모든 사람의 노년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표준적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책도 필요하다. 이번 ‘한 눈에 보는 연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소개하여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Stefano Scarpetta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장



Greg Medcraft

OECD 금융기업국장

## 요약

이번 ‘한 눈에 보는 연금’에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OECD 회원국에서 법제화된 다양한 연금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이전 여러 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OECD 및 G20 국가에 대하여 포괄적인 연금 정책 지표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이번 판에서는 비표준적 근로자를 위한 연금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 연금의 지속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적절하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1980년에는 OECD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 10명 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명에 불과했다. 이 숫자는 2020년 3명을 살짝 넘었고, 2060년에는 6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 연령을 기준으로 측정된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까지 몇몇 국가에서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이후 법제화된 조치 중에는 기존 개혁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개혁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연령 조건을 완화했고, 결과적으로 급여액이 늘어났으며 가입률이 팽창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에서는 기여율을 변경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슬로베니아에서는 노인 안전망 제도와 최저연금제도를 확대했고, 독일에서는 저소득자를 위한 혜택을 늘렸다. 스페인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몇몇 조치(지속가능성 및 재평가 지수)를 유보했다. 에스토니아는 유일하게 연금수급연령을 올렸다. 반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조기 연금수급 제도를 확대하거나 기존에 발표했던 연금수급연령 증가 정책을 축소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재정적 압박이 줄어들었으므로 일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도입한 인기 없는 조치를 완화하기를 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은 경제 위기로 악화되기는 했으나 제도의 구조적 약점 또한 의미한다.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철회한다면 미래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연금제도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도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법제화된 조치들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 중 절반을 약간 넘는 국가에서 2060년까지 연금수급연령을 현재 평균 63.8세에서 65.9세로 올리게 될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65세 기대 수명 예상 증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러한 변화 자체만으로는 근로 기간과 은퇴 기간 사이의 균형을 충분히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개혁을 고려하면 미래의 완전경력 평균 임금 근로자에 대한 강제 연금제도의 순 대체율은 평균 59%다. 낮은 곳은 30%의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이 있으며 높은 곳으로는 90% 이상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가 있다. 완전경력을 기준으로 한 대체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표준 노동은 왜 연금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전체 OECD 회원국의 고용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하는 비표준 노동자는 시간제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부터 자영업자까지 매우 다양한 노동자로 구성된 집단이다.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향후 퇴직 세대의 소득 전망이 불안해질 수 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세금 부과 소득을 버는 피고용 근로자보다 적은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다.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연금 기여 방식이 유사한 곳은 OECD 회원국 중 10개국뿐이다.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 수준이 낮은 주요인으로는 연금 기반을 설정할 때 자율성이 높고, 소득비례 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 제도에 기여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적고, 명목 기여율이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자영업자가 받게 되는 연금 급여액은 물론 적절한 연금을 위한 전반적 재정 마련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은퇴한 전직 자영업자가 받게 되는 공적연금은 전직 피고용인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며, 비표준 노동자들의 적립식 연금제도 가입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의무 기여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은 근로 기간 동안 동일한 과세소득을 버는 전직 피고용인보다 20% 낮은 노령연금 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다.

## 많은 국가에서 비표준 노동자의 급여액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준 노동자와 비표준 노동자 사이의 가입률, 기여금, 수급액 격차를 완화하고자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면 보다 공평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위험을 최대한 폭넓게 분산하고, 직업 유형간 노동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의 최소 소득 요건을 충분히 낮춘다면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들이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 모든 근로소득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면 강제적 연금을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기간제 계약을 제외하지 않아야 하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최소 보유 혹은 가입기간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

모든 비표준 노동자를 표준 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적 연금제도에 포함시키면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비표준적 고용을 오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익에 제한이 생긴다. 연금 수급권과 연금 자산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직 근로자가 동일 제도에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급권을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직 및 조기수급의 가능성으로 인한 적립식 연금제도의 누수를 줄이면 가입률과 노령 보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피고용 노동자를 위해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와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디폴트 플랜을 통해 해당 제도를 어떤 고용계약 유형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피고용 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자영업자에게도 강제적 연금이 필요하다.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하여 규정을 통일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합한 총 기여율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기여 기반을 비교적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기여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유동성을 공식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낮은 기여금 문제를 막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적절한 준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자영업을 촉진하거나 저소득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이들이 납부하는 의무 기여금을 낮추는 경우, 그 결과로 연금 수급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저소득자에 한해서라도 보조금을 이용해 부족 기여분을 보충해야 한다.

## 제 1 장

#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본 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OECD 회원국에서 시행되었던 연금 개혁을 살펴본다.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기존에 결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면서 연금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다. 지난 2년 사이 연금 개혁은 대부분 연금 수급을 위한 연령 요건을 완화하거나, 1층 연금을 포함한 연금 급여액을 늘리거나, 연금 가입률을 늘리거나, 사적 연금 저축을 장려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부 주요 정책 조치에는 기존에 단행한 개혁을 부분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 서론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는 20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다. 2060년이 되면 이 숫자는 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그리스,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구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할 것이다.

빠른 고령화는 연금 제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금융 위기의 결과로 많은 국가의 공적 부채가 증가했고,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도 축소되었다. 게다가 이미 어려움을 겪던 연금제도는 노인 불평 등의 증가 위협(OECD, 2017<sup>[11]</sup>), 비표준 노동 형태의 발달(제2장 및 3장), 낮은 성장률과 낮은 금리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게 되었다. 금리 하락은 실제로 새로운 과제뿐 아니라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많은 OECD 국가에서처럼 국채 금리가 GDP 성장률보다 낮으면(Blanchard, 2019<sup>[21]</sup>) 공적 부채 비용도 현저히 줄어든다. 한편, 저금리는 적립식 연금제도 자산의 수익을 제한하고 할인 부채를 증가시켜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의 향후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적립식 확정급여형 제도의 지불 능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Rouzet et al., 2019<sup>[31]</sup>) 또한, 저금리는 고령화 자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저성장 전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제도는 제도 형태를 막론하고 적정하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금을 늘릴 수도 있지만, 기여금 상승은 순 임금의 감소, 실업 증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근로 기간이 길어야 한다. 그러나 은퇴 연령을 올리는 것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논쟁을 초래하는 주제 중 하나였다.

세계적 금융 위기에 이어 많은 국가들은 자국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은 연금 수급을 위한 연령 요건을 완화하거나, 1층 연금을 포함한 연금 급여액을 늘리거나, 연금 가입률을 늘리거나, 사적연금 저축을 장려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맞춘 조정의 지속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채택한 개혁 내용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기존에 결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면서 연금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부 주요 정책적 조치에서는 기존에 단행한 개혁을 부분적으로 번복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경제 상황이 나아졌으므로 단기적 재정 균형 개선을 위해 결정했던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어려움은 구조적 약점을 보여 준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문제 등 다양한 장기적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2012년 개혁 내용을 반복하여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의 연계를 폐지하고 대신 자율적 상승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을 64세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조기수급 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의 연계를 2026년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총 기여금, 연금 수급자 수, 해당 연금의 재정 균형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연금 지급액 및 사회보장제도의 연동 조정 제도를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유보했다. 스페인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은퇴 시 최초 연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되어있던 지속성 지수(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가 2023년까지 유보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은퇴연령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은퇴연령과 기대수명의 연계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유사한 역전이 캐나다, 체코, 폴란드에서도 일어났다.

## 주요 분석결과

### OECD 회원국의 최근 주요 연금정책 조치

- 연금수급연령 증가의 제한이나 조기퇴직 옵션 제한(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스토니아)
- 근로 유인 제고(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 노인 사회보호의 첫 번째 수단으로서, 1층 연금의 연금액 수준 향상이나 가입범위 확대(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 급여액 향상 및 저소득자 기여금 축소(독일)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연금 급여액 조정 유보(스페인)
- 공공 부문의 연금 급여를 민간 부문의 급여에 보다 가깝게 조정(노르웨이)
- 기여율 변경(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또는 기여 방식 확대(뉴질랜드)
- 강제적 연금의 가입범위 확대(칠레) 또는 자동가입제도 발전(리투아니아, 폴란드)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제도 개정(스웨덴)

## 기타 결과

- 에스토니아와 한국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경제전반 평균 가처분소득의 70% 미만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프랑스,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100%를 소폭 상회한다. OECD 평균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의 87%를 받는다.
- OECD 평균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국가 중위 균등화 가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13.5%로, 전체 인구 상대적 빈곤율 11.8%보다 다소 높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의 노인 빈곤율은 4% 미만인 반면, 호주, 에스토니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은 20% 이상이다.
- OECD 국가의 절반이 조금 넘는 국가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현재 64.2세에서 2060년 66.1세로 1.9세 증가할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65세 기대수명 예상 증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지난 15년간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평균 약 1.5세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 22세부터 근로하여 완전경력를 마친 뒤 모든 연금 제도로부터 연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 즉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2018년 기준 터키에서는 남성의 경우 51세였다. 반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였다. 현재 법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의 62세부터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71세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 18개 국가에 존재했던 1940년생 기준 연금수급연령의 성별 차이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고 있다.
- 성년기 대비 은퇴 후 보내는 기간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집단의 경우 은퇴 후 보내는 기간이 성년기 대비 3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날 은퇴하는 인구집단의 경우 이 비율은 32.0%이다.
- 완전경력 평균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 연금수급연령에 대한 강제적 제도의 미래 순 대체율은 평균 59%이다.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은 30%에 가깝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는 90% 이상이다.
- OECD 예측에 사용된 모델링 가정을 기준으로, 자발적 연금의 가입률이 높은 국가(벨기에,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는 자발적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경력 기간 내내 기여한 평균 소득자의 미래 순 대체율이 평균 26%p, 45세부터 기여하면 10%p 상승한다.
- OECD 평균, 강제적 제도에서 경력기간 중 5년의 실업을 경험한 평균 임금 근로자는 완전 경력 근로자보다 6.3% 낮은 연금액을 받는다.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이 손실은 10%를 초과한다.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소득비례제도에서 각각 기여년수 38.5년과 35년을 채워야 급여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5년의 실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5년 전 은퇴한 경우와 비교하여 최근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완전경력을 마친 이후 대체율이 평균 6%p(즉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약 60%의 OECD 국가에서는 하락하고, 약 30%의 OECD 국가에서는 상승하고, 나머지 10%의 OECD 국가에서는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인구 고령화 주요 지표 몇 가지를 제시하여 배경을 살펴본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최근 연금 개혁을 자세히 알아보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연금 개혁의 장기적 경향에 주목한다.

## 인구 고령화: 인구통계학적 경향, 소득,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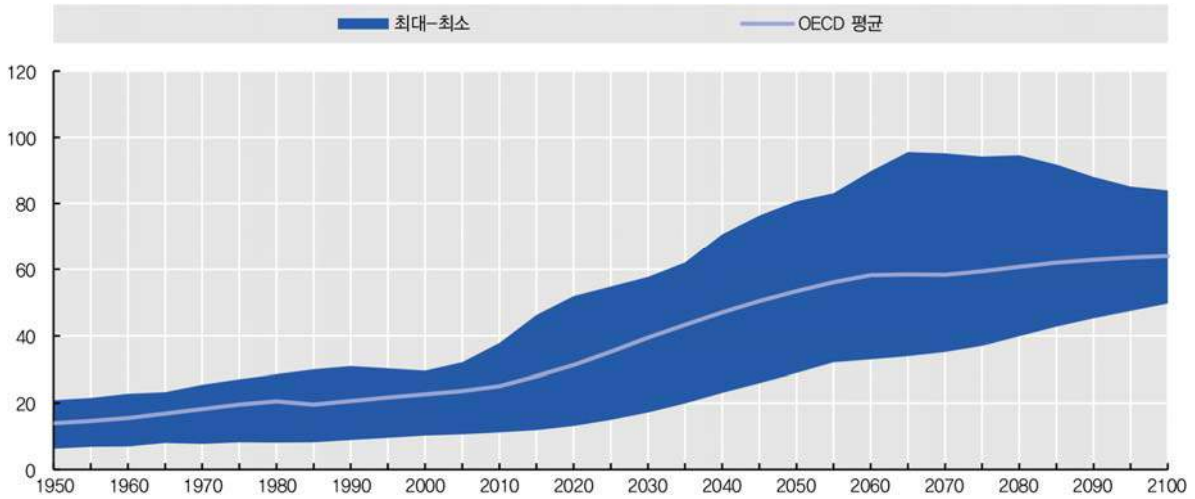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OECD 평균 지난 40년 동안 1980년 기준 20명에서 2020년 31명까지 50% 이상 증가했다. (그림 1.1) 다음 40년 동안 노인부양비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60년에는 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인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평균적인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아래 차트에서는 21세기 전반부에서 OECD 국가 예상 노인부양비가 갈수록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국가별로 달라 인구 구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인부양비가 비교적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2060년에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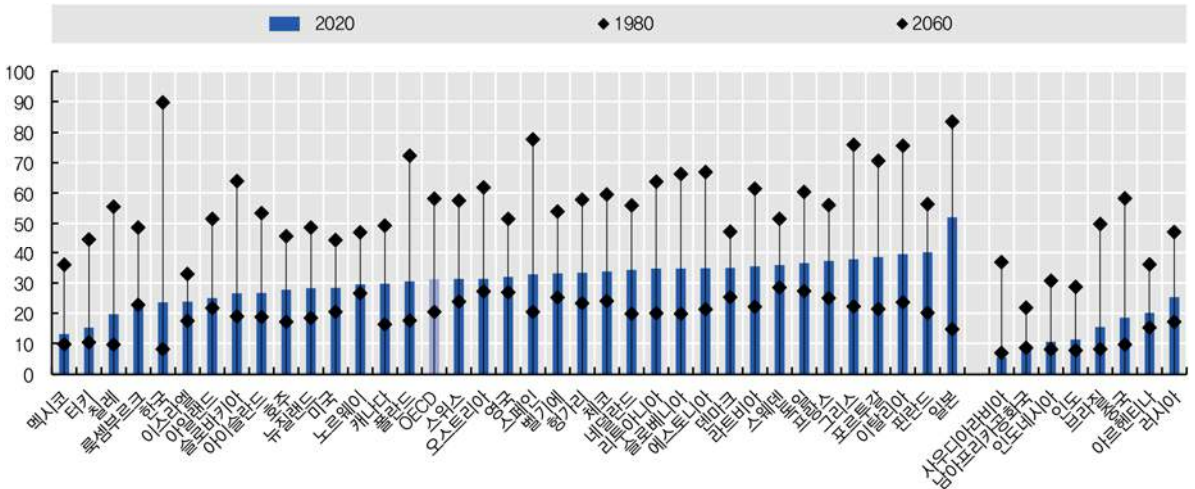
그림 1.1.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부양비**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 1950~2100년



주: 중앙의 선은 OECD 평균 노인부양비이다. 어두운 영역은 노인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와 가장 높은 국가 사이의 범위를 나타낸다.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40490>

그림 1.2. **40년 내 2배 가까운 증가가 예상되는 평균 노인부양비**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 1980~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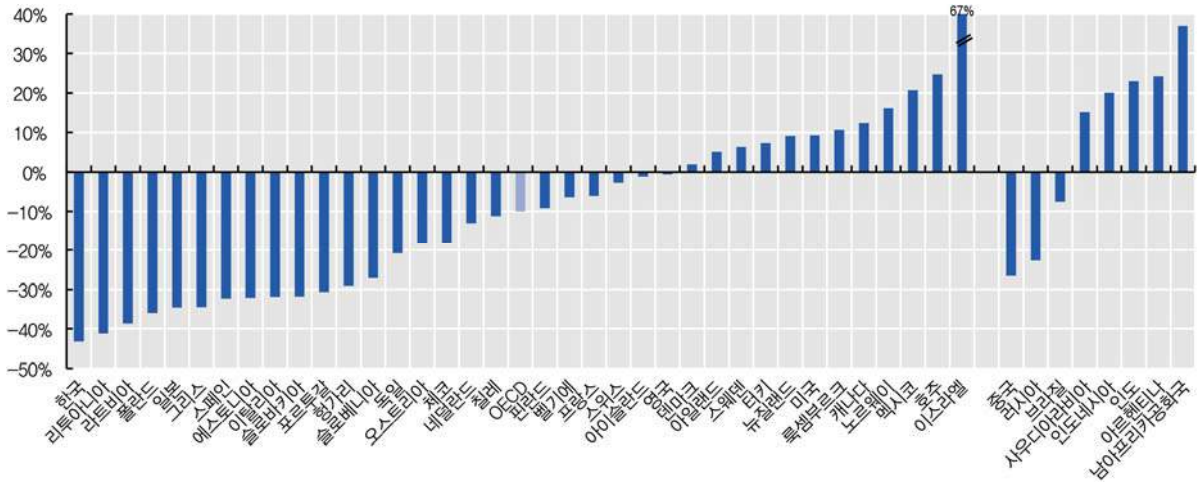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509>

(그림 1.2) 반면 현재 이 지표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젊은 인구를 가진 한국과 폴란드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부양비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2060년까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보면 그리스,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인구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일 것이다.<sup>1</sup> 비OECD G20 국가 중 브라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OECD 대비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만 현재 인구는 더 젊다.

예상 생산가능인구(20~64세)는 2060년까지 OECD 평균 10%, 즉 매년 0.26%씩 감소할 것이다. 그리스,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는 35% 이상 하락하고, 호주, 이스라엘, 멕시코

그림 1.3. 많은 OECD 국가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20~64세) 증감, 2020~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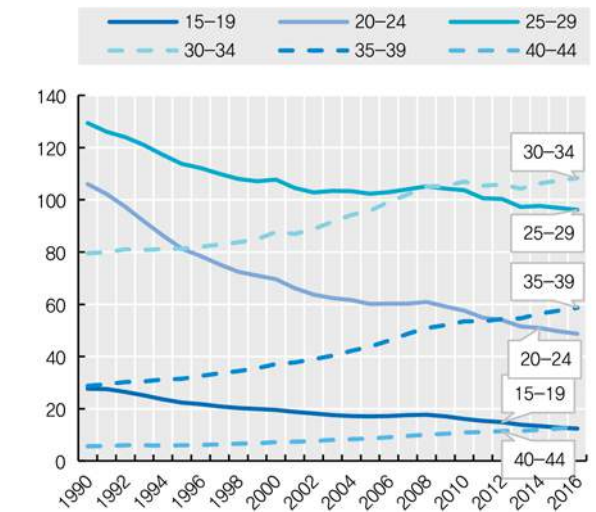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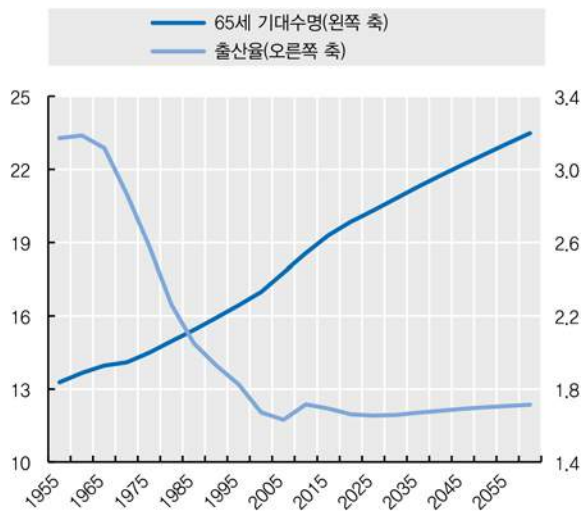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528>

그림 1.4. 계속해서 증가하는 예상 65세 기대수명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출산율

A. 65세 기대수명(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OECD 평균

B. 연령집단별 출산율,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OECD 평균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

출처: OECD 가족 데이터(Family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547>

에서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이는 내부 수익률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과식 (pay-as-you-go, PAYGO) 제도의 재정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및 균형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적립 연금 제도의 경우에도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65세 기대수명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 OECD 평균 1960년 13.7년에서 1990년 15.9년으로 증가한 65세 기대수명은 2020년 19.8년으로 크게 상승했다.(그림 1.4) 이 수치는 2050년 2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제법 큰 국가별 기대수명의 차이는 미래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헝가리의 65세 기대수명은 현재 17.2년이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은

22.4년이다. OECD 국가들의 65세 기대수명 범위는 2050년 라트비아가 19.8년, 일본이 25.0년으로 일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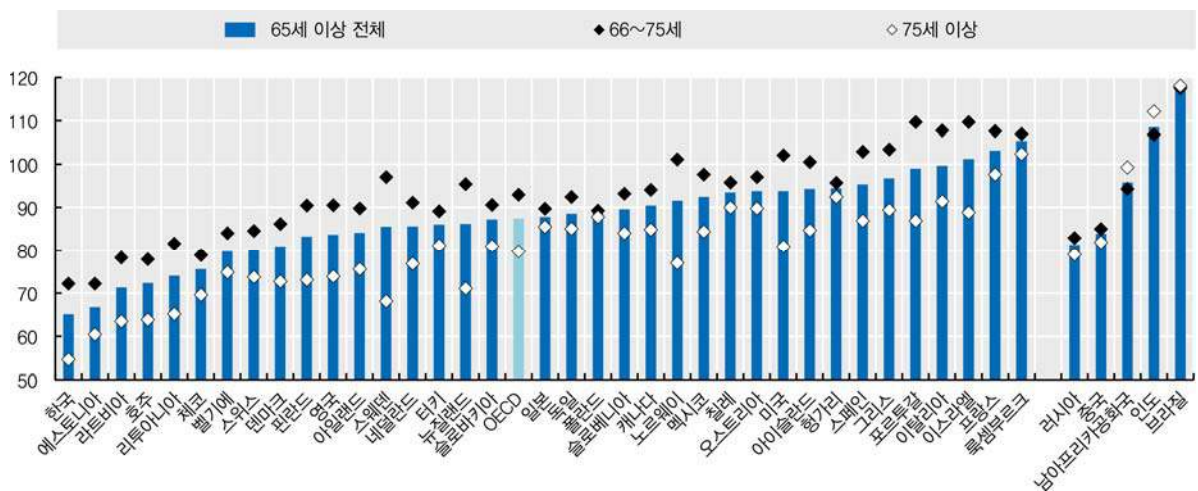
출산율은 1955년 15~49세 여성 1인당 자녀 3.2명에서 2005년 1.6명으로 급락(그림 1.4, 패널 A) 했으나, 2000년대 초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평균 출산율은 1.7이다. 최초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로는 영아사망률 하락 및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해 여성의 근로와 경력 구축을 촉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OECD, 2017<sup>(4)</sup>)

평균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도 크게 올랐다.(OECD, 2017<sup>(4)</sup>)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대략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반면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올랐다.(패널 B) 하지만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크다. 전반적으로 이제 30~34세 여성의 출산이 25~29세 여성보다 많고, 35~39세 여성의 출산은 20~24세 여성보다 많다. 낮은 전체적 출산율은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어린 연령의 출산율 감소,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 고용 증가는 여성의 복지가 개선되고 여성 노인의 빈곤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큰 성과다.(다음 섹션 참조)

**노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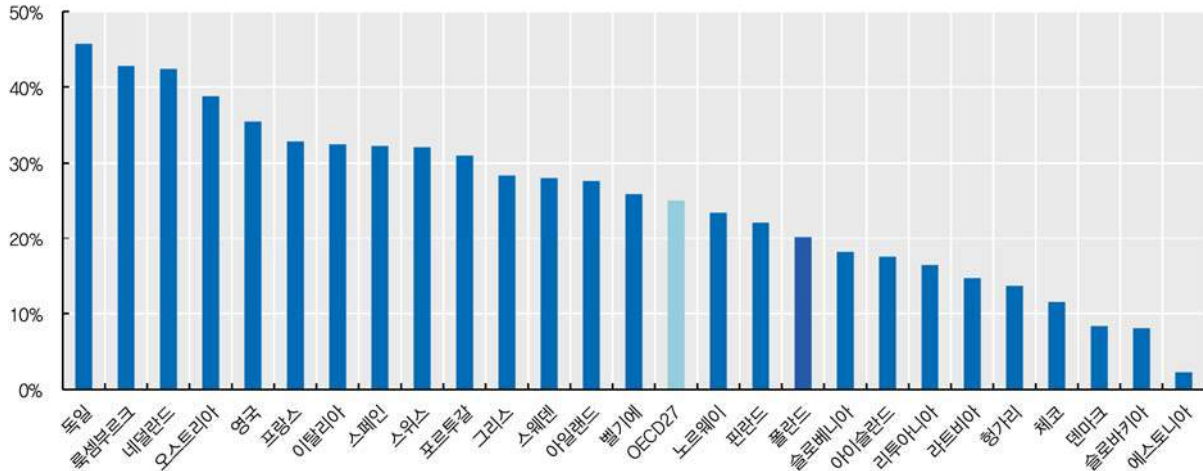
OECD 평균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87%에 해당한다. 에스토니아와 한국에서는 경제전반 전체 평균의 70% 수준이 되지 않지만,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에서는 100%를 넘는다.(그림 1.5 참조) 또한 소득은 노년에 나이가 들수록 하락한다. 모든 OECD 국가에서 75세 이상 노인은 66~75세 노인과 비교해 소득이 현저히 낮고, 평균 격차는 14%p이다. 대부분의 비OECD G20 국가에서는 반대추세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나이가 들수록 노후소득이 소폭 증가한다.

그림 1.5. 노인의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전체 인구 소득 대비 비율



주: 2016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기준.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자본 소득, 공적이전소득 일체가 포함되었다. 소득은 가구별로 측정되었으며 가계 규모의 차이에 맞춰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사용해 균등화했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 표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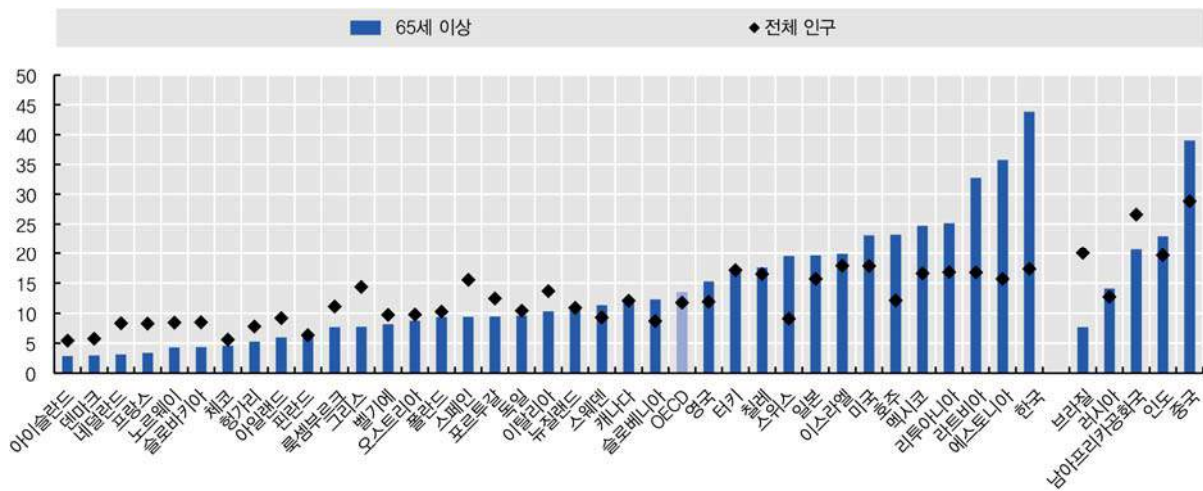
그림 1.6. 상당한 연금액 성별 격차



주: 연금액 성별 격차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액을 대상으로 공식(1 - 여성의 평균 연금액/남성의 평균 연금액)을 적용해 계산했다. 노인수당(공적 또는 사적), 유족연금,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도 포함되었다. 아이슬란드의 데이터는 2014년 것이다.  
출처: EU-SILC, 2016(2018년 3월판).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585>

그림 1.7. 노인 연령집단과 전체 인구의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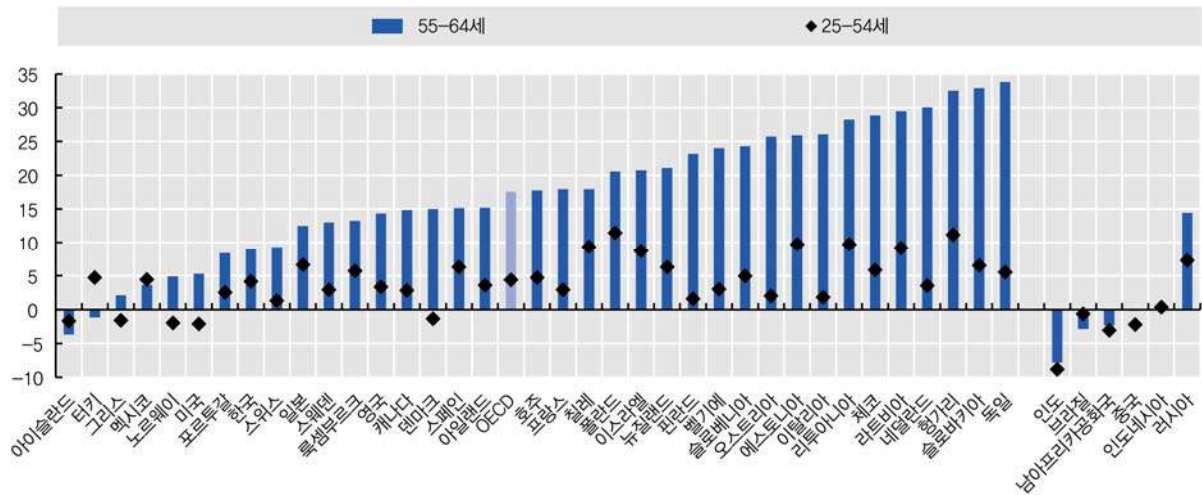
주: 상대적 빈곤은 국가 중위 균등화 가계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출처: 표 7.2.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604>

여성의 연금액은 남성보다 낮다.(Lis and Bonthuis, 2019<sup>[5]</sup>) 고령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력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수급하는 급여액도 적다. 2015년 기준 EU-28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의 평균 연금액 보다 25% 낮았다.(그림 1.6) 이러한 성별 격차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경우 40% 이상이었으며 덴마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10% 미만이었다. 이는 빈곤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많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제7장, 표 7.2) 한편으로는 근로소득과 연금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섹션 4 참조) 연금액의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향상되며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빈곤의 위험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년층에서 젊은 집단으로 이동했다. (제7장, 표 7.3)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8<sup>(6)</sup>)의 ‘빈곤의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지표에 따르면 EU 내에서 노년층의 빈곤율이 생산가능인구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sup>2</sup> 그러나 소득이 국가 중위 균등화 가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3.5%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11.8%)보다는 여전히 높다.(그림 1.7) 이는 일부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호주, 에스토니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을 겪는다.<sup>3</sup> 비OECD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상대적 빈곤을 겪는 비율이 4%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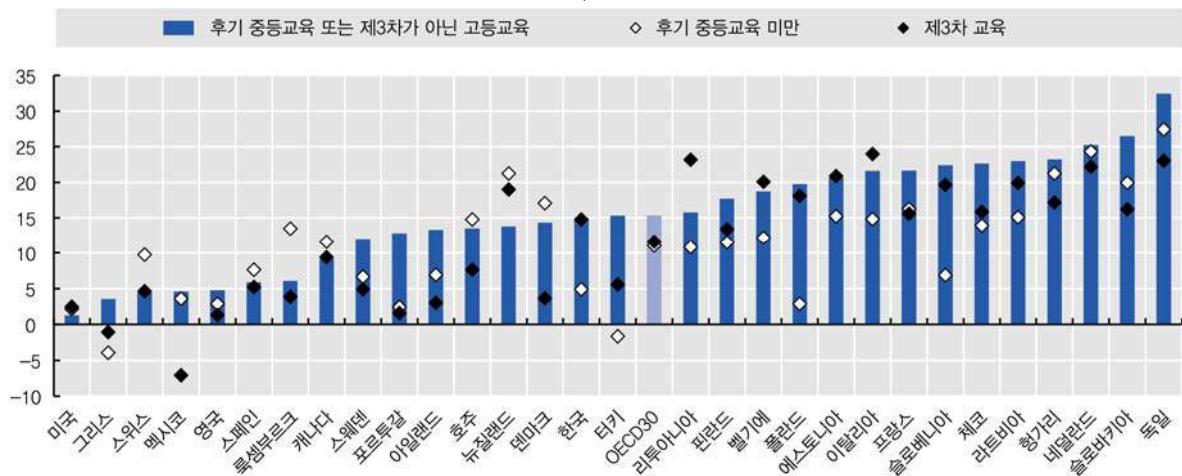
그림 1.8. 노인 근로자의 상당한 고용률 성장  
고용률 증감(%p), 2000~2018년



출처: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Stats database),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동력 조사.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623>

그림 1.9. 학력 수준별 노인 근로자의 고용률 성장  
고용률 증감(%p), 2000~2017년



출처: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 노동력 조사.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664>

이보다 나이가 많은 75세 이상의 초고령 연령집단 빈곤율은 현저히 높는데, (제7장, 표 7.2)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첫 번째,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받는 연금이 적고 기대수명은 더 높다. 두 번째,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제도가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서 모든 노인이 근로 기간 내내 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연금 급여액은 물가에 따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노인 근로자의 고용

2000년 이후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의 실업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큰 성과이다. 55~64세 고용률은 OECD 평균 2000년 43.9%에서 2018년 61.5%로 17%p 이상 증가했다. 신흥국에서는 증가폭이 훨씬 작았다. (그림 1.8) 체코,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증가폭이 28%p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25~54세 고용률은 76.8%에서 81.2%로 비교적 훨씬 적게 늘었다. 노인 근로자가 다른 연령집단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0세가 지나면 고용률이 급락하는 국가가 많다. 55~59세와 60~64세 연령집단에서 평균적으로 22%p 이상의 고용률 차이가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는 격차가 40%p 이상이었다. (제6장, 그림 6.6)

평균적으로 55~64세는 학력에 관계없이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큰 고용률 성장을 보였다. 특히 중간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평균적으로 저학력, 고학력자보다 성과가 컸다. (그림 1.9) 고용률 증감을 보면 벨기에,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터키에서 저학력 노인 근로자는 고학력 노인근로자에 크게 뒤떨어졌고,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에서는 반대였다.

## 지난 2년간의 연금 개혁

OECD 국가의 연금 개혁은 경제 금융 위기에 이어 나타난 개혁의 물결 이후로 둔화되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법제화된 몇몇 조치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목표로 했던 기존 개혁을 반복하기도 했다.

### 최근 개혁 개요

지난 2년 사이 연금 개혁은 대부분 연금 수급을 위한 연령 요건을 완화하거나, 1층 연금을 포함한 연금 급여액을 늘리거나, 연금 가입률을 늘리거나, 사적연금 저축을 장려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OECD 국가의 최근 주요 개혁은 다음과 같다.

- 연금수급연령 증가의 제한이나 조기퇴직 옵션 제한(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스토니아)
- 근로유인 제고(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 노인 사회보호의 첫 번째 수단으로서, 1층 연금의 연금액 수준 향상이나 가입범위 확대(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 급여액 향상 및 저소득자 기여금 축소(독일)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연금 급여액 조정 유보(스페인)
- 공공 부문의 연금 급여를 민간 부문의 급여에 보다 가깝게 조정(노르웨이)



- 기여율 변경(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또는 기여 방식 확대(뉴질랜드)
- 강제적 연금의 가입범위 확대(칠레) 또는 자동가입제도 발전(리투아니아, 폴란드)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제도 개정(스웨덴)

국가별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 연금수급연령과 근로 인센티브

지난 2년 사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토니아는 유일하게 현재 63세 4개월에서 2026년 65세로 상향을 결정하고 기대수명과 연계했다.

반면 2012년, 연금수급연령을 2017년부터 기대수명과 연계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슬로바키아는 연계를 폐지하고 대신 자율적 상향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을 64세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9년 개혁을 통해 ‘할당100(quota 100)’, 즉 38년간 기여한 뒤 62세에 은퇴하는 제도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하며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 한도가 적용되어 연금수급자의 근로유인이 제한된다.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 6월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연금제도 개혁에 합의하면서 일시적으로 연금수급연령 상향을 보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년까지 연금수급연령은 66세 4개월로 유지된다. 그 이후에는 연령 상향이 재개되고, 2021년이 아닌 2024년에 67세가 될 것이다. 2024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감소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의 연계는 65세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대신 8개월씩 증가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에 따라 노인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연령이 67세에서 2020년 68세로, 2023년에는 69세로 상향될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권장 연금수급연령을 도입하여 지연 은퇴를 촉진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권장 연금수급연령은 65세 평균 기대수명과 연계되어 적절한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은퇴 시점의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권장 연금수급연령은 2020년부터 매년 계산된다. 더불어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현재 61세로 지정되어 있는 소득비례제도의 최저 연금수급연령을 2020년 62세로, 2023년 63세로 올리고 이를 권장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기대수명과 간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6년부터 노년 사회보장제도의 다른 연령도 마찬가지로 권장 연금수급연령(67세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에 연계될 것이다.

G20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가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올렸다. 2019년부터 매년 1년씩 상향하여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42년 이상 기여한 남성과 37년 이상 기여한 여성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2년 전(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함)에 연금 전액을 받고 은퇴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9년 10월에 연금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개혁안은 연금 기여율을 올리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 급여액을 삭감하고,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최저 연금수급연령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sup>4</sup>

더 오래 근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은퇴 방식을 보다 자율적으로 확장한 국가도 있었다. 원래 기여 기간이 45년을 초과하면 누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벨기에에서는 최대 누적기간 제한 정책이 폐지되었다. 캐나다는 자국의 1층 급여(GIS) 중 소득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득 면제를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들이 일을 해도 수급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했다. 덴마크는 현재 67세로 지정된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최소 1560시간 이상 고용되는 경우 30,000 크로네(평균 임금의 7%)의 일회성 일시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스토니아는 유연은퇴 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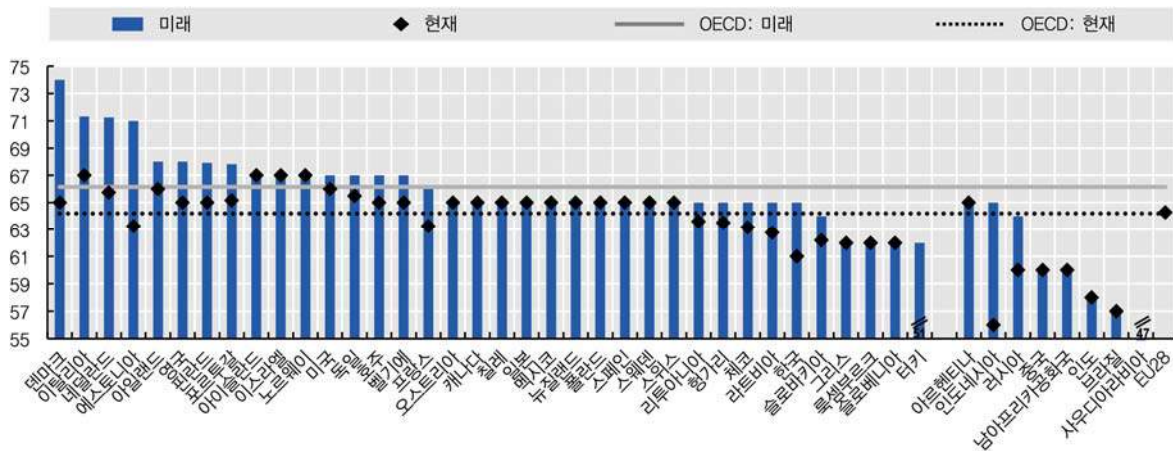
확대하여 법적 연금수급연령보다 3년 먼저 연금과 근로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sup>5</sup> 연금을 절반만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만액연금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급여액이 더 높아진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올리는 것은 보통 수명이 늘어나도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각 제도의 설계에 따라 연금제도는 과거 소득 대비 노후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최소한 줄어들지 않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이 높으면 기여금도 늘어나고 은퇴 후 기간이 짧아지므로 연금 지출도 낮아진다. 동시에 근로 기간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가 연금수급액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급여액이 늘어난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즉 개인이 22세부터 근로하여 완전경력을 마쳤다고 가정할 때 페널티 없이 모든 연금제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연령은 OECD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2018년 기준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터키의 경우 남성이 51세, 여성이 48세였으나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였다.(그림 1.10, 그림 4.4) 현재 법률을 고려하면 미래의 정상 연금수급연령(남성)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62세부터 덴마크의 74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sup>6</sup> OECD평균을 보면 2018년 64.2세였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2018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2060년 이후 은퇴하는 사람의 경우 66.1세로 늘어날 것이다.(제4장, 그림 4.6) 같은 기간 동안 65세 기대수명은 4.1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그리고 시작점이 낮은 터키)에서 현재 은퇴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5년 이상 증가할 것이다.(그림 1.10) 현재 법률을 바탕으로 예상한 미래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에서만 65세 미만이다. 또한 모든 비OECD G20 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이 65세 이하로 나타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47세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0. 증가하는 여러 OECD 국가의 정상 연금수급연령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경력 남성의 정상 연금수급연령



주: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22세부터 근로하여 완전경력을 마친 남성에 대하여 계산한다. 미래란 2018년에 22세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액 삭감 없이 모든 강제적 연금제도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해를 가리키며, 국가별로 상이하다. '할당100(quota 100)'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현재 이탈리아의 연금수급연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2019년 10월에 연금개혁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미주 4번 참조)  
출처: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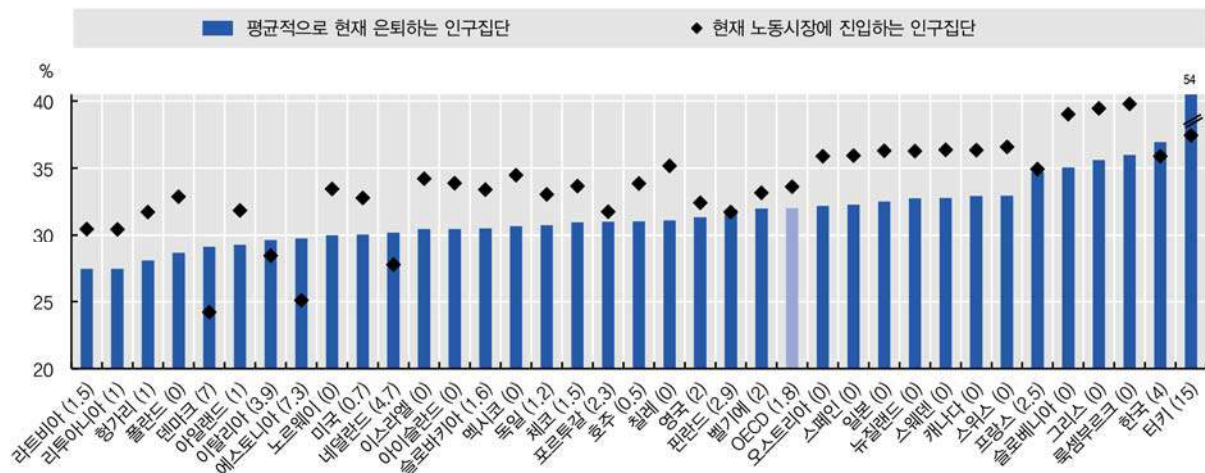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연금수급연령은 20세기 중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저점을

찍은 뒤 계속 상승하여 최근에서야 1950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 사이, 즉 20세기 중반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65세 기대수명이 평균 약 6.5년 상승하여 연금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 각각 1940년과 1956년에 태어나 중단 없이 경력기간을 끝까지 완료한(그리고 지금쯤 은퇴하는) 남성의 경우 OECD 평균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약 1.3년 늦춰졌다.(OECD, 2019<sup>[7])</sup> 이는 출생연도가 1년 늦춰지면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1달 상승한다는 뜻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는 적어도 194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남녀 모두 동일하다. 성별 차이가 존재했던 18개 국가 가운데 6개국은 이미 이를 폐지했으며 7개국(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영국)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성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스위스, 터키뿐이지만 터키는 2028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부터는 정상연금수급연령의 성별 차이를 두는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제4장)<sup>7</sup>

연금수급연령은 오르고 있으나 성년기 대비 은퇴 후 보내는 시간은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집단의 경우, 은퇴 후 보내는 기간이 성년기 대비 33.6%를 차지할 것이다. 현재 은퇴하는 인구집단의 경우 이 비율은 32.0%이다.(그림 1.11)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은퇴 후 보내는 기간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터키뿐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성년기 대비 은퇴 기간의 비율이 평균 3.1%p 증가하는데, 이는 은퇴 후 보내는 기간의 10%에 해당한다.


그림 1.11. 성년기 대비 은퇴 기간의 비율



주: 은퇴 기간은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 기대수명으로, 성년기는 연금수급연령까지 생존한다는 조건 하에 20세 이후 생애로 측정한다. 미래 기간의 경우 기준년도 2015년으로부터 UN의 예상 인구집단별 중위 사망률을 사용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연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수급연령의 증가폭을 나타낸다.

통계 참고: 가령 오스트리아의 경우, 현재 은퇴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년기 대비 은퇴 후 보내게 되는 시기의 비율은 31.6%이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65세 (오스트리아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의 기대수명은 20.8년이다. 65세까지 생존한다는 조건 하에, 20세 이후 성년기의 31.6%가 은퇴 시기에 해당하게 된다.  $20.8 / (20.8 + 65 - 20) * 100 = 31.6$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을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680>

조기퇴직제도 개혁도 실질 은퇴연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제적 소득비례제도의 최저연금수급연령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OECD 31개국에서 22세의 나이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의 조기퇴직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61.2세였다.(그림 1.12), 27개국에서는 정상 연금수급연령보다 낮은 조기퇴직연령이 존재했다. 최저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거나 조기퇴직의 페널티를 늘려서 조기퇴직자의 연금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주요 연금정책 중 하나였다. 2004년부터 2018년 까지 조기퇴직연령의 증가폭은 1년이 조금 넘었다.

지난 2년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조기퇴직 조건을 완화했다.<sup>8</sup> 2019년 이탈리아는 조기퇴직을 위한 경력기간 수급조건(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각각 42.8년과 41.8년)과 기대수명을 자동 연계하는 제도, 그리고 고된 직업군의 종사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기대 수명과 자동 연계하는 제도를 각각 2026년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서 ‘할당100’(상기 내용 참조) 제도를 비롯하여 NDC(명목확정기여형 또는 비재무 확정기여형) 급여 산정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여성에게 35년을 기여기간을 가지면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명 ‘여성의 선택’ 제도가 도입되었다.<sup>9</sup> 이러한 조치들은 연금수급 조건을 크게 강화했던 2011년 개혁 내용을 부분적, 일시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섹션 4 참조)

그림 1.12. 서서히 오르고 있는 몇몇 국가의 조기퇴직연령  
소득비례제도의 조기퇴직연령, 남성



주: 소득비례제도의 조기퇴직연령은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단 없이 경력기간을 완료한다는 가정 하에 연금을(적용되는 경우 페널티를 받고) 수급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나타낸다. 칠레와 네덜란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칠레에서는 연금이 반드시 PMAS의 80%(평균 임금의 31%)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10년 근로 기간의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최저 퇴직연령은 업종별로 다르다. 멕시코의 소득비례 제도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액이 최저연금보다 30% 높고 1250주 이상 기여한 경우 연제든 수급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 퇴직연령은 60세이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은 기초연금만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적 소득비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는 경력 기간이 매우 긴 경우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벨기에에서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43년을 기여한 경우 60세에, 프랑스에서는 42년 기여한 경우 60세에, 이탈리아에서는 42년 기여한 경우 62세에, 룩셈부르크에서는 40년 기여한 경우 60세에, 포르투갈에서는 40년 기여한 경우 60세에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모두 22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시사한다.  
출처: 표 4.4.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699>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66세 4개월인 포르투갈은 16세 또는 그 이전에 기여를 시작하여 46년 이상의 기여 기간을 가진 장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페널티 없는 60세 조기퇴직 자격을 확대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과거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OECD, 2017<sup>[11]</sup>) 더불어 2019년부터는 포르투갈에서 조기퇴직에 특히 큰 페널티(조기퇴직 후 매달 0.5%씩 부과되는 일반 페널티 이상)를 부과하는 지속성 지수를 60세가 되는 40년 이상 기여한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 1층 연금제도

멕시코는 6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편적 연금 프로그램(Programa Pensión para el Bienestar de las Personas Adultas Mayores)을 도입하여 노인 안전망 제도를 개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여형 연금 수급액이 1,092페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선별적 노인 사회부조 프로그램(Programa Pensión para Adultos Mayores, PPAM)을 대체하는 제도다. PPAM 연금을 수급하던 65~67세 노인들은 자동으로 새로운 보편적 연금제도를 수급하게 된다. PPAM과 비교하여 이번 제도에서는 급여액 수준이 120% 가까이 크게 상승했으며, 연금소득에 대한 자산조사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장하여 2018년 PPAM 기준 550만 명에서 2019년 850만명으로 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자산조사가 배제되며 수급 가능연령이 증가했다.

2019년, 이탈리아는 기존 노인 안전망 제도에 더해 일명 ‘시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새로운 안전망 제도의 급여 수준은 인당 630유로로,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기존 18.8%에서 24.2%로 30% 가까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인안전망제도(ASPA)가 명목상 약 12.5%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기여 기간이 긴 경우에 대해 보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OECD에서는 보통 최저연금 제도를 의미하지만, 오스트리아 제도는 자산조사형이다.) 30(40)년간 기여한 독신 가입자는 최소 1.080(1.315)유로, 즉 총 평균 근로자 임금소득 대비 29%(36%)를 받게 된다. 부부의 경우 보충액은 이보다 높다. 슬로베니아는 40년의 완전경력을 마친 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최저연금 수준을 도입했다. 2018년 기준 15년간 기여한 근로자는 월 216유로(평균 근로자 임금소득의 13.2%)인 반면, 완전경력 근로자는 월 516유로(평균 근로자 임금소득의 31.5%)의 급여액을 받는다.

#### 소득비례제도의 연금 급여액

소득비례제도의 급여액 수준을 조절하기로 한 국가들도 있다. 스페인에서는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 개혁 당시 결정된 조치가 유보되었다. 연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균형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의 연금 급여액을 연동하는 재평가연금지수(IRP) 사용이 연기되었다. IRP가 적용되었다면 0.25%밖에 상승하지 않았을 연금 급여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모두 1.6%씩 올랐다.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최초 연금수급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지속성 지수는 2023년까지 유보되었다. 게다가 65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대체율은 사망자 연금의 52% 수준에서 60%로 올라갔다. 두 가지 지속성 지수와 새로운 연동 제도의 2023년 이후 적용 여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것이다.

독일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도입했다. 기여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한도를 총 평균 근로자 임금의 21%에서 32%(850유로에서 1300유로로) 올려서 저소득자의 유효 기여율을 낮췄다. 동시에, 과거와 달리 기여금이 감액되어도 연금 수급액은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2033년까지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포인트의 가치와 비용을 연동하는 규정에 동의했다. 기여금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 수를 결정하는 포인트 비용은 임금 성장률에 연동될 것이다. 급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포인트 가치는 2022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에, 2023~2033년에는 임금 성장률에서 1.16%p를 뺀 값에 연동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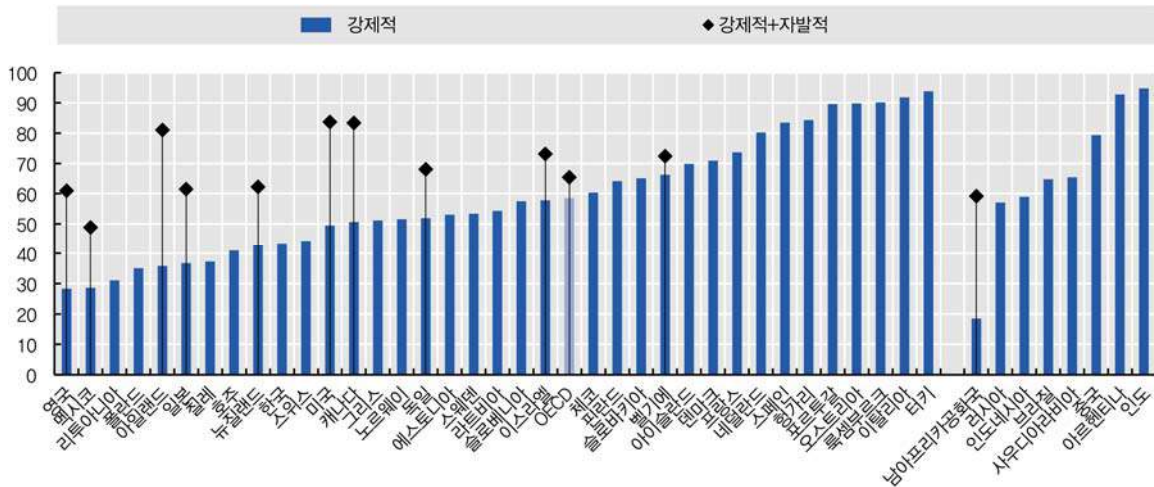
노르웨이는 공적 부문의 근로자와 사적 부문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간 일치율을 높였다. 노르웨이는 1963년 이후 태어난 공적 부문의 근로자에 대해 계약상 조기퇴직제도(AFP)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원래 62~66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제공 조기퇴직제도였던 공적 부문의 AFP는 사적 부문과 마찬가지로 노령 연금의 지속적인 보완책 제도가 되었다.<sup>10</sup> 또한, 공공 부문의 연금은 은퇴 소득 기준으로 30년 기여시 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닌 평생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국가들은 특별 제도를 계속해서 폐지해 왔으며,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령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등을 완전히 통합했거나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다.(OECD, 2016<sup>[8]</sup>)

OECD는 여러 국가의 연금제도 주요 성과를 구별하고자 미래의 이론적 대체율을 계산한다. 주요 지표 중 하나는 2018년 기준 22세에 근로를 시작하여 완전경력을 마치고 국가별 정상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이상적 사례를 가정한 순 대체율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개인이 최초로 연금액 전액을, 즉 계리적 삭감이나 페널티 없이 수급할 수 있는 연령으로 정의된다. 이 이론적 대체율은 은퇴전 소득 대비 연금수급연령의 연금 급여액의 비율로 나타낸다.

미래의 연금 대체율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다. 그림 1.13은 OECD 및 G20 국가에서 평균 임금을 버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이론적 순 연금대체율을 나타낸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기준으로 한 강제적 제도의 순 대체율은 평균 59%로,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은 30%에 가까우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는 90% 이상이다. 연금 추계에 사용되는 평균 OECD 가정(제5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순 대체율은 최선의 경우를 가정해도 낮게 나타날 것이다. 칠레,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의 경우 4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높은 국가, 즉 벨기에,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경우 OECD 추계에 사용되는 모형 가정(자세한 사항은 제5장 참조)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자가 자발적 연금에 경력 기간 내내 기여하면 대체율이 평균 26%p 상승한다. 45세부터 자발적 연금에 기여하면 대체율이 평균 약 10%p 상승한다.

그림 1.13. 완전경력 평균 임금 근로자의 미래 순 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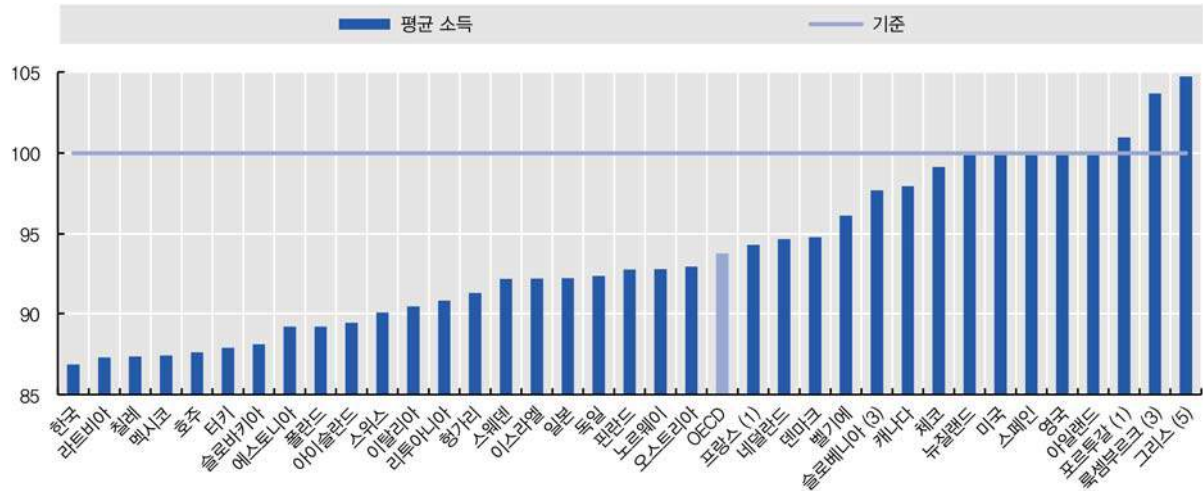
주: 연금 모형을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연금수급액은 OECD 회원국의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연금제도 매개변수 값은 2018년 이후의 상황을 나타낸다. 계산된 값은 2018년에 22세의 나이로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완전경력을 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 급여액을 나타낸다. 기준 결과는 독신 개인에 대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참조.  
출처: 표 5.6.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718>

경력이 중단되면 일반적으로 연금액이 낮아지지만, 모든 OECD 국가에서 경력단절이 수급액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다룬 OECD 평균 완전경력 사례와 비교하여 경력 기간 중 5년의 실업을 경험한 근로자는 강제적 제도의 연금액이 6.3% 감소한다.(그림 1.14) 소득과 수급액이 1:1 관계라면 그 영향은 약 13%가 될 것이다.(제5장) 즉, 실업 기간 동안 연금 크레딧과 같은 제도를 제공하면 실업이 연금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절반 이상 완화된다는 것이다. 5년 실업의 연금

손실은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10%를 초과한다. 반면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의 경우 경력 단절이 강제적 제도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이 국가들에서 강제적 제도는 기초연금만을 포함한다.<sup>11</sup> 스페인과 미국 또한 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도 급여액에 영향이 없는데, 두 국가의 소득비례제도에서는 각각 38.5년과 35년간 기여해야 급여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4.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력 단절로 인한 연금수급액의 현저한 하락  
완전경력 근로자 대비 5년의 실업 기간을 가진 평균 소득자의 강제적 연금제도 총 연금수급액(%)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 전액을 받는 데 필요한 은퇴연령 증가분.  
자세한 사항은 제 5장 참조  
출처: OECD 연금 모델.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737>

##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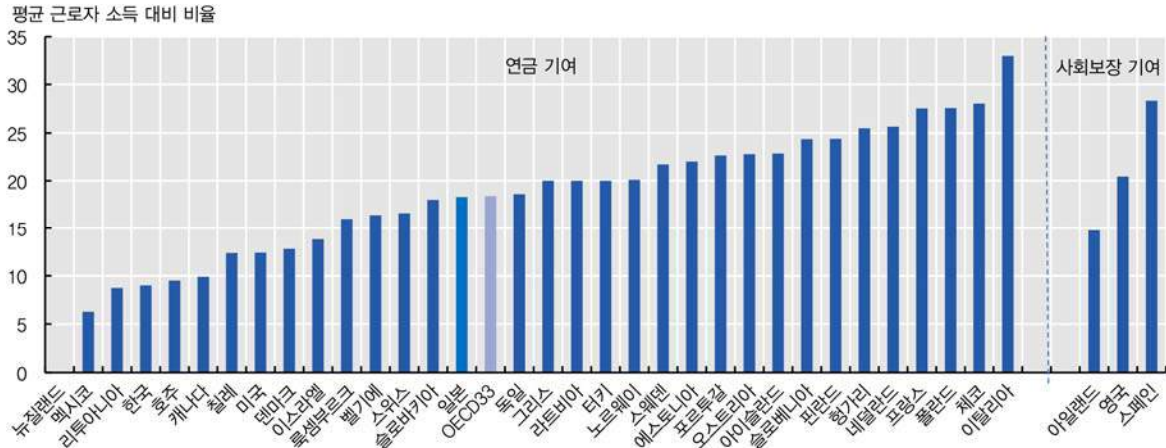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지난 2년 사이 기여율이 올랐다. 아이슬란드는 강제적 퇴직연금에 대하여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율을 8%에서 11.5%로 상향했다. 스위스는 공적연금(AVS)의 기여율을 0.3%p 올렸다. AVS 재정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보조금도 총 수입의 대비 19.6%에서 20.2%로 증가했다.

한편 헝가리에서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 기여율이 2018년 1월 기준 15.75%에서 2019년 7월 12.29%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했다. 리투아니아는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의 주 부과 대상을 고용주에서 피고용인으로 변경했다. 고용주의 기여율은 월 급여의 31%에서 1.5%로 줄었고, 피고용인의 기여율은 월 소득의 9%에서 19.5%로 늘었다. 남은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동시에 소득 한도는 2019년 기준 평균 근로자 소득의 10배에서 2020년 7배, 2021년 5배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독일은 최소 및 최대 기여율을 새로 설정했다. 총 기여율은 2025년까지 20%를 초과하거나 18.6% 미만으로 떨어질 수 없다. 이전의 최대 기여율은 2020년까지 20%, 2020~2030년의 경우 22%였다.

강제연금 기여율은 OECD 국가마다 크게 상이하다. 뉴질랜드는 기초연금 제정을 세금을 통해 마련하기 때문에 강제적 연금의 기여율이 0이다. 평균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 총 유효 연금 기여율은 OECD 평균 18.1%였다.(그림 1.15) 기여율은 호주, 캐나다,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에서 10%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에서 2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페인도 기여율이 높았으나, 스페인의 기여금은 연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그림 1.15. 국가별로 크게 상이한 연금 기여율

평균 근로자 소득을 버는 피고용 노동자의 강제적, 준강제적 연금에 대한 총 유효 기여율, 2018년



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의 기여율은 장애급여와 질병(invalidity) 급여의 재정 마련에도 사용됨.

출처: 제8장, 표 8.1 및 8.2.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756>

제도에 사용된다.

자발적 연금제도의 경우, 뉴질랜드는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의 기여율 선택 범위를 확장했다. 원래 3%, 4%, 8% 중에서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었던 뉴질랜드 국민들은 2019년 4월부터 6~10%의 범위에서 기여율을 고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어도 국민들이 기여금을 더 내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2019년 8월, 강제적 사적 연금제도를 자동가입제도로 대체하는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가입자가 사적 연금제도에서 탈퇴하면 고용주의 기여금이 PAYGO 포인트 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립 포인트의 총 가치가 높아지고 피고용인은 자신의 기여금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순 임금에 상승하는 한편 총 의무 기여율과 총 연금 지급액은 낮아진다. 제도를 탈퇴하는 가입자는 사적연금제도에 누적된 모든 기존 자산에 대하여 일시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sup>12</sup>

### 가입률

지난 2년 사이, 강제적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가입률을 확장한 국가는 칠레뿐이었다.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칠레는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용인의 경우 가입이 의무인 연금제도에 자영업자도 포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영업자 대다수는 제도에서 탈퇴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노인 근로자와 저소득자를 제외하고 명세서를 발급한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 연금 기여가 의무가 되었다. (제2장)

벨기에, 독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의 경우 자발적 제도의 가입률이 상승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자영업자도 여기 포함되었다. 기존 2개 제도를 운영하던 벨기에에서는 이에 더해 2018년 자영업자를 위하여 연금 지급가능 소득 한도가 비교적 낮은 새로운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가입자들은 명시적 한도 없이 기여금에 대해 3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없는 피고용인들에게도 비슷한 선택권이 제공된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피고용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발적 연금제도가 비슷한 조건의 자영업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18년 독일은 피고용인이 단체협약 과정에서 동의하는 경우 고용주가 최소 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발적 저축제도(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터키는 사적 연금제도(2017년에 도입)의 자동가입 범위를 소규모 고용주(피고용인 5~99명)에게까지 확대했다. 폴란드는 2014년 다층 연금 제도가 해체되며 나타난 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피고용인에게 자발적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이제 이 제도를 제공해야만 한다. 리투아니아는 2014년에 도입된 기존의 자발적 적립식 연금제도를 40세 미만 피고용인을 위한 자동 가입제도로 바꾸었다.<sup>13</sup>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유럽연합은 EU 내 노후저축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 노후저축 프로그램(범유럽 개인연금 상품)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EU 거주자들은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되므로 EU 회원국 간 이동이 가능한 개인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

### 기타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규정을 변경한 나라는 두 곳이다. 2019년, 스웨덴은 연금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17000크로나에서 98000크로나로(총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약 45%에서 260%) 확대했다. 프랑스는 2018년 연금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CSG)율을 6.6%에서 8.3%로(임금에 적용되는 정상 세율은 7.5%에서 9.2%로) 올렸고, 2018년에는 최저소득 퇴직자 중 3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결정했다.

2018년 9월 스웨덴 연금기구(Swedish Pension Agency)는 연금제도의 강제적 소득비례 적립식 요소(PPM)를 관리하는 연기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히 PPM 외 기금 5억 크로나와 최소 3년의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금은 PPM 플랫폼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2019년 1월, 553개 기금이 남고 269개 기금이 제외되었다. 또한, 주요 연금 완충 펀드 4개에 대한 투자 규정이 완화되었다.<sup>14</sup> 터키의 사적연금제도에서는 자산관리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연금 제공사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연금 제공사의 관리비용을 줄이고자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고용주와 연금 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 연금 제공사가 한정적 연금수급액을 가진 특정 가입자의 총 수급액을 새로운 연금 제공사로 자동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연금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2022년까지 대규모 퇴직 연금제도 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6월에는 조합, 고용주 단체,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해 퇴직 연금제도의 DC 요소를 늘리고(즉, 연금수급액이 연기금 수익률에 더 영향을 받는다) 연금수급연령 상향을 제한하는 한편 기대수명과의 연계는 유지하기로 했으며 고된 직업군의 근로자를 위한 특별 규정을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 9월 연금개혁위원회(High Commission for Pension Reform)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보편적인 연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을 준비하고자 마련되었다.(Boulhol, 2019<sub>[9]</sub>) 위원회는 2019년 7월,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제안된 제도에는 매우 분절적인 프랑스의 연금제도 지형에 대한 대규모 개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기여와 연금수급액 계산에 대한 공통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현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재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게 될 것이다. 2020년 법안 투표를 목표로 법제화 과정을 준비하고자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 중이다.

## 과거 개혁의 반복 및 불이행을 요구하는 압력의 증가

지난 2년 사이 가장 두드러진 연금 정책으로는 개혁 내용의 반복과 법제화된 정책의 불이행 결정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은 기대수명이나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맞춘 자동 조정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다루었던 이탈리아는 ‘할당100’ 제도를 도입하고,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자동 연계를 유보했다. 슬로바키아는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의 연계를 2019년 중단하고 대신 연금수급연령을 64세로 올렸다. 스페인은 은퇴 시 최초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 조정 제도와 연금 급여액 연동을 유보했다. 네덜란드는 중기적 연금수급연령 증가를 연기하고 보다 느린 장기적 연계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연계 제도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연금수급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부 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덴마크와 네덜란드 모두 연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은 없다.

지난 4년 사이, 캐나다, 체코, 폴란드도 과거 채택한 개혁안을 반복하기로 결정했다.(OECD, 2017<sub>[10]</sub>) 캐나다는 기초연금과 노인 안전망 제도의 연령을 67세로 올리겠다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체코는 연금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폴란드는 67세까지 연금수급연령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반복했고,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은 60세로 다시 떨어졌다.

경제위기 기간부터 위기가 끝난 직후까지는 공공 재정의 개선이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금 조치는 연금 지출의 억제,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의 상승이나 조기퇴직 규정 강화를 통한 근로기간 연장을 포함했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서 공적 재정의 압박도 완화되면서, 단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단기적 어려움은 꼭 필요한 장기적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상황이 늘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적 금융 위기로 인해 구조적 약점이 심화되어 드러나기도 했다.

장기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정된 개혁의 경우, 법제화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 현상의 대표적 예시로는 고령화가 있는데, 섹션 2에서 다루었던 고령화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 졌다. 즉, 결정된 조치의 반복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제로 여러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치는 누구든 짐작할 수 있듯이 언제나 인기가 없다. 최근에는 합의된 규정을 적용하면 불만을 야기했기 때문에 결정을 철회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간단히 PAYGO 연금을 예시로 보면, 수명이 늘어났으므로 근로 기간 상향이나 급여액 축소, 재원 확대 또는 여러 방법의 결합이 필요하다. 각 대안 모두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조치는 아니다.

통과된 개혁안을 철회하는 경향은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사회 정책의 긴축 조치가 가져오는 강력한 영향과 반기득권 정당의 급격한 부상은 재정 규율과 관련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 정치적 균형이 뒤바뀌며 초기 단계에 연금 개혁을 지지했던 타협이 흔들릴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정책은 항상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금 급여액 상향이나 기존 개혁의 반복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Natali, 2018<sub>[11]</sub>)

그러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연금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재정적 경향은 표준 부과식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립식 확정급여형 제도의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도들은 반복적인 자율적 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연금제도를 자동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일부 매개변수를 주요 변수와 연계하는 경우 반복되는 조치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동적 규정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다지 높지도 않은 연금수급연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사람들이 반길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한 결정에 대한 유혹에 저항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과 연계는 특정 연령에 대한 미래의 급여액을 조정하거나 수명의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올리는 경우를 위해 예측 가능한 규정을 제공해 준다. 더불어 기대수명의 변화는 예측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실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도 자주 등장한다. 미래의 정부가 다수의 뜻에 따라 자동 규정이 수반하는 조치 대신 다른 조치를 채택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자동 조정 장치의 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정치적 이익이 예상된다면 언제든지 그 정치적 의제에 맞춰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금에 관한 결정이 정책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면 예산의 압박력이 심한 시기에 급여액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고, 조정 과정이 훨씬 불안정해지며 경기변동 주기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 연금 개혁의 장기적 경향

지난 50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는 연금 규정을 변경했다. 각국은 인구 고령화에 의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떤 국가에서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제도의 본질적 특성 자체를 바꿨고, 어떤 국가에서는 보수적 개혁을 진행했다. 급여액과 소득 간의 연계가 더욱 강해지면서 연금 제도들은 보다 개인화 되었다. 개혁은 세대별 연금 수급권과 급여 수준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과거의 연금제도는 연금 급여액이 기여년수, 연금수급액이 누적되는 비율(지급율), 개인 소득측정(기준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부과식 제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20세기 후반부에 확정급여형 부과식 제도를 수립하거나 확대했다. 당시에는 인구성장률이 높았고 경제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부과식 제도의 내부 수익률을 증가시켰다. 도움이 되었다. 부과식 연금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기여를 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급여액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OECD 국가에서는 부과식 제도와 더불어 적립식 퇴직연금이 오랜 기간 운영되었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이들 나라의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이었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제도에도 확정급여형 제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사이,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과식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다. 칠레와 멕시코는 각각 1981년과 1997년에 공적 확정급여형 부과식 제도를 의무가입의 사적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대체했다. 최근 사례로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이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고자 의무가입의 사적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러한 제도의 재원이 되는 기여율을 높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 규정을 연이어 변경하여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일종의 확정기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의 혼합형 제도로 바꾸었다. 앞 섹션에서 다루었듯, 개인 계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들도 존재한다.<sup>15</sup>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형 제도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확정기여형 제도가 늘어났다.(OECD, 2016<sup>[8]</sup>)

그러나 그보다 최근에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 의무 가입의 적립식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를 폐지했고, 슬로바키아는 의무가입의 사적 적립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와, 자동가입제도, 자발적 연금제도를 번갈아 사용했다.(현재 슬로바키아 국민은 35세가 되기 전에 의무 기여금의 1/3을 포인트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부과식 제도를 시작으로 적립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전환 비용을 초래한다.(Boulhol and Lüske, 2019<sup>[12]</sup>) 현재 부과식 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적립식 제도 내에서 저축을 통해 새로운 수급권을 쌓으려면 상당히 높은 연기금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 재정의 압박이 심할 때에는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 상당한 희생 없이는 것처럼 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정부도 부채 수준을 높여 전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전환 비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금 재원의 다양화는 다층 체계를 지지하는 측의 주요 의견 중 하나이지만, 장기적 수익이라는 현재의 배경에서는 부과식 제도와 적립식 제도 사이의 균형점이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Boulhol and Lüske, 2019<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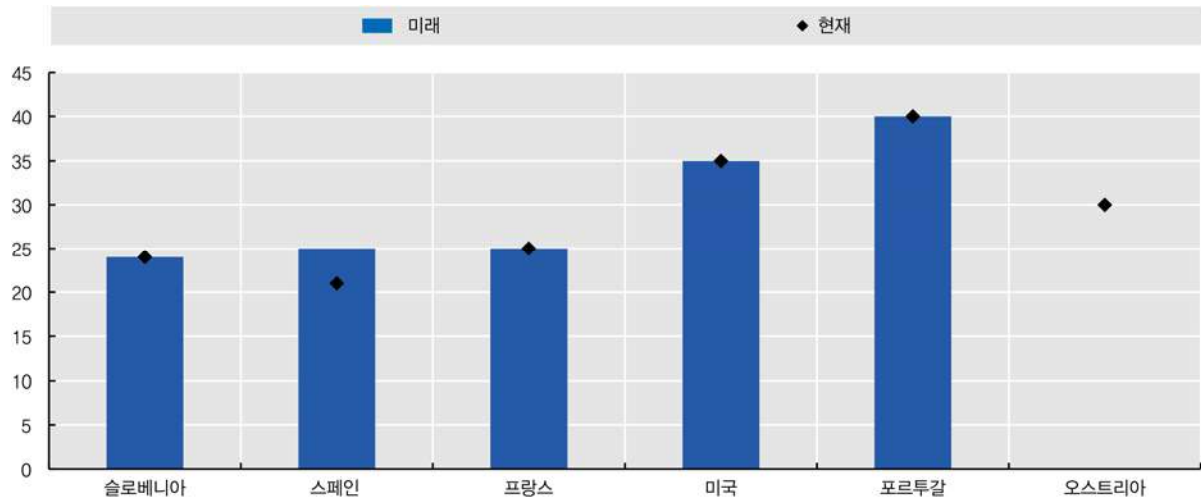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향한 변화와 비슷하게,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은 1990년대에 공적 부과식 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에서 명목(비재무)확정기여형(NDC)으로 바꾸는 급진적 개혁을 진행했다. 노르웨이도 2011년에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NDC 제도로의 움직임은 보다 개인화된 연금 급여를 향한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NDC 제도 설계의 핵심은 개인의 생애 기여 및 급여액 사이의 연계가 강력한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수명이 증가하며 근로 기간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도에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누적된 기여금이 동일할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령에 무관하게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소득과 급여액의 연계 강화*

일부 국가에서는 부과식 확정기여형 제도 내에서 소득과 급여액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존의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포인트 제도로 연금 제도를 변경했는데, 포인트 제도에서 급여액은 평생동안 납입한 기여금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위에서 다루었듯 프랑스는 보편적 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벨기에 정부는 민간 부문 근로자, 공공 부문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포인트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소득과 연금액 사이의 연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개인 소득 측정을 들 수 있다. 개인의 과거 소득에 따라 기준 소득이 결정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생애 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이 경우 과거의 소득은 평균 임금 성장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기타 방식으로 은퇴 직전 소득이나 최고 소득 년도 등 다른 수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몇몇 국가들은 기준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을 늘렸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애 소득을 사용해 급여액을 산정하지만,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은 다소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체 경력 기간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단, 오스트리아의 경우 1955년 출생 인구집단부터 전체 경력 기간을 고려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그림 1.16)<sup>16</sup>

그림 1.16. 민간 부문 근로자의 기준 임금에 대하여 전체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극히 일부 국가 기준 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연수



주: 오스트리아의 1954년 출생 인구집단에 대한 기여 기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년까지 늘어날 것이다. 1955년 이후 출생 세대의 기여 기준은 전체 생애가 될 것이다.

출처: 한 눈에 보는 연금, 국가별 현황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775>

## 자동 조정 장치

기대수명, 기타 인구통계학적 비율, 재정 상황 등 다양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정책의 표준 수단이 되었다. 자동 조정 장치는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표 1.1) 어떤 경우에는 연금 제도의 일부 구성 요소에만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가지는 전반적 중요성은 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표 마지막 열)

##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는 축적된 연기금으로 연금수급연령 이후의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누적세대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면 발생하는 리스크를 자동으로 연금수급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이 제도에는 연금액 수준을 기대수명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연금수급권을 연금화 할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수명 리스크를 모든 연금 수급자가 공유하게 되더라도 월 급여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불 지급의 경우 해당 개인이 수명 리스크를 모두 감당한다. 수명이 늘어나면 해당 일시불 급여액으로 평균보다 길고 개인에 따라 불확실한 노후 기간의 소비를 충당해야 한다.

9개 OECD 국가는 강제적 FDC 제도를 가지고 있다.(표 1.1, 1열)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FDC 제도에서 보장이 되지만, 추가적인 자동 조정이 없으면 연금급여의 적정성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은퇴를 늦추지 않는 한, 사람들이 같은 연령에 은퇴한다면 급여 수준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은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명이 늘어난 시기에는 미래에 필요한 금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러 수 있다. 따라서 FDC 제도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적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하려면 최소 연금수급연령이나 연금 기여액을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

표 1.1. 강제적 제도의 자동조정, OECD 회원국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 (1)	명목확정기여형 제도 (2)	DB 또는 포인트 제도에서 급여액과 기대수명 연계 (3)	급여액과 재정 균형, 인구통계적 비율, 임금 연계 (4)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연계 (5)	자동 연계에 영향을 받는 대체율의 비중율 <sup>(6)</sup>
호주	●					99.8%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					100%
체코						
덴마크	●				●	100%
에스토니아	●			●	●	100%
핀란드			●		●	100%
프랑스						
독일				●		100%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					71.4%
이탈리아		●			● <sup>2</sup>	100%
일본			●	●		100%
한국						
라트비아	●	●				100%
리투아니아				●		100%
룩셈부르크				●		83.3%
멕시코	●					100%
네덜란드				●	●	100%
뉴질랜드						
노르웨이	●	●				100%
폴란드		●			●	100%
포르투갈			3			100%
슬로바키아	4					
슬로베니아						
스페인			● <sup>5</sup>	●		100%
스웨덴	●	●		●		100%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국가 수	9	5	3	8	6	평균: 51.5%

주: 1. 이상적 사례의 평균소득자를 가정함. 2. 일부 직업군의 경우 2026년까지 유보된 조치. 3. 포르투갈은 지속성 지수를 가지고 있으나 조기퇴직에만 적용됨. 4. 슬로바키아는 강제적 FDC, 자동가입제도, 자발적 연금제도를 번갈아 사용함.(현재 35세가 되기 전에 의무 기여금의 1/3을 포인트 제도로 보낼 것인지, 혹은 FDC 제도로 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5. 2023년 또는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된 조치.

출처: 한 눈에 보는 연금, 국가별 현황.

### 명목확정기여형 제도

NDC 제도는 부과식 연금제도 이지만 급여액 산정은 급여액과 기대수명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FDC의 계산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NDC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액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 중 NDC 제도를 운영하는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5개국을 따라서 이러한 자동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표 1.1, 2열)<sup>17</sup>

그러나 이들 국가는 수급액 조정에 사용하는 명목금리는 다르게 선택한다. 스웨덴처럼 명목금리가 기여자 수의 장기적 경향을 반영하지 않으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균형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아래 참고)

#### *확정급여형 제도의 급여액과 기대수명의 연계*

핀란드, 일본, 스페인은 비교적 최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일부 경우 연금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지속성 지수를 도입했다.(표 1.1, 3열) 지속성 지수는 연금 급여액을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자동 조정 장치다.(OECD, 2017<sup>[10]</sup>) 핀란드와 스페인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최초 급여액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일본에서는 연금 지급액도 영향을 받는다. 포르투갈도 지속성 지수를 가지고 있으나 조기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OECD, 2019<sup>[13]</sup>)

핀란드에서는 62세를 기준으로 남은 기대수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부과식 소득 비례 연금제도의 최초 급여액 수준을 조절했다. 기대수명 상관계수는 은퇴 5년 전 62세 기대 대비 2005~2009년 62세 평균 기대수명의 비율에 따라 최초 연금액을 낮춘다. 기대수명 상관계수는 2019년 0.957이었고, 2064년(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은퇴할 수 있는 해)에는 0.867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에서는 지속성 지수를 통해 은퇴 2년 전에 측정된 퇴직연령의 기대수명을 2012년의 동일 연령에 대한 기대수명으로 나눈 값으로 새로운 연금 급여액을 조절할 계획이었다. 이 조치는 2019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유보되었다. 2023년 이후 지속성 지수의 적용 방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것이다.

일본에서 2004년에 도입한 연금 급여액 조정 장치, 일명 ‘거시경제 연동’은 기여자 수와 기대수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지속성 지수는 기대수명 지수(현재 -0.3%)와 지난 3년간 기여자 수의 증감률(2019년 기준 0.1%)을 합한 값으로 한다. 그러나 이 조정 장치는 디플레이션 시기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에 물가 하락 시기의 급여액 하향 조치를 추후로 이월하는 후속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에는 물가와 임금이 모두 상승하였으므로 거시경제 연동이 적용되었고, 이전 해에 실현되지 않은 급여액 감소가 이월되어 반영되었다.<sup>18</sup>

#### *급여액과 재정 상태, 인구통계적 비율, 임금의 연계*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위 설명과 같음),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급여액이 해당 연금제도의 재정 상태이나, 인구통계적 비율, 임금과 연계된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계에 영향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지속성 지수가 연금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 수의 증감으로 측정된다.<sup>19</sup>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연금의 포인트 가치를 연동하는 데 사용된다.(표 1.1, 4열) 2018년 지속성 지수는 양수였고, 연금액은 0.3% 상승했다. 2020년부터는 지속성 지수가 음수가 되어 2032년까지 연금액이 매년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0</sup> 그러나 조정의 결과로 명목 급여액이 감소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연금 포인트 가치의 기타 요소(임금 상승률 등)들이 양수인 경우에만 지속성 지수로 인한 급여액 하향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은 하향 조정은 동일하게 미래로 이월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연금 포인트의 가치와 기초연금의 가치가 모두 임금의 변화와 연계된다. 명목상 임금이 하락하면(이 경우 기여금도 하락한다) 연금 급여액과 수급액에 연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연금 포인트의 가치가 기여금 수입과도 연계된다.

스웨덴에서는 제도에 포함된 기대수명 자동 연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연금액을 NDC 제도의 균형비에 맞춰 자동 조정한다.(Boulhol, 2019<sup>9)</sup>) 스웨덴 연금기구에서는 명목자산(완충펀드 자산과 기여금 수입의 합)을 부채(누적된 명목 연금수급액과 연금 지급액)로 나누어 균형비를 계산한다. 적자가 확인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며, 명목계정의 축적을 제한하고 연금 지급액의 연동을 줄임으로써 지급 능력을 복구할 수 있도록 명목금리가 임금 상승률 이하로 줄어든다.<sup>21</sup>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면 흑자액은 회복 기간 동안 금리와 연동률을 올리는 데 사용된다. 스웨덴은 불황 기간 동안 브레이크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급격한 조정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스웨덴의 장치는 약간의 조정만으로 거대한 경제적 충격에도 회복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반적으로 규정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도 적립식 확정급여형 제도에 대해 비슷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연금수급액 상향 조정 및 지급액 연동은 기금 적립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심지어 기금이 지속적으로 과소적립 되더라도 연금급여액의 수준은 기금 적립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연기금은 기금 적립률이 110% 이상인 경우에만 급여액과 과거 연금수급액을 명목적으로 올릴 수 있다.<sup>22</sup> 기금 적립률이 110% 미만인 경우 급여액과 연금수급액이 동결된다. 기금 적립률이 5년 이상 104.2% 미만 수준을 유지하면 수급액과 급여액이 삭감된다. 이 경우 기금 적립률은 관련된 삭감을 최장 10년까지 분산시키고 다시 104.2%로 끌어올려야 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연금 지급액이 일반적으로 물가와 임금 모두에 연동된다. 그러나 연간 지출을 기여 기반으로 나눈 값이 24%를 초과하면 연동은 물가 연동으로만 제한된다.<sup>23</sup> 스페인의 경우 2014년부터 총 기여금, 연금수급자 수,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균형을 바탕으로 연금 지급액을 연동해 온 재평가연금지수(IRP)가 유보되었다. 연금 지급액은 CPI 증가율 1.6%에 맞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증가되었다. IRP 산식이 적용되었다면 증가폭은 0.25%에 불과했을 것이다.

####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의 연계

일부 국가에서처럼 미리 결정한 일정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올리는 대신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연계한 국가들도 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여기 해당한다.(표 1.1, 5열) 그리스도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했다. 그러나 기여년수가 40년인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연금액 전액을(즉, 페널티 없이) 수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OECD가 예상한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2세로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는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했으나, 최근 해당 개혁 내용을 번복했다. 슬로바키아는 연계 계획 전체를 취소했고, 이탈리아는 일부 직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보했다.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을 1:1 연계한다. 즉, 65세 도달 시 기대수명(덴마크의 경우 60세 도달 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하면 연금수급연령도 1년 늦춰진다.<sup>24</sup>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에는 필요한 조치일지 모르나, 이는 곧 은퇴 후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더욱 늘어난 기대수명을 모두 근로에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 기간 대비 은퇴 후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탈리아는 기대수명과 조기퇴직에 대한 연금수급 경력기간 조건(남녀 각각 42.8년과 41.8년)을, 그리고 기대수명과 고된 직업군의 종사자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대한 법정 연금 수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자동 연계하는 제도를 2026년까지 유급했다. 덴마크에서는 의회에서 이러한 연계 제도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투표해 결정해야 한다.

핀란드와 포르투갈의 법정 연금수급연령은 65세 도달 시 기대수명의 2/3 값에 따라 증가한다. 스웨덴도 유사한 연계 제도의 시행을 계획 중이다. 핀란드는 이미 은퇴 후 기간과 근로 기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방식을 채택했다. 더불어 포르투갈에서는 40년 이상 기여한 근로자의 경우 기여년수 40년을 초과하는 때 1년마다 4개월 일찍 은퇴할 수 있다. 즉, 기대수명 증가분의 절반만 정상 연금수급연령에 반영되는 것이다.(OECD, 2019<sub>[13]</sub>)

기대수명과 모든 연금 제도가 그 자체로 부과식 확정급여형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첫 번째, 가령 과거의 출산율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은 수명과 관계없이 중요하다. 두 번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액도 증가한다. 그러나 확정 급여형 제도에서 수급액 증가는 보통 계리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증가는 연금 제공자의 순 저축액 창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여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일정하다면 지속가능한 방식의 안정적 기여율로 안정적 대체율을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율을 낮추거나 기여율을 올려 인구통계적 변화의 영향을 상쇄시키지 않는 한,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연금수급연령을 올리지 않는 것은 기여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을 증가시켜 재정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대수명의 불평등은 연금 정책에 복잡한 문제를 안겨준다. 여기서는 정적 고려사항과 동적 고려사항을 구별해야 한다. 뚜렷한 재분배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연금 제도(지급률이 정해진 단순 확정급여형 제도나 공통 사망률 표를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 등)는 일견 중립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 역직전인 제도다. 고소득자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랜 기간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액은 부분적으로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마련한 재정으로부터 나오는데, 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생애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 영향은 기대수명의 사회경제적 격차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클 수 있다.(OECD, 2017<sub>[11]</sub>) 이는 기대수명의 불평등이 연금제도의 재분배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제도에서 연금수급연령 상승은 그 자체로 역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연금수급연령이 1년 늦춰지면 고소득자 대비 저소득 근로자가 은퇴 후 수급하는 총 급여액의 감소분은 훨씬 크다. OECD(2017<sub>[11]</sub>)는 이 효과가 양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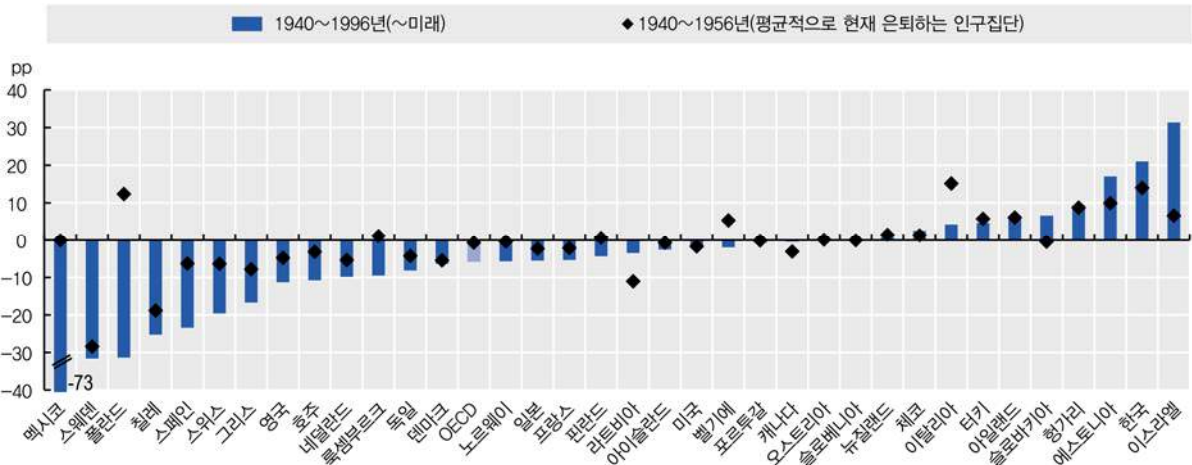
그러나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에 연계하는 것은 주로 전체적 수명 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수명이 증가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이유로 역진적이다.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더 큰 급여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르게 증가하는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올리는 것은 중립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OECD, 2017<sub>[11]</sub>)

따라서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을 연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논하려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의 향후 변화 추이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대수명이 고르게 증가하지 않고 고소득자의 수명이 저소득자보다 크게 늘어나서 기대수명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연금수급연령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대수명 불평등의 추이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된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덴마크와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기대수명의 불평등이 증가했다. 정적 측면과 동적 측면 중 어느 쪽에 집중하든, 최적의 보건 정책을 통해 기대수명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연금대체율의 변화

지난 수십 년간 단행된 연금 개혁은 1940년 출생자와 오늘날 은퇴하는 퇴직자(1956년 출생 인구집단) 간의 OECD 평균 연금대체율을 1%p 소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그림 1.17. 대부분 국가에서 하락이 예상되는 대체율  
이론적 총 대체율 증감, 1940~1956년과 1940~1996년



주: 리투아니아는 1940년 출생 인구집단 자료가 누락되어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OECD(2019[7]).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794>

불러일으켰다.(OECD, 2019[7])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6년 태어나 오늘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더욱 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약 60%의 OECD 국가에서 1996년 출생자들의 완전경력 대체율은 1940년 출생자 대비 낮아질 것이다. 30%의 OECD 국가에서는 높아질 것이고, 나머지 10%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 평균 1996년생의 대체율은 1940년 출생 인구집단보다 5.8%p(즉 10%보다 약간 많이) 하락할 것이다.(그림 1.17)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등과 같이, 대체율이 1940년 출생 인구집단의 대체율은 처음에는 비교적 높았으나 30%p 이상 하락한 국가들도 있다. 멕시코의 기존 확정급여형 제도는 1977년 이전에 태어난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해서 과거소득을 거의 100% 대체하는 높은 연금액을 지급했지만, 현재 확정 기여형 제도는 기여율도 낮고 대체율도 낮다.

스웨덴과 폴란드에서는 NDC 제도를 도입한 결과 해당 연금제도 개혁에 영향을 받은 퇴직자 인구 집단의 대체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이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6%p) 라트비아도 새로운 NDC 연금제도의 영향이 컸으나, 1940년 인구집단은 이미 영향을 받았다. NDC 제도는 구조상 계리적 공평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체율의 하락은 대부분 개혁 이전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불안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NDC 연금제도를 도입한 또 다른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기대 수명에 연계한 연금수급연령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정상 연금수급연령의 대체율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

위에 열거한 국가들에 더불어, 칠레,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에서는 기준 대체율이 15%p 이상 하락할 것이다. 칠레는 복잡한 확정급여형 제도를 낮은 기여율을 기반으로 하는 사적운영의 완전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대체하고, 확정급여형 제도의 누적수급액에 해당하는 연금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을 발행했다. 그리스는 확정급여형 제도의 지급률을 낮추고 기초연금의 연동을 임금성장률 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 변경했다. 스페인은 수명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낮추는 지속성 지수 요소를 2013년에 도입했다.<sup>25</sup> 스위스에서는 기초연금 요소와 연금수급 소득 기준을 평균 임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하여 시간에 지나면서 임금이 비례하여 낮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서는 수명 증가와 낮은 금리로 인해 법적 최소 수익률이 낮아졌다. 이 법적 최소 수익률은 현재

구속력을 가진다.

1940년 출생 인구집단의 대체율이 비교적 낮았던 국가에서는 대체율이 15%p 이상 올랐다. 특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은 연금제도를 확대해 왔다.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는 2000년대에 강제 가입의 적립시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강제가입의 공적 확정급여형 제도를 채택했다.

13개 OECD 국가에서 1940년과 1996년 출생 인구집단 사이의 절대적 대체율 증감 수준은 5%p 미만이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연금 개혁이 비교적 제한적이었거나, 체코, 핀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미국의 경우처럼 연금수급연령의 증가로 1940년 이후 출생 세대에 대한 연금개혁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덴마크, 이탈리아, 터키에서는 대체율 변화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반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유사한 수준의 은퇴 직전 임금 대비 급여액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주석

- 65세 대신 법제화된 규정에 따라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바탕으로 노인부양비를 계산하면 예상 증가량이 줄어든다. (<https://voxeu.org/article/effectpopulation-ageing-pensions>)
- 빈곤의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지표는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심각한 물질적 부족을 겪고 있거나,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t\\_risk\\_of\\_poverty\\_or\\_social\\_exclusion\\_\(AROPE\)](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t_risk_of_poverty_or_social_exclusion_(AROPE)))
-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이는 많은 연금수급자가 누적된 연금액을 정기적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대신, 현재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시불로 인출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국가별로 노인이 보유한 자산(주택 또는 기타 자산)의 차이가 큰데, 이 부분은 소득 빈곤에 반영되지 않았다.
- 현재 적용되는 제한은 경력기간이나 법정 연금수급연령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혁은 본 출판물의 작성 마감일 이후에 상원을 통과했으므로 그 영향은 OECD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혁에 따라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57세에서 65세로, 여성의 경우 52세에서 62세로 늦춰졌다.
- 연금 지급을 중단한 뒤 추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급이 중단된 동안 연금은 계리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 현재 법률에 명시된 목표는 60세 도달 시 기대수명 기준 은퇴 후 보내는 시간을 평균 14.5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덴마크 의회는 매 5년마다 다음 15년에 대한 연금수급연령을 결정하고 표결한다. 덴마크 의회가 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의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현 추정치가 맞다면 법정 연금수급연령은 결국 74세까지 늦춰질 것이다.
-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여성에 대하여 자녀 수를 기준으로 수급 조건을 낮췄다. 가령 슬로바키아에서는 최대 3명까지 자녀 1명에 대하여 반 년씩 은퇴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 덴마크는 최소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림으로써 자발적 제도의 조기퇴직 규정을 제한했다. 가입자들은 법정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 최대 20년(기존 15년)까지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이는 그림 1.10에 제시된 2018년 정상 연금수급연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AFP는 62~70세의 경우 자유롭게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AFP 생애 보완은 은퇴 연령 및 근로소득과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계리적으로 조정된다.
-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기여 기간과 연계되지만 기초 연금액 전액을 받기 위한 최소 기여년수는 5년의 경력단절을 겪어도 도달할 수 있다.
- 기금을 인출한 뒤 탈퇴하는 경우 자산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2019년부터 피고용인은 3%를 지불하고 국가는 1.5%를 더한다. 이 자동가입 절차는 3년마다 반복된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제도를 탈퇴하거나 기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4. 첫 번째, 상장 증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기금 자산의 40%로 설정된 비유동 자산의 투자 한도로 대체되었다. 비유동성 투자의 정의는 비상장 증권의 정의보다 넓으며 부동산 또한 포함한다. 두 번째, 신용도가 낮고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자부 증권에 대한 최소 포트폴리오 할당이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세 번째, 기금 자산의 10%를 외부 관리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금 자산을 책임 있는 투자와 소유 방법을 통해 모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도입되었다. 투자 활동의 전반적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고할 방법에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5. 연기금의 급여액 상향 조정은 기금 적립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금 적립률은 수익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6. 개혁안이 채택되면 프랑스도 이에 따를 것이다.
17. 이탈리아는 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의 예상 합계 지출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은퇴 시 기대수명만을 고려하는 국가들보다 연금 지급액을 낮춘다.
18. 2019년 명목 임금성장률은 0.6%였다. 지속성 지수가 없었다면 연금액은 0.6%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여자 수가 0.1% 증가했고 기대수명 지표는 -0.3%(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고정)이었으므로 지속가능성 요소는 -0.2%(=0.1%-0.3%)였다. 더불어 실현되지 적용되지 않은 급여액 삭감(-0.3%)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었다. 따라서 임금 성장률, 지속가능성 요소, 이월 제도를 고려하면 연금 급여액은 0.1%(=0.6%-0.2%-0.3%) 증가했다.
19. 총 연금 지출을 45 연금 포인트를 받은 사람의 연금액으로 나눈 값, 즉 ‘동등 연금액(equivalent pensions)’에 나타난 연금수급자의 수를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기여자의 수는 ‘동등 기여금(equivalent contributions)’ 측면에서 표현된다. 이 경우 총 기여금을 정확히 1 연금 포인트를 받을 사람의 기여액으로 나눈다.
20.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8: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Thema-Rente/rentenversicherungsbericht-2018.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Thema-Rente/rentenversicherungsbericht-2018.pdf?__blob=publicationFile&v=4)
21. 임금성장률은 균형비 부족분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균형비가 97%이고 명목 임금상승률이 3.275%라면 조정값은 균형비 영향을 미고려한 3.275%가 아닌  $97\% * 103.275\% - 100\% = 0.17675\%$ 이다.
22. 연동과 조정이 기금 적립률을 110%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3. 포르투갈의 경우 연동은 실질 GDP 성장률에 의존한다.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인 경우 지급 연금액은 물가에만 연동된다. 경제성장률이 2%를 초과하면 지급 연금액의 일정 수준은 물가에 실질 GDP 성장률을 더한 값에 따라 연동된다.
24. 네덜란드는 이 연계를 변경할 법률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5. 지속가능성이 2023년까지만 유보된다는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 참고문헌

- [2] Blanchard, O. (2019), *Public debt and low interest rat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http://dx.doi.org/10.1257/aer.109.4.1197>.
- [9] Boulhol, H. (2019), “Objectives and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a universal pension system in Fra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5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a476f15-en>.
- [12] Boulhol, H. and M. Lüske (2019), “What’s new in the debate about pay-as-you-go vs funded pensions?”, in Nazaré, D. and N. Cunha Rodrigues (eds.), *The Future of Pension Plans in the EU Internal Market: Coping with Trade-Offs Between Social Rights and Capital Markets*, SPRINGER, <http://dx.doi.org/10.1007/978-3-030-29497-7>.
- [6] European Commission (2018), *The 2018 Pension Adequacy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5] Lis, M. and B. Bonthuis (2019), “Drivers of the Gender Gap in Pensions: Evidence from EU-SILC and the OECD Pension Model”, *SOCIAL PROTECTION & JOBS DISCUSSION PAPER SERIES*, No. 1917, The World Bank, Washington, <http://www.worldbank.org> (accessed on 26 May 2019).
- [11] Natali, D. (2018), “Recasting Pensions in Europe: Policy Challenges and Political Strategies to Pass Reforms”,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4/1, pp. 53-59, <http://dx.doi.org/10.1111/spsr.12297>.
- [13] OECD (2019),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Portugal*,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13736-en>.
- [7] OECD (2019), *Will future pensioners work for longer and retire on less?*, <https://www.oecd.org/pensions/public-pensions/OECD-Policy-Brief-Future-Pensioners-2019.pdf> (accessed on 19 August 2019).
- [10]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
- [1]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9087-en>.
- [4]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281318-en.pdf?expires=1537791955&id=id&accname=ocid84004878&checksum=D76BA08C04D4C9AC1054F81455A64188> (accessed on 24 September 2018).
- [8] OECD (2016), *OECD Pensions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pens\\_outlook-2016-en](https://dx.doi.org/10.1787/pens_outlook-2016-en).
- [3] Rouzet, D. et al. (2019), “Fiscal challenges and inclusive growth in ageing societie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2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c553d8d2-en>.



부록 1.A1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결정된 연금개혁 개요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호주	2019년 7월, 노령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은 16개월 연속 활동하지 않은 계정에 대하여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 추가적 생명 및 장애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급여액	2018년 7월부터 총 노령연금 잔액이 50만 호주 달러 이하인 가입자는 미사용 혜택(세진)의 기여한도금액을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가입자는 미사용 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생애 소득 상분에 대하여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자산조사규정이 발효된다. 이 규정은 남은 수명보다 저축액이 먼저 바닥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노후소득 상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독신자 양육급여 Parenting Payment Single 제외)에 대하여 근로 보너스(Work Bonus) 소득조사 혜택(연금 소득조사에서 배제된 금액) 금액이 2019년 7월부터 2주에 250 호주달러에서 300 호주달러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소득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최대 누적 제한도 6,500 호주달러에서 7,800 호주달러로 증가했다.	2019년 7월, 법률상 노령연금기금이 잔액이 6천 호주달러 이하인 계정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연간 관리비용은 연말 잔액의 3% 이하로 제한된다.이전에는 비용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음) 제한 범에 따라 노령연금기금은 잔액이 남은 계정이 다른 연금 제공사로 이전될 경우 탈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2019년 7월부터 연금대출제도(Pension Loans Scheme, 2주 간격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자발적 연모기지형 대출)가 호주에 부동산과 자산을 보유한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된 모든 호주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최대 2주 급여(연금액 + 대출) 한도도 2주 최대 연금을 대비 100%에서 150%로 상승했다. 노령연금기금은 비활동 기간 16개월이 지난 잔액 6천 호주달러 이하인 계정을 호주세무서(ATO)로 이전해야 한다. 비활동 계정편장을 받은 ATO는 28일 이내에 이 계정을 동일한 가입자가 가진 활동 계정준제하는 경우)과 결합해야 한다. 결합한 잔액은 6천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계정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ATO는 이 계정을 결합 가능할 때까지 대기하거나 가입자가 65세 이상 또는 계정 잔액이 200 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오스트리아

2019년 7월에는 새로운 자산조사형 보충 제도를 2020년에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여 기간이 30년 이상인 독신 가입자는 적어도 1,315유로를 받을 것이다. 부부의 경우 한 명의 배우자가 40년 이상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과세 및 비용	기타
벨기에	<p>2019년 3월부터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게 새로운 자발적 2층 연금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피고용인 대상의 추가연금제도(Vrij Aanvullend Pensioen voor Werknemers)에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사적연금제도(Pensioenovereenkomst voor Zelfstandigen)가 2018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기여금도 30%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p>	<p>2019년 1월 이후 은퇴하는 개인에게는 연금수급권을 발생시키는 기여년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이전에는 1층 연금의 경우 기여년수가 45년을 초과하면 누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45년 이상 근로하고자 하는 개인은 계속해서 연금수급권을 축적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피고용 근로자와 자영업 근로자에 대하여 학업 기간을 1층 연금수급권에 포함하는 규정이 통합된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점차 통합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실업 기간 동안 누적되는 연금수급권 산정에 사용되는 규정은 변경되었다. 이전까지 이 연금수급권은 실업 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7년부터는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9년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된다.</p>	<p>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기여한 경우 1,782유로를 받는다. 이 규정은 오스트리아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한다. 모든 연금액은 과세 대상이다.</p>	<p>201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보장형 소득보충(CIS) 소득 면제 금액을 3,500 캐나다</p>	캐나다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칠레	<p>2019년 2월, 자영업자에 대한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라 칠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여를 의무화하고 기여율을 2018년 기준 10%에서 2028년 17%까지 올리게 된다. 자영업 근로자의 순 소득이 받게 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한다. 기본 옵션: 전체 사회보장제도(보험, 의료보험, 연금)에 기여한다. 보형과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율은 일정하며, 연금 기여율은 총 기여율과 함께 상승한다. 대안 옵션: 의료보험과 연금에 대해서는 낮은 기여 기반을 토대로 기여한다. 이 수치는 향후 9년간 과세소득의 5%에서 2027년 과세소득의 100%까지 차츰 증가한다.</p>	<p>2017년 6월, 정부는 연금수급자 가구의 소비지출가 증가율, 또는</p>		<p>달러에서 5,000 캐나다 달러로 높이고 이를 자영업 소득에도 적용한다. 그리고 자영업 소득의 5000캐나다 달러 이상의 추가적 10,000 캐나다 달러에 대해 부분적 면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p>		
체코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과세 및 비용	기타
<p>모든 가구의 소비자들이 증가할 중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연동 산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018년부터 적용)</p> <p>2018년 8월, 연금 연동에 따라 연금액 중 보편적 기초 금액(정액)을 국가 평균 임금의 9%에서 10%로 올리고 연동 대상 85세 이상 인구 전체에게 특별 보너스 1000로루나 (약 38유로)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적용)</p>					
덴마크	<p>2017년 12월, 2018년 1월부터 자발적 노령저축 계정의 가입자들은 법정 정상 가입자들은 법정 정상 연금수급연령보다 최대 3년(기준 5년) 먼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으며, 법정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부터 최대 20년(기준 15년)까지 급여액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계획 지급(programmed payment)을 선택한 가입자는 법정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부터 최대 30년(기준 25년) 이후에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p>	<p>2018년 5월 1958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개인이 국가 연금액 잔액을 2018년 7월 이후 수급하려면 15세부터 법정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 중 90% 이상(기준 40년)을 덴마크에서 거주해야 한다.</p>	<p>2017년 12월, 2018년 1월부터 자발적 노령저축 계정에서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 5년 이상 남은 가입자의 기여 한도는 5,100크로네, 2019년 1월부터 연금액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벌 수 있는 소득이 6만 46,000크로네이다. 기존 한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29,600크로네였다.</p>	<p>2017년 12월, 2018년 1월부터 자발적 노령저축 계정의 소득은 공적 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9년 3월: 2019년 1월부터 연금액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벌 수 있는 소득이 6만 46,000크로네에서 10만 크로네로 증가한다. 또한 배우자가 가입자의 연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벌 수 있는 소득도 증가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p>	<p>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p>
에스토니아	<p>2018년, 2027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이 기대수명과 연계된다. 탄력적 은퇴 개념을 통해 근로를 계속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 연금수급연령 전에 가입하는 자발적으로 기여한다.</p>	<p>2018년, 1970~1982년 출생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자발적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는 자발적으로 기여한다.</p>	<p>2018년, 2021년부터 소득비례 연금 산식에 세 요소가 추가된다. 2021년 이후 연금 산식의 네 번째 부분, 즉 복합부분(compound part)이 도입된다. 복합부분은 두 번째</p>	<p>2018년, 2019년 9월부터 2층 연금의 관리 비용 최대 한도가 2%에서 1.2%로 감소한다. 연금은 선택에 따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2018년, 2019년 5월부터 스스로 자발적 연금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디폴트 자발적 연금제도는 75% 이상이 주식에 투자되는 최저 수수료의 3개 연금이다. 연금의 주식 한도는</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p>은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나중에 재개할 수도 있다. 지급이 중단된 연금 지급액은 계리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증가한다. 연금 절반을 나중에 수령하면 미래의 연금 지급액이 높아진다. 탄력적 연금의 개념은 2021년 적용된다.</p>	<p>부분과 세 번째 부분(서비스 기간과 보험 요식)을 결합한 것이다.</p>			<p>2018년 1월, 국가 연금의 연동이 동결되었다. 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은 월 15.01유로 상승했다. 2019년 1월 국가 연금의 연동 동결은 지속되고 있으나 보장연금은 월 9.25유로 올랐다. 2019년 6월,</p>	<p>2019년 1월 장애인 수급자의 소득 한도가 최저연금만을 수급하거나 연금 수급 전 소득이 매우 낮았던 경우에 대하여 월 50유로 상승되었다. 지금까지 소득이 보장연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p>	<p>75%에서 100%로 증가할 것이다.</p>
<p>핀란드</p>						
<p>프랑스</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p>사이에서 약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1월 1일에(2015년 결정) 퇴직연금인 AGIRC 및 ARRCO 제도가 통합되면서 그 이후에 수급하는 연금에는 연금 포인트 계산에 쓰이는 단일 계정이 존재한다. 통합으로 인해 모든 ARRCO 포인트는 AGIRC-ARRCO 포인트가 되었는데, 가치의 변화는 없다.(1 ARRCO 포인트 = 1 AGIRC-ARRCO 포인트) AGIRC 포인트는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AGIRC- ARRCO 포인트로 전환되었다.(1 AGIRC 포인트 = 0.347791548 AGIRC- ARRCO 포인트)</p>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독일	<p>2017년, 2018년 1월부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단체 협약 과정에서 동의하는 경우 최소 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확정기여형 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2월, 2019년 7월부터 금액(기여금, 열 참조)으로 연금수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부분적 수급만 가능했다.</p>	<p>2017년, 연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포인트 가치와 기타 매개변수 (현재 서독보다 동독에서 낮음)는 2025년부터 통합 수렴될 예정이다. 2018년 12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노령연금의 목표 대체율이 평균 근로자 소득의 48%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연금 포인트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이 값은 2020년까지 46%, 2020~2030년에는 43%로 설정되었다.</p>	<p>2018년 12월, 2019년~2025년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전체 기여율이 보장 소득의 20% 이상 상승하거나 18.6%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 2019년 7월부터 소득이 450~1300유로인 피고용인은 사회보험 기여금이 감액된다. 이 기준은 이전에 450~850유로였다.</p>	<p>2018년 12월,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추가 연금 포인트가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2018년 12월, 2019년 1월부터 소득 능력의 감소로 인한 연금 보충액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65세 8개월까지 연장된다. 이후에는 표준 연금수급연령(2031년 67세까지 단계적 상승 예정)에 따라 증가한다.</p>		
그리스 헝가리			<p>15.75%였던 고용주의 연금보험기금 기여율이</p>	<p>2018년부터 자산조사형 급여액이 일반 연금</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아이슬란드			2018년 1월에는 15.50%로, 2019년 1월에는 13.68%로, 2019년 7월에는 12.29%로 줄어든다. 2018년 7월, 민간 부문 고용주가 강제적 퇴직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기여율이 피고용인 총 소득의 8%에서 11.5%로 올랐다.	조정률에 따라 오른다. 이전까지 자산조사형 급여액은 최저 노령연금을 바탕으로 했다. 2018년 1월, '절반 수급(half-and-half)' 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50%를 수급하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노령연금 전액의 50%를 소득조사 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수급자의 연간 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소한다.		
이탈리아	2019년 1월, 조기퇴직 조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까지 조기 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수급의 경력기간 조건(남성 42년, 10개월)과 기대수명 사이의 연계가 유보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령과 기여년수의 합이 100 이상인 사람은 은퇴가 가능하다. 가장 빠르게 은퇴할 수 있는 경우는 38년 기여하여 62세에 은퇴하는 것이다. 58세에 도달한 피고용 여성은 기여년수가 35년이 되고 12개월 후 은퇴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women's	2019년 6월, 연금 지급액에 대한 연동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제 연동은 최저연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의 변화를 100% 반영하며, 최저연금의 최대 4배에 달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97% 반영, 최저연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77% 반영, 최저연금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52% 반영, 최저연금의 최대 8배에 달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47% 반영, 최저연금의 최대 9배에 달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2019년, 이탈리아 정부는 노인을 위한 자산조사형 안전망 급여 수준을 올리면서 기존 노인 안전망 급여(일명 assegno sociale)에 더하여 소위 시민연금을 도입했다.	2019년, 이탈리아 정부는 노인을 위한 자산조사형 안전망 급여 수준을 올리면서 기존 노인 안전망 급여(일명 assegno sociale)에 더하여 소위 시민연금을 도입했다.	2021년부터 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수명 증가율의 산정 방식이 수정되어 최대 증가율을 3개월까지로 제한한다.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p>option)에 따라 연금 산정은 급여액의 9배 이상에 해당하는 계리적으로 조정하는 NDC 규정을 전적으로 따르게 된다.</p> <p>2019년부터 2026년까지 19세 이전에 12개월 이상 기여했고 기여년수가 41년을 넘는 개인은 은퇴할 수 있다.</p> <p>2026년까지 연금수급연령과 연금수급 경력기간 조건 및 기대수명의 연계는 고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보되었다.</p>	<p>2019년 5월, 피고용인 연금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인의 의존 배우자(3분류 유형 보장 대상)를 2020년 4월부터 일본 내 거주자로 제한한다.</p>	<p>45% 반영, 최저연금의 9배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40% 반영한다.</p>	<p>기여금</p>	<p>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p>	<p>과세 및 비용</p>	<p>기타</p>
<p>일본</p>	<p>2019년 5월, 피고용인 연금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인의 의존 배우자(3분류 유형 보장 대상)를 2020년 4월부터 일본 내 거주자로 제한한다.</p>	<p>45% 반영, 최저연금의 9배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생애 비용' 지수를 40% 반영한다.</p>	<p>기여금</p>	<p>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p>	<p>2018년 3월, 2020년 4월부터 고소득 연금수급재연금소득 1천만엔 이상에 대한 연금소득 삭감에 한도를 설정했다. 고소득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1천만엔 이상)의 소득 삭감을 줄였다.</p>	<p>기타</p>
<p>한국</p>	<p>2018년 10월부터 사회보장기여금 임금 합계의 실질적 증가분 대비 더욱 높은 비율이 장기 보장 노령연금에 적용된다. 즉, 보장기간이 30~39년의 경우 위험 직종이나 고된 직업군, 또는 특별 위험 직종이나 고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금액에도 60%가 적용된다. 보장 기간이 40년 이상이면 70%가</p>	<p>2018년 10월부터 사회보장기여금 임금 합계의 실질적 증가분 대비 더욱 높은 비율이 장기 보장 노령연금에 적용된다. 즉, 보장기간이 30~39년의 경우 위험 직종이나 고된 직업군, 또는 특별 위험 직종이나 고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금액에도 60%가 적용된다. 보장 기간이 40년 이상이면 70%가</p>	<p>기여금</p>	<p>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p>	<p>과세 및 비용</p>	<p>기타</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과세 및 비용	기타
<p>연금수급연령</p>	<p>보장범위</p>	<p>급여액</p>	<p>기여금</p>	<p>과세 및 비용</p>	<p>기타</p>
<p>리투아니아</p>	<p>2018년 6월, 2004년에 도입된 자발적 적립식 연금제도가 40세 이하 피고용인의 자동가입제도로 변경된다. 피고용인은 탈퇴 또는 일시적 기여 유보를 선택할 수 있다. 자동가입절차는 3년마다 반복된다. 총 기여율은 국가 1.5%, 피고용인 3%이다.</p>	<p>적용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보장기간이 45년 이상인 노령연금에는 사회보장기여금 임금 합계의 실질적 증가분 대비 80%(기준 70%)가 적용된다. 2018년 7월 1일 기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되었다면 1995년까지(NDC 도입 이전) 보장되는 각 보험년도의 보충 금액은 15유로(기준 유로)이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노령 및 장애연금에 대한 보충 금액은 실질 소비지출가지수 및 사회보장기여금 임금 합계, 실질임상분의 50%에 연동된다. 2019년부터 유족급여가 도입되었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개월간 의 연금에 대한 보충 금액을 포함하여 사망자의 연금 50%를 수급할 수 있다.</p>	<p>2018년 6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월 급여 3%에서 15%로 줄어들고 피고용인 기여율은 월 소득 9%에서 19.5%로 상승한다. 기여금 부과 소득의 한도가 되는 연간 보장소득은 2019년의 경우 전년도 평균 월 임금이 120배, 2020년 은 84배, 2021년은 60배로 설정되어 있다.</p>	<p>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p>	<p>기타</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룩셈부르크	2019년 1월, 원래 특정한 임금 소득자만 가입 가능했던 자발적 보충 연금제도가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다. 임금 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동등한 제도 규정 적용을 위해 재정적, 사회적 프레임워크가 수정되었다.					
멕시코				2019년 1월, 멕시코는 68세 이상 인구(원주민의 경우 65세 이상)에 대하여 보편적 연금제도 (Programa Pensión para el Bienestar de las Personas Adultas Mayores)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1,092페소 이상의 기여형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68세 이상 노인을 위한 선별적 노령 사회보조프로그램 (Programa de Pensión para Adultos Mayores, PPAM)을 대체하게 되었다. PPAM을 받던 65~67세 가입자는 자동으로 신규 보편적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최저연금 소득조사를 제거하여) 2018년 PPAM 기준 550만 명이었던 대상자를 2019년 850만명으로 늘리고 급여액 수준을 PPAM 대비 120% 가까이 크게 올리는 것이다.	2018년 11월 이후 재정적 시안에 관한 예산총칙에서는 연금인위험관리 정책 및 투자전략에 ESG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네덜란드	2019년 6월, 공적연금(AOW)의 연금 수급 연령 증가 속도가 감소하여 2021년이 아닌 모든 피고용인에 대하여	2019년 5월, 2021년 1월일부터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을 제공하는				2019년 1월, 연금제공시는 2유로 이상, 474.11유로 미만의 연간 연금액을 누적인 사람의 총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2024년까지 67세에 도달할 것이다.	(장규직과 비교하여) 적절한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기여금을 고용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다른 연금제공사에 이전할 수 있다. 더불어 고용주는 2유로 미만의 연금수급권을 가진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2019년 1월부터, 뉴질랜드, 쿡 제도, 니우에, 토켈라우 중 어디에서 거주하던 '50세이후 5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전에는 뉴질랜드 거주만 가능했다. '20세 이후 10년' 거주 조건은 여전히 뉴질랜드 거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9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는 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4월부터 키위세이버 제도의 기여율을 (기준의 3%, 4%, 8%에 더해) 6%와 1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노르웨이	2017년 11월, 자발적 세금우대 개인연금 저축 제도가 2008년 도입된 유사 제도를 대체했다. 새 제도에 따라 가입자들은 연간 최대 4만 크로네(기준 1만 5천)를 기여하고 소득세 감면(2018년 기준 9,200 크로네까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자본수익 세금이 면제되며 계정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일반소득세가 적용된다.	2019년 1월, 1963년 이후 출생의 공공 부문 피고용인을 위한 새로운 계약상 조기퇴직제도(AFP) 규정이 도입되었다. 62~66세 사람을 위한 조기퇴직 제도였던 공공 부문 AFP 제도는 민간 부문에 맞추어 노령연금에 대한 평생 보충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AFP는 여전히 62~70세에 대하여 평생 보충액의 계리적 조정과 함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 부문에서 처럼 근로 소득과 결합할 수 있다.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또한 AFP는 급여 결정에 있어 민간 부문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계리적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급여액은 은퇴 이전 년도해 소득이 아닌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폴란드	2019년 1월, 피고용인 자본계획(Employee Capital Plans)이라는 새로운 확장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법은 단계적으로 기업에게 적용될 것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직원 250명 이상 규모의 기업, 2020년 1월부터는 50~249명 규모 기업, 2020년 7월부터는 20~49명 규모 기업, 2021년 1월부터는 1~19명 규모 기업 및 공공 재정 부문에 적용될 것이다.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최소 기여율은 피고용인이 2%, 고용주가 1.5%이다. 추가 수익연금 240 즈워티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 단위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의 경우 의무이며 피고용인은 자동가입된다. 새로운 법률은 1,15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월 e-기여 도입. 기존의 3, 4회에 걸친 납입 대신 ZUS로 한 번에 송금한다.	2019년 3월, 최소 연금액을 1,100즈워티로 올리고 최소 급여액의 70 즈워티 상승을 보장. 2019년 3월,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어떠한 추가 조건 없이 최저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19년 5월, 2019년 모든 연금수급자에 대해 1,100즈워티 수준의 일시 급여액 제공.			
포르투갈	2017년 10월, 48년 이상 기여하거나 14세 이전에 연금 가입대상의 근로를					2018년 12월, 2019년 1월부터 특별 보충액(현금으로 매월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p>시작하여 46년 이상 기여한 사람은 60세에 연금액 전액을 받고 조기퇴직 가능. 2018년 10월, 연금액 전액을 수급하는 60세 조기퇴직이 16세 이전에 연금이 보장되는 근로를 시작하여 46년 이상 기여한 사람에게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페널티 없는 조기퇴직은 48년 이상 기여하거나 14세 이전에 연금가입대상의 근로를 시작하여 46년 이상 기여한 사람만 가능했다. 2018년 12월, 60세에 40년을 기여한 사람의 경우 지속성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는 63세에 조기퇴직이 가능해졌다. 2019년 10월부터 이 제도는 60세 인구에게도 확대된다.</p>	<p>2019년 3월, 최대 퇴직 연령을 64세로 하는 법안이 2019년 3월 28일 의회 통과. 2019년 7월 1일에 발효.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 한 명당 페널티 없이 6개월(총 최대 18개월) 일찍 은퇴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퇴직연령은 노동사회가족부의 재량에 따라 최대 64세까지 올라갈 것이다. 퇴직연령은 64세로 상한된 후 추가적인 상향조정은 없을 것이다.</p>	<p>2019년 4월, 노령 안전망 제도(물질적 필요 지원, AMN) 급여수준이 5% 증가했다. (주택수당 제외) 또한, 안전망에 대한 정기적 연동이 신설되었다. 연동은 최저생활수준 연동에 사용되는 상관계수(임금성장률 또는 저소득 가구의 CPI 중 낮은 지표)에 맞추어 1월부터 증가할 것이다.</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슬로베니아				<p>2017년 10월, 연금장애보험법(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Act) 개정안을 통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최저액을 500유로(2019년 530.57유로)로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현재 법률에 따라 법적 연금 대상의 서비스 전체에 대하여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관련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최저액이 적용된다.</p>		
스페인		<p>2018년 연금 지급액 연동에 사용되는 재평가연금지수(RPI)가 유보되었다. 대신 연금은 2018년, 2019년 모두 CPI에 맞춰 1.6% 상승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되어 기대수명에 따라 최초 연금액을 조정할 예정이었던 지속성 지수는 2023년까지 유보되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대체율이 규정 기준의 52%에서 56%로 상승했다. 대체율은 2019년 1월 다시 4% 올라 60%에 도달했다. 두 차례의 대체율 상승 모두 기타 소득이 없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p>	<p>2018년 연금 지급액 연동에 사용되는 재평가연금지수(RPI)가 유보되었다. 대신 연금은 2018년, 2019년 모두 CPI에 맞춰 1.6% 상승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되어 기대수명에 따라 최초 연금액을 조정할 예정이었던 지속성 지수는 2023년까지 유보되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대체율이 규정 기준의 52%에서 56%로 상승했다. 대체율은 2019년 1월 다시 4% 올라 60%에 도달했다. 두 차례의 대체율 상승 모두 기타 소득이 없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p>	<p>2018년 2월, 금융 기관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관리비용 및 수수료는 낮아졌으며, 대부분의 연금제도에서 조기 인출이 가능해졌다.</p>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스웨덴 2019년 6월. 고용보험(IAS)의 최대 연령 상한이 2020년 1월 기준 67세에서 68세로 늘어난다. 이 연령은 2023년 1월까지 69세로 증가할 것이다.				2019년 10월 보장연금이 월 200크로나 증가한다 주택 보증액의 주택 비용 수준은 기존 5,000 크로나에서 2018년 5,600 크로나로 상승했고, 2019년에는 월 7,000 크로나로 올랐다. 주택 보증액 계산 시 모든 소득은 균등화된다. 주택 보증액 지급 시연 24,000크로나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에 대하여 자유소득구간 (free income area)이 신설된다. 모든 변경 사항은 2019년 12월부터 적용된다.	2018년과 2019년에 연금소득세가 인하되었다.	2018년 9월, 스웨덴 연금기구는 PPM 기금 규정을 강화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히 PPM 외 기금 5억 크로나와 최소 3년의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금은 PPM 플랫폼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2019년 1월, 553개 기금이 남았고 269개 기금이 제외되었다. 또한, 주요 연금 완충펀드 4개에 대한 투자 규정이 변경되었다. 1) 비유동성 자산의 한도가 포트폴리오 자산의 5%에서 40%로 상향되었고, 완충펀드는 한도 유지를 위해 고정 투자를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2) 이자부 증권에 대한 최소 포트폴리오 할당이 30%에서 20%로 감소했다. 3) 기금 자산의 일정 비율을 외부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4) 완충펀드가 다양한 약조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포트폴리오의 예상 실적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도입되었다. 2017년 10월, 연봉이126,900프랑(최대 연간 사회보장연금액의 4.5배)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e' 연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에
		총 소득에 대한 AVS 기여금이 2020년까지 0.3%로 상승한다. 또한 AVS 연금 재정에 대한 위한 보조금이 총 수입 대비 19.5%에서 20.2%로 오른다.				
						스위스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타기		2018년 5월, 두 차례의 종교 연휴에 앞서 1천 리라씩, 매년 총 2천 리라의 연휴 보너스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신세대 인센티브(New Generation Incentive): 전년도에 가입한 평균 직원 수보다 직원을 더 고용한 민간 부문 고용자에게 세금 지원 및 보험료 지원이 2018~2020년 사이에 제공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직원 1명당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여성, 18~25세 청년, 장애인의 경우 지원 기간이 18개월이다. 2018년 3월, '하나씩 제도(1 from me, 1 from you)':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제조업 부문 영세 중소기업에게 프리미엄 지원, 세금 지원, 임금 지원이 제공된다. 2017년 청년(18~25세)을 포함한 1~3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제조업 부문 고용주, 추가적 청년 고용으로 인한 비용은 매달 정부와 고용주가 번갈아 제공한다. 2018년 5월, 청년 창업가 인센티브: 18~29세 청년이 자영업자로 처음	2017년 4월, 2019년에 대해 소득조사 조건이 폐지되고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76.75리라(개인 기여율: 최저임금의 3% =2668.40* 0.03=76.75리라) 2019년 2월, 2019년 1월 결정 이후 1000리라 미만이었던 연금액이 1000리라로 지급되었다.	과세 및 비용	따라 1e 제도를 지원하는 기업은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마련하고 제도 가입자의 투자 리스크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된 제도 설계에 따라 강제적 이자 보장 조건이 사라지고 제도 지원사에 대한 전체적 연금 부채가 감소한다. 2018년 1월,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연금 제공사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이전에는 한 자산관리회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연금 제공사는 매년 첫 2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의 순 가치를 기준으로 전년도 말 순 가치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활동 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2018년 8월, 해외에서 근로하는 국민에 대한 공제 조건(해외 보험 기간의 공제)이 변경되었다. 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기여율은 32%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다. 공제일은 피고용인의 지위에 영향을 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영업으로 간주된다.

연금수급연령	보장범위	급여액	기여금	최저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조사	과세 및 비용	기타	
			근로하면 정부가 연중 보험료를 제공한다. 2019년 1월, 최저임금 지원: 2019년, 500명 이하의 기업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보장당 150리라, 500명 이상 고용 기관에게 가입인원 1명당 10리라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국				2018년 2월/4월, 확장기여형 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사용하는 각 기금의 비용 및 거래 수수료를 공개하고, 시간변화에 따른 비용의 구성, 디폴트 기금의 전략, 제도의 금액 가치 평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9월/2019년 10월, 확장기여형+ 확장기여형 제도가 이후 변화 등 ESG 고려사항의 대처 방법, 연금제도 투자의 책임성, 가입자의 의견 반영 방법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확장기여형 제도는 이 내용과 기타 정책을 공개하고 매년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한다. 신탁 관리자에게 제도의 복잡성과 리스크 프로필에 걸맞는 효과적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금법 2014를 2018년 10월 23일 개정했다. 관리 체계를 검토의 일환으로 각 제도는 자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기록해야 한다.			
미국							



## 제 2 장

# 비표준 노동과 연금

이 장에서는 OECD 국가의 비표준 노동에 대한 연금 제도를 살펴본다. 비표준 노동자는 기한 없는 전일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 즉 시간제나 기간제, 자영업자, 특히 새로운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는 노동 등으로 정의된다. 이 분석에서는 먼저 비표준 노동자의 관련 특성을 설명하고, 관련 연금 문제와 비표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연금 규정을 살펴본다. 그 다음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춰 더욱 포괄적인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논한다. 이 글은 근로의 미래(Future of Works)와 사회적 보호의 미래(Future of Social Protection)에 초점을 둔 보다 폭넓은 OECD 연구 경향에 부합한다.

## 서론

비표준 노동은 다양한 직업을 포괄하는 큰 범주의 용어이다. 비표준 노동자는 혼자 일하는 독립 계약업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시간제로 일하는 피고용 근로자, 기간 계약직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한 명의 고용주 아래 기한 없이 전일제로 일하는 표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기타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OECD, 2019<sup>[1])</sup> 비표준 노동의 유형에 따라 종류, 근로 환경, 고용 보장, 사회적 보호 규정은 경우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그만큼 비표준 노동자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렵다.

여러 유형의 비표준 노동은 전반적인 사회적 보호, 그리고 특히 연금 보호 측면에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OECD(2019<sup>[1])</sup>, 제7장) 몇몇 OECD 국가에서는 모든 혹은 일부 유형이 자영업자는 피고용 근로자가 경우 의무가입 하는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노후 소득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표준 근로자와 같은 연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국가들도 있다.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관련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 자동화, 인구적 변화는 노동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비표준 노동이 확대될 수도 있다. 미래의 노동시장이 어떤 모습일지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비표준 노동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가는 반드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 시장은 빠르게 바뀌지만 특히 연금 영역의 정책 대응은 그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은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미래 연금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새로운’ 근로 형태란 플랫폼 노동, 초단기간 계약, 일명 ‘0시간(zero-hour)’ 계약, 즉 정해진 근로 시간이 없고 고용원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직종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약의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근로 방식을 조절할 수 있지만 고용 안정과 소득은 낮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각국 정부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위한 연금 보호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계약에서는 근로자가 어디까지 자영업자이고 어디까지 피고용인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련 업무도 존재한다. 새로운 근로 형태는 현재 전체 고용의 일부만을 차지하지만, 향후 더 많은 근로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유형을 합치면 비표준 고용은 OECD 회원국 전체 고용의 1/3 이상을 차지한다.(섹션1) 많은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비표준 고용을 유지한다. 비표준 노동자들은 표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고, 실업의 위험이 높고, 연금 기여를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게다가 비표준 노동자는 연금 제도의 포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저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OECD 국가의 비표준 노동자들을 위한 연금 구성상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본다. 섹션2에서는 비표준 고용의 노동시장 경향을 요약하고, 이러한 상황이 독립적 경향이 아님을 보여준다.

섹션3은 비표준 노동이 연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아보고 다양한 유형의 비표준 노동이 야기하는 여러 과제에 주목한다. 섹션4에서는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규정을 확인하고,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분류해 본다. 섹션5는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섹션6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 비표준 노동의 경향과 특징

###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표준 노동

전일제 피고용인의 근로는 기한 없는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표준 고용으로, 가장 널리 퍼진 형태의 근로인 반면 비표준 노동자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독립적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OECD 회원국에서는 2017년 기준 노동자의 약 15%가 자영업자였고, 피고용인의 13%와 15%가 각각 기간 계약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무)였으며 그 중 절반은 근로 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였다. 일부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 기간제 계약 고용의 시간제 근로자에 속하는 등 비표준 노동의 여러 특징을 지니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비표준 노동은 OECD 회원국 총 고용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 시간제 근로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시간제 근로는 지난 수년 사이 증가세였다. OECD 회원국 중 약 2/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모든 피고용 근로 대비 시간제 근로의 비중율은 20년 전보다 증가했다.(OECD, 2019<sup>[11]</sup>) 단시간 근로(주 20시간 이하)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13개국에서 1985년과 2005년 사이 피고용 근로의 6%에서 9%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증가세는 여러 요인에 근거하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 증가, 생활 방식의 변화, 노동 수요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2/3은 스스로 시간제 근로를 택했으나, 나머지 1/3은 더욱 오래 일하는 것을 선호하여 과소고용 되었던 것을 뜻한다.(OECD, 2019<sup>[11]</sup>) 과소고용의 범위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체코, 에스토니아, 일본, 헝가리, 터키의 경우 과소 고용은 피고용 근로의 2% 미만이지만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10% 이상이다. 2006년과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2/3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과소 고용은 피고용 근로 중 평균 4.3%에서 5.4%로 증가했다. 과소 고용의 증가는 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이 큰 국가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일시적 변동과 높은 순환적 실업이 전적인 원인이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기간제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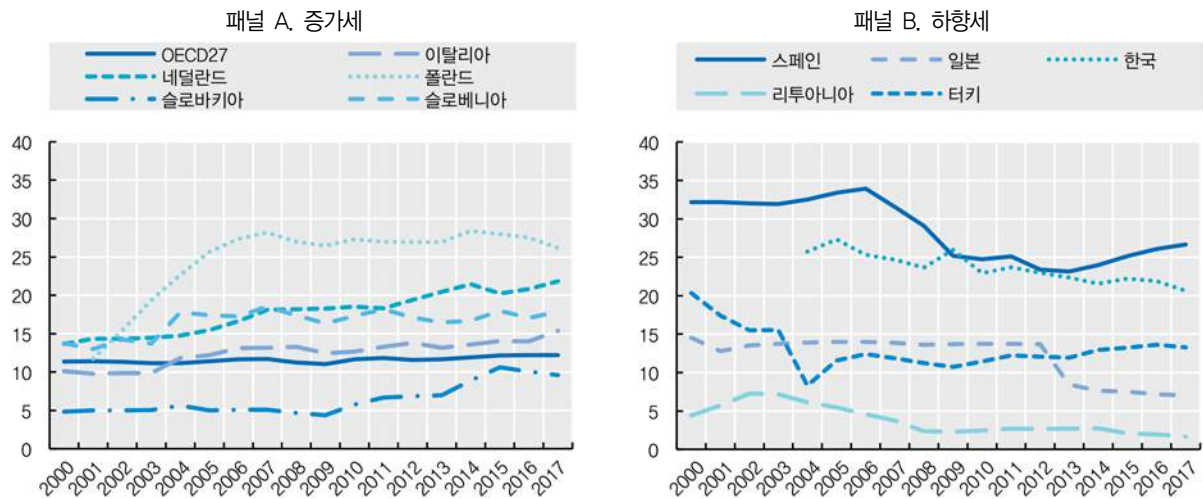
기간제 고용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OECD 14개국에서 기간제 고용은 피고용 대비 1980년대 중반 10% 수준에서 2000년 13%, 2017년 14%로 상승했다. 범위를 넓혀 27개 OECD 국가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11%였던 비율이 12%로 평균 1%p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기적 경향은 점진적 발전과 빠른 변화에 기인한다.

폴란드에서는 2001~2007년 사이 상당한 경제 성장과 함께 기간제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고용의 12%였던 기간제 고용은 28%까지 증가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2.1, 패널 A)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처럼 두드러진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대로 스페인에서는 20년 동안 기간제 고용이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6년 34%에서 2009년 26%로 떨어지기도 했다.(패널 B) 터키와 일본에서도 비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리투아니아의 기간제 고용은 2002년 7%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08년 2%로 떨어져 이후 다소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간제의 증가세는 근로 기간의 감소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노동인력의 연령 구조 변화에 맞춰 조정했을 때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OECD 회원국에서 평균 근로 기간은 5%, 즉 약 5개월 가량 감소했다. 특히 저학력 노동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OECD, 2019<sup>[11]</sup>)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은 지난 20년 사이 평균 근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주로 초단기나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Pries and Rogerson, 2019<sup>[21]</sup>) 하지만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근로 기간과 기간제 계약의 사용이 같은 방향성을 띠며 진행되었다.(OECD, 2019<sup>[11]</sup>)

그림 2.1. 국가별 기간제 고용의 변화  
선택된 OECD 국가의 총 고용 대비 기간제 고용, 2000~2017년, 피고용 대비 비율



주: 변화가 뚜렷한 국가를 선정함.  
출처: OECD 노동력 통계(Labour Force Statistic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813>

### 자영업

전체 고용 중 자영업의 비율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 평균 17%에서 15%로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장기적 변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경향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상당한 축소가 나타났고, 독립적으로 일한 농업 종사자 중 많은 수가 직업을 변경하고 피고용인이 되었으며 분야를 옮겨간 경우도 많았다. 반면 언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로 원격 협력이 촉진되어 기존의 제공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자유롭지만 비교적 보호를 덜 보장받는 프리랜서 계약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자영업 비중의 감소는 특히 헝가리,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경제적 성장이 상당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등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총 고용 대비 자영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어떤 경우에는 네덜란드(Milanez and Bratta, 2019<sup>[3]</sup>)와 이탈리아(아래 박스 2.1)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하처럼 부분적이거나 증가세를 설명할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했다.

## 변화를 겪는 비표준 노동

비표준 노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농업을 포함해 일부 형태의 자영업 감소는 플랫폼 기반 유사 택시 운전자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직업처럼 새로운 형태의 비표준 노동의 등장과 확대로 일부 상쇄되었다. 현재 이러한 노동은 선진국의 경우 총 고용의 0.5~3%에 불과하나, 중장년층보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형태의 근로에 더욱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일부 젊은 층들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가 갖는 근무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OECD, 2019<sub>[11]</sub>)

새로운 근로로 인해 피고용 근로와 자영업 사이의 경계는 더욱 흐려졌다. 가령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재정적 독립성이 부족하며, 근무 일정 등 근로 조건을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용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OECD 평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16%는 한 명의 주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율은 덴마크의 6%부터 슬로바키아 29%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OECD, 2019<sub>[11]</sub>) 고객이 한 명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라는 분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로자 중 ‘거짓 자영업자’가 많을 위험성이 있다. 연금 기여금,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기여금은 피고용 노동자보다 독립 근로자의 경우 훨씬 낮게 납부하기 때문에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 발생하고 일부 고용주들은 피고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업무 외청을 통해 인건비를 낮추려 할 수 있다. (Milanez and Bratta, 2019<sub>[31]</sub>)

새로운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업무 등 과거 공식적 고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재택 활동을 공식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은 현재 사용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독립 계약자들의 근로 시간과 실제 소득을 기록하고 신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연금 기여금 기반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근로 공식화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업적 재택 생산과 구별 짓는 것은 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플랫폼에서 특정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포인트, 상품, 암호화폐 등을 사용하여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Mineva and Stefanov, 2018<sub>[41]</sub>)

피고용 근로의 경우에도 새로운 형태의 근로가 지난 20년 사이 등장하여 확대되고 있다. (OECD, 2019<sub>[11]</sub>)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근로에서 위험은 고용주에서 피고용인으로, 혹은 다른 대상에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파견 업체의 경우,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사용 기업에 배정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과 달리 고용 계약이 존재하지만 고용주의 역할은 파견업체와 실제 기업이 분담하게 된다. 호출 근로나 0시간 계약은 근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월 소득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계약은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일부 OECD 국가에서 존재한다.

## 비표준 노동은 65세 이상 노인과 여성에게서 더욱 흔하다

비표준 노동은 노인 근로자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비표준 노동의 비율은 특히 65세 이상 근로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65~74세 근로자 중 표준 고용의 경우는 약 15%에 불과한 반면 55~64세와 25~54세의 경우 표준 고용의 비율은 60% 이상이다. (그림 2.2, 패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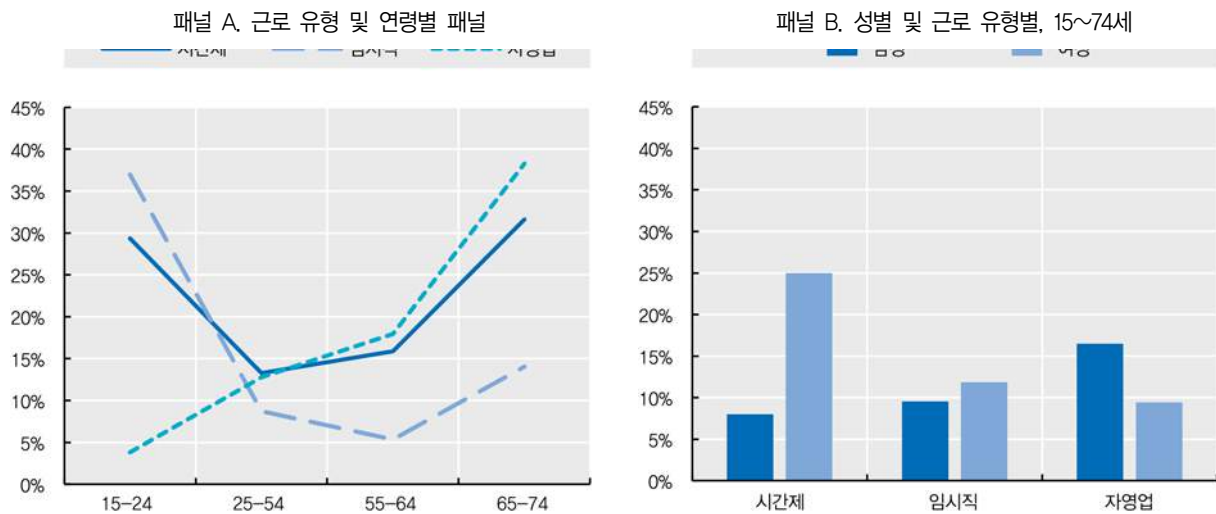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5~54세 근로자 중에서는 13%, 55~64세 근로자 중에서는 16%이지만 65~74세 근로자 중에서는 1/3이다. 시간제 근로는 노인의 소득 감소를 부분 또는 전액 연금 급여로 상쇄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단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다. (OECD, 2017<sub>[51]</sub>) 그러나 근로와 연금의 결합은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60~69세 가운데 연금을 받으며 근로하는 비율이

5%가 넘는 곳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미국뿐이다.(OECD, 2019<sup>[6]</sup>) 시간제 근로와 달리 기간제 고용은 노인에게서 특별히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기간제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5~24세 중 37%, 25~54세 중 9%, 55~64세 중 5%, 65~74세 중 14%이다.

자영업 역시 노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경력기간 후반부에 독립 노동자가 된 자영업자가 많은데, 이는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이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 보다 늦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65~74세 전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38%이며 비율은 25~54세의 경우 13%, 55~64세의 경우 18%다.(그림 2.2, 패널 A) 자영업자들의 근로 기간이 긴 또 하나의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강제적 은퇴연령 또는 한국에서 흔한 특정 연령 시 은퇴하라는 직장의 압력 등 법적, 제도적 장애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OECD, 2018<sup>[7]</sup>)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거나 은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Transamerica, 2019<sup>[8]</sup>) 자영업은 노동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근로에서 은퇴로의 원활한 전환에 도움을 가능케 한다.

그림 2.2. 노인 사이에서 보다 흔히 나타나는 자영업과 시간제 고용

고용 대비 비율, 26개 OECD 국가 평균, 2018년



주: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데이터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65~74세 연령집단이 아닌 65세 이상에 대한 것이다. 시간제 근로의 정의는 OECD와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출처: 유럽 연합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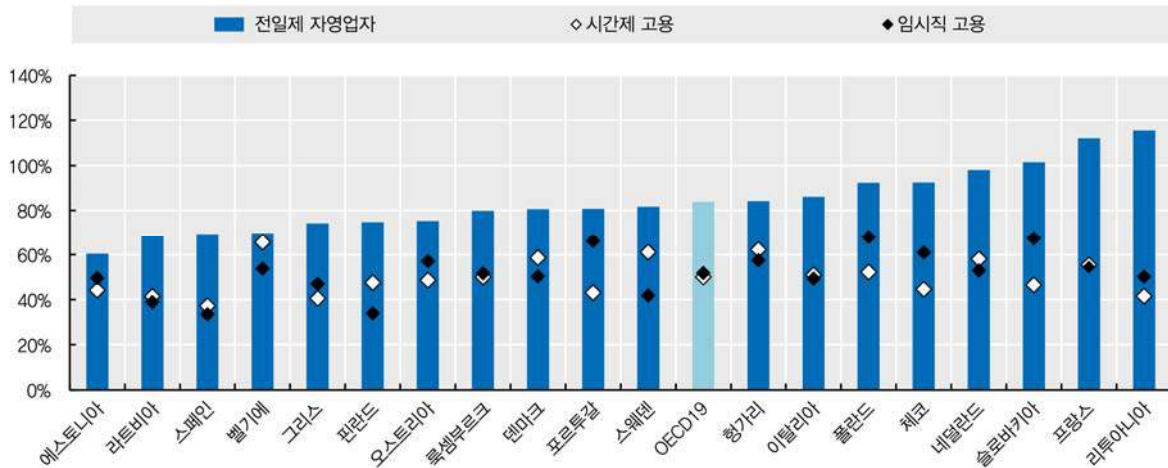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832>

비표준 노동, 특히 시간제 근로는 여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유 중 하나로는 여전히 돌봄 업무를 대부분 여성이 수행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돌봄과 근로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OECD, 2017<sup>[9]</sup>) OECD에서 시간제 근로는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에게서 3배 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로자이다.(그림 2.2, 패널 B) 그러나 시간제 근로는 경력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 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OECD, 2019<sup>[10]</sup>) 반면 자영업은 남성의 경우 더 흔하다.

### 비표준 노동은 저소득으로 이어지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

평균적으로 비표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 전일제 피고용 근로자 보다 소득이 낮다.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 19개국의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 대비 연간 50%의 소득을 올리며, 라트비아와 스페인 등 몇몇 국가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그림 2.3.) 이 격차는 낮은 시급, 적은 근로 시간(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단절(기간제 근로자 등)로 인해 나타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특성을 통제한 OECD(2015<sup>[11]</sup>) 통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급에 대해 12%의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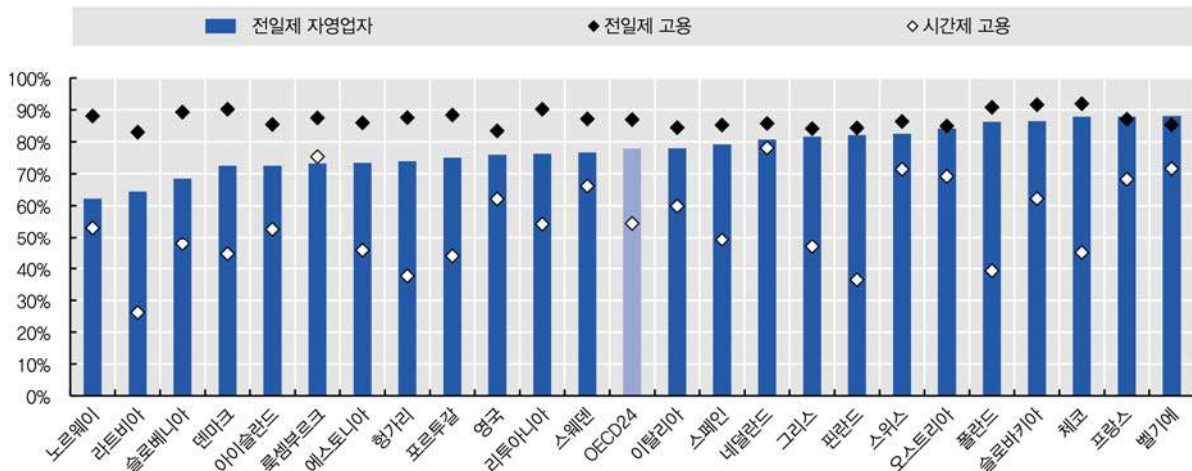
그림 2.3. 표준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비표준 노동자의 소득  
표준 근로자 대비 비표준 노동자의 연간 중위 총 근로소득, 20~60세, 2016년



주: 전일제 자영업자와 시간제 최소 12개월 이상 같은 고용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만 계산에 포함했다. 두 근로자 집단은 지난 12개월간 전일제로 일한 피고용 근로자와 비교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중위 소득은 무기 근로자의 소득과 비교했다. 소득은 연간 총 현금 수입을 의미한다. 소득은 양수인 경우에만 포함되었다. 출처: EU-SILC, 2017.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851>

그림 2.4.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비표준 노동  
2년 동안 특정 근로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 22~25세



주: PL031 현 경제적 상태 자기평가 변수 기반. 출처: 종적 EU-SILC 2017.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870>

결과가 드러났다.

중위 전일제 자영업자는 전일제 피고용인보다 OECD 평균 16% 적은 소득을 올렸으나, 이 수치는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sup>1</sup>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페인의 경우 중위 전일제 자영업자 소득은 중위 전일제 피고용 근로자 임금 대비 70% 미만이었고, 프랑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100% 이상이였다.

많은 경우 비표준 고용은 노동자의 경력 기간에서 표준 고용의 도중에 잠시 나타나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다. OECD 평균 표준 근로자의 87%는 2년 뒤에도 표준 근로자거나 잠시 벗어나더라도 다시 표준 근로자로 돌아왔고, 전일제 자영업자의 78%, 시간제 근로자의 54%는 자신의 고용 상태를 유지했다. (그림 2.4)<sup>2</sup> OECD(2015<sub>[11]</sub>)는 기타 다른 특징을 통제해도 3년 사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의 전환율은 50%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도 많으나, 이는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의 경우 흔한 일이 아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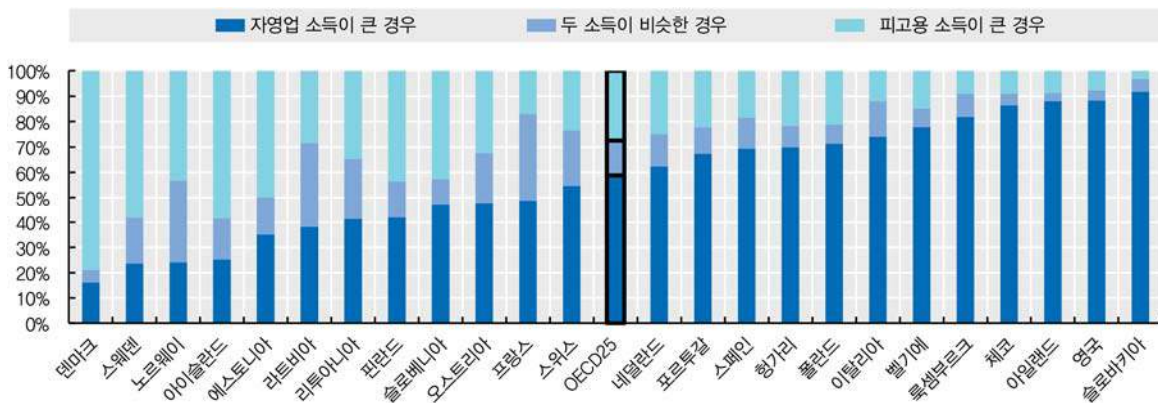
### 독립 고용과 피고용의 혼합이 빈번하다

많은 자영업자는 자영업 이외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 평균으로 특정 해에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올린 사람 중 59%는 소득의 2/3 이상을 자영업으로부터 나왔다.(그림 2.5)<sup>4</sup> 14%는 독립 고용과 피고용에서 나온 소득 비율이 비슷했고, 27%는 자영업으로 번 소득이 전체 소득의 1/3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자영업이 보충 역할에 가까웠다.<sup>5</sup>

## 비표준 노동은 왜 연금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규정 개선은 어려운 일이다. 기한 없는 전일제 피고용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표준 노동자는 연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연금 가입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다른 유형의 근로와 달리 자영업에는 연금 기여의 검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고용관계(고용 계약)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과 확대는 특히 저소득자에게 있어 비표준 노동과 관련된 연금 문제를 심화시켰다.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안정적인 선형의 경력을

그림 2.5. 여러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영업과 피고용의 결합  
자영업으로 연간 소득을 얻는 근로자 대비 비율, 2015년



주: 연간 자영업 소득(PY050) 및 피고용 소득(PY010)을 바탕으로 한 자료 '자영업 소득이 큰 경우'는 총 연간 소득의 2/3 이상을 자영업으로 벌하며 피고용 소득이 1/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두 소득이 비슷한 경우'는 총 근로 소득의 1/3 이상이 두 소득원 중 하나로부터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용 소득이 큰 경우'는 자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총 근로 소득의 1/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EU-SILC, 2016.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 새로운 형태의 발달은 미래 퇴직자의 노후소득에 문제를 야기한다.

### 연금 적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기간제 계약과 시간제 계약

기간제 계약은 기한 없는 계약과 비교해 포괄적인 고용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는 완전한 보호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근로 기간을 달성하는 경우가 적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 무기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하고 퇴직금도 제공해야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쉽고 비용도 덜 든다. 여러 국가에서 실업자들은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연금 수급권을 계속해서 획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업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주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그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없다. 빈번한 이직과 실직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짧고, 실업 급여를 오래 받지 못하거나 수급권 자체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 기간이 짧으면 근로자는 고용 기간을 인정받아 기여 기반의 연금급여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최소 근로 기간(주로 1개월 또는 1분기)을 채우지 못할 위험도 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 몇몇 유형의 기간제 계약에서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sup>6</sup> 특히 파견, 임시직, 계절 노동, 견습생은 고용 계약이 이루어짐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고용에서 나타나는 잦은 이직은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연금의 직장 간 이동성이 부족해서 여러 직장에서 쌓은 근로 기간이 항상 모두 누적되지 않으며, 잦은 이직으로 연금 수급액도 낮아진다. 더불어 연금 수급액은 계약 종료 시 일시불로 지급될 수 있어서(제3장) 노년기 보호 제공이라는 목적의 의미가 상실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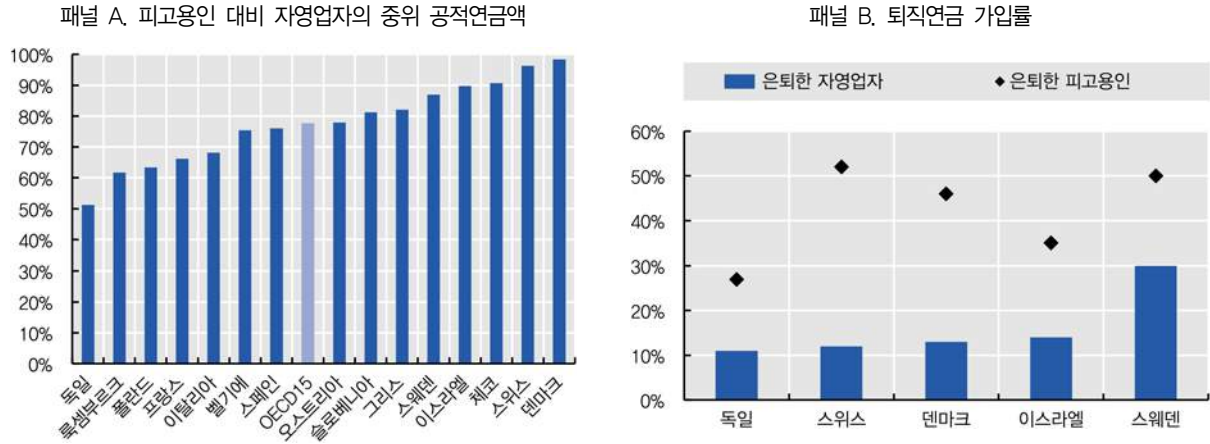
시간제 근로도 연금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간제 근로로 기여 기간을 전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시간제 근로 기간이 연금 수급액 산정 시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 기간이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근로 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최소 소득 수준 이상을 벌어야 한다. 이러한 배제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는 1층 기여형 제도와 소득비례제도 모두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은퇴시기를 미뤄야 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실업 시기가 길거나 근로 시간이 적은 등의 이유로 인해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다. 근로 기간 중의 낮은 소득은 노후의 낮은 소득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기간제 계약과 시간제 근로로 인해 직장에서의 귀속이 약하기 때문에, 직무 특수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도 적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은 더욱 불안정한 경력과 짧은 총 기여 기간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저소득자의 노후 소득을 더욱 낮춘다.(Valdés-Prieto and Leyton, 2019<sup>[12]</sup>) 따라서 소득비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10년 이상 기여해야 한다는 기여 기간 조건은 저소득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피고용인보다 낮은 자영업자의 연금액

자영업자는 은퇴하면 전직 피고용인보다 낮은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sup>7</sup> OECD15개국 평균 은퇴한 자영업자가 중위 기준 수령하는 공적연금은 은퇴한 피고용인보다 22% 낮다.(그림 2.6, 패널 A) 체코, 덴마크, 이스라엘, 스위스 등 기초연금이 탄탄한 국가에서는 이 격차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의 자영업자들은 은퇴 시 전직 피고용인보다 30% 이상 낮은 중위 연금액을 수급한다.

그림 2.6. 은퇴한 자영업자의 낮은 공적연금액과 사적 퇴직연금 가입률



주: 50세 이상 인구, 2015년 또는 2017년. 퇴직연금 가입률은 은퇴한 피고용인 중 10% 미만인 경우 표시하지 않음.

출처: Pettinicchi and Börsch-Supan(2019<sup>[13]</sup>)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기존 통계는 SHARE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됨.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908>

사적 퇴직연금이 많더라도 자영업자의 낮은 공적 연금액을 상쇄하지는 않는다. 전직 자영업자는 은퇴 이전에 기여했던 제도나 피고용 근로자로서 획득한 연금수급권을 통해 퇴직 연금을 받는다. SHARE 조사 결과 사적 퇴직연금 가입률이 전체 연금수급자의 10% 이상이었던 국가, 즉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전직 자영업자보다 전직 피고용인의 가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패널 B) 전직 자영업자의 사적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스웨덴의 28%이었다.<sup>8</sup> 자영업자의 낮은 사적 퇴직연금 가입률은 은퇴 후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낮은 공적 연금액과 퇴직연금 가입률의 부분적 이유로 인해 전직 자영업자는 여러 국가에서 전직 피고용인보다 노후소득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OECD 14개국 평균 은퇴한 중위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은 은퇴한 피고용인보다 16% 낮았다.(Pettinicchi and Börsch-Supan, 2019<sup>[13]</sup>)<sup>9</sup>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의 경우 이 격차는 20%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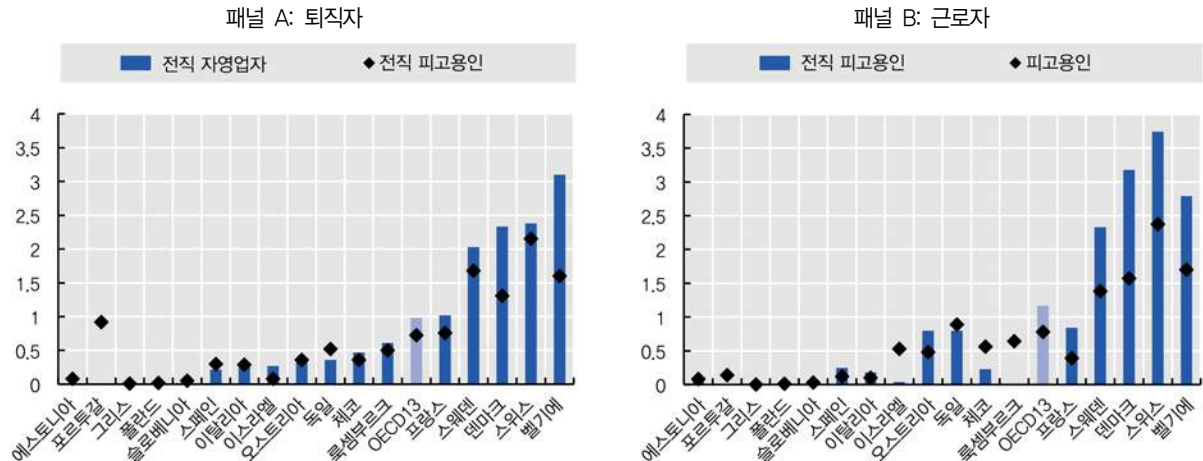
대다수 국가에서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소득 격차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가 간 평균 격차는 (중위)노동자의 경우 6%인 반면, 퇴직자의 경우 16%로 10%p의 차이를 보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현재 노동자보다 현재 퇴직자 간 소득 격차가 30%p를 초과했다.<sup>10</sup> 연금제도의 재분배적 기능이 노후 소득 불평등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결과인 듯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 섹션 내용 참조)

###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보유한 자산보다 연금액 손실이 크다

자영업자를 강제적 연금제도를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영업자가 유동 저축이나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자본 등 사적 저축이 더욱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마다 크게 다를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의 중위 자산은 피고용인의 중위 자산보다 소폭 높은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자본을 현금화한 은퇴 전직 자영업자는 더욱 그러하다.

(자산 측면에서) 중위 피고용인과 비교하면 중위 자영업자가 가진 연간 수입 대비 순 유동자산<sup>11</sup>은

그림 2.7. 은퇴 후 증가폭이 줄어드는 자영업자의 피고용인 대비 자산 격차  
중위 소득 대비 유동자산 비율의 증위값, 연간 소득, 50세 이상 근로자, 2017년 또는 2015년



출처: Pettinicchi and Börsch-Supan(2019<sup>[13]</sup>)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통계는 SHARE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됨.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927>

근로할 때(1.2와 0.8)와, 은퇴 후(1.0과 0.7) 모두 OECD 평균으로 더욱 높다.(그림 2.7) 즉, 은퇴한 중위 자영업자가 가진 유동 자산이 노후 소득과 같고, 피고용인의 유동 자산은 9개월치에 해당한다. 은퇴한 자영업자는 17개국 중 10개국에서 은퇴한 피고용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추가 자산이 12개월치 소득분을 초과하는 곳은 벨기에와 덴마크뿐이다. 따라서 자산이 은퇴 후 기간 전체의 소비를 충당하는 재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지 않다. (패널A) 게다가 경제활동 중인 자영업자는 패널 B에 표시된 국가 중 체코, 독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피고용인보다 소득 대비 자산이 높는데, 은퇴 후에는 그 격차가 줄어든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단독 소유주를 포함한 사업주들에게 자발적 연금 저축은 주택 소유권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 관계이다. 사업주들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발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Lichtenstein, 2010<sup>[14]</sup>)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낮은 은퇴 자영업자는 주택 형태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재정적으로 취약해진다. 많은 전직 자영업자들은 낮은 연금 수급액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다.<sup>12</sup> 게다가 네덜란드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주택 보유는 피고용인보다 더욱 흔하다는 것은 낮은 연금액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만 완화해 준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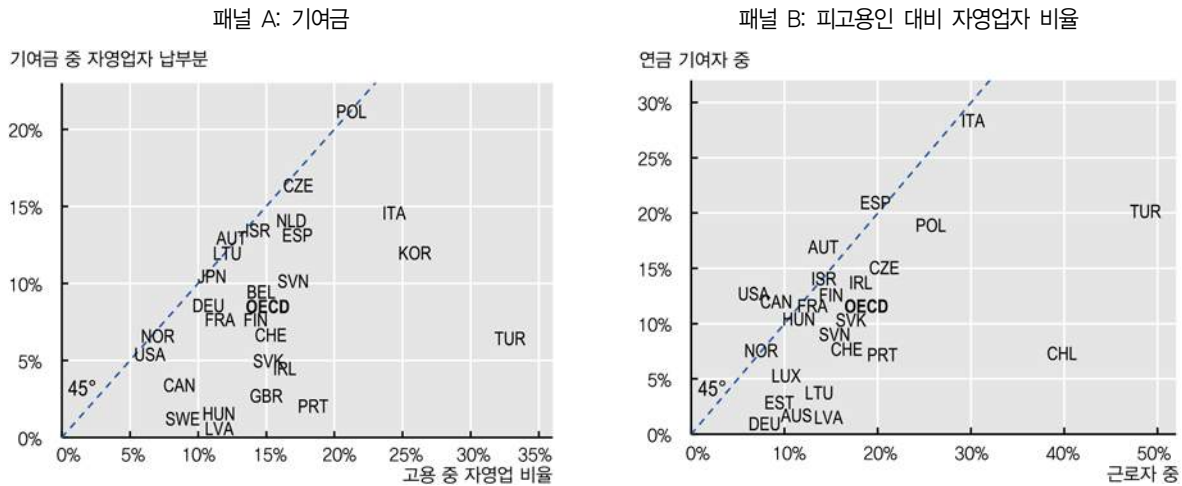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노령연금 기여금은 피고용인보다 적다

많은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은 피고용인에 비해 강제적 연금에 포괄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적다. 자영업자들이 비슷한 소득의 피고용인보다 적은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총 사회보장기여금 중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비중이 총 고용 중 자영업(비공식 자영업 노동자 및 비공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다.(그림 2.8, 패널 A) 이는 고용 보험 기여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큰 차이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사이의 공적연금 가입률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그림 2.8. 낮은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

2015년 총 사회보장기여금\* 중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비중 vs 총 고용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 및 2017년 행정 데이터 vs 설문 데이터의 피고용인 대비 자영업자 비율\*\*



주: 국가별 정보는 아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946> 조. (\*)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비율에는 일부 국가의 경우 통합 데이터만을 제공하여 비근로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수는 LFS 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행정 데이터와 달리 비공식적 근로를 고려한다.  
출처: 각국 제공 정보, OECD 세수 통계(Tax Revenue Statistics) 및 OECD 노동력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946>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비율은 총 고용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총 고용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이탈리아, 한국, 터키에서 가입률 격차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미래 연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기여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아일랜드와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기여액과 연금수급액이 밀접히 연계되지 않으며 미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연금 격차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낮은 연금 기여자 수다. 기여자 수는 (사회보장제도 보다) 연금제도만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용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피고용인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체 노동자보다 기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칠레, 라트비아, 포르투갈, 터키에서 특히 크다.(패널 B)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적은 것이 기여금 격차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즉, 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캐나다, 아일랜드, 헝가리에서는 기여자 수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기여금 격차가 주로 기여자 당 기여금이 낮아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OECD 국가의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경우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강제적 최저연금 기여금만을 납부한다.(Spasova et al., 2017<sup>[15]</sup>) 영국에서는 전일제 남성 자영업자 중 2012~2013년 사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연금 계정을 가진 경우가 27%에 불과했다. 전일제 남성 피고용인의 경우 이 비율은 51%였다.(D'Arcy, 2015<sup>[16]</sup>)

자영업자는 기여 기반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 제도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고, 기여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이 피고용 노동자 보다 낮은 가장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영업자의 기여금이 낮은 것은 총 고용률 상승, 창업 지원, 농업 등 특정 분야의 근로 소득 향상, 순 소득 증가를 통한 자영업 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영업자가 직접 재정(노후 저축 포함)을 관리하거나 일반적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여금이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Karpowicz, 2019<sup>[17]</sup>) 또한 자영업자는 위험 회피의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Ekelund et al., 2005<sup>[18]</sup>; Colombier et al., 2008<sup>[19]</sup>) 이러한 특성은 공적연금의 대한 신뢰도가 제한적이라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ISSA, 2012<sup>[20]</sup>) 독일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업들은 자신들이 피고용인 연금제도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Kautonen et al., 2010<sup>[21]</sup>)

그러나 낮은 기여금은 현재와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는 기여금이 낮으면 먼저 부과식 제도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미래에는 기여금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노령 연금이 줄어들고 비기여형 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야기하는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 게다가 낮은 자영업자 기여율은 기업이 표준 노동자 대신 독립 노동자를 고용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위장 자영업과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박스 2.1)

최저연금과 기여형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수급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기여금을 줄이게 만드는 유인이며, 일부 유형의 노동자,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욱 쉽다.

### 자영업자를 피고용인 대상 제도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자영업자를 피고용인 대상 연금 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실제로 까다롭다. 피고용인의 연금 기여금은 보통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어떠한 유형의 자영업자의 소득에 상응하지 않는다.(그림 2.10) 총 임금은 피고용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관련 개인 소득세, 세후 순 임금의 합을 말한다. 총 임금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총 인건비보다 낮다. 인건비에는 고용주의 기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총 수입에는 근로 관련 원자재 비용은 물론 (기여금과 세금을 제하기 전의) 총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이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은 보통 구별이 불가능하다. 몇몇 국가(핀란드 등)에서는 ‘이론적 임금’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두 소득을 나누지만, 자본 소득의 산정 규정은 재량에 상당히 의존한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자본 지출에 대한 이자 감면을 통해 연금 기여금 계산을 위한 관련 소득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일부를 결정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기여 기반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 외 분야에서도 임금과 수익의 구분은 세금 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이는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대개 낮게 과세되는 등 임금 수익은 과세 방식이 보통 다르기 때문이다.(OECD, 2009<sup>[23]</sup>; OECD, 2015<sup>[24]</sup>)<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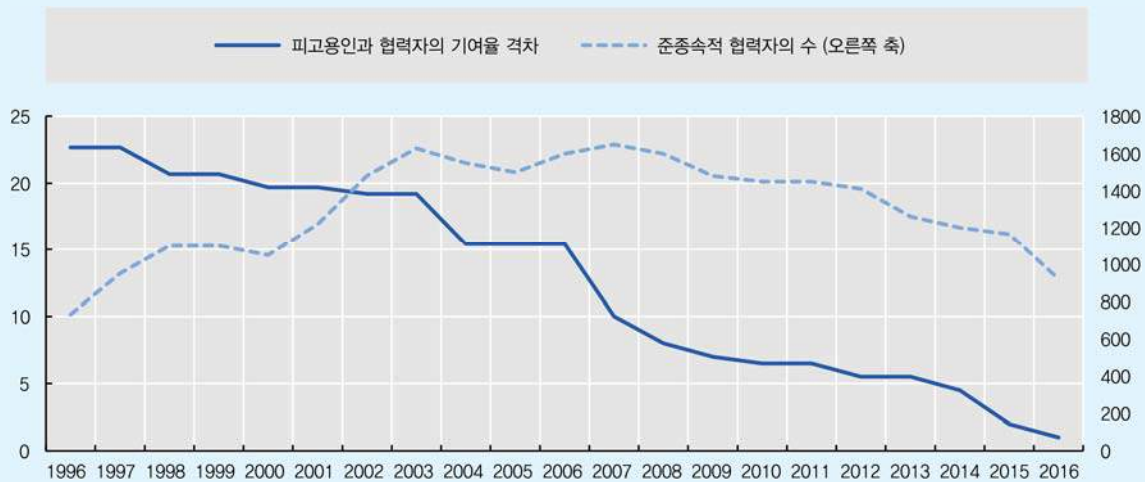
따라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 기반을 완벽하게 통합하려면 총 개인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자영업자의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정확하게 분리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노동 소득에서 나온 저축을 포함하여 저축 수익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피고용인 연금제도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부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량 없이 소득원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박스 2.1.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이 낮으면 표준 고용이 무너질까?**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표준 근로자의 경우보다 낮을 때 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주 몫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대신 독립 계약자에게 일을 외주를 맡기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또한 보호를 덜 받는 대신 순 임금이 높은 쪽을 택하게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 공공 정책을 논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활동(음식 배달기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위 준종속적 협력자(para-subordinate collaborators)는 표준 근로자보다 상당히 낮은 연금 기여금을 오랫동안 납부했었으며 한 명의 계약자에 상당히, 때로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낮은 기여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에서 준종속적 협력자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준종속적 고용의 지나친 사용을 조장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위장 자영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준종속적 협력자에 대한 기여율을 시간이 지나며 단계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위장 자영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준종속적 협력자 사용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등 여러 정책을 사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07년경 최고점에 도달한 후 준종속적 협력자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약 40% 떨어졌다.

**그림 2.9. 이탈리아의 준종속적 협력자**  
 피고용인과 준종속적 협력자의 연금 기여율 격차와 준종속적 협력자의 수(1000명)



출처: OECD (2018[22]).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0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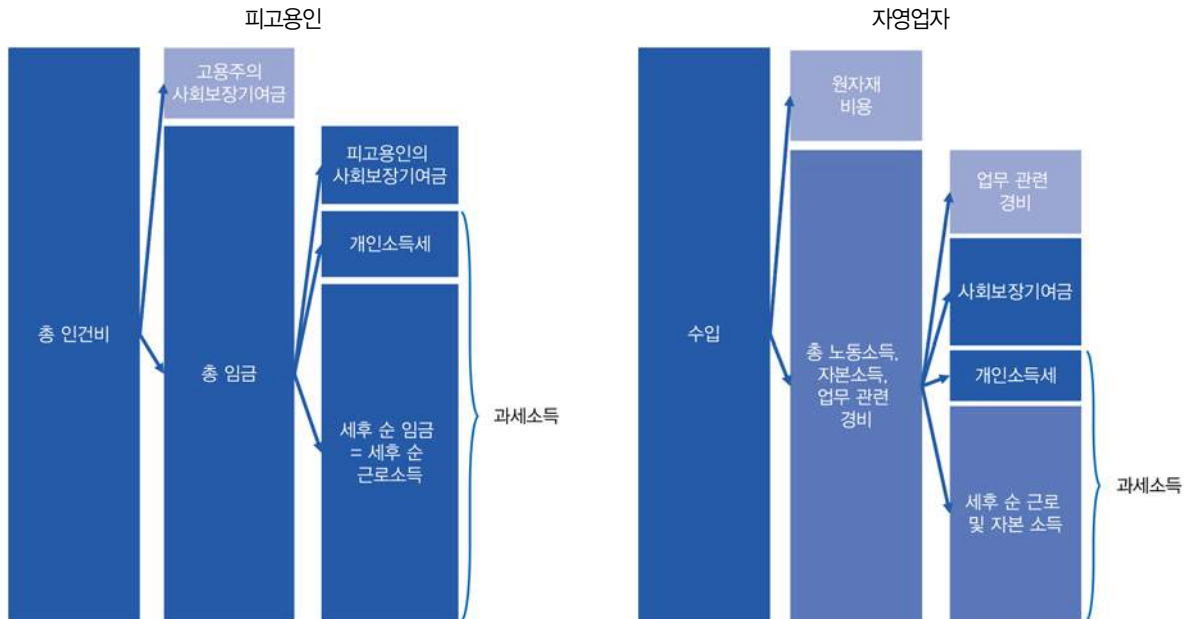
으로 자영업자에게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

기여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총 수입이나 총 소득에 대해 표준 고용의 기여율 전체를 적용하면,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의 합계) 동일 과세소득을 가진 피고용인보다 총 기여금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여금을 제외한 소득(세전)에만 기여율을 산정하면 자영업자의 기여금은 피고용인보다 기여금이 낮아진다.

**소득 검증, 교섭력, 소득의 변동성**

자영업자는 (뚜렷한)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설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강제적 연금 제도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피고용인보다 크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피고용인의 경우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직접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10. 비교하기 어려운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출처: OECD.

두 번째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검증해 줄 고용주가 없으므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적어도 부분적 비공식성) 기여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렵다. 가령 스페인의 자료를 보면 피고용인보다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가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Martinez-Lopez, 2012<sub>[25]</sub>) 다른 국가의 자료도 자영업자가 소득 축소 신고를 자주 한다는 것을 확증한다.(Hurst, Li and Pugsley, 2010<sub>[26]</sub>; Bucci, 2019<sub>[27]</sub>) 미국에서 2018년 진행된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32%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고 인정했다. (Bruckner and Hungerford, 2019<sub>[28]</sub>) 게다가 인터넷 플랫폼과 함께 혹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거래 내역을 국내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플랫폼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기여 기반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을 경력 기간 전체 소득이 아닌 은퇴 직전 년도 소득에 연계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자영업자가 연금액을 올리기 위해 경력 기간 마지막 년도의 기여 기반을 높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에서는 이전에 기여 기반을 낮게 선택했던 47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기여기반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않도록 기여 기반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노동 시간은 보통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 최저연금의 수급액과 강제적 소득비례 제도의 수급이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정을 그대로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피고용인의 고용 계약에는 안정적 소득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수익 변동 등 대부분의 위험을 떠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소득 또한 상당한 변동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연금 기준 소득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상당히 불규칙하게 오간다. 소득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연금 규정에 따라 기여금을 전혀 내지 않고 수급액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최소 기여금을 내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유효 기여율이 올라가고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기여율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유효 기여율이 내려간다.<sup>16</sup>

## 비표준 노동에 대한 연금 규정

연금 규정은 표준 노동자의 경우보다 비표준 노동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가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섹션에서는 연금제도의 비표준적 노동자 포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가별 주요 차이점을 알아본다. 또한 자영업자, 시간제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고 최근 정책 변화를 요약한다.

### 자영업

#### 가입 및 범위

자영업자의 연금 가입은 OECD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비례제도 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영업자가 피고용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곳은 10개국 뿐이다.(표 2.1, 1열) 심지어 이들 10개국에서도 연금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가입률이 줄어들 수 있다. 가령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공적연금제도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공적연금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Kim and Lee, 2012<sub>[29]</sub>)

표 2.1의 2~4열에 나타난 18개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소득비례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기여율 감액(2열), 소득 기반 설정 시 높은 재량으로 인해 최소 기여금만 납부하는 빈번한 경우 자율(3열), 최저 소득 기준 이하는 기여 의무 면제(4열)을 통해 자영업자가 피고용인보다 낮은 기여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 가입은 한정적이다. 호주, 덴마크,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에서는 자영업자가 피고용인과 달리 소득비례제도에 가입하지 않는다. 칠레와 이스라엘도 과거에 동일했으나

표 2.1. (준)강제적 연금제도에 완전히 기여하지 않는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적, 준강제적 연금제도의 기여 요건, OECD 회원국

피고용인과 유사	소득비례제도의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기여금			기초연금에만 의무 기여 적용	의무 기여 없음
	기여율 감면	정률기여만 의무	기준 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적 기여가 의무		
캐나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호주
체코	벨기에	스페인	칠레	일본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터키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칠레		라트비아	영국*	멕시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이스라엘		터키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미국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주: ‘피고용인과 유사’란 자영업자가 피고용인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제도의 보장을 받으며 같은 기여율과 기준을 적용받고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모두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소득비례제도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금이 기초연금 재정에 사용된다. (\*\*)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특정한 법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률 기여금만을 납부한다. 자세한 국가별 정보는 그림 2.11의 StatLink 참조.

출처: 각국 제공 정보, MISSOC (2018<sub>[30]</sub>), Spasovaetal.(2017<sub>[15]</sub>), SSA(2018<sub>[31]</sub>).



최근 소득비례제도를 자영업자에 대해 의무화 했다.<sup>17</sup>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영국의 자영업자는 피고용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기여형 기초연금에 참여했으며, 소득비례제도 가입은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발적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에게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강제적 제도의 낮은 가입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벨기에, 프랑스, 일본, 스위스에서는 자영업자의 자발적 제도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를 피고용인보다 높게 설정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은 자영업자 중 일부 집단에 대해서라도 특별 자발적 연금제도를 만들어 세액공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영국에서는 피고용인이 자동으로 직장 연금에 가입하며 원하면 탈퇴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가입하지 못한다. (제3장)<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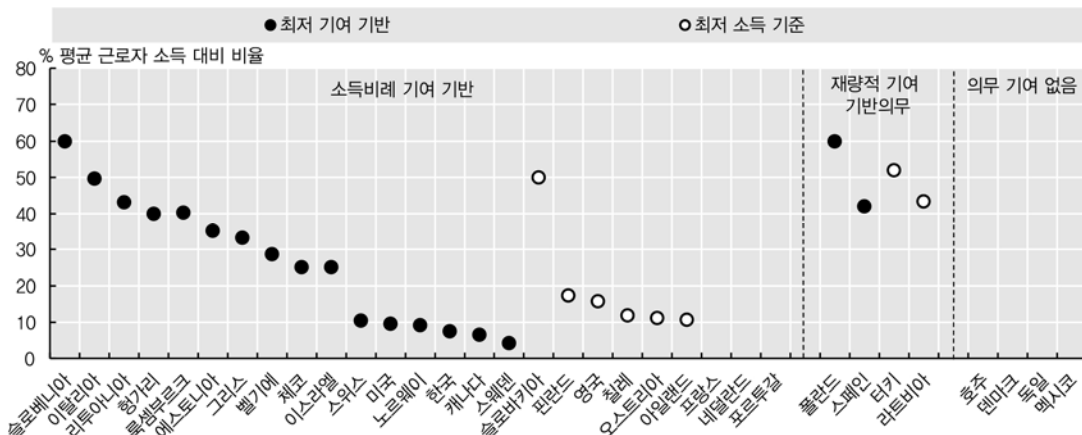
**연금과 사회보장기여금 기반**

기여 기반에 대한 연금 규정이 자영업자와 피고용인과 설명 유사하더라도 연금 기여금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기여 기반, 즉 기여액 산정 시 고려되는 소득이 두 집단 간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용인의 경우 연금 기여금은 대개 총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총 임금은 총 인건비에서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한 값으로 계산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총 임금이 정확히 상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섹션 3)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으로서 몇몇 소득비례 측정 법을 사용한다.(그림 2.11) 이 지표는 국가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기 전의 소득이 되기도, 혹은 제한 후의 소득이 되기도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소득(체코 50%, 슬로바키아 67%, 슬로베니아 75%, 리투아니아 90%)에 대해서 기여율을 적용한다.

라트비아, 폴란드, 스페인, 터키의 자영업자 대부분과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 특정 법적 형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몇몇 자영업자들은 강제적 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지만 지정된 범위 내에서 소득 기반을 선택할 때 높은 재량을 갖는다. 핀란드도 기여 기반 설정 시 높은 재량을 제공하나 검증이

그림 2.11. OECD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적 연금의 기여 기반  
2019년 또는 최신 년도의 가용자료



주: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는 표시되지 않는다. 아이슬란드는 직업에 따라 기여 기반을 고정하므로 실제 소득과의 연계가 약하다. 이처럼 사전 설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한 기여금을 면제받으려면 아이슬란드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OECD, 2018[7]) 일본의 경우 정률 기여이기 때문에 소득 기반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에 대한 의무적 연금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국가별 정보는 아래 statlink 조.  
출처: 각국 제공 정보, MISSOC (2018[30]), Spasova et al. (2017[15]), SSA (2018[31]).

어려운 추가적 제약도 부과한다. 즉, 자영업자가 업무를 동등한 능력의 다른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에 상응하도록 기여 기반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높은 재량에는 재정적 근시안성<sup>19</sup> 등과 같은 이유로 낮은 기여금으로 인한 위험이 따라온다. 표 1.1의 세 번째 국가 집단에서는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는 의무가 아니다.(그림 2.11)

대부분의 국가는 최저 기여 기반이나 최저 소득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그림 2.11)<sup>20</sup> 최저 기여 기반은 실제 소득이 그보다 낮은 경우더라도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최저 금액을 말한다. 최저 기여 기반은 자영업자가 매우 낮은 기여금을 내지 않도록 하지만, 한편으로 기준 아래의 소득자에게는 유효 기여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단점을 경감하기 위하여 폴란드는 자영업자의 수익이 낮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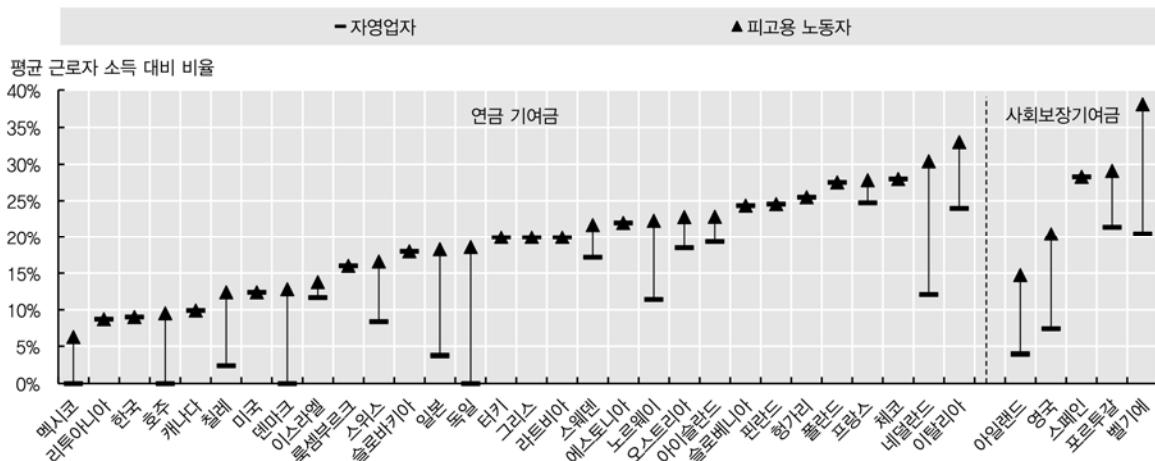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 기여 기반이 높으며,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다. 최저 기준에서 최저 소득 수준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강제적 연금기여나 사회보장기여금을 면제한다.<sup>21</sup> 이 경우 연금 수급액도 누적되지 않는다. 최저 소득 기준은 8개 OECD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준선은 아일랜드 평균 임금의 11%부터 슬로바키아와 터키의 약 50%까지 다양하다. 라트비아에서는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내려가면 실제로 기여율이 크게 낮아진다.<sup>22</sup>

기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여금은 연금과 연계 되지만, 5개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기여금은 사회보험 장애보험, 때때로 고용보험, 기타 여러 다양한 유형 등의 사회적 보험 전체를 포괄한다. 후자의 경우, 연금 기여금을 다른 사회적 기여금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여금을 연금과 연계하는 국가들 중 절반에서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기여율이 동일하다.(그림 2.12)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의 총 기여율,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를 합친 값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그림 2.12. 낮은 연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기여율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 기여율(강제적/준강제적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비교, 2018년 또는 최신 년도



주: 피고용 노동자의 경우 기여율은 평균임금 소득자의 유효 기여율, 즉 총 납부 기여금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여율은 세전 평균 순 임금과 동일한 과세소득의 가진 자영업자가 강제적 기여 기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기여율, 즉 납부한 의무 기여금을 의무 기여 기반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따라서 강제 기여 기반이 줄어들어도 기여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기여율은 자영업자 스스로 및 피고용 노동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율을 말한다. 자세한 국가별 정보는 아래 StatLink 참조.

출처: 각국 제공 정보, MISSOC (2018[30]), Spasovaetal.(2017[15]), SSA(2018[31]).

납부한다.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기여금이 연금과 연계하는 나머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더 낮다. 호주, 덴마크,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가 애초에 의무가 아니거나 소득비례제도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한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에서는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모든 소득비례제도에 가입해야 하지만 기여율은 더 낮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낮아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는, 기여금을 세금으로 보충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자영업자는 공적 연금 기여금이 더 낮지만 피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제도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연금 기여금을 기타 사회보장기여금에서 분리하지 않는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의 납부 기여율이 피고용인의 총 기여율, 즉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합계와 동일한 곳은 스페인뿐이다. (그림 2.12)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의 경우 자영업자가 적용 받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기여율은 피고용인보다 낮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OECD, 2018<sub>[7]</sub>)<sup>23</sup>

위 그림에 제시된 연금 기여율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을 의미하지만, 자영업의 분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특정 직종, 저소득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여율은 현저히 다를 수 있다. 그림 2.11에 제시된 대로 독일의 자영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독립적 출산 보조원 등)는 일반 노후연금제도에 의무 가입하며 보통 정률 기여금을 납부한다. 한편 기타 유형의 자영업자(의사 등)는 직종 협회에서 만든 89개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에 의무 가입한다. 자영업 예술가와 홍보 담당자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이들은 기여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피고용인 기여분만을 납부한다. 나머지는 이들의 고객이 납부하는 특별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 화가들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반면, 대부분의 기타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에서는 자영업의 유형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진다. 농부, 장인, 단독 사업자(sole trader),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아직 규정되지 않은 직업군 종사자들의 소위 “새로운”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약 24%이다. 자유직종(liberal profession)의 경우 분류에 따라 직업 소득의 10%에서 33%까지 기여율이 각각 존재한다. 프랑스는 다양한 기여율이 적용되는 여러 직업 유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독립 근로자의 연금 기여율은 24.75%이지만 자유 직종에게는 다른 기여율(경우에 따라 일시불)이 적용된다.

또한, 간소한 행정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낮은 수입의 자영업자, 소위 마이크로 기업가주(microentrepreneur)는 별도의 낮은 기여율을 적용 받는다. 현재 프랑스에서 보편적 연금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시된 법안(제1장)에는 자유직종 및 독립 근로자들이 가입한 개별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예술가, 기자, 선원 등의 경우 특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은 농부를 위한 특별 제도를 만들었다.(Choi, 2009<sub>[32]</sub>) 폴란드 농부의 경우 소득이 아닌 농경지를 기준으로 매우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한다. 농부 대상의 제도는 일반 조세 재원의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2018년에는 농부의 연금 급여액 수준이 비교적 낮음에도 기여금이 지출의 15%만을 충당했다. 박스 2.2는 유사 택시 운전사와 기사 등의 선택 직종 대상의 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며 논의한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퇴직연금제도가 보급된 국가에서는 피고용인의 기여금은 보통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보완된다. 이러한 기여금 매칭(matching)은 전체 기여율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피고용인과 동일 수준의 퇴직연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과 피고용 근로를 모두 하는 노동자들은 두 노동 형태의 소득을 합한 값에 대하여 기여금을 내거나 각 유형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따로 납부한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벨기에 자영업 활동이 ‘추가 직업’인 사람(자영업자의 약 35%), 즉 자영업과 최소 반일 근무 이상의 피고용 근로를 병행하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낮은 최저 기여 수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노동자는 자영업을 통해서 공적연금 수급권을 누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피고용 근로의 소득만 연금 기여 대상이며, 피고용 근로와 자영업을 결합하는 경우 연금 수급액이

## 박스 2.2. 유사 택시 플랫폼 근로자와 기사에 대한 연금 규정

### (1) 유사 택시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노동 플랫폼은 최근 수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다. 유사 택시 플랫폼은 일본, 노르웨이, 터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다. 일반 택시 운전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몇몇 국가에서는 피고용 근로자로 고려된다. 기존 택시 운전사에게 적용되는 연금 규정과 유사 택시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즉, 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핀란드의 경우 택시 서비스 관련 규제가 2018년 7월 완화되었고, 기존 택시 운전사와 유사 택시 플랫폼 운전사는 이제 연금 보험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들 최저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영업자를 위한 표준 연금보험, 일명 YEL 보험을 적용받는다. 사회적 기여금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근로 소득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소위 umbrella 회사(umbrella company)의 등장으로 핀란드 플랫폼 노동의 연금 처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umbrella 회사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직종을 대신하여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청구서를 플랫폼에 보내며, 자영업자를 위해 몇몇 행정 업무를 맡아준다. 예를 들어, umbrella 회사는 자영업 유사 택시 플랫폼 운전사의 기여금을 보험기관에 보내준다. umbrella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는 이러한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고용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야기한다.

프랑스에서 유사 택시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택시 운전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노동자이며 기존 독립 노동자(“travailleurs indépendants”)처럼 가입할 지, 혹은 수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마이크로기업가(micro-entrepreneurs)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유사 택시 운전사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소득이 아닌 수입을 기반으로 기여율(2019년 기준 22%)을 납부한다. 즉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노령 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위험은 보장된다.

유사 택시 플랫폼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할지, 혹은 피고용 노동자로 분류할지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사 택시 플랫폼, 우버(Uber)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해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우버가 온라인 자동차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즉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 연금 기여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많은 플랫폼 운전사들이 이제 우버의 계약 파트너로 간주되어 의무 연금 기여금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기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사회적 권리에 관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바 없다. 2016년에는 플랫폼 노동의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간 최대 6000 유로를 버는 플랫폼 노동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고, 이에 따라 연금을 포함한 사회적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요 문제는 플랫폼이 고용주로 간주되어야 하느냐, 또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간주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따라 연금 규정도 달라질 것이다.

### (2) 기사

기사는 기술 변화와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의 이동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기자의 비즈니스 모델도 진화했으며 대부분 피고용 형태였던 계약도 독립 고용으로 바뀌었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모든 기자가 자영업자이고, 어떤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도, 피고용 근로자도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

## 박스 2.2. 유사 택시 플랫폼 근로자와 기자에 대한 연금 규정(계속)

규정이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는 기자를 위한 특별 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벨기에에서는 ‘전문 기자(beroepsjournalisten)’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위해 일반 공적연금에 더하여 보충 연금제도가 197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강제 가입으로, 고용주의 추가 기여 2%와 기자의 추가 기여 1%를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 완전경력 기자의 경우 이러한 보충 제도를 통해 기여 기간에 따라 공적 연금액의 최대 33%까지 추가 연금을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에서 기자는 흔히 피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기자로 분류된다. 후자의 경우 기자는 ‘새로운’ 자영업자로 고려된다. 새로운 자영업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강제적 공적제도에 가입한다.

독일의 자영업 예술인 및 출판업계 종사자는 예술인 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에 강제 가입한다. 이 제도에 가입되는 노동자들은 기여금을 절반만 납부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객 납부금(30%)과 조세 재원 국가 보조금(20%)으로 충당된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포함한다.

프랑스에서 전문 기자들은 피고용인 대상의 강제적 제도에 가입한다. 근무 시간이 아닌 개별 출판물에 따라 소득을 버는 비상근 통신원(“pigistes”)은 일반 연금제도에 대하여 한도 있는 사회보장기여금(급료 및 고용주 부담금)과 한도 없는 기여금(고용주 부담금만)에 대하여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된 기여율로 인해 급여액은 낮아지지 않으며 재정은 제도 내 재분배를 통해 충당된다. 또한, 기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중 직업상 경비의 30% (최대 연 7,600유로)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대부분 기자의 주 수입원인 인세 수익은 감면 연금 기여율과 감면 수급액의 대상이다. 이 비율은 피고용인의 경우 20%이지만 기자는 5%이다. 인세에 부과하는 기여금은 고객이 바로 납부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프리랜서 기자와 피고용 기자의 연금은 기자연금협회(INPGI)에서 제공한다. 기타 노동자는 명목 확정기여형 제도를 받지만 INPGI의 연기금은 확정급여형이다. 2017년, 지출이 수입을 42% 초과하면서 총 기여금과 급여액 간 사이의 큰 불균형이 대두되었다.(Itinerari Previdenziali, 2019<sup>[33]</sup>)

상승한다.

## 연금 수급액

과세소득(즉,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순 소득)이 세전 순 평균 임금(피고용인 기여금을 제외한 총임금)과 동일한 자영업자는, 전체 경력기간에 걸쳐 의무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OECD 평균적으로 평균 임금 노동자의 이론적 총 연금액의 79%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향후 수급할 수 있다.(그림 2.13)<sup>24-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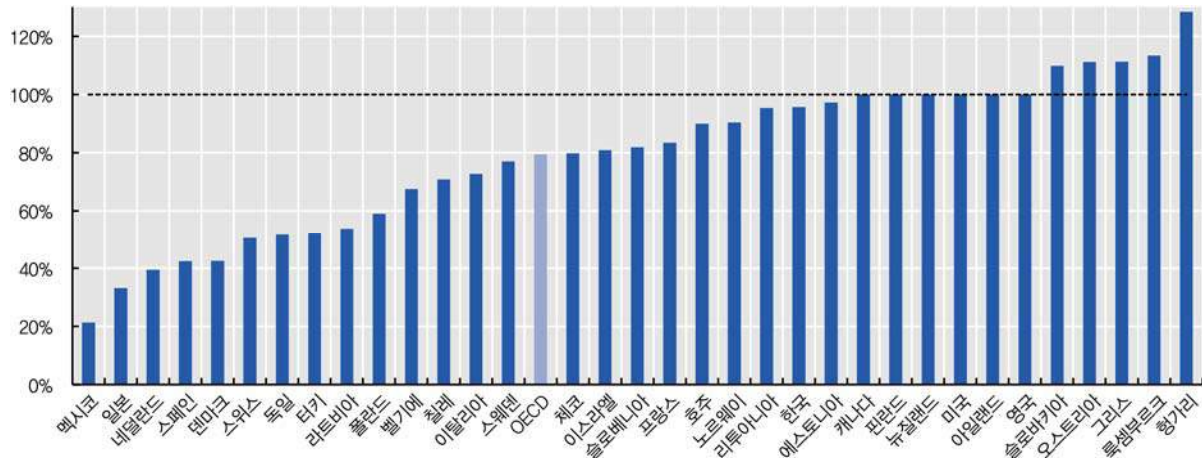
피고용인과 달리 자영업자가 소득비례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인 이론적 연금이 매우 낮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영업자가 강제적 제도에서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포함 노인 안전망 정도로 제한된다. 완전경력 경우에 자영업자의 이론적 연금액은 피고용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 정도로, 멕시코(21%), 일본(33%)의 경우 훨씬 낮게 나타나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하다. 이들 국가 중 특히 호주는 자산조사형 기초연금(Age Pension)은 자영업자에게 평균 임금의 피고용인이 강제적 소득비례제도(Superannuation)에서 수급하는 연금액의 90%를 제공한다.

자영업자의 이론적 상대적 연금이 낮은 특징(피고용인 연금액의 40~60%)은 소득비례제도에 정률 기여금의 납부만 의무인 폴란드, 스페인, 터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의무 기여금이 상당히 감면되는 라트비아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국가에서 낮은 기여율과 축소된 기여 기반으로 인해 동일 과세소득 피고용인 대비 자영업자가 받는 강제적 소득비례제도의 연금액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벨기에, 프랑스(포인트 제도 요소), 이탈리아의 경우 낮은 기여율은 공적 제도의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의 자영업자 연금액이 낮은 것은 이들이 강제적 적립식 제도에 기여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전혀

그림 2.13. **피고용인보다 낮게 나타나는 자영업자의 이론적 연금액**

세전 평균 순 임금과 동일한 과세소득(순 소득 또는 세전 순 임금)을 가진 피고용인 대비 자영업자의 이론적 연금액, 2018년 22세로 근로를 시작하여 연금제도에 (준)강제 기여금만 납부하며 완전경력(을) 마친 경우



주: 아이슬란드의 경우 자영업자의 연금 산정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없음. 포르투갈의 경우 기여 기반이 소득이 아닌 수입과 연계되어 계산이 불가함. 자세한 국가별 정보는 아래 [statlink](https://www.statlink.org) 참조.  
출처: 각국 제공 정보, OECD 연금 모델.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022>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피고용인 대비 수급하는 이론적 연금액은 스위스의 경우 50%, 벨기에, 칠레,<sup>26</sup> 이탈리아는 약 70%, 체코,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은 약 80%,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는 약 90%, 에스토니아의 경우 97%이다. 그러나 상채 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체코에서는 누적적 대체율로 인해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을 과세소득 50% 수준으로만 설정해도 상대적 이론적 연금액이 80%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자영업자의 낮은 공적제도 기여율은 간접적 방식을 통해 급여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영업자의 낮은 기여금은 세금으로 직접 보충된다.

몇몇 국가에서는 총 소득, 즉 기여금을 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연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피고용인 자신이 납부하는 기여율보다 높아지므로 여기서 다루는 사례(세전 순 임금과 동일한 자영업자의 과세소득)를 가정하면 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이론적 연금액은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에서는 피고용인의 이론적 연금액보다 소폭 높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 방식은 총 소득의 67%로 설정된 자영업자의 낮은 기여 기반을 보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은 동일 과세소득의 피고용인보다 10% 높다.

미국은 자영업자가 기여 기반을 산정하기 전에 사회보장기여금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기여금을 절반씩 부담하므로 이 공제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이론적 연금액을 균등화 한다.

강제적 연금제도에서 피고용인에 대하여 정률 급여만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은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에게 동일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 시간제 노동

근로 시간이 축소되면 총 소득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소득비례제도의 연금액이 적어진다. 몇몇

국가에서는 경력 기간 중 일부를 시간제 노동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기여형 급여, 기여형 기초연금, 최저연금, 소득비례제도의 기준 임금 규정을 통해 소득 수준별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시간제 근로가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과도해서, 소득 감소분보다 연금 감소분이 더 크다. 이러한 상황은 최저 소득 조건이나 최소 근로시간 조건이 존재하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 소득 조건은 몇몇 국가에서 모든 피고용 노동자에게 공식적으로 적용되지만 전일제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 조건은 시간제 노동자나 일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최저 소득이나 최소 근로시간 조건이 존재하는 곳은 OECD 회원국 중 절반이 되지 않는다.(표 2.2) 독일, 일본, 한국은 강제적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최소 근로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국가에 속한다. 강제적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주별,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최저 소득 수준을 설정한 국가는 14곳이다. (그림 2.14) 최저 소득은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경우 평균 소득의 5% 미만부터 터키의 50% 이상까지 다양하다. 독일에서 최저소득 조건은 없지만 월 소득이 450유로 이하인 노동자(일명 ‘minijobber’)는 법정 연금 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sup>27</sup> 19개 국가에서는 최저 소득도, 최소 근로 시간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이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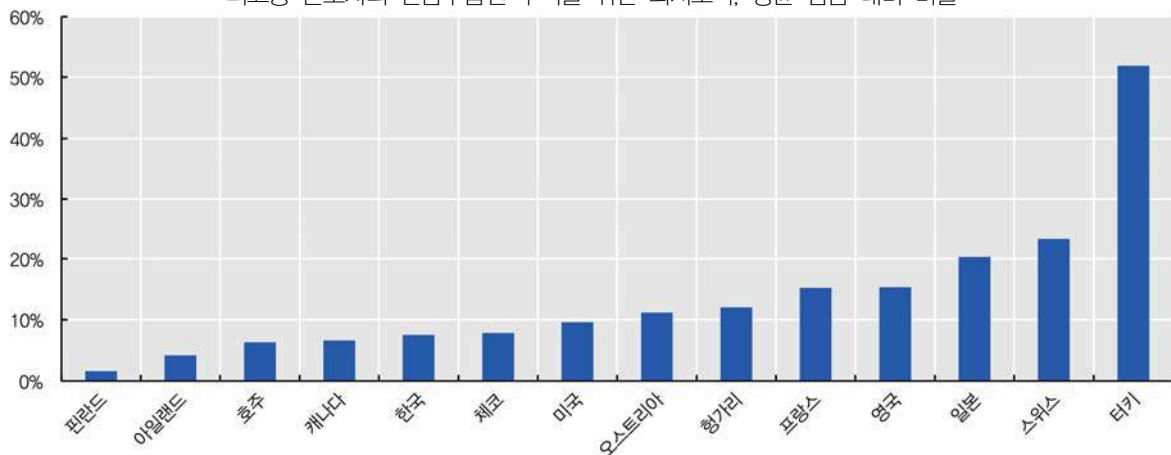
최저 소득 조건과 최소 근로 시간 조건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

표 2.2. 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 소득 및 최소 근로시간 요건

최저소득수준	최소근로시간	조건 없음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덴마크(주 9시간), 독일(연 70일 또는 최대 3개월), 일본(주 20시간), 한국(주 15시간), 노르웨이(적립식, 전일제의 20%)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주: (\*) 벨기에의 경우 전일제 연간 근로 시간의 1/3 또는 2/3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면 그 해는 각각 조기퇴직 및 최저연금 자격 조건에서 탈락한다. 슬로바키아에서 최저소득수준은 노령연금이 아닌 최저연금의 수급 자격을 검증하는 데에만 적용된다. (\*\*) 핀란드의 경우 연금 가입을 위한 최저소득 기준은 평균 임금의 1.6%로 매우 낮다. 이 수치는 실질적 이유 때문에, 즉 ‘이웃의 개를 산책시키는 것과 같은 사소한 업무’에는 큰 행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출처: 각국 제공 정보, MISSOC (2018<sub>[30]</sub>), Spasova et al. (2017<sub>[15]</sub>), SSA (2018<sub>[31]</sub>).

그림 2.14.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금액 누적을 위한 최저소득 기준이 낮거나 없다  
피고용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누적을 위한 최저소득, 평균 임금 대비 비율



주: 최저소득기준이 존재하는 국가만 포함되었다.

출처: 각국 제공 정보, MISSOC (2018<sub>[30]</sub>), Spasova et al. (2017<sub>[15]</sub>), SSA (2018<sub>[31]</sub>).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041>

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가 최저 조건을 근소 충족하여 전일제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연금수급권을 누리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기여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연금 제도의 경우처럼 조건이 낮게 설정되고 기여액과 연금 수급권 간 연계가 약하면,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금 규정은 전일제 노동자로부터 시간제 노동자로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스페인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수급액이나 수급 자격을 특별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모든 가입자는 연금액 산정 목적을 위해 매월 검증을 거쳐 최소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 기여액이 월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입기간 기록이 낮아진다.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에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에 대해 비슷한 장치를 사용한다. 스페인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한 총 소득의 전일제 근로자보다 더 높은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의 연금수급액은 동일 시급으로 동일 시간을 일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터키 등 기여 기간을 매일 검증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5일 중 3일을 일하면 주 5일 일하되 정상 근로시간의 60%만 일하는 경우보다 검증 기여 기간이 짧아진다. 국가에 따라 매주(아일랜드, 영국 등), 매월(폴란드 등), 매분기(프랑스 등) 등 더욱 긴 검증 기간 기준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둘 이상의 시간제 직업을 가진 노동자는 모든 직업의 총 소득, 또는 개별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에 따른 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다. 2015년, 벨기에는 전일제 근로 시간의 80% 이상을 일하면서 식당 등 특정 직종 목록에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자 및 연금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유연 일자리(flexi-jobs)’ 제도를 도입했다. 유연일자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연금 기여금이 모두 감면된다.

체코에서는 주 최대 20시간, 또는 연 최대 300시간 동안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근로 계약에서 창출한 소득을 연금 기여금과 수급액에서 배제한다.

## 기간제 노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연금 보험 규정은 표준 근로자를 위한 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파견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계절 근로자, 수습생, 견습생의 경우 기여율을 낮게 설정하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적어진다. 헝가리에서는 수습 직원은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고, 한국에서 파견 근로자와 도급계약자(contractors)의 경우 연금 가입에서 배제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증명서 기반 계약을 하는 임시직 노동자나 계절 근로자는 강제적 연금제도 가입에서 제외된다. 폴란드의 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 규제되는(일명 ‘특정 근로를 위한 민법 계약’) 기간제는 강제적 연금 기여금의 대상이 아니다.

표준 피고용 근로자와 동일한 연금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짧은 고용 기간으로 인해 연금 가입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퇴직연금은 같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를 가입시킨다.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가입은 실질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고용주 기여에 대한 최소재직조건, 즉 퇴직연금에서 고용주가 자신을 대신해 납부한 기여금을 피고용인의 소유로 인정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이 넘는다. 뉴질랜드, 터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에서 최소재직조건이 3년을 초과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여 기간 조건이 긴 경우 이직이 잦은 경향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다른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거나 탈퇴하지 않고(추가 기여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발적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개인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지만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에서 가능하다. 계약 종료 직후 수급액을 인출하는 것도 몇몇 국가에서는 가능하다.(제3장)

실업자가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한 연금 크레딧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불완전한 고용 경력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된다. 실제로 OECD(2019<sup>[11]</sup>)에서는 비표준 노동자가 표준 근로자에 비해 실업 급여로 보장받는 경우가 적은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업 급여 규정에 관해 OECD 국가별로 상황이 매우 다르다.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실업 급여 수급에 필요한 최소 기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멕시코의 경우 2년 이상이다.(OECD, 2018<sup>[7]</sup>) 수급 조건이 유연한 경우도 많은데, 가령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2개월 중 6개월만 근로 및 기여했다면 수급자격이 된다. 반면 슬로바키아에서는 직전 48개월 중 24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다.

### 정책 변화

지난 20년 사이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규정을 개혁해 왔다. 많은 경우, 개혁 목적은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최근 자영업자는 소득비례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다. 2012년 이후 칠레는 자동가입(auto-enrolment)을 통해 자영업자도 피고용인의 경우 의무 가입인 연금제도에 포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영업자 대다수(2017년 기준 80%)는 제도에서 탈퇴했다. 2019년부터는 노인 근로자와 저소득자를 제외하고 명세서를 발급한 모든 자영업자는 연금 기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13년에는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 일하는 학생, 특수 민법 계약을 체결한 개인, 청소나 육아 등의 보완 업무(complementary tasks)를 하는 노동자 등 일부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가입률이 늘어났다. 슬로베니아는 저소득 자영업자 가입률이 늘어난 유일한 국가였다. 독일에서는 최근의 연립정부협약을 통해 모든 자영업 대상의 강제적 연금 보험을 만들 계획이다.

소수의 주요 고객과 일하는 자영업자의 연금 가입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도 있다. 독일의 경우 한 명의 고객과 주로 일하며<sup>28</sup>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1999년부터 의무적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한다. 한편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 의존하는 독립 계약자의 기여금은 이제 이들의 고객이 분담한다. 더불어 포르투갈에서는 자영업자가 한 명의 단독 고객(일명 ‘주문 고객, ordering customer’)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 고객이 자영업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율은 근로자의 고객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sup>29</sup>

2019년 폴란드는 저소득 자영업자가 가지는 최저 기여액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부적인 면제 정책을 도입했다. 자영업자는 5년 기간 중 3년 동안 최저임금의 30%(기존 보다 5배 낮음)에서 평균 임금의 60% 범위 내에서 기여 기반을 설정할 수 있다. 연금 수급액은 그에 맞춰 조정된다.

시간제 노동자의 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연금 규정을 수정한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위스는 최소 근로 시간이나 최저 소득 조건을 낮춰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확대했다. 프랑스는 분기별 최저 임금 기준 200시간 근로 소득에 해당했던 소득 기준을 150시간 수준으로 2014년에 낮췄다. 독일은 2013년부터 자동가입 제도(탈퇴 선택권 포함)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가입을 확대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주 20시간 이상(기존 30시간) 근무하고 월 88,000엔(평균 소득의 20%)을 버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연금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부터 소규모 기업에서도 위 조건을 만족하고 경영진과 직원들이 동의하면 시간제 근로자가 소득비례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될 당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입대상이었으나, 의무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비표준 노동자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sup>30</sup> 스위스도 퇴직연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근로자, 특히 시간제 근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sup>31</sup> 2018년 라트비아는 자영업자에게 기존 20% 보다 낮은 5%의 기여율 납부를 의무화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끔 강제적 연금의 가입범위를 확대했다. 이전까지 자영업자는 자발적 가입만 가능했었다.

##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규정 개선

표준 근로자와 비표준 노동자의 가입, 기여금, 수급액 격차를 완화하는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평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위험을 가능한 한 넓게 분산시키며, 분배하며, 직종 간 노동 이동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 점점 유연해지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발달하면서 피고용 근로와 자영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개발자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사회 보호 제도, 특히 노령 연금을 조정하는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OECD, 2018<sup>[22]</sup>)

비표준 노동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창업을 촉진하거나, 비공식 고용을 줄이거나, 기업과 일부 노동자에게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권장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비표준 노동에는 노동기간 동안의 재정적 취약성을 수반하는데, 이는 노령 연금 전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 고용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이 글에서 분석하는 연금 정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불안정 고용의 극단적 형태 중 하나인 비공식 고용은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급여를 늘리고 공식화 비용을 줄이며 집행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는다.(OECD, 2015<sup>[34]</sup>)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축소하는 동시에 한편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사회급여제도의 재정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전망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불안정 고용의 문제의 경우, 연속적인 기간제 계약이나 위장 자영업과 같은 노동 형태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기여금이 낮은 데서 일부 기안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덤핑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OECD, 2019<sup>[1]</sup>; Spasovaetal., 2017<sup>[15]</sup>) 이러한 노동 형태는 사실상 노동 시장 분절화의 원인 이면서 낮은 사회적 기여금과 급여액을 야기하는 규제 및 정책환경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대응해야만 한다.

이 섹션에서는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공한다. 적은 생애 소득과 경력 단절이 노후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감소 등 비표준 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표준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기여형 및 비기여형 제도의 효과적 조정

기여형, 비기여형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연금 제도 전반, 특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 올바른 조정의 목적은 비표준 노동자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에게 연금제도에 기여하여 수급권을 쌓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1층 비기여형 연금, 즉 거주기반 기초연금과 노인 사회부조제도는 퇴직자의 노동 이력과 무관하게 노후소득의 특정 경계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 안전망의 급여 수준은 수급자가 빈곤선(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제6장) 1층 비기여형 연금의 수준은 이론적으로 각 국의 재분배적 경향에 의존하며, 이는 가장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적정 소득과 재정적 비용 감축, 소득비례제도의 기여 유인 유지 사이에서 찾은 균형의 결과물인 것이다.

기여형 및 비기여형 제도의 건전한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크게 세 가지 주요방법이 있다. 첫째, 1층 제도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 정액 급여로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여형 급여의 수급권을 쌓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예를 들어 칠레,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처럼 안전망 급여를 소득비례 요소에 따라 누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누진 지급률의 선택은 그 자체로 균형의 결과물이다. 누진성을 낮추는 것은 더욱 보편적인 보장을 의미하며, 안전망 제도의 급여 수급으로 인한 낙인을 줄이고, 연금 기여의 회피 유인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누진성이 낮은 것은 안전망 제도가 선별적으로 엄격히 운영되지 않으므로 높은 공공 재정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앞서 말한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 급여와 소득비례 요소에 따른 급여 지급을 합한 경우로는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바탕으로 잘 조정된 제도가 있으면 소득비례연금에 기여 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상의 노인 안전망 제도와 더불어 소득비례연금 수급액을 통해 추가적 보호를 일정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비표준 고용의 경력 기간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노인은 일정 수준의 최저 급여를 받고, 여기에 기여 기간을 바탕으로 한 추가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기여형 연금의 수급 규정이 간단하면 기여형 및 비기여형 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다. 비표준 근로자에 있어서 좋은 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정된 적정 기준 내의 모든 노동소득, 그리고 모든 비표준 노동기간이 연금수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적정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다.

### 비표준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 접근성 개선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적절한 준수 조치(compliance measures)가 필수적이다. 비표준 노동 전체, 특히 플랫폼 노동은 표준 노동 보다 비공식성에 더욱 놓여있다. 위반하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 칠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Valdés-Prieto and Leyton, 2019<sub>[12]</sub>) 의무 기여금 납부율을 상쇄하지 못한다.(Kanbur and Ronconi, 2018<sub>[35]</sub>) 이는 특히 칠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Valdés-Prieto and Leyton, 2019<sub>[12]</sub>)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높은 준수를 위해 공공 부문(세금 및 사회보장 가입)과 민간 부문(은행 거래, 플랫폼 노동)의 데이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의 더욱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노동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문제를 야기하고, 덧붙여 행정 역량의 증대 및 노동, 사회보장, 세무 행정 간 조정 제고를 필요로 할 것이다.(OECD, 2008<sub>[36]</sub>)<sup>32</sup>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피고용 근로와 자영업 사이의 사각지대(shadow area)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와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피고용인인지 자영업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인으로 본다면 플랫폼은 연금 기여금 중 고용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의 경우, 플랫폼은 표준 고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고 해당 고용주 기여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

자영업자로 고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용 근로를 수행하는 위장 자영업자의 경우, 이들을 피고용 근로자로 분류하면 연금 보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노동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Spasova et al.(2017<sub>[15]</sub>)에서는 위장 자영업을 활용하는 고용주들에게 과태료를 올리고 기여금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프리랜서 등 한 명의 고객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자영업자를 위한 복잡한 해결책을 도입했다. 고객이 기여금 중 고용주 부담분을 납부하게 하거나, 선정된 제품(출판물 등)에 대하여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sup>33</sup> 자발적 연금제도, 특히 자동 가입이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과 함께 기여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 제도의 보장범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연금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모든 노동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정책은 근로 기간에 관계 없이 기간제 계약이 연금 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소 근로 조건이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현재 파견직, 0시간 계약, 계절 노동은 일부 국가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최소 근로 조건이 존재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기여형 1층 연금(기여형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은 OECD 국가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운영되며, 기여 기간에 따라 노후 급여가 증가한다. 이러한 재분배적 수단은 기여 기간을 검증하는 규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표준 근로자의 경우 경력 단절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연금 수급액과 소득을 밀접히 연계시키는지, 그리고 실업 기간 중 연금 크레딧 같이 실업의 충격을 완화해 줄 장치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의 충격이 연금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3이 평균적으로 조금 넘었다. 표준 근로자의 연금은 실업 기간 1년마다 OECD 평균 약 1.3% 감소하고(제5장, 그림 5.12) 소득과 연금액이 1:1로 연계하는 경우 1년마다 2.7%씩 감소했다.

비표준 노동자의 경우, 경력 단절이 소득비례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급액이 훨씬 적어졌다. 왜냐하면 비표준 노동자는 더욱 낮은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경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액도 낮추기 때문이다. 우선 비표준 노동자는 실업 보호 제도를 직접적으로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여러 유형의 자영업자와 몇몇 기간제 노동자 집단 등) 둘째, 비표준 노동자는 고용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 기간도 더욱 짧고 실업급여액도 적다.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을 연금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충격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적 근로자를 위한 실업 정책을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 의무화

표준 근로자에게 소득비례제도를 강제로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는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적 니즈(needs)를 과소평가하는 등 근시안적 행태로 인해 노후 자금을 과소 저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기여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가부장적(paternalistic) 접근법으로 이어진다. 자영업자도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근시안적 행동방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둘째, 효과적인 보호를 노후 소득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 기여자가 충분해야 한다. 수명 증가로 인한 리스크, 즉 개개인의 기여 금액으로 연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욱 오랜 기간 생존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등에 연금 제공자가 적절히 대처하려면 충분한 수의 기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표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비표준 동자를 강제적 연금제도에 완전히 포괄시키면, 고용주와 노동자가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비표준 고용을 악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재정적 유인을 제한한다.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계된 금융자산이나 주택 자산 등을 보유하기 때문에 연금에 기여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번 장의 앞에서 다루었듯이, 자영업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강제적 연금 제도의 가입 배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장은 자영업자 중 가장 부유한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 정책은 아마도 미래의 자산을 근거로 한 복잡한 자산조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왜 부유한 표준 근로자는 강제적 연금제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 노동자 집단을 높은 소득, 또는 높은 (미래의) 자산에 근거하여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연금 보험 내 동등한 대우를 실현하려면 비표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재분배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표준 노동자의 기여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

더욱 많은 노동자에게 연금 적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용 노동자에게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디폴트 플랜(default plan)을 통해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동등한 대우는 자동가입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표준 노동자의 탈퇴율이 높을 수도 있고, 피고용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 근로자의 기여금은 고용주 납부의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비표준 노동자도 표준 노동자만큼 정책적인 유도에 순응적일 수 있다. 특히 기여금 부분은 세금 징수 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을 향한 움직임

앞에서 다루었듯 피고용 노동자와 독립 노동자 간 연금 규정의 대략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좋은 주장이 많다. 노동 유형별로 연금 규정을 일원화하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총 기여율이 균등화되면서 자영업자는 피고용인과 근로자의 기여금 총 합을 납부하게 된다. 완전한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은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 평가와 관련한 문제다.(다음 하위 섹션 참고)

여러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낮은 기여율을 적용하여 자영업의 경제적 이점을 살리고 비공식 노동을 사용하려는 유인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여율을 공적 보조금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책은 낮은 미래 급여액을 야기하는 수준까지 사회적 비용이 뒤따라 올 것이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가 은퇴 후의 니즈(needs)를 과소평가하는 근시안적 행태가 자영업 촉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오히려 촉진시키게 된다.

낮은 연금 수급액을 야기하는 연금 기여금의 축소는 자영업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여금의 부과 소득을 정하는 규정은 피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최대한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시켜야 하며, 기여금의 부과 소득을 통해 동일한 총 기여율은 동일한 수급액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누가 부족한 기여금을 충당하느냐는 것이다.

몇몇 취약 자영업자가 연금 기여금 전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은 기여율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백하게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어야 한다. 적어도 저소득자에 대해서 조세나 연금 기여금 풀(pool) 재원의 보조금 지원금 기여요소를 통해 낮은 기여율을 보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에게 낮은 총 기여율을 허용하려면 그 정책의 재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보조금으로 상쇄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될 것이고, 자영업 촉진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가 된 미래 퇴직자를 불리하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낮은 소득의 자영업자(프랑스와 라트비아의 마이크로 기업이나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의 정률 기여금 제도 등)나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업자(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게 적용되는 특별 연금 및 과세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의 낮은

연금 기여금을 보완하는 장치 없이 기여금 감면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즉, 간소화된 연금 혹은 조세 제도로 인해 낮은 연금액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표준 근로자와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 규정을 더욱 잘 통합하면, 직업 및 기업 간 연금 이동성을 촉진한다. 연금 이동성이 중요한 것은 비표준 노동자의 경우 이직이 잦고 다양한 유형의 여러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표준 노동자의 사적 연금 수급액 이동을 완벽히 보장하려면 개인 연금 계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Hu and Stewart, 2009<sup>[37]</sup>)

### 그러나 기여 기반의 완벽한 통합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을 피고용 근로자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용 근로자의 경우 기여율(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분 모두)은 총 임금에 적용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총 임금에 완벽히 상응하는 대상이 없다.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은 비용을 공제한 수입이나 소득(의 일부)에 따라 결정하거나 소득 유형과 엄격히 연계되지 않는다. 기여 기반의 선택은 연금 수급액 적립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수입을 축소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자영업자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업무 관련 경비를 공제하거나 소득을 때에 따라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으로 나눌 때, 그리고 때에 따라 기여 기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갖는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자재 비용과 필요 자본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신뢰성 있는 기여 기반은 총 수입이나 그 일부일 것이다. 수입을 기여 기반으로 사용하면 세금 계산 시 복잡한 비용 공제와 관련 서류 처리에 쓰이는 고정 비용은 불리하게 작용한다.(OECD, 2008<sup>[36]</sup>) 그러나 모든 자영업 근로자에 대해 수입을 기여 기반으로 하는 것은 특히 원자재 비용과 필요 자본이 높은 경우 적절치 못하며, 다양한 유형의 자영업을 상이하게 취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단독 사업자처럼 원자재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자영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기여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여 기반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유형의 자영업자를 대체로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소득(과세소득)은 개념적으로 세전 순 임금에 가깝기 때문에 연금 규정 간 긴밀한 통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합 기여율을 과세소득에 적용하면 더욱 낮은 기여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총 임금은 고용주의 기여금만을 제한 액수인 반면, 과세소득은 모든 기여금을 제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의 총 기여율이 20%이며 이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총 임금이 100이면 세전 순 임금은 90이고 총 기여금은 20이 된다. 동일 과세 소득 90의 자영업자가 이에 대해 20%의 기여율을 납부하면 총 기여금은  $20\% * 90 = 18$ 이 되므로 피고용인의 총 기여율보다 낮아진다. 자영업자에 대해 총 임금과 세전 순 임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높은 명목 기여율을 설정한다면 조금 더 적절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 $20/90 = 22.2\%$ 이므로 기여금이 20이 도달하기 위해 위 사례에 과세소득 기준 명목 기여율은 22.2%) 같은 이유로, 통합 기여율은 총 소득(기여금을 제하기 전)에 적용하면, 총 임금과 반대로 총 소득은 총 기여를 포함하므로 기여금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에 높은 명목 기여율을 적용하면 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신 조정 과세소득(rescaled taxable income)이나 총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총 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sup>34</sup> 하지만 스웨덴의 공적연금처럼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과세소득을 기여 기반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여 기반을 설정할 때 상당 수준의 재량을 제한하는 피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연금 규정을

일원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여 기반 설정 시 재량을 제한해도 낮은 기여 수준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엄격한 노동 감사 등 적절한 준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득 통제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실시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을 측정 수익 및 실제 생활 수준과 비교 대조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 축소신고 사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Bucci, 2019<sup>[27]</sup>)

## 결론

비표준 노동은 매우 다양한 노동자 집단을 의무하며, 가장 흔한 형태의 비표준 노동은 자영업, 시간제 노동, 기간제 근로이다. 비표준 고용은 OECD의 고용 중 1/3이상을 차지한다. 시간제 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3배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영업은 특히 노인 근로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세계화, 자동화,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노동 시장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비표준 노동, 특히 플랫폼 기반 택시 운전처럼 새로운 기술을 의존하는 직업들이 크게 확대되었다. 많은 경우 비표준 노동은 낮은 소득을 수반하며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통 근로자의 장기 재정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비표준 노동자가 연금제도에 어떻게 가입할지는 점점 중요해 질 수 있는 문제다.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안정적인 선형 경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동 형태의 발달은 미래 퇴직자 세대의 노후소득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최근 변화를 보면 연금제도의 설계 및 재정 방식을 급격히 변경하기보다 포용적이고 통합된 연금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비표준 노동자를 위한 연금 규정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며, 표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르거나 특히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는 연금 기여액의 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 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연금 가입과 관련해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몇몇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게다가 더욱 비공식적인 경향을 띤다. 하지만 연금 제도는 가입, 기여금, 수급액 측면에서 표준 노동자와 비표준 노동자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은퇴 전후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고, 제도 내 공평한 대우를 제공하고, 위험을 최대한 넓게 분산시키고, 직종간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영업

- 자영업자는 피고용자보다 적게 기여하며 은퇴 시 낮은 연금 급여액을 받는다. OECD 15개국 평균 은퇴한 중위 자영업자는 은퇴한 피고용인에 비해 22% 낮은 공적연금을 수급한다.
- 자영업자는 피고용인보다 다소 많은 자산을 보유하지만 이들의 추가 자산은 낮은 급여액 수준을 보충하기에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 10개 OECD 국가만 자영업자가 피고용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적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기여해야 한다.
-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연금 규정이 유사한 경우에도 기여 기반, 즉 기여금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이 두 노동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 18개 국가에서 자영업 근로자가 소득비례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기여율 감면, 소득 기반

설정 시 재량권, 최저 소득 기준을 통해 피고용인보다 적게 기여할 수 있다. 가령 라트비아, 폴란드, 스페인, 터키에서는 지정 범위 내에서 소득 기반을 고를 수 있다.

- 호주, 덴마크,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6개국에서는 자영업자가 피고용인과 달리 소득비례 제도에 강제 가입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국가는 자영업자의 기여 기반으로 몇몇 소득비례 지표를 사용한다. 여러 국가는 소득의 일부(체코는 50%, 슬로바키아는 67%, 슬로베니아는 75% 등)에 대해서만 기여율을 적용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저 기여 기반이나 최저 소득 기준을 설정해 둔다. 최저 기여 기반은 자영업자가 최소 금액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경우 저소득자의 유효 기여율이 높아진다. 최저 기여 기반은 캐나다,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의 경우 평균 임금의 10%부터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60%까지 다양하다.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가입범위를 줄이는 최저 소득 기준은 8개 OECD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평균 임금의 11%부터 슬로바키아와 터키의 경우 약 50%에 이른다.
- 기여금을 연금액과 연계하는 국가 중 절반에서는 강제적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여율과 피고용인 및 고용주의 기여율 합이 동일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나머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더 낮다.
- OECD 평균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소득이 순 평균 임금과 동일한 자영업자들은 경력 기간 내내 의무기여금만 납부한 경우 민간 부문의 평균 소득 피고용인의 이론적 연금의 79%에 해당하는 노령 연금을 수급한다. 이러한 상대적 연금액은 덴마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 50%,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등 회원국 1/3 이상에서는 90%에 달한다.
-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영국은 피고용인이 직장 연금에 자동 가입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 기여율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처럼 자영업 유형에 국가 내에서 상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은 가령 농부를 위한 개별제도를 운영한다.
-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주요 고객 몇 명에게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연금 가입 격차를 줄이고자 특별 규제를 도입했다.

#### 시간제 노동

- OECD 국가의 시간제 노동자 3명 중 1명은 더 길게 일하길 원하고, 나머지 2명은 본인 선택으로 시간제 노동에 종사한다. 65~74세 노동자 중에서는 1/3이 노동자다.
- 시간제 노동자들은 비기여형 급여, 최저연금, 기여형 기초연금, 확정급여형 제도의 기준 임금 규정을 통해 연금 제도 내 재분배 장치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연금 규정은 표준 노동자 규정과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연금 수급액을 누적하기 위한 최저 소득 및 최소 근로 조건의 존재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은 연금수급액을 적립하지 못한다.
- OECD 국가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최저 소득 및 최소 근로 조건이 존재한다. 덴마크,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는 강제적 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소 근로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14개국에서는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강제적 연금 수급액이 누적된다. 소득 기준은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경우 평균 소득 5% 미만에서 터키의 경우 평균 소득 50% 초과까지 다양하다.



### 기간제 노동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연금 보험 규정은 표준 근로자 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헝가리, 한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파견 노동자, 청년 노동자, 계절 노동자, 수습생, 견습생의 기여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데, 이는 낮은 연금수급액으로 이어진다.
-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연금 규정과 표준 근로자 규정이 완전히 통합되어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실업 기간이 길고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수급액이 덜 누적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금액은 표준 근로자보다 적다.
- 기간제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을 위한 재직 기간이 문제가 된다. 퇴직 연금에서 고용주의 기여금을 노동자의 소유로 인정받는 재직기간은 뉴질랜드, 터키,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

비표준 노동자의 연금과 관련한 과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같은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 잘 조정된 기여형 및 비기여형 연금 제도는 특히 자영업자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수형하는 개인에게 특히 중요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노인 안전망을 보장하고 소득비례 연금의 명확한 기여 유인을 실현할 수 있다.
- 기여형 제도의 단순한 수급 규정은 기여형 및 비기여형 제도의 조정을 상당히 촉진한다.
-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가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최저 소득 및 최소 근로 조건을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 모든 노동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정책은 기간제 노동 계약이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강제적 연금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최소 근로 조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 피고용 근로자에게 강제적 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영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된다. 또한 강제적 연금에 표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비표준 노동자를 완전히 포괄하면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비표준 노동을 악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재정적 유인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노동 유형 간 연금 규정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총 기여율이 균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영업자는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기여금 부담분을 합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 피고용인이 자발적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디폴트 제도 (default plans)를 활용하여 자발적 퇴직연금을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등한 대우는 자동가입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만약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 연금의 기여금 감면을 자영업 촉진이나 일부 사회적 정책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최소한 저소득자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기여금 부족분을 보충하여 연금 수급액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간에 그리고 다양한 자영업 형태 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과세소득을 기여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과세소득 기준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자영업자의 총 명목기여율을 높이거나 또는 총 임금에 더욱 상응하도록 조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기여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총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한 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 기준의 기여 기반을 크게 제한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자 간 공제 가능한 비용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분할 간단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자영업자가 기여 기반을 정할 때 갖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간 연금 규정 통합을 위한 중요 과정이다. 그러나 기여 기반 설정 시 자율성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면 낮은 기여금의 납부를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준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연금 정책이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에 대하여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다. 낮은 실업 급여로 인해 비표준 노동이 낮은 연금수급액으로 이어진다면 실업 정책을 변경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주석

1. 자영업자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는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 가령 Di Marco(2006<sub>[43]</sub>)에서는 이들의 소득이 EU-SILC 초기 과정에서 12%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2. OECD/EU(2017<sub>[41]</sub>)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 지위 대비 영입 사업은 지속성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보인다.
3. 또한 기간제 고용은 소득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기간제 고용 기간으로 인해 심지어 27년 뒤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García-Pérez, Marinescu and Vall Castello, 2018<sub>[49]</sub>)
4. 자영업 소득은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 수입원으로 분류된다.
5.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병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훨씬 흔하게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기그경제(gig-economy) 관련 근로자의 58%가 소득 보충을 위해 기그 경제 종사하는 정규직 피고용인이었다.(CIPD, 2017<sub>[46]</sub>)
6. 출처: 각국 제공 정보 및 Spasova et al.(2017<sub>[15]</sub>)
7. 이는 Pettinicchi and Börsch-Supan(2019<sub>[13]</sub>)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두 저자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은퇴한(혹은 전직) 자영업자와 은퇴한(혹은 전직) 피고용인은 노동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자영업자나 피고용인으로 보낸 은퇴자들 말한다. 이 분류는 Sharelife, 또는 Share의 Wave7을 사용하여 6개월 이상인 과거의 고용 기간에 대한 회상적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8. 자영업자들은 퇴직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하더라도 가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예를 들어, 일부 자영업자 집단을 위한 연금 제도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제도 대비 저축 관리에 필요한 재정 교육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Transamerica, 2019<sub>[8]</sub>) 또한 직장 연금의 자동가입제도는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 등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드물다. 자동가입 제도가 있어도 고용주가 기여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유인이 없다.
9. 출처: Pettinicchi and Börsch-Supan(2019<sub>[13]</sub>) 자료를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기존 통계는 SHARE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됨.
10. 이는 자영업자를 위한 노인 사회보호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와 간 소득 격차가 과거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인구집단 효과(cohort effects)의 결과일 수도 있다.
11. 순 유동자산에는 부동산, 모기지, 사업 가치 등 총 자산의 중요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 채권, 사업 매도 대금과 같은 금융 자산은 포함된다.
12.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40%가 401k나 403k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피고용인의 67%와 거리가 있다.(Transamerica, 2019<sub>[8]</sub>)
13. 네덜란드의 다른 자료를 보면 은퇴 직후 자영업자의 소득(주거비 제외)은 피고용인에 비해 크게 하락하며, 전자의 하락 폭은 후자의 중위값 17%에 비해 24%로 매우 크다. 이 7%p의 격차는 낮은 퇴직연금에 의한 것으로, 퇴직연금액이 낮은 것 자체만으로도 22%p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퇴 전에 모기지상환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5%p 하락한다. 자영업자의 개인 저축액이 높으면 이는 8%p 더 하락한다. 남은 2%p는 기초연금 때문이다.(Zwinkels et al., 2017<sub>[47]</sub>) Mastrogiacomo and Alessie(2015<sub>[38]</sub>) 네덜란드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퇴직 저축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4. 연금의 여타 재분배 기능은 기여 기반 결정 시 기여금을 낮추기 위해 자율성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는 체코와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납부한 기여액이 연금수급액보다는 소득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수많은 소득비례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정률 기여로 충당하는 일본의 기초연금처럼 재분배 수준이 매우 낮은 제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5.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별할 수 없자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자영업에서 나온 소득은 사회보장기여에서는 노동 소득으로, 국민 계정에서는 자본 소득으로 취급되곤 한다.(Gollin, 2002<sup>[40]</sup>)
16. 또한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저소득 피고용인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용인은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지만 경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집단 교섭 활동 조직을 금지한다. 위장 자영업, 또는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에게는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OECD, 2019<sup>[11]</sup>) 하지만 소득 상황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주된 정치적 문제 중 하나였다.(Freedman and Chamberlain, 1997<sup>[39]</sup>) 심지어 1940년에도 논의된 적이 있다.(Wynn and Paz-Fuchs, 2019<sup>[45]</sup>) 반면 고소득 가능성을 가진 노동자들은 임금을 억제하기도 하는 임금 정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일 때에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자영업자의 거의 절반은 독립적 노동의 목적으로 높은 소득을 쫓는다.(Transamerica, 2019<sup>[8]</sup>)
17.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영국에서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기초연금에만 기여해야 한다.
18. 폴란드에서 피고용인은 피고용인자본제도(Employee Capital Plans)에 자동 가입된다. 이 제도는 장기적 저축 제도로, 자발적 제도인 피고용인연금제도(Employee Pension Programs)와 달리 60세가 되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19.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핀란드는 검증이 어려운 제약조건을 부과한다. “자영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동등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에 상응”하도록 기여 기반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https://www.etk.fi/en/the-pension-system/pension-security/pension-coverage-andinsurance/self-employed/>)
20. 대부분의 국가는 피고용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여 기반의 상한도 설정한다.
21. 칠레 등 몇몇 국가에서는 자발적 가입도 가능하다.
22. 리투아니아는 엄격한 최저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기여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축소된 기간으로 인정한다.
23. 포르투갈에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평균 기준소득의 21.4%에 해당하지만 특정 유형의 자영업자의 경우 기여율이 더 높아서 25.1%에 달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농업 종사자들의 기여율이 17%이며, 다른 자영업자들은 18.5%를 납부한다. 둘 모두 각각 5.8%와 4.3%에 해당하는 연방 예산 재원의 소위 ‘파트너 기여(partner contribution)’의 혜택을 받는다.
24. 이 예측치에는 1층 급여가 포함되었으나 자발적 제도나 특정 자영업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제도(직종 또는 농부 등)는 포함하지 않았다.
25. 이는 자영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 모든 기여금과 여러 업무 관련 경비를 제한 과세소득(평균 총임금에 상응)을 보면 해당 자영업자가 “동일한 조건”의 평균 임금 노동자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불구한 것이다.
26. 칠레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2018년 2.7%에서 2028년 피고용인과 같은 수준인 10%로 상승했다.
27. 탈퇴하면 고용주만이 법정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연금액은 비율에 맞춰 하락한다.
28. 적어도 노동 소득의 83.3%가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포르투갈에서는 자영업 근로자가 한 명의 고객, 즉 ‘주문 고객’에게 자신의 소득 중 50~79%가 나오는 경우 2019년부터 7%의 사회보장기여율이 적용된다. 소득의 80% 이상을 한 명의 주문 고객에게 창출하면 기여율은 10%가 된다. 이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고객은 기여액을 내지 않는다. 2019년 전에는 자영업 근로자가 자신 소득의 80% 이상을 주문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주문 고객이 5%의 기여율을 납부했고, 비율이 그보다 낮으면 아무런 금액도 지불하지 않았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2007년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수입의 75%를 창출하는 노동자를 위해 피고용 자영업자(trabajador autónomo económicamente dependiente, TRADE)라는 특별 분류를 만들었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 연금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30.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피고용인은 2003년에, 60시간 이상은 2010년에,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비표준 노동자는 2018년에 포함되었다.
31. 또한 정부는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재정 지원 가운데 12%를 예술가인 연금 제도에 배정하기 시작했다.
32. 기여 의무의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분석하고(OECD, 2019<sup>[44]</sup>; Mineva and Stefanov, 2018<sup>[4]</sup>) 자영업자의 수입 및 비용 검증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자세한 내용은 OECD, 2018<sup>[42]</sup>; Bigio and Zilberman, 2011<sup>[50]</sup> 참조)
33. 고용주 부담의 급여세는 순 임금으로 모두 이어지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자영업자 혼자 기여금 전액을 부담할 때 보다 이들의 순 소득을 덜 감소시킨다.
34. 피고용인의 기여율( $c_e$ )과 고용주의 기여율( $c_r$ ), 피고용인에 대하여 지불되는 총 기여율  $W_g(c_r + c_e)$  이 주어졌을 때,  $W_g$ 는 총 임금을 가리킨다. 세전 순 임금( $W_n$ )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는 곧  $(c_r + c_e) W_n / (1 - c_e)$ 와 같다. 자영업자의 기여율( $c_{se}$ )이 과세소득( $I_n$ )에 적용된다면 기여는  $c_{se} I_n$  이 된다.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이 피고용인의 세전 순 임금과 동일하다면,  $c_{se} = \frac{(c_r + c_e)}{(1 - c_e)}$  인 경우 둘 모두 같은 기여금을 납부한다. 이는 즉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피고용인의 총 임금이 적용되는 총 기여율보다 커야 함( $c_{se} > c_r + c_e$ )을 의미한다. 또는, 동일한 과세소득을 가진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에 대하여 동일한 기여율을 적용( $c_{se} = c_r + c_e$ )한다면 총 기여금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는 기여 기반을  $I_b - \frac{I_n}{1 - c_e} = \frac{1_g - I_b(c_r + c_e)}{1 - c_e} = \frac{I_g}{1 + c_r}$  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을 완벽하게 통합하려면 과세소득을  $\frac{1}{1 - c_e}$  만큼 조정하거나 총 임금의 일부, 즉  $\frac{1}{1 + c_r}$  만을 포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50] Bigio, S. and E. Zilberman (2011), “Optimal self-employment income tax enforc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5/9-10, pp. 1021-1035, <http://dx.doi.org/10.1016/j.jpubeco.2010.06.011>.
- [28] Bruckner, C. and T. Hungerford (2019), *Failure to Contribute: An Estimate of the Consequences of Non- and Underpayment of Self-Employment Taxes by Independent Contractors and On-Demand Workers on Social Security*,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https://crr.bc.edu/wp-content/uploads/2019/01/wp\\_2019-1.pdf](https://crr.bc.edu/wp-content/uploads/2019/01/wp_2019-1.pdf).
- [27] Bucci, V. (2019), “Presumptive taxation method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http://dx.doi.org/10.1111/joes.12304>.
- [32] Choi, J. (2009), “Pension Schemes for the Self-Employed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24535827846>.
- [46] CIPD (2017), *To gig or not to gig? Stories from the modern economy*, CIPD Survey Report, London, United Kingdom., [https://www.cipd.co.uk/Images/to-gig-or-not-to-gig\\_2017-stories-from-the-moderneconomy\\_tcm18-18955.pdf](https://www.cipd.co.uk/Images/to-gig-or-not-to-gig_2017-stories-from-the-moderneconomy_tcm18-18955.pdf).
- [19] Colombier, N. et al. (2008), “Risk aversion: an experiment with self-employed workers and salaried workers”,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15/10, pp. 791-795, <http://dx.doi.org/10.1080/13504850600749149>.

- [16] D’Arcy, C. (2015), *The self-employed and pensions*, Resolution Foundation, London, United Kingdom,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app/uploads/2015/05/Self-employment-and-pensions.pdf>.
- [43] Di Marco, M. (2006), “Self-Employment Incomes in the Italian EU SIL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arative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Helsinki, 6-7 November 2006*, <https://www.stat.fi/eusilc/marco.pdf>.
- [18] Ekelund, J. et al. (2005), “Self-employment and risk aversion—evidence from psychological test data”, *Labour Economics*, Vol. 12/5, pp. 649-659, <http://dx.doi.org/10.1016/j.labeco.2004.02.009>.
- [39] Freedman, J. and E. Chamberlain (1997), “Horizontal Equity and the Taxation of Employed and Self-Employed Workers”, *Fiscal Studies*, Vol. 18/1, pp. 87-118, <http://dx.doi.org/10.1111/j.1475-5890.1997.tb00255.x>.
- [49] García-Pérez, J., I. Marinescu and J. Vall Castello (2018), “Can Fixed-term Contracts Put Low Skilled Youth on a Better Career Path? Evidence from Spain”, *The Economic Journal*, Vol. 129/620, pp. 1693-1730, <http://dx.doi.org/10.1111/eoj.12621>.
- [40] Gollin, D. (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0/2, pp. 458-474, <http://dx.doi.org/10.1086/338747>.
- [26] Hurst, E., G. Li and B. Pugsley (2010), *Are Household Surveys Like Tax Forms: Evidence from Income Underreporting of the Self Employe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dx.doi.org/10.3386/w16527>.
- [37] Hu, Y. and F. Stewart (2009), “Pension Coverage and Informal Sector Workers: International Experiences”,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27432837078>.
- [20] ISSA (2012), *Handbook on the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coverage to the self-employe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https://socialprotection-humanrights.org/resource/handbook-on-the-extension-of-social-security-coverage-to-the-self-employed/>.
- [33] Itinerari Previdenziali (2019), *The Italian Pension System: Report n.6*, Research and Study Centre of Itinerari Previdenziali, Milano, Italy, <https://www.itinerariprevidenziali.it/site/home/biblioteca/publicazioni/sixth-report-on-the-italian-pension-system.html>.
- [35] Kanbur, R. and L. Ronconi (2018), “Enforcement matters: The effective regulation of labour”,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57/3, pp. 331-356, <http://dx.doi.org/10.1111/ilr.12112>.
- [17] Karpowicz, I. (2019), “Self-Employment and Support for The Dutch Pension Reform”, *IMF Working Papers*,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P/2019/WPIEA2019064.ashx>.
- [21] Kautonen, T. et al. (2010), ““Involuntary self-employment” as a public policy issue: a cross-country European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16/2, pp. 112-129, <http://dx.doi.org/10.1108/13552551011027002>.
- [29] Kim, J. and H. Lee (2012), *Strategy for establishing a link betwee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http://www.kipf.re.kr/storage/Publish/Attach/2013/08/StrategyforEstablishingALinkBetweentheEarnedIncomeTaxCreditandSocialInsuranceSubsidyPrograms\\_%EA%B9%80%EC%9E%AC%EC%A7%84\\_121231\(0\).pdf](http://www.kipf.re.kr/storage/Publish/Attach/2013/08/StrategyforEstablishingALinkBetweentheEarnedIncomeTaxCreditandSocialInsuranceSubsidyPrograms_%EA%B9%80%EC%9E%AC%EC%A7%84_121231(0).pdf).
- [14] Lichtenstein, J. (2010), “Saving for Retirement: A Look at Small Business Owners”, *Working Paper, Office of Advocacy,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Washington, United States*,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rs362tot\\_0.pdf](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rs362tot_0.pdf).
- [25] Martinez-Lopez, D. (2012), “The underreporting of income by self-employed workers in Spain”, *SERIEs - Journal of the Spanish Economic Association*, Vol. 4/4, pp. 353-371, <http://dx.doi.org/10.1007/s13209-012-0093-8>.
- [38] Mastrogiacomo, M. and R. Alessie (2015), “Where are the Retirement Savings of Self-Employed? An

- Analysis of Unconventionall Retirement Accounts”, *SSRN Electronic Journal*, <http://dx.doi.org/10.2139/ssrn.2549459>.
- [3] Milanez, A. and B. Bratta (2019), “Taxation and the future of work: How tax systems influence choice of employment form”,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4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0f7164a-en>.
- [4] Mineva, D. and R. Stefanov (2018), *Evasion of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uropean Platform Undeclared Work, <https://ec.europa.eu/social/BlobServlet?docId=20207&langId=en>.
- [30] MISSOC (2018),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https://www.missoc.org/>.
- [1] OECD (2019),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9991266>.
- [10] OECD (2019), *Part-time and partly equal? Gender inequality and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nds*, OECD Publishing, Paris.
- [44] OECD (2019), *The Sharing and Gig Economy: Effective Taxation of Platform Sellers : Forum on Tax Administr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74b61f8-en>.
- [6] OECD (2019), *Working Better with Ag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c4d4f66a-en>.
- [42] OECD (2018), *Tax Policy Reforms 2018: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4468-en>.
- [22] OECD (201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6943-en>.
- [7] OECD (2018),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Connecting People with Job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88256-en>.
- [5]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
- [9]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81318-en>.
- [11]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34]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24] OECD (2015),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43507-en>.
- [23] OECD (2009), *Taxation of SMEs: Key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ECD Tax Policy Studies, No. 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024748-en>.
- [36] OECD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08-en](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08-en).
- [41] OECD/EU (2017), *The Missing Entrepreneurs 2017: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83602-en>.
- [13] Pettinicchi, Y. and A. Börsch-Supan (2019), “Retirement Income Adequacy of Traditionally Employed and Self-Employed Workers: Analysis with SHARE Data”, *MEA Discussion Papers, Munich Center for Economics of Aging*, [http://mea.mpisoc.mpg.de/uploads/user\\_mea\\_discussionpapers/1922\\_MEA\\_DP\\_02-2019.pdf](http://mea.mpisoc.mpg.de/uploads/user_mea_discussionpapers/1922_MEA_DP_02-2019.pdf).
- [2] Pries, M. and R. Rogerson (2019), “Declining Worker Turnover: the Role of Short Duration Employment Spells”, *NBER Working Paper 26019*, <http://dx.doi.org/10.3386/w26019>.
- [48] Saez, E., B. Schoefer and D. Seim (2019), “Payroll Taxes, Firm Behavior, and Rent Sharing:

- Evidence from a Young Workers' Tax Cut in Swede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9/5, pp. 1717-1763, <http://dx.doi.org/10.1257/aer.20171937>.
- [31]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https://www.ssa.gov/policy/docs/prodesc/ssptw/>.
- [15] Spasova, S. et al. (2017),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People Working on Non-Standard Contracts and as Self-Employed in Europe: A study of national policies*,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http://dx.doi.org/10.2767/700791>.
- [8] Transamerica (2019), *Self-Employed: Defying and Redefining Retirement*, Transamerica Institute, [https://transamericacenter.org/docs/default-source/retirement-survey-of-workers/tcrs2019\\_sr\\_self-employedretirement.pdf](https://transamericacenter.org/docs/default-source/retirement-survey-of-workers/tcrs2019_sr_self-employedretirement.pdf).
- [12] Valdés-Prieto, S. and S. Leyton (2019),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frequency vs. earnings”, *Centro Latinoamericano de Políticas Económicas y Sociales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Vol. Documento de Trabajo N° 64, [https://clapesuc.cl/assets/uploads/2019/10/valdes\\_and\\_leyton-social-insurance-and-relative-earnings\\_v13.pdf](https://clapesuc.cl/assets/uploads/2019/10/valdes_and_leyton-social-insurance-and-relative-earnings_v13.pdf).
- [45] Westerveld, M. and M. Olivier (eds.) (2019), *Flexicurity outsid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Reengineering social security for the new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 [47] Zwinkels, W. et al. (2017), “Zicht op zzp-pensioen”, *Netspar Design Paper 91, Tilburg, Netherlands*.





## 제 3 장

#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

이 장에서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설계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징이 노동자 분류에 따라 가입, 기여, 연금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이 분석은 적립식 연금이 비표준 노동자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게끔 비표준 노동 상황에 적합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론

이 글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주제에 이어 적립식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비표준 노동자의 상황을 살펴본다. 전일제 종신 고용 관계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부과식(PAYGO) 연금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연금 수급액 수준도 낮다. 따라서 보충적인 적립식 연금 제도는 이들의 노후 전망 개선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통해 비표준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적립식 연금제도의 설계가 이들의 구체적 필요와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이 글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설계가 비표준 노동자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게끔 비표준 노동 상황에 적합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적립식 연금의 설계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징이 노동 분류에 따라 가입, 기여, 연금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sup>1</sup> 이 분석은 여러 분류별 비표준 노동자의 적립식 연금 이용 현황에 주목하고 가입률 및 기여 수준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접근법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준 노동자의 노후 소득 제공에 있어 적립식 연금의 역할(The role of funded pensions in providing retirement income to people in non-standard forms of work)’에 관한 OECD 연구의 일환이다.<sup>2</sup>

비표준 노동자들은 전일제 종신 피고용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제도로부터의 예상 연금 소득도 낮다. 적립식 연금제도는 대부분 자영업자의 접근성이 낮은 퇴직연금을 통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한 참여도는 피고용 근로자에 비해 낮다. 일부 국가에서는 적립식 제도에서 자영업자에게 낮은 수준의 기여금을 요구하거나 자영업자가 피고용 근로자만큼 저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들의 미래 노후 소득을 축소시킨다. 시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도 전일제 종신 피고용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립식 연금 가입률이 낮다. 사실 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최저소득, 최소 근로 시간, 최소 고용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연금제도 가입률은 더 낮게 나타난다. 게다가 퇴직연금의 경우 최소 재직조건이 존재하고 연금 수급권 및 자산의 한정된 이동성으로 인해 이직이 잦은 노동자,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연금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은퇴연령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득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심한 노동자들의 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앨 수 있지만 노후소득 적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증가하는 비표준 노동인구에 대응하려면 몇몇 국가에서는 비표준 노동자가 보완적 연금제도에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립식 연금제도의 설계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OECD 사적 연금규제 핵심원칙(Core Principle of Private Pension Regulation)에 부합시켜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비표준 노동자들이 제도 가입에서 배제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득, 근로 시간, 고용 기간, 계약 유형을 기반으로 한 수급 조건을 제한하거나 없애야 한다. 개인연금제도의 이용에 있어 근로자 분류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최대한 빨리 수급액을 축적할 수 있도록 최소재직 요건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각국은 이직에 따른 연금수급권과 연금자산의 이동성을 촉진해야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섹션 2에서는 다양한 분류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립식 연금의 공식적, 실질적 이용을 분석한다. 섹션 3에서는 기여율, 기여 한도, 기여금 납부 유예와 관련하여 근로자 간 차이를 살펴본다. 섹션 4에서는 다양한 근로자의 분류에 따라 연금소득 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립식 연금의 설계적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 적립식 연금의 공식적, 실질적 이용

여러 공식적 접근 방법과 수급 조건의 조합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별 근로자의 실질적인 적립식 연금 이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분류의 근로자에 대한 적립식 연금의 이용 범위는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축적하여 은퇴 후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여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먼저 분류별 근로자의 적립식 연금에 대한 공식적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적립식 연금의 실질적 가입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수급 조건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각국의 근로자 분류에 따른 실질적 참여율 통계를 분석할 것이다.

### 공식적 가입

분류별 근로자의 적립식 연금에 대한 공식적 가입은 먼저 적립식 연금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적 가입은 적립식 연금제도가 퇴직연금인지, 혹은 개인연금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은 연금제도를 만드는 단체(연금 스폰서)와의 고용 관계나 직업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나 고용 단체,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협회(전문직 자영업자 등)는 공동으로, 또는 별도로 퇴직연금을 수립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제도는 고용 관계와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제공자 역할을 하는 연기금이나 금융 기관이 연금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 또한, 퇴직 및 개인 연금제도 내에서 고용주 및/또는 피고용인의 참여는 의무적일 수도, 자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뒤에서 분석하게 될 적립식 연금에 대한 분류별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도, 또는 실질적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적립식 연금제도의 근로자 분류별 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표 3.1은 OECD 및 비OECD G20 국가에 대하여 분류별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용 범위를 나타낸다. 특정 유형의 제도에 대하여, 한 분류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 제도에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해야 한다면 이를 ‘전체’로 표시한다. 소득이나 근로 시간 기준 등 일부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수급 조건이 있는 경우 이는 ‘부분’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준강제적 퇴직연금)과 세 번째 열(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칸은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전체’로 표시되어 있다. 이 두 국가에서는 단체 협약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을 포함하여 모든 피고용인이 보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부 계절 근로자(농업 종사자 등)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적립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근로자 분류에 대해서 특정 유형의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NA’로 표시했다.

피고용인은 항상(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가입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제도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자격이 되는 모든 피고용인은 해당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제도 가입의 의무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자영업자에게도 확대되었지만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는 그렇지 않다.<sup>3</sup> 하지만 호주에서는 노동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자는 연금 목적상 피고용인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호주의 도급계약자는 강제적 연금제도(superannuation)에 기여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보통 자영업자는 연금 기관이 그 피고용인을 위해 수립한 범직업군에 제도나 대체퇴직급여기금

3.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

표 3.1. 요약: 근로자 분류에 따른 적립식 연금제도 이용, 제도 유형별

	전일제 종신 피고용인	비표준 노동이자				
		시간제 종신 피고용인	기간제 피고용인	기간제 파견 근로자	도급계약자	기타 자영업자
강제적 퇴직연금(MO)	전체: AUS, FIN, ISL, NOR, CHE	전체: FIN, ISL 부분: AUS, NOR, CHE	전체: AUS, FIN, ISL 부분: NOR, CHE	전체: AUS, FIN, ISL 부분: CHE NA: NOR	전체: AUS, FIN, ISL NA: NOR, CHE	전체: ISL NA: AUS, FIN, NOR, CHE
준강제적 퇴직연금(QMO)	전체: DNK, KOR, NLD, SWE	전체: DNK, NLD, SWE 부분: KOR	전체: DNK, SWE 부분: KOR, NLD	부분: NLD NA: DNK, KOR, SWE	전체: DNK, NLD NA: KOR, SWE	전체: DNK, NLD NA: KOR, SWE
자발적 퇴직연금(VO)	전체: AUT, BEL, DEU, GRC, IRL, ITA, JPN, LUX, NOR, PRT, SVN, ESP, SWE, USA, BRA, CHN, IDN, ZAF 부분: CAN, FIN, FRA	전체: BEL, DEU, GRC, ITA, NOR, SVN, ESP, SWE, CHN, IDN, ZAF 부분: AUT, CAN, FIN, FRA, IRL, JPN, LUX, PRT, USA, BRA	전체: AUT, BEL, GRC, ITA, SVN, SWE, CHN, ZAF 부분: CAN, FIN, FRA, DEU, IRL, JPN, LUX, PRT, ESP, USA, BRA, IDN NA: NOR	전체: GRC, SVN, SWE, ZAF 부분: PRT, USA NA: AUT, BEL, CAN, FIN, FRA, DEU, IRL, ITA, JPN, LUX, NOR, ESP, BRA, CHN, IDN, ZAF	전체: GRC, ITA, NOR, BRA 부분: PRT, SWE NA: AUT, BEL, CAN, FIN, FRA, DEU, IRL, JPN, LUX, SVN, ESP, USA, CHN, IDN, ZAF	전체: GRC, ITA, NOR, PRT, SVN, BRA 부분: SWE NA: AUT, BEL, CAN, FIN, FRA, DEU, IRL, JPN, LUX, ESP, USA, CHN, IDN, ZAF
자동가입제도(AE)	전체: CAN, ITA, LTU, NZL, POL, TUR, GBR, USA	전체: ITA, LTU, NZL, POL, TUR 부분: CAN, GBR, USA	전체: LTU, POL, TUR, GBR 부분: CAN, ITA, NZL, USA	전체: LTU, NZL, POL, TUR, GBR, USA 부분: CAN, ITA, USA	전체: CAN, LTU, NZL, GBR, USA NA: ITA, POL, TUR, USA	전체: CAN, LTU, NZL, GBR, USA NA: ITA, POL, TUR, USA
강제적 개인연금(MP)	전체: CHL, DNK, EST, ISR, LVA, MEX, SWE, CHN, IDN	전체: CHL, EST, ISR, LVA, MEX, SWE, CHN, IDN 부분: DNK	전체: CHL, DNK, EST, ISR, LVA, MEX, SWE, CHN, IDN	전체: CHL, DNK, EST, ISR, LVA, MEX, SWE, CHN, IDN	전체: EST, ISR, LVA, SWE, CHN 부분: CHL NA: DNK, MEX, IDN	전체: EST, ISR, LVA, SWE, CHN NA: CHL, DNK, MEX, IDN
자발적 개인연금(VP)	전체: 모든 국가	전체: 모든 국가	전체: 모든 국가	전체: 모든 국가	전체: 모든 국가	전체: 모든 국가

주: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제도(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로 분류한다. ‘전체’는 근로자가 연금제도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부분’은 수급 조건으로 인해 연금제도 가입에 한계가 있음을 가리키며, ‘NA’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가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칠레의 경우 도급 계약자 가운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명세서를 발행하는 자영업 근로자만이 강제적으로 개인계정제도에 의해 가입한다. 한국이 운영하는 퇴직급여제도는 강제적이며,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로 나뉜다. 고용주는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노사협약에 의해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Substitute Occupational Benefit Institution)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연금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가 업종별로, 또는 국가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협약은 모든 분야를 포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는 준강제적 제도로 분류한다. 제도 가입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피고용인에 대하여 의무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직업군 전반에 걸친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의 이용 자격은 일반적으로 피고용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제도를 수립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금제도 수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격이 되는 피고용인의 가입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피고용인 연금기금),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외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자격 조건이 되는 피고용인이 반드시 고용주가 구성한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에서는 강제성 여부가 제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sup>4</sup>

자영업자는 제도를 설립하는 고용주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직종별 자영업자 협회에서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브라질이 이에 해당한다.<sup>5</sup>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 자발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피고용인은 다른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연금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임금을 일부 공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기여(일명 ‘임금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개인은퇴저축계정(PRSA) 제공자와 계약하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모든 피고용인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PRSA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제도에 대한 자동가입은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제도 자체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가입 시스템에서는 고용주가 자신의 피고용인을 자동으로 연금제도에 등록시킨다. 피고용인은 원하면 제도를 탈퇴할 수 있으므로 가입은 여전히 자발적이다. 뉴질랜드(키위세이버), 폴란드(피고용인자본계획, PPK), 터키, 영국에서는 고용인이 연금제도(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을 제공하고 직원을 해당 제도에 자동 등록시켜야 한다. 캐나다(합동등록연금 계획, PRPP)와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자동가입 규정이 포함된 연금제도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자영업자가 연금제도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여 자발적으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sup>6</sup> 리투아니아에서는 4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공공 단체가 운영하는 연금에 가입되지만 원한다면 탈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제적 개인연금제도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를(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모두 가입시킨다. 강제적 개인연금제도에서는 개인의 제도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이 의무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스웨덴, 중국의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칠레의 경우 자영업자 중에서 명세서를 발행하는 자영업자만 연금제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덴마크(ATP), 멕시코, 인도네시아의 자영업자는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의무기여금 납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3년 이상 피고용자로 ATP 제도에 가입한 적 있는 자영업자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는 공식적 제도에 가입해온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기관의 강제적 제도에 자발적 기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모든 노동자는 연금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여 자발적 개인 계정제도를 가입하거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개인의 가입은 자발적이다. 이러한 제도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없는 개인(칠레, 독일 등)이나 심지어는 아동(칠레, 체코, 뉴질랜드 등)도 가입 가능하다. 개인은 보통 기여 수준과 빈도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일본(국민연금), 포르투갈(적립식 공적제도), 슬로바키아(2층 연금), 인도(APY 및 PM-SYM 제도)의 경우 제도 규정이 자발적 개인연금제도의 기여 수준 및 빈도를 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분류의 근로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발적 개인연금제도를 제공한다. 가령 벨기에, 프랑스, 일본에서는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가입할 수 없는 특별제도를 가입할 수 있다.<sup>7-8</sup> 이는 피고용인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존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비공식적 노동(소위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PM-SYM 제도가 존재한다.

### 연금수급 기준

일부 연금제도에서는 사람들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연금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에는 최저소득기준, 최소 근로시간, 최소 고용 기간이 포함된다. 최저 수급 조건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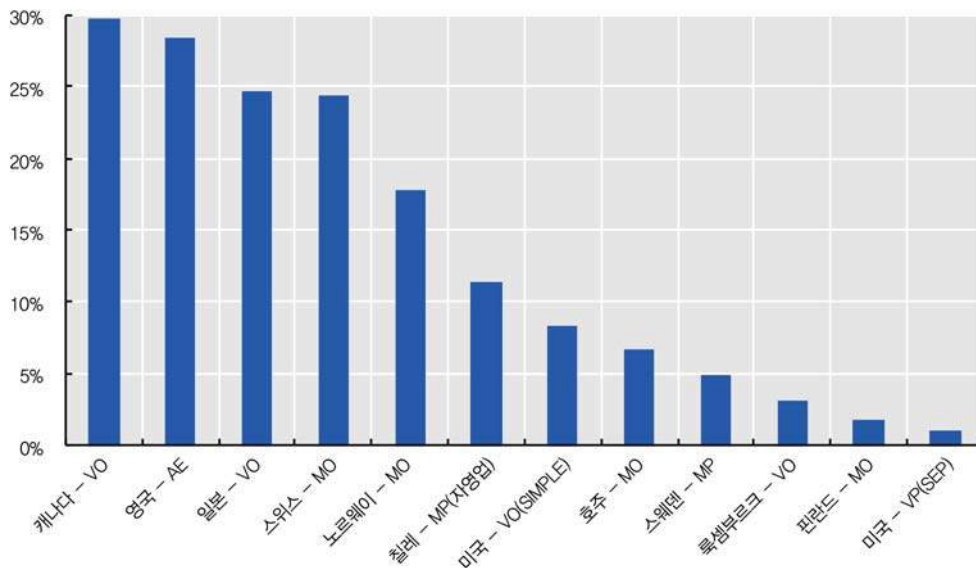
있는데,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와 연금 제공자는 그립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연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캐나다, 미국 등)

최저소득기준은 저소득자의 적립식 연금제도 이용을 제한한다. 이는 정해진 고용주 하 낮은 근로 시간으로 최저 소득 기준을 넘기 어려울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3.1은 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스위스, 일본, 영국, 캐나다의 경우 국가 평균 임금의 25~30% 수준임을 보여준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의 경우 이 비율은 5% 미만이다.<sup>9</sup>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SIMPLE이나 SEP 등)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특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을 가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피고용인에게도 언제든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PM-SYM 제도에 대하여 소득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 제도에서는 월 소득이 15,000루피 이하인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만이 가입 자격을 얻는다. 다른 국가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소득기준을 설계할 수도 있다.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간제 근로는 낮은 근로 시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최저소득기준의 적용에 앞서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전일제 고용으로 환산했을 경우 획득했을 임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제도 가입을 위해 최소 근로시간 조건을 두는 것은 일부 시간제 근로자를 적립식 연금제도 수급가능 인구에서 배제시킨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 이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훨씬 흔하다. 호주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월별 미조정 소득 기준에 덧붙여, 18세 미만이 개인적 혹은 가사 노동(보모나 주부 등)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 주 30시간을 일해야 고용주가 노령연금제도(superannuation)에 납부하는 의무기여금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일제 근로 시간의 75% 라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피고용인 501명 이상)의 근로자(학생 제외)가 월 88,000엔

그림 3.1. 적립식 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최저소득 조건  
평균 연간 임금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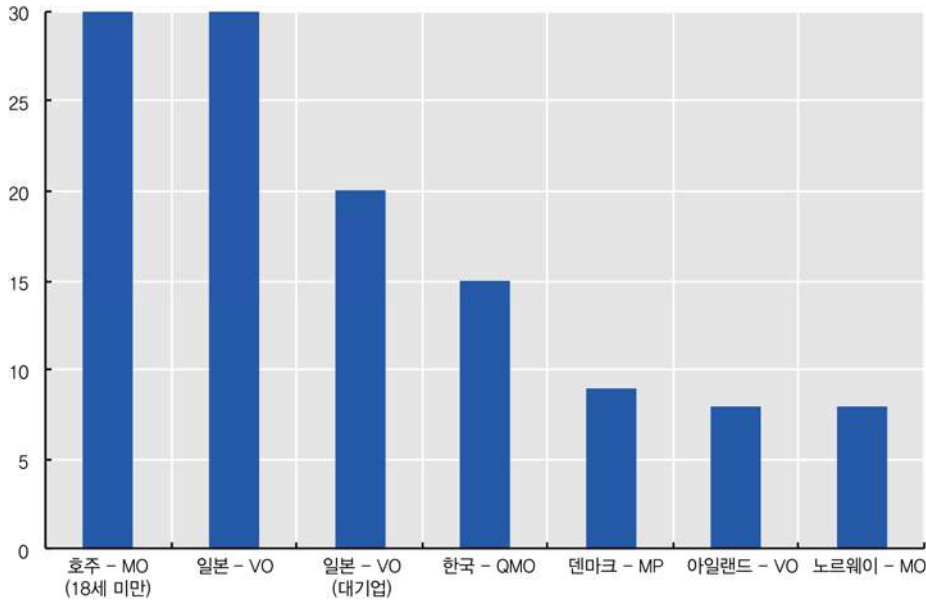


주: 동등한 전일제 피고용인당 연 평균 임금.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 연금(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미국의 경우 'SEP'는 약식피고용인연금제도(Simplified Employee Pension)를, 'SIMPLE'은 피고용인인센티브 저축연금(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을 가리킨다. 한도는 고용주가 적립식 연금제도 가입을 요청할 수 있는 최대 소득을 나타낸다.  
출처: OECD 평균 연간 임금 데이터베이스(Average annual wages database)를 바탕으로 한 계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 조건은 주 20시간으로 줄어든다.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주 8~9시간 근로해야 한다.<sup>10</sup> 다른 국가에서는 근로 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최소 고용 또는 계약기간 조건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 이용을 제한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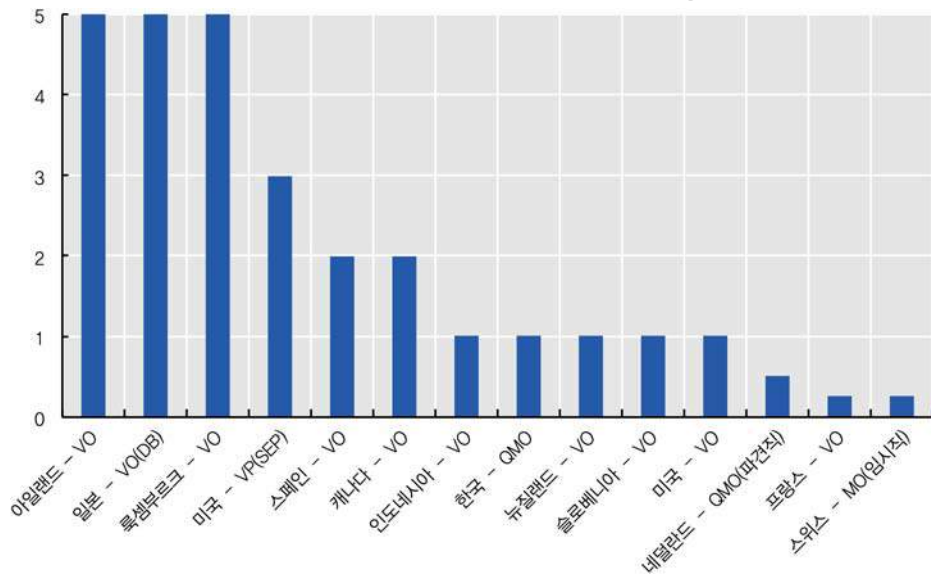
그림 3.2. 적립식 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주당 최소 주당 근로시간 조건



주: 조건을 전일제 근로 시간 대비 비율로 표시하는 경우(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전일제 근로는 주 40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연금(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079>

그림 3.3. 적립식 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최소 고용기간 요건



주: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연금(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미국의 경우 'SEP'는 약식피고용인연금제도(Simplified Employee Pension)를 가리킨다. 한 고용주와 함께 직전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근무한 피고용인은 반드시 SEP 제도에 가입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료는 파견 노동자에 대한 자료이다. 스위스의 자료는 기간제 피고용인에 대한 자료이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098>

있다. 피고용인은 고용 첫 날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바로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조건보다 계약 기간이 짧을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불리하다. 그림 3.3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최소 고용기간 기준이 스위스의 13주(임시직 대상)부터 아일랜드, 일본(확정급여형), 룩셈부르크의 5년 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5년은 제일 높은 수준의 기준이다. 가령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관행은 3년이며 회사에 따라 신규 직원에게 바로 제도 가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최소 고용 기간 기준이 1년인 국가는 5곳이다. 미국은 퇴직연금제도에 1년의 최소고용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401(k) 제도에서는 연금 수급권을 바로 제공하는 경우, 최소 2년은 고용되어야 고용주의 기여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계절 노동자는 전일제 고용의 20% 수준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최소 고용 기간이나 계약 기간 조건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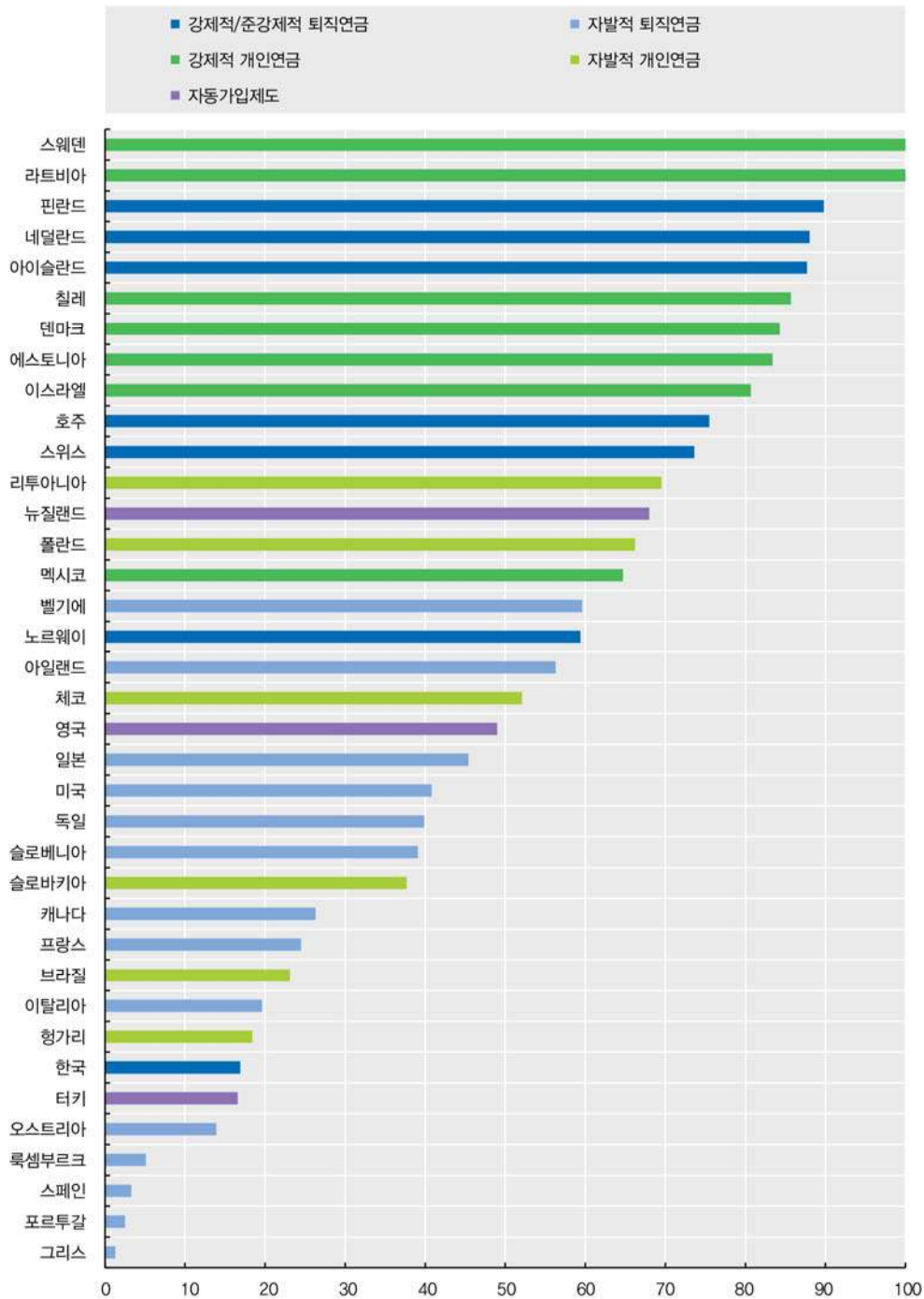
### 실질적 가입

강제적 및 준강제적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제도보다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높다. 그림 3.4는 강제적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의 70% 이상이 적립식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공식성 수준이 높은 나라(멕시코 등)는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sup>11</sup> 대조적으로 자발적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는 70% 이상의 가입률을 달성한 경우가 없다. 공적 연금제도와 연계된 자발적 개인연금제도(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2층 제도)는 40~70%로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퇴직연금의 참여율은 제법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이 수치는 15% 미만이다. 실제로 자발적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i)고용주가 그러한 제도를 제공하고, (ii)피고용인이 해당 제도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iii)자격이 되는 피고용인이 가입을 선택해야 한다.

주로 퇴직연금을 통해 구성된 연금체계에서는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피고용인 대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고용 형태별로 적립식 연금 가입률을 나타낸 데이터는 거의 없다. 그림 3.5의 왼쪽 패널은 7개국의 자발적 연금제도의 가입률(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모두)을 나타내며, 오른쪽 패널은 6개국의 50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퇴직연금 수급권이나 자산을 가진 비율을 나타낸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는 적립식 연금제도 가입률이 자영업자보다 피고용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자발적 또는 강제적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가입시키지 않는다. 더불어 네덜란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20%만이 현재 직업 또는 은퇴 전 일자리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조사에 참여한 전체 피고용인 모집단의 84% 수치와 격차가 있다. (Karpowicz, 2019<sub>[11]</sub>) 호주의 경우 노령연금(superannuation funds) 기여는 피고용인 거의 보편적이었으나 2016~2017년에 기여를 했던 자영업자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sup>12</sup> 2017년 기준 칠레에서는 연금제도에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비율이 피고용인의 경우 86%에 달했으나 자영업자는 겨우 6%였다.<sup>13</sup> 덴마크에서는 2017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에 납입하는 피고용인의 비율은 81%, 자영업자의 비율은 53%였다. 더불어 자영업자 중 66%가 2017년 에 저축한 금액이 총 소득의 5% 미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피고용인 중 그 정도 비율을 저축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sup>14</sup> 마지막으로, 예전에 피고용인으로 근로하면서 연금수급권이나 자산을 축적했었기 때문에 은퇴 시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연금 급여 수급을 예상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덴마크 51%, 스웨덴 74%, 스위스 55%로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3.4. 제도 유형별 적립식 연금 가입, 2017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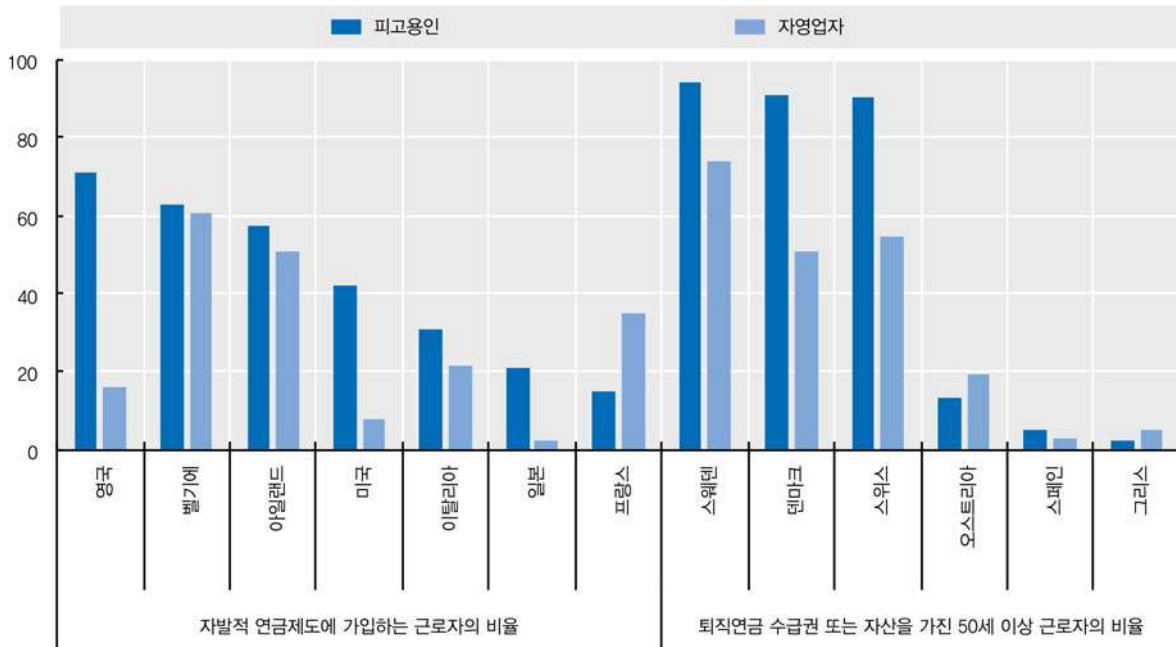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117>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연금 가입률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의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가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대상의 자발적 이 있으나, 이 제도는 다른 납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림 3.5는 벨기에에서 자발적 연금 제도의 가입률이

3.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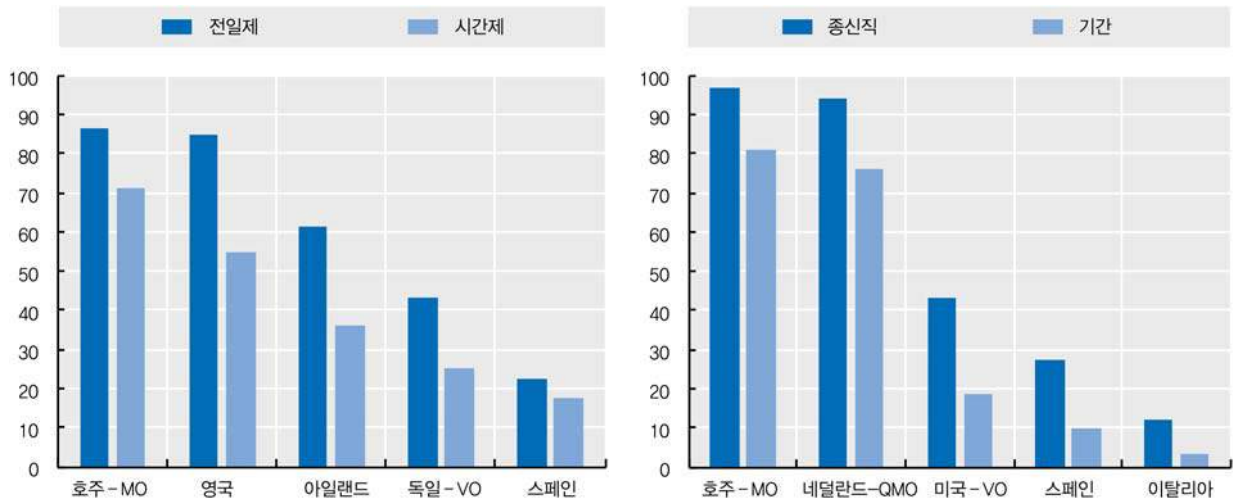
그림 3.5. 고용 형태별 적립식 가입 참여  
관련 인구 대비 비율



출처: 자발적 연금제도 가입률의 경우 국가별 자료, 50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권 보유자의 경우 SHARE wave 7.(기술 보고서: 유럽의 연금 적절성 측정에는 SHARE 데이터 사용)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136>

그림 3.6. 계약 형태별 적립식 연금 참여  
관련 인구 대비 비율



주: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연금(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영국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 퇴직연금 및 단체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직장연금에 대한 것이다.

출처: OECD 연금전망(Pensions Outlook) 2012 제4장 및 각국 자료.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155>

비고용인(퇴직연금을 통해 이용)과 자영업자(전용 개인연금제도를 통해 이용)에게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에서는 자영업자의 35%가 전용 개인연금제도('Madelin' 계약)에 기여하고 있으나,

피고용인 중 퇴직연금제도에 기여하는 비율은 15%(PERCO에 6%, 기타 퇴직연금제도에 9%)에 불과했다. 독일에서는 40~59세 자영업자 가운데 11.5%가 기초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용인의 기초연금 가입률은 1.8%다.<sup>15</sup> 반면 일본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대상의 자발적 개인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매우 소수이다. 이들 제도의 경우 가입을 하면 기여금 납부가 의무화된다는 사실이 낮은 비율의 원인일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종신 근로자에 비해 적립식 연금 가입률이 낮다. 계약 유형별 가입률은 일부 국가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그림 3.6 왼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 가용 데이터를 보유한 5개국에서 시간제 피고용인은 전일제 피고용인보다 적립식 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았다. 최저소득기준과 최소 근로시간 조건으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 기간 및 계약 조건 또한 그림 3.6의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 기간제 노동자들이 종신 피고용인보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은 부분적 이유일 수 있다.

## 기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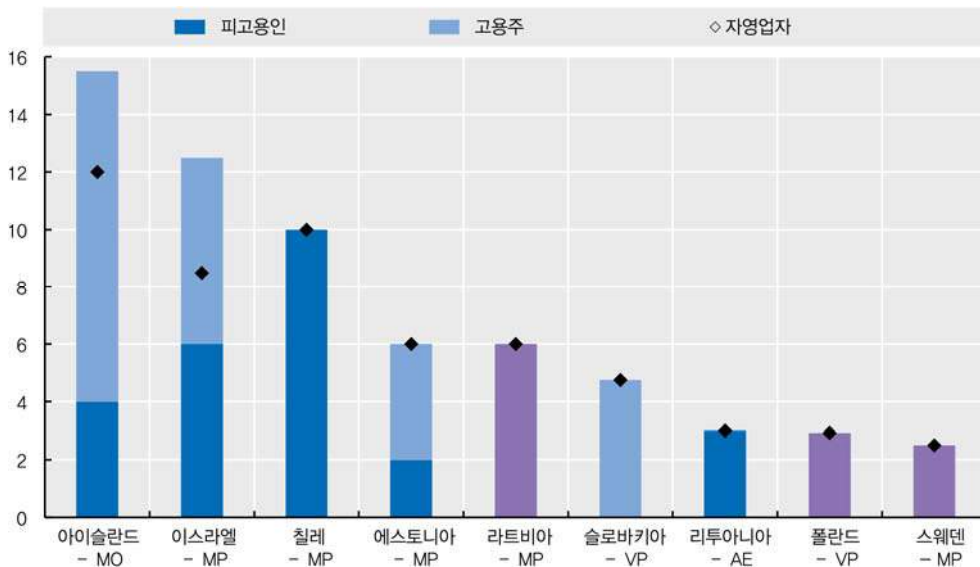
노동자 유형 분류에 따라 상이한 기여 규정과 가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일부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노후 저축액이 적을 수 있다. 이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가 가입한 제도가 유형도 다르고 기여 규정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거나, 같은 제도 이더라도 노동 분류에 따라 기여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일 수 있다. 기여율, 기여 한도, 기여금 납부 유예에 관해서는 근로자 간 차이가 있다.

### 기여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기여율이나 의무 기여율은 고용주와 기여금을 분담 납부하는 피고용인과 동등할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림 3.7은 모든 유형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최소 또는 의무 기여율을 나타낸다. 피고용인의 경우 기여율은 개인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으로 나뉜다.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에서는 적립식 연금에 대한 의무 기여금이 피고용인보다 자영업자에 대해 더 낮게 나타난다. 이 격차는 이스라엘의 경우 4%p, 아이슬란드는 3.5%p이다. 중국에서는 피고용인의 경우 도시 노동자 기초연금 제도에 임금의 8%를 기여하며 자영업자는 이와 동등한 성격의 국가 거주 기초연금제도에 연 100~2,000인민폐의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모든 노동자 유형에 대한 전반적 기여율이 동일하다. 그림 3.7에 나타나 있듯, 자영업자는 기여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피고용인은 칠레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고용주와 기여금을 분담한다.

노동자 유형별로 상이한 강제적 적립식 연금제도의 기여금 조건은 실소득의 격차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피고용인과의 고용 관계가 아닌 자영업 계약(도급계약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기여금을 합한 전체 기여율이 자영업자의 기여율보다 높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자영업자는 피고용인보다 높은 실 소득을 얻게 된다. 자영업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높은 실 소득이나 인건비 감소를 통한 투자 증대, 가격인하로 인한 시장 점유율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발적 연금제도에 스스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은퇴 후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피고용인과 자영업자가 강제적 연금제도에 동일한 기여율로 기여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은퇴 후 동일한 대체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유형의 자영업자가 특히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 합계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림 3.7. 피고용 및 자영업 근로자를 포괄하는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최소 또는 의무 기여율



주: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제도(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로 분류한다. 보라색은 기여율이 피고용인과 고용주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174>

자발적 연금제도에서 고용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적립식 연금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인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는 자발적 제도에 적게 기여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실제로 퇴직연금, 어떤 경우에는 개인연금에서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자발적 개인연금제도에 기여할 수 있음) 고용주의 기여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제공되는 제도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발적 제도에서는 고용주의 기여금이 제도 가입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에 가입하기로 정한 피고용인만이 고용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고용주의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s)가 가입률을 올린다는 연구도 있다.(Choi, 2015<sup>[2]</sup>; Madrian, 2013<sup>[3]</sup>) 이러한 유인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자발적 연금제도에 기여하나 고용주의 부담분을 추가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은퇴 시점에 누적된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다.

### 기여 한도

기여 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노동자 유형에 따라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기여 수준에 영향을 준다. 표 3.2는 기여 한도가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에 대하여 동일한지, 상이한지에 따라 국가를 표시하고 있다. 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에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적용되는데, 기여금을 개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개인과 고용주가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도는 최대 기여 수준을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한도를 적용한다. 즉,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총 기여금 한도는 자영업자가 단독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한도와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피고용인이 납부하는, 또는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지불되는 기여금의 한도가 자영업자보다 높다.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의 경우 피고용인/개인

표 3.2. 피고용인 및 자영업자 간 전체적 기여 한도의 차이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에게 같은 기여 한도가 적용됨	피고용인의 한도가 더 높음	자영업자의 한도가 더 높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체코*		벨기에(무료 보충 제도)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핀란드*(자발적 제도)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스위스(개인 제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남아프리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중국	

주: 뉴질랜드와 터키에는 기여 한도가 없다. \*표시된 국가는 고용주 기여금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있거나 아예 한도가 없다. 포르투갈에서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차이를 연역적으로 두지 않지만, 기여 한도는 연금 제도의 규정을 따르므로 노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여금과 고용주 기여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한도가 적용된다. 개인의 기여금에는 노동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나,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기여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 대비 높은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자발적 개인연금제도에 최대 3,200유로를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피고용인 일반 소득의 20%로 설정된 한도 내에서 고용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며 제도별 기여 한도도 다르다.

마지막으로 벨기에, 프랑스, 일본, 스위스에서는 자영업자가 피고용인보다 많은 금액을 특정 적립식 연금제도에 기여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보장을 받지 않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가 ‘무료 보충 제도(free supplementary pensions)’에 가입할 수 있다. 피고용인의 기여 한도는 1,600유로와 2년 전 수령한 총 임금의 3% 중 높은 값이다. 반대로 자영업자의 기여 한도는 전문 소득(professional income)의 8.17%와 3,187.04유로 중 높은 값이다. 프랑스에서는 퇴직연금에서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전체 기여금 한도는 연간 사회보장한도에 8을 곱한 값의 8%이다. 과세수익이 높은 자영업자는 연간 사회보장한도에 8을 곱한 값의 15%와 일명 ‘Madelin’ 계약의 연간 사회보장한도에 7을 곱한 값의 15%를 더한 것을 기여금 한도로 한다. 일본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금 한도(816,000엔)가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제공받는 피고용인의 기여금 한도(모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하여 666,000엔)보다 더욱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한도가 더 높으면 이들이 공적 소득비례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경우, 피고용인의 기여금 한도가 6,826프랑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연금제도에 최대 과세소득 34,128프랑의 20%를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의무 기여금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sup>16</sup>

## 기여 유예

기여금의 납부 유예는 피고용인보다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사용하기 쉽다. 납부 유예 또한 생애에 걸쳐 납부한 총 기여액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기여금은 기여금은 고용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없으나, 개인연금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기여금 상향, 하향, 정지가 자유롭다. 기여금 납부 일정의 유연성은 특정 분류의 노동자들에게,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매우 유용하지만 이후 다시 기여금을 올리지 않으면 연금 적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 연금소득 결과

적립식 연금제도에는 다양한 노동자 분류에 따라 연금소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설계적 특징이 존재한다. 최소재직조건이, 특히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경우, 적립식 연금제도에 가입 및 기여하는 근로자는 이직 시 고용주 기여분과 연계된 연금 수급권 중 일부(확정급여형 제도인 경우)나 자산의 일부(확정기여형 제도인 경우)를 잃을 수 있다. 더불어 이직할 때(이동성 문제)나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때(조기 이용) 연금액 누수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미래의 노후소득이 영향 받을 수 있다.

### 최소재직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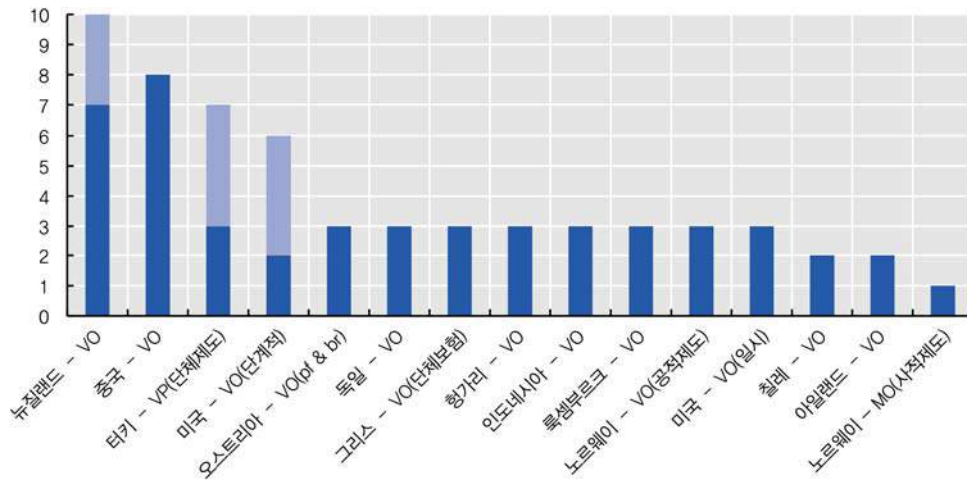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다고 해서 첫 날부터 연금수급권이나 연금 자산이 누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금제도에서는 자신이 누적 수급권이나 적립 자산을 완전히 소유하려면 일정기간 동안 제도의 가입자(직접 기여, 혹은 대리인을 통해 대신 기여)임을 의미하는 최소재직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재직조건은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고용 기간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따라온다. (그림 3.3) 모든 국가에서 피고용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제도유형을 막론하고 곧바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고용주의 기여분은 항상 그렇지 않다. 이는 공식적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 사이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이직이 잦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주 납부의 기여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한 고용주와 함께 오래 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가에서 고용주의 퇴직연금제도 기여금은 곧바로 피고용인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강제적 및 준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권리 획득이 규정되어 있다.<sup>17</sup> 이는 자발적 제도에도 적용되며, 오스트리아(직접 보험과 단체 퇴직보험), 벨기에, 캐나다(연방 관할권), 그리스(퇴직보험기금), 이탈리아, 일본(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라트비아, 뉴질랜드(키위세이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인도(국민연금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발적 제도가 그러하다.


개별 퇴직연금제도에서 고용주 기여금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한 최소재직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노르웨이의 민간 부문 피고용인의 1년이고, 칠레와 아일랜드는 2년이다. 오스트리아(연기금 및 적립금), 독일, 그리스(단체연금보험),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공공 부문 피고용인 대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소재직요건이 3년이다. 미국은 퇴직연금제도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공하는 즉각적 수급권 부여(cliff vesting)나 단계적 수급권 부여(graded vesting)가 사용될 수 있다.<sup>18</sup> 예를 들어 401(k) 연금에서 가입 3년 후 즉각적 수급권 부여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100%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수급권 부여를 적용하면 2년 후 고용주 기여금의 20%, 3년 후 40%, 4년 후 60%, 5년 후 80%, 6년 후 전액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sup>19</sup>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지원기금), 프랑스(39조 제도, article 39 plans), 노르웨이(AFP 제도)는 피고용인이 은퇴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만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에 누적된 고용주 기여로 발생한 급여액을 전액 얻는다. 즉, 피고용인이 제도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직 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면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이는 노동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럽 연합 내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에게는 3년 이상의 최소재직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EU 이동성 명령(Portability Directive, ‘보완 연금 수급권의 획득과 유지를 개선하여 노동자 이동성을 재고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관한 명령’)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최소 대기 기간과 최소재직조건에 대하여 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 명령은 EU 회원국 간에서 ‘이동’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회원국에서 머무르는 가입자의 최소재직요건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명령을 적용할 때 국가 간 이동 여부를 굳이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림 3.8. 퇴직연금제도의 고용주 기여에 대한 최소재직요건



주: 숫자는 최대치이며 고용주는 그보다 짧은 최소재직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하늘색은 단계적 최소재직요건을 가리킨다. 미국의 숫자는 기존 401(k) 제도에 대한 것이다. 확정급여형 제도 및 세이프하버 제도(safe harbor plan)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제도(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193>

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모든 노동자는 최대 3년간 일하면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금 수급권 및 자산의 이동성

연금 수급권 및 자산의 이동성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간제 계약에 의한 피고용인을 포함하여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직을 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제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없다. 게다가 새로운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노후를 위한 저축을 중단하게 될 위험이 있다. 새로운 고용주가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의 통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제도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고용인들은 이전 직장에서 생긴 여러 개의 비활성화 연금 계정을 보유하게 된다. 반면 개인연금제도를 통해 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는 특성상 100%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제도는 가입자가 경력 기간 내내 가지고 이동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누적된 연금 수급권과 자산을 기존 고용주의 퇴직 연금에 그대로 둘 것인지, 혹은 이직 시 새로운 고용주의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표 3.3은 퇴직연금 수급권과 자산을 가진 근로자들이 이직 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나타낸다. 다수의 국가에서 거치된 수급권과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다. 한국과 터키만이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며,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고용이 종료되는 피고용인은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받는다. 터키에서도 자산을 개인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고용주를 떠나면 은퇴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 수급을 시작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급액을 개인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고용주를 떠날 때 누적된 퇴직연금 수급권과 자산을 개인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은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연금 전용계좌만 이전이 가능하다. 잠긴 연금에서는 보통 노령연금 수급 이외의

3.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

표 3.3. 이직 시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수급액 처리 방법

국가	제도 종류	권리 거치	새로운 고용주의 퇴직 제도로 이전	개인계정으로 이전	연금/퇴직소득 수급	현금화	같은 제도에 계속 기여
호주	MO	X	X			잔액이 200 호주달러 미만	X
오스트리아	VO	X	X			권리 있는 급여액이 12,600유로 미만	X
벨기에	VO	X	X				X
캐나다	VO	X	X	전용계좌로	X		
	AE	X	X	전용계좌로	X		X
칠레	VO		X			X	
덴마크	QMO	X	X	자영업자			X
핀란드	MO	X					X
프랑스	VO	X	X	X			X
독일	VO	X	X			누적된 급여액 현금 가치가 월 31.15유로 미만	
그리스	VO	X	X			X	X
아이슬란드	MO	X					X
아일랜드	VO	X	X	X			
이탈리아	VO	X	X	X		X	X
	VO-EPF	X					
일본	VO-DB 제도			NPFA로	가입 기간이 20년인 경우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	
	VO-DC 제도			NPFA로			
한국	QMO					X	
룩셈부르크	VO	X	X			사회보장이 아닌 경우, 거치 권리가 소액인 경우	
네덜란드	QMO	X	X			수급액이 소액인 경우	X (자영업자 최대 10년)
뉴질랜드	AE		X				X
	VO	X	X			X	
노르웨이	MO	X	X				
폴란드	VO	X	X	X			
포르투갈	VO	X	X	X			
슬로베니아	VO	X	X				
스페인	VO	X	X	X			
스웨덴	QMO	X					X
스위스	MO	X	X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국기를 떠나는 경우, 소유권 연금액이 연간 기여금 미만인 경우	
터키	VO		X	X		X	
영국	AE	X	X	X		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X
미국	VO	X	X	X		X	
브라질	VO	X	X			X	X
인도네시아	VO	X	X	X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VO	X	X	X			

주: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제도(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덴마크에서는 자영업자만이 기존 직장에서 쌓은 연금 수급액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일본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의 수급액을 개인 국가연금협회(NPFA)의 확정기여형 제도로 옮길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누적된 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다.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소액 수급액을 거치 상태로 두거나 다른 연금으로 이전하지 않고 곧장 지급받을 수 있다.(표 3.3) 이렇게 하면 수급액을 연금에 그대로 두는 경우 관리 비용으로 인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근로 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피고용인은 자신이 납부한 기여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 기간제 노동자에게 주로 해당된다. 미국에서 고용주는 직장을 떠나는 피고용인에게 1,000달러 이하의 잔액 인출을 강제할 수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피고용인이 자신의 기여액에 이자를 합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이 자영업을 시작하여 더 이상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누적 수급권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직 후에도 동일한 퇴직연금에 계속 기여가 가능하다. 단체 협약을 통해 구성된 퇴직연금제도(업종별 혹은 산별 연금제도)의 경우 피고용인이 동일한 협약이 적용되는 고용주에게로 이직한다면 같은 연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 협약이 없어도 호주, 오스트리아(적립금 및 지원기금 제외), 캐나다(PRPP), 프랑스, 그리스, 영국, 브라질에서는 같은 제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노동자들은 국가고용저축신탁(NEST)을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영업자에게 과거 피고용인으로서 가입했던 제도에 고용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10년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 연금 조기이용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적립식 연금에 누적된 기금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미래의 은퇴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근로자는 예상하지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해야 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적립식 연금에 참여하려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조기에 사용한 기금이 나중에 보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조기 이용에 필요한 가장 흔한 조건은 특정 연령이나 가입 기간에 도달한 이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이다. 주택 보유는 여러 국가에서 은퇴 후 재정적 보장의 수단으로 인정되며,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간주된다.<sup>20</sup> 표 3.4에서 볼 수 있듯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15개국에서는 주택 구입이나 수리를 위해 연금액 인출 또는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20개 국가에서는 연금 제도가 가지는 장기적 저축의 특성을 인정하여 특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특정 가입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인출을 허용한다. 이러한 요건은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최소 연령이나 가입 기간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연령 요건은 오스트리아의 40세부터 독일(Riester 및 기초연금제도)의 62세까지 다양하며, 가입 기간 또한 멕시코의 5년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페인, 인도(진입 연령 및 부문에 따라 상이), 인도네시아의 10년에 달한다. 에스토니아, 일본, 룩셈부르크, 터키에서는 연령과 가입 기간 조건이 결합되어 있다.

3. 적립식 연금은 비표준 노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었는가?

표 3.4. 조건 유형별 조기이용 허용 국가

조건	기금 조기이용 허용 국가
주택 구입/수리	호주(VP), 벨기에, 캐나다(VP, 대출), 프랑스, 독일(VP),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MP, 대출), 뉴질랜드(AE), 폴란드(AE, 대출), 포르투갈(VP-PPR 제도), 스위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대출)
특정 연령 도달/회원 기간	오스트리아(PV),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VP), 독일(VP), 헝가리(VP), 아일랜드(VP), 이탈리아, 일본(VP), 리투아니아(pillar 2), 룩셈부르크(VP), 멕시코(VP), 포르투갈(VP-PPR 제도), 슬로바키아(pillar 3),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MP)
장애	호주, 에스토니아(VP), 핀란드(VP),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VP), 리투아니아(VP), 룩셈부르크(VP), 멕시코(VP), 뉴질랜드(AE), 포르투갈(피고용인 기여금), 스위스, 터키, 미국, 중국(VO), 인도(VP), 인도네시아(MP)
심각한 질병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VP),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VP), 뉴질랜드(AE), 폴란드(AE), 포르투갈(피고용인 기여금), 스페인, 스웨덴(VP), 영국
재정적 어려움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한국, 뉴질랜드(AE), 스웨덴(VP), 터키, 미국
실업	핀란드(VP), 프랑스, 이스라엘(자영업), 이탈리아, 멕시코(MP), 뉴질랜드(VO), 포르투갈(피고용인 기여금), 스페인
소액	호주, 캐나다,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VO), Sweden(VP), 스위스(MO), 미국(VO)
의료 비용	호주, 이탈리아, 한국, 미국
교육 비용	캐나다(VP, 대출), 한국, 미국
출국	호주(임시 거주 한정), 캐나다, 룩셈부르크(VO), 뉴질랜드(AE), 스위스, 중국(VO)
배우자/자녀 사망	호주, 핀란드(VP), 프랑스, 한국, 라트비아(VP)
결혼 비용	한국, 멕시코(MP)
개인 사업 시작	스위스
동기 없음	칠레(자발적 저축), 덴마크(QMO, 대출), 헝가리(VP), 이스라엘(대출), 멕시코(VP), 포르투갈(VO, 대출), 미국(대출)

주: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강제적 'MO', 준강제적 'QMO', 자발적 'VO'), 개인연금(강제적 'MP', 자발적 'VP'), 자동가입제도(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AE')으로 분류한다. 개인이 특정 시일 내에 연금제도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는 '대출'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 17개국에서 조기에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sup>21</sup> 이는 자발적 개인연금제도의 경우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도 있다. 말기 질환을 앓게 되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짧아졌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줄어든 경우 13개국에서 대부분 자발적 제도로부터 연금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다. 재정적 어려움, (장기)실업, 혹은 의료적 이유나 친인척의 장례식 등으로 인한 예외적 금전 지출을 이유로 조기 인출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다. 결혼 비용, 교육 비용, 이민 등은 비교적 드물다. 스위스는 영업 시작을 이유로 강제적 퇴직 연금에서 가입자가 소유권을 갖는 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유일한 국가다.

연금수급연령 전 연금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출이 있다. 13개국에서 가입자들은 연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의 구입(캐나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다른 사정이 이유가 될 수 있다.<sup>22</sup> 스위스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실 거주용 주 거주지 구입을 위해 아직 누적되지 않은 미래의 급여액이나 수급권이 형성된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혹은 그러한 거주지에 대하여 모기지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연금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다.

## 결론

이 글에서는 비표준 형태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즉 비표준적 고용의 노동자(시간제 및/또는 시간제 피고용인) 및 자영업자가 전일제 종신 피고용인보다 적립식 연금에 덜 가입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여기에는 네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 **자영업자는 특정 적립식 연금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가입이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는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제적 및 준강제적 연금제도는 자발적 제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인다. 그러나 적립식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항상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호주,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자영업자는 적립식 제도에 강제 가입되지 않는다.
- **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구성되는 연금체계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을 만드는 조직 간 고용 및 전문적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고용인 대비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떨어진다.** 하지만 벨기에나 프랑스 등의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참여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자동가입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자는 연금 제도에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에서 자영업자는 제도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여 자발적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 **일부 제도에서는 가입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한다.** 이 기준에는 최저소득기준(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등)과 최소근로시간(호주, 일본, 한국 등), 최소재직기간(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건은 시간제 및 기간제 피고용인의 퇴직연금 가입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제적 적립식 제도의 의무 기여율과 자발적 제도의 최소 기여율 및 총 기여 한도는 노동자 분류에 관계없이 동일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자영업자가 피고용인보다 적은 금액을 기여하도록 되어 있거나 피고용인(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수 있음)만큼 많은 저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에서는 자영업자의 의무 기여율이 피고용인보다 낮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여 한도가 피고용인보다 높은 연금제도도 있는데, 아마도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고용주의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때때로 공적연금제도에서 덜 기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비표준적 노동자의 연금소득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설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최소재직요건은 불리하다.** 근로자가 직접 기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곧 바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고용주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가입 첫 날부터 항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간제 피고용인은 고용 계약 기간이 최소재직요건보다 짧으면 기여금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의 경우 최소재직요건이 3년으로 가장 길다.
- **퇴직연금 수급권과 자산의 이동성 부족은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누적된 수급권과 자산을 기존 고용주의 퇴직연금에 그대로 두거나 새로운 고용주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단체 협약을 통해 구성된 퇴직연금제도(업종별 혹은 산별 연금제도)의 경우 피고용인이 동일한 협약이 적용되는 고용주에게로 이직한다면 같은 연금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퇴직연금제도를

탈퇴하며 연금 지급액을 현금화하면 연금액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에서처럼 현금화는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한정된다.

-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적립식 연금에 누적된 기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의 가입을 저해하는 장벽을 없앨 수 있으나 이는 연금 적합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초기에 연금을 이용하는 가장 흔한 조건은 주택의 구입이나 수리, 특정 연령이나 가입 기간 도달, 장애이다. 이러한 조건이 너무 관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은퇴 후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있다.

비표준 노동자들을 위해 적립식 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거나 개발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보충적 연금제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그러한 제도의 설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와 OECD 사적연금규제 핵심원칙(Core Principle of Private Pension Regulation), 특히 8번과 10번 원칙을 일치시키면 점점 증가하는 비표준 인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더욱 포괄적인 적립식 연금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OECD, 2016<sup>[4]</sup>)

정책 입안자들은 비표준 노동자들을 연금제도 가입의 배제로부터 막아야 하며, 규제를 통해 퇴직 연금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득, 근로 시간, 고용 기간, 계약 유형(핵심원칙 8번)을 바탕으로 하는 가입 조건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일 원칙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연금제도에도 적용된다.(핵심원칙 10번)

노동자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액을 누적할 수 있도록 최소재직요건도 축소되어야 한다. 가입자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액은 곧바로 권리가 인정되지만, 고용주 기여금에서 발생한 지급액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급여 누적이나 지급권을 크게 제한하는 관행도 금지되어야 한다.(핵심원칙 8번) 이는 연금수급연령까지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근로한 가입자에게만 급여액을 제공하는 연금제도와 특히 관련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반드시 이직 및 조기 이용의 가능성으로 인한 적립식 연금제도의 누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연금 지급권과 자산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이직을 하는 개인이 동일 제도로 계속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이들의 연금 지급권을 현 고용주가 제공하는 제도나, 비슷한 유사 제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핵심원칙 8번)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은 미래의 노후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시켜야 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비표준 노동자의 노후 저축을 준비를 장려하는 접근법을 할 것이며, 이는 부과식 연금제도가 이미 갖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여 진행될 것이다. 비표준적 노동자 집단은 상이한 성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적립식 연금제도 저축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금제도의 성과와 비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석

1. 본 분석은 선택된 비OECD G20 국가를 비롯한 모든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2. 이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의 고용사회포용부(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사무총장 및 주요 인터내셔널 그룹(Principal International Group)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다.
3. 자영업자를 위한 핀란드 법정 소득비례제도(YEL)는 부과식 재정충당방식을 이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캐나다의 경우 본 분석은 연방 차원에서 규정된 규제 등록연금제도(RPP) 및 합동등록연금계획(PRPP)을 초점을 둔다. 각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규정하는 RPP에 관하여 연금 표준 법률을 마련해

두고 있다. 퀘벡 주는 자발적은퇴저축계획(VRSP)이라는 자체적인 PRPP제도를 운영한다.

5. 미국 노동부는 소규모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러 고용주 은퇴연금제도의 가입범위를 확대시키는 최종적 규정을 발표했다.
6. 영국에서는 소득이 연 1만 파운드 이하인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운영하는 제도에 자동 가입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7. 독일의 기초연금은 자영업자를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다른 납세자도 가입은 가능하다.
8. 프랑스에서는 PACTE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제도(Madelin 계약)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중단된다. 2019년 10월 1일자로 누구든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 노후저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영업자로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기존 Madelin제도의 대부분 특징을 포함한다.
9. 칠레의 경우 기존 소득이란 특정 소득 이하에서는 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영업자가 더 이상 기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소득선을 말한다.(자발적 기여는 가능)
10. 미국에서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근로 시간의 제한도 있으나 연 단위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은 21세가 되어 1년 이상 근로하면 노령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1년 근로는 연중 근로 1,000시간, 혹은 주 19시간으로 간주된다.
11. 한국도 기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령연금제도를 제공할 의무는 퇴직금 제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12. 부분적으로 이는 개인이 단독 소유주로부터 나온 매출액이나 일반적인 동업에서의 지분을 허가된 소매나 자기관리의 노령연금 기금(superannuation fund)으로 이전하면 50만 호주 달러의 생애 자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13. 이 숫자는 연금제도에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자영업자의 수를 나타내며 조세 절차를 통해 기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명세서를 발행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참여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 출처: ATP.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연금에 기여금을 납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1999년부터 2017년 까지 하락했다. 이는 SP 제도의 종료와 조세 규정의 변화 때문이다.(ATP, 2019<sup>[5]</sup>)
15. 반면 피고용인의 31.4%는 Riester 연금 계약에 가입해 있다. 반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20.3%이다. (출처: LeA study)
16. 연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용인이더라도 과세소득의 20%를 기여할 수도 있다.
17. 노르웨이의 경우, 의회가 고용주 납부 기여금에 대한 수급권 소유를 위한 민간 부문 근로자의 1년의 최소재직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아직 규정은 발효되지 않았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재직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감소된다.
18.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저축절약 제도에 참여하는 노동자 가운데 34%는 단계적 수급권 부여(graduated vesting)을, 24%는 즉각적 수급권 부여(cliff vesting)를 적용 받았다.
19. 뉴질랜드의 경우, 고용주 납부 기여금에 대한 단계적 수급권 부여는 키위세이버 제도(KiwiSaver plans)가 아니라, 특히 신규 피고용인 사이에서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것이다.
20. 그러나 은퇴 시점에 주택 자산을 부분적으로 현금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할 수 있다.
21. 이들 개인은 정부의 장애 급여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2. 멕시코의 경우 이는 주택 하위계정(housing sub-account)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참고문헌

- [5] ATP (2019), “Selvstændiges pensionsindbetalinger er faldet”, *Faktum 190*, [https://www.atp.dk/sites/default/files/faktum\\_190\\_september.pdf](https://www.atp.dk/sites/default/files/faktum_190_september.pdf).
- [2] Choi, J. (2015), “Contributions to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Annual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Vol. 7/1, pp. 161-178.

- [1] Karpowicz, I. (2019), “Self-Employment and Support for the Dutch Pension Reform”, *IMF Working Paper* WP/19/64.
- [3] Madrian, B. (2013), “Matching contributions and savings outcomes: A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in *Matching Contributions for Pensions: A Review of International Evidence*, The World Bank, <http://dx.doi.org/10.1596/978-0-8213-9492-2>.
- [4] OECD (2016), *OECD Core Principles of Private Pension Regulation*, <https://www.oecd.org/daf/fin/privatepensions/Core-Principles-Private-Pension-Regulation.pdf>.

## 제 4 장

# 연금제도의 설계

본 섹션의 5개 지표는 OECD 회원국 및 기타 주요 국가들의 연금제도의 설계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지표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연금 제도를 분류해서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44개국의 연금제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4개 지표는 연금제도의 변수와 규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지표는 기초, 선별적, 최저연금제도의 가치와 가입범위를 보여주는 1층 제도를 다룬다. 세 번째 지표는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살펴본다. 이 지표는 제도에서 급여액이 산정되는 방식 및 연금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보여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표는 각각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은퇴 시까지 지장 없이 근로하는 개인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연금제도별 은퇴연령을 제시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요 결과**

연금제도는 다양하며 대개 수많은 프로그램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연금 분류법은 두 가지 의무가입인 “층(tier)”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과거 소득 수준과 무관한 연금을, 2층은 소득비례제도를 다룬다. 자발적 제도는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간에 세 번째 층을 이룬다.

그림 4.1은 연금제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역할에 근거한다. 1층은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과거의 소득은 퇴직연금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1층 제도의 목표는 연금수급자들이 절대적인 최저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비례제도(2층)는 근로 기간과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 및 생활수준을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눈에 보는 연금은 의무 연금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널리 사용되는 자발적, 사적 연금제도(3층)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표 4.1은 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 구조를 나타내며,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비례 제도를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제도로 구분하였다. 패널 A는 미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률을, 패널 B는 현재 퇴직자와 비교하여 변경된 규정을 보여준다.

**기초연금**은 두 가지 유형, 즉 거주 기반 급여와 근로기간 중 기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구성된다. 급여 수준은 거주자 수나 기여 년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근로기간 중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7개 OECD 회원국은 미래의 퇴직자에 대하여 거주 기반 기초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자산조사를 사용하는 선별적 연금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기여형 기초연금제도를 사용하는 OECD 회원국은 9개다.

**선별적** 연금은 특정 거주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서 급여액의 가치는 기타 소득원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소득과 자산 모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높은 퇴직자보다 큰 급여액을 받는다.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유형의 일반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적은 소득(평균의 30%)의 완전경력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표시된 국가들뿐이다.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 이러한 제도를 가진 OECD 회원국은 9개다.

**최저연금**은 특정 기여형 제도의 최저연금 또는 모든 제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현재 15개 OECD 회원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칠레와 이탈리아는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급액의 가치는 기타 소득을 조사하기보다는 연금만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최저연금이 총 생애 수급액의 최저 한도로서, 기여 기간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또는, 최저연금이 저소득층의 연간 수급액을 실제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최저연금 크레딧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OECD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만이 2층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는 네 종류의 제도가 있다.

17개 OECD 회원국에서는 **확정급여형(DB)** 제도에 이어 미래의 퇴직자에 대해 공공 부과식(pay-as-you-go)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다른 10개국에서는 현재 퇴직자에게 적용되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대체되었다. 또한 사적 퇴직연금 제도는 3개 OECD 회원국(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은 기여년수, 지급률,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5개 OECD 회원국에는 **포인트** 제도가 있다. 공적 감시에 따라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운영하는 프랑스의 퇴직 연금제도와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바키아의 공적제도가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포인트를 적립한다. 은퇴 시 연금포인트의 합계에 연금포인트당 지급액을 곱하여 정기적인 연금급여로 전환하게 된다.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는 9개 OECD 회원국에서 미래의 퇴직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면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 기여금과 투자수익을 적립하여 은퇴 시 월 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는 소규모 강제적 공적 연금 외에 준강제적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5개의 OECD 회원국(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에는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FDC 제도처럼 기여에 대해 명목상의 수익률을 적용하는 개인 계정의 부과식 공적제도이다. 계정은 “명목” 상의 것으로 잔액은 관리 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한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상 자本是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한 공식을 사용해 월별 연금으로 전환된다. NDC 제도는 비교적 새롭게 개발된 제도다.(OECD, 2019)

**참고문헌**

OECD (2019), Will Future Pensioners Work for Longer and Retire on Less? Policy Brief on Pensions, July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pensions/pensions/OECD-Policy-Brief-Future-Pensioners-2019.pdf>.



그림 4.1. 분류: 연금제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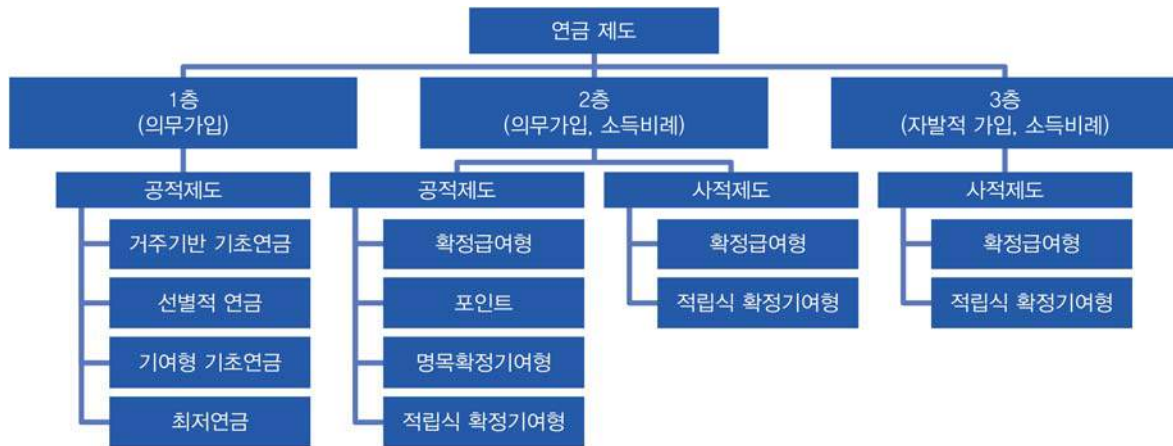


표 4.1. 의무가입을 통한 연금제도의 구조

1층		2층				1층		2층			
거주기반급여		기여형급여				거주기반급여		기여형급여			
기초	선별적	기초	최저	공적	사적	기초	선별적	기초	최저	공적	사적
패널 A. 신규 법률(2018년에 22세의 나이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미래의 퇴직자에게 적용)											
호주	√				FDC	네덜란드	√				DB[q]
오스트리아			√	DB		뉴질랜드	√				
벨기에			√	DB		노르웨이		√		NDC	FDC
캐나다	√	√		DB		폴란드			√	NDC	
칠레		√			FDC	포르투갈			√	DB	
체코			√	√	DB	슬로바키아			√	포인트	
덴마크	√	√			FDC	슬로베니아			√	DB	
에스토니아			√	포인트	FDC	스페인			√	DB	
핀란드		√		DB		스웨덴		√		NDC + FDC	FDC[q]
프랑스			√	DB + 포인트		스위스			√	DB	DB
독일		√		포인트		터키			√	DB	
그리스	√			DB		영국		√			
헝가리			√	DB		미국				DB	
아이슬란드	√	√			DB[q]						
아일랜드			√			기타 G20 국가					
이스라엘	√		√		FDC	아르헨티나			√	√	DB
이탈리아				NDC		브라질			√	√	DB
일본		√		DB		중국			√	√	NDC + FDC
한국		√		DB		인도			√	√	DB + FDC
라트비아			√	NDC + FDC		인도네시아			√	√	DB + FDC
리투아니아			√	포인트		러시아			√	√	포인트
룩셈부르크		√	√	DB		사우디아라비아			√	√	DB
멕시코			√		FDC	남아프리카공화국			√	√	
패널 B. 현재 법률 중 패널 A와 상이한 경우(2018년 신규 퇴직자에게 적용)											
칠레	√		√	DB	FDC	멕시코			√	√	DB
에스토니아			√	DB/포인트	FDC	노르웨이		√	√	√	FDC
이탈리아			√	DB + NDC		폴란드			√	√	DB/NDC
라트비아			√	DB/NDC + FDC		스웨덴		√	√	√	DB/NDC + FDC
리투아니아		√		DB/포인트		영국			√	√	DB

주: \*비 OECD 회원국 정보는 이용할 수 없다. "선별적" 항목은 평균 임금의 30%를 받는 완전경력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체크 표시하였다. [q] = 매우 높은 가입률을 가진 단체협약 기반의 준강제적 제도, 제9장 참조. DB = 확정급여형, FDC = 적립식 확정기여형, NDC = 명목확정기여형. 이스라엘의 기여형 기초연금에서는 거주 기반 기초연금에 10년 이후의 매 기여년에 대하여 2%를 보충(최대 총 50%)한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의무 퇴직연금에 대해 기여율, 최저 수익률, 그리고 누적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률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는 암묵적인 확정급여형(DB) 제도이다.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매달 기여 근로자의 각 사적 FDC 계좌로 금액을 지급한다. 캐나다에서는 기초연금(OAS)에 대하여 소득을 조사하지만 세금 시스템("환수")만을 사용한다.

출처: <http://oe.cd/pag>의 "국가별 현황" 참조.

**주요 결과**

거주 기반 기초연금은 9개 OECD 회원국에서 운영되며 평균 급여액은 근로자 총 평균 소득의 17%이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이 거주자에 대하여 보장연금, 사회부조 등 선별적 제도를 제공한다. OECD 평균을 보면 기여 기록이 없는 사람은 선별적 연금제도를 통해 소득조사에 따라 평균 소득의 16%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 기반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20%를 수령할 수 있다. 9개 OECD 회원국에서는 기여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며, 평균적으로 총 평균 임금의 14%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한다. 또한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이 기여형 제도 내에서 최저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액은 기초 또는 사회부조 수준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평균적으로는 평균 소득의 25%이다.

OECD 국가에서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노인의 최저 생활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퇴직소득을 제공한다.(표 4.2) 표의 왼쪽 부분은 다른 유형의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가치를 보여준다. 급여 가치는 국가 간의 용이한 비교를 위하여 상대적 수치, 즉 국가의 총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로 제시된다.(제7장의 “평균 임금” 지표 참조) 표의 오른쪽 부분은 65세 이상의 인구 중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급여 수준**

제시된 급여 가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 특히 최저연금의 경우 - 부부 두 사람이 각각 개인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 특히 선별적 연금 제도의 경우 - 부부가 평가의 한 단위로 묶여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수급액의 2배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급한다.

기초연금과 최저연금 중 어느 것도 운영하지 않는 OECD 회원국은 호주, 핀란드, 독일, 미국까지 총 4개국뿐이다. 또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은 추가 자산조사를 사용하는 선별적 급여 제도를 운영한다. 여러 국가에서 복수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들에 따른 급여가 부가적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들 제도 간에 일정한 대체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림 4.2는 비기여형 거주 기반 급여의 수준을 요약 하여 나타낸다. 거주 기반 기초연금은 9개 경우에서 나타난다. 평균 급여액은 총 평균 임금의 17%로, 가장 높은 경우는 뉴질랜드의 40%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OECD 회원국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선별적 연금을 제공 하지만,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는 거주 기반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면 추가로 선별적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선별적 급여액이 감소되지 않는다. OECD 평균을 보면 선별적 연금제도는 추가 자산조사를 거쳐 총 평균 소득의 16%를 지급하며, 거주 기반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총 20%를 지급한다.

1층 제도의 기여형 급여에서는 OECD 회원국 중 1/3이 기여형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 않다.(그림 4.3) OECD 회원국 중 1/4은 기여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며, 평균적으로 급여액 전액은 평균 소득의 14%에 해당한다. 거주 기반 기초연금에 더하여 보너스 형태로 기여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급여액이 평균 소득의 6%이며, 가장 높은 아일랜드는 27%다. OECD 회원국 중 절반에 가까운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의 25%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 연금에 더하여 낮은 수준의 기여형 연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최저연금은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의 경우 평균 임금의 10%부터 터키의 경우 40%까지 다양하다.

**적용범위**

1층 급여의 중요성은 OECD 회원국에 걸쳐 큰 차이를 보인다. 1층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표 4.2의 마지막 네 칼럼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에게 지급되는 경우, 가족 전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 수급자 인원 계산에 사용된 방식이 상이 하기 때문에 국가 간 데이터 비교가 어느 정도 불확실할 수 있다.

물론 거주 기반 기초연금은 평균 가입범위가 가장 넓다. 그러나 기여형 기초연금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수급자 수를 보인다.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65세 미만이나 해외 거주 수급자로 인한 것이다.

최저연금 수급 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수령 비율이 높으면 급여 수준도 올라간다. 최저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거의 40%에 달한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최저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약 30%이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10% 미만, 헝가리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2%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선별적 연금제도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큰 편이다. 특히 칠레, 한국, 멕시코는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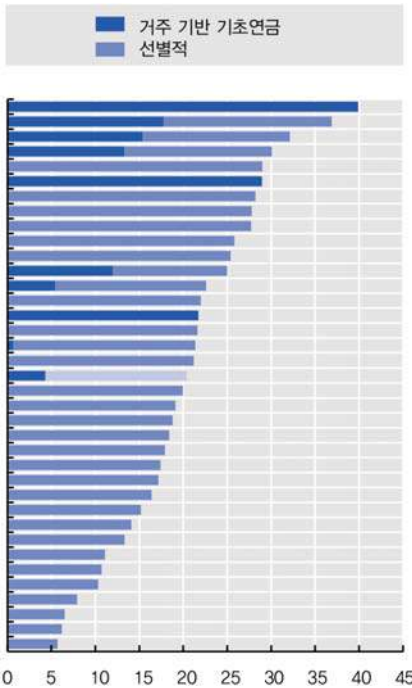
표 4.2. 현재 1층 급여 수준 및 수급자

	2018년 급여가치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2016년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				2018년 급여가치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2016년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			
	거주 기반 기초 연금	선별적	기여형 기초 연금	최저	거주 기반 기초 연금	선별적	기여형 기초 연금	최저	거주 기반 기초 연금	선별적	기여형 기초연금	최저	거주 기반 기초 연금	선별적	기여형 기초연금	최저
호주		27.8					69									
오스트리아		22.0		30.0			10		..							
벨기에		27.7		30.8			5		31							
캐나다	13.3	16.8					97	31								
칠레		13.3		16.7			60		..							
체코		10.7	8.5	10.9			..	118	..							
덴마크	17.8	19.2					101									
에스토니아		14.1	13.1				3	122								
핀란드		17.2					41									
프랑스		25.4		22.3			4	39								
독일		20.0					1									
그리스	21.7					..	..									
헝가리		7.9		8.3			0	1								
아이슬란드	5.4	17.2					71	..								
아일랜드		25.8	27.0				15	59								
이스라엘	12.0	25.0	6.0				89	..	..							
이탈리아		18.8		21.1			7	32								
일본		18.4	15.0				3	91								
한국		6.2	11.3				73	32								
라트비아		6.5		11.0			..	..								
리투아니아		11.1	12.8				2	108								
룩셈부르크		29.0	9.9	36.8			1	112	29							
멕시코		5.7	30.0				64	..								
네덜란드												29.0			108	1
뉴질랜드												39.9			104	2
노르웨이												15.4	32.1		103	
폴란드												15.2		22.8	5	..
포르투갈												28.2		29.7	6	38
슬로바키아												17.9		35.1	1	7
슬로베니아												17.4		31.0	17	2
스페인												19.1		34.2	3	25
스웨덴												0.7	21.4		35	
스위스												21.2		15.5	0	..
터키												10.3		40.4		22
영국												21.6	16.7		19	107
미국												16.4			2	
기타 G20 국가																
아르헨티나												15.7	4.7	17.1	..	..
브라질														46.1	..	..
중국														..	..	..
인도														14.5	..	..
인도네시아														12.5	..	..
러시아												13.2	12.7	..	..	..
사우디아라비아														23.9	..	..
남아프리카공화국												17.0		..	..	..

주: “..” = 자료 없음. 표시된 급여 수준은 2018년 신규 연금수급자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는 거주 기반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면 추가로 선별적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수급자 데이터는 이탈리아(최저),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2년 자료,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2014년 자료이다.  
출처: 각국 제공 자료 및 OECD 사회적 수혜자 데이터베이스(Social Recipient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231>

그림 4.2. 비기여형 1층 급여  
총 평균 소득 대비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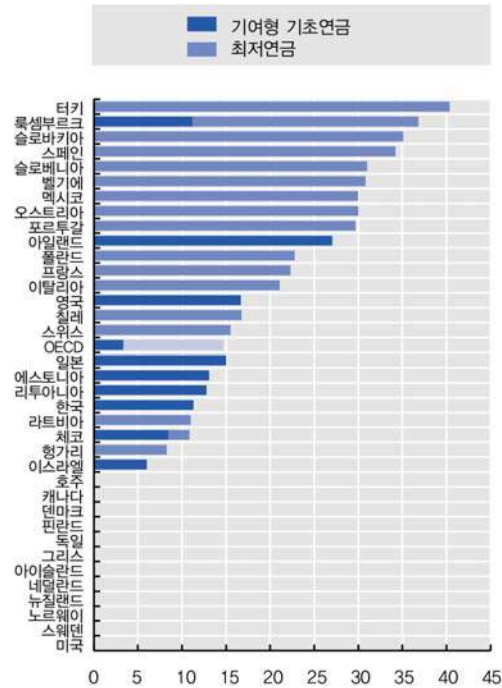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250>

그림 4.3. 기여형 1층 급여  
총 평균 소득 대비 비율, 2018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269>

주요 결과

OECD의 연금제도 분류에서 2층은 의무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이들 제도의 주요 변수 및 규칙이 수급액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법제화된 연금 개혁의 장기적 효과가 포함된다.

일반적인 소득비례제도에는 각각 다른 급여액 산정 방식을 가진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DB) 제도는 명목지급률(nominal accrual rate)을 지정하여 개인 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다. 지급률은 적용 기간 중 매년 급여액이 적립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기여율이 높을수록 기여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는 지급률도 높아진다. 포인트 제도에서는 근로 기간 중 누적된 포인트 수와 포인트의 가치를 곱하여 연금 급여액을 산정한다.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는 연금 분할지수(annuity divisor)를 적용하여 은퇴 연령이 되면 개인 계정에 축적된 (명목상)자본을 월별 연금 급여액으로 전환한다. 표 4.3은 신규 법률에 따라 2018년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급여액 산정 기준 및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에서는 최소 2%의 명목지급률(nominal accrual rates)이 적용된다. 일본과 한국은 지급률이 0.5%로 가장 낮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절반 이상에서 지급률이 일정하다. 체코, 포르투갈, 스위스와 미국의 공적제도에서는 수급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낮으면 더 높은 지급률이 부여된다.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기여 기간이 길면 지급률도 상승하지만,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가입 기간 초기에 지급률이 더 높다. 또한, 슬로베니아에서는 여성의 지급률이 남성보다 높다. 스위스에서는 나이가 들면 기여율과 함께 퇴직연금 지급률도 오른다. 총 지급률이나 지급 년수에 제한을 두는 국가도 있다.

급여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측정지표 역시 국가마다 다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전체 근로기간 소득을 사용한다. 포르투갈과 미국은 각각 그에 준하여 40년, 35년의 최고 소득을 사용한다. 근로기간 소득 중 비교적 적은 비율만을 사용하는 프랑스의 주 제도와 슬로베니아 및 스페인의 공적연금은 각각 25년 중 최고 소득, 24년의 최고 소득, 은퇴 전 25년의 최종 소득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모든 제도는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의 “생활수준”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조정하는 평가율을 적용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평가율은 평균 소득 증가율이다. 벨기에, 프랑스의 주 제도, 네덜란드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 스페인의 연금제도는 소득 가치를 재평가할 때 물가 상승만을 반영한다. 이 경우 실질 임금상승률이 대체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 제도의 재정이 실질임금상승률에 (더욱)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OECD, 2019<sup>[2]</sup>) 핀란드, 포르투갈, 미국은 초기 년도의 소득을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합쳐서 재평가하며, 에스토니아와 터키는 물가 상승률에 각각 총 임금과 GDP 성장률을 혼합한다.

확정급여형(DB)과 포인트 제도에서 사용하는 재평가율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이율은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에서는 금융시장 수익율,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에서는 명목금리를 바탕으로 한다. 후자는 이탈리아의 경우 GDP 성장률, 라트비아의 경우 총 임금, 폴란드의 경우 둘의 합과 동일하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소득증가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스웨덴은 사망한 기여자의 누적된 수급액을 제도 내 다른 기여자에게 재분배한다.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개인 계정에 지급되는 기여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 급여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에 한도를 설정한다. 9개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에 한도가 없다. 가장 한도가 높은 것은 슬로바키아와 프랑스의 퇴직연금 제도로, 각각 평균 소득의 약 800%와 700%에 해당하는 한도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한도가 낮은 곳은 평균 소득의 70-80%로 한도를 설정한 이스라엘과 스위스다.

연동(Indexation)은 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물가 연동이다. 그러나 8개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합쳐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며, 4개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과 GDP 또는 총 임금 상승을 결합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임금 상승에서 각각 0.75%와 1.6%의 고정 비율을 제한 값을 바탕으로 연금을 연동한다.

유효지급률(effective accrual rate)은 적용 기간 중 매년 급여액이 유효하게 적립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효지급률은 제5장에 나타난 대체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유효지급률은 소득에 적용되는 영향(임금 물가 연동, 과거 소득의 재평가, 지속가능성 요인)을 반영하여 조정된 명목지급률과 같다. 적립식 확정기여형(FDC)과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에서 유효지급률은 기여율, 수익률, 연금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미래의 연간 유효지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1.78%)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1.6% 이상)이다. 가장 낮은 것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의 0.2%로, 낮은 기여율을 반영하는 수치다. 의무가입 제도의 유효지급률은 OECD 회원국 평균 1%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OECD (2019),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Portugal*,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13736-en>.

표 4.3 소득비례연금의 미래 변수 및 규칙, 최신 법률  
2018년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경력 근로자의 정상적 은퇴연령 기준

제도 유형	DB 제도		DB, 포인트, NDC 제도			FDC, NDC 제도	소득 한도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비율)	평균 소득 완전경력 남성 근로자의 유효지급률 (소득 대비 비율)
	명목지급률 (개인 소득 대비 비율)	소득 측정지표	재평가율	연동률	총 기여율 (%)			
호주	FDC					10.2	252	0.69
오스트리아	DB	1.78	L	w	d		152	1.78
벨기에	DB	1.33	L	p	p		103	1.04
캐나다	DB	0.83	L	w	p [c]		104	0.73
칠레	FDC					10	268	0.73
체코	DB	0.85 [w]	L	w	50%w + 50%p		375	0.85
덴마크	FDC (occ.)					12	없음	0.97
에스토니아	포인트 / FDC		L	w	80%wb + 20%p	6	없음	0.21 / 0.56
핀란드	DB	1.50	L	80%w + 20%p	20%w + 80%p		없음	1.23
프랑스	DB / 포인트	1.16	B25 / L	p / w	p / p		101 / 796	1.01 / 0.35
독일	포인트		L	w	w - x		154	0.86
그리스	DB	0.92 [y]	L	w	50%w + 50%g		342	0.92
헝가리	DB	1.30 [y]	L	w	p		없음	1.30
아이슬란드	DB	1.40	L	w	p		없음	1.40
아일랜드	없음							
이스라엘	FDC					12.5	78	0.71
이탈리아	NDC		L	g	p	33	324	1.61
일본	DB	0.55	L	w	p or w [a]		230	0.50
한국	DB	0.50	L	w	p		117	0.50
라트비아	NDC / FDC		L	wb	p + 75%wb	14 / 6	463 / 없음	0.54 / 0.49
리투아니아	포인트		L	w	wb		458	0.24
룩셈부르크	DB	1.65 [y]	L	w	p, w [c]		202	1.65
멕시코	FDC					6.5	362	0.52
네덜란드	DB (occ.)	1.15	L	p [c]	p [c]		없음	0.85
뉴질랜드	없음							
노르웨이	NDC / FDC		L	w	w - 0.75%	18.1 / 2	114 / 193	0.88 / 0.13
폴란드	NDC		L	wb, g	p, w [c]	19.5	264	0.68
포르투갈	DB	2.22 [w]	B40	Min(25%w+75%p,0.5%)	p, g		없음	1.62
슬로바키아	포인트		L	w	50%w + 50%p		656	1.18
슬로베니아	DB	0.97 [f/m, y]	B24	w, d	w		203	0.97
스페인	DB	2.70 [y]	F25	p	0.25%, p + 0.5%		170	1.68
스웨덴	NDC / FDC / FDC (occ.)		L	w	w - 1.6% [c]	14.9 / 23 / 45 [w]	111 / 111 / 없음	0.8 / 0.17 / 0.31
스위스	DB / DB (occ.)	0.64 [w] / 0.68 [a]	L / L	f / r	50%w+50%p / 0%		70 / 70	0.5 / 0.53
터키	DB	2.00	L	p + 30%g	p		389	1.69
영국	없음							
미국	DB	1.24 [w]	B35	w, p	p		234	0.85

주: 비어 있는 칸은 변수가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a] = 연령에 따라 다름, [c] =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따른 재평가/연동, [f/m] = 성별에 따라 다름, [w] = 소득에 따라 다름, [y] = 근로 연수에 따라 다름, B = 최고 소득 연수, F = 최종 연수, L = 생애 평균, d = 재량적 재평가/연동, f = 고정율, g = 국내총생산 성장률, p = 물가 상승률, w = 평균 소득 성장률, wb = 총 임금 성장률 덴마크: 준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기여율. ATP 연금은 마지막 칼럼에만 적용됨. 독일: x는 지속가능성 및 기여 요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이탈리아: 연동은 연금액이 낮은 경우 물가의 100%, 연금액이 높은 경우 물가의 75% 수준으로 이루어짐. 일본: 67세까지 임금이 연동되고 68세 이후 물가에 연동됨. 룩셈부르크: 물가상승률에 연금 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질소득 상승률 일부를 더한 만큼 연동됨. 폴란드: 물가상승률+이전 해 평균 실질소득 상승률의 최소 20%에 연동됨. 포르투갈: 연금액이 낮으면 물가 연동 비율이 높아짐. GDP 성장률이 높으면 연동이 증가함. 스위스: 공적제도의 경우 기여 기간의 연간 소득이 아닌 퇴직 시 평균소득 측정에 한도가 적용됨. 미국: 60세에 소득 재평가, 60-62세는 조정 없음, 62-67세는 물가 수준 재평가. 기여 기간의 연간 소득이 아닌 퇴직 시 평균소득 측정에 지급률이 적용됨. 일부 국가에서는 기여연수가 일정 기간을 넘거나 총 지급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누적이 중단된다. 가령 벨기에(45년), 캐나다(40년), 포르투갈(40년), 스페인(100%), 터키(90%), 미국(35년)이 여기 해당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연금이나 지연퇴직 연령 도달 시 누적이 중단되기도 한다.  
출처: <http://oc.cd/pag/>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288>

**주요 결과**

은퇴와 연금 지급 요건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며,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다양한 제도의 서로 다른 연금 지급기준들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경력 개인에 대한 OECD 회원국의 2018년 평균 정상 연금 수급연령은 여성의 경우 63.5세, 남성의 경우 64.2세였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48세, 51세였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남성의 경우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7세로 가장 높았다.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곳은 5년의 격차를 보인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4.2년의 폴란드였다.

표 4.4는 강제적 연금제도의 정상퇴직 및 조기퇴직에 대한 규칙을 나타낸다. “정상”퇴직이란 페널티 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 제도에서는 “조기” 연금수급연령으로부터 연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길어진 퇴직 기간에 맞춰 급여 페널티가 조절 역할을 한다. 표시된 나이는 이론적 연령으로,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단 없이 근로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6장에서는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과 고령 고용률을 살펴본다.

**조기 연금수급연령**

매우 조기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령 호주,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55세에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이 아닌 한국과 리투아니아의 공적제도에서는 60세 이전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칠레와 멕시코의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 슬로바키아의 확정 급여형(DB) 제도에서는 연금 지급액이 최저생활수준을 나타내는 하한선을 넘어야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조기 지급이 가능하지만 칠레와 멕시코에는 연령 조건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포인트 제도에서는 정상 연금수급연령 옆에 조기 연금수급연령이 명시되어 있다. 공적 확정급여형(DB) 제도나 포인트 제도에서는 흔히 정상 연금수급연령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연금 출금을 허용한다.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22세부터 중단 없이 근로한 경우 조기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일치한다.

오스트리아(여성의 경우만), 헝가리, 터키, 영국은 현재 확정 급여형(DB) 제도에 조기퇴직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들이다. 기초연금과 선별적 연금제도에서도 조기 퇴직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단, 체코와 일본처럼 기초연금과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요소를 모두 가진 공적연금은 예외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는 연금분할지수를 통해 최초 급여액 지급 연령으로부터 남은 수명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적으로 계리적 조정된다. 따라서 표 4.4에서는 확정기여형(DC) 제도에 대하여 조기연령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의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에서는 여전히 표에 표준 연금수급연령이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전체 연금패키지의 구성요소별로 서로 다른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적용된다. 특히 선별적 연금 제도의 수급가능연령이 소득비례제도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실제 수급연령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소득비례 연금액을 가진 개인은 1층 구성요소를 이용하기 전에 은퇴할 여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개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남성보다 낮게 지정하고 있다.

OECD는 한 국가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경력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제도를 결합한 수급가능연령으로 정의한다. 가령, 칠레의 여성은 60세에 확정 기여형 연금 자격을 얻지만 65세가 될 때까지 선별적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2018년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5세로 기록된다.(그림 4.4)

2018년에 OECD 평균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4.2세, 여성의 경우 63.5세였다. 연금수급연령이 가장 낮은 터키는 여성이 48세, 남성이 51세이며,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남성의 경우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67세다.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곳은 5년의 격차를 보인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이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G20 국가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대체로 이보다 낮은 편이지만, 예외로 아르헨티나의 남성은 65세다. 이들 국가 중 절반에서는 성별 격차가 나타났으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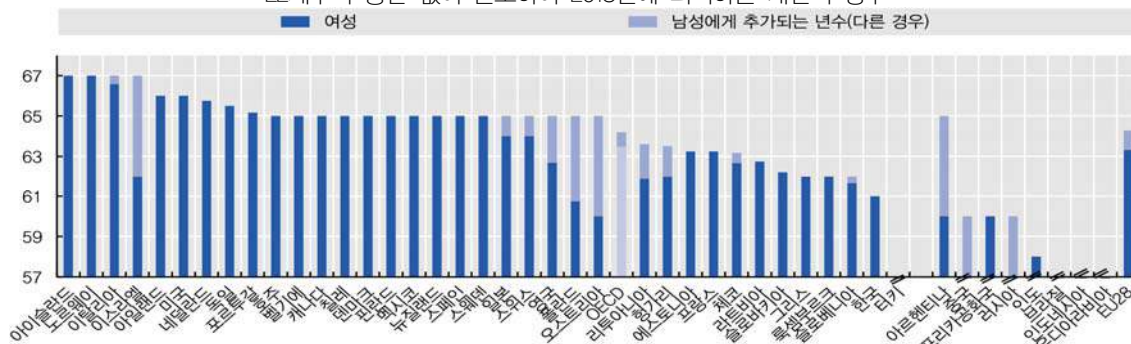
표 4.4 연금제도별 현재 조기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  
22세부터 중단 없이 근로하여 2018년에 퇴직하는 개인의 경우

호주	제도	조기	정상	일본	성별	제도	조기	정상
	T	n.a.	65		남성	기초, DB	60	65
	FDC	55	..		여성	기초, DB	60	64
오스트리아	남성 DB, Min	62	65	한국		기초, DB	57	61
	여성 DB, Min	n.a.	60	라트비아		NDC, Min, FDC	60.8	62.8
벨기에	DB	63	65	리투아니아	남성	포인트	58.6	63.6
	Min	n.a.	65		여성	포인트	56.9	61.9
캐나다	기초, T	n.a.	65	룩셈부르크		기초, DB, Min	62	62
	DB	60	65	멕시코		T, Min	n.a.	65
칠레	Min, T	n.a.	65			FDC	60 or SL	..
	남성 FDC	연령 무관 & SL	65	네덜란드		기초	n.a.	65.8
	여성 FDC	연령 무관 & SL	60			DB (Occ)	부문별 상이	..
체코	남성 기초, DB, Min	60	63.2	뉴질랜드		기초	n.a.	65
	여성 기초, DB, Min	60	62.7	노르웨이		기초, T	n.a.	67
덴마크	기초, T	n.a.	65			DB	62	67
	FDC (ATP)	65	..	폴란드	남성	NDC, Min	n.a.	65
	FDC (Occ)	60	..		여성	NDC, Min	n.a.	60.8
에스토니아	기초, 포인트	60.3	63.3	포르투갈		DB	62	65.2
	FDC	62	..			Min	n.a.	65.2
핀란드	DB	63	65	슬로바키아	남성	DB, Min	60.2 & SL	62.2
	T	63.3	65		여성	DB, Min	60.2 & SL	62.2
프랑스	DB, Min	62	63.3	슬로베니아	남성	DB, Min	60	62
	포인트	55	63.3		여성	DB, Min	60	61.7
독일	포인트	63	65.5	스페인		DB, Min	63	65
	T	n.a.	65.5	스웨덴		기초, T	n.a.	65
그리스	기초, DB	62	62			NDC, FDC	61	..
헝가리	남성 DB, Min	n.a.	63.5			FDC (Occ)	55	65
	여성 DB, Min	n.a.	62	스위스	남성	DB, Min	63	65
아이슬란드	기초, T	n.a.	67		여성	DB, Min	62	64
	DB (Occ)	65	67		남성	DB (Occ)	58	65
아일랜드	기초, T	n.a.	66		여성	DB (Occ)	58	64
이스라엘	남성 기초, T	n.a.	67	터키	남성	DB, Min	n.a.	51
	여성 기초, T	n.a.	62		여성	DB, Min	n.a.	48
	남성 FDC	67	..	영국	남성	기초, DB	n.a.	65
	여성 FDC	62	..		여성	기초, DB	n.a.	62.7
이탈리아	남성 NDC + DB	63.6	67			T	n.a.	62.7
	여성 NDC + DB	63.6	66.6	미국		DB	62	66

주: n.a. = 조기수급 또는 수급연기가 가능하지 않음; Occ = 퇴직연금, Min = 최저연금, SL = 최저생활수준 도달함, T = 선별적, .. = 계리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급여액이 자동적으로 퇴직연령에 따라 조절되므로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제시되지 않음. 제도별 정상 및 조기 연금수급연령은 각각 22세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중단 없이 근로한 연금 수급자가 페널티 여부에 관계 없이 처음으로 수급 가능한 연령을 가리킨다. 슬로바키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59.75세까지 낮아짐. 핀란드: 누적된 연금 수급권의 25%나 50%에 대하여 61세부터 조기 부분 수급이 가능함. 출처: OECD, 각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함; <http://oe.cd/pag>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307>

그림 4.4. 성별에 따른 현재 정상 연금수급연령  
22세부터 중단 없이 근로하여 2018년에 퇴직하는 개인의 경우



주: 용이한 자료 파악을 위하여 본 차트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배제하였다. 배제된 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모두 47세, 터키의 여성과 남성이 각각 48세 및 51세, 브라질의 여성이 52세, 러시아의 여성이 55세, 인도네시아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56세, 브라질의 남성이 57세였다. 중국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직종에 따라 50-60세로 상이했다. 출처: OECD, 각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함; <http://oe.cd/pag>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326>

주요 결과

미래의 정상 및 조기 연금수급연령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2018년에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정상은퇴연령은 2018년에 은퇴하는 개인과 비교하여 OECD 회원국 평균 남성의 경우 64.2세에서 66.1세로, 여성의 경우 63.5세에서 65.7세로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모든 국가를 통틀어 22세부터 근로한 완전경력 남성의 2018년 평균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4.2세였다.(그림 4.6) 2018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의 경우(약 2062년 기준) 평균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6.1세로 상승할 것이다. 동시에 65세 남성의 남은 기대수명이 18.1년에서 22.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제6장 참조), 이는 정상 연금수급연령 증가폭의 2배다.

OECD 36개국 가운데 20개국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평균 3.5년 상승할 것이다. 가장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현재 51세에서 62세까지 늦춰질 터키다. 법제화된 기대수명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덴마크는 65세에서 74세로, 에스토니아는 63.3세에서 71세로 연금수급연령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가장 낮은 미래의 남성 연금수급연령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의 62세다. OECD에 속하지 않는 G20 국가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와 미래 모두 대체로 이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50세 미만이다.

2018년 OECD 국가의 1/3에는 정상 연금수급연령의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그림 4.5) 그러나 2018년에 노동시장에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면서 이 성별 격차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터키의 경우 2028년에 진입하는 세대부터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성별 격차는 OECD에 속하지 않는 일부 G20 국가에도 존재한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전체 연금패키지의 구성요소별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연금제도에 따라

다른 경우, 제도 중 가장 높은 연령을 해당 국가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 정의한다.

표 4.5는 2018년에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별 조기, 정상, 지연 연금수급 규정을 나타낸다. 칠레의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의 경우 여성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정상연령(60세)을 적용한다. 그러나 칠레의 여성은 65세까지 선별적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65세를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 기록한다.

조기 퇴직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제도에서는 퇴직 연령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계리적 조정하므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처럼 조기 연금수급연령만이 표시된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의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에서는 여전히 표에 표준 연금수급연령이 정상 연금수급연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헝가리와 터키를 제외하면 모든 확정기여형(DB) 및 포인트 제도는 조기 수급을 허용한다.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22세부터 중단 없이 근로한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조기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일치한다. 조기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은 삭감되는데, 이는 연금 수급 후 기간이 더 길어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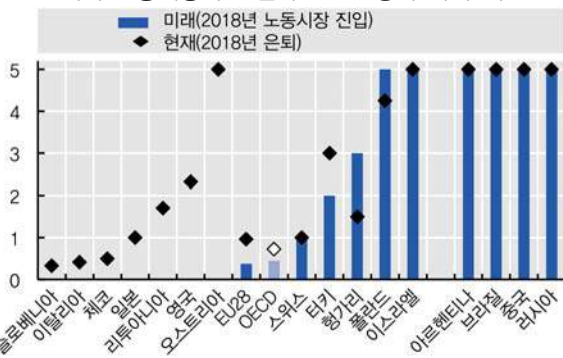
거주 기반 기초연금과 선별적 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이 불가능하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의 기여형 제도는 조기퇴직을 허용한다. 기초연금이나 선별적 연금제도를 퇴직연금과 결합하여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연금수급연령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 기초연금 또는 선별적 연금제도로 65세 이후의 최소 연금을 보장한다.

지연 퇴직

수급연기는 조기 수급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확정기여형(DB), 확정기여형(DC), 포인트 제도는 일반적으로 보너스를 통해 짧아진 수급 기간을 보충한다. 보너스는 보통 조기 수급 페널티보다 높는데, 덴마크의 경우 기초/선별적 제도에서 10년을 연기하면, 혹은 포르투갈의 경우 드물게 확정기여형(DB) 제도에서 1년을 연기하면 연간 최대 약 12%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의무가입 퇴직연금제도,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예외로 확정기여형(DB)이나 포인트 제도에서 수급을 연기해도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최저연금, 선별적 연금제도에서도 연기 보너스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연 연금수급연령, 최대 지급률, 최대 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의 누적이 중단되기도 한다.(표 4.3 주 참조)

그림 4.5. 현재와 미래의 정상 연금수급연령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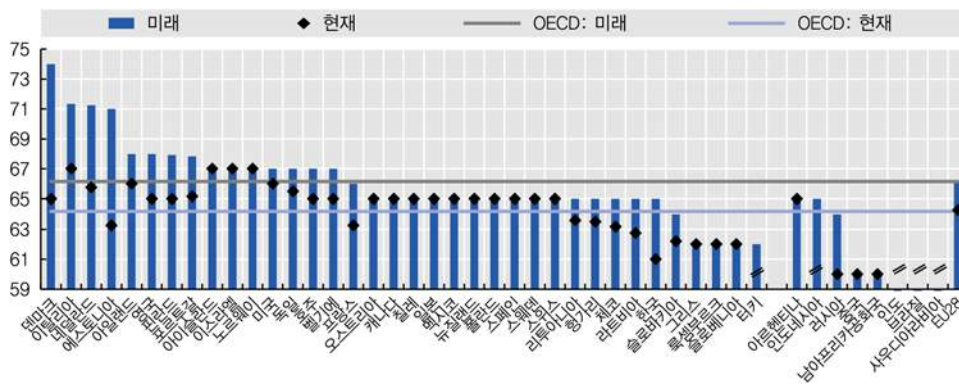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완전경력 사례 기준



주: StatLink 출처: OECD, 각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함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345>



그림 4.6. 22세부터 근로한 완전경력 남성의 현재 및 미래 정상 연금수급연령  
 각각 2018년에 은퇴하는 경우와 2018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주: 용이한 자료 파악을 위하여 본 차트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배제하였다. 배제된 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재와 미래 모두 47세, 터키의 현재가 51세, 인도네시아가 현재 56세, 브라질이 현재와 미래 모두 57세, 인도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58세다. 자세한 내용은 StatLink 참조.  
 출처: OECD, 각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함; <http://oe.cd/pag>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364>

표 4.5. 연금제도별 조기, 정상, 지연 퇴직에 대한 연령, 페널티, 보너스  
 2018년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단 없이 근로하는 개인의 경우

제도	조기 연령	페널티 (p.a.)	정상 연령	보너스 (p.a.)	제도	조기 연령	페널티 (p.a.)	정상 연령	보너스 (p.a.)	
호주	T	n.a.	67	0%	이탈리아	NDC	68.3	..	71.3	
	FDC	60	..	..	일본	기초, DB	60	6%	65	
오스트리아	DB, Min	62	5.1%	65	4.2%	한국	기초, DB	60	6%	65
벨기에	DB	63	0%	67	0%	라트비아	NDC, Min, FDC	63	..	65
	Min	n.a.	67	0%	리투아니아	포인트	60	4.8%	65	
캐나다	기초	n.a.	65	7.2%	룩셈부르크	기초, DB, Min	62	0%	62	
	T	n.a.	65	0%	멕시코	T, Min	n.a.	..	65	
	DB	60	7.2%	65	8.4%		FDC	60 or SL	..	
칠레	Min, T	n.a.	65	0%	네덜란드	기초	n.a.	..	71.3	
	FDC	연령 구간 & SL	..	65	..		DB (Occ)	부율별 상	..	
	(M)	연령 구간 & SL	..	60	..	뉴질랜드	기초	n.a.	..	65
	(W)	연령 구간 & SL	..	60	..		T	n.a.	..	67
체코	DB	60	3.6-6% [I]	65	6%	노르웨이	NDC	62	..	..
	기초, Min	60	0%	65	0%		FDC (Occ)	62	..	..
덴마크	기초, T	n.a.	74	6.9-11.9% [I]	폴란드	(M) NDC, Min	n.a.	..	65	
	FDC (ATP)	74	..	..		(W) NDC, Min	n.a.	..	60	
	FDC (Occ)	69	..	..	포르투갈	DB	62	6%	67.8	
에스토니아	기초, 포인트	68	4.8%	71	10.8%		Min	n.a.	67.8	
	FDC	68	..	..	슬로바키아	DB, Min	62 & SL	6.5%	64	
핀란드	DB	65	4.8%	67.9	4.8%	슬로베니아	DB, Min	60	3.6%	62
	T	n.a.	67.9	4.8%	스페인	DB, Min	63	6% [y]	65	
프랑스	DB, Min	62	5%	65	5%	스웨덴	T	n.a.	..	65
	포인트	57	4-5.7% [y]	66	0%		NDC, FDC	61	..	..
독일	포인트	63	3.6%	67	6%		FDC (Occ)	55	..	65
	T	n.a.	67	0%	스위스	(M) DB, Min	63	6.8%	65	
그리스	기초, DB	62	6%	62	0%		(W) DB, Min	62	6.8%	64
헝가리	(M) DB, Min	n.a.	65	6%		(M) DB (Occ)	58	3-4% [I]	65	
	(W) DB, Min	n.a.	62	6%		(W) DB (Occ)	58	3-4% [I]	64	
아이슬란드	기초, T	n.a.	67	6%	터키	(M) DB, Min	n.a.	..	62	
	DB (Occ)	65	7%	67	8%		(W) DB, Min	n.a.	60	
아일랜드	기초, T	n.a.	68	0%	영국	기초	n.a.	..	68	
이스라엘	(M) 기초, T	n.a.	67	5%	미국	DB	62	6.7-5% [I]	67	
	(W) 기초, T	n.a.	62	5%					8%	
	(M) FDC	67	..	..						
	(W) FDC	62	..	..						

주: (M) = 남성, (W) = 여성, [a] = 연령에 따라 다름, [I] = 기대 또는 연기 기간에 따라 다름, [y] = 기여 년수에 따라 다름, n.a. = 조기 퇴직 불가, Min = 최저연금, Occ = 퇴직연금, SL = 최저생활수준 도달함, T = 선별적, .. = 계리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C) 제도의 급여액이 자동적으로 퇴직연령에 따라 조절되므로 자료가 없음. 제도별 정상 및 조기 연금수급연령은 각각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단 없이 근로한 연금 수급자가 페널티 여부에 관계 없이 처음으로 수급 가능한 연령을 가리킨다.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다른 경우 개별적으로 표시함. 모형화에 사용된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진하게 표시됨. 덴마크: 기초연금/선별적 연금제도의 보너스율은 최초 수급 당시의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하므로 수급연기 기간에 따라 상이함. 슬로바키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이 낮아짐. 핀란드: 누적된 연금 수급권의 25%나 50%에 대하여 61세부터 조기 부분 수급이 가능함. 그리스와 라트비아의 경우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금의 10%와 50%가 각각 임시 조기퇴직 페널티로 적용됨. \*룩셈부르크의 경우 은퇴 연기에 대한 보너스는 없으나 개인의 연령에 기여 년수를 더한 값이 100을 초과하면 지급률이 매년 상승함.  
 출처: OECD, 각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함; <http://oe.cd/pag>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364>



## 제 5 장

# 연금수급액

연금수급액은 OECD 연금 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이론적 계산은 2018년에 적용된 국가별 변수 및 규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2018년에 22세의 나이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법제화되었고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연금 개혁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지표를 제시하기 전에 방법론과 가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한다.

지표는 의무 연금제도에서의 총 대체율, 즉 개인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 진입 연령이 20세에서 22세로 변화하며 나타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는 가입률이 높은 공적제도와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의 대체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금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분석이 이어진다. 네 번째 지표와 다섯 번째 지표는 세금과 기여분을 고려한 순(net) 기준의 대체율이다. 그 다음에 연금자산의 두 가지 지표, 즉 노령연금 흐름의 생애 할인율 가치를 보여 준다. 이 지표는 또한 연금수급연령, 급여연동, 기대수명을 고려한다. 연금자산 지표는 총 및 순가치기준으로 제시된다. 그 다음, 개인 노동자 대비 부부의 연금수급액을 나타내는 지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및 실업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총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요 결과**

제5장에서 다루게 될 연금수급액의 지표는 인구집단에 기반한 OECD 연금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방법론과 가정은 모든 국가의 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설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의 변수 및 규칙을 기반으로 미래의 수급액을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되는 연금수급액은 현재 OECD 회원국에서 법제화 되어 있는 규정들이다. 출간 전 법제화된 개혁들은 충분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포함시켰다. 이미 법제화되었고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변화는 시행되고 있는 연도부터 계속 모형에 포함된다.

모든 연금제도 변수의 가치는 2018년과 그 이후 상황을 반영한다. 산정값은 1996년에 출생하여 당해 22세의 나이로 연금 제도에 진입해 완전경력을 마친 후 은퇴하는 노동자 연금 급여를 나타낸다. 기준 결과는 개인에 대한 값이다. 연동 및 재평가에 대한 모든 규칙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법제화된 것을 따른다.

**경력기간**

여기서 완전경력은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상 연금 수급연령까지 일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미래 연금수급연령”에 대한 지표 참조) 그러므로 경력기간은 정상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62세의 경우 40년, 67세의 경우 45년이다.

사람들은 실업, 학업, 자녀양육, 장애가 있거나 연로한 친척의 간호 등을 이유로 유급 근로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는 이러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실업이나 자녀양육 기간에 대한 규칙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온라인 보고서 “국가별 현황”(http://oe.cd/ pag)에 설명되어 있다. OECD 연금 모형은 이러한 규칙을 포함한다.

**적용범위**

여기에 제시된 연금 모형은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모든 강제적 연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적제도(즉 국민계정 제도(SNA)에서 정의한 대로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의 지급액과 관련됨)인지 사적제도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국가별로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주된 공적 제도를 모형화하였다.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는 제외하였다.

거의 보편적인 가입률을 보이는 제도 역시 포함시켰는데 근로자의 85% 이상이 가입된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제도를 본 보고서에서는 “준강제적”이라고 칭한다. 이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발적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높은 OECD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연금제도 수급액의 대체율도 함께 표시 하였다.

퇴직자들이 수급할 수 있는 자원조사형 급여도 모형화 했다. 이는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는 자산조사형(means-tested) 연금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소득조사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다.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이들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자산(assets)도 고려하는 더욱 광범위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 조사는 의무적이다. 여기에서는 노후소득 전체가 강제적 연금제도(또는 자발적 제도가 모형화된 국가에서는 강제적 제도+자발적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금 수급액은 평균 노동자 소득(AW)의 0.5배부터 다양한 소득 수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이 범위는 최빈곤층 근로자와 최부유층 근로자 모두의 미래 수급액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적 변수**

비교는 분석대상이 된 모든 OECD 회원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경제적 가정에 근거한다. 실제로 연금 수준은 경제성장, 금융자산의 수익률, 실질임금상승률, 할인율,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으며, 이 변수들은 국가별로 다르다. 그러나 동일한 일련의 가정을 통해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별 연금 수준 차이는 연금제도와 정책의 차이만을 반영하게 된다. 기준 가정은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률**은 연간 2%로 가정한다. **실질소득**은 평균적으로 연 1.2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을 고려하면 이는 3.275%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의미한다) **개인 소득**은 국가 차원의 평균에 맞춰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개인이 근로기간 중 매년 평균 소득 중 동일 비율만큼을 벌어들임으로써 소득 분포에서 동일 지점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적립식 확정기여형 연금의 **실질수익률**은 연간 3%로

가정한다. 운영비, 수수료 구조, 연금 상품 구매비용으로 인한 연금 계산 시 누적 확정기여형 자산에 90%의 **확정기여형 전환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계리적 산정을 위한) **실질할인율**은 연 2%로 가정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제4장은 여기에 사용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다.

기준 모형화는 2018년부터 2100년까지 매년 UN 인구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한 국가별 **사망률** 추정치를 사용한다.

산정 시에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급여액이 이상적인 예상치에 근거해서 계리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물가연동 종신연금의 형태로서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전환계수를 고려한 사망률 추정치를 가지고 산정한다.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연금액을 인출한다면 은퇴 시점의 자본 총액은 동일할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급여액이 분산되는 방식뿐이다. 마찬가지로 명목 계정제도에서 명목 연금률은(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 사용

하고 있는 연동 규정 및 할인 가정을 이용한 사망률 자료를 통해 산정된다.

###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정보는 “국가별 현황”(http://oc.cd/pag)에서 찾을 수 있다.

모형에서는 세금제도와 사회보장기여가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 불변적인 정책 가정은 세금 혜택이나 기여 한도와 같은 “가치” 변수가 매년 평균 노동자 소득에 맞춰 조정되는 반면, 개인소득세 스케줄 및 사회보장기여율과 같은 “비율” 변수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2018년 일반 조항 및 노동자의 세제 혜택은 OECD의 Taxing Wages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세금으로 간주하는 지급액 등, 그 보고서에서 사용한 관행을 여기에서도 따른다.

**주요 결과**

미래 총 연금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소득 대비 은퇴 후 의무가입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한 연금급여의 수준을 나타낸다. 22세에 연금제도에 가입한 평균 소득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정상 연금수급연령의 미래 총 대체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36개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이 평균 49.0%, 여성이 48.2%이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영국은 평균 근로자 소득 기준에서 의무가입 제도의 미래 총 대체율이 30% 미만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대체율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여기서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절반을 버는 근로자로 정의함)에게 평균 소득자 보다 높은 대체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노후에서 보호하고자 한다. 평균 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은 49%인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은 평균 60%가 될 것이다. 호주, 아일랜드,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평균 소득자에게는 비교적 적은 급여를 지급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평균에 가깝거나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공한다. 그러나 10개국의 대체율은 완전경력 평균 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가 동일한데, 해당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이다.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완전경력을 마치면 미래 총 대체율이 114%이며 노령연금이 근로 시 소득보다 더 높다. 반면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체율이 가장 낮은 독일, 리투아니아, 멕시코의 총 대체율은 40%로, 완전경력 이후 총 노령연금이 평균 소득의 20%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6개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소득의 1.5배를 버는 소득자(여기에서는 “고소득자”라 칭함)의 총 대체율은 45%로, 평균 소득자의 49%보다 다소 낮다. 고소득자들의 대체율은 이탈리아에서 80%인 반면, 영국에서는 약 15%이다.

비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소득자의 예상 대체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7%부터 인도의 83%까지 다양하다.

모든 대체율은 22세부터의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해 산정하므로 경력기간이 국가마다 다르다. 덴마크의 경우 2018년에 일을 시작한 개인은 장기 연금수급연령이 74세로 추산되는 반면, 터키에서는 여성이 60세, 남성이 62세, 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는 연금수급 연령이 남성과 여성 모두 여전히 62세일 것이다.(표 5.1)

여성의 총 연금대체율은 9개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낮거나(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스위스, 터키), 성별에 따라 연금 지급률이 다르거나(슬로베니아), 연금 산정 시 남녀 구분이 있는 사망률을 사용(호주, 칠레, 멕시코)했기 때문이다. 대체율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성별 격차는 호주 칠레, 헝가리,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과 폴란드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대체율(즉 월간 급여액)은 남성보다 7~27% 더 낮았다. 그러나 슬로베니아에서는 여성의 대체율이 5% 더 높는데, 지급률이 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총 연금대체율은 연령에 따라 하락하는데, 평균적으로 은퇴 당시 49%에서 80세에는 43%가 된다. 소득 대비 12% 하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금 지급액에 대한 연동 때문인데 많은 국가가 임금에 연동하지 않는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65세로부터 물가를 연동하면 이 낙차는 OECD 모델 가정을 바탕으로 봤을 때 17%에 해당한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낮을수록 물가 연동을 적용한 낙차는 커진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2세인 그리스와 터키는 낙차가 20%로 가장 크다. 스웨덴도 낙차가 20%인데, 임금에서 1.6%를 제하는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 연동이 OECD 모델의 물가 연동보다 낮기 때문이다. 연금급여에 대해 임금연동을 하는 국가(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에서는 80세에도 정상 연금수급연령과 대체율이 동일하다.

**정의와 측정**

노령연금 대체율은 연금제도가 제공하는 급여가 은퇴 전 주된 소득원이었던 근로소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하는가를 측정한다. 총 대체율은 총 연금수급액을 총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대체율은 최종소득(은퇴 직전) 대비 연금의 비율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준 가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경력 전체에 걸쳐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한 비율의 소득을 올린다. 그러므로 최종 소득은 국가 차원의 소득 증가율에 맞춰 재평가된 생애 평균 소득과 같다. 따라서 최종 소득의 비율로 표현된 대체율은 생애 소득 비율로 표현된 대체율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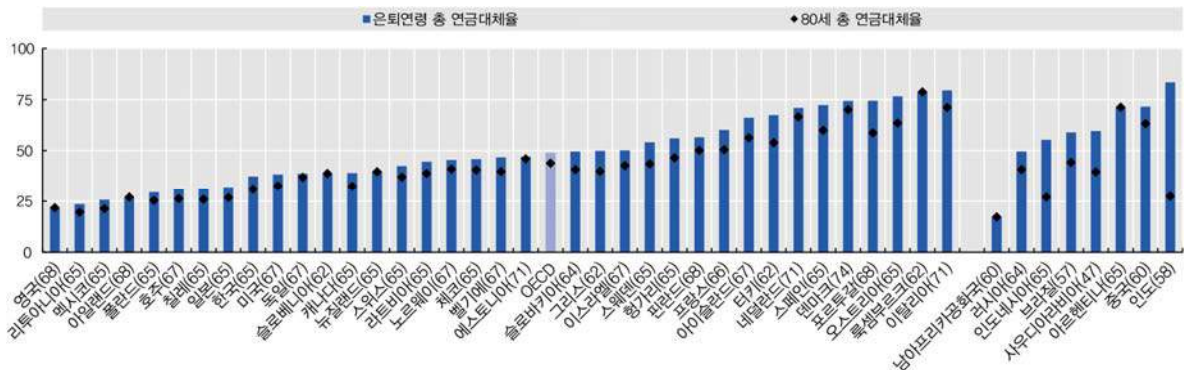
표 5.1. 소득별 총 연금대체율, 의무가입제도

개인소득, 남성의 평균 배수(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연금수급연령		0.5			1			1.5			연금수급연령		0.5			1.0			1.5		
호주	67	64.9	(62.1)	30.9	(28.1)	30.9	(28.1)	뉴질랜드	65	79.3		39.7		26.4							
오스트리아	65	76.5		76.5		76.5		노르웨이	67	50.4		45.4		36.3							
벨기에	67	57.3		46.8		33.7		폴란드	65	(60)	29.4	(29.8)	29.4	(22.5)	29.4	(22.5)					
캐나다	65	50.9		39.0		29.8		포르투갈	68		75.8		74.4		73.1						
칠레	65	36.2	(34.6)	31.2	(28.8)	31.2	(28.8)	슬로바키아	64		59.5		49.6		47.0						
체코	65	75.0		45.9		36.2		슬로베니아	62		47.8	(50.0)	38.8	(40.7)	36.0	(37.9)					
덴마크	74	113.8		74.4		64.0		스페인	65		72.3		72.3		72.3						
에스토니아	71	61.4		47.1		42.3		스웨덴	65		54.1		54.1		65.3						
핀란드	68	56.5		56.5		56.5		스위스	65	(64)	53.0	(51.8)	42.4	(41.3)	29.2	(28.5)					
프랑스	66	60.2		60.1		54.0		터키	62	(60)	67.4	(64.3)	67.4	(64.3)	67.4	(64.3)					
독일	67	38.7		38.7		38.7		영국	68		43.5		21.7		14.5						
그리스	62	63.1		49.9		45.5		미국	67		50.1		39.4		33.1						
헝가리	65	(62)	56.1	(52.2)	56.1	(52.2)	56.1	(52.2)	OECD	66.1	(65.7)	60.0	(59.4)	49.0	(48.2)	44.7	(44.0)				
아이슬란드	67	75.3		66.1		65.1		아르헨티나	65	(60)	83.7	(76.9)	71.2	(64.4)	67.1	(60.3)					
아일랜드	68	54.1		27.0		18.0		브라질	57	(52)	92.1	(92.1)	58.9	(46.1)	58.9	(46.0)					
이스라엘	67	(62)	77.4	(66.7)	50.1	(41.8)	33.4	(27.9)	중국	60	(55)	90.6	(77.3)	71.6	(60.8)	65.2	(55.3)				
이탈리아	71	79.5		79.5		79.5		인도	58		83.4	(80.4)	83.4	(80.4)	83.4	(80.4)					
일본	65	42.5		32.0		28.5		인도네시아	65		55.3	(53.0)	55.3	(53.0)	55.3	(53.0)					
한국	65	55.6		37.3		27.0		러시아	64	(59)	62.3	(57.9)	49.6	(45.2)	44.9	(40.5)					
라트비아	65	44.6		44.6		44.6		사우디아라비아	47		59.6		59.6		59.6						
리투아니아	65	36.8		23.6		19.2		남아프리카공화국	60		34.5		17.2		11.5						
룩셈부르크	62	91.5		78.8		74.5		EU28	66.3	(65.9)	60.3	(60.2)	52.0	(51.7)	48.8	(48.5)					
멕시코	65	35.1		25.7	(24.0)	24.6	(23.0)														
네덜란드	71	73.5		70.9		70.1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402>

그림 5.1. 총 연금대체율: 은퇴연령과 80세의 평균 소득자



출처: OECD 연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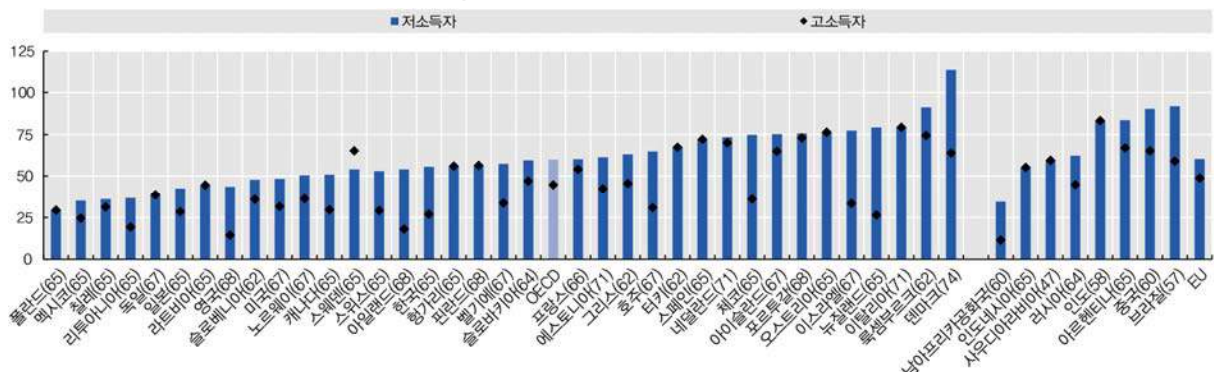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421>

그림 5.2. 총 연금대체율: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440>

**주요 결과**

표 5.1에 제시된 평균 임금의 노동에 대한 미래 총 대체율은 노동자가 2018년 22세로 시작한 전체 경력기간 내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기준 시나리오) 여기서 지표는 그 결과를 이전 2017년도 보고서에서 사용했던 기준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20세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평균 임금자와 비교한다. 이처럼 다른 진입 연령을 사용해도 대체율에는 큰 영향이 없다. 진입 연령이 20세에서 22세로 늦춰지면 많은 국가에서 수급액이 적어지므로 평균 총 대체율이 50.4%에서 49.0%로 감소한다.

이전 판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에서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국가별 연금수급연령까지 완전경력을 마친 근로자를 다뤘다. 이번 판 이후로는 22세에 진입하는 새로운 기준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2년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평균 소득자의 총 대체율을 진입 연령 20세로도 계산하여 표 5.2에 표시하였다. 두 경우 모두 2018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하므로, 두 인구집단의 출생년도가 다르다. 전자는 1998년생(20세 진입), 후자는 1996년생(22세 진입)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준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25-64세 여성 중 고등교육(2011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기준 5-8단계)을 마친 사람의 OECD 평균 비율은 21%에서 38%로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22%에서 32%로 올랐다. (OECD, 2017) 노동시장 평균 진입 연령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20세 이상이 되었다. EU ‘연금적정성보고서(Pension Adequacy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18)’에 따르면 EU 내 진입 연령은 평균 22.8세로, 모든 EU 국가에서 20세 이상이다.(단, 덴마크는 19.7세로 예외) ‘한 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에서는 “학교에서 취업으로(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모듈을 통해 “15-29세의 기대 교육년수 및 근로년수”라는 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교육을 마치는 연령이 22.1세였는데, EU 국가 중 OECD 회원국인 22개 국가의 평균(22.3세)과 매우 근접하다.

이번 판에서는 진입 연령을 변경하면서 평균 소득자의 총 대체율이 50.4%에서 49.0%로 1.4%p 감소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연금제도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 변경으로 인한 영향도 각자 다르다. 근로를 2년 늦게 시작하면 기여 년수가 2년 줄어 든다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20세에 진입한 남성과 22세에 진입한 남성에 대하여 동일한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하는 30개 (여성의 경우 29개) OECD 회원국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여 년수가 2년 줄어든 결과는 모든 제도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의 관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30개국을 보면 대체율이 4.6%p(터키), 3.6%p(오스트리아) 하락하는 경우부터 오히려 0.1%p(캐나다) 오른 경우까지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캐나다에서는 기여 년수가 40년이 되어야 소득비례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물가에 따라 연동되고 1996년생 인구집단은 1998년생 인구집단보다 2년 이른 2061년에 은퇴하므로, 매년 실질 임금이 1.25%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임금 대비 수급액 수준도 올라간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의 대체율은 동일하다. 대체율이 가장 큰 곳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각각 40년과 38.5년만 근로하면 수급 가능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의무가입 기초연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모두 소득상승에 연동되기 때문에 완전경력 근로자의 진입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대비 가치가 유지된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도 진입연령 22세와 20세 사이에 대체율의 변화가 없다. 이들 4개 국가에서도 2년 늦게 은퇴해야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헝가리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이 변경되는데, 헝가리는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덴마크의 경우 기대수명과 관련하여 1998년 인구 집단(20세 진입)의 연령이 1살 증가한다. 헝가리에서는 여성의 경우 40년간 기여하면 전액 수급이 가능하므로 연금수급연령이 2년 줄어든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8), “Pension Adequacy Report 2018;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Vol.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084&further\\_Pubs=yes](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084&further_Pubs=yes).

OECD (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ag-2017-en>.



표 5.2. 진입연령별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대체율 차이

	남성 평균소득자(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연금수급연령 의 차이	대체율의 차이	
	22세 진입(기준 사례)				20세 진입(이전 기준 사례)						
	연금수급연령	대체율		연금수급연령	대체율						
호주	67	30.9	(28.1)	67	32.8	(29.8)		-1.9	(-1.7)		
오스트리아	65	76.5		65	80.1			-3.6			
벨기에	67	46.8		65	46.8		2.0	0.0			
캐나다	65	39.0		65	38.9			0.1			
칠레	65	31.2	(28.8)	65	33.3	(30.7)		-2.1	(-1.9)		
체코	65	45.9		65	47.6			-1.7			
덴마크	74	74.4		75	77.7		-1.0	-3.3			
에스토니아	71	47.1		71	49.4			-2.4			
핀란드	68	56.5		68	58.8			-2.3			
프랑스	66	60.1		64	60.1		2.0	0.0			
독일	67	38.7		65	38.7		2.0	0.0			
그리스	62	49.9		62	53.0			-3.1			
헝가리	65	(62)	56.1	(52.2)	65	(60)	58.7	(54.8)	(2.0)	-2.6	(-2.6)
아이슬란드	67	66.1		67	68.8			-2.7			
아일랜드	68	27.0		68	27.0			0.0			
이스라엘	67	(62)	50.1	(41.8)	67	(62)	52.2	(43.7)	-2.1	(-1.9)	
이탈리아	71	79.5		71	82.7			-3.2			
일본	65	32.0		65	33.4			-1.4			
한국	65	37.3		65	39.3			-2.0			
라트비아	65	44.6		65	47.4			-2.8			
리투아니아	65	23.6		65	24.5			-0.9			
룩셈부르크	62	78.8		60	78.8		2.0	0.0			
멕시코	65	25.7	(24.0)	65	28.2	(26.4)		-2.6	(-2.4)		
네덜란드	71	70.9		71	72.2			-1.2			
뉴질랜드	65	39.7		65	39.7			0.0			
노르웨이	67	45.4		67	47.6			-2.1			
폴란드	65	(60)	29.4	(22.5)	65	(60)	30.7	(23.4)	-1.3	(-0.9)	
포르투갈	68	74.4		68	74.4			0.1			
슬로바키아	64	49.6		64	52.0			-2.4			
슬로베니아	62	38.8	(40.7)	60	38.8	(40.7)	2.0	0.0			
스페인	65	72.3		65	72.3			0.0			
스웨덴	65	54.1		65	56.2			-2.1			
스위스	65	(64)	42.4	(41.3)	65	(64)	42.9	(41.8)	-0.5	(-0.5)	
터키	62	(60)	67.4	(64.3)	62	(60)	72.0	(68.9)	-4.6	(-4.6)	
영국	68	21.7		68	21.7			0.0			
미국	67	39.4		67	39.4			0.0			
<b>OECD</b>	<b>66.1</b>	<b>(65.7)</b>	<b>49.0</b>	<b>(48.2)</b>	<b>65.9</b>	<b>(65.4)</b>	<b>50.4</b>	<b>(49.6)</b>	<b>-1.5</b>	<b>(-1.4)</b>	
아르헨티나	65	(60)	71.2	(64.4)	65	(60)	74.0	(67.1)	-2.7	(-2.7)	
브라질	57	(52)	58.9	(46.1)	57	(52)	62.5	(48.8)	-3.6	(-2.7)	
중국	60	(55)	71.6	(60.8)	60	(55)	76.0	(65.1)	-4.4	(-4.3)	
인도	58		83.4	(80.4)	58		86.3	(83.0)	-2.9	(-2.6)	
인도네시아	65		55.3	(53.0)	65		57.9	(55.5)	-2.6	(-2.5)	
러시아	64	(59)	49.6	(45.2)	63	(58)	50.5	(46.1)	-0.9	(-0.9)	
사우디아라비아	47		59.6		45		59.6		0.0		
남아프리카공화국	60		17.2		60		17.2		0.0		
EU28	66.3	(65.9)	52.0	(51.7)	66.0	(65.5)	53.4	(53.0)	-1.3	(-1.3)	

출처: OECD 연금 모형.

**주요 결과**

전체 OECD 국가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제도의 경우, 평균 소득자에 대한 OECD 평균 총 대체율은 40%인 반면, 사적연금을 포함시키면 49%가 된다.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보급된 OECD 8개국과 이스라엘, 멕시코의 경우 경력기간 내내 기여하는 평균 소득자의 평균 대체율은 58%인데, 강제적 제도만을 고려한 경우는 36%이다. 8개국에서 완전경력 평균 임금 소득자의 평균 대체율은 경력기간 내내 기여하는 경우 59%, 45세부터 자발적 제도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경우 45%다.

표 5.3는 강제적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연금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전 지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완전경력 평균 소득자에 대한 강제적 연금제도의 평균 대체율은 49%이다. 수급액 계산에 강제적 공적연금만을 포함시키는 OECD 17개국의 경우 평균 근로자 소득자에 대한 평균 대체율은 55%이다.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을 포함하지만 자발적 연금은 배제하는 OECD 9개국에서는 평균 대체율이 51%이다. 자발적 연금의 비중이 상당한 10개국의 경우 강제적 연금제도만의 대체율은 36%이다.

**강제적 사적연금**

11개국이 강제적 사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개국(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이 “준강제적”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보편적인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사적연금은 주로 확정급여형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확정기여형이다. 강제적 사적제도의 대체율은 노르웨이 6%에서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50% 이상까지 다양하다. 네덜란드의 42%를 제외하고 평균 근로자 소득 기준 다른 모든 국가의 대체율은 19%에서 32% 사이이다. 스웨덴에서는 평균 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대한 총 대체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기여율이 4.5% 미만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한다.

**자발적 사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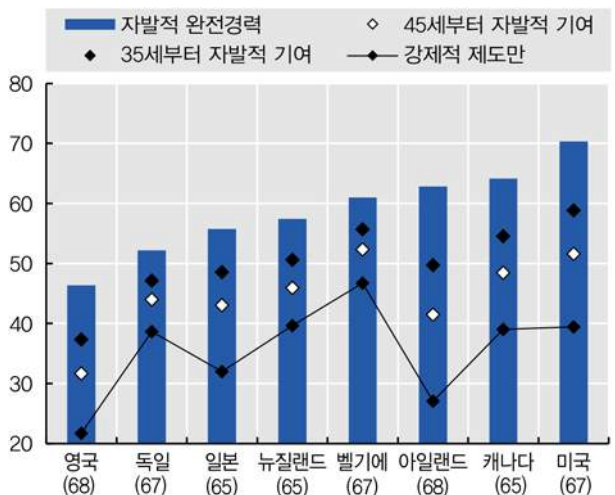
15-64세 인구의 40% 이상이 자발적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는 8개국이 있다.(제9장 “사적연금제도의 가입률” 지표 참조) 더불어 멕시코에서는 주택계정이, 이스라엘에서는 퇴직금 계정이 추가된다. 이들 계정은 근로 기간 중 사용하지 않으면 은퇴 시 연금 계정으로 이동된다. 자발적 사적연금은 자발적 퇴직 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에서는 확정급여형 제도가 모델화되어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한다. 이스라엘에서 모델화된 자발적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로, 경력 기간 중 사용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쓰인다. 멕시코

에서는 주택계정이 모델화되어 있다. 은퇴 시 금액이 남아 있으면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쓰인다.

벨기에,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경우 경력 기간 전체에 대하여 자발적 사적연금을 고려하면 10개국 평균 소득자의 평균 대체율은 58%이며, 강제적 제도만을 고려할 경우는 36%에 불과하다. 자발적 제도는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서 대체율에 가장 큰 영향(29%p 이상)을 미친다.

기여 기간도 총 대체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아래 차트에서는 완전경력 완전기여 사례, 그리고 완전경력이지만 35-45 세에만 자발적제도에 기여한 보다 적합한 사례를 비교한다.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는 모든 연령의 대상자가 퇴직 및 주택 계정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므로 이들 국가의 제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기여 시작 연령이 다른 자발적 기여를 포함한 총 대체율**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478>


이들 8개 국가에서는 35(45)세부터만 기여하는 경우 완전기여 사례와 비교하여 총 대체율이 평균 10(16)%p 하락한다. 벨기에, 캐나다, 미국에서는 35세부터 자발적 제도에 기여하면 55% 이상의 총 대체율이 나온다.

표 5.3. 강제적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사적 연금제도의 총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대비 비율

	강제적 공적			강제적 사적(DB 및 DC)			총 강제적			자발적(DB 및 DC)			자발적 포함 총계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호주	34.0	0.0	0.0	30.9	30.9	30.9	64.9	30.9	30.9						
오스트리아	76.5	76.5	76.5				76.5	76.5	76.5						
벨기에	57.3	46.8	33.7				57.3	46.8	33.7	14.2	14.2	10.4	71.6	61.0	44.1
캐나다	50.9	39.0	29.8				50.9	39.0	29.8	25.1	25.1	25.1	71.9	64.1	54.9
칠레	5.1	0.0	0.0	31.1	31.2	31.2	36.2	31.2	31.2						
체코	75.0	45.9	36.2				75.0	45.9	36.2						
덴마크	63.1	23.7	13.3	50.7	50.7	50.7	113.8	74.4	64.0						
에스토니아	33.8	19.4	14.6	27.6	27.6	27.6	61.4	47.1	42.3						
핀란드	56.5	56.5	56.5				56.5	56.5	56.5						
프랑스	60.2	60.1	54.0				60.2	60.1	54.0						
독일	38.7	38.7	38.7				38.7	38.7	38.7	13.5	13.5	13.5	52.2	52.2	52.2
그리스	63.1	49.9	45.5				63.1	49.9	45.5						
헝가리	56.1	56.1	56.1				56.1	56.1	56.1						
아이슬란드	12.3	3.1	2.1	63.0	63.0	63.0	75.3	66.1	65.1						
아일랜드	54.1	27.0	18.0				54.1	27.0	18.0	35.8	35.8	35.8	89.9	62.9	53.8
이스라엘	36.1	18.0	12.0	41.3	32.1	21.4	77.4	50.1	33.4	19.8	15.4	10.3	97.2	65.5	43.7
이탈리아	79.5	79.5	79.5				79.5	79.5	79.5						
일본	42.5	32.0	28.5				42.5	32.0	28.5	23.8	23.8	23.8	66.2	55.8	52.3
한국	55.6	37.3	27.0				55.6	37.3	27.0						
라트비아	44.6	44.6	44.6				44.6	44.6	44.6						
리투아니아	36.8	23.6	19.2				36.8	23.6	19.2						
룩셈부르크	91.5	78.8	74.5				91.5	78.8	74.5						
멕시코	12.6	3.2	2.0	22.5	22.5	22.5	35.1	25.7	24.6	17.3	17.3	17.3	48.2	43.0	41.9
네덜란드	57.9	29.0	19.3	15.6	42.0	50.8	73.5	70.9	70.1						
뉴질랜드	79.3	39.7	26.4				79.3	39.7	26.4	17.8	17.8	17.8	97.1	57.4	44.2
노르웨이	45.7	39.6	30.1	4.7	5.9	6.2	50.4	45.4	36.3						
폴란드	29.4	29.4	29.4				29.4	29.4	29.4						
포르투갈	75.8	74.4	73.1				75.8	74.4	73.1						
슬로바키아	59.5	49.6	47.0				59.5	49.6	47.0						
슬로베니아	47.8	38.8	36.0				47.8	38.8	36.0						
스페인	72.3	72.3	72.3				72.3	72.3	72.3						
스웨덴	41.6	41.6	30.8	12.5	12.5	34.4	54.1	54.1	65.3						
스위스	32.4	21.4	15.2	20.6	21.0	14.0	53.0	42.4	29.2						
터키	67.4	67.4	67.4				67.4	67.4	67.4						
영국	43.5	21.7	14.5				43.5	21.7	14.5	29.1	29.1	22.9	72.6	50.9	37.4
미국	50.1	39.4	33.1				50.1	39.4	33.1	30.9	30.9	30.9	81.0	70.3	64.0
<b>OECD</b>	<b>51.1</b>	<b>39.6</b>	<b>34.9</b>				<b>60.0</b>	<b>49.0</b>	<b>44.7</b>				<b>66.1</b>	<b>55.2</b>	<b>50.5</b>
아르헨티나	83.7	71.2	67.1				83.7	71.2	67.1						
브라질	92.1	58.9	58.9				92.1	58.9	58.9						
중국	90.6	71.6	65.2				90.6	71.6	65.2						
인도	83.4	83.4	83.4				83.4	83.4	83.4						
인도네시아	33.1	33.1	33.1	22.2	22.2	22.2	55.3	55.3	55.3						
러시아	62.3	49.6	44.9	20.4	20.4	20.4	82.7	70.0	65.2						
사우디아라비아	59.6	59.6	59.6				59.6	59.6	59.6						
남아프리카공화국	34.5	17.2	11.5				34.5	17.2	11.5	49.1	49.1	49.1	49.1	49.1	49.1
EU28	54.7	45.5	41.2				60.3	52.0	48.8				63.6	55.4	51.8

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497>

**주요 결과**

개인세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금수급자는 종종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적이며 연금수급액은 대개 은퇴 전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소득의 평균 세율은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노인에게 추가 수당이나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소득이나 연금수급자에게 세금우대 혜택을 준다.

OECD 국가 절반 이상(35개국 중 20개국)이 개인 소득세에 대해 노인에게 추가적인 기초 감면을 제공한다. 기초 감면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소득공제(tax allowance) 또는 세액공제(tax credit)의 형태를 띤다. 캐나다, 영국을 비롯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추가 감면은 소득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특정 노후소득원에 대해 세금감면을 제공한다. OECD 14개국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총 소득에 따라 공적연금(사회보장) 소득의 15~50%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호주의 경우 과세되었던 연금 기여금 급여 및 투자 수익에 대해서 60세 이상 인구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강제적 확정기여형 제도, 그리고 그러한 제도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에 적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해 적게 과세한다.

전반적으로 28개 OECD 회원국에서는 개인 소득세 제도에 따라 노인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한 특혜를 준다. 8개 국가에서만 연금과 연금수급자에 대해 생산 가능인구와 동일한 세금 처리를 한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만 예외이다. 이 2개국과 추가 19개국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퇴직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는 15개국의 기여율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기여율보다 항상 낮다. 대체로 노후소득은(당연한 이유로) 연금이나 실업에 대한 기여금의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수급자는 의료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대(solidarity)”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증적 결과**

다음 차트는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근로자부터 평균 소득자 수준에서 납부한 총 세금(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를 평균 근로자 소득을 받고 완전 경력을 마쳐 기준 사례의 총 대체율을 적용받는 연금수급자의 총 세율과 비교하였다.(표 5.1, 앞서 “총 연금대체율”에서 제시한 지표 참조)

OECD 8개국 및 기타 주요 국가 6개에서 이러한 연금수급자는 은퇴 후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슬로바키아, 터키 등의 국가에서 그 이유는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연금소득이 노인에게 지급되는 개인 소득세 공제액보다 적기 때문이다. 완전경력 평균 소득자의 총 대체율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는 OECD 전체 평균 소득의 11%를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균 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기여금 액수(고용주의 기여금 미포함)는 OECD 국가에서 평균 26%이며 기타 주요 국가에서 평균 13%이다.

마지막 차트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세전 소득이 총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총 세율은 18%인데, 동일한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기여금 포함)보다 약 8%p 낮다.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얻는 연금수급자의 18%와 평균 소득자의 총 대체율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된 11% 사이의 차이를 보면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표 5.4. 개인소득세 및 강제적 공적, 사적 기여제도에서의 연금 및 연금수급자 처리

	연금소득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면세		연금소득에 대한 의무 기여	연금소득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면세		연금소득에 대한 의무 기여
	공제/혜택	공적제도		공제/혜택	공적제도	
호주	√	√	없음			낮음
오스트리아			낮음			없음
벨기에		√	낮음	√		낮음
캐나다	√	√	없음			낮음
칠레	√		없음			없음
체코	√	√	없음		√	없음
덴마크			없음		√	낮음
에스토니아	√		없음		√	없음
핀란드		√	낮음			없음
프랑스			낮음			낮음
독일		√	낮음		√	없음
그리스			낮음			없음
헝가리		√	없음		√	없음
아이슬란드			없음			
아일랜드	√		낮음			
이스라엘	√		낮음		√	낮음
이탈리아	√		없음		√	없음
일본	√	√	낮음			없음
한국	√	√	없음			없음
라트비아	√		없음			없음
리투아니아	√	√	없음			낮음
룩셈부르크	√		낮음			낮음
멕시코			없음	√		없음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					
폴란드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터키					√	
영국	√					
미국	√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중국						
인도	√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출처: <http://oe.cd/pag>의 온라인 “국가별 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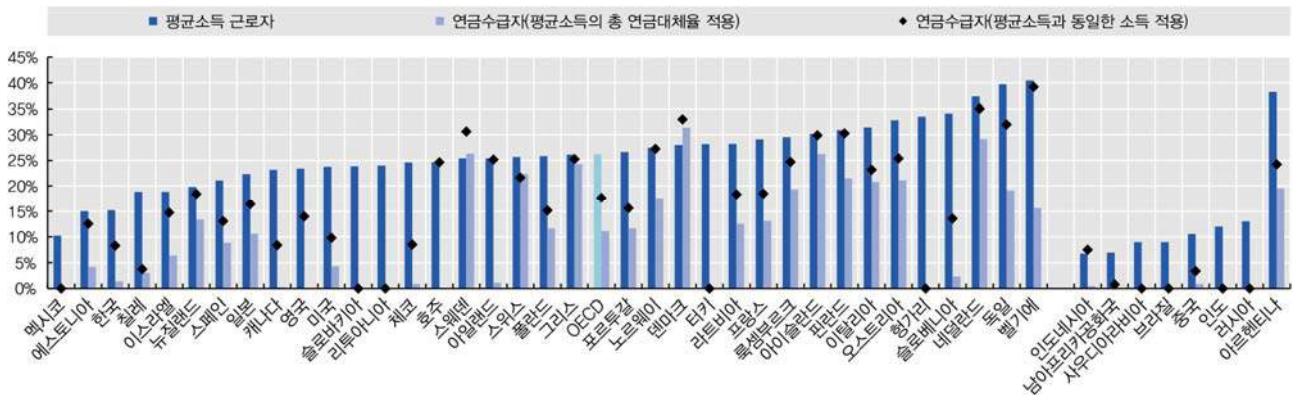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516>

그림 5.3. 연금수급자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출처: OECD 연금 모형; OECD 세금 및 급여 모델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535>

**주요 결과**

총 대체율은 연금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명확한 지표를 제공하는 반면 순 대체율은 근로 시와 비교하여 은퇴 시 가치분소득을 반영하므로 개인에게 더욱 중요하다. OECD 국가의 완전경력 평균 소득자의 경우 정상 연금수급연령에서 의무 연금제도의 순 대체율은 평균 59%로, 평균 총 대체율보다 10%p 더 높다. 이는 주로 세금제도의 누진성, 연금에 대한 일부 세금 혜택, 연금수급액에 대한 낮은 사회 기여금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근로 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유효세율과 기여금이 연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순 대체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데, 평균 소득자의 경우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은 약 30%,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는 90% 이상이다. 저소득자(평균 근로자 소득의 절반)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순 대체율은 68%인 반면, 고소득자(평균 근로자 소득의 150%)의 경우 55%이다.

앞쪽의 “연금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지표는 개인세와 사회보장기여제도가 노후소득 지원에 있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지 않고 소득세상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조세지출, 소득세의 누진성, 100% 미만의 총 대체율은 연금수급자의 소득세율이 근로자보다 더 낮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순 대체율은 대체로 총 대체율보다 높아진다.

평균 소득자의 경우 OECD 국가의 순 대체율은 의무 제도의 경우 평균 59%이다. 영국의 28%에서 터키 94%,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의 90%까지 차이가 크다. 게다가 국가별 순 연금대체율의 양상은 총 연금대체율과 다르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자의 순 대체율은 총 대체율보다 10%p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헝가리와 터키의 경우 30%p 이상이며,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15-20%p 정도 순 대체율이 더 높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연금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벨기에와 포르투갈에서는 세금 혜택이 훨씬 높거나 기여 수준이 낮다.

저소득자의 경우 세금과 기여금이 순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척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근로자들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평균 근로자 대비 세금과 기여금을 더 적게 납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들의 노후소득은 개인 소득세 표준 감면 수준(수당, 크레딧 등) 미만이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에 따라 연금이나 연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자의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 간 차이는 8%p이다. 체코, 독일, 헝가리, 슬로베니아, 터키는 총 기준보다 순 기준의 저소득자 대체율이 훨씬 높다. 평균의 150%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순 대체율은 터키에서 가장 높다. 고소득자의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으로 평균의 150%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근로 시 순 소득의 1/3 미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 스웨덴에서 고소득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배분적 설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대체율이 더 높다. 순 대체율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다른 요율로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소득 범위에 걸쳐 국가 내 순 대체율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차이는 상당한데, 평균 소득자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9%부터 인도의 95%까지 다양하다.

**정의와 측정**

순 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수급액을 순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 대체율의 정의 및 측정값은 총 대체율과 동일하다. 국가 세금제도가 연금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http://oe.cd/p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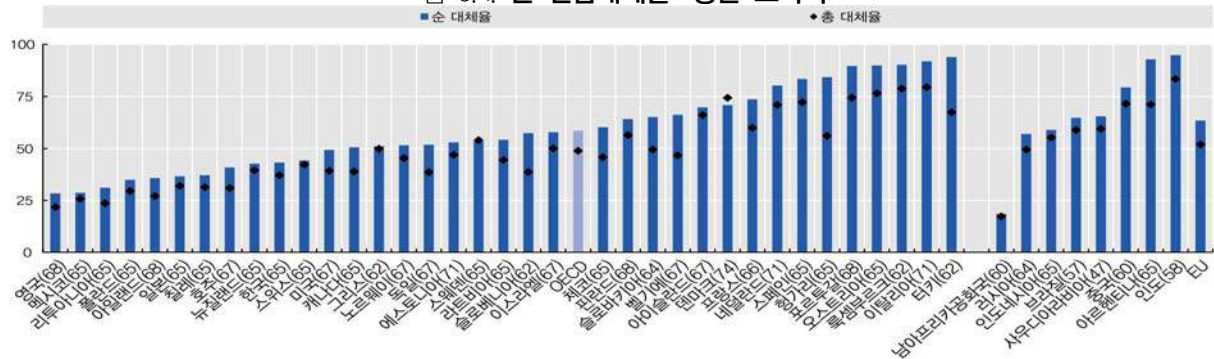
표 5.5. 소득별 순 연금대체율  
개인소득, 남성의 평균 배수(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연금수급연령	0.5				1				1.5				
	연금수급연령	0.5	1.0	1.5	연금수급연령	0.5	1.0	1.5	연금수급연령	0.5	1.0	1.5	
호주	67	75.5	(72.2)	41.0	(37.3)	43.8	(39.8)	뉴질랜드	65	79.8	42.8	30.3	
오스트리아	65	89.7		89.9		89.6		노르웨이	67	57.0	51.6	43.0	
벨기에	67	70.7		66.2		48.3		폴란드	65	(60) 35.9	(36.3) 35.1	(27.3) 34.7	(26.8)
캐나다	65	58.3		50.7		39.7		포르투갈	68	88.0	89.6	89.0	
칠레	65	44.6	(42.6)	37.3	(34.4)	37.9	(34.9)	슬로바키아	64	71.7	65.1	63.3	
체코	65	91.6		60.3		47.9		슬로베니아	62	62.8	(65.8) 57.5	(60.0) 53.7	(53.5)
덴마크	74	104.5		70.9		63.3		스페인	65	78.6	83.4	82.8	
에스토니아	71	65.6		53.1		49.0		스웨덴	65	60.7	53.4	68.9	
핀란드	68	65.1		64.2		64.9		스위스	65	(64) 54.3	(52.8) 44.3	(43.0) 31.7	(30.8)
프랑스	66	71.4		73.6		69.0		터키	62	(60) 86.2	(82.3) 93.8	(89.6) 98.7	(94.2)
독일	67	56.1		51.9		51.4		영국	68	51.0	28.4	20.2	
그리스	62	57.6		51.1		50.3		미국	67	61.2	49.4	42.7	
헝가리	65	(62) 84.3	(78.4) 84.3	(78.4) 84.3	(78.4) 84.3	OECD	66.1	(65.7) 68.3	(67.6) 58.6	(57.6) 54.7	(53.7)		
아이슬란드	67	80.5		69.8		69.8		아르헨티나	65	(60) 102.8	(95.5) 92.8	(85.2) 88.8	(81.4)
아일랜드	68	60.5		35.9		26.7		브라질	57	(52) 100.1	64.8	(50.6) 64.8	(50.5)
이스라엘	67	(62) 81.1	(69.2) 57.8	(49.0) 42.4	(35.9)	아르헨티나	65	(60) 102.8	(95.5) 92.8	(85.2) 88.8	(81.4)		
이탈리아	71	92.0		91.8		94.4		중국	60	(55) 98.5	(84.0) 79.4	(67.7) 73.6	(63.2)
일본	65	45.9		36.8		33.3		인도	58	94.8	(91.3) 94.8	(91.3) 94.8	(91.3)
한국	65	60.8		43.4		32.6		인도네시아	65	58.2	(55.8) 59.0	(56.7) 58.6	(56.3)
라트비아	65	55.2		54.3		52.2		러시아	64	(59) 71.7	(66.6) 57.0	(52.0) 51.6	(46.6)
리투아니아	65	48.4		31.0		25.3		사우디아라비아	47	65.4	65.4	65.4	
룩셈부르크	62	99.0		90.1		85.9		남아프리카공화국	60	34.5	18.5	12.9	
멕시코	65	35.6		28.6	(26.7)	28.6	(26.7)	EU28	66.3	(65.9) 69.8	(69.7) 63.5	(63.0) 60.4	(59.9)
네덜란드	71	78.0		80.2		78.5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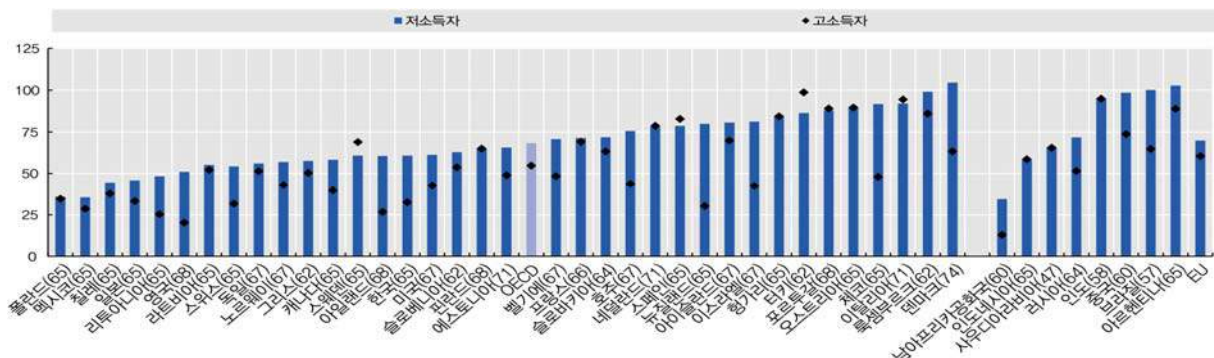
그림 5.4. 순 연금대체율: 평균 소득자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573>

그림 5.5. 순 연금대체율: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592>

**주요 결과**

강제적(공적 및 사적) 제도를 통한 평균 소득자의 순 대체율은 OECD 평균 59%이다. 자발적 사적연금을 고려하는 경우 자발적 사적연금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OECD 8개국 및 이스라엘, 멕시코에서 경력 기간 내내 기여한 근로자의 평균 순 대체율은 70%이며, 강제적 제도만을 고려한 총 대체율은 36%이다.

개인세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금 수급자는 강제적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소득세는 누진적이고 연금수급액은 대개 은퇴 전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또한,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노인에게 추가 공제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금소득이나 연금소득자에게 세금우대 혜택을 준다. 따라서 순 대체율은 대개 총 대체율보다 높다.

공적제도에 국한하여 계산된 OECD 17개국의 경우 완전경력 평균 소득자에 대한 대체율은 평균 68%이다. 공적제도와 강제적 사적제도를 운영하지만 자발적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9개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순 대체율은 56%이다. 자발적 연금이 모형화된 8개국에서 경력 기간 내내 기여하는 근로자의 평균 순 대체율은 70%이다.

기타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별,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 간 차이가 더 작다. 이는 연금액이 보통 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적 사적연금**

12개국이 강제적 사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개국(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이 “준강제적”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보편적인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사적연금은 확정급여형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확정기여형이다.

**자발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이용되는 10개국의 대체율이 나와 있다.(제9장 “사적연금의 가입률” 지표 참조)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주요한 자발적 사적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근로자는 완전경력 내내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화된 규정은 “국가별 현황”(http://oe.cd/p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개국 가운데 9개국에서 확정기여형 제도를 모형화하였으며 일본에서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 제도와 확정급여형 제도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총 대체율을 지급한다.(소득별 실제 기여율 자료는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 범위에 걸쳐 평균 또는 일반적인 비율을 가정한다.) 그러나 누진적 과세 규정은 순 대체율이 소득 범위에 걸쳐 달라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총 대체율의 증가는 소득에 걸쳐 일정하지만 순 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 소득 분포도의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전 근로소득에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의와 측정**


순 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수급액을 순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 대체율의 정의 및 측정값은 총 대체율과 동일하다. 국가 세금제도가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http://oe.cd/p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6. 강제적(공적 및 사적) 및 자발적 연금제도의 총 연금대체율과 순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대비 비율

	총 강제적 공적 및 사적			순 강제적 공적 및 사적			자발적 연금이 포함된 전체 총 대체율			자발적 연금이 포함된 전체 순 대체율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호주	64.9	30.9	30.9	75.5	41.0	43.8						
오스트리아	76.5	76.5	76.5	89.7	89.9	89.6						
벨기에	57.3	46.8	33.7	70.7	66.2	48.3	78.1	61.0	44.1	87.9	72.4	57.8
캐나다	50.9	39.0	29.8	58.3	50.7	39.7	71.9	64.1	54.9	82.4	83.3	73.4
칠레	36.2	31.2	31.2	44.6	37.3	37.9						
체코	75.0	45.9	36.2	91.6	60.3	47.9						
덴마크	113.8	74.4	64.0	104.5	70.9	63.3						
에스토니아	61.4	47.1	42.3	65.6	53.1	49.0						
핀란드	56.5	56.5	56.5	65.1	64.2	64.9						
프랑스	60.2	60.1	54.0	71.4	73.6	69.0						
독일	38.7	38.7	38.7	56.1	51.9	51.4	52.2	52.2	52.2	68.6	68.0	67.5
그리스	63.1	49.9	45.5	57.6	51.1	50.3						
헝가리	56.1	56.1	56.1	84.3	84.3	84.3						
아이슬란드	75.3	66.1	65.1	80.5	69.8	69.8						
아일랜드	54.1	27.0	18.0	60.5	35.9	26.7	89.9	62.9	53.8	105.6	81.1	75.5
이스라엘	77.4	50.1	33.4	81.1	57.8	42.4	97.2	65.5	43.7	98.9	73.2	53.7
이탈리아	79.5	79.5	79.5	92.0	91.8	94.4						
일본	42.5	32.0	28.5	45.9	36.8	33.3	66.2	55.8	52.3	74.0	61.5	59.5
한국	55.6	37.3	27.0	60.8	43.4	32.6						
라트비아	44.6	44.6	44.6	55.2	54.3	52.2						
리투아니아	36.8	23.6	19.2	48.4	31.0	25.3						
룩셈부르크	91.5	78.8	74.5	99.0	90.1	85.9						
멕시코	35.1	25.7	24.6	35.6	28.6	28.6	48.2	43.9	42.5	48.8	48.9	49.4
네덜란드	73.5	70.9	70.1	78.0	80.2	78.5						
뉴질랜드	79.3	39.7	26.4	79.8	42.8	30.3	97.1	57.4	44.2	98.8	62.2	50.4
노르웨이	50.4	45.4	36.3	57.0	51.6	43.0						
폴란드	29.4	29.4	29.4	35.9	35.1	34.7						
포르투갈	75.8	74.4	73.1	88.0	89.6	89.0						
슬로바키아	59.5	49.6	47.0	71.7	65.1	63.3						
슬로베니아	47.8	38.8	36.0	62.8	57.5	53.7						
스페인	72.3	72.3	72.3	78.6	83.4	82.8						
스웨덴	54.1	54.1	65.3	60.7	53.4	68.9						
스위스	53.0	42.4	29.2	54.3	44.3	31.7						
터키	67.4	67.4	67.4	86.2	93.8	98.7						
영국	43.5	21.7	14.5	51.0	28.4	20.2	72.6	50.9	37.4	82.3	61.0	47.4
미국	50.1	39.4	33.1	61.2	49.4	42.7	79.1	69.1	62.6	94.1	83.7	79.0
<b>OECD</b>	<b>60.0</b>	<b>49.0</b>	<b>44.7</b>	<b>68.3</b>	<b>58.6</b>	<b>54.7</b>	<b>66.1</b>	<b>55.2</b>	<b>50.5</b>	<b>75.0</b>	<b>65.4</b>	<b>61.6</b>
아르헨티나	83.7	71.2	67.1	102.8	92.8	88.8						
브라질	92.1	58.9	58.9	100.1	64.8	64.8						
중국	90.6	71.6	65.2	98.5	79.4	73.6						
인도	83.4	83.4	83.4	94.8	94.8	94.8						
인도네시아	55.3	55.3	55.3	58.2	59.0	58.6						
러시아	62.3	49.6	44.9	71.7	57.0	51.6						
사우디아라비아	59.6	59.6	59.6	65.4	65.4	65.4						
남아프리카공화국	34.5	17.2	11.5	34.5	18.5	12.9	49.1	49.1	49.1	54.6	59.2	61.9
EU28	60.3	52.0	48.8	69.8	63.5	60.4	63.6	55.4	51.8	73.6	67.0	64.0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611>

**주요 결과**

은퇴 전 개인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자산은 은퇴 시점에 의무 연금제도의 모든 노후소득을 생애 흐름에 따라 할인된 총 가치로 측정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8.9배, 여성은 9.8배이다. 개인의 연소득과 대비된 총 연금자산은 여성이 더 높는데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국가 간 차이의 주된 요인은 총 대체율의 차이, 공식 연금 수급연령 시 잔존 기대수명에 따라 측정된 은퇴기간의 차이, 연동 방식을 들 수 있다.

연금대체율은 개인소득 대비 예상 연금액을 시사하는 지표가 되지만, 종합적인 측정지표는 아니다. 은퇴 시점, 또는 그 이후 연령에서의 개인 소득 대비 급여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기대수명, 공식 은퇴연령, 연금급여의 연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 요소는 모두 함께 연금급여가 얼마 동안 지급되는지,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결정한다. 연금급여의 미래흐름의 총량을 측정할 값인 연금자산은 이들 요소를 고려한 지표이다. 이것은 개인 소득 대비 의무 연금제도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액수를 제공하는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목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대체율과 예측되는 연금수급 기간 사이의 관계는 대개 없거나 약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대체율과 은퇴기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은퇴연령과 연금 급여를 일정하게 놓았을 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자산은 증가한다. 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급여의 크기와 예측되는 급여 수급 기간 간에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제도에서 연금자산의 측정치는 누적자산과 동일하므로 수명 연장과는 상관이 없는데, 수명 연장이 급여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 연금 자산은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는데, 남성은 연간 개인소득의 18.7배, 여성은 20.6배이다. 연금자산이 가장 낮은 국가는 남성의 경우 영국(4.1배), 여성의 경우 멕시코(4.3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대체율 때문이다.

이 지표는 각국의 성별에 따른 평균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의 차이는 가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평균 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개인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된 연금자산도 저소득자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연간 소득의 10.9배이며 평균 소득자의 경우는 8.9배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여성의 연금자산은 자기 소득의 12.1배인 반면 평균 소득의 여성은 9.8배이다. 저소득자의 연금자산이 가장 높은 국가들(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서 그 가치는 남성의

경우 개인 소득의 17배에서 22배 사이이며 여성의 경우 개인 소득의 19배에서 24배 사이이다.

**기대수명의 영향**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처럼 은퇴 후 기간이 짧은 국가들은 개인의 연금자산이 더 작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와 같이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들은 정반대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남녀 공통의 사망률 표를 사용하여 연금을 산정하거나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의 연금자산이 더 높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여전히 남성보다 더 낮고 이로 인해 연금 수급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연동의 효과**

연금자산은 연동 규정의 영향도 받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물가에 연동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은 기초, 확정급여형 또는 포인트 제도를 평균 소득에 연계하고 있다. 소득이 물가보다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금자산은 특정 수준의 대체율에서 물가 연동보다 소득 연동을 사용하는 것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가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계한다면 남성 평균 소득자의 연금자산은 OECD 연금 모형에 근거한 초기 고정 급여 수준에서 18.7에서 15.7로 감소할 것이다.

OECD 비회원국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평균 소득자는 남성과 여성의 연금자산이 각각 개인소득의 4.7배, 5.7배에 불과한데 비해 중국에서는 남성이 15.2배, 여성이 15.8배이다.

**정의와 측정**

연금자산의 산정에는 2%의 통일된 실질 할인율을 사용한다. 예상 연금수급액을 비교하므로, 산정 시 은퇴 연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국가의 사망률 자료를 사용한다. 연금자산은 총 연간 개인소득의 배수로 표현한다.

표 5.7. 소득별 총 연금자산, 연간소득의 배수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1.0			0.5			1.0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남성						여성						
호주	11.7	5.6	5.6	12.4	5.6	5.6	뉴질랜드	17.4	8.7	5.8	18.7	9.4	6.2
오스트리아	14.2	14.2	14.2	15.5	15.5	15.5	노르웨이	9.6	8.6	6.9	10.5	9.5	7.5
벨기에	10.1	8.2	5.9	11.0	9.0	6.5	폴란드	5.0	5.0	5.0	6.5	4.9	4.9
캐나다	9.6	7.3	5.6	10.4	8.0	6.1	포르투갈	11.9	11.7	11.5	13.6	13.3	13.1
칠레	6.7	5.7	5.8	6.9	5.7	5.8	슬로바키아	10.2	8.5	8.0	11.3	9.4	8.9
체코	14.1	8.6	6.8	15.4	9.4	7.4	슬로베니아	10.9	8.9	8.2	12.9	10.5	9.8
덴마크	15.7	10.1	8.6	17.2	11.1	9.4	스페인	14.4	14.4	14.4	15.6	15.6	15.6
에스토니아	8.7	6.7	6.0	10.0	7.6	6.9	스웨덴	9.6	9.6	11.7	10.3	10.3	12.6
핀란드	9.8	9.8	9.8	11.1	11.1	11.1	스위스	10.7	8.5	5.9	11.8	9.3	6.4
프랑스	11.0	11.0	9.9	12.5	12.5	11.3	터키	13.0	13.0	13.0	14.2	14.2	14.2
독일	7.7	7.7	7.7	8.5	8.5	8.5	영국	8.2	4.1	2.7	9.2	4.6	3.1
그리스	12.8	10.2	9.3	14.0	11.1	10.1	미국	8.4	6.7	5.5	8.9	7.1	5.8
헝가리	9.3	9.3	9.3	9.5	9.5	9.5	OECD	10.9	8.9	8.1	12.1	9.8	8.9
아이슬란드	13.7	11.9	11.6	14.8	12.7	12.5	아르헨티나	13.8	11.7	11.0	16.1	13.5	12.6
아일랜드	10.6	5.3	3.5	11.5	5.7	3.8	브라질	23.0	14.7	14.7	28.6	14.3	14.3
이스라엘	13.9	9.0	6.0	14.6	9.2	6.1	중국	19.3	15.2	13.9	20.0	15.8	14.3
이탈리아	12.5	12.5	12.5	14.1	14.1	14.1	인도	14.9	14.9	14.9	15.6	15.6	15.6
일본	8.1	6.1	5.4	9.6	7.2	6.4	인도네시아	8.2	8.2	8.2	8.8	8.8	8.8
한국	10.4	7.0	5.0	12.1	8.1	5.9	러시아	9.5	7.6	6.8	11.8	9.2	8.2
라트비아	6.8	6.8	6.8	7.9	7.9	7.9	사우디아라비아	14.7	14.7	14.7	15.3	15.3	15.3
리투아니아	6.0	3.8	3.1	7.0	4.5	3.6	남아프리카공화국	9.3	4.7	3.1	11.4	5.7	3.8
룩셈부르크	21.7	18.7	17.7	23.9	20.6	19.4	EU28	10.8	9.2	8.6	12.0	10.2	9.5
멕시코	5.8	4.3	4.1	6.3	4.3	4.1							
네덜란드	12.7	12.3	12.2	13.9	13.4	13.2							

출처: OECD 연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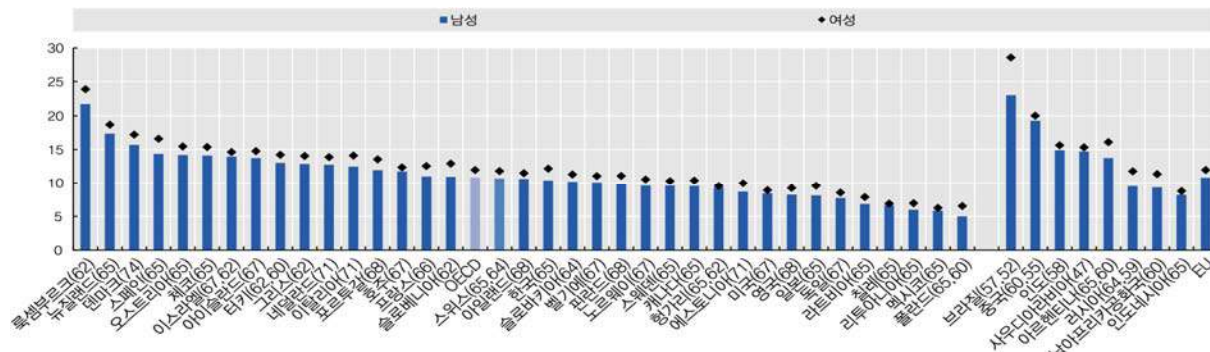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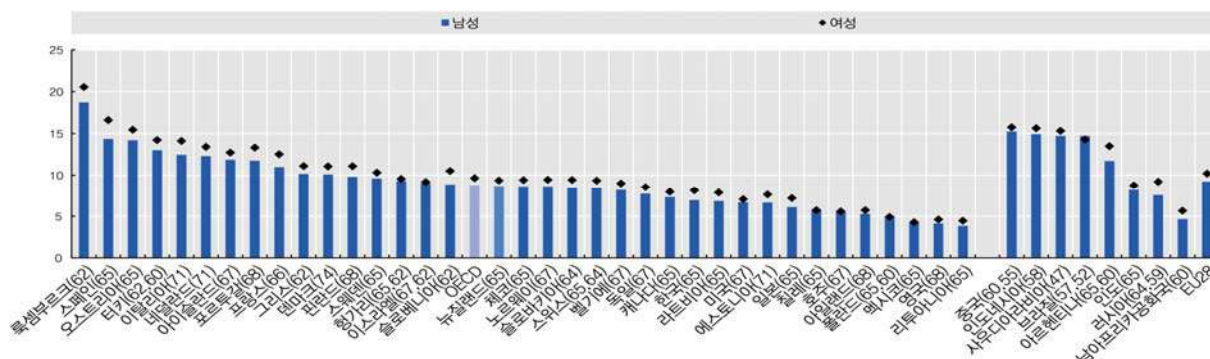
그림 5.6. 성별에 따른 저소득자의 총 연금자산, 연간소득의 배수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649>

그림 5.7.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자의 총 연금자산, 연간소득의 배수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668>

**주요 결과**

개인 순 소득에 비례하는 순 연금자산은 총 연금자산처럼 은퇴 시점에 의무 연금제도의 모든 노후소득을 생애 흐름에 따라 할인된 총 가치로 측정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순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순 연소득의 10.6배, 여성은 11.7배이다. 개인의 연소득과 대비된 순 연금자산은 여성이 더 높는데,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국가 간 차이의 주된 요인은 순 대체율의 차이, 공식 연금수급연령 시 남은 기대수명에 따라 측정한 은퇴기간의 차이, 연동 방식을 들 수 있다.

연금대체율은 개인소득 대비 예상 연금액을 시사하는 지표가 되지만, 종합적인 측정지표는 아니다. 은퇴 시점, 또는 그 이후 연령에서의 개인 소득 대비 급여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기대수명, 공식 은퇴연령, 연금급여의 연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 요소는 모두 함께 연금급여가 얼마 동안 지급되는지,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결정한다. 연금급여의 미래흐름의 총량을 측정한 값인 순 연금자산은 이들 요소를 고려한 지표이다. 이것은 의무 연금제도에서 평균적으로 수급하게 될 총 순 급여로 생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대체율과 예측되는 연금수급 기간 사이의 관계는 대개 없거나 약하다. 물론 결과적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대체율과 은퇴기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은퇴연령과 연금 급여를 일정하게 놓았을 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자산은 증가한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급여의 크기와 예측되는 급여 수급 기간 간에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제도에서 연금자산의 측정치는 누적자산과 동일하므로 수명 연장과는 상관이 없는데, 수명 연장이 급여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한 개인소득 수준에서 총 연금자산은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는데 남성은 연간 순 소득의 21.4배, 여성은 23.5배이다. 멕시코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연간 개인 소득의 4.8배로 가장 낮은 연금자산을 보인다. 이는 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많은 연금수급자의 경우, 개인 대체율과 세금공제 혜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 순소득과 비교하여 순 연금자산이 평균 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여기서 추정된 값은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절반인 남성의 순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자기 순 소득의 12.4배이며 평균 소득자의 경우는 10.6배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여성의 순 연금자산은 자기 순 소득의 13.8배인 반면 평균 소득의 여성은 11.7배이다.

고소득자의 순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9.9배, 여성이 10.9배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이다. 역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고 영국이 가장 낮다.

**기대수명의 영향**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처럼 은퇴 후 기간이 짧고 연금급여가 확정급여형인 국가들은 개인의 연금자산이 더 작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확정급여형 제도)와 같이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들은 정반대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남녀 공통의 사망률 표를 사용하거나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의 연금자산이 더 높다. 이는 단순히 동일 수준의 연금이 더 긴 노년기 동안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이 여전히 남성보다 더 낮고 이로 인해 연금 수급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연금자산은 연금수급연령의 영향도 받는다. 룩셈부르크의 경우처럼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연금수급연령이 낮으면 특정 급여 수준에서 연금자산이 늘어난다.

OECD 비회원국의 경우 차이가 크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평균 소득자 남성의 순 연금자산이 개인 소득의 5.0배, 여성이 6.1배에 불과한 반면, 인도의 경우 남성의 순 연금자산은 개인 소득의 17.0배, 여성은 17.8배이다.

**정의와 측정**

순 연금자산은 연금급여액 흐름의 현재 가치이며 퇴직자가 연금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 이 값은 개별 국가의 연간 총 개인소득의 배수로 측정하고 표시한다.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 및 기여금은 개인이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의무연금수급액의 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산정은 모든 표준 세금 공제와 세제 혜택, 그리고 연금소득이나 연금 수급연령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감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국가 세금제도가 연금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http://oe.cd/p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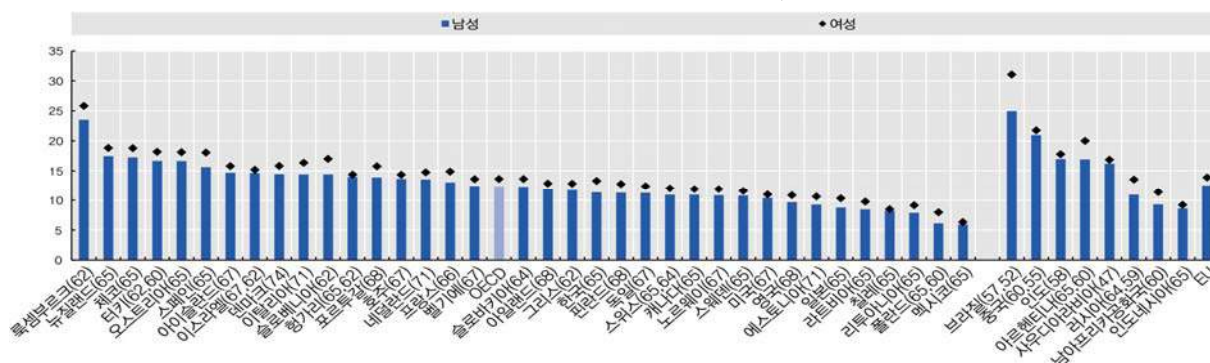
표 5.8. 소득별 순 연금자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1.0			1.5			1.0			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호주	13.6	7.4	7.9	14.4	7.4	7.9	뉴질랜드	17.5	9.4	6.6	18.8	10.1	7.1		
오스트리아	16.6	16.7	16.6	18.1	18.2	18.1	노르웨이	10.9	9.8	8.1	11.9	10.7	8.9		
벨기에	12.4	11.6	8.5	13.6	12.8	9.3	폴란드	6.1	6.0	5.9	8.0	6.0	5.9		
캐나다	10.9	9.5	7.4	11.9	10.3	8.1	포르투갈	13.9	14.1	14.0	15.7	16.0	15.9		
칠레	8.2	6.9	7.0	8.5	6.9	7.0	슬로바키아	12.3	11.2	10.8	13.6	12.4	12.0		
체코	17.2	11.4	9.0	18.8	12.4	9.8	슬로베니아	14.4	13.2	12.3	17.0	15.5	13.8		
덴마크	14.4	9.6	8.5	15.8	10.5	9.3	스페인	15.6	16.6	16.5	18.1	19.2	19.1		
에스토니아	9.3	7.5	6.9	10.6	8.6	7.9	스웨덴	10.8	9.5	12.4	11.6	10.2	13.3		
핀란드	11.3	11.1	11.3	12.8	12.6	12.7	스위스	11.0	8.9	6.3	12.0	9.7	7.0		
프랑스	13.0	13.5	12.6	14.9	15.3	14.4	터키	16.6	18.1	19.0	18.2	19.8	20.8		
독일	11.2	10.4	10.3	12.4	11.5	11.4	영국	9.7	5.4	3.8	10.8	6.0	4.3		
그리스	11.7	10.4	10.2	12.8	11.4	11.2	미국	10.4	8.4	7.2	11.0	8.9	7.6		
헝가리	14.0	14.0	14.0	14.4	14.4	14.4	OECD	12.4	10.6	9.9	13.8	11.7	10.9		
아이슬란드	14.7	12.5	12.5	15.8	13.4	13.4									
아일랜드	11.9	7.0	5.2	12.9	7.6	5.7	아르헨티나	16.9	15.2	14.6	20.0	17.9	17.1		
이스라엘	14.6	10.4	7.6	15.2	10.8	7.9	브라질	25.0	16.2	16.2	31.0	15.7	15.7		
이탈리아	14.4	14.4	14.8	16.3	16.3	16.8	중국	21.0	16.9	15.7	21.8	17.5	16.4		
일본	8.8	7.0	6.4	10.3	8.3	7.5	인도	17.0	17.0	17.0	17.8	17.8	17.8		
한국	11.3	8.1	6.1	13.3	9.5	7.1	인도네시아	8.6	8.8	8.7	9.2	9.4	9.3		
라트비아	8.5	8.3	8.0	9.8	9.6	9.2	러시아	10.9	8.7	7.9	13.5	10.6	9.5		
리투아니아	7.9	5.1	4.1	9.2	5.9	4.8	사우디아라비아	16.2	16.2	16.2	16.8	16.8	16.8		
룩셈부르크	23.5	21.4	20.4	25.8	23.5	22.4	남아프리카공화국	9.3	5.0	3.5	11.4	6.1	4.2		
멕시코	5.9	4.8	4.8	6.3	4.8	4.8	EU28	12.5	11.3	10.7	13.9	12.5	11.8		
네덜란드	13.5	13.9	13.6	14.7	15.2	14.8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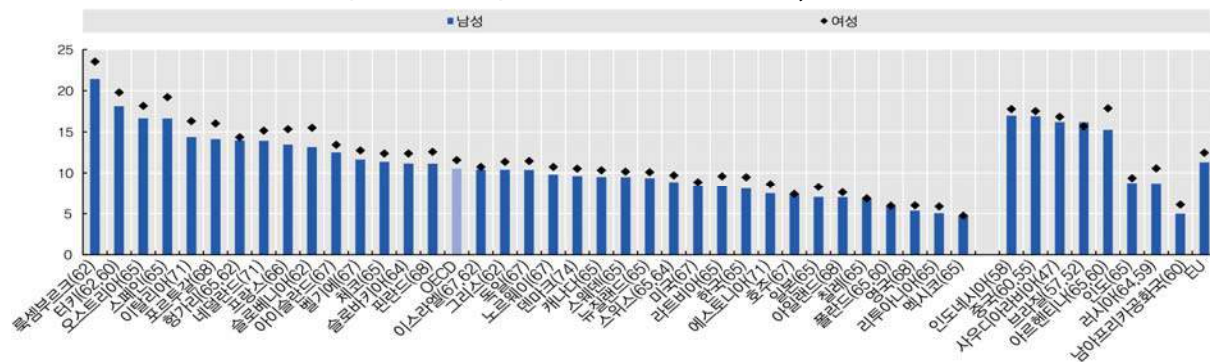
그림 5.8. 성별에 따른 저소득자의 순 연금자산, 연간소득의 배수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706>

그림 5.9.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자의 순 연금자산, 연간소득의 배수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725>

**주요 결과**

본 보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연금수급액 지표는 개인의 분석을 기초로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연금 체계는 효과적으로 “개인화”된다. 부부의 지위는 동일 총 소득을 가진 두 개인의 지위와 똑같지만, 경우에 따라 부부가 된다는 것이 연금수급액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 연금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몇몇 제도에서는 “파생” 권리를 제공한다. 파생 권리란 한 배우자의 근로 경력과 기여금으로부터 파생된 부부 급여를 말한다. 두 번째, 몇몇 1층 제도에서는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부부를 두 명의 개인이 아닌 하나의 “연금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 “부부”라는 단어는 관계의 방식이 일반적인 결혼인지, 동성 결혼인지, 동거인지와 관계없이 각 국가에서 인정하는 급여 단위를 가리킨다

다음 표는 세 가지의 가족 형태에 따른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것이다. 앞의 두 사례에서는 총 소득을 국가 전체의 개인 평균 소득의 100%로 두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의 독신 남성을 외별이(남성) 부부와 비교하였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각각 평균 소득 100%의 맞벌이 부부를 독신 평균 소득자 2명과 비교하였다.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의 독신 남성 근로자가 완전경력을 마친 뒤 수령하는 총 연금수급액은 기존 소득의 49.0%이고, 외별이 부부 중 근로자의 수령액은 55.8%이다. 부부에 대한 제공근 균등화지수(제7장)를 고려하면 부부가 수급하는 평균 소득의 55.8%는 개인의 39.5%와 동일하다. 49.0%보다 1/5 낮아진 수치다. OECD 회원국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국가에서는 독신 소득자와 비교하여 평균 근로자 소득의 외별이 부부에게 더 높은 총 수급액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오스트리아,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가 있다.

독신과 부부의 수급액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호주로, 평균 소득의 외별이 부부는 독신 소득자보다 31.8%p 높은 수급액을 받는다. 두 개인이 모두 1층 연금(Age Pension)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는 근로자의 소득비례 연금과 무관하게 배우자에게 선별적 연금의 수급권이 주어진다.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연금이 전적으로 조세에 재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독신 근로자보다 각 부부가 받는 소득 대비 수급액 비율이 더 낮다.

부부 중 비근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서 부부에게 한 명의 독신 근로자보다 높은(하지만 두 명의 개인보다는 낮은) 비율의 수급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급여가 더 높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기초연금에는 혼자서 기초연금 수급액 전액을 획득할 수 없는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 급여가 존재한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공적 소득비례제도에서 배우자 급여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이 급여도 배우자 중 한 명이 혼자서 큰 수급액을 획득할 수 없는 부부에게 제공된다. 덴마크에서 독신 평균 소득자보다 외별이 부부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조사형 제도 때문이다. 둘 모두 평균소득인 경우에도 자원조사형 급여의 수급 자격을 가진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에서도 독신 평균 소득자는 최저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평균 소득을 버는 외별이 부부는 보충액을 받는다.

두 명이 모두 평균 근로자 임금을 버는 맞벌이 부부는 두 명의 독신 개인과 연금 수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된다. 부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뿐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두 개인이 독신인 경우보다 부부가 되는 경우 거주 기반제도의 급여 수준이 더 낮다. 덴마크의 자산조사형 연금에서는 인출 가능 속도(withdrawal rate)가 독신 개인보다 부부의 경우 더 높다.

**정의와 측정**

노령연금 수급액은 연금제도가 제공하는 급여가 은퇴 전 주된 소득원이었던 노동소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하는가를 측정한다. 총 수급액은 총 연금액을 총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부부 분석의 경우 독신 소득자 시나리오와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두 배우자가 모든 급여 수급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같은 나이라고 가정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배우자가 모두 급여액에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며,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더 낮은 국가의 경우 여성 연금수급자의 급여는 남성의 연금수급연령까지 연동되는 것으로 한다.

표 5.9. 소득별 총 연금수급액: 독신과 부부, 평균소득 대비 비율

	독신 평균소득자 - 남성(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외벌이 부부 - 평균 소득 남성	각각 평균소득을 버는 맞벌이 부부
호주	30.9(28.1)	62.7	
오스트리아	76.5		
벨기에	46.8	58.2	
캐나다	39.0	46.8	
칠레	31.2(28.8)		
체코	45.9	55.9	
덴마크	74.4	97.1	141.3
에스토니아	47.1		
핀란드	56.5	68.7	
프랑스	60.1		
독일	38.7		
그리스	49.9		
헝가리	56.1(52.2)		
아이슬란드	66.1	79.0	
아일랜드	27.0	45.1	
이스라엘	50.1(41.8)	59.2	
이탈리아	79.5		
일본	32.0	42.5	
한국	37.3		
라트비아	44.6		
리투아니아	23.6		
룩셈부르크	78.8		
멕시코	25.7(24)		
네덜란드	70.9	91.5	
뉴질랜드	39.7	60.1	60.1
노르웨이	45.4	64.1	
폴란드	29.4(22.5)		
포르투갈	74.4		
슬로바키아	49.6		
슬로베니아	38.8(40.7)		
스페인	72.3		
스웨덴	54.1	61.4	
스위스	42.4(41.3)		
터키	67.4(64.3)		
영국	21.7	32.9	
미국	39.4	59.2	
<b>OECD</b>	<b>49.0(48.2)</b>	<b>55.8</b>	<b>96.3</b>

주: 외벌이 부부의 경우 수령한 연금이 독신 남성 소득자와 다른 경우에만 표시하였다. 평균 소득 부부의 경우 독신 남성과 독신 여성을 더한 것과 비율이 다른 경우에만 표시하였다.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744>

**주요 결과**

위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기간이 없는 완전경력 대체율을 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래 총 연금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소득 대비 은퇴 후 의무가입 연금제도에서 지급한 연금급여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녀로 인해 경력을 중단하는 개인도 많다. 이 지표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미래의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36개 OECD 회원국 평균, 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5년간 벗어난 평균소득 여성은 완전경력 여성 근로자에 비해 96%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비율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다. 가장 높은 연금을 제공하는 그리스는 완전경력 근로자보다 5% 높은 급여를 제공하지만,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5년 늦게 은퇴해야 한다. 가장 낮은 연금을 제공하는 멕시코의 미래 급여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86%에 해당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은 출산 기간 동안 크레딧을 제공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출산 휴가 이후, 특히 자녀의 양육 기간을 다룬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보호하고자 한다. 자녀의 아버지도 크레딧이 제공 되는 육아 휴직 기간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주된 크레딧 수급자는 여전히 어머니이므로 이 분석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육아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휴직 기간에 적용된다. 휴직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레딧 제도는 관대성이 떨어진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영유아 자녀(주로 만 3-4세까지)를 돌보는 데 사용되는 기간을 보장된 기간으로 보고 크레딧을 제공하며 이 기간은 유급 고용으로 간주한다. 대조적으로 그보다 성장한 자녀(주로 만 6세에서 16세 사이)를 양육하기 위한 추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조기퇴직 및 최저연금 수급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에만 고려된다. 일부 국가(체코,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에서는 육아를 수급권 평가의 한 요소로 보기도 하나, 소득 기준(earnings base)을 산정할 때에는 배제한다.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어머니의 총 연금수급액은 그림 5.10, 5.11에 소득별로 각각 5년과 10년을 휴직한 경우에 대하여 나타나 있다. 그리스에서는 5년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액이 더 높지만,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5년 늦게 은퇴해야 한다. 급여액이 높은 것은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이 물가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이다. 체코,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액은 휴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일랜드의 경우 이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육아 휴직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된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금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 기간에서는 배제된다. 스페인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5년은 가입 기간으로 간주된다.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은 단순 거주기반 제도이므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한 명 가지면 한쪽 부모에게 3년에 해당

하는 연금포인트 혜택이 제공되므로, 혜택 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획득하는 것과 연금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저소득자의 급여액이 훨씬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에서도 전국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급여액이 상승한다.

오스트리아,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에서는 기여 기간의 공백이 있으면, 특히 육아 기간이 길어지면 노후소득이 크게 줄어든다.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 관련 크레딧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에서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짧은 휴직 및/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 혜택이 비교적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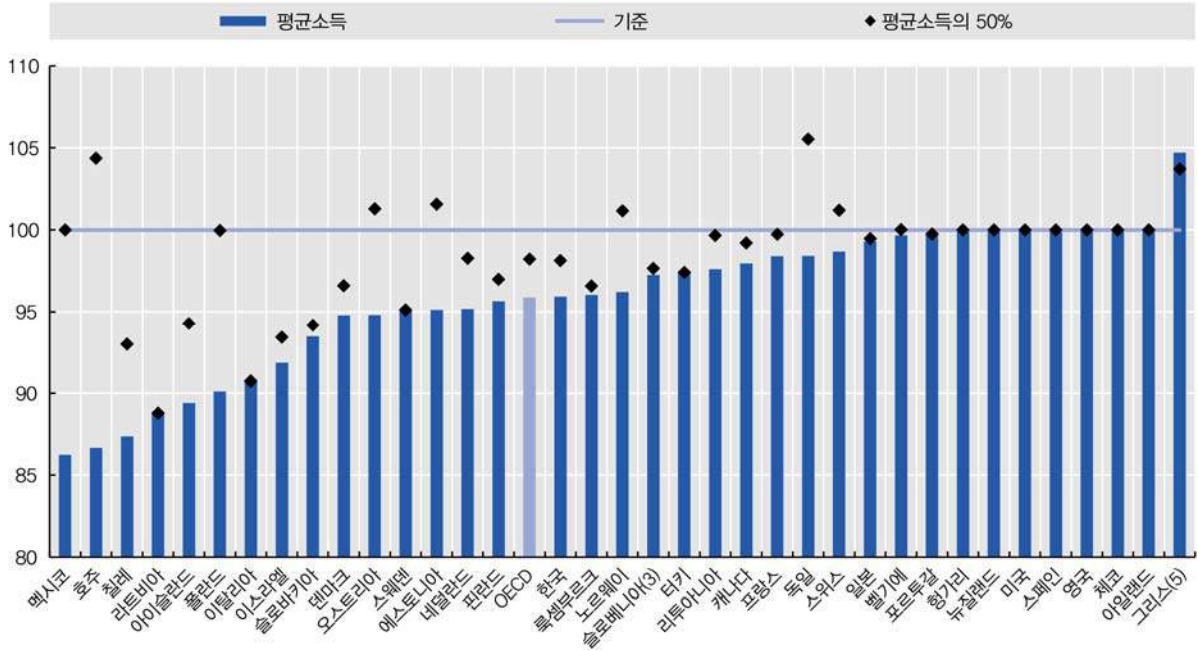
6개 국가 중 그리스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각각 5년과 10년,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의 경우 10년 동안 육아 휴직 기간을 가진 근로자는 은퇴 시기를 늦춰야 페널티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여 기간을 요하는 규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는 22세에 유급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10년 동안 휴직한 근로자는 62세가 되어도 총 기여 기간이 40년이 되지 않으므로 65세까지 일해야 페널티 없이 은퇴가 가능하다.

**정의와 측정**

OECD 기준 완전경력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을 22세로 가정한다. 육아의 경우, 22세에 전일제 근로자로 경력을 시작했다가 각각 30세, 32세에 낳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30세부터 최대 10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진 여성의 사례를 가정한다. 휴직이 끝난 여성은 전일제 근로를 재개하여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 일을 한다고 간주한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휴직으로 인해 늦춰질 수 있다. 은퇴연령 지연은 차트의 국가명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며, 상응하는 완전경력 노동자의 급여액은 해당 연령에 맞춰 연동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변수 및 규정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http://oe.cd/p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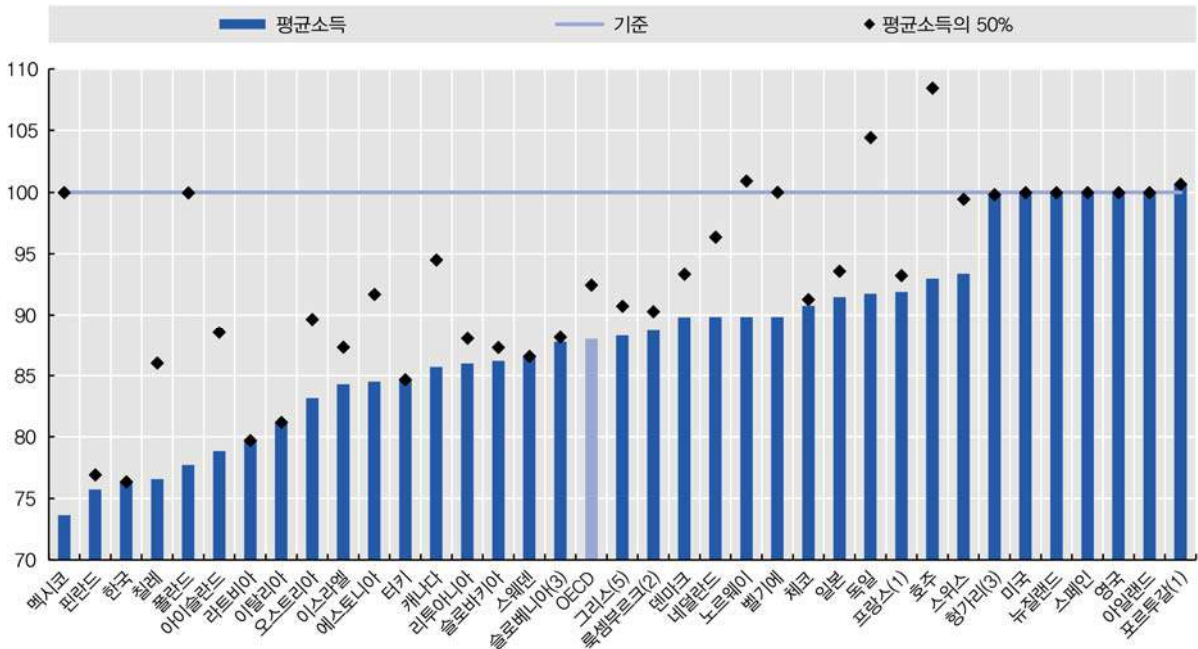
그림 5.10. 5년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진 경우와 중단 없이 근로한 경우에 대한 저소득자 및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수급액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늦춰진 은퇴연령을 나타낸다. 개인은 2018년에 22세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자녀 2명은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출생하며, 경력단절은 2026년에 시작한다.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763>

그림 5.11. 10년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진 경우와 중단 없이 근로한 경우에 대한 저소득자 및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수급액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늦춰진 은퇴연령을 나타낸다. 개인은 2018년에 22세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자녀 2명은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출생하며, 경력단절은 2026년에 시작한다.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782>

**주요 결과**

이번 제5장의 서두에 사용한 기준 사례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기간이 없는 완전경력 대체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래 총 연금 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소득 대비 은퇴 후 의무가입 연금제도에서 지급한 연금급여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 개인도 많다. 이 지표는 이러한 현상이 미래의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36개 OECD 회원국 평균, 실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5년간 벗어난 평균소득 근로자는 완전경력 근로자에 비해 94%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비율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이 높기 때문에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큰 급여액을 제공한다. 반면 연금이 적은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미래의 연금 수급액이 완전경력 근로자의 87-8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실업으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면 적어도 휴직 기간 초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업으로 5년간 경력이 중단되면 평균 임금을 받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평균 94%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5년 늦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10년의 실업 기간이 발생하면 연금은 76%로 떨어진다. 몇몇 국가에서는 두 시나리오 모두 은퇴 연령이 늦어진다. 저소득자의 경우 두 사례에서 각각 완전경력 근로자의 96%, 82%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경력 단절이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

평균임금 근로자의 경우 중단 없는 완전경력 근로자와 비교한 연금 부족분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일 수록, 경력 공백 기간이 길수록 부족분이 증가한다. 실업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없는 칠레,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의 경우 5년의 실업 기간 이후 발생하는 연금 부족분은 13%다.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연금 제도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연금 부족 현상을 상쇄할 수 있다. 가령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이 여기 해당한다. 스페인과 미국의 경우, 이는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총 지급률과 기준 임금이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각각 38.5년과 35년이 지나야 연금수급액 누적이 중단된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우, 이는 실업이 기초연금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도 전적으로 거주기반급여인 기초 연금을 운영하므로 실업 기간의 영향이 없다. 네덜란드의 거주 기반 기초연금은 실업에 대하여 일정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실업이 발생하면 크게 줄어든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는 은퇴 후 급여액이 더 높아지지만, 수급자가 각각 5년, 3년, 1년을 추가로 일해야 연금 전액(즉, 페널티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이는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 연동률이 임금성장률 보다 낮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기여 연령이 늦어지고 경력이 길어지는 경우 누적액이 소폭 더 높다. 프랑스와 슬로베니아

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기여 규정 때문에 5년의 실업 기간을 거친 평균임금 근로자가 연금 전액을 수급하려면 늦게 은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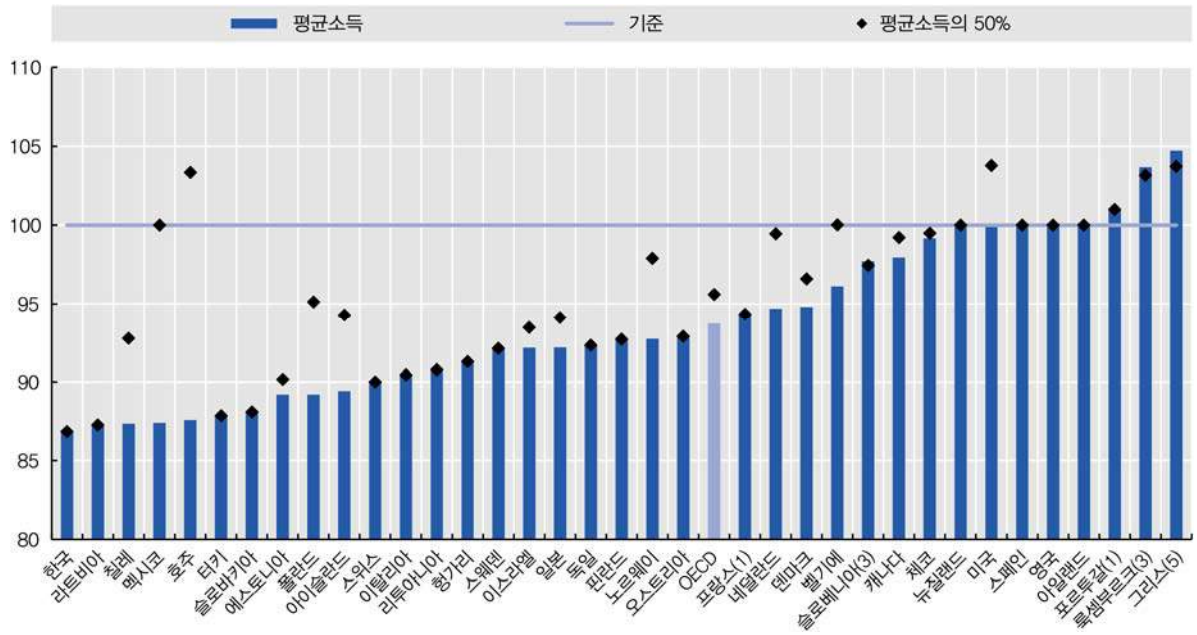
평균 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 대하여 더욱 나은 장기 실업 보호 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있다. 왜냐하면 최저연금과 자원조사형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실업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연금 손실은 평균 소득자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 영향은 칠레, 멕시코 등 연금과 소득이 밀접히 연계하는 강제적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다.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경우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퇴직 기간도 늦춰진다. 한국에서는 60세 이후 기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23년 경력과 기준 사례인 38년 경력을 비교하면 실업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멕시코와 폴란드에서는 실업 기간이 긴 저소득자도 완전경력 저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의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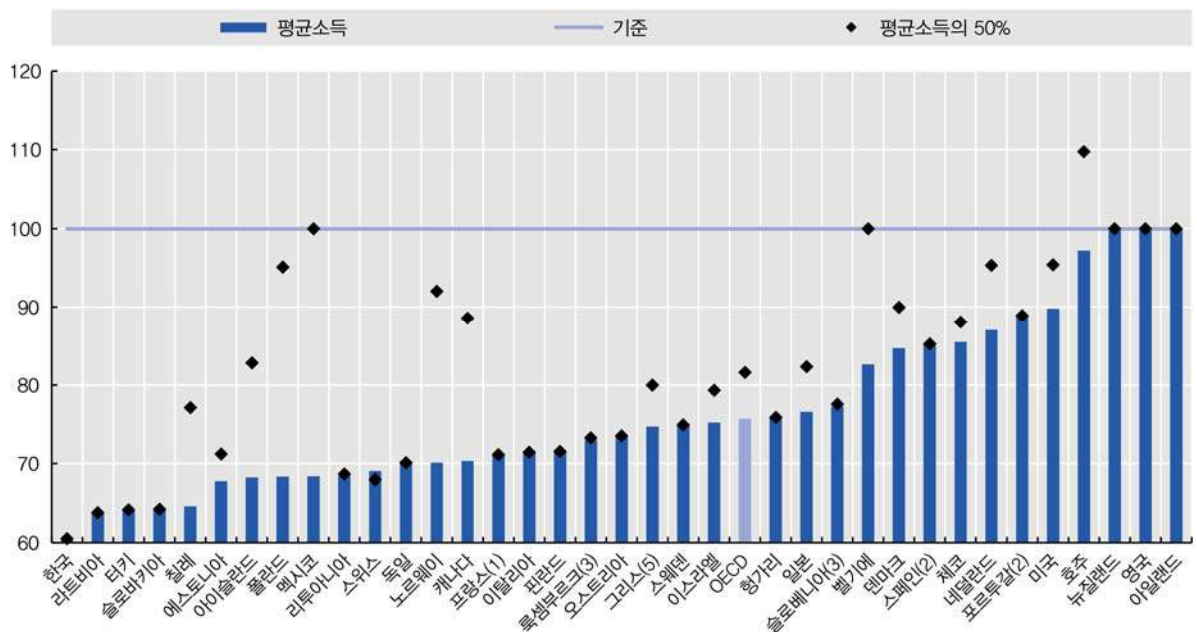
실업의 경우, 22세, 또는 진입이 늦은 경우 27세에 전일제 근로자로 경력을 시작했다가 35세부터 실업으로 인해 최대 10년간 경력이 중단된 남성의 사례를 가정한다. 이후 남성은 전일제 근로를 재개하여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 일을 한다고 간주한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휴직으로 인해 늦춰질 수 있다. 은퇴연령 지연은 차트의 국가명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며, 상응하는 완전경력 노동자의 급여액은 해당 연령에 맞춰 연동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변수 및 규정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 (<http://oc.cd/p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2. 5년간 실업 기간을 가진 경우와 중단 없이 근로한 경우에 대한 저소득자 및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수급액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경력 단절로 인해 늦춰진 은퇴연령을 나타낸다. 개인은 2018년에 22세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실업 기간은 2031년에 시작한다.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801>

그림 5.13. 5년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10년간 실업 기간을 가진 저소득자 및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수급액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경력 단절로 인해 늦춰진 은퇴연령을 나타낸다. 개인은 2023년에 27세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실업 기간은 2031년에 시작한다.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801>



## 제 6 장

# 인구 및 경제적 측면

인구 고령화는 연금정책의 변화와 개혁의 주된 동인이었다. 고령화는 2가지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첫 번째 지표는 지난 50년 동안의 출생아 수와 추이를 살펴본다. 인구 고령화의 두 번째 원인은 기대수명의 증가이다. 출생 시와 65세의 기대수명 변화를 두 번째 지표로 제시한다. 세 번째 지표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수와 그 변화로 측정된 고령화 수준을 나타낸다. 네 번째 지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률을 살펴본다. 다섯 번째 지표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연령, 즉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에 대한 수치를 제시한다. 은퇴 이후 예상되는 연수를 측정하는 마지막 지표는 기대수명과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을 결합한 것이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요 결과**

36개 OECD 회원국 중 34개국에서 합계 출산율은 약 2.1의 대체수준, 즉 총 인구 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동 수를 밑돈다. 이외 예외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3.04인 이스라엘과 2.14인 멕시코이다. 20세기 후반부에 급격히 하락한 출산율은 2000년 이후 OECD 내에서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소폭 상승했다. 출산율은 연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출산율이 기대수명과 함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각 국가의 출산율은 꾸준히 수렴되어 왔으며, 다음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OECD 국가 출산율은 평균 1.66으로, 인구 대체를 가능케 하는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출생 감소 추세는 195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며 평균적으로 하락세가 멈추었다. 출산율 하락은 개인의 생활방식 및 가족구성의 변화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불안정, 적절한 주택 확보의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양육비 등 일상생활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또 다른 영향은 동거와 출산 규범에 관한 여성의 욕구 변화에 의한 것인데, 특히 일본과 한국 등 결혼과 출산의 관계가 강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혼 남성과 여성의 출산 형태 역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현재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비혼 관계의 형태를 통해 나왔다. OECD 국가에서 평균 비혼 출생 비율은 전체의 1/3 정도이다.

지난 50년 동안 OECD 국가의 출산율은 꾸준히 수렴되어 왔다. 1960년 한국, 멕시코, 터키의 출산율은 OECD 평균 출산율의 약 2배였던 반면, 헝가리와 라트비아는 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 표준 편차는 1.2였다.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0.3까지 하락하였으며 2060년에는 0.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36개국 가운데 21개 국가의 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평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출산율이 아주 낮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은 체코(+0.47), 라트비아(+0.54), 슬로베니아(+0.35) 등 일부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감소폭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0.55), 멕시코(-0.71), 터키(-0.57)였다.

최근의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매우 더디지만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UN 세계인구전망(United Nations Population Prospects)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OECD 평균은 2050년까지 1.7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측 상의 불확실성도 상당하다. OECD 평균 추정치의 20번째 백분위수는 1.41에 불과하며, 80번째 백분위수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1.96이다.(그림 6.1)

저출산율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노령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변화로 인해 노인 대상의 연금과 의료 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노동인구 역시 고령화되므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다.

기타 주요 국가들 중에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모두 현재 대체 수준 2.1을 훨씬 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브라질의 출산율도 계속 하락하다가 2030년까지 대체율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조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약 20년 전에 저점에도 도달했다.

**정의와 측정**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고, 매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하는 경우 이 여성이 출산하게 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이주가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합계 출산율이 여성 1명당 자녀 2.1명(즉 대체 수준)이면 인구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참고문헌**

D’Addio, A. and M.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880242325663>.

표 6.1. 1960~2060년 합계 출산율

	1960	1980	2000	2020	2040	2060		1960	1980	2000	2020	2040	2060
홍주	3.41	1.99	1.79	1.83	1.73	1.72	뉴질랜드	4.07	2.18	1.95	1.90	1.77	1.73
오스트리아	2.57	1.65	1.39	1.53	1.65	1.71	노르웨이	2.84	1.81	1.86	1.68	1.73	1.75
벨기에	2.50	1.70	1.60	1.71	1.75	1.77	폴란드	3.47	2.23	1.51	1.42	1.57	1.66
캐나다	3.88	1.73	1.56	1.53	1.52	1.61	포르투갈	3.12	2.55	1.46	1.29	1.49	1.61
칠레	4.75	2.94	2.20	1.65	1.57	1.61	슬로바키아	3.24	2.46	1.40	1.50	1.65	1.71
체코	2.38	2.36	1.17	1.64	1.75	1.78	슬로베니아	2.38	2.16	1.25	1.60	1.71	1.75
덴마크	2.55	1.68	1.76	1.76	1.79	1.80	스페인	2.70	2.55	1.19	1.33	1.51	1.61
에스토니아	1.99	2.06	1.33	1.59	1.71	1.75	스웨덴	2.25	1.66	1.56	1.85	1.84	1.83
핀란드	2.77	1.66	1.74	1.53	1.53	1.63	스위스	2.39	1.54	1.48	1.54	1.61	1.65
프랑스	2.70	1.86	1.76	1.85	1.84	1.83	터키	6.50	4.69	2.65	2.08	1.82	1.73
독일	2.27	1.51	1.35	1.59	1.67	1.71	영국	2.49	1.73	1.74	1.75	1.77	1.77
그리스	2.42	2.42	1.31	1.30	1.37	1.54	미국	3.58	1.77	2.00	1.78	1.80	1.81
헝가리	2.32	2.25	1.38	1.49	1.63	1.70	OECD	<b>3.19</b>	<b>2.26</b>	<b>1.67</b>	<b>1.66</b>	<b>1.68</b>	<b>1.71</b>
아이슬란드	4.17	2.45	2.06	1.77	1.67	1.68							
아일랜드	3.58	3.25	1.90	1.84	1.70	1.69	아르헨티나	3.13	3.40	2.63	2.27	2.02	1.87
이스라엘	3.89	3.47	2.93	3.04	2.63	2.32	브라질	6.06	4.24	2.47	1.74	1.56	1.59
이탈리아	2.29	1.89	1.22	1.33	1.42	1.53	중국	5.48	3.01	1.62	1.69	1.73	1.76
일본	2.17	1.83	1.37	1.37	1.49	1.59	인도	5.90	4.97	3.48	2.24	1.92	1.76
한국	6.33	2.92	1.50	1.11	1.25	1.48	인도네시아	5.67	4.73	2.55	2.32	2.00	1.85
라트비아	1.95	1.89	1.17	1.72	1.78	1.80	러시아	2.82	1.94	1.25	1.82	1.83	1.83
리투아니아	2.66	2.10	1.47	1.67	1.75	1.78	사우디아라비아	7.18	7.28	4.40	2.34	1.83	1.65
룩셈부르크	2.23	1.49	1.72	1.45	1.52	1.61	남아프리카공화국	6.05	5.05	2.88	2.41	2.07	1.88
멕시코	6.78	5.33	2.85	2.14	1.80	1.71	EU28	2.67	2.06	1.49	1.56	1.64	1.70
네덜란드	3.10	1.60	1.60	1.66	1.72	1.74							

주: 위 데이터는 표 1행에 제시된 각 연도까지의 5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UN 경제사회부(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9). 세계인구전망 2019, 온라인 버전(미래의 기간에 대해서는 중위 전망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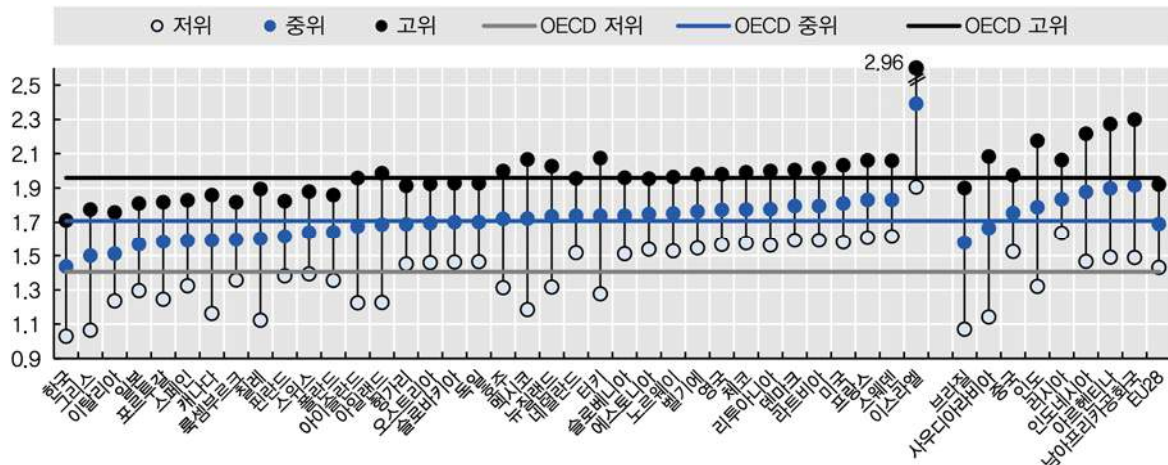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839>


그림 6.1. 합계 출산율 예측의 불확실성

2050~2055년 저위, 중위, 고위추계



주: 용이한 자료 파악을 위하여 본 차트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배제하였다. 배제한 자료는 고위 추계의 이스라엘 출산율, 2.96이다. 저위, 중위, 고위 추계는 각각 추정치의 20%, 50%, 80% 백분위수에 상응한다.

출처: UN 경제사회부(2019). 세계인구전망 2019(<http://population.un.org/wpp/>)를 바탕으로 한 확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858>

### 주요 결과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증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이다.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며, 고령층에서의 증가세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적 수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5~2020년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성이 평균 78.1세, 여성이 83.4세였다. 여성의 경우 일본(87.5세)의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고 멕시코(77.8세)가 가장 짧았다.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은 스위스(81.6세)가 가장 길었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각각 69.9세, 70.0세)가 가장 짧았다. OECD 국가에서 2065년까지 65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평균 3.9년, 남성의 경우는 4.5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의 기대수명은 고령층의 복지에 특히 중요하지만 연금 제도의 재정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2020년에 OECD 회원국 평균 21.3년이었던 65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2060~2065년에는 25.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연령의 남성에 대한 기대수명은 2015~2020년에는 18.1년, 2060~2065년에는 4.5년이 늘어난 22.5년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성별 격차는 향후 45년 동안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국가 평균 3.3년에서 2.7년으로 감소) 65세 기대수명의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1955~1960년에 OECD 평균 13.7년이었던 65세 기대수명은 1985~1990년에는 15.9년으로 증가했으며, 2015~2020년에는 19.8년까지 치솟았다. 2045~2050년에는 2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제1장, 표 1.4, 패널 A)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간 차이가 크다. 일본 여성은 2060~2065년에 65세가 되고 나서 28.8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이 27.4년으로 그 뒤를 따른다. 반면 멕시코 여성은 22.1년을 더 살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국가별 편차가 작다. 2060~2065년에 65세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23.9년)로, 호주, 이스라엘, 일본(23.8년)이 그 뒤를 따른다. 반면 라트비아(19.2년), 리투아니아와 헝가리(모두 19.9년)는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2060~2065년의 65세 기대수명 성별 격차를 보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이 2~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성별 격차가 4.5~5년에 달해 더욱 크다. 성별 격차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는 각각 1.5년과 1.7년인 미국과 영국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연금 수급연령을 연장했거나 연장 법제화를 완료했다.(제1장 “최근 연금 개혁” 참조)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준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요소를 연금 제도에 도입하였다. 전반적인 수명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게 된 것도 원인이다.

주요 OECD 비회원국을 살펴보면, 기대수명이 일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의 경우 60.2세, 여성의 경우 67.1세로 월등히 가장 낮다. 출생 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여성의 경우 아르헨티나 79.8세, 남성의 경우 중국 74.5세이다. 65세의 기대수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이 14.7년, 남성이 11.5년으로 가장 낮다. 2060~2065의 65세 기대수명은 브라질 여성이 23.7년, 남성이 21.1년으로 가장 길 것으로 보인다.

상기 수치는 기간별 기대수명을 나타낸다. 기간별 기대수명이란 특정 시기(여기서는 2015~2020년 또는 2060~2065년)에 다른 연령, 즉 다른 출생 인구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망률에 근거하여 해당 시기의 (현재 또는 예상)기대수명을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인구집단 기대수명은 동일한 출생 인구 집단에 연령대별로 적용되는 예상 사망률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인구 집단 기대수명은 특정 출생 인구집단에 유리한 지속적 향상(2015~2020년 또는 2060~2065년 이후)을 고려한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인구 집단 추산치에서는 2060~2065년에 65세인 여성의 경우 1.5년, 남성의 경우 1.0년을 추가한다.

### 정의와 측정

기대수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들이 특정 연도(즉, 여기서는 2015~2020년과 2060~2065년)에 특정 국가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망률을 경험할 경우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년수로 정의한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느리게 변하므로 기대수명은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구집단 기대수명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사망률 추산의 예상 변화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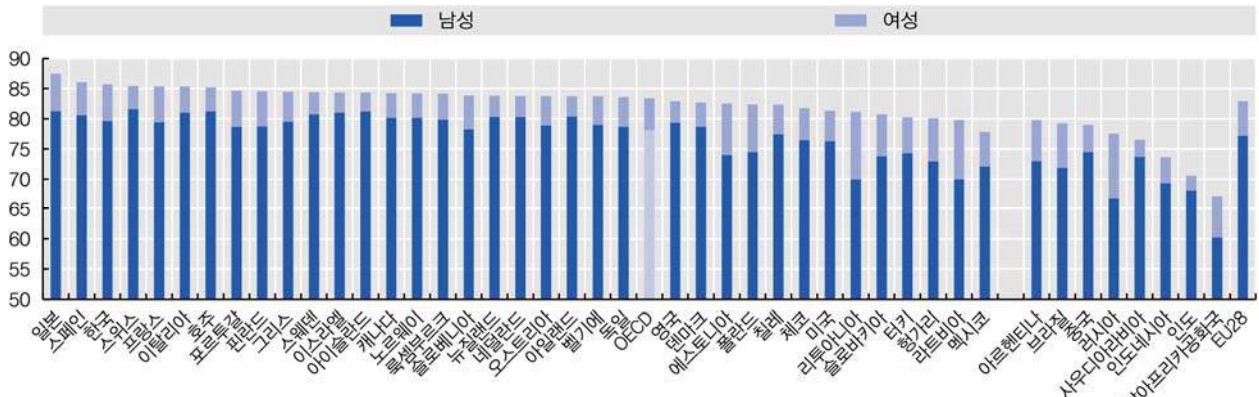
### 참고문헌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31747416062>.

Whitehouse, E.R. (2007), "Life-expectancy Risk and Pensions: Who Bears the Burd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6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060025254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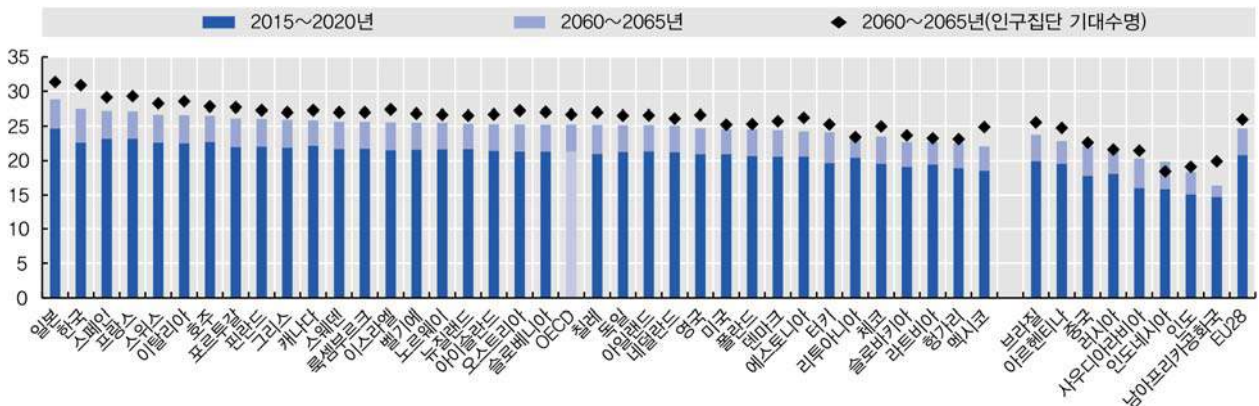
그림 6.2. 남성과 여성의 현재 출생 시 기대수명(년)  
2015~2020년 사망률 기반



주: 본 기대수명 데이터는 특정 출생 인구집단이 아닌 특정 기간(여기서는 2015~2020년)의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다.  
출처: UN 경제사회부(2019), 세계인구전망 2019, 온라인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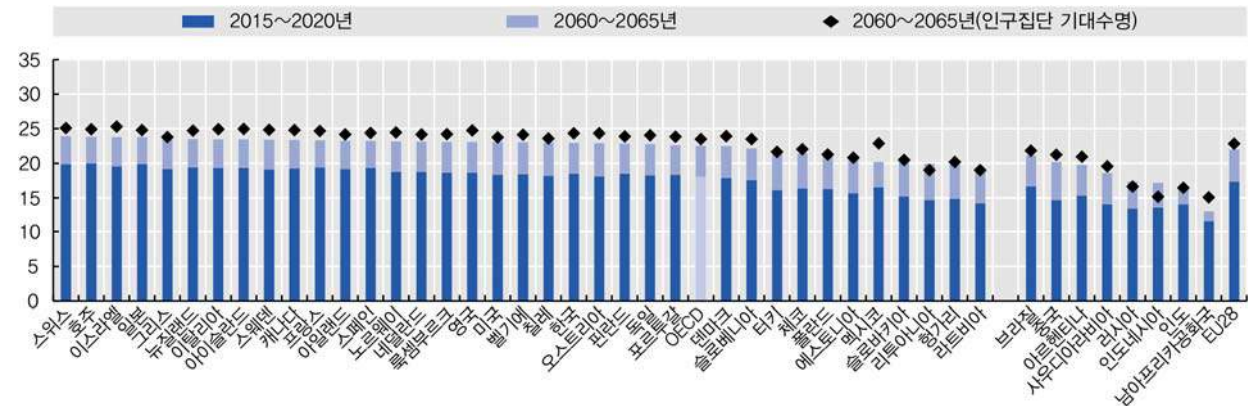
그림 6.3. 여성의 현재 및 예상 65세 기대수명(년)  
명시된 기간 또는 인구집단의 사망률 기반



출처: UN 경제사회부(2019), 세계인구전망 2019, 온라인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896>

그림 6.4. 남성의 현재 및 예상 65세 기대수명(년)  
명시된 기간 또는 인구집단의 사망률 기반



출처: UN 경제사회부(2019), 세계인구전망 2019, 온라인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915>

**주요 결과**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30년 전 약 21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31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노인부양비는 일정한 연령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다음 30년 내로 5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인구학적으로 가장 고령화된 국가는 일본으로, 부양비는 52.0이다. 즉, 20~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52명을 부양하는 것이다. 핀란드와 이탈리아의 부양비도 약 40으로 높은 편이다. 2050년 부양비는 그리스(75.0), 이탈리아(74.4), 일본(80.7), 한국(78.8), 포르투갈(71.4), 스페인(78.4)에서 70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지표로 봤을 때 가장 젊은 국가인 멕시코와 터키는 부양비가 각각 13.2과 15.2을 나타내며, 칠레가 그 뒤를 이어 19.7을 나타냈다. 그러나 21세기 후반부에는 이들 국가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80년에 칠레의 부양비는 OECD 평균을 훨씬 초과할 것이며(60.8에서 67.5로 상승), 멕시코와 터키가 각각 50.9와 58.2로 평균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앵글로색슨계(Anglo-Saxon)계 OECD 국가 44개국(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에서는 25~30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양비를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유입 때문이기도 하고,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대체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양비의 변화는 사망률, 출산율, 이민에 따라 달라진다. OECD 국가들은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와 연금수급자 역시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 출산율도 크게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결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에는 OECD 평균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래의 출산율

어떻게 변화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그림 6.1)

UN 세계인구전망 중위추계에 따르면 OECD 전체적으로 노인 부양비는 2020년에 31.2, 2050년에는 53.4, 2080년에는 60.8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50년 6.3에서 2080년 94.6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OECD에서 다섯 번째로 젊은 국가였던 한국은 2080년 가장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고령화되어 있다. EU 28개국의 인구 예측은 대체로 OECD 평균을 따른다. 다른 비OECD 주요 국가들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부양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향후 수십 년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맞게 될 것이다. 가령 현재 20이 안 되는 중국과 브라질의 부양비는 2080년에 6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예측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심지어 현재 OECD 평균보다도 낮은 26.8의 부양비로 가장 젊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부양비의 추계로 인해 출산율, 사망률, 이민의 변화 양상도 눈에 띄게 불확실하다. 따라서 UN 시뮬레이션 예측에서는 2050년 OECD 평균 노인부양비가 50.8~56.0 범위에 드는 경우가 60%에 불과하다.

**정의와 측정**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는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수로 정의한다.

표 6.2. 인구학적 노인부양비: 과거 및 예측값, 1950~2080년

	1950	1960	1990	2020	2050	2080		1950	1960	1990	2020	2050	2080
호주	14.0	16.0	18.8	27.7	41.6	49.4	뉴질랜드	16.3	17.0	19.5	28.3	43.8	57.5
오스트리아	17.3	21.0	24.3	31.3	56.0	60.2	노르웨이	16.0	19.8	28.5	29.6	43.4	53.4
벨기에	18.1	20.3	24.8	33.1	51.3	56.8	폴란드	9.4	10.5	17.3	30.5	60.3	68.6
캐나다	14.0	15.1	18.4	29.8	44.9	54.0	포르투갈	13.0	14.8	23.9	38.6	71.4	72.3
칠레	7.2	7.9	10.9	19.7	44.6	67.5	슬로바키아	11.9	12.6	18.2	26.5	54.6	58.1
체코	13.9	16.3	22.0	33.8	55.9	52.8	슬로베니아	12.5	13.7	17.3	34.7	65.0	60.7
덴마크	15.6	19.0	25.9	34.9	44.6	52.4	스페인	12.8	14.6	23.1	32.8	78.4	74.4
에스토니아	19.3	17.7	19.7	34.9	54.9	63.2	스웨덴	16.8	20.2	30.9	35.9	45.5	53.4
핀란드	11.9	13.5	22.0	40.1	51.4	65.0	스위스	15.8	17.6	23.6	31.3	54.4	56.7
프랑스	19.5	20.8	24.0	37.3	54.5	62.2	터키	6.5	7.0	9.4	15.2	37.0	58.2
독일	16.2	19.1	23.5	36.5	58.1	59.5	영국	17.9	20.2	26.9	32.0	47.1	55.1
그리스	12.4	12.2	22.9	37.8	75.0	79.7	미국	14.2	17.3	21.6	28.4	40.4	51.1
헝가리	13.2	15.5	22.9	33.4	52.6	55.4	OECD	13.9	15.5	20.6	31.2	53.4	60.8
아이슬란드	14.1	16.4	19.0	26.6	46.2	64.5							
아일랜드	20.9	22.8	21.6	25.0	50.6	60.0							
이스라엘	7.1	9.1	17.8	23.9	31.3	39.9	아르헨티나	7.5	10.1	17.3	20.2	30.3	45.5
이탈리아	14.3	16.4	24.3	39.5	74.4	79.6	브라질	6.5	7.1	8.4	15.5	39.5	63.7
일본	9.9	10.4	19.3	52.0	80.7	82.9	중국	8.5	7.6	10.2	18.5	47.5	60.6
한국	6.3	7.6	8.9	23.6	78.8	94.6	인도	6.4	6.4	7.9	11.3	22.5	40.8
라트비아	18.1	17.7	19.9	35.5	53.0	49.9	인도네시아	8.6	7.6	7.7	10.6	27.3	41.0
리투아니아	17.5	14.0	18.4	34.7	55.7	55.7	러시아	8.7	10.5	17.2	25.3	41.7	41.9
룩셈부르크	15.8	17.6	21.1	22.3	43.8	50.1	사우디아라비아	7.5	8.4	6.1	5.3	28.2	44.8
멕시코	8.0	8.3	9.6	13.2	28.9	50.9	남아프리카공화국	8.5	8.4	8.7	9.6	17.4	26.8
네덜란드	13.9	16.8	20.6	34.3	53.3	62.2	EU28	14.7	16.2	21.8	33.5	56.3	61.7

주: 인구학적 노인부양비는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수로 정의한다.  
 출처: UN 경제사회부(2019), 세계인구전망 2019, 온라인 판.(미래의 기간에 대해서는 중위 전망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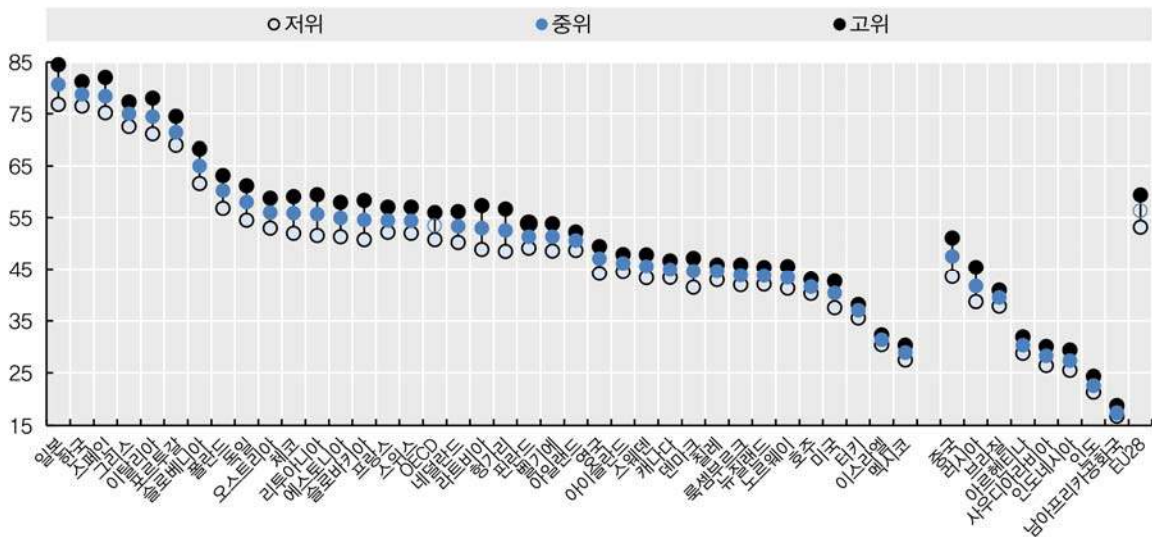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934>

그림 6.5. 인구학적 노인부양비 예측의 불확실성  
 2050~2055년 저위, 중위, 고위추계



주: 저위, 중위, 고위 추계는 각각 추정치의 20%, 50%, 80% 백분위수에 상응한다.  
 출처: UN 경제사회부(2019), 세계인구전망 2019(<http://population.un.org/wpp/>)를 바탕으로 한 확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934>

**주요 결과**

고용률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하락한다. 2018년에 55~59세 인구의 OECD 평균 고용률은 72.5%였으나 60~64세 인구는 49.6%, 65~69세 인구는 22.3%였다. OECD 10개국에서는 55세 이상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OECD 9개국에서는 모든 연령 집단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2000년 이후 55~64세 고용률이 향상되어 2000년 평균 43.9%에서 2018년 61.5%로 상승하였다.

OECD에서 55~69세 인구의 고용률은 국가 간 격차가 크다. 2018년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경우 55~59세 인구의 고용률이 82.9%,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78.0%, 65~69세 인구의 고용률은 52.6%였다. 대조적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고용률이 가장 낮았는데, 55~59세 인구의 고용률은 각각 52.3%와 39.6%였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2018년 60~64세와 65~69세 연령 집단에서 각각 19.0%와 3.3%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또한 벨기에, 그리스, 슬로베니아, 터키에서는 60~64세 연령 집단의 고용률이 30% 이하였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의 고용률은 55~59세 인구의 경우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하여 65~69세 인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에서는 55~59세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60~64세 연령층과 65~6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관측 대상인 모든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에서 5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평균적으로는 2000년 43.9%에서 2018년 61.5%로 17.6%p 증가했다. 25~54세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2000년 76.8%에서 2018년 81.2%로 상승하였다. 55~64세 연령집단의 경우 가장 상승폭이 큰 곳은 독일이었는데, 2000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37.6%에서 2018년 71.4%까지 증가했다. 헝가리와 슬로

바키아에서도 상승폭이 30%p 이상이였다. 아이슬란드와 터키에서는 2000~2018년 사이 55~64세의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다.

연금제도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면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낮은 국가들은 대체로 60~64세 연령집단에서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 특히 현재 정상 연금수급연령(남녀 평균)이 62.5세 이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은퇴 연령이 높은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의 고령 근로자 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정의와 측정**

고용률은 각 연령 집단의 총 인구 대비 고용 인구의 비율로 계산한다. 고용 인구는 이전 주에 최소 1시간 동안 유급 고용으로 근로했거나 직업이 있지만 조사 대상 주 동안 결근한 것으로 보고한 15세 이상 인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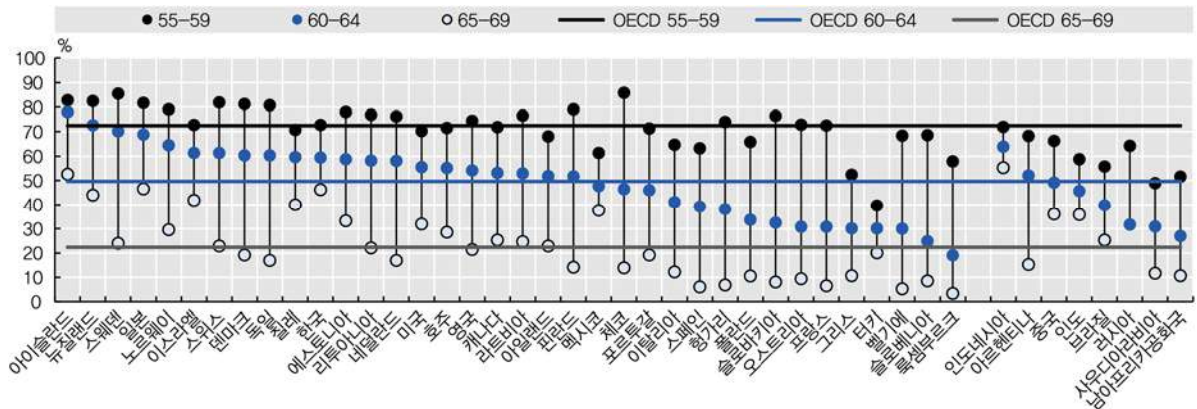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OECD reviews on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Working Better with Age reports on Denmark, France, Netherlands, Norway, Poland and Switzerland (see <http://www.oecd.org/els/employment/olderworkers>).

Sonnet A., H. Olsen and T. Manfredi (2014), "Towards More Inclusiv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The Lessons from France,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itzerland", *De Economist*, Vol. 162,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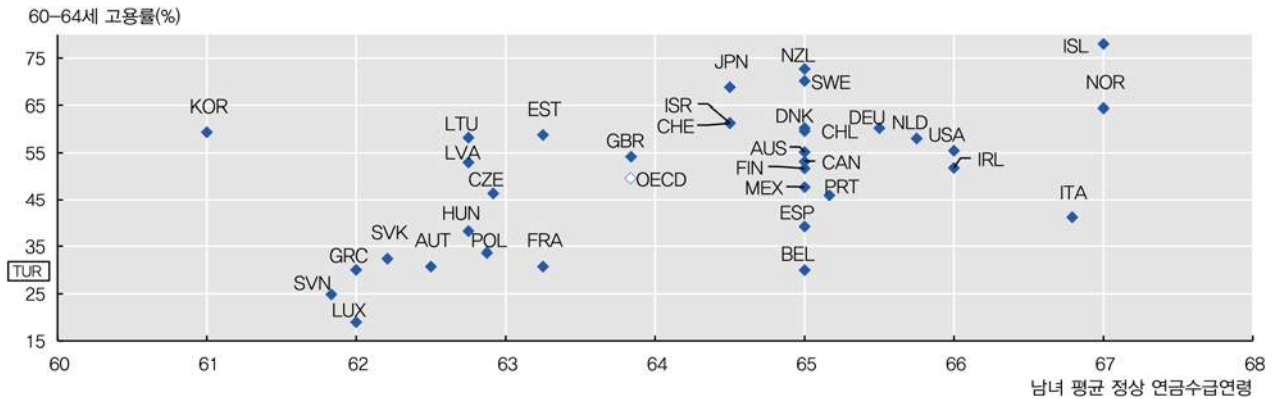
그림 6.6. 2018년 55~59세, 60~64세, 65~69세 노동자의 고용률



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데이터는 각각 2010, 2012, 2017년 것이다. 러시아의 연령 집단 65~69세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출처: OECD 데이터베이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통계: 고용인구비율(Labour Market Statistics by sex and age: employment-population ratio). 아르헨티나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노동기구(ILOSTAT), <https://ilostat.ilo.or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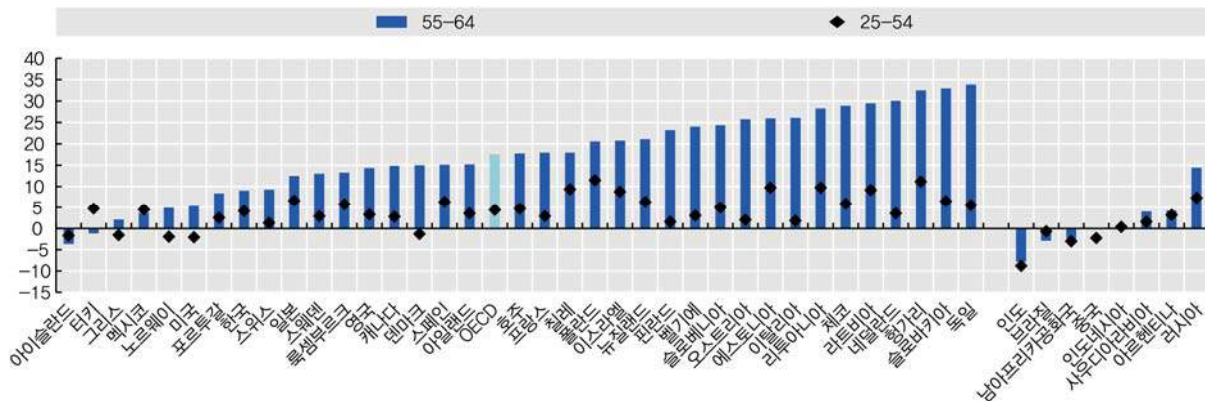
그림 6.7. 2018년 60~64세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 고용률



주: 용이한 자료 파악을 위하여 본 차트에서는 터키의 정상 연금수급연령 중 가장 낮은 값을 배제하였다. 배제된 값은 49.5세(각각 여성과 남성, 48세와 51세의 평균)로, 해당하는 고용률은 30.1%이다.  
 출처: OECD 데이터베이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통계: 고용인구비율. 정상 연금수급연령 데이터: 제4장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1991>

그림 6.8. 고령 근로자 및 핵심생산인구 노동자의 고용률 변화(%p), 2000~2018년



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터는 각각 2004~2018, 2001~2018, 2000~2010, 2000~2017, 2009~2018, 2001~2018년의 것이다.  
 출처: OECD 데이터베이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통계: 고용인구비율. 아르헨티나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노동기구(ILOSTAT), <https://ilostat.ilo.or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010>

**주요 결과**

2018년 OECD 국가의 노동시장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65.4세, 여성의 경우 63.7세였다. OECD 국가의 노동시장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14개월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공식 은퇴연령보다 2개월 높았다. 실질 은퇴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남성의 경우 60.5세의 룩셈부르크, 여성의 경우 59.9세의 슬로바키아이다. 실질 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72.3세였다.

2018년 평균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65세 이하인 나라는 남성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절반이 조금 안 됐고, 여성의 경우 2/3 수준이었다. 여성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만 60세 이하였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62세 이하였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남성과 여성,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의 남성은 평균 70세 이후에 실질 은퇴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데, 멕시코와 가장 큰 격차(4.8년)가 나타났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룩셈부르크에서만 여성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남성보다 소폭이나마 높다.

OECD 평균에 따르면 2018년 남성의 노동시장 정상 은퇴연령은 실질 은퇴연령보다 1.2세, 여성은 0.2세 낮았다. 그러나 국가 간 차이는 상당하다. OECD 36개국 가운데 실질 은퇴연령이 정상 은퇴연령보다 더 낮은 국가는 여성의 경우 19개국, 남성의 경우 16개국이며, 14개국은 남성과 여성의 실질 은퇴연령이 모두 정상 은퇴연령보다 더 낮았다. 이탈리아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녀 각각 정상 은퇴연령보다 3.7세, 5.1세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과 터키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정상 은퇴연령보다 상당히 높았다.

수십 년간 가파르게 하락한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여러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의 경우 1990년대 말에, 남성의 경우 2000년대

초에 저점에 도달했다. 1970년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남녀가 각각 68.8세, 66.5세였고, 2000년에는 63.1세, 61.0세까지 떨어졌다. 2000년 이후 실질 은퇴연령은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남성의 경우 5년 이상 증가하였으며, 에스토니아, 한국, 뉴질랜드 여성의 경우 6.5년 이상 증가하였다. 심지어 터키는 8년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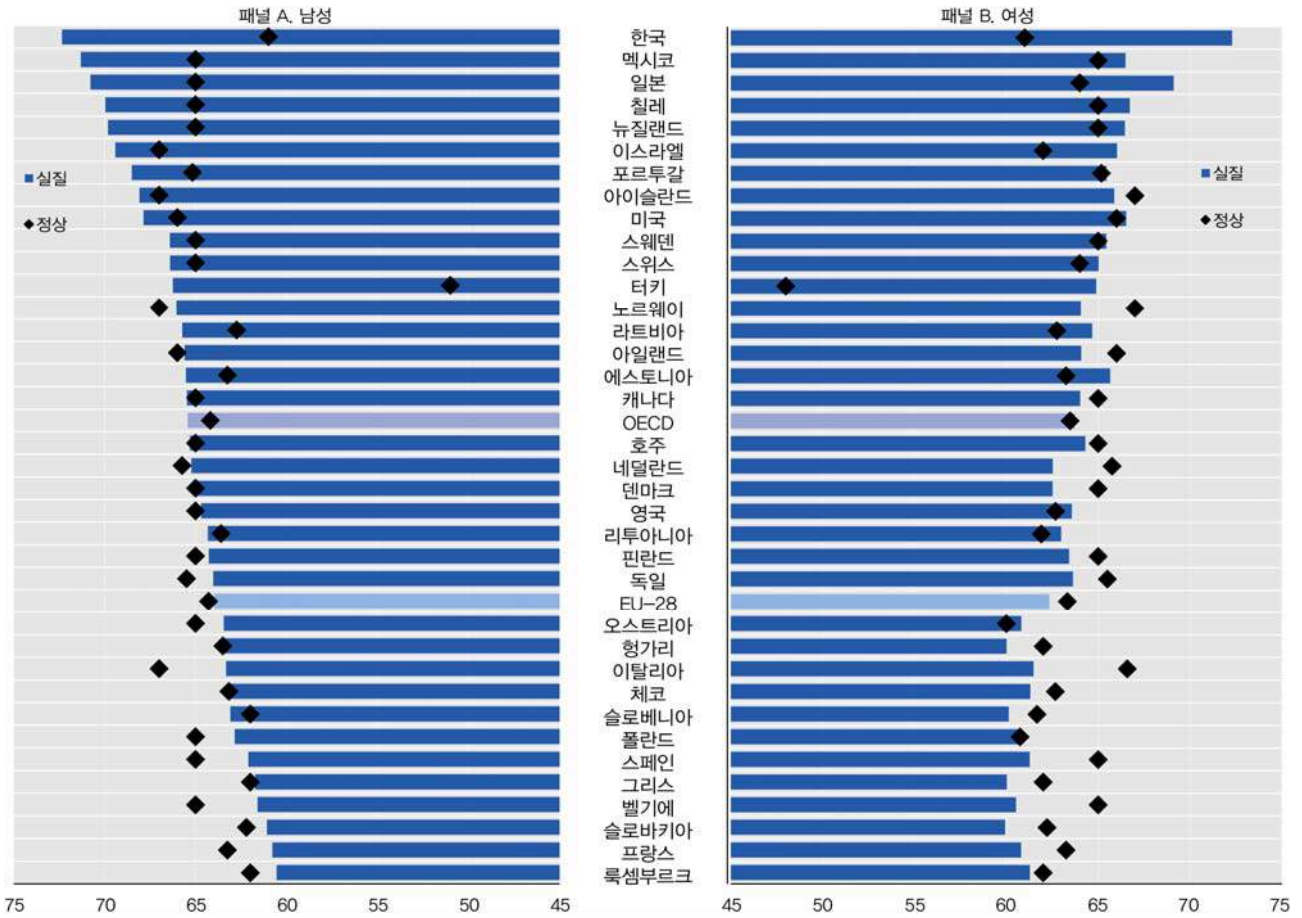
OECD 내 평균 정상 은퇴연령의 변화는 남녀 모두 실질 은퇴연령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1970년대에 시작해 2000년 경까지 이어진 정상 은퇴연령의 감소는 실질 은퇴연령과 비교해 덜 두드러졌으며, 반등도 빨리 나타나 90년대 말이 아닌 9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정의와 측정**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40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시장 평균 은퇴연령으로 정의한다.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를 배제하기 위해 노동력 수준이 아닌 노동 참여의 증감률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은퇴를 추정하였다. 이 증감률은 각 (합성) 인구집단을 5년 단위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정상 은퇴연령은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단 없이 근로한 개인이 2018년 모든 강제적 연금제도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연령으로 정의한다. 이 연령은 제4장의 그림 4.4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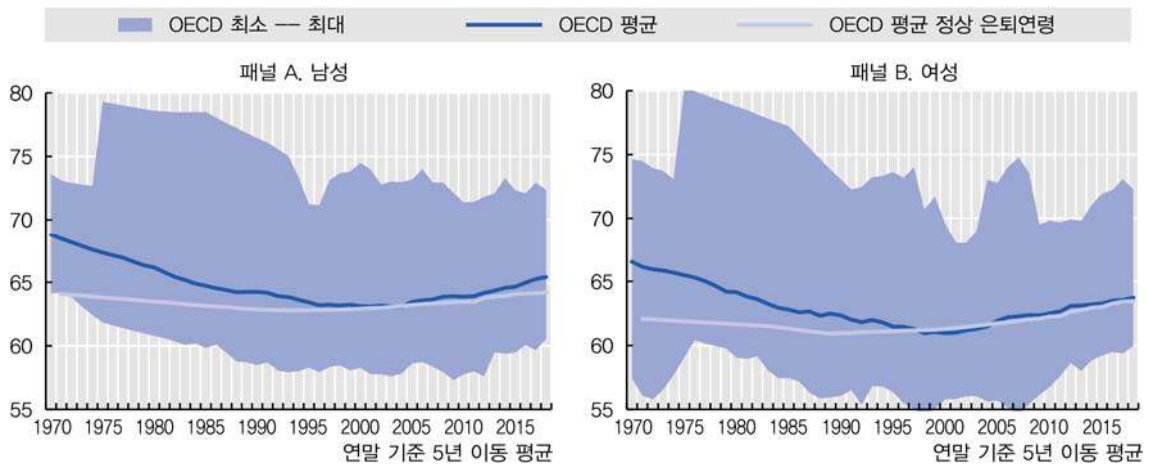
그림 6.9. 2018년 노동시장 평균 실질 은퇴연령과 정상 은퇴연령



주: 2013~2018년의 5년에 대한 실질 은퇴연령을 나타냄. 정상 은퇴연령은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완전경력을 마치고 2018년에 은퇴하는 개인에 대해 제시됨.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와 EU 노동력 조사(EU-LFS) 결과에 근거한 OECD 추정치,  
[https:// www.oecd.org/els/emp/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https://www.oecd.org/els/emp/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정상 은퇴연령: 제4장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029>

그림 6.10. OECD 노동시장 평균 실질 은퇴연령, 1970~2018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와 UN 노동력 조사(EU-LFS) 결과에 근거한 OECD 추정치, 일부 국가의 초기 자료는 국가 인구통계 조사,  
<https://www.oecd.org/els/emp/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정상 은퇴연령: 각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048>

**주요 결과**

은퇴 후 기대수명 지표는 평균적인 노동시장 은퇴연령 이후의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을 측정한다. 2018년 OECD 평균 은퇴 후 기대수명은 여성의 경우 22.5년, 남성의 경우 17.8년이었다. 프랑스는 은퇴 후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는데, 여성의 경우 26.9년, 남성의 경우 22.7년이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경우는 멕시코의 남성(12.9년)과 한국의 여성(16.3년)이었다. OECD 평균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장되어 왔다. 1970년, OECD 국가의 여성과 남성은 각각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 평균 14.5년과 10.5년을 생존했다. 2018년 OECD 평균 은퇴 후 기대수명은 여성의 경우 22.5년, 남성의 경우 17.8년으로 증가했다.

이 지표는 평균 노동시장 은퇴연령의 기대수명을 나타낸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 여성은 은퇴 이후 25년 이상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6.11, 패널 B)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 남성은 은퇴 이후 20년 이상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6.11, 패널 A) 여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 이후 기대수명은 칠레,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터키, 미국에서 20년 미만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칠레,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에서는 15년 미만이었다.

남성은 대개 여성보다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OECD 평균 4.7년 짧다.(그림 6.11)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 은퇴 후 기대수명의 성별 격차는 6년 이상이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노후 빈곤(제7장 참조)에 처하는데, 일부 국가에서 물가연동이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및 기대수명 연장이 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은퇴 후의 평균 노후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다. 1970년에 OECD 국가의 남성은 은퇴 후 평균 10.5년을

살았고, 2018년에는 17.8년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그림 6.12, 패널 B) 1970년 여성의 은퇴 후 평균 기대수명은 14.5년이었으나, 2018년에는 22.5년으로 증가했다.(그림 6.12, 패널 A) 1970에서 약 2014년까지 은퇴 후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의 하락과 수명 증가 때문이다. 이후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증가로 노년기 기대수명의 지속적 상승을 상쇄하게 되자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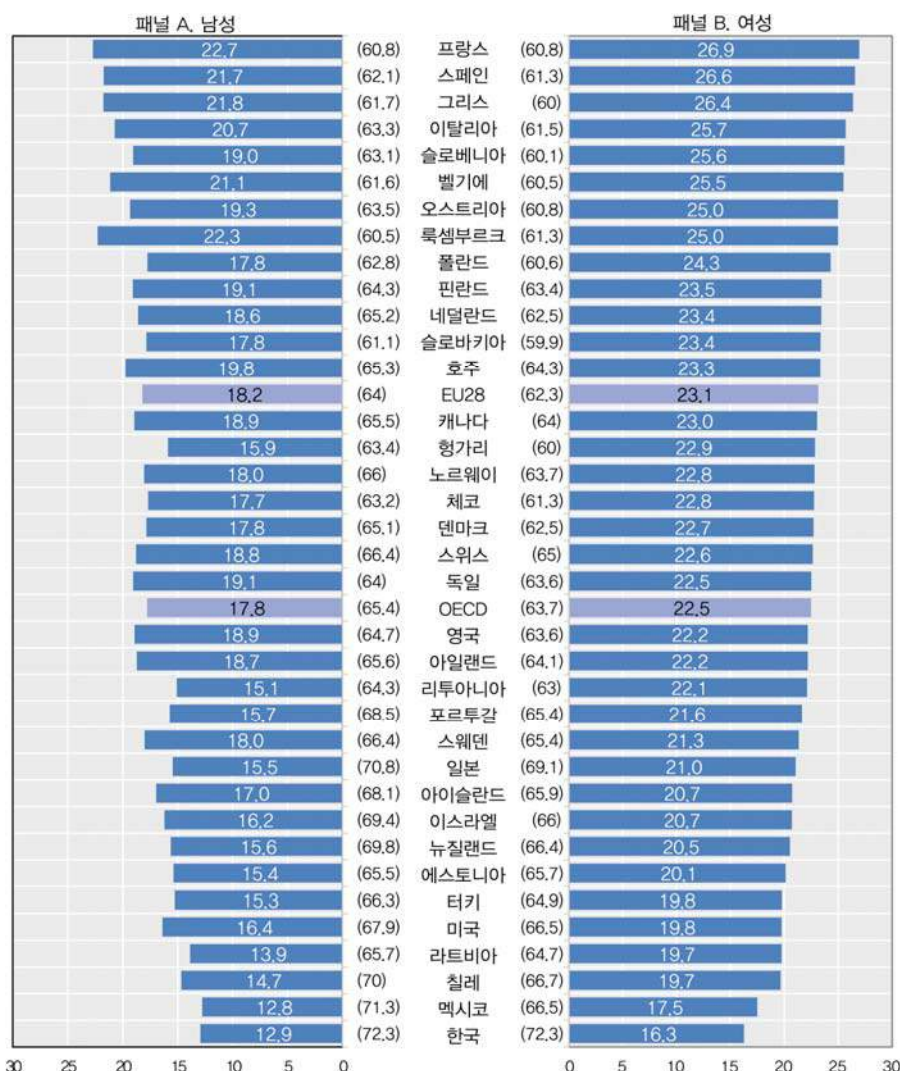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

여성과 남성의 은퇴 후 기대수명은 평균적인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 이후의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으로 측정된다. 기대수명 추산치는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Revision)을 근거로 산정된다.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40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시장 평균 은퇴연령으로 정의한다.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구성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노동력 수준이 아닌 노동 참여의 증감률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은퇴를 추정하였다. 이 증감률은 각 (합성)인구집단을 5년 단위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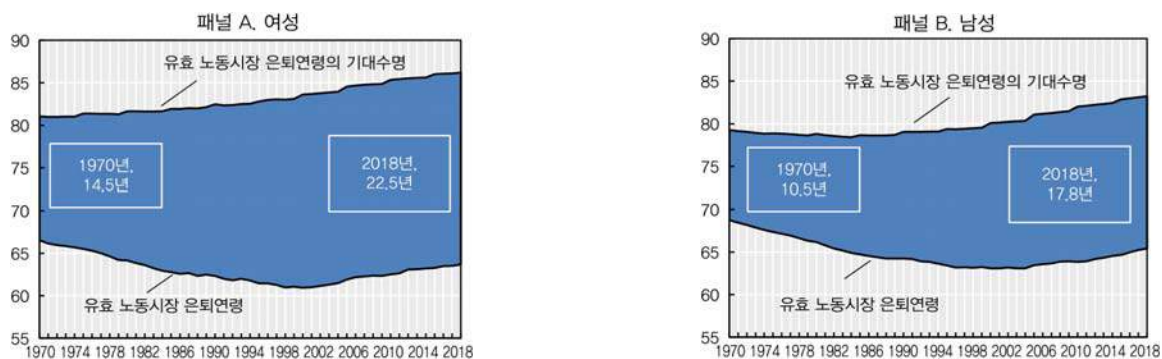
그림 6.11.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 20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성별에 따른 2018년 평균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을 가리킨다.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은 기간별 사망률을 근거로 한다.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을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은퇴연령: 이전 항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067>

그림 6.12. OECD 평균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 1970~2018년



주: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수명은 기간별 사망률을 근거로 한다.  
출처: UN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을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은퇴연령: 이전 항목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086>



## 제 7 장

# 노인인구의 소득과 빈곤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최근 수년간 노인인구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첫 번째 지표는 노인의 소득을 전체 인구의 소득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또한 공적급여, 사적 기업 퇴직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적 개인연금, 기타 저축 등 노인의 소득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두 번째 지표는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국가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사는 노인인구의 비율 및 이들의 소득 수준과 빈곤선 간의 격차를 알아본다. 또한 노인 빈곤율을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본다.

세 번째 지표는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알아본다. 이 지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와 백분위수 비율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

마지막 지표는 모든 연금 모형의 기본이 되는 “평균 근로자 소득”을 제시한다. 이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변수에 따른 여러 수치 및 연금수급액 추정치는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비율로서 나타낸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요 결과

노인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낮다.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 소득의 87%였고, 이 가운데 66~73세 노인은 93%, 75세 이상은 80%였다. 36개 OECD 회원국 중 22개 국가에서 공적이전(public transfer)은 65세 이상의 총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2016년 이후 평균 인구 소득의 87%였다.(표 7.1) 노인 소득이 가장 높은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이 전체 인구의 소득과 같거나 약간 더 높았다.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노인 소득 역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노인 소득은 1/3가량 낮았다.

평균 소득은 은퇴 후 나이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 퇴직자의 소득이 낮은 것은 과거의 실질소득 상승과 같은 인구집단 효과(cohort effect)에 의해 일부 설명된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 인구집단의 소득이 높아지고, 과거 인구집단의 연금이 임금 성장에 연동되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연동 원칙 또한 큰 역할을 한다. 물가연동은 구매력을 보호하지만 시간에 따른 상대적 소득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임금으로 인해 수급액이 적고 수명이 긴 여성 노인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인들은 대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당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등가치 가치분소득(equivalised disposable income)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OECD 회원국 2/3 이상에서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지난 수십 년간 상승해 왔다.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65세 이상 상대소득은 1995년 81%에서 2017년 101%로 20%p 이상 상승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물론 그리스와 노르웨이도 2005년 이후로 유사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노인소득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곳은 칠레로, 2006년 이후 8%p가 줄어들었지만 비교 기준점이 높았다.

G20 국가들을 보면,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각각 2013년과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을 훨씬 웃돌았다.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66세 이상 노인 상대소득은 80% 이상이었다.

### 수입원

노인들이 의존하는 4가지 주요 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비례 연금, 자원조사형 연금 등)과 사적 퇴직이전(연금, 퇴직급여, 사망수당 등)이 총 소득의 2/3를 차지한다.(그림 7.1) 공적이전과 사적 퇴직이전은 평균적으로 각각 노인 소득의 55%와 10%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이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는 호주,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로, 소득의 80%가 공적이전에서 나온다. 멕시코, 터키, 칠레에서는 공적이전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 8%, 18%에 그친다. 사적 퇴직이전소득은 OECD 12개국에서 특히 중요한데, 네덜란드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근로소득은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약 25%, 자본소득은 약 10%를 차지한다. 근로소득은 한국과 멕시코에서 특히 중요하며 노인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미국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소득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므로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근로는 더욱 중요한 소득원일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사적연금인 자본소득이 노인 소득원의 40%를 차지한다.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는 자본소득이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 정의와 측정

노인인구의 소득은 고용, 자영업, 자본, 공적이전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이다. 제시된 자료는 가치분소득(즉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에 대한 것이다. 소득은 가구 기준으로 측정되며 가구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곱근 균등화 지수로 균등화한다. 정의 및 자료 출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참조한다. OECD(2013)의 특별장인 “노인인구의 소득과 빈곤”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OECD (2019),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accessed on 15 September 2019).

OECD (2019), *Will Future Pensioners Work for Longer and Retire on Less? Policy Brief on Pensions*, <https://www.oecd.org/pensions/public-pensions/OECD-Policy-Brief-Future-Pensioners-2019.pdf>.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

표 7.1. 노인 소득,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전체 인구 평균소득 대비 연령별 평균소득 비율

	65세 이상 전체	66~75세	75세 이상	65세 이상 전체: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65세 이상 전체	66~75세	75세 이상	65세 이상 전체: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호주	72.3	77.9	63.9	66.4	멕시코	92.5	97.6	84.4	86.0
오스트리아	93.8	97.1	89.8	87.0*	네덜란드	85.6	91.2	76.9	84.1
벨기에	79.7	84.1	74.9	73.7*	뉴질랜드	86.2	95.4	71.1	79.0
캐나다	90.5	94.1	84.9	94.3	노르웨이	91.6	101.1	77.0	72.4
칠레	93.5	95.8	90.0	101.5*	폴란드	88.7	89.3	87.8	96.0*
체코	75.6	78.9	69.6	78.5*	포르투갈	99.0	109.7	86.9	80.5*
덴마크	80.9	86.2	72.7	70.7	슬로바키아	87.2	90.6	81.0	80.6*
에스토니아	66.7	72.2	60.5	..	슬로베니아	89.6	93.2	84.0	84.6*
핀란드	83.2	90.5	73.1	81.6	스페인	95.3	102.9	86.9	84.8*
프랑스	103.2	107.6	97.7	100.1	스웨덴	85.5	97.0	68.1	85.8
독일	88.6	92.5	85.1	85.8	스위스	80.0	84.5	73.8	81.7*
그리스	96.8	103.4	89.4	77.9	터키	86.0	89.1	81.1	90.0
헝가리	94.5	95.7	92.5	89.2	영국	83.6	90.6	73.9	76.1
아이슬란드	94.3	100.5	84.7	80.6*	미국	93.8	102.1	80.9	90.0
아일랜드	84.1	89.8	75.6	70.0*	OECD	87.4	93.0	79.7	..
이스라엘	101.2	109.7	88.9	80.7	기타 G20 국가				
이탈리아	99.6	107.8	91.4	87.9	브라질	117.7	117.5	118.1	122.5*
일본	87.8	89.7	85.5	88.7	중국	83.9	85.0	81.9	..
한국	65.1	72.2	54.6	..	인도	108.5	106.8	112.2	116.9*
라트비아	71.3	78.3	63.5	72.9*	러시아	81.3	82.9	79.0	..
리투아니아	74.1	81.6	65.2	73.4*	남아프리카공화국	95.8	94.3	99.2	..
룩셈부르크	105.3	107.0	102.4	..					

주: \* = 1990년대 중반 자료가 없어 2000년대 중반 자료를 표시함: 오스트리아와 스페인(2007년), 브라질, 칠레, 스위스(2006년), 인도(2004년)를 제외하고 모두 2005년. 가장 최신 데이터는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2017년),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2015년), 뉴질랜드(2014년), 브라질(2013년), 중국, 인도(2011년)를 제외하고 2016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자료를 사용한 국가의 데이터는 프랑스(1996년), 그리스, 멕시코, 터키, 영국(1994년)을 제외하고 1995년 것이다. 계열 단절로 인해 칠레의 2006년 데이터 및 다른 국가의 1990년대 중반 데이터(캐나다와 핀란드 제외)는 2011년이나 가장 근접한 가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열 단절이 소득 수준에 미치는 연령별 영향을 측정하는 요인을 통해 평가하였다. .. = 에스토니아, 한국, 룩셈부르크의 과거 데이터는 계열 단절로 인해 비교가 불가능하며,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터는 자료가 없어 여기에 표시하지 않는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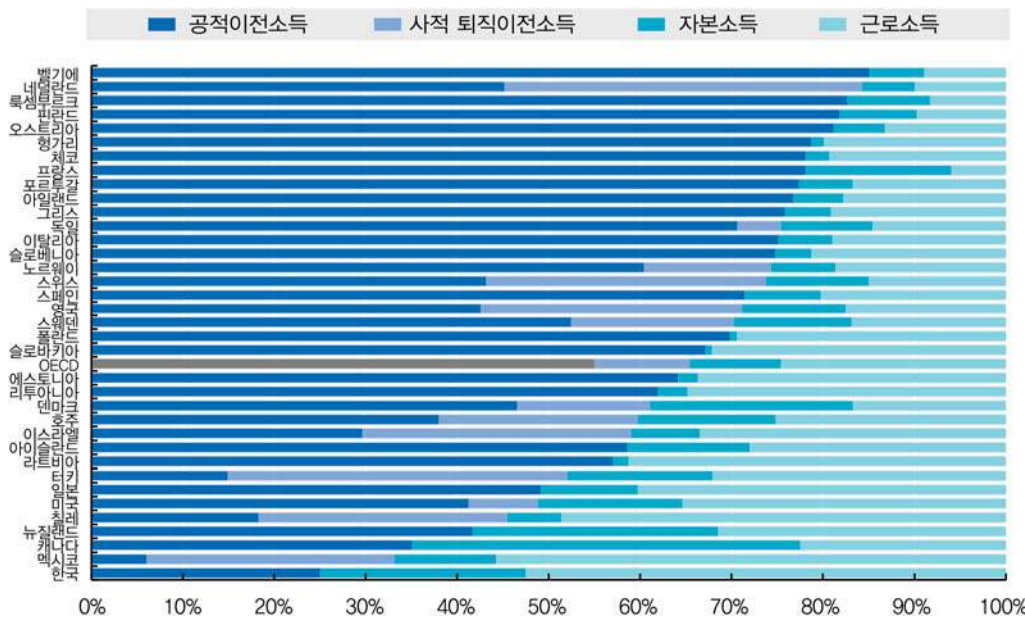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105>

그림 7.1. 노인의 소득원,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총 균등화 가구소득 및 이전 대비 비율



주: 근로를 통한 소득은 근로소득(고용소득)과 자영업소득을 포함한다. 사적 기업 퇴직이전소득은 연금, 퇴직급여, 사망수당 등을 포함한다. 자본소득은 비연금성 저축의 수익으로 인한 소득과 사적 개인연금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6년 것이다. 표 7.1의 주 참고.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124>

**주요 결과**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13.5%는 균등화된 중위 가치분 가구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정의되는 소득빈곤 상태이다. 이들의 소득과 상대적 빈곤선 사이의 격차는 평균 23.5%이다. 노인 빈곤율은 평균 11.8%인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국가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 20개국에서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보다 낮다.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은퇴 이후 노화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빈곤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18~25세 인구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최신 가용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한국에서 40%를 넘었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30% 이상이며, 호주,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에서는 20%보다 높다. 이에 반해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 모두 5% 미만으로 가장 낮다. 1층 연금제도는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제4장 “기초연금, 목표연금, 최저 연금” 지표 참조)

노인이 소유한 재산(주택 혹은 기타)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데, 소득빈곤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OECD 15개국에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7.2) 이들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22%,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4%이다.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 사이에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으로, 노인의 빈곤율이 전체 인구보다 26%p 더 높으며, 에스토니아, 호주, 라트비아가 그 뒤를 따른다. 빈곤율이 동일한 핀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OECD 20개국에서는 노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 보다 각각 6%p 낮다.

OECD 회원이 아닌 G20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다양하다. 중국과 인도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각각 39%와 23%이다. 브라질은 65세 이상 빈곤율이 8%로, 전체 빈곤율 20%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인다.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

“젊은 노인”(66~75세)의 빈곤율은 “고령 노인”(75세 이상)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평균 빈곤율은 “젊은 노인”이 11.6%, “고령 노인”이 16.2%이다. 두 집단 간 격차는 한국(+20.4%p), 라트비아(+15.2%p), 에스토니아(+13.7%p)에서 특히 크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젊은 세대의 연금소득이 더 높다. 또 이들 3개국은 모두 개인 연금을 소득 성장보다 낮게 연동한다.(제4장, 표 4.3) 소득은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으로 상승하므로

은퇴자가 나이가 들면 소득 대비 연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진다. 또한 노인 인구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호주, 칠레,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5개국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75세 이하의 젊은 노인보다 약간 낮다.

**빈곤과 성별**

남녀 빈곤 위험이 거의 같은 칠레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서 노인 여성의 빈곤 위험이 노인 남성보다 높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남성이 8.7%, 여성은 15.7%이다. 여성의 노인 빈곤 발생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소득비례 연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칠레를 제외하고 빈곤율의 성별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곳은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다. 이 국가들의 격차는 2%p가 되지 않는다. 격차가 가장 큰 곳은 15%p가 넘는 발트 3국이며, 한국이 12%p로 그 뒤를 잇는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 역시 성별 격차가 5%p 이상으로 크다.

**정의와 측정**

국가 간 비교에서 OECD는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룬다. 빈곤의 척도는 특정 시점에서 전체 인구의 중위 가구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여기에서는 빈곤 기준선이 중위 균등화가구 가치분소득의 50%로 설정되어 있다. 빈곤 수준은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상대적 빈곤 기준선보다 얼마나 아래에 있는지를 기준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정의 및 자료 출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참조한다.

**참고문헌**

OECD (2019),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accessed on 15 September 2019).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9087-en>.

표 7.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소득 빈곤율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소득의 비율

	노인인구(65세 이상)					전체 인구	노인인구(65세 이상)					전체 인구	
	전체	연령별		성별			전체	연령별		성별			
		66~75세	75세 이상	남성	여성			66~75세	75세 이상	남성	여성		
호주	23.2	19.5	28.7	21.2	24.8	12.1	멕시코	24.7	22.5	28.2	23.3	25.9	16.6
오스트리아	8.7	9.0	8.5	5.9	11.0	9.8	네덜란드	3.1	2.0	4.9	2.8	3.5	8.3
벨기에	8.2	8.0	8.4	7.0	9.1	9.7	뉴질랜드	10.6	7.7	15.2	6.6	14.0	10.9
캐나다	12.2	10.9	14.3	9.3	14.7	12.1	노르웨이	4.3	2.4	7.3	2.1	6.2	8.4
칠레	17.6	17.7	17.4	17.6	17.5	16.5	폴란드	9.3	10.1	8.2	5.5	11.8	10.3
체코	4.5	4.1	5.4	1.4	6.9	5.6	포르투갈	9.5	7.8	11.3	7.2	11.1	12.5
덴마크	3.0	2.0	4.5	2.1	3.7	5.8	슬로바키아	4.3	3.6	5.7	2.6	5.5	8.5
에스토니아	35.7	29.3	43.0	21.4	42.8	15.7	슬로베니아	12.3	10.5	15.0	6.8	16.3	8.7
핀란드	6.3	3.7	10.0	4.6	7.6	6.3	스페인	9.4	8.7	10.1	7.8	10.6	15.5
프랑스	3.4	2.8	4.1	2.6	3.9	8.3	스웨덴	11.3	7.9	16.5	7.3	14.8	9.3
독일	9.6	8.9	9.4	7.4	10.6	10.4	스위스	19.5	15.5	25.0	17.0	21.6	9.1
그리스	7.8	7.6	7.9	6.4	8.8	14.4	터키	17.0	14.3	21.0	14.9	18.5	17.2
헝가리	5.2	5.9	4.3	4.8	5.5	7.8	영국	15.3	12.1	19.7	12.5	17.7	11.9
아이슬란드	2.8	2.4	3.5	1.7	3.9	5.4	미국	23.1	19.7	28.3	19.6	25.9	17.8
아일랜드	6.0	4.9	7.6	5.8	6.1	9.2	OECD	13.5	11.6	16.2	10.3	15.7	11.8
이스라엘	19.9	17.3	23.8	16.2	23.0	17.9	기타 G20 국가						
이탈리아	10.3	10.0	10.6	7.9	12.1	13.7	브라질	7.7	7.9	7.3	7.5	7.8	20.0
일본	19.6	16.7	22.9	16.2	22.3	15.7	중국	39.0	37.7	41.5	37.9	40.1	28.8
한국	43.8	35.5	55.9	37.1	49.0	17.4	인도	22.9	23.3	22.2	21.9	24.0	19.7
라트비아	32.7	25.6	40.8	20.0	38.8	16.8	러시아	14.1	15.0	12.7	8.4	17.0	12.7
리투아니아	25.1	21.7	29.2	13.4	31.0	16.9	남아프리카공화국	20.7	20.5	21.1	13.3	24.7	26.6
룩셈부르크	7.7	8.9	5.4	6.3	8.9	11.1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6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7.1의 주 참고.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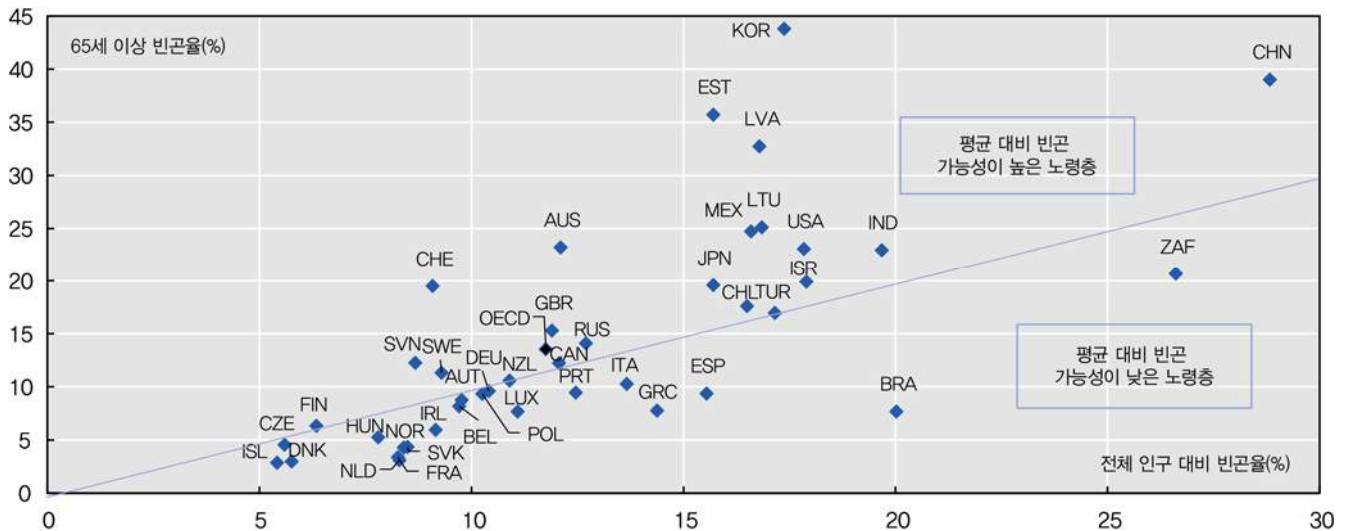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143>

그림 7.2. 노인과 전체 인구의 연령별 소득 빈곤율,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6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7.1의 주 참고.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162>

**빈곤 수준**

상대적 빈곤 기준선(본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50%로 정의)과 빈곤층 평균 소득 간 격차로 측정하는 빈곤 수준은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7.3) 노인 간에 빈곤 수준이 가장 심한 국가는 헝가리, 한국, 멕시코로, 40%에 이상에 달한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미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 수준은 30%를 넘는다. 빈곤 기준선과 평균 소득 사이의 평균 격차가 15% 미만으로 가장 적은 국가는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빈곤 수준은 전체 빈곤층(30.6%)보다 노인(23.5%)에게서 낮게 나타난다. 반대로 나타나는 국가는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터키, 그리고 비OECD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뿐이다.

OECD 국가에서는 빈곤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빈곤 수준도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65세 이상(상관계수 0.32)에서보다 전체 인구(0.40)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빈곤의 변화**

빈곤 발생률은 적어도 일부 국가의 경우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표 7.3) 가용 데이터가 있는 19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에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또는 가용 데이터가 있는 최근 년도)까지 감소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2.1%p였다. 빈곤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그리스(-17.5%p), 이스라엘(-9.7%p), 노르웨이(-11.8%p)였다.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각각 9.1%p, 9.3%p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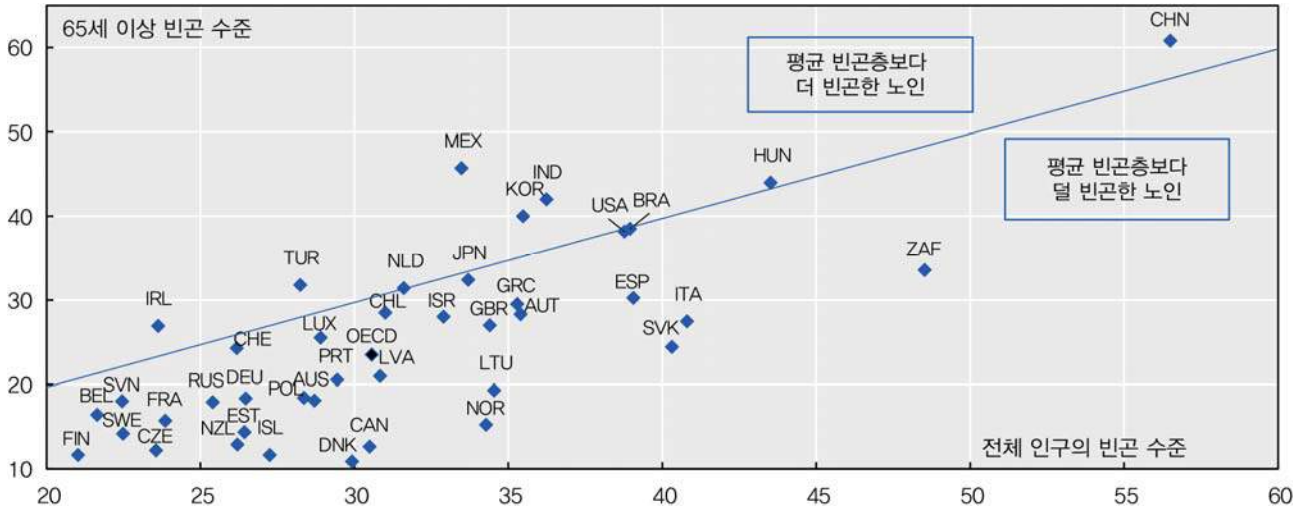
에스토니아, 한국,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2000년대 중반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2016년까지 1.4%p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연령층, 특히 청년층에서는 지난 수십 년 사이 빈곤율이 상승했다. 불황 이후 어려워진 노동 시장 상황이 원인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 19개국 중 16개 국가에서 18~25세 빈곤율이 상승했으며, 증가폭은 평균 3.6%p이었다. 호주, 헝가리, 멕시코에서는 그와 같은 빈곤율이 소폭 감소했고, 덴마크(+8.2%p), 그리스(+10.1%p), 이스라엘(+9.0%p), 노르웨이(+7.4%p)는 크게 증가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 OECD 33개국 평균적으로는 1.4%p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9.5%p의 리투아니아였다.

결과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빈곤이 이동한 것이다. 65세 이상과 18~25세의 빈곤율 변화의 격차로 측정하는 빈곤 이동(poverty shift)은 OECD 19개국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최신 데이터 가용 시점까지 평균 -5.7%p였으며, OECD 33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2.8%p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의 빈곤 이동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 곳은 덴마크(-15.2%p), 그리스(-27.6%p), 이스라엘(-18.7%p), 노르웨이(-19.2%p)였으며, 2000년대 이후 데이터 획득이 가능했던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일랜드(-15.8%p), 포르투갈(-14.9%p), 스페인(-15.4%p)이었다. 반대로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의 빈곤 이동이 가장 크게 발생한 곳은 1990년대 중반 이후를 기준으로 캐나다(+8.4%p),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경우에는 라트비아(+12.6%p)였다.



그림 7.3. 노인과 전체 인구의 연령별 소득 빈곤 수준,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  
빈곤선과 빈곤층 인구의 평균 소득 간 차이(빈곤선 소득 대비 비율)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6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7.1의 주 참고.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65세 이상 빈곤층의 평균 소득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빈곤 기준선(여기서는 전체 인구의 중위 소득 기준 50%)보다 30.2% 아래에 있다. 즉, 65세 이상 빈곤층의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의 34.9%이다. 스페인 전체 빈곤층의 평균 소득은 빈곤선보다 39.1% 아래에 있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181>

표 7.3.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의 연령별 상대적 소득 빈곤을 증감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의 50%보다 낮은 소득의 비율 증감(%p)

국가(*90년대 중반이 아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증감)	빈곤 이동:						국가(*90년대 중반이 아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증감)	빈곤 이동:					
	65세 이상	0~17세	18~25세	26~65세	총	65세 이상 vs. 18~25세		65세 이상	0~17세	18~25세	26~65세	총	65세 이상 vs. 18~25세
호주	0.8	-0.4	-0.2	0.1	0.5	0.9	라트비아*	9.6	-5.8	-3.0	-2.4	-0.8	12.6
오스트리아*	-4.6	1.8	2.9	0.3	0.1	-7.5	리투아니아*	9.7	-0.4	9.5	0.0	2.6	0.2
벨기에*	-7.4	2.9	2.6	1.5	0.5	-9.9	룩셈부르크	..	..	..	..	..	..
캐나다	9.1	-4.1	0.6	0.4	0.2	8.4	멕시코	-3.6	-3.0	-1.0	-2.0	-2.6	-2.6
칠레*	0.5	-4.7	0.3	-3.7	-3.6	0.2	네덜란드	-0.4	1.2	4.6	2.8	1.9	-5.0
체코*	2.2	-1.1	0.7	0.0	0.1	1.5	뉴질랜드	9.3	1.4	1.7	2.3	2.7	7.6
덴마크	-7.0	1.9	8.2	2.2	1.2	-15.2	노르웨이	-11.8	4.8	7.4	2.7	1.4	-19.2
에스토니아	..	..	..	..	..	..	폴란드*	5.0	-8.5	-2.7	-1.1	-2.1	7.7
핀란드	1.0	1.6	5.2	2.0	2.1	-4.2	포르투갈*	-8.5	1.0	6.4	1.3	-0.2	-14.9
프랑스	-0.8	2.5	1.6	0.3	0.5	-2.3	슬로바키아*	-2.2	4.4	1.3	1.5	1.2	-3.5
독일	-0.3	4.3	5.4	3.8	3.3	-5.8	슬로베니아*	-2.3	1.1	2.0	2.4	1.6	-4.3
그리스	-17.5	5.6	10.1	2.6	0.8	-27.6	스페인*	-10.2	1.6	5.2	4.1	1.4	-15.4
헝가리	2.8	0.0	-1.0	2.9	1.9	3.9	스웨덴	7.1	6.8	2.6	5.5	5.7	4.5
아이슬란드*	-1.4	-1.9	-0.1	-0.2	-0.9	-1.3	스위스*	1.7	-1.5	-0.1	-1.5	-0.6	1.8
아일랜드*	-12.5	-3.6	3.3	-0.6	-2.3	-15.8	터키	-6.1	6.4	3.6	-0.1	1.5	-9.7
이스라엘	-9.7	11.5	9.0	3.3	5.9	-18.7	영국	-2.9	-4.4	2.6	0.9	-0.5	-5.5
이탈리아	-6.6	-2.5	2.3	0.7	-1.1	-8.9	미국	0.6	-1.2	1.8	2.5	1.3	-1.2
일본	-3.4	1.8	3.4	1.7	2.0	-6.9	OECD19	-2.1	1.8	3.6	1.8	1.5	-5.7
한국	..	..	..	..	..	..	OECD33*	-1.4	0.0	1.4	0.7	0.3	-2.8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16년의 것이며, 1990년대 중반의 데이터는 1995년의 것으로 계열 단절을 고려해 조정되었다. 1990년대 중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데이터를 표시했으며, 이 데이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2005년의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7.1의 주 참고. 에스토니아, 한국, 룩셈부르크의 과거 데이터는 계열 단절로 인해 비교가 불가능하여 여기에 표시하지 않는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200>

### 주요 결과

OECD 평균 65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2이다. 가장 높은 곳은 멕시코(0.500), 가장 낮은 곳은 체코(0.185)이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단위인 P90/P10 및 P50/P10 비율도 여러 국가에 걸쳐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니계수와 두 백분위수 비율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는 각각 0.93, 0.8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보다 노인층에게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지니계수의 경우 이 현상은 OECD 회원국 중 2/3 이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평균은 0.015이다.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멕시코(0.500), 칠레(0.441), 한국(0.419), 미국(0.41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체코(0.185), 슬로바키아(0.202), 벨기에(0.222), 노르웨이(0.225), 덴마크와 핀란드(두나라 모두 0.233), 네덜란드(0.235)는 가장 낮은 지니계수를 보였다. 이처럼 범위가 넓다는 것은 OECD 회원국 간 노인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크게 상이하다는 것이다.

OECD 25개국에서 전체 인구의 소득(지니계수로 측정)은 노인층보다 더욱 높게 나타난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전체 인구와 노인층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체코로 0.068에 해당하며,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가 그 뒤를 잇는다. 노인층의 불평등 수준이 낮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는 1층 연금제도, 기타 소득 비례 연금제도의 재분배적 특성, 연금 산정 대상 소득의 한도가 있다(제4장) 하지만 특히 한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11개 국가에서는 여전히 노인의 불평등이 전체 인구에서보다 심하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G20 국가의 65세 이상에 대한 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연령 양상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예외로 중국과 인도는 65세 이상의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눈에 띄게 크다.

### P90/P10 및 P50/P10 비율

P90/P10 및 P50/P10 백분위수 비율은 지니계수와 상관계수가 각각 0.93과 0.84로 매우 높는데, 이는 지니계수로 살펴본 국가별 소득불평등 순위와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연령 양상도 지니계수 분석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OECD 평균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처분소득 분포의 90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3.8배 많은 소득을 가진다. 50번째 백분위수 소득은 P10(역자주: 10번째 백분위 소득) 수준의 1.8배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층 P90/P10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찬가지로 멕시코(9.5), 한국(7.0), 칠레(6.6)이다. P50/P10 비율의 경우, 미국이 불평등 상위 3개국 자리에서 칠레를 제외시키면서 등장한다. 백분위수 비율은 중국에서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데, P90/P10과 P50/P10 비율이 각각 29.0과 8.9이다.

체코(2.2), 덴마크(2.3),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는 P90/P10 비율이 2.5 미만인 유일한 나라들이다. 호주와 함께 이들 국가는 P50/P10 비율도 1.3, 또는 1.4로 가장 낮다.

### 시간에 따른 불평등의 증감

65세 이상의 소득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지난 수십 년 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19개 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또는 가용 데이터가 있는 최근 년도까지의 평균 지니계수는 일정했다. OECD 33개국의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감 추이도 마찬가지였다. OECD 19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인구에 대한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평균 지니계수 상승폭은 0.011이었다.

OECD 평균적으로는 노인층의 불평등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가별 차이는 상당하다.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층 불평등이 0.05 이상 대폭 감소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지니계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 발생한 감소였다. 반대로 뉴질랜드나 스웨덴은 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고, 호주, 덴마크, 미국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가 늘었으나 상승폭은 비교적 좁았으며, 리투아니아는 짧은 기간 안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정의와 측정

지니계수와 백분위수 비율은 불평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여기서는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한다. 지니계수는 완전한 평등을 나타내는 0부터 완전한 불평등(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차지하는 경우)을 나타내는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백분위수 비율은 가처분소득 분포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의 소득 간 비율을 가리킨다. P90/P10 비율은 90번째 백분위수와 10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소득을, P50/P10 비율은 마찬가지로 50번째 백분위수와 10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정의 및 자료 출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참조한다.

### 참고문헌

OECD (2019),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accessed on 15 September 2019).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9087-en>.

표 7.4. 노인과 전체 인구의 연령별 소득 불평등,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균등화된 가계 가처분소득 분포의 P90/P10 및 P50/P10 비율과 지니계수

	지니계수		P90/P10 비율		P50/P10 비율		지니계수		P90/P10 비율		P50/P10 비율		
	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호주	0.325	0.330	3.1	4.3	1.4	2.1	0.500	0.458	9.5	6.7	3.2	2.5	
오스트리아	0.262	0.284	3.3	3.5	1.8	2.0	0.235	0.285	2.4	3.4	1.4	1.9	
벨기에	0.222	0.266	2.6	3.3	1.5	2.0	0.354	0.349	3.8	4.3	1.6	2.1	
캐나다	0.291	0.310	3.5	4.1	1.8	2.1	0.225	0.262	2.6	3.1	1.6	1.9	
칠레	0.441	0.460	6.6	7.2	2.5	2.5	0.250	0.284	3.1	3.7	1.8	2.0	
체코	0.185	0.253	2.2	3.0	1.4	1.7	0.346	0.331	4.3	4.5	1.8	2.2	
덴마크	0.233	0.261	2.3	2.9	1.3	1.8	0.202	0.241	2.4	3.1	1.4	1.9	
에스토니아	0.283	0.314	3.2	4.7	1.5	2.3	0.252	0.244	3.2	3.1	1.8	1.9	
핀란드	0.233	0.266	2.7	3.1	1.6	1.8	0.300	0.341	3.7	5.3	1.9	2.6	
프랑스	0.273	0.291	3.0	3.4	1.7	1.9	0.296	0.282	3.1	3.3	1.6	2.0	
독일	0.260	0.294	3.2	3.8	1.8	2.0	0.298	0.296	3.9	3.6	2.0	1.9	
그리스	0.279	0.333	3.3	4.7	1.8	2.4	0.376	0.404	5.0	5.7	2.1	2.3	
헝가리	0.254	0.282	2.8	3.3	1.6	1.9	0.336	0.357	3.9	4.3	1.9	2.1	
아이슬란드	0.271	0.255	2.8	3.0	1.5	1.7	0.411	0.390	6.9	6.2	2.7	2.7	
아일랜드	0.284	0.309	3.2	3.8	1.5	1.9	<b>OECD</b>	<b>0.302</b>	<b>0.317</b>	<b>3.8</b>	<b>4.3</b>	<b>1.8</b>	<b>2.2</b>
이스라엘	0.357	0.344	5.6	5.4	2.5	2.7	기타 G20 국가						
이탈리아	0.307	0.328	3.8	4.5	1.9	2.3	브라질	0.440	0.470	5.5	8.7	1.9	3.0
일본	0.351	0.339	5.0	5.2	2.4	2.5	중국	0.545	0.514	29.0	23.0	8.9	7.8
한국	0.419	0.355	7.0	5.8	2.7	2.8	인도	0.536	0.495	13.2	9.4	3.7	2.9
라트비아	0.342	0.346	4.1	5.3	1.7	2.5	러시아	0.292	0.331	3.6	4.6	1.8	2.2
리투아니아	0.340	0.378	4.0	5.8	1.8	2.6	남아프리카공화국	0.600	0.620	12.5	25.6	2.4	4.8
룩셈부르크	0.285	0.304	3.7	4.0	1.9	2.1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6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7.1의 주 참고.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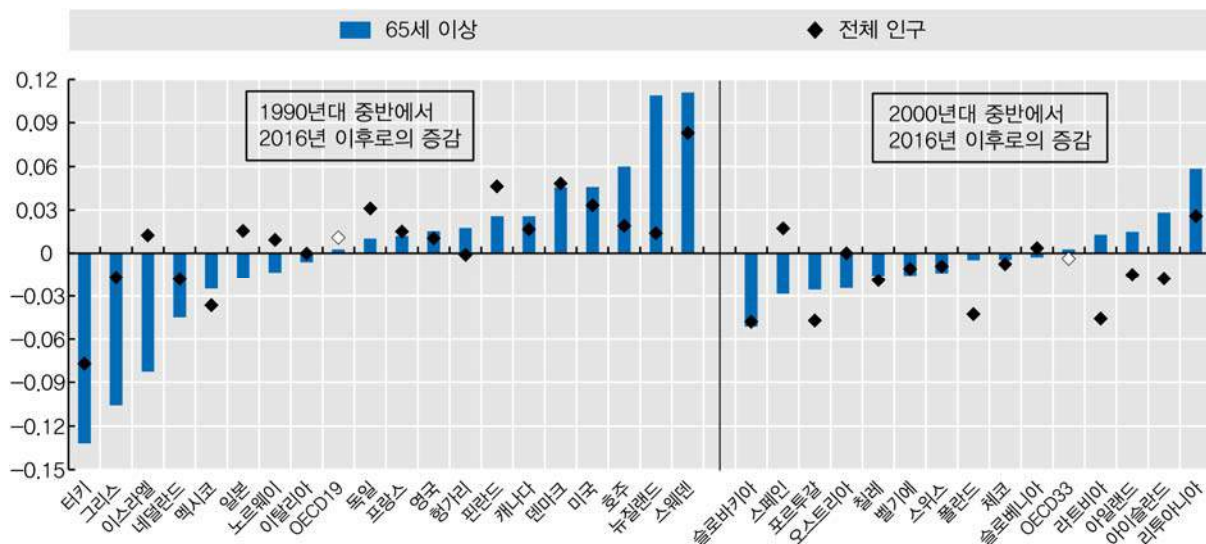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219>


그림 7.4. 노인과 전체 인구의 시간에 따른 소득 불평등 증감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사이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증감



주: 여기서 가처분소득이란 균등화된 가계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16년의 것이며, 1990년대 중반의 데이터는 1995년의 것으로 계열 단절을 고려해 조정되었다. 1990년대 중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데이터를 표시했으며, 이 데이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2005년의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7.1의 주 참고. 에스토니아, 한국, 룩셈부르크의 과거 데이터는 계열 단절로 인해 비교가 불가능하여 여기에 표시하지 않는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2019년 9월 버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238>

주요 결과

“평균 임금(AW)”은 중요한 지표로, 모든 연금 모형화 결과가 이 지표의 배수로 제시된다. 모든 OECD 국가의 평균 임금은 2018년에 41,479달러였다.

표 7.5는 2018년의 OECD 평균 임금(AW) 수준을 나타낸다. 임금 소득은 모든 종류의 공제(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전 총 임금으로 정의하며,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초과 근무수당 및 기타 현금성 보충 소득을 포함한다.

평균 임금은 각국의 통화 및 미국 달러로 표시한다.(시장환율 및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PPP 환율은 달러의 구매력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한다. 즉 국가별로 한 바구니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임금은 2018년 시장환율로 평균 41,479 달러였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92,964달러와 84,510달러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다. 이는 멕시코의 6,350달러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멕시코 다음으로 평균 근로자 소득이 낮은 국가는 터키(9,718달러)이다.

PPP 기준 평균 임금은 42,624달러였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가 69,268달러로 다시 한 번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가 64,007달러로 그 뒤를 따랐다. 멕시코는 13,027달러로 다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칠레, 라트비아가 약 23,500달러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PPP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은 많은 OECD 국가의 달러 환율이 일정한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균등화하는 비율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주요 국가들의 평균 임금은 평균 임금이나 다른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며 아쉽게도 이러한 일련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는 국가별 출처로부터 수집되었으므로 평균 개인 소득, 평균 적용 임금 및 자료가 가용한 특정 노동자 집단의 평균 임금 간에 차이가 있다. 사용된 수치는 시장환율로 인도의 1,522달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6,614달러까지 다양하다.

정의와 측정

평균 전일제 성인의 총 임금 소득으로 정의하는 “평균 노동자” 소득(AW) 자료는 한 눈에 보는 연금 두 번째 판(OECD, 2007)부터 채택되었다. 이 개념은 이전에 사용 하던 “평균 제조업 근로자 (APW)” 기준보다 더욱 광범위한데, AW가 더 많은 경제 부문을 포괄하며 제조업 및 비제조업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AW 지표는 OECD 보고서인 Taxing Wages에서 도입 되었으며 Benefits and Wages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연금 세 번째 판(OECD, 2009) 역시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8개국에 대해 소득의 신규 지표에 따른 대체율을 비교한다.

참고문헌

OECD (2019), *Taxing Wag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tax\\_wages-2019-en](https://dx.doi.org/10.1787/tax_wages-2019-en).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 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9-en](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9-en).

표 7.5. 평균 임금(AW), 2018년

	OECD 평균 임금 지표			환율, USD당 국가별 통화	
	국가별 통화	USD, 시장환율	USD, PPP	시장환율	PPP
호주	85 778	64 089	59 872	1,34	1,43
오스트리아	47 120	55 619	59 934	0,85	0,79
벨기에	48 455	57 196	61 877	0,85	0,78
캐나다	53 550	41 327	43 022	1,30	1,24
칠레	9 669 058	15 078	23 883	641,28	404,85
체코	383 304	17 639	30 377	21,73	12,62
덴마크	421 547	66 757	60 578	6,31	6,96
에스토니아	16 103	19 008	29 390	0,85	0,55
핀란드	43 984	51 918	50 122	0,85	0,88
프랑스	39 436	46 549	50 904	0,85	0,77
독일	50 546	59 664	66 521	0,85	0,76
그리스	21 214	25 040	36 459	0,85	0,58
헝가리	4 138 492	15 316	29 474	270,21	140,41
아이슬란드	9 152 462	84 510	66 165	108,30	138,33
아일랜드	46 774	55 211	58 292	0,85	0,80
이스라엘	153 221	42 673	40 836	3,59	3,75
이탈리아	31 292	36 937	44 807	0,85	0,70
일본	5 188 742	46 990	51 184	110,42	101,37
한국	48 166 599	43 766	55 975	1100,56	860,51
라트비아	11 881	14 025	23 796	0,85	0,50
리투아니아	11 121	13 126	24 303	0,85	0,46
룩셈부르크	59 497	70 229	68 240	0,85	0,87
멕시코	122 208	6 350	13 027	19,24	9,38
네덜란드	51 567	60 868	64 662	0,85	0,80
뉴질랜드	60 360	41 764	40 828	1,45	1,48
노르웨이	596 477	73 345	58 813	8,13	10,14
폴란드	54 191	15 004	30 490	3,61	1,78
포르투갈	18 343	21 652	30 908	0,85	0,59
슬로바키아	12 131	14 319	24 846	0,85	0,49
슬로베니아	19 671	23 220	33 819	0,85	0,58
스페인	26 923	31 779	41 557	0,85	0,65
스웨덴	453 539	52 176	50 839	8,69	8,92
스위스	90 908	92 964	76 419	0,98	1,19
터키	46 921	9 718	29 110	4,83	1,61
영국	39 328	52 467	56 169	0,75	0,70
미국	54 951	54 951	54 951	1,00	1,00
<b>OECD</b>		<b>41 479</b>	<b>45 624</b>		
기타 G20 국가					
아르헨티나	294 613	10 486	18 748	28,09	15,71
브라질	26 929	7 370	13 275	3,65	2,03
중국	72 067	10 893	20 217	6,62	3,56
인도	105 963	1 549	5 845	68,39	18,13
인도네시아	31 800 000	2 234	7 490	14236,94	4245,61
러시아	470 303	7 505	18 340	62,67	25,64
사우디아라비아	99 802	26 614	63 275	3,75	1,58
남아프리카공화국	119 977	9 061	19 592	13,24	6,12

주: USD = 미국 달러, PPP = 구매력평가지수.

출처: OECD (2019), Taxing Wag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및 OECD 국가계정 데이터베이스(National Account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257>



## 제 8 장

# 연금제도의 재정

본 장의 지표를 통해 연금제도의 재정을 살펴본다. 첫 번째 지표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수급액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연금기여금(Mandatory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두 번째 지표는 “공공지출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Public expenditure on pensions)”을 살펴본다. 이는 국내총생산 중 국가의 공적연금에 할당되는 금액과 정부 예산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을 보여준다. 세 번째 지표는 사적연금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적, 준강제적,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총 급여지출을 살펴본다.

마지막 지표는 연금지출의 장기적인 예측치와 특히 2015~2016년부터 2050년까지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의 추이를 보여준다.

**주요 결과**

연금에 적용되는 기여금이 있는 OECD 33개국에서 2018년 평균 소득자에 대한 총 유효 의무연금 기여율은 평균 18.4%였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에서는 의무 기여금은 연금액과 연계되지 않으며 사회보험제도를 포괄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측정지표는 연금제도의 급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루는 지표들은 기여 부분을 살펴보고 2018년에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금으로 재정이 조달되는 연금급여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한 국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금제도는 다른 소득원을 통해서 재정이 조달되므로 연금의 기여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어려울 수 있다. 본 절의 목적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모형화된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8.1은 공적제도나 사적제도의 연금기여금이 의무인 OECD 32개국 및 의무기여가 존재하지 않는 뉴질랜드를 나타낸다. 이 집단에 속한 국가는 납입 기여율이 연금체계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의 12개국에서는 장애급여와 장애(invalidity) 급여도 기여금으로 재정을 조달한다. 이 집단의 평균 유효 기여율은 2018년 평균 임금의 18.4%였다. 총 의무 기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33.0%의 이탈리아이다. 체코, 프랑스, 폴란드도 26~28%로 높은 수준의 유효 기여율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의무 기여율은 6.275%에 불과하다.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세금으로 재정이 조달되는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여형 제도에 대한 기여율이 10% 이하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제한 소득비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여율이 0이다.

공적제도에 대한 유효 기여율은 18.1%, 사적제도는 9.1%이다. 공적제도 내에서 인의 기여율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율의 약 2/3로, 유효 기여율은 각각 7.5%와 10.6%를 나타낸다. 슬로베니아는 분할 비율이 거의 반대로, 피고용인이 15.5%, 고용주가 8.85%를 납입한다.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에서는 모든 의무 기여금을 고용주가 납부하며, 리투아니아에서는 반대로 피고용인이 전체 기여금을 낸다.

표 8.2는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의 민간 부문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 기여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3개국에서는 연금 기여금을 유족급여, 장애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과 분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속하게 될 제도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모든 부분의 사회보험에 완전히 기여해야 한다.

이 집단의 평균 기여율은 2018년 평균 근로소득자에 대해 21.2%였다. 의무 사회보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28.3%의 스페인, 가장 낮은 곳은 14.75%의 아일랜드였다.

연금 기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대개 평균보다 높은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경우) 기여 수준은 낮은 순 임금과 높은 미래의 연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 기여율이 높으면 국민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총 고용률이 낮아지고 비공식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9), *Taxing Wag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tax\\_wages-2019-en](https://dx.doi.org/10.1787/tax_wages-2019-en).



표 8.1. 2018년 평균 근로자에 대한 의무연금 기여율

	명목 기여율					한도(총 평균소득 대비 비율), 공적제도 / 사적제도	평균소득에 대한 유효 기여율
	피고용인, 공적	고용주, 공적	피고용인, 사적	고용주, 사적	총		
호주			0.0	9.5	9.5	252	9.5
오스트리아*	10.3	12.6			22.8	152	22.8
벨기에	7.5	8.9			16.4	115	16.4
캐나다	5.0	5.0			9.9	104	9.9
칠레			11.2	1.2	12.4	268	12.4
체코*	6.5	21.5			28.0	375	28.0
덴마크*			4.0	8.0	12.0	없음	12.8
에스토니아	0.0	16.0	2.0	4.0	22.0	없음	22.0
핀란드*	6.7 [a]	17.7			24.4 [a]	없음	24.4 [a]
프랑스	11.2 [w]	16.3 [w]			27.5 [w]	없음(806)	27.5
독일*	9.3	9.3			18.6	154	18.6
그리스	6.7	13.3			20.0	342	20.0
헝가리	10.0	15.5			25.5	없음	25.5
아이슬란드*	0.0	7.4	4.0	11.5	22.9	없음	22.9
이스라엘	3.9 [w]	2 [w]	6.0	6.5	18.4 [w]	340 / 78	13.8
이탈리아*	9.2	23.8			33.0	324	33.0
일본	9.15	9.15			18.3	230	18.3
한국	4.5	4.5			9.0	117	9.0
라트비아	10.0	10.0			20.0	463	20.0
리투아니아*	8.7	0.0			8.7	921	8.7
룩셈부르크*	8.0	8.0			16.0	202	16.0
멕시코			1.1	5.2	6.3	601	6.3
네덜란드	18.0	0.0	7.7 [w]	14.8 [w]	x [w]	66 / 없음	25.6
뉴질랜드					0.0		0.0
노르웨이	7.6	10.5	0.0	2.0	20.1	없음 / 193	20.1
폴란드*	11.3	16.3			27.5	264	27.5
포르투갈	7.2	15.5			22.7	없음	22.7
슬로바키아	4.0	14.0			18.0	633	18.0
슬로베니아*	15.5	8.9			24.4	없음	24.4
스웨덴	7.0	10.2	0.0	4.5 [w]	21.7 [w]	111 / 없음	21.7
스위스	4.2	4.2	6.25 [a,w]	6.25 [a,w]	20.9 [a,w]	없음 / 93	16.6 [a]
터키	9.0	11.0			20.0	389	20.0
미국*	6.2	6.2			12.4	234	12.4
OECD33							18.4

출처: 국가별 현황 및 미국 사회보장국의 국가별 사회보장(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연도 상이)

주: \*기여율이 장애급여나 장해급여의 재정도 조달함. [a], [w]: 각각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율이 상이함.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사적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각각 평균 소득의 39%와 27%를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기여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총 명목 기여율은 소득이 평균소득의 39%보다 낮은 경우 18%, 소득이 평균소득의 39%에서 66% 사이인 경우 40.5%, 그 이상은 22.5%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퇴직연금에서는 기금에 따라 기여율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기여율을 표시했다. 프랑스, 라트비아, 스웨덴에서는 표시된 공적 기여율에 강제적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가 포함되었다. 덴마크 ATP 제도의 고정 기여율은 유효 기여율에만 포함된다. 핀란드의 공적연금금은 재원 조달이 부분적이며 사적으로 관리되지만, 국민계정에서는 이를 공적연금으로 분류한다. 프랑스에서는 평균소득의 101% 수준이 되면 총 명목 기여율이 27.5%에서 24.8%로 하락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한도(2018년 AGIRC와 2019년 AGIRC-ARRCO의 경우 평균소득의 806%, 2018년 ARRCO의 경우 302%)에 도달하면 한도 없이 2.3%까지 더욱 급감한다. 이스라엘의 공적제도 명목 기여율은 평균소득의 47%를 초과하면 5.9%, 그 이하는 1.52%다. 스웨덴의 경우 평균 소득의 103% 수준이 되면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명목 기여율이 4.5%에서 30%로 상승한다. 스위스의 사적 퇴직연금제도에 표시된 명목 기여율은 연령별 기여율(25~34세에서 7%, 35~44세에서 10%, 45~54세에서 15%, 55~64세에서 18%)의 평균값이다. 핀란드 공적제도의 피고용인 기여율도 마찬가지다. (53~62세에서 7.85%, 그 외에는 6.35%) 라트비아의 경우 기여금 분할 비율이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칠레에 대하여 표시된 값에는 유족연금에 대한 1.15%, 관리비용에 대한 1.23%가 포함되어 있다. 헝가리의 고용주에게는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금이 부과되며, 이 가운데 79.5%가 연금 재정에 사용된다. 멕시코에 대하여 표시된 기여율에는 정부가 0.225%의 기여와 사회할당(social quota)의 형태로 사적제도 개인 계정에 제공하는 기여금(금액은 임금 수준에 따라 상이함)이 배제되어 있다. 0.625%(피고용인) + 1.75%(고용주) + 0.125%(정부)로 구성되는 공적 유족급여 및 장애급여에 대한 기여금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 룩셈부르크와 이스라엘에서도 정부가 강제적 연금제도에 대해 각각 8%와 0.25%의 기여금을 제공하지만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리투아니아의 데이터는 2018년 6월 사회보장기여금 제도개혁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276>

표 8.2. 2016년 평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기여율

	명목 기여율					한도(총 평균소득 대비 비율), 공적제도 / 사적제도	평균소득에 대한 유효 기여율
	피고용인, 공적	고용주, 공적	피고용인, 사적	고용주, 사적	총		
아일랜드	4.0	10.8			14.8	없음	14.8
스페인	4.7	23.6			28.3	170	28.3
영국	12 [w]	13.8 [w]			25.8 [w]	없음	20.4

주: 표시된 기여율은 각국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이다. 아일랜드: 질병수당과 출산수당 등 유사 급여를 제외한 모든 제도. 스페인: 실업급여를 제외한 모든 제도. 영국: 노령, 유족, 장애, 질병, 출산, 산재, 실업급여. 영국의 기여금은 평균소득의 21%를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또한, 평균소득의 115% 수준이 되면 피고용인 기여금은 12%에서 2%로 낮아진다.

출처: 국가별 현황 및 미국 사회보장국의 국가별 사회보장(연도 상이)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295>

**주요 결과**

OECD 국가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은 2000~2015년에 GDP의 평균 6.6%에서 8.0%로 증가하였다. 공적연금은 대개 사회적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으로 2015년 평균 총 정부 지출의 18.4%를 차지한다.

2015년에 OECD 국가 중 그리스가 국민 소득 대비공적 연금 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GDP의 16.9%를 기록했다. 총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륙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GDP의 약 16.2%,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이 약 13~14%를 차지했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총 공공지출의 1/4~1/3을 차지했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GDP의 각각 2.1%와 2.2%를 공적연금에 지출했다. 한국도 GDP의 2.9%만을 사용했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편인데, 아이슬란드도 이에 해당하지만 멕시코만큼은 아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연금의 상당 부분이 강제적 퇴직연금으로 제공(다음 지표인 “연금 급여지출: 공적제도 및 사적제도” 참조)되기 때문에 공적 연금의 역할도 작고 은퇴연령도 67세로 높은 편이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공적소득비례제도가 1988년에야 구축되었고 새로운 선별적 기초 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었다. 멕시코에서 지출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연금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피고용인의 약 35%)

지출은 또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인구학적으로 유리한 상황의 국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국가가 있는데, OECD 국가 중 인구학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 젊은 국가인 터키는 GDP의 7.1%를 공적연금에 지출한다. 이는 터키에 비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추세**

호주,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10개국의 1990~2015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은 꽤 안정적이었다.

2000~2015년 사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은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에서 4%p 이상 상승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서는 2~3%p의 증가를 보였다.

**총 지출과 순 지출**

표의 끝에서 두 번째 칼럼은 순 기준(급여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 제외)의 공적지출을 보여준다. 순 지출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북유럽 국가에서 총 지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금 급여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때문이다. 슬로바키아와 같이 연금이 과세 대상이 아닌 국가 또는 공적 급여가 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국가(호주, 체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에서는 총 지출과 순 지출이 비슷하다.

**비현금성 급여**

표의 마지막 칼럼은 비현금성 급여를 포함해 노인에 대한 총 공적지출의 합계를 보여준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비현금성 급여가 GDP의 2%를 초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급여다. 주택급여는 “비현금성 급여”로 정의하는데, 개인 별로 특정 지출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이다. 호주,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도 비현금성 급여에 대해 높은 지출을 기록한다.

표 8.3. 노령 및 유족급여에 대한 공적지출

	수준 (총 정부지출 대비 비율)		수준(GDP 대비 비율)					수준 증감 2000~2015	순 기간 수준 (GDP 대비 비율) 2015	비현금성 포함 합계 (GDP 대비 비율) 2015
	2000	2015	1990	2000	2005	2010	2015			
호주	11.4	11.4	3.1	4.7	3.7	3.8	4.3	-0.4	4.3	5.3
오스트리아	23.3	26.1	11.3	11.9	11.9	13.0	13.3	1.4	10.9	13.9
벨기에	17.8	19.9	8.9	8.8	8.9	9.8	10.7	2.0	9.3	11.0
캐나다	10.1	11.5	4.2	4.2	4.0	4.3	4.7	0.5	4.4	4.7
칠레			8.0	5.0	3.7	3.4	2.9	-2.1	2.9	2.9
체코	16.8	19.4	5.6	6.9	6.7	8.1	8.1	1.2	8.1	8.3
덴마크	12.0	14.8	6.1	6.3	6.5	7.2	8.1	1.8	5.9	10.2
에스토니아	16.5	17.4		6.0	5.3	7.6	7.0	1.0	6.9	7.1
핀란드	15.5	20.0	7.2	7.4	8.1	9.8	11.4	4.0	9.2	13.0
프랑스	22.2	24.4	10.4	11.4	12.0	13.2	13.9	2.5	12.5	14.3
독일	24.2	23.1	9.5	10.8	11.1	10.6	10.1	-0.7	9.7	10.1
그리스	21.9	31.3	9.5	10.2	11.4	14.2	16.9	6.7	15.7	16.9
헝가리	15.8	18.4		7.4	8.3	9.6	9.2	1.8	9.2	9.7
아이슬란드	5.1	4.9	2.2	2.1	1.9	1.6	2.1	0.0	1.8	2.5
아일랜드	9.5	12.4	4.8	2.9	3.2	4.9	3.6	0.7	3.5	3.9
이스라엘	9.4	12.0		4.5	4.7	4.8	4.8	0.3	4.8	5.4
이탈리아	28.9	32.2	11.4	13.5	13.7	15.4	16.2	2.7	13.2	16.2
일본		23.9	4.7	7.0	8.1	9.6	9.4	2.4	8.9	11.1
한국	5.4	9.0	0.7	1.3	1.5	2.1	2.9	1.6	2.9	3.0
라트비아	23.2	18.4		8.7	5.5	9.3	7.0	-1.6	6.7	7.4
리투아니아	17.9	19.2		7.1	5.7	7.7	6.7	-0.4		6.9
룩셈부르크	18.8	20.1	7.8	7.1	7.8	8.0	8.4	1.2	7.1	8.4
멕시코		7.9	0.4	0.8	1.0	1.6	2.2	1.5	2.2	2.2
네덜란드	11.2	12.0	6.3	4.7	4.7	5.0	5.4	0.7	4.9	6.2
뉴질랜드	13.0	12.7	7.2	4.8	4.2	4.6	4.9	0.1	4.2	4.9
노르웨이	11.2	13.5	5.5	4.7	4.8	5.2	6.6	1.9	5.3	8.8
폴란드	24.9	26.4	5.0	10.5	11.3	11.1	11.1	0.7	9.6	11.2
포르투갈	18.3	27.7	4.8	7.8	10.0	12.0	13.3	5.5	13.3	13.4
슬로바키아	12.0	16.2		6.3	6.0	6.8	7.3	1.1	7.3	7.6
슬로베니아	22.4	23.3		10.3	9.7	11.0	11.1	0.8	11.1	11.3
스페인	21.5	25.2	7.7	8.4	7.9	9.1	11.0	2.6	10.5	11.6
스웨덴	12.9	14.4	7.3	6.9	7.2	7.3	7.2	0.3	5.5	9.4
스위스	17.8	19.1	5.1	6.0	6.2	6.1	6.5	0.5	5.1	6.8
터키		21.4	0.7	1.8	6.0	7.4	7.1	5.3	7.1	7.1
영국	13.4	14.8	4.5	4.8	5.0	6.3	6.2	1.4	5.9	6.6
미국	16.7	18.7	5.8	5.6	5.7	6.6	7.1	1.4	6.5	7.1
OECD	16.3	18.4	6.3	6.6	6.8	7.7	8.0	1.4	7.3	8.5

주: 자료, 출처, 방법론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dema, W. and M. Ladaï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92,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참조.

출처: OECD 사회적 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OECD 주요 경제지표 데이터베이스(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314>

###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의 지출액은 2015년 평균 GDP의 1.5%였다.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를 포함해 전체 지출의 약 1/5 수준으로, 1990년에는 GDP의 0.7%, 2005년에는 1.2%였던 수치에서 상승했다.

사적연금이 강제적 제도로 운영되거나 노사 협약을 통해 거의 보편적인 가입률(“준강제적”)을 달성한 국가는 36개 OECD 회원국 중 절반 미만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이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높다.

사적연금액의 지출이 가장 큰 곳은 네덜란드로 2015년에 GDP의 5.8%였다. 공적지출을 추가한 총 급여액은 GDP의 11.2%이다. 미국은 사적연금 급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국가로 GDP의 5.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스위스가 GDP의 5.1%를 차지한다. 스위스의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적 제도인데, 사적연금 급여 자료에는 법정 최저 수준을 초과하는 자발적 제도의 급여가 포함된다. 네 번째는 영국으로, 강제적 제도와 자발적 제도를 합하면 5.0%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4개국 이 GDP의 2.9~4.7%를 사적연금 지급에 사용한다. 일본(사적연금이 자발적 제도임) 역시 사적연금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아서, GDP의 2.8%를 차지한다. 아이슬란드는 총 연금지출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6%로 가장 높다.

호주,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1990년대에 강제적 사적연금을 도입하였다. 일부 경우(특히 중부, 동부 유럽) 주로 젊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가입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연금 수급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제도를 변경하기도 했다. 강제적 사적제도는 폴란드에서는 폐지되었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자발적 제도가 되었다. 호주와 스웨덴에서 사적 급여 지급액의 상당수는 사적연금이 강제적 제도가 되기 전에 시행중이었던 자발적 및 준강제적 제도와 각각 관련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모든 퇴직자가 강제적 사적연금 제도에서 완전경력을 채우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 추세

2000~2015년 사이 GDP 대비 연금지출이 1%p 이상 초과한 국가는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이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출발점이 GDP의 0.5% 이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퇴직연금이 1985년에 의무화되면서 가입률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이후 세대의 퇴직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적 연금의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적연금 수급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OECD 전반적으로 1990년 사적연금이 총 연금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3%였으며, 이 수치는 2000년 20%까지 증가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세계 혜택

많은 OECD 국가들이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 저축에 대해 유리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수익도 전부 또는 일부 면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는 연금 지급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제5장 “연금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과세” 참조)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유인의 비용을 1960년대 개발된 “세금지출(tax expenditures)” 개념으로 측정한다. 기준 세제 대비 세제 혜택의 가치를 계량화하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세금 유인의 결과로 포기하게 되는 수입액을 나타낸다.

퇴직저축에 대한 세금지출 자료는 23개 OECD 회원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절반에 못 미치는 국가에서는 세금지출이 GDP의 0.2% 이하다.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 7개국만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지출을 보고하고 있다.

세금지출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선택된 기준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명칭은 세금지출이지만 직접 지출과는 다르므로 공적 연금지출에 대한 수치에 이 수치를 부가해서는 안 된다.

### 참고문헌

Adema, W. and M. Ladaï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20615515052>.


OECD (2010),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076907en>.

표 8.4. 사적 연금급여액 지출

제도 유형	수준(GDP 대비 비율)					수준 증감 2000~2015	공적 및 사적 급여지출 (GDP 대비 비율) 2015	세제 혜택 (GDP 대비 비율) 2015	
	1990	2000	2005	2010	2015				
호주	m	0.0	2.9	1.9	3.4	4.7	1.8	9.0	1.7
오스트리아	v	0.4	0.6	0.5	0.6	0.7	0.1	14.0	0.0
벨기에	v	1.0	1.3	1.5	1.1	1.1	-0.2	11.8	0.2
캐나다	v	2.5	3.9	4.2	3.4	3.1	-0.8	7.8	1.9
칠레	m	0.3	1.1	1.2	1.3	1.4	0.4	4.3	0.4
체코	v	0.0	0.2	0.2	0.4	0.3	0.1	8.4	
덴마크	q/m	0.0	0.0	0.0	2.0	2.6	2.6	11.5	
	v	1.6	2.4	2.5	1.2	0.8	-1.7		
에스토니아								7.0	0.7
핀란드	v	0.1	0.3	0.2	0.2	0.2	0.0	11.6	0.1
프랑스	m	0.2	0.2	0.2	0.0	0.0	-0.1	14.1	0.1
	v	0.1	0.1	0.1	0.2	0.1	0.0		
독일	v	0.7	0.7	0.7	0.8	0.8	0.1	10.9	1.0
그리스	v	0.3	0.0	0.1	0.1	0.1	0.0	16.9	
헝가리								9.2	0.0
아이슬란드	m	1.4	2.3	2.8	3.4	4.0	1.7	6.1	0.9
아일랜드	v	0.9	1.0	1.5	1.8	1.1	0.1	4.7	1.0
이스라엘	v	0.0	0.7	1.5	1.3	1.3	0.5	6.1	1.2
이탈리아	v	1.1	1.1	1.1	1.3	1.2	0.1	17.4	0.0
일본	m	0.2	0.4	0.4	0.6	0.5	0.0	12.1	
	v	0.0	2.8	2.1	2.6	2.3	-0.5		
한국	v	0.2	0.6	0.4	0.4	0.8	0.2	3.7	
라트비아								7.0	0.1
리투아니아								6.7	
룩셈부르크								8.4	
멕시코								2.2	0.2
네덜란드	q	3.6	4.6	4.9	5.5	5.8	1.2	11.2	
뉴질랜드								4.9	
노르웨이	v/m	0.6	0.6	0.6	0.6	1.0	0.4	7.6	0.2
폴란드								11.1	
포르투갈	v	0.3	0.2	0.3	0.2	0.7	0.5	14.0	0.0
슬로바키아	v	0.0	0.2	0.4	0.3	0.4	0.2	7.7	
슬로베니아								11.1	0.3
스페인	v	0.0	0.0	0.0	0.5	0.4	0.4	11.5	0.2
스웨덴	q/m	1.2	1.7	1.9	2.3	2.9	1.3	10.1	
스위스	m	2.2	4.0	4.5	4.7	5.1	1.1	11.5	1.2
터키								7.1	
영국	m	0.1	0.4	0.5	0.6	0.7	0.4	11.2	1.2
미국	v	2.6	3.6	3.6	4.4	5.2	1.6	12.3	0.8
OECD		0.7	1.2	1.2	1.4	1.5	0.3	9.5	0.6

주: m = 강제적 사적제도, q = 준강제적, v = 자발적, 빈 칸은 값이 없음을 나타냄.

출처: OECD 사회적 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OECD 주요 경제지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출처,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dema and Ladaïque (2009)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333>

**주요 결과**

공적 연금지출은 표 8.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수십 년간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해왔다. 장기적 전망을 보면 연금지출은 OECD 21개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15개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연금지출은 2015~2016년 GDP의 8.8%에서 2050년 GDP의 9.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지출 증가의 주요 이유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표 8.5에 나타나 있는 전망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8 고령화 보고서(EU 28개국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작성) 또는 Standard & Poor의 세계 고령화 2016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요 표에 나타난 자료는 수치를 입수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2060년까지의 전망이다. 그러나 OECD 11개국 및 기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추정 범위가 2050년이므로 표에서는 2050년까지에 대한 비교가 주로 이루어진다.

장기전망은 연금정책을 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데, 연금 개혁이 일어난 시기와 연금개혁이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 간의 시간적 격차가 대개 크기 때문이다. 국가별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추계에서 다루는 여러 제도들의 범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국가가 많은 반면 일부는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추계에서는 퇴직자를 위한 자원조사형 급여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료의 적용범위는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SOCX)와도 차이가 있는데, 앞의 두 지표에서 과거 지출 추이 자료는 바로 이 SOCX에서 발췌하였다. 2015~2016년 수치는 SOCX 데이터베이스와 여기서 사용된 출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 급여의 범위와 사용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연금 지출은 OECD 평균 GDP의 8.8%에서 2050년에 GDP의 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8개국에서는 연금 지출이 2020년 GDP의 10.0%에서 2045년 10.7%로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성과이다. 제6장의 “노인부양비” 지표는 현재부터 2050년까지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가 약 95% 상승할

것임을 보여준다. 미래 퇴직자에 대한 임금 대비 급여는 적어도 급여산식의 평가 및 연동 축소,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인하여 임금에 비해서는 삭감될 것이고,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가세를 축소시킬 것이다.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은 2050년까지 OECD 21개국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공적연금 지출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교 기준점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고령화 과정과 연금제도의 미성숙 상태를 반영한다. 2015~2016년 GDP의 10.9%로 OECD 평균을 넘었던 슬로베니아의 공적지출은 2050년에 GDP의 15.6%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치에 따르면,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6개국에서는 GDP의 2% 이상 공적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에스토니아, 스웨덴, 터키에서는 GDP의 1.5~2%, 그리스에서는 거의 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를 제외한 모든 주요 비OECD 국가에서 장기적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도는 GDP의 1%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는 낮은 가입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현재 GDP의 9%인 연금지출이 2050년에는 GDP의 17%에 이를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5년 2.7%에서 2050년 9.4%로 증가할 것이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8), “2018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6-2070)”, Vol.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Standard & Poor’s (2016), *Global Aging 2016: 58 Shades of Gray*, McGraw Hill Financial, [https://www.agefiactifs.com/sites/gefictifs.com/files/fichiers/2016/05/global\\_aging\\_2016\\_\\_58\\_shades\\_of\\_gray\\_28\\_apr\\_16.pdf](https://www.agefiactifs.com/sites/gefictifs.com/files/fichiers/2016/05/global_aging_2016__58_shades_of_gray_28_apr_16.pdf)

표 8.5. 공적연금 지출 전망, 2015~2060년(GDP 대비 비율)

	2015~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호주	4.0							3.7		
오스트리아	13.8	13.9	14.0	14.4	15.0	14.9	14.6	14.6	14.7	14.7
벨기에	12.1	12.6	13.4	13.8	14.2	14.5	14.6	14.7	14.8	14.9
캐나다	5.5							6.9		
칠레	5.1							4.2		
체코	8.2	8.1	8.1	8.2	8.5	9.2	10.1	10.8	11.5	11.6
덴마크	10.0	9.3	8.8	8.6	8.4	8.2	7.9	7.8	7.6	7.5
에스토니아	8.1	7.8	7.3	7.2	7.1	7.1	7.1	7.1	7.1	6.9
핀란드	13.4	13.8	14.5	14.8	14.5	13.9	13.4	13.2	13.2	13.5
프랑스	15.0	15.0	15.3	15.4	15.3	15.1	14.4	13.8	13.1	12.5
독일	10.1	10.3	10.8	11.5	11.9	12.0	12.1	12.2	12.4	12.5
그리스	17.3	13.4	12.2	12.0	12.3	12.9	12.6	12.5	11.9	11.5
헝가리	9.7	9.0	8.7	8.4	8.6	9.4	10.3	10.6	10.8	11.1
아이슬란드	3.3							3.5		
아일랜드	5.0	5.1	5.5	5.8	6.3	6.7	7.1	7.4	7.5	7.2
이스라엘	5.3							6.2		
이탈리아	15.6	15.6	16.4	17.2	18.2	18.7	18.4	17.3	15.9	15.1
일본	10.2							9.5		
한국	2.6							6.3		
라트비아	7.4	6.8	6.2	6.2	6.3	6.3	6.1	6.1	6.1	5.6
리투아니아	6.9	7.0	6.9	7.1	7.2	7.0	6.8	6.5	6.3	6.0
룩셈부르크	9.0	9.0	9.4	10.2	10.8	11.5	12.2	13.0	14.3	16.0
멕시코	1.8							3.0		
네덜란드	7.3	7.0	7.1	7.5	8.1	8.5	8.4	8.2	8.0	7.9
뉴질랜드	4.7							7.2		
노르웨이	10.7	11.0	11.5	11.7	11.9	11.9	11.9	12.0	12.2	12.5
폴란드	11.2	11.1	11.2	11.0	10.8	10.8	11.0	11.2	11.3	11.1
포르투갈	13.5	13.6	13.9	14.3	14.7	14.7	14.5	13.7	12.8	12.0
슬로바키아	8.6	8.3	7.8	7.6	7.6	7.8	8.3	8.8	9.4	9.9
슬로베니아	10.9	11.0	11.1	12.0	13.1	14.2	15.1	15.6	15.6	15.2
스페인	12.2	12.3	12.4	12.6	13.2	13.9	14.4	13.9	12.6	11.4
스웨덴	8.2	7.6	7.4	7.2	7.0	6.8	6.6	6.6	6.8	7.0
스위스	9.8							10.7		
터키	7.2							5.6		
영국	7.7	7.7	8.0	8.0	8.4	8.6	8.3	8.3	8.6	8.9
미국	4.9							5.9		
<b>OECD</b>	<b>8.8</b>							<b>9.4</b>		
아르헨티나	7.8							10.4		
브라질	9.1							16.8		
중국	4.1							9.5		
인도	1.0							1.0		
인도네시아	0.8							1.2		
러시아	9.1							12.4		
사우디아라비아	2.7							9.4		
남아프리카공화국	2.2							3.3		
EU28	10.3	10.0	10.0	10.2	10.4	10.6	10.7	10.7	10.8	10.7

주: EU 28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중평균이 아닌 회원국들의 단순 평균임. 공무원 및 기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제도는 대개 EU 회원국의 경우는 산정값에 포함됨: EU 집행위원회(2018), 2018 고령화 보고서 참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8), 2018 Ageing Report; Standard & Poor's (2016), Global Aging 2016: 58 Shades of Gray: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hina, India, Indonesia, Israel, Japan, Korea, Mexico, New Zealand,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South Africa, Switzerland, Turkey and the United States; Standard & Poor's (2013), Global Aging 2013: Rising to the Challenge: Iceland.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352>





## 제 9 장

# 적립식 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기금

여기서는 적립식 및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에 관한 8개 지표를 제공한다. 첫 번째 지표는 적립식 사적연금에 가입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다. 두 번째 지표는 평균 임금 소득자 대비 법적 기여율과 가입자(또는 계정)가 납부하는 실제적 기여금을 보여준다.

세 번째 지표는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와 적립금의 자산을 살펴본다. 네 번째 지표는 이러한 자산의 투자 방식에 주목한다. 그 다음에는 이 지표를 통해 2018년의, 또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지표는 국가별 연금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일곱 번째 지표는 선별된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살펴본다. 마지막 지표는 확정급여형 적립 비율에 초점을 맞추며, 이에 대한 2008~2018년 동안의 비율을 제시한다.

**주요 결과**

2018년에는 여러 OECD 회원국이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제도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에 대하여 거의 보편적인 가입률을 달성했다. OECD 10개국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퇴직 및 개인)에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해 있다. 자동가입제도가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제도를 최근에 도입한 국가도 늘고 있다.(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2018년에는 OECD 36개국 가운데 17개국이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적립식 및 사적연금제도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고 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에서는 퇴직연금이 강제적이며 생산가능인구의 70% 이상이 이에 가입해 있다. 고용주는 연금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기여율은 정부에서 정한다. 다른 퇴직연금제도는 준강제적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주는 업계 또는 국가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피고용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만든다. 모든 업종에서 이러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제도는 강제적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다.(예: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들 국가에서의 가입률은 의무제도를 가진 국가의 가입률에 가깝다. 반면 터키에서는 연금제도 가입이 특정 피고용인(터키 군인을 위한 OYAK 제도 등)에게만 의무이므로, 강제적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강제적 개인계정 제도가 널리 이용되며 부분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칠레와 멕시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이러한 강제적 개인연금제도를 갖춘 OECD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프리미엄연금제도)이 있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웨덴에서는 거의 보편적 가입에 가깝지만, 멕시코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신규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서 수년 사이 가입률이 증가해 왔다. 비공식 고용이 늘어나면 가입률이 제한될 수 있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 제도가 자발적 제도라고 불리는 것은 고용주들이, 일부 국가에서는 피고용인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의 자발적 연금제도(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40% 이상이다. 한편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연금제도의 가입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이탈리아(2007년), 뉴질랜드(2007년), 터키(2017년), 영국(2012년) 4개국은 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퇴 옵션을 포함한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는 80%의 가입률을 달성했다. 뉴질랜드보다 늦게 자동가입 제도를 시작한 영국에서는 2018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46%의 고용주 지원의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이래 민간부문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Trattamento di Fine Rapporto, TFR)는 본인이 TFR 제도에 남겠다고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 연금제도로 이전된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은 TFR 제도 잔류를 선택했고, 현재 생산가능인구 중 10%만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태다. 터키는 여전히 자동등록 제도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18년 가입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규정을 통해 자동가입 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권장은 기업 차원에 그친다. 독일(2018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2019년) 등 다른 국가들도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연보상(deferred compensation)의 경우 민간 부문 피고용인 대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된다.

연금제도를 가진 개인의 비율은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기여금을 납부하는 개인의 비율보다 높을 수 있다.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가입된 제도의 수급권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8년 기준, 이전 달에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절반에 불과했던 칠레와 같은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에 가입한 개인과 기여하는 개인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의와 측정**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사적연금 방식(적립식 및 사내적립)과 적립식 공적연금 방식(예: 덴마크의 ATP)을 일컫는다.

OECD(2012)에서 다뤘듯 가입률 측정 방식은 다양하다. 여기에서 제안한 관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려면 개인은 제도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누적된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이 자발적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행정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입자 수를 중복해서 계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연금제도의 전체적 가입률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의 가입률을 합하여 얻을 수 없다.

**참고문헌**


OECD (2019), Inclusion and Finance.  
 OECD (2012), OECD Pensions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표 9.1. 선택된 OECD 및 기타 지역의 적립식 및 사적연금 가입률,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생산가능인구(15~4세) 중 비율

	강제적/준강제적	자동가입	자발적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호주	75.2	x	x	..	..
오스트리아	x	x	14.4	22.2	..
벨기에	x	x	50.6	..	..
캐나다	x	..	26.4	24.9	..
칠레	86.7	x	..	..	..
체코	x	x	x	64.1	64.1
덴마크	ATP: 85.2 / QMO: 63.4	x	..	18.0	18.0
에스토니아	85.8	x	x	11.2	11.2
핀란드	93.0	x	7.0	18.0	25.0
프랑스	x	x	25.2	7.8	..
독일	x	..	57.0	33.8	70.4
그리스	..	x	<5	..	..
헝가리	x	x	..	18.7	..
아이슬란드	87.7	x	x	45.2	45.2
아일랜드	x	x	38.3	12.6	46.7
이스라엘	78.2	x	..	..	..
이탈리아	x	..	10.1	12.3	20.6
일본	..	x	50.5	14.7	54.3
한국	16.9	x	x	..	..
라트비아	~100	x	1.0	19.0	..
리투아니아	x	x	x	75.5	75.5
룩셈부르크	x	x	4.9	..	..
멕시코	65.4	x	1.9	..	..
네덜란드	88.0	x	x	28.3	28.3
뉴질랜드	x	80.2	6.8	..	..
노르웨이	57.9	x	..	23.1	..
폴란드	x	x	1.8	66.4	..
포르투갈	x	x	3.8	<=17.2	17.2
슬로바키아	x	x	x	39.7	39.7
슬로베니아	x	x	..	..	40.1
스페인	x	x	..	..	26.1
스웨덴	PPS: ~100 / QMO: ~90	x	x	24.2	24.2
스위스	73.6	x	x	..	..
터키	1.5	6.4	..	12.5	..
영국	x	46.0	..	5.0	..
미국	x	..	43.6	19.3	..
아르헨티나	..	..	..	..	..
브라질	x	x	1.9	10.7	..
중국	..	..	..	..	..
인도	..	..	..	..	..
인도네시아	..	x	0.4	1.6	..
러시아	78.7	x	..	..	4.7
사우디아라비아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

주: QMO = 준강제적 퇴직연금, PPS = 수익연금제도, “..” = 자료 없음, “x” = 해당 없음, “~” = 대략. 이 표의 주를 통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입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에 대해 제공한다.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적 제도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라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퇴직급여제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만, 노사 협의에 따라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대신 설정할 수 있다.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ABS Household Income and Wealth 2017-18(호주); FSMA Annual Report 2018(벨기에); Statistics Canada; ATP Annual Report 2018 and Danish Insurance Association(덴마크); DREES "Les retraités et les retraites - Edition 2019"(프랑스); Survey on Pension Provision 2015 of the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독일); Quarterly National Household Survey, Module on Pensions Q4 2015 (아일랜드);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일본); OECD Pensions Outlook 2012(네덜란드); Finance Norway; 2013 edition of the survey "Inquérito à Situação Financeira das Famílias (ISFF)"(포르투갈); Spanish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EFF) 2014 of the Bank of Spain; Statistics Sweden for voluntary personal plans; DWP's Family Resources Survey 2017/18(영국);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Statistics of Income Tax Stats(미국).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371>.

**주요 결과**

강제적 제도와 자동가입 제도의 기여율은 일반적으로 규정을 통해 지정된다.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의무 기여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의 의무 기여율은 급여의 10%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호주(고용주 한정 9.5%)나 칠레(피고용인 한정 10%)와 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기여율은 이보다 낮다. 피고용인이나 고용주가 다른 강제적 연금제도에 자발적으로 추가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가입 제도와 자동가입 제도의 (최소)기여율은 일반적으로 규정을 통해 지정된다. 기여금 납부의 책임은 피고용인(칠레 등)에게 부여될 수도, 고용주(호주, 노르웨이 등)에게 부여될 수도, 둘 모두(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스위스)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 기여금 납부의 의무가 특정 피고용인에 대해서만, 또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가령 호주의 고용주는 월 450 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피고용인에 대해서만 기여금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국가가 함께 기여(matching contributions, 뉴질랜드 등)나 보조금(멕시코의 사회할당제)을 통해 기여금을 보충하기도 한다.

고정된 의무 기여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아이슬란드는 최대 의무 기여율을 급여의 15.5%로 지정했다. 이 금액은 고용주가 11.5%, 피고용인이 4%로 나누어 부담한다. 의무 기여율이 급여의 10%를 상회하는 또 다른 국가로는 덴마크(단체협약을 통해 12~18% 내에서 지정)와 이스라엘이 있다. 스위스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여 크레딧은 연령대별로 다른데, 25~34세는 7%를 납부하며 55세 이상은 18%를 납부한다. 반면 가장 낮은 기여율을 가진 노르웨이에서는 고용주가 2%를 납입한다. 단,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기여분에 더하여 피고용인이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 기여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 경우(덴마크)도 있고,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부문에 따라 다른 경우(멕시코의 경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도 있다.

고용주나 피고용인이 의무 기여율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여력이 있어 자발적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제도(KiwiSaver plans)의 최소 기여율은 6%로,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입자는 급여의 4%, 6%(2019년 4월 이후), 8%, 10%(2019년 4월 이후) 중에서 보다 높은 개인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다. 피고용인 자본제도(PPK)를 2019년부터 자동가입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피고용인이 PPK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최소 기여율이 피고용인의 경우 2%, 고용주의 경우 1.5%로 정해져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최대 2.5%(고용주), 2%(피고용인)의 추가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피고용인은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고용주의 기여금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다.

자발적 연금제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의무 기여금이나 최소 기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개인 연금제도는 세제 혜택의 한도가 포함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규정을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기여율은 확정급여형(DB)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의 기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입자당 실질 연간 기여금(평균 연간 임금 대비)은 비교적 높은 기여율을 가진 강제적 연금제도(호주,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호주의 가입자당 평균 기여금(평균 임금의 14.8%)은 의무 기여율(소득의 9.5%)보다 높는데, 이는 피고용인의 자발적 기여 및 호주의 의무기여율인 9.5%에 더하여 고용주가 보충 납입하는 추가 기여금의 영향일 수 있다. 반면 칠레의 가입자당 평균 기여금(평균 임금의 5.8%)은 의무 기여율(소득의 10%)보다 낮는데, 이는 가입자의 불규칙한 기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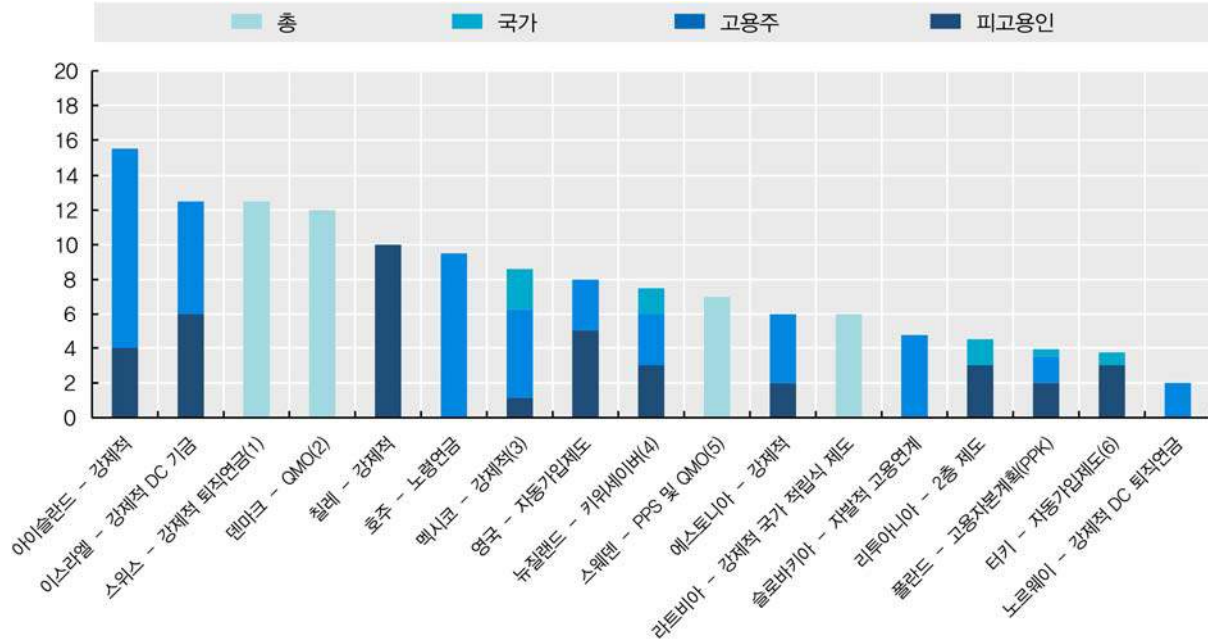
자발적 제도 중에서는 캐나다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가입자당(또는 제도당) 평균 기여금이 평균 급여의 10% 미만이었다.

**정의와 측정**

평균 실질 연간 기여금을 가입자당 금액이 아닌 계정당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제도나 여러 제도에 가입한 가입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PERCO 등)와 개인연금제도(PERP 등)를 가질 수 있는 프랑스가 여기 해당한다.

연금제도에 가입한 인구는 연간 평균 임금을 계산하거나 가입자당(또는 계정당) 평균 실질 연간 기여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인구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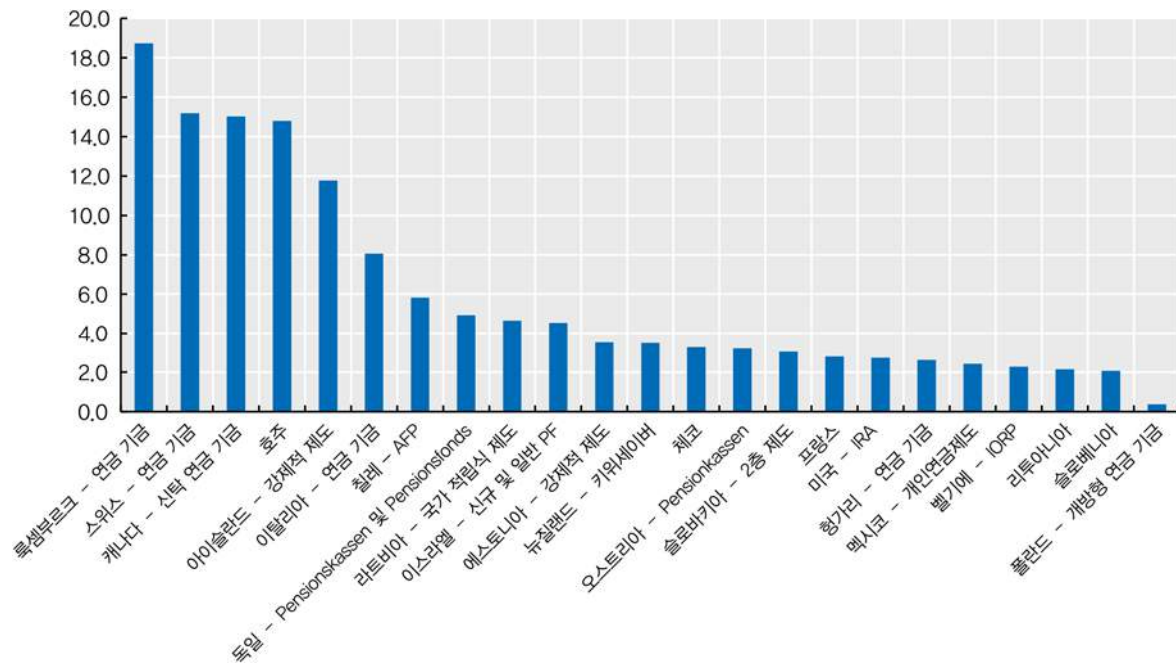
그림 9.1. 평균 소득자에 대한 최소 또는 의무 기여율  
소득 대비 비율



출처: ISSA 사회보장 국가별 현황(Social Security Country Profil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390>

그림 9.2. 선택된 OECD 국가의 활성 계정당 또는 가입자당 평균 연간 기여금,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연간 평균 임금 대비 비율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409>

**주요 결과**

세계적으로 상당량의 연금자산이 공급되고 있다. 2018년 OECD 국가에서 적립식 사적연금제도 자산의 가중평균은 GDP의 82.3% 수준이었다.(GDP를 가중치로 사용) OECD 17개국은 공적연금 지급을 위해 공적연금 적립금도 구축해 두었다. 이들 국가의 2018년 총 공적연금적립기금(PPRF) 자산은 평균적으로 GDP의 14%였다.

2018년 OECD 국가에서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자산은 42조 달러를 초과한다. 미국의 경우 27조 5천억 달러로 OECD 전체의 64.8%를 차지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최대의 연기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의 대규모 연기금 제도를 보유한 OECD 국가로는 2조 8천억 달러로 2018년 OECD 연기금 시장의 6.6%를 차지한 영국, 2조 5천억 달러로 5.9%를 차지한 캐나다, 1조 9천억 달러로 4.5%를 차지한 호주, 1조 5천억 달러로 3.6%를 차지한 네덜란드, 1조 4천억 달러로 3.3%를 차지한 일본 등이 있다.

각 국가의 GDP에 따르면 2018년 OECD 가중평균 GDP 대비 자산비율(asset-to-GDP ratio)은 82.3%였다. OECD 8개국은 GDP 대비 자산비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덴마크(198.6%), 네덜란드(173.3%), 아이슬란드(161.0%), 캐나다(155.2%), 스위스(142.4%), 호주(140.7%), 미국(134.4%), 영국(104.5%)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적연금을 운영했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을 제외하고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사적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GDP 대비 연금자산의 비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8개 OECD 국가는 100%보다는 낮지만 20%를 넘는 GDP 대비 자산 비율을 보였다. 20% 이하의 비율이 나타난 OECD 20개국에는 에스토니아 등 비교적 최근에 강제적 적립식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었다. 그리스는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자산비율이 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OECD 외 다른 국가에서도 연금 규모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금자산은 GDP 대비 95%였지만 인도는 1%(국민연금제도와 기여형 제도인 Atal Pension Yojana)였다.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대개 부과식(pay-as-you-go)으로 재정이 충당되는데, 일부 사전적립(prefunding)도 발생한다. 공적연금 적립기금은 일부 공적연금제도의 향후 자원 마련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여 인구 고령화가 정부 예산에 가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말까지 PPRF 자산의 총 금액은 가용자료가 존재하는 17개 OECD 회원국에서 6조 달러 수준이었다. 가장 대규모의 적립금은 2조 9천억 달러로 미 사회보장 신탁기금(US social security trust fund)이 보유하고 있는데,

총 OECD 자산의 48.7%를 차지한다. 다만 이 자산은 미 재무부에서 사회보장신탁에 발행한 비거래 공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큰 일본의 정부연금투자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OECD 전체의 24.5%를 차지한다.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캐나다, 스웨덴이 대규모의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각 OECD 전체의 9.5%, 7.8%, 2.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경제 대비 총 자산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PPRF 자산이 2018년 OECD 지역에서 GDP의 14.2%를 차지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DP의 34.2%를 적립한 한국의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이다. 그 외에 비율이 상당했던 국가는 30.8%의 룩셈부르크, 29.4%의 스웨덴, 28.8%의 일본이었다. 호주, 칠레, 폴란드의 PPRF는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었으며(2001~2006년), 이는 지금까지 적립된 자산의 수준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풀은 향후 수년간 계속 확대될 수 있지만,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축액을 인출해 왔다. 벨기에에는 2017년 자국 PPRF(Zilverfonds)를 폐지했다. 2014년 아일랜드 전략투자펀드(Ireland Strategic Investment Fund)로 전환된 아일랜드의 국가연금적립기금(Irish National Pension Reserve Fund)은 더 이상 PPRF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현재 아일랜드의 연금적립기금 의무가 부과식(pay-as-you-go) 연금제도의 자원 마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의와 측정**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사적연금 방식(적립금 및 사내적립)과 적립식 공적연금 방식(예: 덴마크의 ATP)을 일컫는다.

사적연금제도는 일반 정부 이외의 기관이 관리하는 연금제도이다. 사적연금제도는 제도 스폰서, 사적연금기금 또는 민간부문 제공자로서 역할하는 민간부문 고용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적립식 공적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연금제도이다.

PPRF는 공적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 보장 기관이 만든 적립금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적립기금의 자산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에 부속된다.

표 9.2. OECD 국가 및 기타 주요 국가의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와 공적연금 적립기금의 자산,  
2018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액수(USD 백만)

	적립식 및 사적연금제도		공적연금 적립기금	
	(GDP 대비 비율)	USD(백만)	(GDP 대비 비율)	USD(백만)
호주	140.7	1 921 756	7.7	103 771
오스트리아	5.5	24 533	x	x
벨기에	10.9	56 038	x	x
캐나다	155.2	2 524 309	28.4	472 278
칠레	70.2	193 110	5.1	14 138
체코	9.2	21 754	x	x
덴마크	198.6	677 088	x	x
에스토니아	16.9	4 978	x	x
핀란드	57.2	151 947	28.4	75 551
프랑스	10.4	280 678	2.5	67 899
독일	6.9	267 557	1.0	40 096
그리스	0.7	1 584	x	x
헝가리	5.3	7 968	x	x
아이슬란드	161.0	38 796	x	x
아일랜드	33.9	125 746	x	x
이스라엘	57.4	203 224	x	x
이탈리아	9.8	197 817	x	x
일본	28.3	1 400 143	28.8	1 478 578
한국	28.5	455 985	34.2	573 155
라트비아	13.8	4 660	x	x
리투아니아	7.2	3 739	x	x
룩셈부르크	2.7	1 853	30.8	20 762
멕시코	16.2	194 031	0.1	1 552
네덜란드	173.3	1 536 269	x	x
뉴질랜드	27.4	54 481	13.2	26 196
노르웨이	9.8	40 013	7.3	29 258
폴란드	8.5	47 987	2.0	11 145
포르투갈	19.3	44 543	8.1	18 911
슬로바키아	11.7	12 038	x	x
슬로베니아	6.8	3 595	x	x
스페인	12.5	173 285	0.4	5 725
스웨덴	88.0	470 566	29.4	157 359
스위스	142.4	997 422	x	x
터키	2.5	17 541	x	x
영국	104.5	2 809 112	x	x
미국	134.4	27 549 363	14.3	2 939 300
<b>OECD</b>	<b>단순: 49.7 가중: 82.3</b>	<b>총: 42 515 512</b>	<b>단순: 14.2 가중: 14.3</b>	<b>총: 6 035 674</b>
아르헨티나	..	..	11.3	43 834
브라질	25.5	449 315	x	x
중국	1.7	215 526	3.3	437 900
인도	1.0	23 472	..	..
인도네시아	1.8	18 029	..	..
러시아	5.5	81 456	x	x
사우디아라비아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95.1	302 975	x	x

주: “..”는 자료 없음, “x”는 해당 없음, “단순”은 단순평균, “가중”은 가중평균을 의미함. “OECD”는 총 자산을 백만 미국 달러로 표시하고 자산의 단순 및 가중평균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가중치를 확립하기 위해 GDP를 사용해 미국 달러로 표시)로 표시함.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공적연금 적립기금 연간 조사(Annual Survey of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및 기타 자료.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428>

### 주요 결과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년도 기준으로 적립식 및 사적연금제도와 공적연금 적립기금에 누적된 자산은 대부분 전통적인 자산군(주로 채권과 주식)에 투자되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18년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자산이 투자되는 주요 자산군은 여전히 주식과 채권이었다. 두 자산군은 36개 OECD 회원국 중 32개 국가와 자료가 있는 5개 비OECD G20 국가에서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친 비율(포트폴리오 규모 대비)은 칠레(99.4%), 에스토니아(96.7%), 멕시코(96.3%)에서 가장 높았다.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연금자산의 투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스웨덴(자산의 63.4%를 투자), 영국(26.6% 투자)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집합적 투자기구의 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주식 및 채권 투자(가령 스웨덴 30%, 영국 39.2%)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국가들에서는 확정금리부 증권과 주식에 대한 연금자산의 전반적 노출이 높았을 것이다.

2018년 기준 국가별로 주식과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권보다 주식의 비중이 높은 6개 OECD 국가(호주의 경우 주식이 43.7%, 채권이 14.6%)와 남아프리카공화국(주식이 37.2%, 채권이 16.2%)에서는 반대였다.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가 아닌 국공채가 총 직접 채권 보유분(즉 집합적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는 채권 투자의 96.9%가 국공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비중은 체코에서도 87.6%에 달했으나 노르웨이에서는 24.8%, 뉴질랜드는 10.5%에 불과했다.

일부 OECD 국가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현금과 예금 역시 연금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가령 연금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코의 경우 19.7%, 인도네시아에서 27.5%, 프랑스(PERCO 제도)에서 34.5%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에서 대출과 부동산(토지와 건물), 무배당 보험계약, 사적투자펀드(차트에서 “기타”로 표시)는 연금자산 투자 중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핀란드에서는 부동산(직접적, 혹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이 연금포트폴리오 중 상당한 비중(전체 자산의 10~15% 범위)을

차지하고 있다.

고정금리부 채권과 주식은 2017년 말 PPRF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지배적인 자산군이였다. 일부 적립기금은 주식에 크게 치우쳐 있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의 장기적 투자 전망과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17년, 노르웨이의 정부 연기금은 자산의 60.9%를 주식에, 35.6%를 채권에 투자했으며 스웨덴의 AP 펀드는 평균 약 46%를 주식에, 33%를 채권(AP1, AP2, AP3, AP4 펀드)에 투자했다. 퀘벡 연기금은 주식에 47.2%, 채권에 20.3%를 투자했다. 일본의 GPIF는 최근 고정금리부 채권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렸고, 2016년 말 기준 자산의 46.9%(고정금리부 채권의 경우 46.6%)가 상장 증권에 배분되어 있었다. 한편 칠레, 포르투갈, 폴란드의 적립기금은 2017년에 주식보다 채권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였다.

극단적인 경우는 미국의 PPRF 중 하나인데, 법적으로 정부 채권에 전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PPRF는 2017년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비전통적 자산군과 부동산에 투자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 중에는 멕시코(총 39.7%)와 호주(23.6%)에 있는 기금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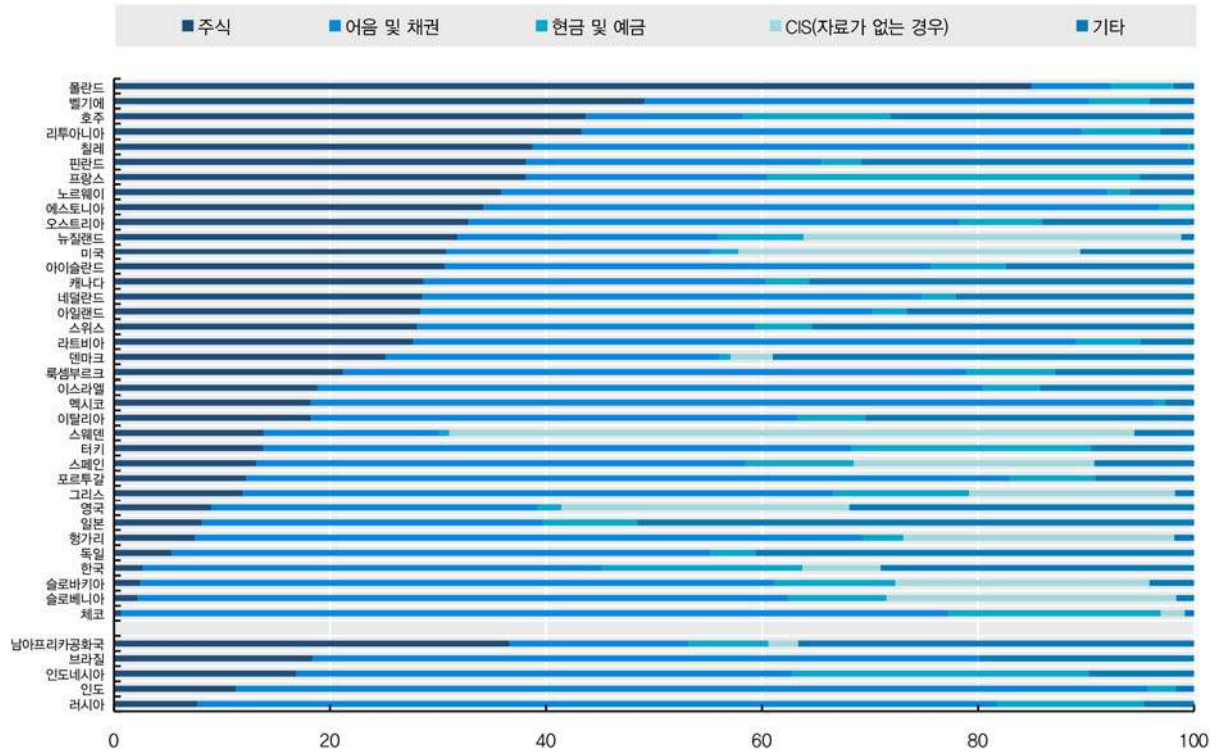
### 정의와 측정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사적연금 방식(적립금 및 사내적립)과 적립식 공적연금 방식(예: 덴마크의 ATP)을 일컫는다.

자산 배분 자료는 가능한 경우 주식, 어음, 채권, 현금, 예금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집합적 투자기구(CIS)를 통한 간접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는 CIS의 투자 관련 자료 및 이에 대한 주식, 어음, 채권, 현금 및 예금 등의 투자 자료를 수집한다. 국가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식, 어음, 채권, 현금 및 예금의 직접적 투자만 파악하여 표시했다. CIS 투자는 별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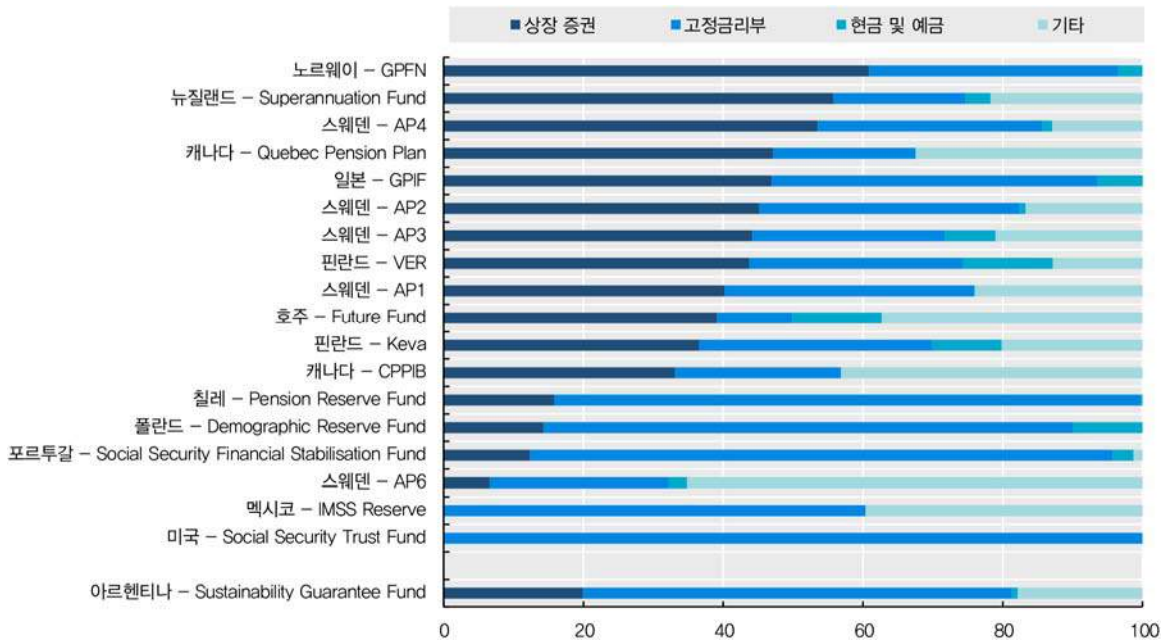
그림 9.3. 선택된 자산군 및 투자 수단의 적립식 사적연금 자산 배분, 2018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447>

그림 9.4. 선택된 국가의 공적연금 적립기금 자산 배분, 2017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공적연금 적립기금 연간 조사.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466>

**주요 결과**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실질 투자수익률(투자비용 제외)은 2018년 기준 OECD 평균 -3.2%였다. OECD 31개국 가운데 26개 국가에서 연금제도는 투자 손실을 보았으며, 가장 손실이 큰 곳은 폴란드(-11.1%)와 터키(-9.4%)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난 15년에 걸친 연금제도의 투자 성과는 18개 대상 국가 중 15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는 데 성공했으며, 평균 연간수익 성과가 가장 좋은 캐나다는 4.8%, 그 뒤를 이어 호주가 4.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14개 공적연금 적립기금(PPRF) 가운데 6개 기금의 실질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모든 대상 공적연금 적립기금은 장기적으로 흑자를 보았다.

여러 대상 국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립식 사적연금 제도의 재정적 성과가 가장 좋지 않았던 해는 2018년이었다.

실질 투자수익률(투자비용 제외)은 2018년 기준 평균 -3.2%였다. OECD 31개국 가운데 26개 국가에서 연금제도는 투자 손실을 보았다. 비OECD G20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도 여기 포함된다. 2018년 가장 손실이 컸던 곳은 폴란드(-11.1%)와 터키(-9.4%)였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2018년에도 실질적 흑자를 보았다. 호주의 노령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은 5.6%라는 매우 높은 실질 투자수익률을 거두었으나, 이 수치는 역년이 아닌 회계년도(2017년 6월~2018년 6월)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질 순 투자수익률은 연금의 명목실적과 물가상승률의 합이므로, 낮은 수익률의 원인은 낮은 수익일 수도 있고 낮은 물가상승률일 수도 있다. OECD 회원국 중 적립식 사적연금 제도를 통해 명목상 흑자를 본 곳으로는 칠레(1.5%), 체코(0.4%), 이스라엘(0.6%), 터키(9.0%)가 있으나 모두 물가상승률(칠레는 2.6%, 체코는 2.0%, 이스라엘은 0.8%, 터키는 20.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에 연금제도의 재정적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것은 2018년 마지막 분기의 주식 시장 침체가 원인일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여러 주요 주식 지수가 급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S&P 500 등)

퇴직저축은 그 장기적 특성상 수익도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자료 가용 국가에서 지난 5년, 10년, 15년에 걸친 평균 연간 수익은 명목상 흑자였으며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절한 후에도 흑자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연금제도의 평균 연간 수익은 계산이 가능한 18개 국가 중 15개국에서 흑자였다.

캐나다는 OECD 회원국 중 연간 수익이 4.8%로 가장 높았고, 호주가 4.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체코의 적립식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연간 평균 수익률은 0%에 가까웠으며, 에스토니아(-0.7%)와 라트비아(-1.0%)는 실질적으로 소폭 마이너스였다.

2018년 PPRF는 적립식 사적연금제도보다 다소 나은 성과를 냈다. 자료 가용 PPRF에서 순 투자수익률은 실질적으로 1.9%로 나타났다. 2018년 성과가 가장 좋았던 것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8%의 실질수익률을 낸 뉴질랜드의 노령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이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스웨덴의 AP 기금은 2018년 실질적 적자로 돌아섰고, 룩셈부르크의 적립기금과 핀란드의 VER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5년, 10년, 15년에 걸친 장기적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가용 자료가 있는 모든 적립기금의 연간 투자수익은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흑자였다.

**정의와 측정**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사적연금 방식(적립금 및 사내적립)과 적립식 공적연금 방식(예: 덴마크의 ATP)을 일컫는다.

실질(물가상승률 감안 후) 수익률은 투자관리비용차감 후 현지 통화로 산정된다.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평균 명목 순 투자수익률은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각국의 산정방식을 사용해 명목상 수익률을 제공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공통 산식을 이용한 산정 값이다. 공통 산식은 연말 기준 순 투자수익과 연중 자산의 평균 수준 간의 비율에 해당한다.

PPRF의 경우 명목 수익률은 연간 보고서를 출처로 하거나 각자 사용하고 있는 산식과 방법론을 이용해 기금에서 직접 제공하였다.

표 9.3. 2018년 및 지난 5, 10, 15년에 대한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명목 및 실질 평균 연간 투자수익률(%)

	명목				실질			
	2018	5년 연평균	10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2018	5년 연평균	10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호주	7.8	8.7	6.6	7.3	5.6	6.7	4.4	4.7
오스트리아	-5.3	2.7	3.8	3.1	-7.1	1.2	1.9	1.2
벨기에	-3.2	4.3	6.0	5.3	-5.4	2.8	4.1	3.3
캐나다	2.7	6.5	7.5	6.6	0.7	4.7	5.7	4.8
칠레	1.5	6.5	7.4	6.7	-1.0	3.1	4.7	3.3
체코	0.4	0.8	1.4	2.1	-1.6	-0.5	-0.1	0.0
덴마크	-0.5	4.9	5.9	5.8	-1.3	4.2	4.6	4.2
에스토니아	-2.3	2.3	4.2	2.6	-5.5	0.7	2.2	-0.7
핀란드	-1.5	4.5	..	..	-2.6	3.9	..	..
독일	1.9	3.5	3.9	4.0	0.4	2.5	2.7	2.5
그리스	-0.8	3.8	..	..	-1.4	4.1	..	..
헝가리	-1.7	5.0	..	..	-4.3	3.6	..	..
아이슬란드	5.6	6.4	7.2	7.6	1.8	4.2	3.7	2.7
아일랜드	-5.2	..	..	..	-5.9	..	..	..
이스라엘	0.6	4.1	7.1	..	-0.2	4.2	5.8	..
이탈리아	-1.7	2.2	3.2	3.2	-2.8	1.7	2.0	1.7
한국	3.3	3.6	4.1	4.0	2.0	2.3	2.2	1.7
라트비아	-4.4	1.5	3.6	2.8	-6.7	0.0	2.2	-1.0
리투아니아	-4.3	3.1	..	..	-6.0	1.7	..	..
룩셈부르크	-3.4	2.5	3.7	..	-5.2	1.5	2.0	..
멕시코	-0.3	4.2	6.4	..	-4.9	0.0	2.3	..
네덜란드	-1.2	6.1	7.7	6.1	-3.1	4.9	6.0	4.4
노르웨이	-0.1	4.9	6.2	5.9	-3.4	2.3	4.0	3.7
폴란드	-10.0	..	..	..	-11.1	..	..	..
포르투갈	-1.1	2.8	3.3	3.7	-1.8	2.2	2.2	2.2
슬로바키아	0.0	1.8	1.7	..	-2.0	1.1	0.4	..
슬로베니아	-0.5	5.0	5.1	..	-1.9	4.3	3.8	..
스페인	-3.1	2.2	3.4	..	-4.3	1.6	2.1	..
스위스	-3.0	3.1	4.2	3.3	-3.6	3.1	4.2	2.9
터키	9.0	9.1	9.1	..	-9.4	-2.1	-0.2	..
미국	-4.9	2.3	4.8	2.6	-6.7	0.8	3.0	0.5
브라질	5.9	..	..	..	2.1	..	..	..
인도네시아	3.8	9.5	..	..	0.6	5.0	..	..
러시아	2.8	6.4	..	..	-1.4	-0.7	..	..
남아프리카공화국	4.9	8.1	9.2	9.5	0.5	2.6	3.6	4.0

주: “..” = 자료 없음.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485>

표 9.4. 2018년 및 지난 5, 10, 15년에 대한 공적연금 적립기금의 명목 및 실질 연간 평균 투자수익률(%)

국가	공적연금 적립기금	명목				실질			
		2018	5년 연평균	10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2018	5년 연평균	10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호주	Future Fund	5.8	8.6	9.4	..	3.9	6.7	7.1	..
캐나다	CPPIB	8.9	11.2	10.1	8.2	7.2	9.4	8.3	6.4
캐나다	PSP Investments	7.1	..	..	..	5.4	..	..	..
캐나다	Quebec Pension Plan	4.2	9.1	..	..	2.2	7.3	..	..
칠레	Pension Reserve Fund	9.1	7.7	3.2	..	6.3	4.2	0.6	..
핀란드	VER	-3.4	4.4	..	..	-4.5	3.8	..	..
일본	GPIF	1.5	4.4	5.0	3.6	1.2	3.5	4.6	3.3
룩셈부르크	FDC	-2.3	4.2	4.5	..	-4.1	3.2	2.8	..
뉴질랜드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12.4	13.1	14.4	11.0	10.8	11.9	12.7	8.8
스웨덴	AP1	-0.7	7.2	8.6	..	-2.7	6.1	7.5	..
스웨덴	AP2	-1.3	6.9	8.9	..	-3.3	5.8	7.7	..
스웨덴	AP3	0.6	7.8	8.5	..	-1.4	6.7	7.4	..
스웨덴	AP4	-0.2	8.2	9.9	..	-2.2	7.0	8.7	..
스웨덴	AP6	9.6	9.4	7.8	..	7.4	8.3	6.7	..

주: “..” = 자료 없음.

출처: OECD 공적연금 적립기금 연간 조사, 연간 보고서.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504>

**주요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제도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 및 기타 지역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공존한다. 2018년 자산 기준으로 본 퇴직연금제도의 규모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했다. 덴마크, 프랑스 등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개인연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제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용을 통해 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개입 없이 직접 연금제도를 가입할 수 있다. 고용을 통해 가입하는 제도의 경우, 고용주가 혹은 고용인을 대리한 사회적 이해관계자가 수립했다면 이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로 간주한다. 제도 가입이 고용 관계와 관련이 없으며 고용주의 개입 없이 연금 제공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연기금 또는 재정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직접 수립한 경우 OECD 분류체계에서는 이를 개인연금제도로 분류한다.

OECD 국가 대부분에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공존한다. OECD 36개국 가운데 32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 제도를 모두 지닌다. 개인은 경력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통해 몇몇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제공기관과 직접 연계한 몇몇 개인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자산 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스위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이 전체 연금자산의 90%에 해당하지만, 적립식 제도가 주로 개인연금 제도에 기반하는 라트비아에서 이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연금급여액 산정 방식 및 위험 부담의 주체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는 가입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위험 대부분을 부담한다. 일부 국가의 고용주는 혼합형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일정 수준의 위험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급여 수준이 기금의 자금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잔액제도(cash balance plan, 또 다른 혼합형 확정급여형 제도)는 고정 기여율과 보장 수익률(고용주가 보장하므로 확정급여형으로 분류)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는 벨기에(법적으로 고용주가 최저 수익률 보장을 제공해야 함), 일본, 미국에서 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 한다. 혼합형 제도는 확정급여형(DB) 요소와 확정기여형(DC)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요소는 한 제도의 일부로 취급된다. 또한 덴마크처럼 보장된 급여액이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도 있다. 이들은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되는데 재원이

부족할 경우 고용주에게 상환 청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21개국 가운데 18개국 및 브라질에서는 자산의 50% 이상을 확정기여형(DC) 제도 또는 개인연금제도에 보유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와 개인연금제도는 미국과 같이 전통으로 확정급여형(DB) 자산이 높았던 국가에서조차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잠식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확정급여형(DB)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발생한 곳은 이스라엘(2008년 84%에서 2018년 56%)이었다. 이스라엘의 확정급여형(DB) 제도는 1995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았다. 이탈리아(1993년)를 비롯한 일부 다른 국가들도 특정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신규 가입을 막았다. 대신 신규 가입자에게는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는 선택권(이탈리아)이나 의무(이스라엘)가 주어졌다. 더욱 최근에는 아이슬란드가 2016년 말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개혁하기도 했다.

**정의와 측정**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사적연금 방식(적립금 및 사내적립)과 적립식 공적연금 방식(예: 덴마크의 ATP)을 일컫는다.

OECD는 연금제도를 분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였으며(OECD, 2005 참조), 본 분석 역시 이 지침에 기반한다.

퇴직연금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연기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연금보험계약의 역할이 큰 국가들이나 사내적립(고용주의 대차대조표를 뒷받침하는 적립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재정 확보 수단 중 하나가 되는 오스트리아, 독일은 제외된다. 개인연금 제도는 연금보험계약이나 은행 및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OECD, 2019)

**참고문헌**

OECD (2019), Pension Markets in Focus, <https://www.oecd.org/daf/fin/private-pensions/pensionmarketsinfocus.htm>  
 OECD (2005),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ECD, Paris. The OECD 분류는 [www.oecd.org/finance/private-pensions/38356329.pdf](http://www.oecd.org/finance/private-pensions/38356329.pdf) 참조.

표 9.5. OECD 분류체계에 따른 OECD 국가 연금제도의 유형, 2018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없음
개인연금 제도	있음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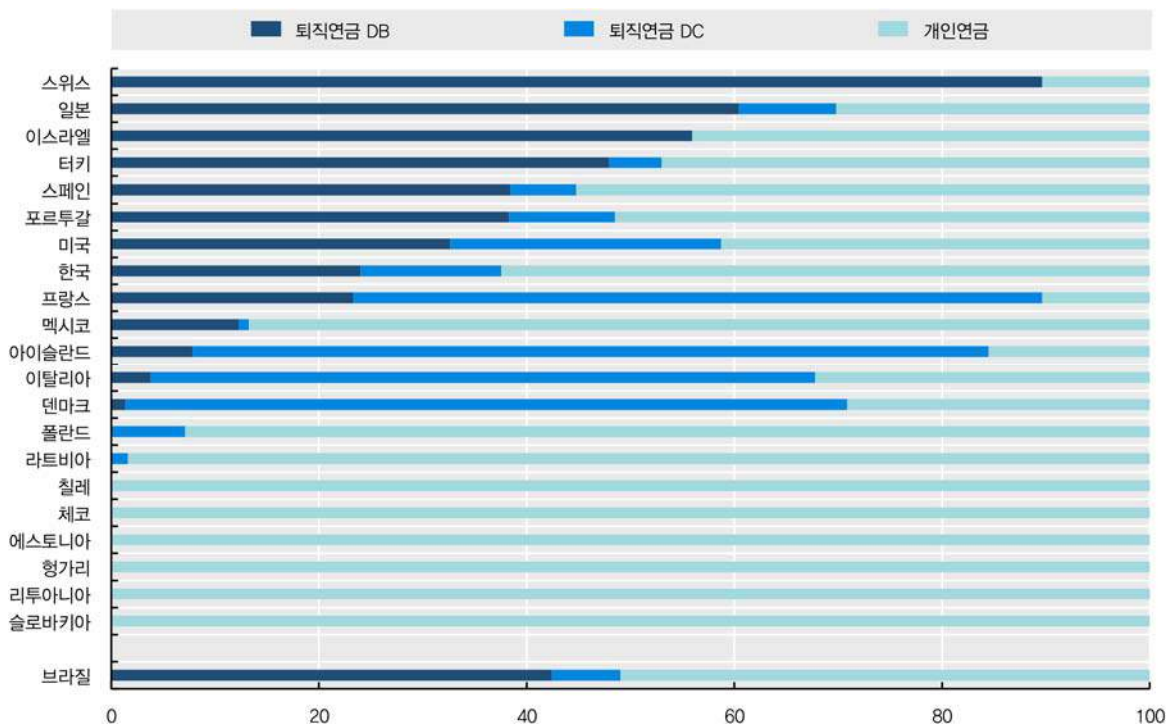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523>

그림 9.5. 연금제도 유형별 연금자산 분할, 2018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542>

주요 결과

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제도 운영 비용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자산비용’ 등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낮추려는 다양한 장치가 있다. 칠레와 뉴질랜드(다른 기준 포함) 등에서는 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매 제도를 가지고 있다. 2018년 기준 호주, 칠레, 이스라엘에서는 비용 구조에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0.5%의 가장 낮은 비용이 청구된다.

연금 제공사는 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제도 운영 비용이 부과된다. 운영비는 잠재적 가입자에 대한 상품 홍보, 기여금 징수, 투자 펀드 매니저에게 기여금 송부, 계정기록 보관, 가입자에게 보고서 송부, 자산의 투자, 계정잔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국가별로 연금 제공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한다. 직접적으로 기여금이나 소득(칠레 등)에 부과하거나, 자산(에스토니아, 스페인)에 부과하거나, 성과, 또는 여러 요인을 조합(체코연기금은 자산과 수익 모두에 비용을 부과함)하여 부과하기도 한다. 수수료에 더해 체코 등 일부 국가의 가입자에게는 가입 시 또는 연기금을 전환하거나 탈퇴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가 있는 20개 OECD 회원국 중 12개국은 연금 제공사가 부과할 수 있는 일부 비용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 12개국 대부분은 연금 제공사가 가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자산비용’에 상한선을 적용했다. 어떤 국가에서는 최근 상한선을 낮췄다.(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에스토니아의 경우 2019년 9월 2일부터 모든 연기금에 대하여 강제적 연금제도의 관리 비용 상한선이 1.2%로 내려갔다. 이전에는 컨저버티브 기금(conservative fund)에만 1.2%, 나머지 기금에는 2%의 상한선이 적용되었다. 스페인은 최근 보관 비용의 상한선을 낮췄고(0.25%에서 0.2%) 확정금리부펀드(1.5%에서 0.85%)와 주식형 펀드(1.5%에서 1.3%)의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내렸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낮추려는 다양한 장치가 있다. 칠레와 뉴질랜드(다른 기준 포함) 등에서는 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매 제도를 가지고 있다.

칠레에서는 연금 제공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경매로 결정한다. 낙찰되는 연금 제공사는 모든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비용을 포함한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기본 연금 제공사를 선택한다. 이 모두 요금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다.

2018년 말 기준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OECD 회원국에서 비용구조와 무관하게 관리 대상 자산의 금액 대비 가입자에게 가장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2017년 터키 2.0%, 스페인 1.1%다. 호주, 칠레, 이스라엘에서는 가입자에게 자산의 0.5%로 가장 낮은 비용이 청구된다.

정의와 측정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사적연금 방식(적립금 및 사내적립)과 적립식 공적연금 방식(예: 덴마크의 ATP)을 일컫는다.

일부 비용은 모든 경우에서 완전하게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 자료는 일부 국가에서 가입자가 지불하는 실제적 비용(투자 수익 감소로 지출되는 간접비용 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국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기금에서 관리비용을 직접 차감한다. 이러한 비용은 연기금 관리자가 연금 감독기관에 별도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IOPS (2018), 2018 Update on IOPS work on fees and charges, IOPS Working Papers on Effective Pensions Supervision, No.32

OECD (2018), OECD Pensions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표 9.6. 선택된 OECD 회원국의 비용 구조

	임금비용	기여금 비용	자산비용	수익률/실적 비용	기타 (탈퇴, 가입, 전환 비용 등)
호주(MySuper 제외)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칠레	상한선 없음	x	x	x	x
체코 - 변형 기금(transformed funds)	x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체코 - 참여기금(participation funds)	x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덴마크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에스토니아 - 강제적 제도	x	x	상한선 있음	x	상한선 있음
에스토니아 - 자발적 제도	x	x	상한선 없음	x	상한선 없음
아일랜드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이스라엘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x	x
이탈리아	x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가능하지만 드물	상한선 없음
한국 - 퇴직연금 DC	x	x	상한선 없음	x	x
라트비아 - 국가 적립식 제도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x
라트비아 - 자발적 연금	x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x
리투아니아 - 2층 연금	x	x	상한선 있음	x	상한선 있음
리투아니아 - 3층 연금	x	상한선 없음	상한선 있음	x	상한선 있음
멕시코	x	x	상한선 없음	x	x
폴란드 - 개방형 연금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x
폴란드 - PPK	x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없음
포르투갈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있음
슬로바키아 - 2층 연금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x
슬로바키아 - 3층 연금	x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스페인	x	x	상한선 있음	x	x
스웨덴 - 수익연금제도	x	x	상한선 있음	x	x
터키 - 자동가입제도	x	x	상한선 있음	상한선 있음	x
영국 - 기본 연금	x	x	상한선 있음	x	x
미국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주: "x" = 해당 종류의 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 내에서 허용되지 않음.

출처: OECD 연금제도 검토: 라트비아(Reviews of Pension Systems: Latvia) 및 OECD 국제 연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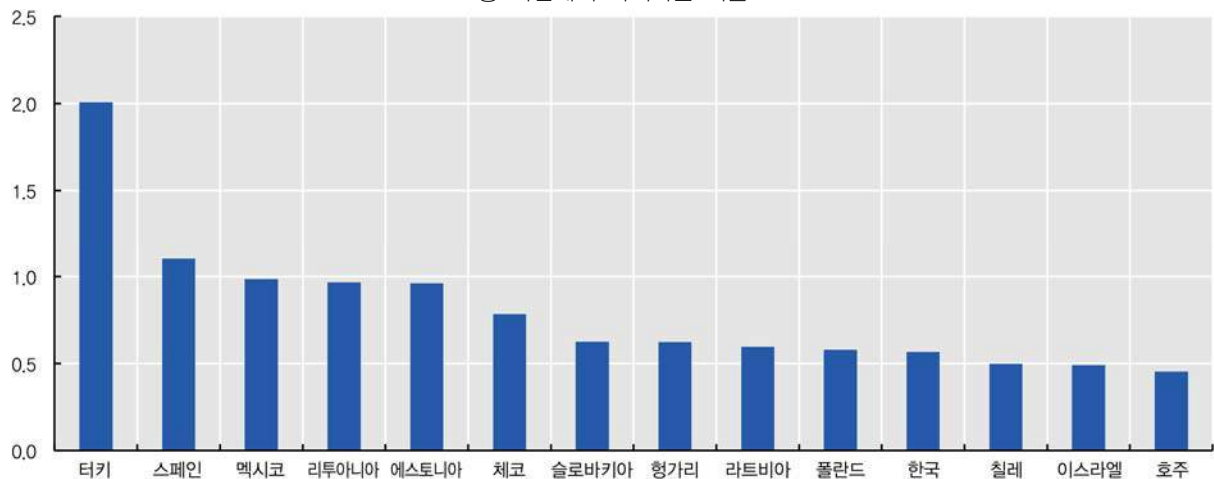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561>

그림 9.6.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비용 또는 수수료, 2018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년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580>

**주요 결과**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에서 가용 자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채를 측정하는 기금 적립률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별로 상이한 발전 양상을 보였다. 핀란드, 독일, 스위스에서는 확정급여형(DB) 제도의 기금 적립률은 개선되었으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악화되었다. 2018년 말 기준 확정급여형(DB) 제도 연기금의 기금 적립률은 인도네시아 및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영국, 미국, 총 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00%를 초과했다. 기금 적립률은 국가별 (규제적)부채 평가 방법론을 이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제공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하락하는 낮은 이자율에 맞서고 있다. OECD 연금자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확정급여형(DB)이거나 수익률이나 급여액을 보장하는 기타 제도로 구성된다. 이자율 저조 및 하락은 급여 약정 금액(일반적으로 장기 정부채권 총수익에 기초한 할인율에 따라 다름) 제공기관의 부채 가치를 증가시키고 축적된 자산 금액을 낮춘다. 이는 확정금리부 증권(장기 정부채권 포함)이 연금 제공 기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가용 자산으로 충당 가능한 총 부채액을 측정하는 기금 적립률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별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였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기금 적립률은 독일에서 2008년 105%에서 2018년 123%로 평균 18%p 상승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2008년 95%에서 2018년 105%로 11%p, 핀란드는 2011년 118%에서 2018년 125%로 6%p가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와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들 국가의 기금 적립률은 지난 10년 사이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경우 6%p부터 멕시코의 경우 17%p까지 하락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 자료가 가용한 첫 번째 해와 비교하여 2018년 기금 적립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5%p 이내)

2018년 말 기준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적립률은 인도네시아(96%)와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2%), 멕시코(67%), 영국(96%), 미국(58%), 총 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00%를 초과했다. 이들 5개 국가에서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자산은 연금 부채를 계산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기금 적립률은 국가별 (규제적)부채 평가 방법론을 이용해 산정

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고정 할인율을 사용하고 네덜란드는 시장 할인율을 사용한다. 독일에서 적립금 산정에 사용하는 최대 할인율은 0.9%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Pensionskassen과 Pensionsfonds의 할인율은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다. 네덜란드의 연기금은 부채 가치 측정에 UFR(Ultimate Forward Rate)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UFR은 아주 긴 연금 부채 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측 가능한 기간구조를 바탕으로 외삽법을 사용한다. 미래의 급여액 지급 흐름을 현재 기준에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금 적립률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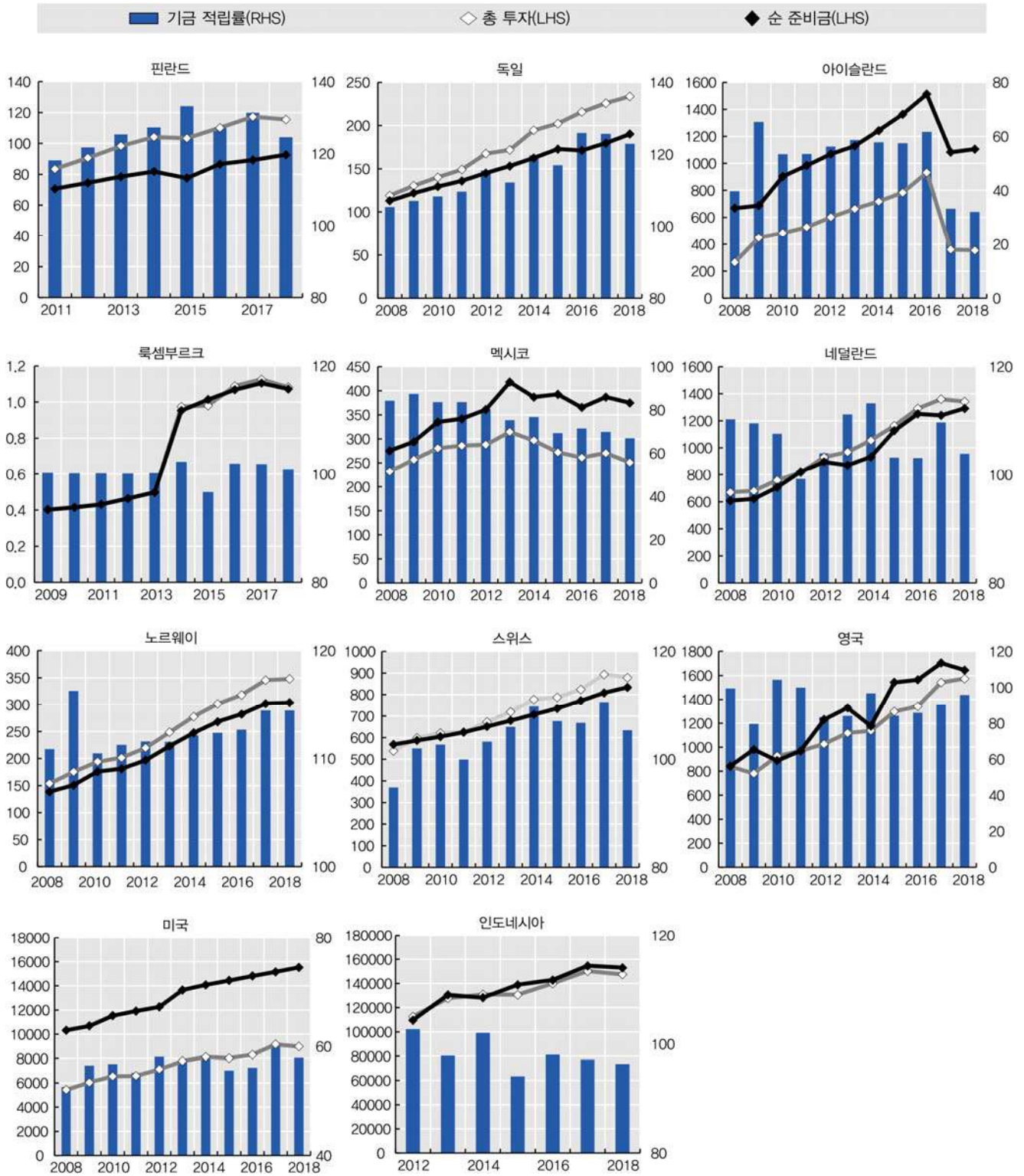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

본 출판물에서 확정급여형(DB) 제도의 기금적립률 투자액과 책임준비금(재보험 제외)의 비율로 평가한다. 확정급여형(DB) 제도 투자액의 경우, 자금 부족액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수금과 연금제도 스폰서에 대한 청구액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자산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준비금은 연금 가입자가 수급할 권리를 지니는 급여액의 계리적 가치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나타낸다. 모든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이 준비금은 최소 의무(부채)에 해당한다.

부채는 국가별 방법론을 사용해 산정된다. 방법론은 사용되는 공식, 할인율(예: 시장 할인율, 고정 할인율), 미래 임금이 반영되는 방식(예: 부채는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가입자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일자 기준 예상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의 측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림 9.7. 선택된 지역의 DB 제도 자산 및 부채(국가별 통화, 10억) 및 비율(%), 2008~2018년



주: LHS: 왼쪽 축 RHS: 오른쪽 축  
출처: OECD 국제 연금 통계.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42599>



## 부 록

# 국 가 별 현 황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2018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크게 두 가지, 즉 기초연금과 부가적 사회보험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70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사회부조뿐만 아니라 부가적 고령자 특례노령연금이 제공된다.

### 핵심 지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ARS	550,000	1,168,313
	USD	19,576	41,584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8.0
기대여명	출생 시	76.4	80.7
	65세 시점	17.5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0.2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618>

## 수급요건

기초연금: 근로기간이 30년 이상인 65세(남성) 및 60세(여성).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입자는 수급개시 연령 이후 2년을 부족한 보험료 납부기간 1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가연금(사회보험): 근로기간이 30년 이상인 65세(남성) 또는 60세(여성).

고령자 특례노령연금(사회보험):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이고 70세에 도달한 자로서, 피용근로 또는 자영업 종료 직전 8년 중 최소 5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자. 자영업자는 최소 5년간 가입했어야 한다.

비기여형 노령연금(사회부조): 70세 이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자.

## 급여 산정

### 노령연금

월 연금 5,446.47페소(2019).

### 부가연금(사회보험)

월 연금은 평생 근무기간(lifetime service)의 매 1년에 대해 마지막 10년간 가입자의 평균 조정 월 소득(자영업자는 전 기간에 대한 가중평균 조정금액)의 1.5%.

### 고령자 특례노령연금

월 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의 70% + 부가연금.

합산된 최저 월 노령연금액(모든 기여형 연금의 합)은 11,528.44페소(2019).

최대 월 노령연금액(기초연금+사회보험연금의 합)은 84,459.47페소(2019).

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13번째 지급액은 월 정기지급액의 절반 금액씩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급여액은 국가 세수, 임금지수 그리고 국가사회보장청(Nat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세입 변화에 근거하여 3월과 9월에 자동 조정된다.

**비기여형 노령연금(사회부조)**

월 연금 9,222.75페소.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근로자 과세**

2018년 적용 세율

금액	%
25 754페소 미만	5%
51 508페소 이상 77 262페소 미만	9%
77 262페소 이상 103 016페소 미만	14%
103 016페소 이상 154 524페소 미만	19%
154 524페소 이상 206 032페소 미만	23%
206 032페소 이상 309 048페소 미만	27%
309 048페소 이상 412 064페소 미만	31%
412 064페소 이상	35%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의 기여는 17%로, 이 가운데 11%는 통합연금제도(SIPA)에, 3%는 사회복지 의무 납입금에, 3%는 국가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 관리기관(INSSJP)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의 기여는 23%로, 이 가운데 10.17%는 통합연금제도(SIPA)로 들어가며, 나머지 12.83%는 가족수당제도(4.44%), 국가고용기금(National Employment Fund, 0.89%), 국가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 관리기관(1.5%) 그리고 사회복지부문(6%)에 배분된다.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이나 크레딧은 없다.

세금은 근로 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연금 수급의 경우 예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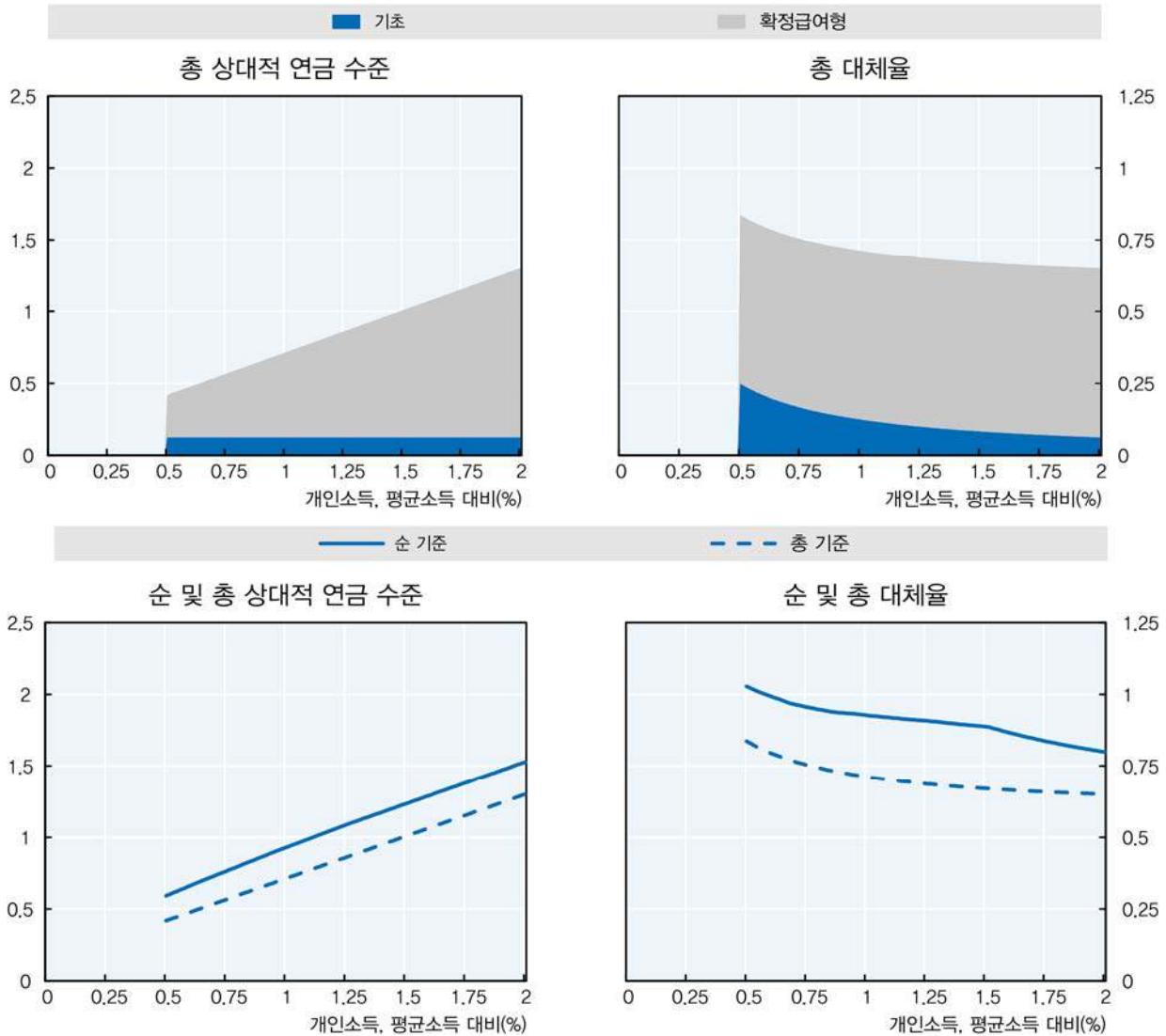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활동 중인 퇴직자(즉,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국가 고용 기금에 11%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아르헨티나, 2061년, 수급연령 65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1.9	56.5	71.2	100.6	130.0	188.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9.1	76.3	92.8	123.3	152.8	213.6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3.7	75.4	71.2	67.1	65.0	62.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2.8	95.6	92.8	88.8	79.9	72.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8	12.4	11.7	11.0	10.7	10.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9	15.7	15.2	14.6	13.1	11.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637>


## 호주

### 호주: 2018년 연금제도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개 제도, 즉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기초노령연금, 고용주 부담의 강제가입 형태의 보증형 기업퇴직 연금과 자발적 기업퇴직연금 기여금, 기타 개인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발적 기업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된다.

### 핵심 지표: 호주

	호주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AUD	85,778	55,657
USD	64,08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4.3	8.0
기대수명 출생 시	83.2	80.7
65세 시점	21.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7.7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656>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 6개월부터 지급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2019년 1월부터 66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2023년 67세에 도달할 때까지 2년마다 6개월씩 계속 상승한다. 1960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기업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최저수급가능연령은 현재 55세이지만, 그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점차 상향 조정되어 1964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60세의 최저연령이 적용된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 연금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종업원의 기업퇴직기금(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강제적 기여로 이루어진다. 기업퇴직기금은 고용주가 운영할 수도 있고 산업별 협회나 금융회사 혹은 개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강제적 기여율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근로자 통상임금의 9%였다. 2013년 7월 1일에 기여율이 9.25%로 인상되었고, 2014년 7월 1일에 다시 올라서 9.5%가 되었다. 정부는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9.5%로 유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그 이후 2025년 7월 1일에 기여율이 12%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상향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소득이 월 450호주달러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선택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이 최저액은 과거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고용주는 사적 근로나 가정 내 근로(유모 등)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대해서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소득에는 최대 기여기반 상한선이 존재한다. 고용주들은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낼 필요가 없다. 회계년도 2018-19년 분기별 상한액은 54,030호주달러였다. 소득 상한은 매년 정상적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 주급에 연동된다.

퇴직연금에 자발적 추가기여금(after-tax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납부하는 중저소득자에 대해 2018-19년 기준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기여금의 50%를 정부가 매칭지원해 주고 있다. 2018-19년 연간 소득이 37,697호주달러 미만인 자는 완전 매칭지원대상이다. 37,697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매 1달러당 추가 납부금이 3.333센트씩 줄어들며, 52,697호주달러까지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칭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적격 납입자에 대한 매칭지원금이 2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20호주달러가 보장된다.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인출 단계는 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일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해 있다. 가입자들은 누적된 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도 있고 일정 소득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2017-18년 기준, 지급된 총 급여액 가운데 일시불 지급의 비율은 48.3%, 연금 급여 지급은 51.7%였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물가연동형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고 가정했다.

## 선별적 안전망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은 전체 근로기간 중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기본안전망을 제공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노후 저축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가장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사용하여 선정한다.

호주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대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여타 OECD 회원국의 노후 급여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호주의 노령연금은 정액 급여이며 재분배적 성격을 띤다. 이 연금의 목적은 호주 노령층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이 제공하는 현금 급여 외에도 호주 노인들은 의료, 집세, 약품 및 기타 생활비에 대한 가격할인 및 보조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호주 정부는 세계 혜택으로 보조하는 기업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사적 노후소득을 지원한다.

2018년 9월 독신자의 경우 보충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수급가능액은 2주당 916.30호주달러이며, 연간 총 23,823.80호주달러이다. 연금수급자 부부의 경우 총 최대 수급가능액은 2주당 1,381.40호주달러, 연간 35,916.40호주달러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가치는 격년마다 조정된다. 연금의 가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혹은 PBLCI(연금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 중 인상폭이 더 큰 지수에 따라 증가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인상을 통해서 부부의 합산액이 세전 남성근로자 전체의 평균 주당소득의 41.76%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보조금을 제외한 1인이 받는 기초연금의 최고액은 부부 합산액의 66.33%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나온 연간 소득이 ‘공제한도(income free area)’로 알려진 기준선을 초과하면 감액된다. 이 기준선은 1년에 한번 7월에 CPI 성장에 맞춰 조정된다. 2018-19년에 2주 기준 공제한도는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172호주달러, 부부의 각 구성원의 경우에는 152호주달러였다.(부부합산액은 304호주달러)

기초노령연금에는 연금수급연령의 사람들이 근로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소득조사 면제제도인 근로 보너스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소득조사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되지 않고 2주에 250호주달러까지 벌 수 있도록 허용한다. 2주에 250호주달러 미만을 버는 연금 수급자는 미래 고용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6,500호주달러 까지 2주의 면제된 미사용액수를 적립할 수 있다. ‘근로 보너스’와 ‘공제한도’의 결합을 통해 기타소득이 없는 독신 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연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해 약 10,972호주달러까지 벌 수 있다.

자산조사도 적용된다. 2018-19년 주택소유자에 대한 연금자산조사한도(pension asset test thresholds)는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258,500호주달러, 부부 합산 387,500호주달러이다. 주택 미소유자에 대한 기준은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465,500호주달러, 부부 합산 387,500호주달러이다. 이 액수를 초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독신 및 부부 연금 수급자에 대해 모두 2주에 1,000호주달러당 300호주달러가 삭감된다. 거주 주택(family home)은 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6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의 거의 38%가 자산조사에 의해 연금이 삭감되어 기초노령연금의 일부만을 수급한다. 이들 중 66%는 소득조사(income test)로 인해, 34%는 재산조사(assets test)로 인해 연금이 삭감된다. 연금 수급자의 약 62%가 노령연금을 최대액수까지 받는다.

2017년 1월 1일, 호주 정부는 연금제도 선별 능력 개선과 미래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연금 재산조사를 변경



했다. 변경을 통해 연금제도는 저소득자를 보다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지원함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 재산조사 변경은 크게 두 부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 첫 번째, 주요 주택 면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미보유자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연금 수급자들에 대하여 연금에 미치는 영향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재산조사 미적용 영역)을 상향 조정했다.
- 두 번째, 저축액과 자산이 미적용 영역을 초과한 이후 연금이 누진적으로 삭감되는 속도(재산조사 삭감 속도)를 늘렸다.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 조사 면제는 이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집세보조금(Rent Assistance)은 집세가 특정 금액을 넘어 부담하는 개인임차인 및 지역사회 임차인 중 자격이 되는 자에게 제공된다. 이는 연금 지급액의 일부로 지급되며, 해당 지급액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조사에 의해 삭감된다. 집세보조금의 가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에 따라 격년마다 조정되고 2주에 한번 지급된다. 2018년 9월, 부양 자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최대 집세보조금은 2주에 135.80호주달러였다. 이는 연간 최대 3,530.80호주달러에 해당된다.

집세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집세의 기준도 격년마다 조정된다. 2018년 9월, 부양 자녀가 없는 개인 가운데 집세보조금 지급 대상인 사람에 대한 최소 임차료는 2주에 121.20호주달러였다. 이 기준을 초과한 집세는 최대 액수에 이를 때까지 1달러당 75센트가 지급된다.

집세보조금은 정부임대주택청(government housing authority)으로부터 집을 빌린 사람들이나 호주 정부가 기금을 댈 양로원이나 숙박시설 거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기업퇴직연금 급여는 57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기업퇴직연금 급여의 인출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1962년 7월 1일 및 그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상향 조정되었다.(아래 표 참조) 수급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정 수급연령(preservation age)부터 수급이 가능하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일괄지불 불가: non-commutable income stream)로만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법정수급연령 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출생일	법정 수급연령
1961년 7월 1일~ 1962년 6월 30일	57
1962년 7월 1일 ~1963년 6월 30일	58
1963년 7월 1일 ~1964년 6월 30일	59
1964년 6월 30일 이후	60

### 수급연기

퇴직연금 신청은 65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을 위해 보증형 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65~74세, 또는 75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기여할 수 있는 기여금 종류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에는 연금수급 연령의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근로보너스 소득조사 면제제도가 있다.

## 육아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는 근로 중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없다.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 동안 자발적인 기여금 납부는 가능하다.

## 실업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는 실직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없다.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 동안 자발적인 기여금 납부는 가능하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호주의 노인 및 그 외 정부 연금을 수급하는 호주인은 표준 감면과 더불어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및 연금수급자 세금혜택(SAPTO) 제도는 과세 가능한 정부 연금을 받는 납세자와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호주인,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호주인(위 참조)이 이용할 수 있다. 2012-13년 이후 SAPTO 혜택 금액은 연간 소득이 최대 32,279호주달러인 개인의 경우 2,230호주달러이며, 연간 소득이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혜택분의 12.5%가 감액된다. 독신기준 연간 소득이 50,119호주달러 이상이 되면 세금감면혜택은 완전히 배제된다.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SAPTO 최대 혜택 금액은 각 배우자당 1,602호주달러이다. 각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8,974호주달러를 초과하면 SAPTO는 혜택분의 12.5%씩 감액되며, 연간 소득이 41,790호주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완전히 정지된다.

SAPTO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들은 의료보험 부담금 저소득한도(2016~2017년 기준 독신은 34,244호주달러, 부부는 총 47,670호주달러)를 높게 적용받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세금 혜택 전액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의료보험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의료보험 정상 부담금은 2014-15년 이후 과세소득의 2.0%였다.

###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기업퇴직연금제도는 적격 기여(concessional contribution) 시, 그리고 투자 수익 발생 시, 두 단계로 과세된다.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인출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즉 기여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급여를 수급하는 개인은 급여액에 대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

기업퇴직연금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 고용주나 가입자가 적격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즉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여금에 대하여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기금에서 납부한다.
- 최대 37,000호주달러의 조정된 과세소득을 버는 개인은 저소득층 세금감면혜택제도(LISTO)를 통해 2017년 7월 1일 부터 연간 최대 500호주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급액(사실상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LISTO는 피고용인의 기업 퇴직연금 계정에 납부된 퇴직연금 적격 기여금(세전)의 15%로 계산된다. 회계년도 2012-13년부터 2016-17년까지 조정된 과세소득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인 개인은 저소득층 퇴직연금기여금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소득과 적격기여금의 합이 250,000호주달러 이상인 개인은 2017년 7월 1일부터 250,000호주달러의 상한선을 초과 하는 소득과 적격기여금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일명 Division 293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7년 이전까지 이 상한선은 300,000호주달러였다.

- 가입자가 자발적 기여금(즉 세후 소득으로부터 납부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가입자는 이미 정상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에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한 것이다. 기여금에 대해 추가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도 누적 기간 동안 15%의 세율로 과세된다.(단, 유효 세율은 일반적으로 적용된 공제율(imputation credits) 및 자본소득세 할인으로 인해 이보다 낮다.) 연금을 지지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2007년 7월 1일 이후 과세 대상인(즉, 기여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납부된) 출처를 가진 기업퇴직연금의 급여는 일시불과 일정 소득 중 어떤 식으로 지급되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된다. 60세 미만인 개인에 대한 경우 과세 대상인 출처를 가진 급여는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 아닌 제도(주로 공무원 대상)에서 지급하는 급여액도 과세 대상이나,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경우 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소득세 면세가 되는)은퇴 기간으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총 저축액에 대해 160만 호주 달러의 상한선을 법제화했다. 이 상한선은 100,000호주달러의 증가량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될 것이다. 이는 은퇴 기간 중 퇴직연금 액수에 대한 상한선이 아니다. 은퇴 기간 중 소득은 160만 호주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나, 160만 호주달러가 넘는 금액을 은퇴 기간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저축은 소득이 15% 과세되는 누적 퇴직연금 계정에 유지하거나 퇴직 연금 제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상한선을 위반하는 가입자는 초과하는 자본으로 인한 명목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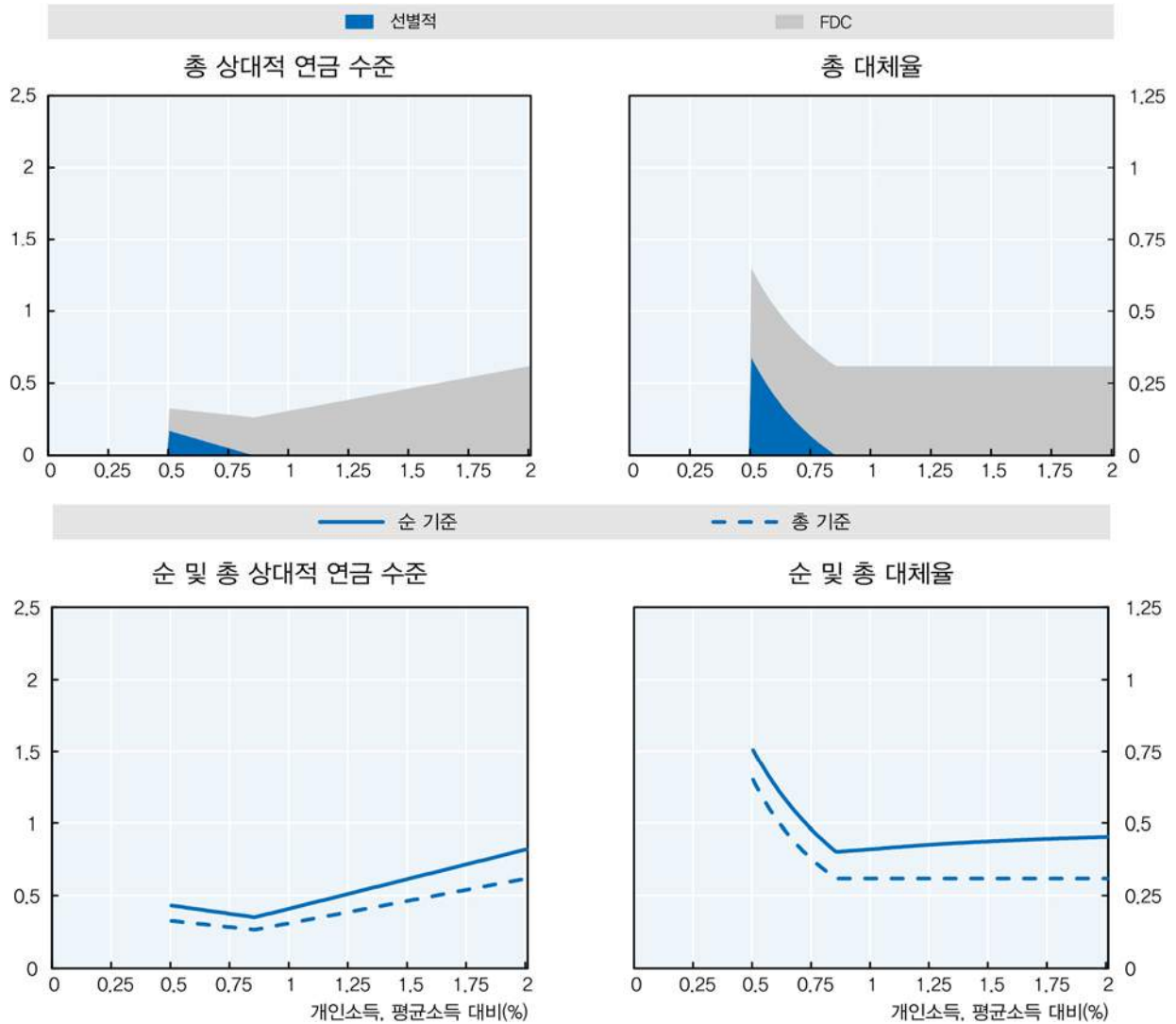
나아가, 퇴직연금 혜택 또한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된다.

- 연간 상한선을 초과하는 적격 기여의 경우 개인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연령을 불문한 모든 사람에게 대해 이 상한선을 250,000호주달러로 낮췄다. 회계년도 2018-19년 이후로 자격이 있는 개인은 잔액이 500,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직전 5년 사이 상한선과의 금액 격차에 대해 추가 기여를 할 수 있다.
- 초과 적격 기여는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련 부담금을 합한 값에서 기금으로 납부되는 세금에 대한 상쇄분을 빼고 이자를 더한 만큼 과세된다. 개인은 선택에 따라 이 세금을 기금 인출로 납부할 수 있다.
- 자발적 기여에는 기업퇴직연금 잔액이 160만 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회계년도당 100,000호주달러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65세 미만의 경우 3년의 이월 기간(원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최대 300,000호주달러 기여 가능)이 주어진다. 개인 상해 급여를 통해 납부된 기여금을 포함하여 일부 개인 기여금은 자격 있는 개인의 자발적 기여 상한선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요건이 되는 소규모 사업의 자본 수익에서 유래한 기여금에는 추가 생애 자발적 기여 상한선이 적용된다.
- 초과 자발적 기여는 최대 한계세율 47%에 관련 부담금을 더한 만큼 과세된다. 2017년 이후 호주 기업퇴직연금 정책의 관리자인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따라 기업퇴직연금기금은 세금이나 호주 정부의 부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돈을 풀고, 남은 잔액을 개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모든 초과 자발적 기여금과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 얻은 관련 소득의 85%를 방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초과 자발적 기여금을 방출하는 대신 초과분에 가장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선택지도 있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호주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없다. 기초노령연금 및 기타급여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조달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호주, 2063년, 수급연령 67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2.5	28.1	30.9	46.4	61.8	77.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3.1	37.3	41.0	61.5	82.0	103.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4.9	37.5	30.9	30.9	30.9	26.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5.5	47.6	41.0	43.8	45.3	40.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7	6.8	5.6	5.6	5.6	4.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6	8.6	7.4	7.9	8.2	7.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675>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2018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와 저소득 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형 보충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47,120	35,230
	USD	55,61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3.3	8.0
기대수명	출생 시	81.3	80.7
	65세 시점	19.7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1.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694>

##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은 60세이다. 여성의 수급연령은 2024-33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최근 30년 동안 180개월(15년) 이상 또는 생애 전체 기간 중 300개월(25년) 이상의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가입만 한 기간과는 다름)이 180개월이 되어야 한다. 가입된 개월 수는 기여금을 납부한 개월 수(고용을 통한 기여나 자발적 기여를 포함)나 제한된 액수의 기여금만 납부된 보완기간(2005년 이전에는 Ersatzzeiten, 2004년 이후에는 Teilversicherungszeiten으로 불리는 크레딧 인정기간)으로 산정된다. 2005년 연금개혁에서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유급 고용으로 인한 최소 기여년수 요건은 1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었다. 나머지 최소 가입기간 8년은 육아기간 등으로 채울 수 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가입 1년당 지급률은 현재 1.78%이다. 1955년 이전 출생자의 소득 측정지표는 현재 최고소득 30년간 재평가된 평균소득이다. 평균을 내는 대상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2028년에 40년이 된다. 1955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의 경우 기여 기반은 평생 소득으로 한다.

과거소득은 은퇴 당해와 전년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소득인상률에 따라 재평가된다. 기여금은 최대 71,820유로까지 납부 가능하다. 급여는 연간 14회 이루어지며 지급되는 연금액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CPI에 따라 이루어진다.

### 최저연금

소득비례연금 수급액이 낮은 퇴직자는 총 연금 급여액과 기타 출처로부터의 소득(일부 예외 있음)의 합이 1인 가구 기준 월 909.42유로(부부의 경우 1,363.52유로) 미만인 경우 보충액(Ausgleichszulage)을 받는다. 2017년, 새로운 형태의 자산조사형 보충제도가 추가 도입되었다. 적어도 360개월(30년) 이상 기여한 가입자(1인 가구만)는 최저 1,000유로(2018년 기준 1,022유로)가 지급되었다. 지급은 연 14회 이루어지며 급여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조정을 따른다.

## 선별적 연금

자산조사형 최저소득제도(*bedarfsorientierte Mindestsicherung*)는 2011년 이전까지 운영되던 종전 사회부조제도 (*Sozialhilfe*)를 현대화한 버전이다. 자산조사형 최저 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개인과 그들의 부양가족구성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조제도는 노령인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연금 등)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자산조사형 최저 소득제도는 대체로 거주에 근거한 비기여형 제도이다. 유럽경제지역(EEA)의 시민, 특정 거주허가서를 받은 제3국의 국민(특히 EU 영주권자)을 비롯해 원칙적으로는 난민 인정자까지 여러 인구집단이 오스트리아 거주민으로 인정된다.

월 지급한도는 2018년 기준 독신 개인의 경우 863.04유로(부부의 경우 1,294.56유로)이다. 월별 지급은 12회 이루어진다. 자산조사형 최저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개인의 모든 자원이 2018년 기준 4,315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당국은 일정 기간 이후 그 소유권을 자산조사에 반영한다.

## 추가 급여

최저보장제도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추가적 필요(적절한 주거 및 난방을 위한 경비 등)는 추가적 보충 급여에 의해 충당될 수 있다.

이들 급여는 정액보조금과 적절한 실제 주거비 보장 등 실로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충급여는 주(Länder)에서 제공하는데, 보장된 최저소득에 대한 보충으로써 또는 독립된 급여로써 주택수당(*Wohnbeihilfe*)이 지급된다. 질병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산조사형 최저급여수급자는 법정 질병 보험의 관할기관에 등록 보호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1. 장기보험기여(*Langzeitversichertenpension - Hacklerregelung*), 현재 42년(여성)/45년(남성) 이상 기여 필요. 2014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2세이며 여성은 57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연간 공제 4.2%)된다. 1954년 이전 출생 남성과 1959년 이전 출생 여성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2. 중노동 종사자 연금(*Schwerarbeitspension*), 기여년수가 4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20년 이내에 10년 이상 노동강도가 강한 직종에서 종사했어야 한다. 연금수급연령은 60세다. 1955년 이전 출생자의 연간 공제는 0.35%, 1955년 이후 출생자는 1.8%이다.
3. 중노동 종사자 장기가입 노령연금(*Langzeitversicherungspension mit Schwerarbeit*), 40년(여성), 45년(남성) 이상 가입한 경우. 연금수급연령: 남성 60세, 여성 55세.(연간 공제 1.8%) 1953년 12월 31일에서 195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남성 및 1958년 12월 31일에서 1964년 12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만 수급 가능하다.
4. 브릿지연금(*Korridorpension*): 남성과 여성 모두 62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연간 공제: 5.1%)

### 수급연기

65~68세에 은퇴하는 남성과 60~63세에 은퇴하는 여성의 경우 연금이 연 4.2% 상승한다.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근로자들은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므로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근로와 연금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득한도가 있다. 조기퇴직 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438.05유로 이상인 경우, 강제적 사회보험의 적용이 이 소득한도를 넘으면 시작되므로 연금은 전액 지급정지된다. 여성의 경우 60세, 남성의 경우 65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에 제한 없이 연금 수급이 허용된다.

## 육아

육아 기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된다. 육아 기간을 자녀 1명 당 최대 4년(48개월)까지 보험 기간으로 간주(기여한 달이 없는 경우)하고, 월 1,828.22유로의 가상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 연금 계정에 크레딧이 적립된다.

## 실업

실업보험급여와 실업수당을 받은 기간은 기여기간으로 간주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연금수급자는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근로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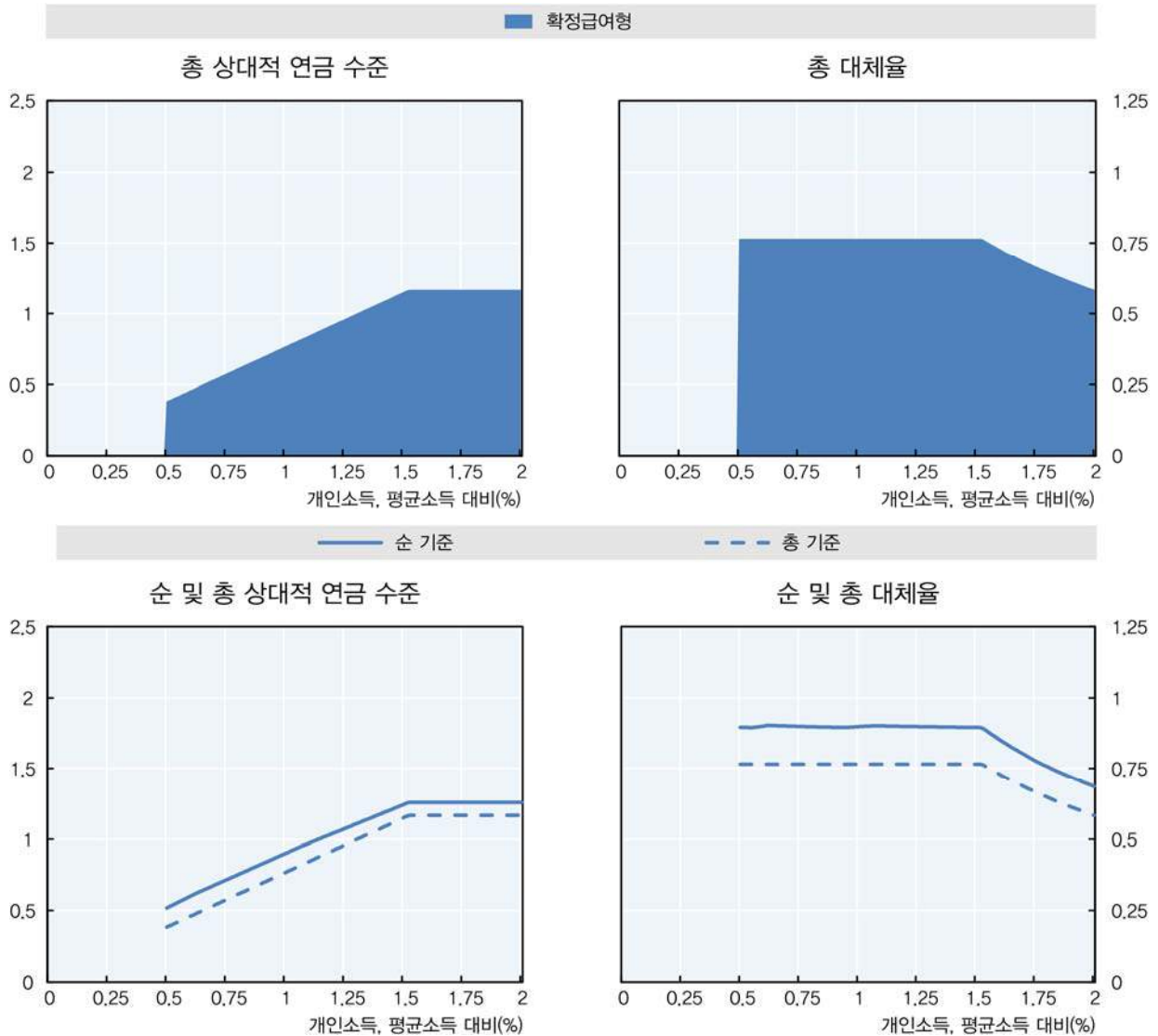
### 연금소득의 과세

연금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질병보험 부담금은 납부한다.(5.1%)

연금 모형화 결과: 오스트리아,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8.3	57.4	76.5	114.8	116.7	116.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1.7	71.3	89.9	124.1	125.8	12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6.5	76.5	76.5	76.5	58.3	38.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9.7	89.9	89.9	89.6	68.6	47.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2	14.2	14.2	14.2	10.8	7.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6	16.7	16.7	16.6	12.7	8.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713>




## 벨기에

### 벨기에: 2018년 연금제도

벨기에의 연금제도는 여러 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소득비례 공적 연금제도가 운영되며 자산조사형 안전망 제도와 순수한 개인연금 상품들이 존재한다.

### 핵심 지표: 벨기에

		벨기에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9.2	4.5
	USD	84,51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2.1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8	80.7
	65세 시점	20.4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6.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732>

## 수급요건

2018년 기준 남성과 여성의 법적 연금수급연령은 65세(2025년 66세로, 2030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 중)이다. 공적연금 급여액 전액을 받으려면 45년의 기여 기간이 필요하다. 조기퇴직은 41년 기여한 뒤 63세에, 42년 기여한 뒤 61세에, 또는 43년 기여한 뒤 60세에 가능하다.

## 급여 산정

피고용인을 위한 공적연금액은 경력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최저임금이 높다면 최소 규정을 통해 연금액(부분)을 최저임금을 사용해 계산하거나, 최저연금액이 소득비례연금액보다 높다면 최저연금액을 지급한다.

## 소득비례연금

연금수급자에게 부양 배우자가 없다면 연금산정율은 60%이며, 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75%(두 배우자의 60% 기준 각 연금수급권을 합한 값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이 비율을 적용)이다. 그러므로 연간 추정 지급률은  $60\% / 45년 = 1.33\%$ , 또는  $75\%/45년 = 1.67\%$ 이다.

소득 측정지표로는 생애평균소득을 사용한다. 초기 소득은 물가에 따라 재평가한다.

연금액 전액을 받으려면 45년의 경력 기간이 필요하다. 경력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낮은 경력 연수를 바탕으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산정할 때는 연 소득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는 2018년 기준 55,657유로였다.

## 최소 규정

소득비례연금은 최소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

1. 완전경력 1/3 이상 근로한 연금수급자는 경력기간 1년당 최소 연금수급권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정 해에 연금수급권을 발생시키는 임금이 사전 결정된 최소 임금보다 낮았다면 연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닌 최소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다.(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최소 임금은 24,247유로였으며 9월 이후로는 24,731유로이다.)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개인이 최소 임금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최대 연금액 한도도 존재한다.(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한도는 60% 계산 연금액의 경우 15,452유로, 75% 계산 연금액의 경우 19,315유로였으며

9월 이후로는 각각 15,733유로와 19,667유로이다.) 총 연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최소 연금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 완전경력 2/3 이상 근로한 연금수급자는 최저 퇴직연금액이 소득비례연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최저연금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완전경력을 가진 개인의 경우 소득비례연금을 60%로 계산했을 때(75%로 계산하면 25% 상승) 최저연금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15,650유로였으며, 9월 이후로는 14,943유로였다. 불완전 경력(30년 등)을 가진 개인의 경우 해당 경력 기간에 비례하여 비교적 낮은 최저연금액의 일부(가령 낮은 최저연금액의 30/45)를 수급하게 된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낮은 연금액은 14,548유로였으며 9월 이후로는 14,839유로다. 소득비례연금을 75%로 계산하면 이전 금액은 25% 상승한다.

## 휴가수당

휴가수당(Holiday payment)은 일반적으로 퇴직 2년차부터 지급된다. 연간 휴가수당은 월 연금액의 108.6%로 계산되며 최대 770유로(연금액 60% 계산 기준)나 962유로(75% 계산 기준)까지 지급된다.

## 안전망 소득: 선별적

한 가구에 속한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자산조사형 안전망, GRAPA(Garantie de revenu aux personnes âgées)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8,666유로였고 9월 이후로는 8,947유로다. 독신 개인의 경우 이 금액은 12,999유로와 13,421유로다. 이 사회부조급여의 바탕이 되는 자산조사에서는 연금 소득의 90%만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개인이 2018년 9월 13,100유로의 연금액을 수급했다면 GRAPA는  $13,421 - (13,100 - 0.1 \times 13,100) = 1,631$ 유로를 수급하게 될 것이다.

GRAPA는 65세 이전에 수급할 수 없다.

연금 소득과 GRAPA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일부 상품을 제외한 소위 ‘건강생활지수’)에 맞춰 조정된다. 또 노후 소득이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2년마다 재량적 실질 상향 조정(소위 ‘웰빙 조정’, adaptations to well-being)도 이루어진다. 이 상향 조정은 GRAPA, 최저연금, 장기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자발적 사적연금

퇴직연금과 순수 사적연금이 모두 존재한다.

관리운영자(즉, 고용주 또는 산업부문)가 퇴직연금제도, 이용 조건, 급여 산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직 연금은 자발적 제도다. 그러나 제도에 속하는 개인의 참여는 강제적이다. 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관리운영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무수한 연금 산식이 존재한다. 모델화에서는 기여율을 4.25%로 가정했다.

퇴직연금 외에도, 유사한 재정적 촉진지원을 받는 순수 개인연금 상품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 연금액 적립은 모델화하지 않았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경력기간이 41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 산정 시 계리적 감액은 없다. 그러나 경력기간이 45년이 되지 않는 경우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경력기간이 45년보다 적고 65세 미만인 연금수급자는 소득조사 대상이 되므로 조기퇴직 후 근로를 병행할 기회가 제한된다.

## 수급연기

연금수급권 추가 적립을 위해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을 근로 소득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 연금 수급권은 적립되지 않는다.

## 동화 기간

벨기에에서는 소위 ‘동화 기간(assimilated period)’이라는 정교한 연금 크레딧이 존재한다. 동화 기간은 개인이 근로는 하지 않으나 연금 수급권은 적립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동화 기간 동안 적립되는 연금 수급권은 이전 근로 기간의 임금과 비슷한 가상의 임금을 바탕으로 한다. 동화 기간의 예시로는 육아 기간과 실업 기간을 들 수 있다.

## 육아

자녀 양육을 위해 두 종류의 중요한 동화 기간이 존재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각 부모는 연금 수급권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동시에 최대 4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명 ‘tijdskrediet’ 제도를 통해 6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최대 4년 3개월의 동화 기간이 주어진다.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려면 특정 조건(가령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면 직전 15개월 중 12개월 동안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해야 한다)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육아휴직 제도에서보다 ‘tijdskrediet’ 제도의 경우 더욱 엄격하다.

## 실업

2012년 말까지 실업 기간은 완전히 동화되었다. 이후 실업 기간의 동화는 비교적 덜 유리한 특정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명 실업 3기(즉, 4년 이후)는 이전 임금이 아니라 경력 기간 1년당 최저 수급권을 사용해 동화된다. 2019년 이후 신규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실업 2기(즉, 1년 이후)인 사람은 경력 기간 1년당 최저 수급권을 사용해 동화된다. 크레딧 기간 최대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크레딧이나 수당은 없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은 과세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소득의 경우 개인당 최대 2,066.84유로의 공제 권리가 주어진다. 세금 감면에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 첫 번째 제한은 종합과세소득(ATI) 대비 연금소득 비율을 바탕으로 한다. 연금액이 5,000유로 이고 순 과세소득이 10,000유로인 사람은 기본 액수의 절반만 받게 된다. 두 번째 제한은 총 ATI와 관련된 것이다. ATI가 22,910유로 미만이라면 전체 감면이 적용된다. ATI가 45,810유로 이상이라면 감면의 1/3만 적용된다. ATI가 두 기준 사이인 경우 전체 가치의 1/3과 전체 가치의 2/3에 45,810유로에서 ATI를 제하고 22,900유로로 나눈 값을 더한 만큼 감면된다. 또한, 과세소득이 연금소득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568.12유로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부부의 경우 제한은 각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즉, ATI를 바탕으로 한 제한은 각 배우자의 ATI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세금 감면과 한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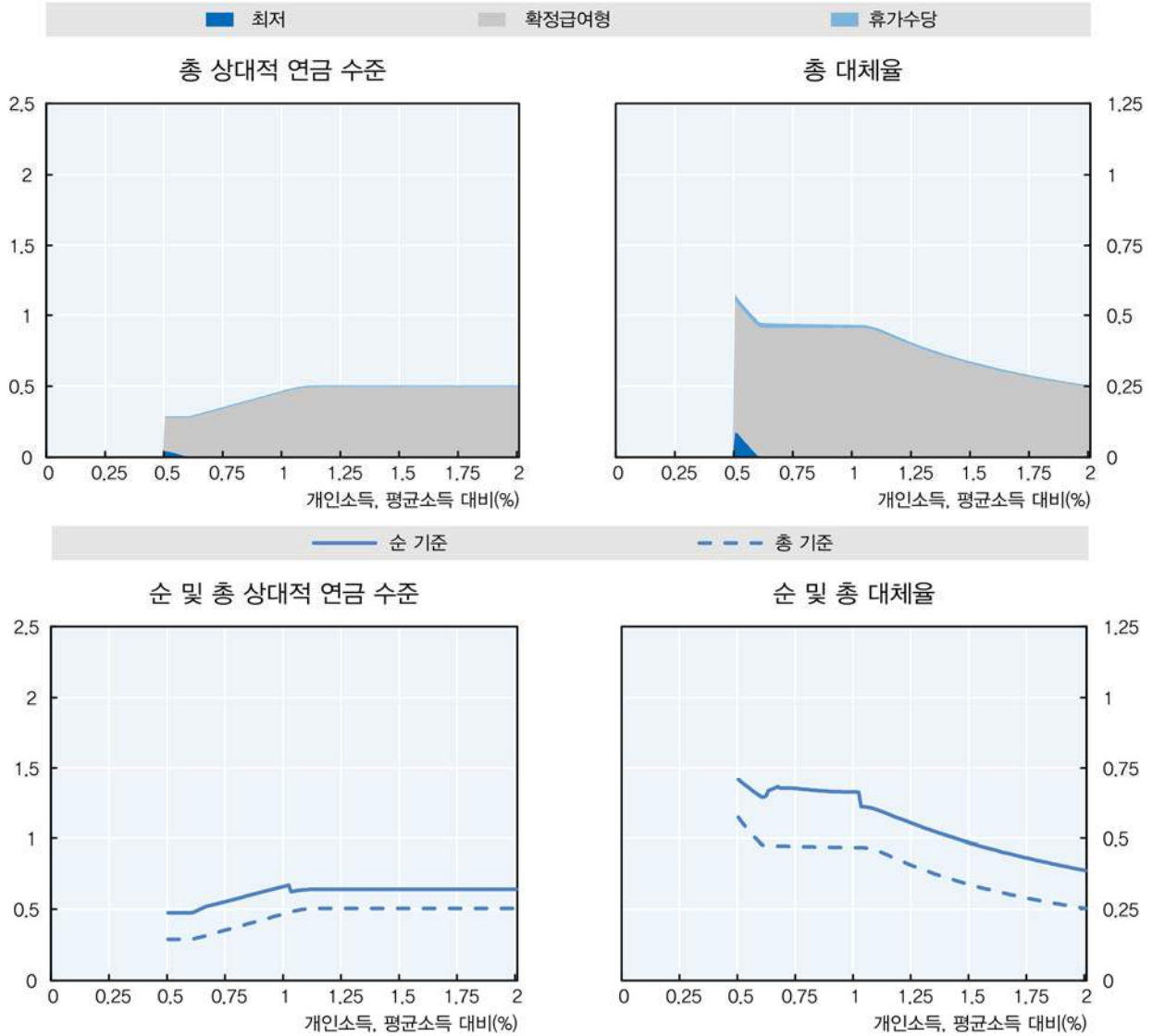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최저한도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연금수급자는 의료보험 및 장애보험에 대하여 3.55%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다. 2018년 9월 이후 부양가족이 없는 연금수급자의 최저한도는 월 1,500유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709유로였다.(이전에는 각각 월 1,471유로, 1,743유로였다.) 연금 지급액은 기여금 납부의 영향으로 인해 이 월간 최저한도 이하로 떨어지서는 안 된다.

순수 개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에 대해 부과되는 ‘연대(solidarity)’ 기여금도 존재한다. 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연금액이 2,358유로(2018년 9월 이전에는 2,312유로)를 초과하면, 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727유로(2018년 9월 이전에는 2,673유로)를 초과하면 연대기여금의 납부대상이 된다. 부담율은 총 연금액의 0.5%에서 2%이다. 연금 지급액은 기여금 납부의 영향으로 인해 월간 최저한도 이하로 떨어지서는 안 된다.

휴가수당은 연금처럼 과세되지만 연대 기여금과 상기 3.55% 기여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벨기에, 2063년, 수급연령 67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8.7	35.3	46.8	50.5	50.5	50.5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7.4	55.5	66.2	64.1	64.1	64.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7.3	47.1	46.8	33.7	25.3	16.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0.7	67.4	66.2	48.3	38.7	27.5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1	8.3	8.2	5.9	4.4	3.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4	11.9	11.6	8.5	6.8	4.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751>


## 브라질

### 브라질: 2018년 연금제도

RGPS(Regime Geral de Previdência Social)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하는 기여금 (payroll tax)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며 판매세를 통한 세수와 연방정부 전입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이는 의무가입의 부과방식 단일층 (single-pillar) 연금제도로 국가사회보장국(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에서 운영한다.

### 핵심 지표: 브라질

	브라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BRL	26,929	151,942
USD	7,37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75.6	80.7
65세 시점	18.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5.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770>

## 수급요건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기여년수 혹은 연령을 근거로 하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전액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여년수를 기준으로 한 은퇴의 경우 남성은 35년, 여성은 30년간 기여했다면, 어느 연령에서든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 옵션은 민간부문 근로자의 가장 흔한 은퇴 경로이다. 연령을 근거로 한 은퇴는 기여년수가 최소 15년 이상이라면 남성 65세, 여성 60세부터 가능하다.

기여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른데, 1,693.72헤알까지 월 소득의 8%, 1,693.73헤알에서 2,822.90헤알까지는 월 소득의 9%, 2,822.91헤알에서 5,645.80헤알까지는 월 소득의 11%를 낸다.

## 급여 산정

### 기여년수를 근거로 한 수급액

급여액은 1994년 7월부터 퇴직 시까지 최고 월 소득의 80%를 평균한 값이다. 이 평균에 'Fator Previdenciário'를 곱한다. Fator Previdenciário는 가입자의 기여율, 기여 기간, 연령,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하는 계리적 계수이다. 연령과 기여 기간의 합이 남성의 경우 95, 여성의 경우 85(2027년까지 최대 100 및 95)인 경우 Fator Previdenciário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f = \frac{T_C \times a}{E_s} \times \left[ 1 + \frac{(I_d + T_C \times a)}{100} \right]$$

$f$  = Fator Previdenciário

$T_C$  = 근로자 기여기간

$a$  = 기여율 31%

$E_s$  = 근로자의 은퇴 시 기대여명

$I_d$  = 근로자의 은퇴 당시 연령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최저 월 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954헤알)과 동일하다.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최고 월 소득은 5,645.80헤알이다.

최저 월 기여액에 대한 최저연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 연령을 근거로 한 수급액

급여액은 1994년 7월부터 퇴직 시까지 최고 월 소득의 80%를 평균한 값이다. 기여 기간 12개월마다 70%에 1%p씩 더한 값(최대 100%)을 이 평균에 곱한다. 이 결과치에 Fator Previdenciario를 곱하게 되는데, 후자가 1.0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급여액 산정을 위한 최저 및 최대 월 소득은 기여년수를 근거로 한 노후소득과 동일하다.

급여는 1년에 13회 지급되며, 급여액은 매년 조정된다. 최저연금을 받는 민간부문 연금 수급자의 2/3에 대한 연간 조정액이 최저임금의 연간 조정액과 동일한데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고 있다. 최저 수준을 초과하는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부조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해 연금과 유사한 부조 프로그램도 두고 있다. BPC-LOAS는 고령인구(남성과 여성 모두 65세 이상)나 1인당 가구소득이 최저 임금의 1/4(하한선) 미만인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며 조건은 2년에 한번씩 개정된다.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다른 비기여성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가구 구성원이 받는 사회부조는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가구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급여는 감안된다. 관리(Logistics)는 INSS(의학인증 및 자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급여에 대한 책임은 사회개발부(MDS)에 있다.

60세 이상 남성 혹은 55세 이상 여성으로서 시골지역에서 최소 180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들을 위한 지방연금(Previdencia Rural)이라는 급여도 있다. 급여액은 최저임금과 같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남성의 경우 35년, 여성의 경우 30년의 기여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조기 퇴직의 최저 연령 기준은 없다. 그러나 기여 기간에 근거한 연금의 경우, 연령과 기여 기간의 합이 남성 95, 여성 85(2026년 말까지 100/90으로 상향) 미만 이라면 급여액 가치가 연령, 기여 기간, 신청 연령의 기대 여명을 고려하는 계수(fator previdenciário)에 의해 줄어든다.

### 수급연기

연금은 근로와 병행해서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2018년 기준 월 소득이 1,903.98헤알을 초과하는 개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월 소득 범위	하한선	상한선	세금
1,903.98 헤알		2,826.65 헤알	7.5%
2,826.66 헤알		3,751.05 헤알	15%
3,751.06 헤알		4,664.68 헤알	22.5%
4,664.69 헤알		이상	27.5%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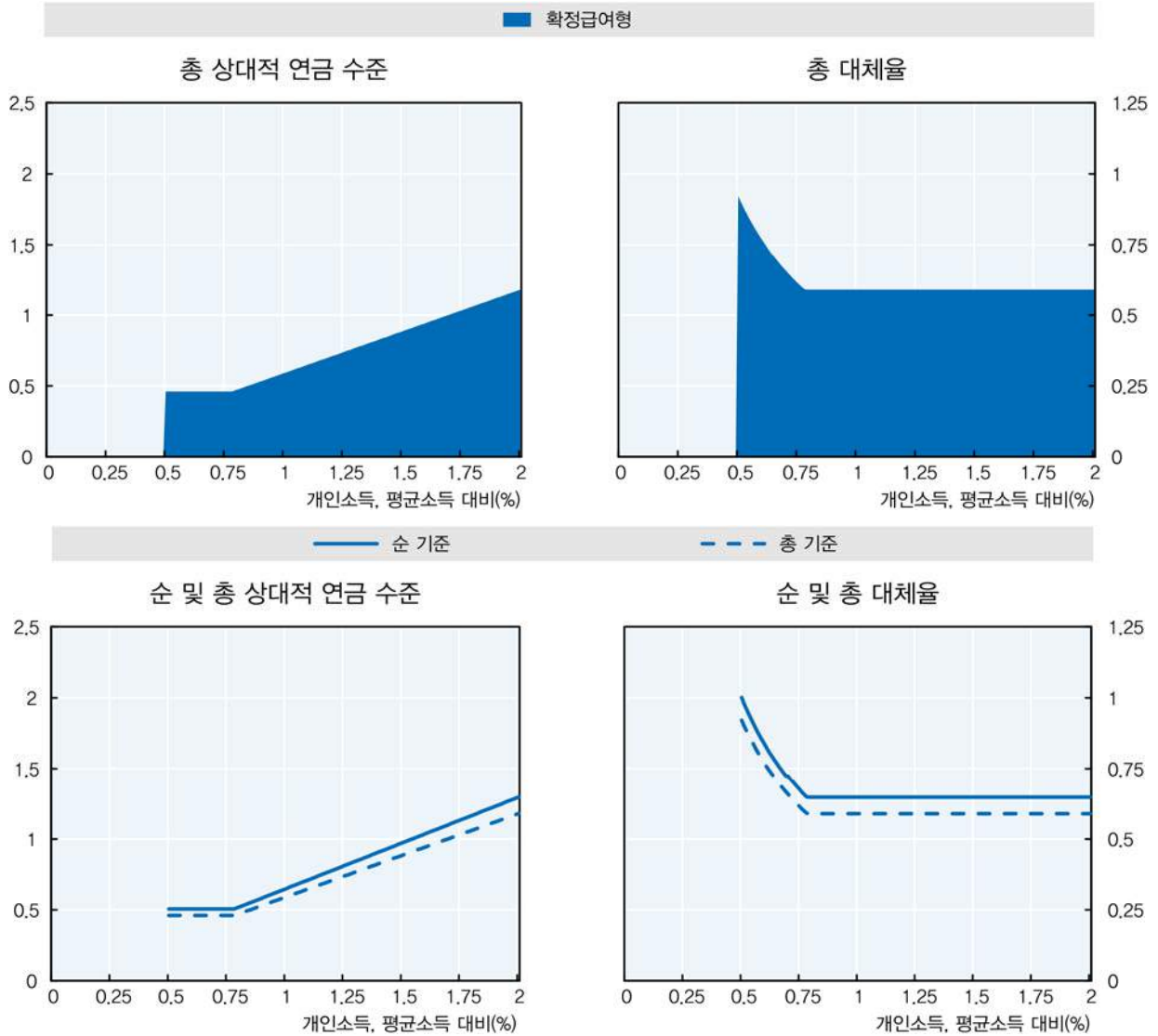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는 급여액에 대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브라질, 2053년, 수급연령 57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6.1	46.1	58.9	88.4	117.9	176.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0.6	50.6	64.8	97.1	129.5	194.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2.1	61.4	58.9	58.9	58.9	58.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0.1	67.5	64.8	64.8	64.8	65.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3.0	15.3	14.7	14.7	14.7	14.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5.0	16.8	16.2	16.2	16.2	16.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789>


## 캐나다

### 캐나다: 2018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이를 보충하는 소득비례연금 및 소득조사형 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발적 가입의 사적연금 제도가 있다.

### 핵심 지표: 캐나다

		캐나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CAD		53,550	53,883
	USD	41,327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4.7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2	80.7
	65세 시점	20.7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9.8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808>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OAS) 프로그램은 법적 상태와 거주지 조건을 만족하는 노령층에게 거주 기반 기초연금을 제공한다. 캐나다에서 18세 이후로 40년 이상 거주한 노인은 OAS 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전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했다면 부분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액은 캐나다에서 꼭 채워 거주한 1년당 1/40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비례제도인 캐나다연금제도(CPP)의 경우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지만 60세부터 계리적으로 삭감된 연금 청구도 가능하며 70세까지 계리적으로 상향된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CPP는 사실상 캐나다의 모든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보장을 제공한다. 예외로 퀘벡에서는 CPP와 유사한 포괄적 공적제도인 퀘벡연금제도(QPP)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OAS 연금의 2018년 완전연금액 수준은 7,121.31캐나다달러였다. 기초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한다.

이 연금은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환수”). OAS 급여액은 개인 순 소득이 75,910캐나다달러(2018년 기준)를 초과하면 15% 삭감된다. 이 소득 상한선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완전 연동된다.

### 선별적 연금

OAS 연금 외의 소득이 적거나 없는 OAS 연금수급자는 최저소득보장급여(GIS)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급여의 합산액은 2018년 독신 수급자의 경우 최대 17,757.63캐나다달러였다.

GIS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노령층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를 진행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은 GIS 급여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GIS 급여액은 소득이 상승하면 줄어든다. 그러나 고용소득의 경우 3,500캐나다 달러까지는 소득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GIS도 물가에 따라 연동된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은 캐나다연금제도(CPP) 및 퀘벡연금제도(QPP)에서 제공한다. CPP와 QPP는 대체로 비슷한 급여액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연금산정대상이 되는 연간 소득상한(YMPE)까지의 생애 평균소득의 33%를 목표 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있다.

퇴직 전 소득은 전체 근로자 소득에 따라 재평가된다. 급여를 전액 수급하려면 약 39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며 근로 이력이 짧아지면 비례해서 급여액이 감액된다. 2018년 소득비례퇴직연금의 최대액은 월 13,610캐나다달러였다.

연간 3,500캐나다달러 미만 소득자는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기여 상한선(YMPE)은 2018년에 55,900캐나다달러였다. 기여 하한은 명목기준으로 동결되어 있지만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증가에 연동된다. 소득비례연금 급여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2016년,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합의를 통해 2019년부터 7년에 걸쳐 추가 기여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CPP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개선된 CPP에서는 25%였던 대체율이 33.33%로 오를 것이다. CPP 개선에 따라 YMPE는 14%(2025년 새로운 기여금과 상한선이 완전히 적용되면 약 82,700캐나다달러) 상승할 것이다. 개선 결과 2065년 CPP가 완전히 성숙하면 최대 CPP 연금 급여액은 기존 대비 50% 상승할 것이다. 2065년 전에는 기여 기간을 바탕으로 부분 급여만 제공될 것이다.

2017년, 퀘벡 주는 QPP를 개선하는 한편 두 제도를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 간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도입했다.

## 자발적 사적연금

퇴직연금제도와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제도를 통해 캐나다인들은 OAS, GIS, CPP/QPP가 제공하는 기본 수준 이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또는 둘의 혼합 형태가 존재한다. 2014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32%에 해당하는 630만 명이였다.(1977년 46.1%) 제도 가입률 하락은 특히 민간 부문의 피고용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움직이는 전반적 추세와 맞물려 있다.

RRSP는 은행과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저축제도로, 제도 내에 적립되는 기여금, 자본 소득 및 이자는 인출 시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근로자는 RRSP에 연간 근로소득의 18%, 최대 26,230캐나다달러(2018년)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은 RRSP에 기여하는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근로자는 71세까지 RRSP에 기여할 수 있으며, 71세가 되면 적립된 기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최소 인출규정에 따라 연배분하여 인출해야 한다. RRSP 계정을 보유하는 캐나다인은 2,460만 명에 달하며, 2016년 기준 실제 RRSP에 기여하는 사람은 22.5%에 불과했다. RRSP에 적립된 기금은 오로지 은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자신의 교육 목적으로 페널티 없이 최대 2만 캐나다달러를, 첫 주택 구매 목적으로 최대 25,000캐나다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이들 목적을 위해 인출한 금액은 각각 10년, 15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세금 지원을 받는 저축 제도가 직장 연금제도, 금융 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연금보험(pooled pension plans) 및 개인 연금저축을 통해 제공되면서 개인은 각자의 노후소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계산을 목적으로 기여율이 8.5%인 확정기여형 연금 회원을 가정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국가 소득비례제도인 CPP에서 조기퇴직은 60세부터 가능하며 이때 계리적 급여 감액이 적용된다. 조기 연금 조정 제도에 의거 연금액은 65세 전 연금을 수급하는 매월에 대하여 0.6%씩, 60세의 경우 최대 36%까지 삭감된다.

QPP에서의 상응하는 조기연금 조정율은 월 0.5~0.6%로, 60세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최대 30~36%까지 감액된다. (여기서 감액조정계수는 수급자의 급여 수준에 비례한다.) 기초 OAS제도와 자산조사형 GIS에서는 조기퇴직이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개인은 65세 이후에 최대 5년까지 기초노령연금(OAS)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연기된 수급액은 연기하는 매월 마다 0.6%씩 늘어나며 70세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최대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소득 조사형 GIS 급여는 수급을 연기할 수 없다.

CPP/QPP 소득비례연금에서도 수급연기가 가능하다. 연금수급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65세 이후 연기되는 매월 마다 0.7%씩 영구적으로 상승하며, 최대치는 70세에 수급할 경우로 42%에 달한다.

### 육아

소득비례연금 CPP/QPP의 경우 7세 미만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적거나 없었던 기간은 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어 연금 증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실업

생애기간 동안 소득이 가장 낮았던 기간은 최대 17%까지 CPP 소득비례제도의 평균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QPP에서는 15%)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업, 질병, 학업, 돌봄 기간 등의 기간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실업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크레딧은 없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개인의 연간 총 소득이 35,927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2018년 기준 최대 7,333 캐나다달러에 대해 15%의 추가적인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연령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36,976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순 소득의 15% 비율로 줄어든다. 소득공제수준과 소득기준은 물가상승률에 완전 연동된다.

### 연금 소득의 과세

공적연금의 급여액(GIS 급여 제외), 사적연금제도의 급여액, 개인연금저축 인출액 및 연금과 노후저축으로 구매한 연금보험 지급액은 모두 일반 과세 목적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자격 조건에 맞는 개인연금소득의 첫 2천 캐나다달러에는 15%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자격 조건에 맞는 연금 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원하는 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액, 그리고 65세 기준 특정 기타 노후저축제도의 인출액과 그러한 저축으로 구매한 연금보험의 지급액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에서는 개인별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부 연금수급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세금 납부 목적으로 개인연금 소득을 나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금 신고 시 개인이 세금 목적으로 총 연금소득의 최대 50%를 배우자나 관습법상 파트너에게 할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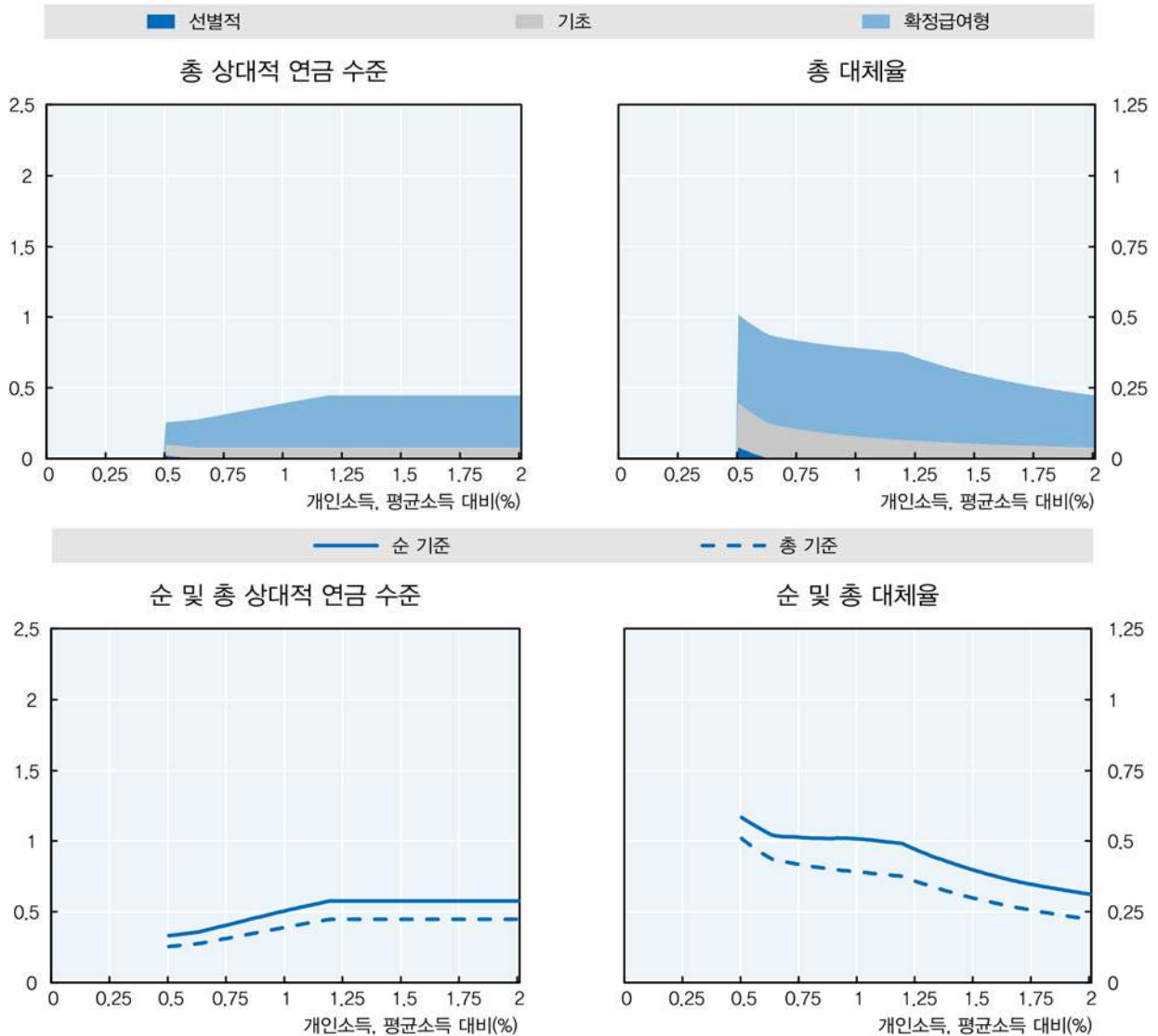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2012년 이래, 근로하는 65세 이하의 CPP 퇴직연금수급자에게도 기여금납부가 의무화되었다. 다만 65~70세는 기여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일하는 연금수급자로서 보내는 매 기여년마다 은퇴후급여(PRB)가 이듬해부터 발생하고 이는 또 기여자 사망 시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연동 지급되므로 노후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QPP도 근로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기여금 납부(마찬가지로 기여년도마다 그 이듬해 추가기여금에 대한 추가 급여가 발생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CPP와 달리 근로하는 연금수급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캐나다,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5.4	31.2	39.0	44.6	44.6	44.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3.1	40.6	50.7	57.5	57.5	57.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0.9	41.6	39.0	29.8	22.3	14.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8.3	51.2	50.7	39.7	31.2	22.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6	7.8	7.3	5.6	4.2	2.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9	9.6	9.5	7.4	5.9	4.2
	11.9	10.4	10.3	8.1	6.4	4.6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827>


## 칠레

### 칠레: 2018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3층 제도, 즉 재분배성 연금(1층), 강제적 개인계정연금(2층) 및 자발적 연금(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에 도입된 개인계정 제도는 확정기여형(DC) 급여이다.

### 핵심 지표: 칠레

		칠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CLP(백만)	9.7	26.7
	USD	15,078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2.9	8.0
기대수명	출생 시	79.9	80.7
	65세 시점	19.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9.7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846>

## 수급요건

확정급여형 제도의 정상 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의 경우 60세이다. 연금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기초연대연금(PBS)은 다른 연금이 없는 개인에 대한 급여이다. PBS는 65세부터 지급 가능하며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지급된다. 연금수령은 칠레에 최소 20년 이상 거주하고 수급신청 전 5년 중 최소 4년간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연금액수가 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대연금(APS)이란 이름의 보충복지연금이 있다. 연금수급자는 확정기여형 연금액이 일정 금액, 즉 최대복지연금(PMAS)보다 적은 경우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급여의 신청 요건은 PBS 신청 요건과 동일하다.

완전정력을 가진 저소득자들은 복지연금 수급 자격도 얻기 때문에 모델링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설정하였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 연금

개인계정제도의 기여율은 기여대상소득의 10%이다. 기여율 외에도 관리비용이 따로 부과된다(관리비용이 의무 기여율에서는 지급되지 않음). 기여대상소득에는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2018년에는 2018년 12월 기준 2,158,401 칠레페소에 해당하는 78.3UF<sup>1)</sup>였다.(2018년 기준 최저임금 대비 최대 해당 소득의 비율은 7.5였다.) 이 상한선은 실질 소득증가에 연동된다.

은퇴 후 퇴직자는 네 가지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누적된 자본은 즉시종신연금(immediate life annuity)을 구입하거나 거치종신연금(deferred life annuity)과 함께 일시금을 받거나 혹은 프로그램화된 인출을 실시하는 데 사용되거나 즉시종신연금 구입 및 프로그램화된 인출을 위해 분할될 수 있다. 기초연대연금(PBS)보다 높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는 개인만이 종신연금형을 구입할 수 있다. 장래비용 충당을 위해 개인연금계정으로부터 15UF의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성별에 따른 연금지급율(annuity rate)을 사용하고 보험 계리적으로 공정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대체율이 산정되었다.

1) UF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통화 단위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1UF는 27,565.79칠레페소(44.80미국달러)였다.

## 선별적 제도 및 보충액

기초연대연금(PBS)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정액 연금이다. 2018년 12월 기준 PBS는 107,304칠레페소이다.

연대연금지급액(APS)은 PMAS 대비 PBS의 비율에 연금액을 곱한 값과 PBS 간의 격차로 계산되는 보충연금이다. 따라서 PBS는 최저연금의 역할을 한다. PMAS도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정액 연금이다. 2018년 12월 기준 PMAS 가치는 317,085칠레페소였다. PBS와 PMAS의 비율은 33.8%였다.

## 최저연금

보장형 최저노령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의 기여 기간과 최저노령연금보다 낮은 총 소득이 필요하다. 최저 월 노령연금액은 70세 미만의 경우 132,258.72칠레페소, 70~75세의 경우 144,514.74칠레페소, 75세 이상의 경우 154,299.05칠레페소이다. 이 급여는 단계적 폐지를 거쳐 노령연대보충급여(APS)로 2023년까지 대체될 예정이다. 그 때까지 2018년 7월 1일 전 보장형 최저연금을 수급한 사람과 2018년 7월 1일 기준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2개의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계정에 축적된 자본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금을 받기에 충분하다면 어떤 연령에서든 허용된다. 첫 번째 조건은 급여액이 PMAS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연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10년간 평균 소득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특정 직종의 육체적으로 고된 근로 조건의 업무에 대해 5년당 1년 또는 2년씩 줄어든다. 이 연령은 최대 10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육아

최대 24주간 소득대체급여를 받는 근로여성(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이 있다. 이 24주 중 처음 18주는 어머니에게만 주어진다. 그 다음 19~24주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급여액을 이전할 수 있다. 대체급여는 출산 전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상한선이 연금 기여금과 동일하다. 급여는 자녀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연금제도에 대한 10%의 의무기여금은 육아 휴직급여에서 지불된다.

1세 미만 자녀가 중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의사가 아이를 돌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의료 휴직을 가질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휴직을 사용하면 어머니(또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아버지)는 휴직 기간에도 임금을 받고 연금제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생존 또는 입양 자녀 한 명당 1개의 연금 바우처를 받는다. 이 급여는 여성이 65세에 도달하면 청구 가능하다. 바우처는 출산시점의 최저임금 18개월분의 10%에 출산 시부터 급여액 수급 시까지의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평균 순 수익률을 더한 값이다. 평균 수익률은 연금제도의 '펀드 C(fund C)' 수익률과 동일하다. PBS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은 PBS에 더하여 일정 지급 형태로 이 바우처를 수급할 수 있다. PBS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개인 연금 계정에 바우처 전액을 수급한 다음 이를 일정 지급 형태로 바꾸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 실업

실업보험은 두 가지 요소, 즉 개인 실업 계정을 통한 자가보험(self-insurance)과 연대 실업 기금을 통한 사회보험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수급 조건은 전자보다 엄격하다.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은 연대 실업 기금에서 실업 급여를 받고 계속해서 연금제도에 기여한다. 기여금은 연대 실업 급여의 10%이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을 신청할 때, 개인은 계정 잔액이 PMAS 10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퇴 직전 10년간 평균 소득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계정에 적립된 기금의 일부(자유목적잉여금, Free Purpose Surplus)를 인출할 수 있다. 이 잉여금은 연간 최대 200UTM<sup>2)</sup>까지, 과세 없이 최대 총 1,200UTM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일시불 인출의 경우 면세는 최대 800UTM까지 가능하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 구조는 누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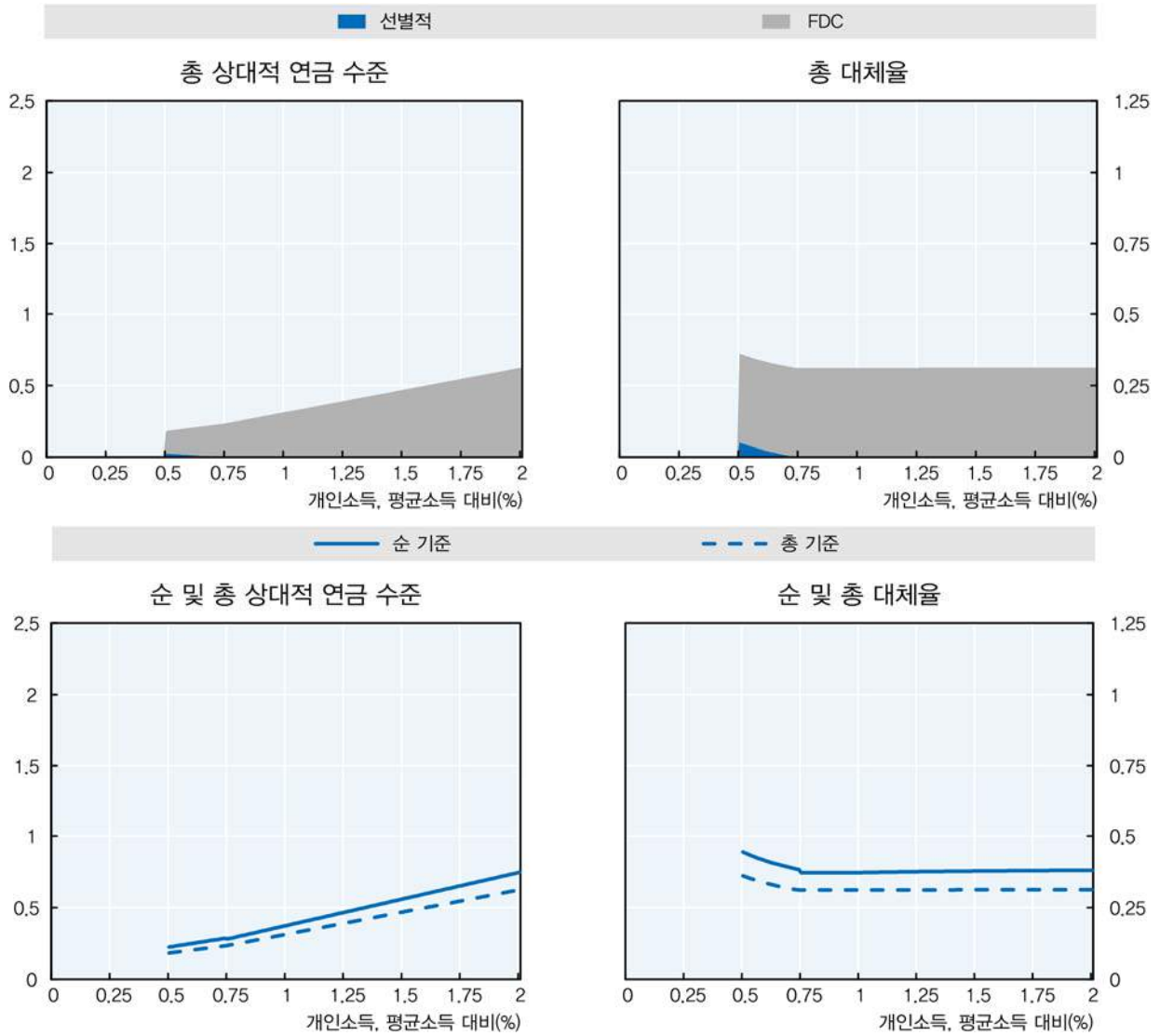
소득 범위(UTM)		한계세율
하한선	상한선(포함)	
-	13,5	0%
13,5	30	4%
30	50	8%
50	70	13,5%
70	90	23%
90	120	30,4%
120 이상		35%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기초연대연금이나 보충연대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수급자는 급여액의 7%를 의료보험에 지불한다.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하위 80% 소득의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들은 면제된다.

2) UTM은 월별과세통화단위(Monthly Taxing Monetary Unit)이다. UTM은 매달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2018년 12월 기준 UTM의 가치는 48,353칠레페소였다.

연금 모형화 결과: 칠레, 2061년, 수급연령 65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8.1	23.4	31.2	46.9	62.5	83.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2.3	27.9	37.3	56.0	74.8	100.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6.2	31.2	31.2	31.2	31.3	27.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44.6	37.2	37.3	37.9	38.1	33.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7	5.7	5.7	5.8	5.8	5.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2	6.9	6.9	7.0	7.0	6.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865>


## 중국

### 중국: 2018년 연금제도

중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강제적 근로자 기여를 전제로 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2층 구조이다. 가입 대상은 도시 근로자들이며, 매개 변수 중 많은 수가 성(province) 단위(국가 단위가 아님)의 평균소득에 좌우된다.

### 핵심 지표: 중국

		중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CNY	82,461	275,121
	USD	12,464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76.7	80.7
	65세 시점	16.2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8.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884>

##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성 60세, 육체 노동자 여성 50세, 사무직 여성 55세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기여년수가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며, 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년에 대해 재평가된 개인의 임금과 성(province) 단위 평균소득의 평균값의 1%이다. 연금 지급액은 임금과 물가의 결합에 연동되는데 최근에는 약 10%이다. 모형에서는 연금액이 매년 임금에 50%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 확정기여형(DC)연금(적립식 또는 명목계정)

2층 제도는 개인계정으로 구성된다. 북동부에 위치한 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외에도 8개 성이 적립식 개인계정제도를 갖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계정은 대체로 명목계정이며 명목상 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는 개인계정제도에 임금의 8%를 납부한다. 펀드 또는 명목계정에 누적된 잔액은 연금 수급 시점에 연금 지급액으로 전환되며 개인의 은퇴연령과 국가 평균 기대수명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연금화 계수로 잔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모든 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공히 적용되는(월 급여액에 대한) 연금화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령	40	45	50	55	60	65	70
계수	233	216	195	170	139	101	56

모델화 결과는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특정 산업이나 직위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 55세, 여성 50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금 급여액은 재평가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42,000위안의 표준 소득세 혜택이 존재한다. 피고용인에게는 과세소득 계산 시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기여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근로자 소득 과세

개인소득세율(임금 및 연봉 소득에 적용).

등급	월 과세소득	세율(%)
1	1,500위안 미만	3
2	1,500위안~4,500위안에 해당하는 소득	10
3	4,500위안~9,000위안에 해당하는 소득	20
4	9,000위안~35,000위안에 해당하는 소득	25
5	35,000위안~55,000위안에 해당하는 소득	30
6	55,000위안~80,000위안에 해당하는 소득	35
7	80,000위안을 초과하는 소득	45

(주: 이 표에서 사용된 '월 과세소득'은 3,500위안 공제 후 남은 월 총 소득을 가리킨다.)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개정된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기초연금 제공을 위해 소득의 최대 20%를 기여한다. 2층 연금제도의 재정은 피고용인의 기여금으로 8%를 충당한다. 이 기여금은 최대 지역 평균 임금의 3배로 제한된다. 개인 계정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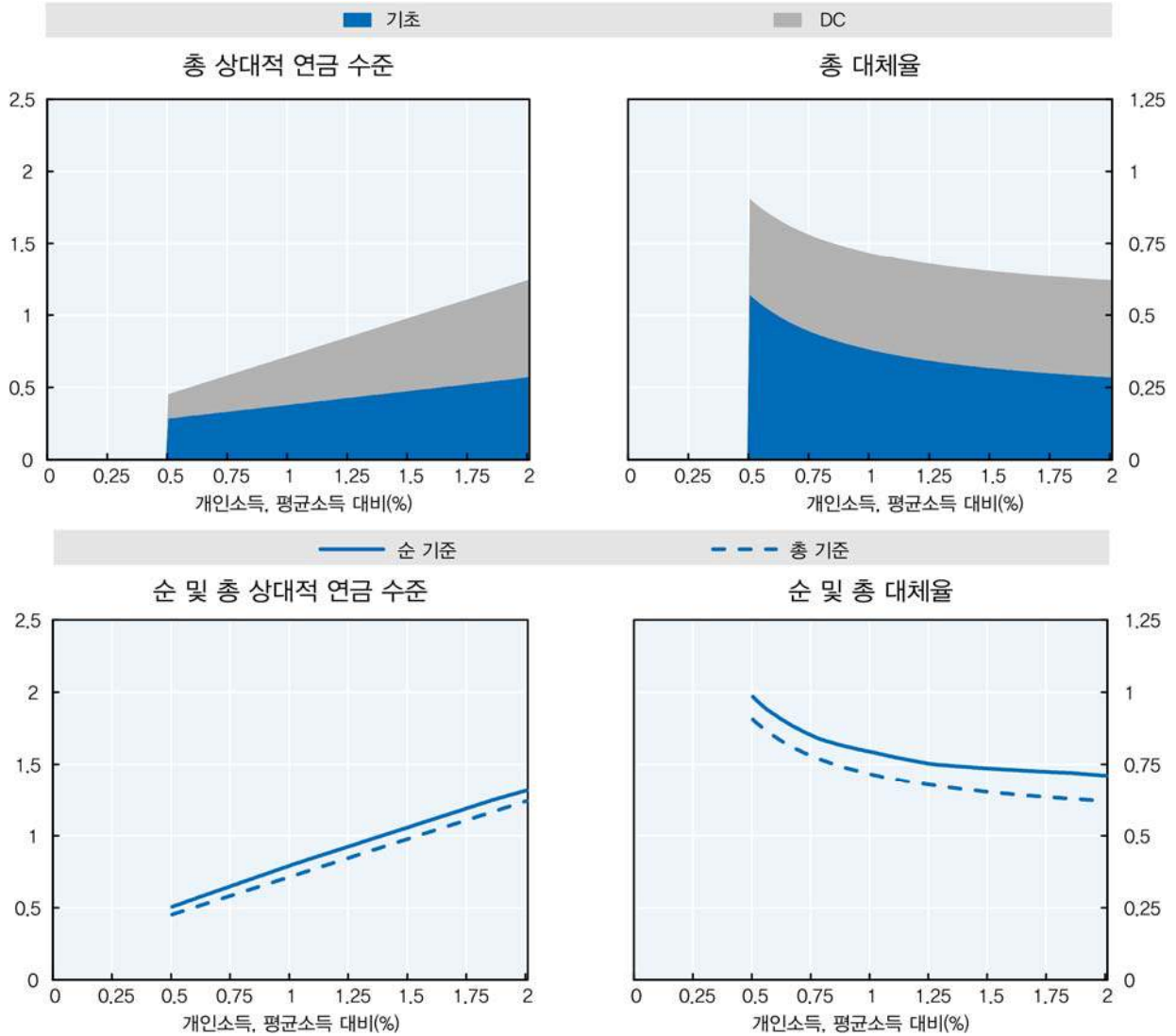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 세금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중국, 2056년, 수급연령 60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5.3	58.4	71.6	97.9	124.2	176.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0.6	65.1	79.4	105.9	131.5	178.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0.6	77.9	71.6	65.2	62.1	58.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8.5	85.0	79.4	73.6	71.1	68.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9.3	16.6	15.2	13.9	13.2	12.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1.0	18.1	16.9	15.7	15.1	14.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903>


## 체코

### 체코: 2018년 연금제도

체코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제도와 의무 가입 (단, 최초 가입 후 탈퇴 불가)의 적립식 사적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기초 급여와 누적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 비례급여를 가지고 있다.

### 핵심 지표: 체코

		체코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CZK	383,304	903,625
	USD	17,63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1	8.0
기대수명	출생 시	79.1	80.7
	65세 시점	18.0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3.8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922>

## 수급요건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성의 경우 63세 4개월이고 여성의 경우 62세 8개월이다. 이 연령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출생집단별로 2개월씩 단계적 증가 중이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을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연금 수급을 위해 최소 35년(중도에 기여기간 공백이 없으면 3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20년(기여기간 공백이 없는 경우 15년)인 사람들은 출생연도가 동일한 남성의 수급개시연령보다 5년 늦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 연금

기초연금 액수는 법정 평균임금의 9%이다. 2018년 기준 연간 급여액은 32,400코루나이다. 2019년 1월 기준 기초연금 액수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10%로 인상됐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은 재직 1년당 소득의 1.5%를 지급한다. 소득 측정지표는 현재 1986년부터 시작해 모든 연도에 걸쳐 평균을 내고 있지만 점차 생애평균에 도달하게 된다. 과거소득은 국가차원의 평균 소득 증가율에 따라 재평가된다.

누진적 급여 산식이 사용되는데, 이 산식에 따르면 평균 경력소득을 산정 기준값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선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41%, 두 번째 기준은 375%이다. 2018년 첫 번째 기준선은 13,191코루나이며 두 번째는 119,916코루나이다. 첫 번째 기준선까지의 소득은 100% 연금산정에 반영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선 사이는 26%가 반영된다. 두 번째 기준선을 초과하는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합산한 총 평균 연금 급여액(정액 및 소득비례요소)이 일반 물가지수와 연금수급자 물가지수 가운데 높은 쪽에 실질 임금상승의 1/2를 더한 만큼 인상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비례연금 요소에 대한 법정 연동요건이 도입될 예정이다.

## 최저연금

신규 제공된 최저 월 공적연금 급여액의 총 가치는 3,470코루나이며, 최저 소득비례연금 770코루나와 기초연금 2,700코루나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부조

개인(그리고 독거 연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월 3,410코루나였다. 주택의 사회적 보호 문제는 주택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사회복지제도의 프레임워크와 주택에 대한 추가세금(surcharge)에 의한 물질적 부조제도 안에서 해결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2.8%로 가정했다.

자발적 사적연금제도는 기본 사례에 모형화되어 있지 않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가입기간 35년이면 표준 수급개시연령보다 3년(5년으로 증가, 그러나 60세 미만은 불가) 일찍 수급 가능하다. 총 지급계수(즉, 기여년수를 지급률로 곱한 것)는 조기수급의 첫 360일간 90일마다 0.9%씩 영구 감액(연 3.6%)되며 361일째부터 720일까지는 90일당 1.2 %씩(연 4.8%), 이후에는 90일마다 1.5%(연 6%)씩 감액된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연령 이후로 연금 신청을 연기할 수도 있다. 총 지급계수는 연기한 기간에 대해 90일 마다 1.5%씩 증가(연 6%)한다. 수급연기에 대해 추가적인 연금 발생은 없다. 또한 근로를 계속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2010년부터 허용된 연금(총 지급계수)은 전액 연금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때 360일마다 0.4%씩 증액) 또한 노령 연금의 절반을 수급할 수 있다. 절반의 노령연금과 근로의 조합은 매 180일의 근로기간마다 1.5%씩 총 지급계수를 증가시킨다.

### 육아

4세 이하 자녀(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연령)의 양육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크레딧이 발생한다. 이 기간은 연금 목적으로 소득을 산정할 때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육아기간으로 인해 평가 기준이 감액 되지는 않는다.(이러한 접근방식이 모든 비기여 기간에 대해 사용된다.)

### 실업

소득비례적 실업보험 수급기간은 연금제도에 반영된다. 실업보험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0세까지는 5개월, 50-55세는 8개월, 55세를 넘으면 11개월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 3년간 실업보험 수급 없이 실업상태로 지내는 경우 역시 반영된다(단, 55세 미만의 경우 수급 없이 실업상태로 보낸 1년간만 반영됨). 연금산정에 사용되는 실업기간은 최대 80%까지만 인정되는데, 이는 경력기간 중 5년간 실업상태였다면 연금 목적으로는 실업기간을 4년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실업기간이 평균소득 산정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기간에 속한다면, 이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보험료가

납부된 소득만 사용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에 대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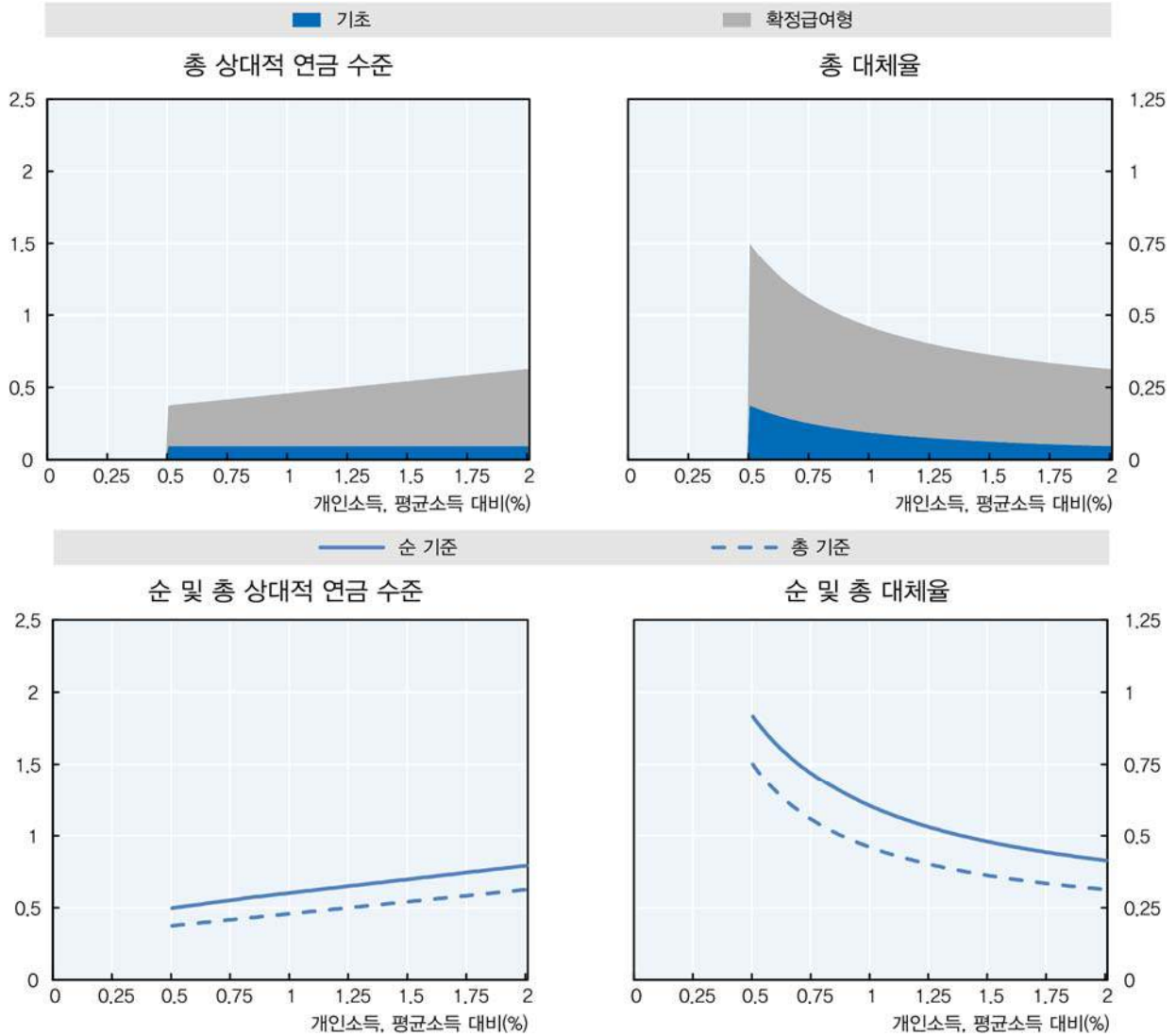
노령연금은 최대 연 439,200코루나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상에 대한 세율은 15%이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자신의 연금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은 납부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체코,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1	41.5	45.8	54.6	63.4	80.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8.5	54.2	60.0	70.6	80.4	99.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4.1	55.3	45.8	36.4	31.7	27.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8.3	70.0	60.0	48.7	42.3	35.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8	10.3	8.5	6.8	5.9	5.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4	13.0	11.1	9.0	7.8	6.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941>


## 덴마크

### 덴마크: 2018년 연금제도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층 연금수급자를 위한 자산조사형 보충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이 있다. 정액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강제적 기업 연금제도(ATP)도 있다. 또한 단체협상 등에 기초한 강제적 퇴직 연금제도도 있는데 고용된 노동인구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다.

### 핵심 지표: 덴마크

	덴마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DKK	421,547	262,590
USD	66,757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1	8.0
기대수명 출생 시	80.7	80.7
65세 시점	19.2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4.9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960>

## 수급요건

공적연금제도는 보편적이며 전체 덴마크 인구를 보장한다. 연금수급권은 덴마크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공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5세이지만 2019-22년에 67세까지, 2030년에는 68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그 이후로 공적 연금수급연령은 기대수명 증가와 직접 연계된다. 전액 공적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2025년 7월 1일까지 4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 노령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15세부터 공적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 중 9/10을 국내 거주해야 한다. 기간이 짧아지면 비례적으로 수급액도 줄어든다.

노동시장 보충연금(ATP)과 강제적 기업연금에 대한 연금권리는 '낸 만큼 받는' 원칙에 근거해서 누적된다. 근로 경력이 길수록, 고용률이 높을수록, 기여이력이 길수록, 기여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수급액은 많아진다.

## 급여 산정

###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 연금액과 보충 연금액으로 구성된다. 특히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연금수급자는 보충 연금 급여액, 개인 수당, 의료 수당도 받을 수 있다.

### 기초 연금

완전 기초연금액은 월 6,237크로네 또는 연 74,844크로네로 평균소득의 약 18% 정도에 해당된다. 기초소득 조사가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322,500크로네(평균소득의 약 3/4)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급여액은 이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율로 감액된다.

### 선별적 연금

보충연금제도의 완전액은 독신자의 경우 월 6,728크로네, 즉 연간 80,736크로네이며, 부부나 동거하는 연금 수급자들은 연간 39,996크로네이다. 실제 액수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 소득원을 조사하여 결정된다(ATP 및 퇴직연금 포함). 이 소득조사 보충연금은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71,200크로네를 초과하면 그 초과소득의 30.9%만큼 삭감된다. 기초연금도 받는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사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보충액은 부부의 총 가용소득이 142,800크로네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16%만큼 삭감된다. 만약 배우자/파트너가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연금보충액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142,800크로네를 초과하면 그 초과소득의 32%가 삭감된다.

특히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연금수급자는 17,200크로네에 해당하는 추가 보충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충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 1회 지급된다. 자산조사적 급여이며 유동자산이 별로 없는 극빈층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유동 자산의 가치는 86,000크로네를 초과할 수 없음)

공적 노령연금제도(기초연금, 소득조사 보충연금 그리고 추가 보충연금)는 평균소득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조정은 이전 2년간의 임금 인상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2%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0.3%가 사회지출 유보금으로 배정된다. 그러므로 연금 및 기타 사회급여의 연계는 임금인상에서 유보금에 대한 할당분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연 근로 소득 60,000크로네까지는 (소득조사)보충수당과 추가 보충연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 ATP - 보충연금에 기반한 강제저축

ATP(덴마크 노동시장 보충연금)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법정 완전적립식 단체보험이다. ATP는 정상 연금수급연령부터 종신연금을 제공하며 가입자 사망 시 피부양자에 대해 유족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ATP는 모든 임금 소득자와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ATP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ATP는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어 보편연금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서 ATP의 노령연금은 보장형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이다. 기여액은 정액 형태이며 - 소득의 일정 비율이 아님 -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일제 근로자는 2017년에 3,408크로네를 납부한다. 기여금의 2/3는 고용주가, 1/3은 근로자가 납부한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여 스케줄(고용주와 근로자 기여의 합)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급여, 병가보험급여, 출산/육아수당 등 노동시장에서 나와 있는 동안의 기업연금 기여액의 손실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의 기여금은 두 배로 인상되어 ATP연금제도에 납부한다.

월 근로시간	<39	39-77	78-116	>116
2009년부터 기여금, 크로네/월	0	94.65	189.34	284

기여금은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면 조정된다.

ATP에 대한 연금 수급권은 ‘낸 만큼 받는’ 원칙에 따라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각 세대는 해당 세대의 수급권에 대한 자금을 대는 구조이므로 ATP는 세대간 이전이 되지 않는다. 수급권은 법정 수급연령부터 지급받는 보장된 명목 평생수급권이다. 납부된 기여금의 80%는 시작 단계에 시장에서 헤지 가능한 장기금리에 맞는 할인율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규 ATP 수급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급권발생(accruals)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해마다 다르다. 나머지 20%의 기여금은 투자 완충장치 및 수명 연장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서 ATP의 자유지급준비금으로 이전된다.

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하면 ATP제도의 지급 연금액과 연금수급권이 상승한다. 이는 획득한 수급권과 함께 상승하는 보너스 수당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형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대한 완전 연동을 가정하고 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 간에 합의된 완전적립식 확정기여형(DC)제도이다. 피고용 근로자의 약 85%가 이러한 제도에 가입해 있다. 1980년대 중반 미미했던 가입률은 현재 약 85%로 상승했는데 피고용 근로자를 보장하는 새 제도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단체로 합의된 완전적립식 확정기여형제도에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가 가입된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의 가입률은 이보다 다소 낮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가입해 있지

않으나 비슷한 제도 수립을 선택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의해 기여율이 결정되는데 동일 단체협약 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사한 기여금을 부담한다. 기여율은 10%에서 18%에 이른다. 모델화에서는 기여율을 12%로 가정했다.

대체로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를 보장하고 장애 및 유족급여, 노령연금, 중증질환 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중 노령급여는 완전적립식 보험급여이지만 다른 급여는 현재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보험급여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수급권은 ‘낸 만큼 받는’ 원칙에 근거해서 누적된다. 원칙적으로 각 세대는 자신의 수급권에 대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며 보험 보장에 귀속되는 것 외에는 세대 내 또는 세대간 이전은 없다.

급여는 대개 종신연금으로 지급된다. 제도는 급여액 지급의 선납 등을 위해서 지급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허용한다. 일부 제도는 기여금의 일부를 일괄저축상품에 할당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덴마크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급자격부여(vesting) 문제나 이동성 문제는 없다.

## 경력 차이

실직, 출산휴가, 시간제고용 및 기타 경력 차이의 요소들이 사적연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총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가연금제도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금 제도의 구성으로 이러한 영향은 완화된다. 따라서 고용이나 고용 상태의 변화는 전체 연금액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

## 지연 퇴직

공적 연금수급연령(2018년 기준 65세)에 도달하여 공적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갖는 사람은 선택에 따라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대신 나중에 더 높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 단, 공적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매년 750시간 이상의 개인 근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연금 수급은 최대 2회, 총 10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 육아

출산휴가와 부성/모성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기여금액의 두 배가 ATP에 납부된다. 수급자는 기여금의 1/3을 납부하며 2/3는 정부/지방정부에서 납부한다. 정부 비용은 민간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출산/부성/모성 육아휴직급여는 다 합해서 최대 52주간 지급될 수 있다. 출산 4주 전과 출산 후 첫 14주는 모가 사용한다. 부는 출산 후 첫 14주 중에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부성휴가). 마지막 32주는 부와 모가 나눠서 혹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이후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에는 대개 ATP 기여를 하는 다른 사회보장 급여로 옮겨가게 된다.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한 젊은 부모가 휴가기간 만료 후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면서 ATP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퇴직 연금제도에서는 육아로 인해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나 기여가 없다.

## 실업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보험(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이 고용주의 납부 의무를 대신하며 ATP 기여금은 실업보험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2배로 납부된다. 정부 또는 민간 고용주와 실업보험기금은 ATP 기여금의 2/3를 납부한다.

실업 보험이 모두 소진되고 개인이 실업/사회부조 상태가 되면 ATP 기여율이 정상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ATP 기여금의 2/3을 납부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실업기간에 대한 기여나 크레딧은 없다.

실업보험과 연계된 자발적 조기은퇴 프로그램도 있는데, 62세와(2023년 64세에서 2028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정상 연금수급연령 사이에 급여액을 지급한다. 수급요건은 최소 30년간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자발적 조기수급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조기수급제도로 옮겨가는 과도기간 중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액은 실업급여액과 동일한데 실업급여의 최고율인 91%를 한도로 하며 전일제 근로자는 2018년 기준 월 16,956크로네, 시간제 근로자는 11,304크로네에 해당한다. 공적연금과 자발적 조기퇴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직전 3년 전까지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수급을 연기하고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최대 실업 급여율(2018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8,633크로네, 시간제 근로자는 12,422크로네)에 해당하는 높은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수급률이 적용된다.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개인이 3년간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일회성 비과세 일시불 금액이 연간 최대 실업급여액의 72%까지 지급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 기여금 및 저축액의 관리

종신연금 및 정기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기여금은 공제 가능하다. 2018년부터 이러한 연금 저축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연금기여금 세제 혜택, Pension Contribution Tax Credit)이 도입되어 최대 70,000크로네의 기여금에 대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지급된 연금에는 일반적으로 정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에 4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시불 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기여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공제가 불가능한 일시불 연금제도의 지급액은 세금이 면제된다.

종신연금, 정기연금, 일시불 연금 등 연금제도의 모든 투자 수익에는 15.3%의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이나 크레딧은 없다. 연금수급자는 재산가치세(property value tax)에 대해 자산조사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종신연금과 정기연금의 주기적 연금 지급액에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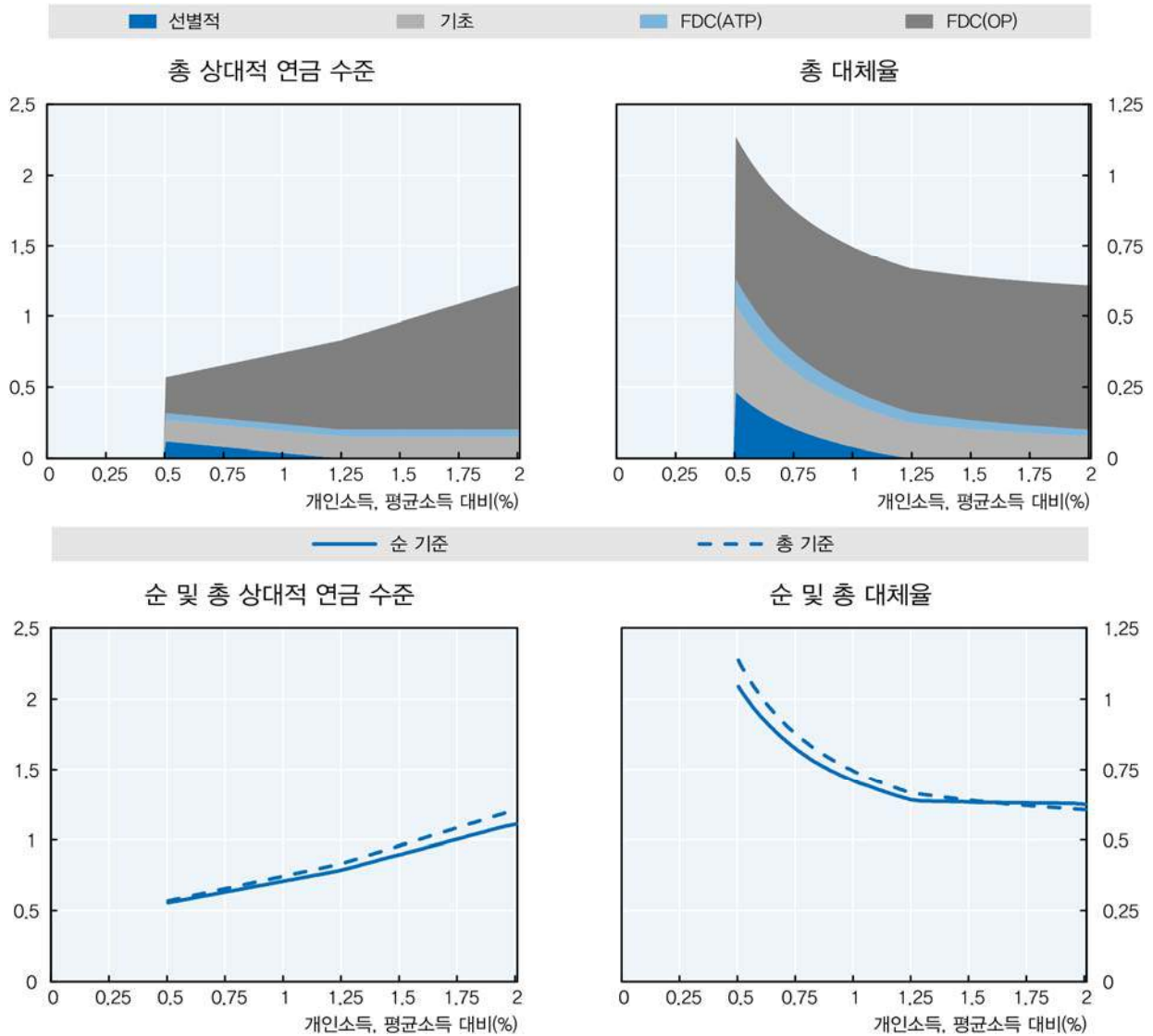
일시불 연금을 제외하고 ATP, 퇴직연금, 기타 사적 연금저축에는 ETT 세금제도가 적용된다. 일시불 연금에는 TTE 제도가 적용된다.

연금 저축의 모든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현재 세율은 15.3%이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덴마크에서는 일반 세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없다. 따라서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덴마크, 2070년, 수급연령 74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6.9	65.6	74.4	96.0	121.3	172.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5.6	63.2	70.9	89.6	111.0	144.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113.8	87.5	74.4	64.0	60.7	57.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4.5	82.3	70.9	63.3	62.5	57.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7	12.0	10.1	8.6	8.1	7.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7.2	13.1	11.1	9.4	8.9	8.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4	11.3	9.6	8.5	8.4	7.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5.8	12.3	10.5	9.3	9.2	8.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979>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2018년 연금제도

소득비례 공적연금과 강제가입 적립식 연금을 결합시킨 연금체계를 두고 있다. 또한 정액의 기초연금 및 사회안전망 연금도 두고 있다.

### 핵심 지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16,103	35,230
	USD	19,008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7.0	8.0
기대수명	출생 시	78.2	80.7
	65세 시점	18.1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4.9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2998>

## 수급요건

2018년 연금수급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63세 6개월이다. 연금수급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하여 2026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 중이며, 그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와 연계한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정액 기초금액(base amount)은 2018년 4월 기준 월 175.44유로이며 소득비례연금 수급시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일명 노령연금의 보험 요소)의 연금 급여액은 납부된 평균 기여금 대비 해당 개인 명의로 납부된 기여금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된다. 은퇴 시 보험 요소의 누적값에 가입 1년당 지급되는 연금액을 곱하여 연금 수급액을 산정한다. 가입 1년당 지급되는 연금액은 2018년 4월 기준 6.161유로였다.

기여금이나 급여 목적의 소득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급되는 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0%, 기여금 세수변동률 80%를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된다. 이것은 기초금액, 소득비례연금의 1년당 지급액, 선별적 제도의 공적 연금 조정 시에도 적용된다.

### 선별적 연금

공적연금은 최저연금 보장을 제공한다. 보장액은 2018년 4월 기준 189.31유로다.

공적연금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금을 채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에스토니아 영주권자이 있거나 임시거주권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임시거주권이 있는 사람에게 연금을 신청하기 직전 최소 5년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만약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라면 사회부조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급여액은 가계 규모, 소득, 주거비에 따라 상이하다. 급여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된다.



## 확정기여형 연금

적립식 옵션을 선택한 가입자는 소득의 추가 2%를 본인의 연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2011년에는 기여금의 절반,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는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는 전액기여가 재개되었다.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기여금의 4%가 이 기금으로 전용된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즉,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 적립식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2011년부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만이 2층(second pillar)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70만 명 이상이 개인계정을 선택했다.

2009-2011년의 2층 기여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 때문에 약 28만 명의 사람들이 2014-2017년에 2층(신청은 자발적이었음)에 더 높은 기여액을 낼 것이다. 국가가 내는 기여분은 4%에서 6%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약 10만 6천 명이 개별 기여액을 2%에서 3%로 늘리는 것을 선택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은퇴했고 기여기간 15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표준 연금수급연령으로부터 최대 3년 전부터 수급할 수 있다. 조기수급 시 연금은 연 4.8%씩 감액된다.

### 수급연기

공적연금은 정상 수급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매년 10.8%씩 증액된다. 연기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며 수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여금도 납부하며 연금은 매년 재산정 된다.

### 육아

국가가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양육수당 수급자를 위해 기여금을 대납해 준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20%(2018년 470유로)이다.

2013년부터 이 제도가 개선되었다.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에 전국 평균임금의 4%에 해당하는 월 기여금을 한 쪽 부모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연금대상 근속 기간을 획득하게 된다. 이 규정은 정확한 출생일에 따라 적용되는데 일부 부모는 이전 규정에 따라 자녀 1명당 추가 연금대상 근속 기간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 실업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최대 연 6천 유로, 또는 월 500유로 이하의 일반 면세 금액(비과세 수당)이 적용된다. 연금에 대한 기본 면세 증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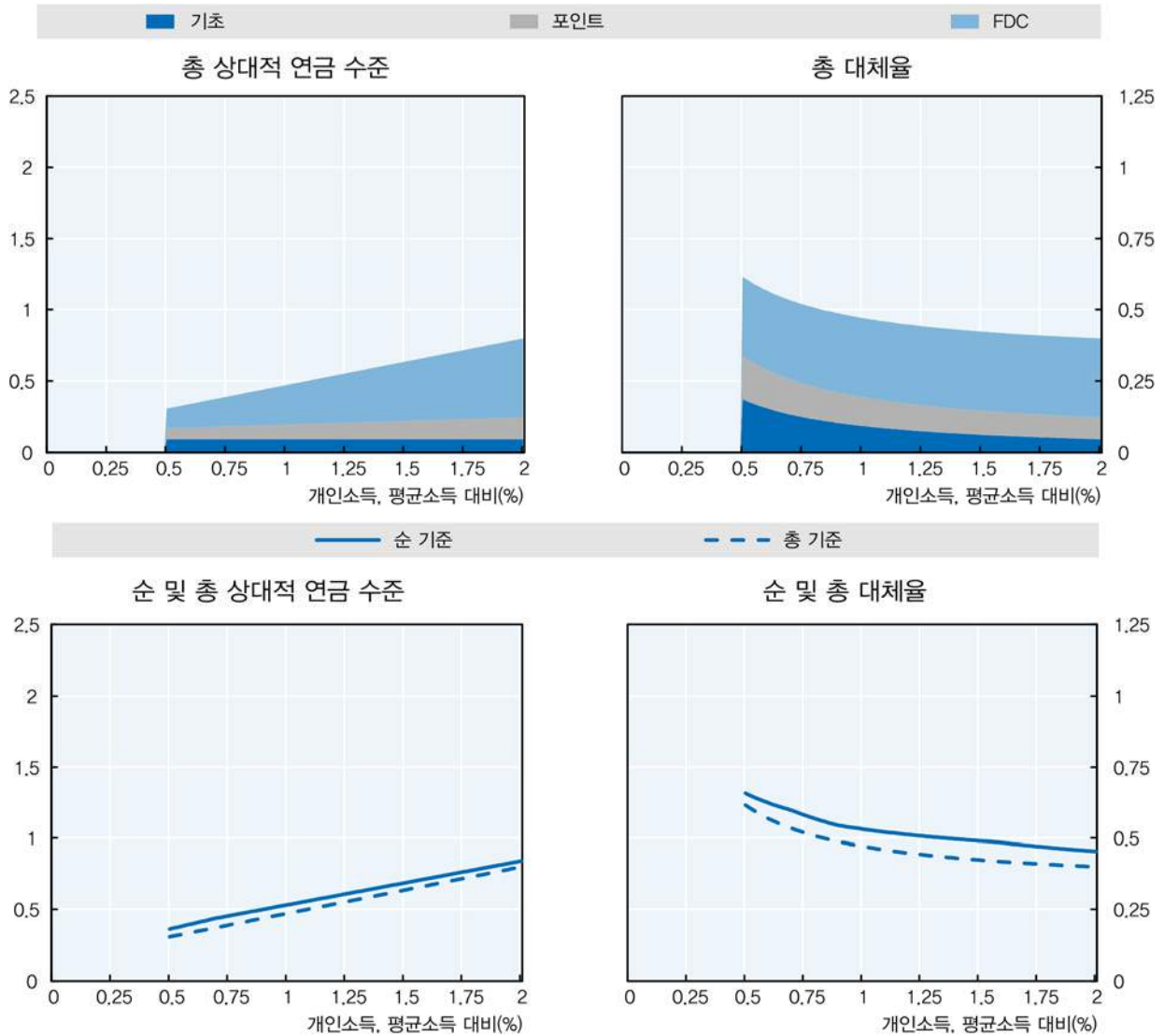
따라 2018년 기준 월 5백 유로를 초과하는 연금 소득만 소득세(20%)의 대상이 된다.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 지급액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에스토니아, 2067년, 수급연령 71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0.7	38.9	47.1	63.4	79.7	112.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6.1	45.4	53.1	68.4	83.8	114.6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1.4	51.8	47.1	42.3	39.9	37.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5.6	58.0	53.1	49.0	45.3	41.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7	7.3	6.7	6.0	5.6	5.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0	8.4	7.6	6.9	6.5	6.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3	8.2	7.5	6.9	6.4	5.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6	9.4	8.6	7.9	7.3	6.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017>


## 핀란드

### 핀란드: 2018년 연금제도

연금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선별적 기초연금(국민연금+보증연금)과 여러 대상자에게 사실상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다양한 법정 소득비례 연금 제도가 있다.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제도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사전 적립하고, 공공부문 제도는 부과식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미래 연금 기여금 상상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기금을 두고 있다)

### 핵심 지표: 핀란드

		핀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43,984	35,230
	USD	51,918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1.4	8.0
기대수명	출생 시	81.6	80.7
	65세 시점	20.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40.1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036>

## 수급요건

**소득비례연금**은 17세부터 68세까지 모든 소득을 바탕으로 누적되며, 1958~1961년생의 경우 69세까지, 196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70세까지 증가한다. 연금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연금 누적은 18세부터 시작한다. 소득비례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기 기간이나 금액 한도는 없지만, 연금 보장을 위한 최소 소득 수준은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거주 조사(기여의무 없음)를 통해 지급하며, 소득비례 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 따라 감액된다. 국민노령연금(national old-age pension)은 65세부터 지급된다. 노령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성인으로서 핀란드에 40년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금액도 조정된다.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에서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거주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거주 기간에 비례한 금액 조정은 없다. 보증연금은 국민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제도로부터 정상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핀란드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보증연금은 모든 연금 소득에 대하여 감액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여러 소득비례제도 중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TyEL)를 여기에서 다룬다. 핀란드 근로자의 65% 이상이 이 제도에 가입해 있다. 다른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규정은 TyEL과 매우 비슷하다.

2005년 이후 지급률은 18~52세 연금 대상 소득의 1.5%이며, 53~62세에 1.9%, 63~67세 4.5%이다.

2017년 이후 지급률은 장기적으로 모든 연령 집단에 대하여 연간 소득의 1.5%이다. 2017~2025년의 경우 가입 근로자의 지급률은 17~53세 1.5%, 53~62세는 1.7%, 63세 이상은 1.5%이다. 2026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1.5%의 지급률이 일괄 적용된다.

과거소득은 국가 전반 소득과 물가를 함께 고려하여 재평가한다. 임금 상승은 80%의 가중치를, 물가상승률은 2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은퇴 후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상승률 20%와 물가상승률 80% 산식을 이용해 상향 조정된다.

2010년 이후 새로운 소득비례연금의 수준은 2009년 이후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여기에는 기대수명

계수라는 메커니즘이 적용되는데, 명목확정기여형 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연금의 계리적 현재가치(actuarial present value)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계수의 산정에는 지난 5년간의 남녀 사망률 통계치를 사용하고 2%의 연간 할인율을 가정한다. 기대수명 계수는 각 인구집단에 대해 62세에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18년 20세의 나이로 경력을 시작한 사람은 기대수명 계수가 0.868이며 1947년 출생자와 비교하여 13.2% 적은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1998년 인구집단의 62세 기대여명은 1947년 인구집단 대비 6.5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이나 연금대상소득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다. 그러나 연금보험에 대해 최저 소득 한도는 있다. 이 한도 미만의 소득에 대한 자발적 기여도 일부 경우 가능하다.

소득비례 연금제도가 분화되고 연금 제공자가 다양해지면서 핀란드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에서 제도들을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사람도 연금센터를 통해 합산된 연금을 받는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2018년 독신 연금 수급자에 대한 완전기초연금 월 급여액은 628.85유로였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소득과 소액 공제(small disregard)간 차액의 50%까지 감액되는데, 공제액은 2018년에 월 55.54 유로였다. 핀란드 및 여타 국가로부터의 다른 연금소득이 월 1,299.88유로 또는 1,157.71유로를 초과하면 국민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비례 연금의 일부는 연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최저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하면서 발생하는 연금액 증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 선별적 연금(보증연금)

2011년부터 보증연금은 연금수급자에게 월 775.27유로의 최저연금 수준을 보장한다. 단, 국민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합산액이 언급된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보증연금은 모든 연금 소득에 의하여 100%까지 감액된다. 보증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연금수급자와 독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조사와 지불 가능한 연금액의 기준, 국민연금과 보증연금은 물가에 맞추어 매년 인상된다. 최근 수년 사이 국민연금의 연간 조정이 일시 중단되거나 별개의 의회법에 의해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보증연금은 별도 의회법에 의해 인상되었다.

## 경력 차이

근로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연금 수급권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에는 사회급여가 지급된다. 급여액이 이전 임금을 근거로 한다면 이전 임금은 특정 비율까지 연금 지급에 산정된다.(이 비율은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 양육 수당과 학업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 임금 기준이 사용된다.

### 조기수급

소득비례제도에서 전액 조기수급은 불가능하다. 각 인구집단별 최저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61세에는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누적된 연금 수급권의 25%나 50%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조기 수급분에 대해서는 각 인구집단별 최저 연금수급연령 이전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매월 0.4%의 감액이 이루어진다. 연금은 수급자가 65세가 되어도 정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조기 국민노령연금은 가입자의 63번째 생일 다음달 초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1958~1961년 출생자는 64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대하여 법으로 지정된 최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노령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액은 정상 연금수급연령 65세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매달(일반 노령연금 대비) 0.4%씩 영구 감액된다.

## 수급연기

소득비례제도의 수급연기에 대한 증액율은 최저 연금수급연령 이후 월 0.4%(연 4.8%)이다.

국민연금은 정상 연금수급연령 65세 이후로 연기 가능하다. 이후로 연금액은 지급이 연기되는 매달 0.6%씩 증액된다. 196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이 비율은 소득비례 연금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연금 지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도 있다. 법에서는 소득비례 노령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하는 고용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 지급 이후, 연금수급자는 다른 근로를 시작하거나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전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은 68세(또는 인구집단에 따라 69세나 70세)까지 연 1.5%의 지급률에 따라 추가 누적 연금액을 발생시킨다.

## 육아

2005년부터 출산휴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은(18세 이후로) 임금의 1.17배를 기준으로 발생되며 이는 가족급여의 기준이 된다. 소득비례제도의 육아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1개월이다.

육아수당을 수급하는 무급 육아휴직 기간(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휴직자가 평균 소득의 약 1/5에 상당하는 월 728.34유로(2016년 기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이 발생한다. 이 조건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동일하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은 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발생하는 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 공동 지급한다. 육아수당 수급 기간에 대한 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육아수당을 수급하는 무급 육아(학업) 기간에 기초한 연금 부분은 국민연금의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업

2005년 개혁 이후 소득비례 실업급여에서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비율(75%)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다만 63세 이전에 수급하는 실업급여에서만 연금크레딧이 발생한다.

실업보험급여는 500일간(약 23개월, 월 평균 21.5일) 지급된다. 500일이 끝나기 전에 61세가 되는 경우 소득비례 실업급여가 65세까지 지급될 수 있다. 소득비례 수당을 수급하는 개인은 최저 연금수급연령(1958년 이전 출생자는 62세)에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수급에 대한 감액 없음)부터 소득비례 노령연금을 받거나 65세까지 소득비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소득비례 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는 실업자는 정액 또는(다양한 조건의) 소득조사형 실업부조(노동시장 지원 또는 기초 실업수당)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급여의 수급 기간은 연금 수급권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에서 61세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1958~1961년 출생자는 조기수급 감액 없이 64세에 국민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다. 단, 연금 소득은 특별 연금소득 공제(아래 참조)를 받을 수 있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소득 수급자는 지방소득세에 따라 소득에서 수당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 과세에서 연금소득 공제 금액은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민연금과 기초 공제를 기준으로 한다. 2018년 최대 공제액은 9,040유로였다. 과세소득이 최대 공제액보다 큰 경우 초과분의 51%가 공제액에서 감액된다. 즉, 소득이 26,765유로를 초과하면 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소득 공제는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제는 ‘불용’, 즉 연금소득 공제가 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중앙 정부 소득세에도 연금소득 공제가 있다. 2018년 최대 공제액은 11,560유로였다. 과세소득이 최대 공제액보다 큰 경우 초과분의 38%가 공제액에서 감액된다. 즉, 소득이 41,981유로를 초과하면 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소득 공제는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완전 장애연금의 경우, 중앙 정부 세금에서 115유로가 공제된다. 부분 장애연금의 경우 그 절반이 공제된다.

근로자는 근로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는데, 이는 연금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의 연금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2013년 이후): 연금소득 공제액을 제한 연금소득이 47,000유로를 초과하면 중앙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율은 47,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5.85%이다.

## 지방의 근로소득 세금 공제

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납세자의 근로소득(연금이 아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제 금액은 소득이 2,500~7,230유로인 경우 51%, 7,23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8%이며 최대 공제액은 3,570유로이다. 근로소득에서 근로 관련 경비를 뺀 금액이 14,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4.5% 감소한다.

## 중앙 정부의 근로소득 세금 공제

중앙 정부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이 혜택은 납세자의 근로소득(연금이 아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2,500유로를 초과하면 소득의 12%에 대하여 혜택이 제공되며 혜택 상한선은 1,540유로이다. 근로소득에서 근로 관련 경비를 뺀 금액이 33,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혜택 금액이 1.51% 감소한다. 혜택은 점차 감소하다가 납세자의 소득이 120,000유로를 초과하면 완전히 소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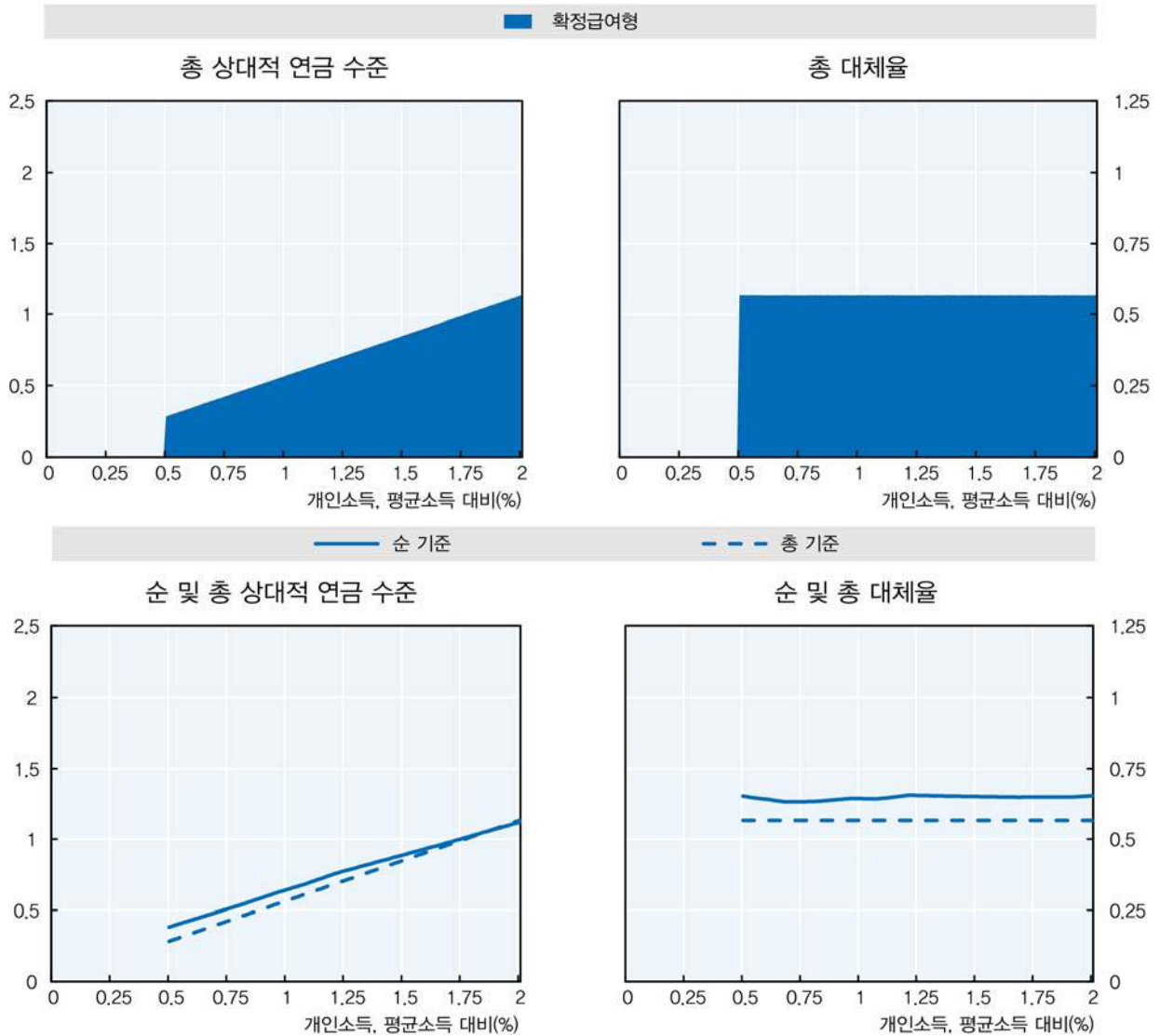
혜택 금액이 중앙 정부의 소득세보다 큰 경우, 나머지 혜택은 지방소득세, 교회세, 의료보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여금에 적용될 수 있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 또는 실업 보험 기여금은 없다.

건강보험(연금수급자)과 근로소득 보험(근로자를 위한 일일 수당)에 대한 별도의 기여금이 있다. 가입자의 건강보험 기여금은 지방 정부 세제에서 정의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 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기여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임금 및 급여,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 보험 기여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기여율은 1.53%,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보험 기여율은 1.53%이며 세금에서 공제 가능하다.

연금 모형화 결과: 핀란드, 2064년, 수급연령 68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8.3	42.4	56.5	84.8	113.0	169.5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8.3	50.9	64.2	88.6	111.8	158.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6.5	56.5	56.5	56.5	56.5	56.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5.1	63.1	64.2	64.9	65.2	68.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8	9.8	9.8	9.8	9.8	9.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3	10.9	11.1	11.3	11.3	11.9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055>




## 프랑스

### 프랑스: 2018년 연금제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연금체계는 확정 급여형 공적연금과 포인트제도에 기반한 기업연금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자산 조사형 최저기여연금(minimum contributif)도 두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선별적 최저소득 보장 제도가 있다(APSA).

### 핵심 지표: 프랑스

		프랑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39,436	35,230
	USD	46,54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3.9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4	80.7
	65세 시점	21.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7.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074>

## 수급요건

완전 공적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저 기여 기록(2019년 기준 62세로 법적 은퇴가 가능한 1957년 출생자에 대해 41.5년)이 있고 최저 법정 연금수급연령(1957년 출생자의 경우 62세) 또는 67세(1957년 출생자)에 도달해야 한다. 2010년 개혁에서는 최저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전액연금 수급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출생년도에 따라 상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14년 개혁에 따라 최저 기여 기간은 1954년 출생자의 경우 165분기에서 197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172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최저 기여연금(*minimum contributif*)은 퇴직자가 전액연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연금 수준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모형에서는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172분기 동안 공적연금에 기여하다가 65세에 은퇴하는 경우를 가정했으나 ARRCO 연금은 감액을 피하기 위해 66세를 공식 연금 수급연령으로 적용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주요 공적연금제도(*regime general*)는 완전경력기간(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장되는 중)을 충족하면 50%의 지급율을 보장한다. 완전경력기간에서 모자라는 각 분기에 대해 연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감액된다.

- 연금 금액은 전액 기여 기간과 비교하여 못 미치는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1분기 모자랄 때마다 0.58% (=1/N, N=완전경력 기간 분기 수))
- 또한, 개인이 전액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은퇴를 결정하는 경우, 연금 금액은 모자란 분기당 1.25% (연 5%)씩 추가 감액된다. 이 비율(*décote*)은 1953년 이후 출생자에게 해당되며 한도는 최대 25%이다.

연금 산정에서 기준 소득은 생애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25년간의 소득 평균을 적용하고 과거 소득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재평가된다.

연금 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지표의 연수에 대한 기준과 물가에 따른 재평가 정책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의 대체율은 근로자의 경력기간 내내 소득의 시간 프로파일에 민감하다. 연금 대상 소득에는 상한이 있는데, 2019년 기준 40,524유로였다.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

## 최저기여연금(minimum contributif)

‘일반 연금제도(regime general)’ 및 관련 제도에는 비선별적 최저연금제도가 있다. 전액연금을 수급하려면 기여 기간이 41.5년(1957년 출생자) 이상이거나 연령이 67세(1957년 출생자)를 넘어야 한다.(최저연금은 짧은 기여기간에 비례해서 조정된다.) 2019년 연 급여액은 7,638.78유로였다. 이 금액은 연금수급자가 최소 120분기 동안 기여하면 8,347.09유로로 상승한다. 최저기여연금과 다른 기초연금의 합계는 연간 상한액 14,129.88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최저연금의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 강제적 퇴직연금

Agirc-Arrco 제도는 민간 부문과 농업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Arrco와 Agirc 제도는 2019년에 통합되었다. 이전까지 민간 부문과 농업 부문의 피고용인(연간 소득 최대 약 120,000유로까지)은 모두 Arrco 제도에 기여했으며 Agirc 제도에는 경영진(연간 소득 최대 약 325,000유로까지)만 기여했다.

급여는 주요 공적연금제도(regime general)의 상한선 미만에 대해 납부한 6.2%의 기여금과 이 상한선의 1~8배 사이로 납부한 17%의 기여금(2019년 324,182유로)으로부터 발생한다.

매년 적립한 포인트의 수는 연금포인트 비용으로 나눈 기여 가치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은퇴 시 연금포인트 가치를 곱해서 연금 급여액으로 환산된다. 2019년 연금포인트 가치는 1.2588유로였다. 2018년 연금포인트 비용은 16.7220유로였다.

연금포인트의 비용과 가치는 사회적 파트너 간 합의에 의해 조정된다.

이 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금 비용이 임금 상승률에 따라 상향 조정되며 포인트 가치는 2024년까지 물가에 따라, 2034년까지는 물가상승률에 0.9%p를 더한 값에 따라, 그 이후로는 물가 50%와 임금 50%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 선별적 최저급여(Allocation de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 ASPA)

2019년 기준 독신의 경우 65세에 도달한 사람은 연 10,418.40유로(부부는 16,174.59유로)의 자산조사형 최저 소득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물가에 맞춰 조정된다. 완전경력 근로자는 강제적 기업연금이 1층 공적연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노령부조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노인들은 주거수당(aides au logement)을 받을 수 있다. 자격기준은 소득수준, 주거비, 부양가족 수 및 거주 장소에 따라 다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 즉 최저 법적 연금 수급연령 이전의 연금수급은 20세 이전에 근로 경력을 시작했고 완전 기여 기간을 채운 사람의 경우 주요 공적연금제도에서 60세부터 허용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조기수급이 가능한데 수급연령 또는 기여년수 또는 둘 다에 따라 감액된다. 기여기간이 부족한 경우 연금은 아래 표와 같이 연금수급연령 또는 부족한 연수 중 유리한 쪽에 맞춰 조정된다. 전액연금 은퇴연령보다 5년 앞서 수급하는 경우 연금은 전체 금액의 78%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기간이 1년 부족한 경우라면 96%까지만 감액된다. 기본 공적연금제도에서 감액 없이 조기수급 조건을 충족한 수급자는 기업 연금도 전액 수급한다.

전액연금 수급연령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까지 남은 기간	10	9	8	7	6	5	4	3	2	1
완전기여년수에서 부족한 기간(년)						5	4	3	2	1
계수	0.43	0.50	0.57	0.64	0.71	0.78	0.83	0.88	0.92	0.96

## 수급연기

최저 법적 수급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전액연금 기여 조건(1957년 출생자의 경우 41.5년)을 충족한 경우, 공적연금에서는 추가되는 매 분기마다 1.25%씩(연 5%) 급여액이 증가한다. 수급이 연기된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Agirc-Arrco 포인트를 축적하게 된다.

전액연금을 받는 경우 근로와 연금 수급을 제한 없이 병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다.

## 육아

2010년 이후 출생했거나 입양된 자녀에 대해 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자녀 1명당 4분기의 크레딧이 자녀의 어머니에게 주어진다. 이 기간 중 어머니가 근로를 계속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명(또는 두 명이 분할)에게 추가 4분기 동안 자녀 교육을 위한 크레딧이 부여된다.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 최소 9년 동안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최종 연금액을 10% 인상해준다. 육아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거나 시간제로 근로한 기간 역시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 Foyer - AVPF*) 크레딧은 부모가 최저임금을 버는 것으로 가정해서 주어진다. 첫 두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이 적용되며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가족 급여 수급 및 소득조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 크레딧은 공적제도에서 자녀 한 명당 2년(8분기)씩 누적된다.

## 실업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 기간 50일을 기여 기간 1분기로 산정하며 실업 기간은 연 최대 4분기까지 인정된다. 이 기간은 25년간의 최고 소득기간을 바탕으로 하는 평균기준임금(*salaires annuel moyen*)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실업 기간에 크레딧을 제공한다. 실업급여가 없는 최초 실업 기간에 최대 1년 반까지 크레딧이 적용된다. 그 이후의 비자발적 실업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 기간 이후인 경우에만 최대 1년(55세 이상은 5년)까지 크레딧을 제공한다.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실업기간 시작 이전에 강제적 퇴직연금제도 중 한 곳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실업기간 중에 연금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이 포인트는 ‘일일 기준임금(*salaires journalier de référence*)’에 맞춰 산정되며 일 기준임금은 마지막 임금(연봉)을 365로 나눈 금액이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노인을 위한 구체적 공제는 없다.

### 연금 소득의 과세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업무 경비 면제 10% 대신, 2016년 과세 연금에는 10%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연금수급자 1명당 최소 379유로이며 가구당 상한액은 3,715유로이다.

ASPA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노인은 표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사회 기여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사회 부채 환급금(CRDS,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ASA(*contribution addi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강제적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질병)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낮은 경우 이들 기여금은 면제된다.

연금에 대한 CSG는 누진적이다. 2019년 기준 세율에는 네 종류(0%, 3.8%, 6.6%, 8.3%)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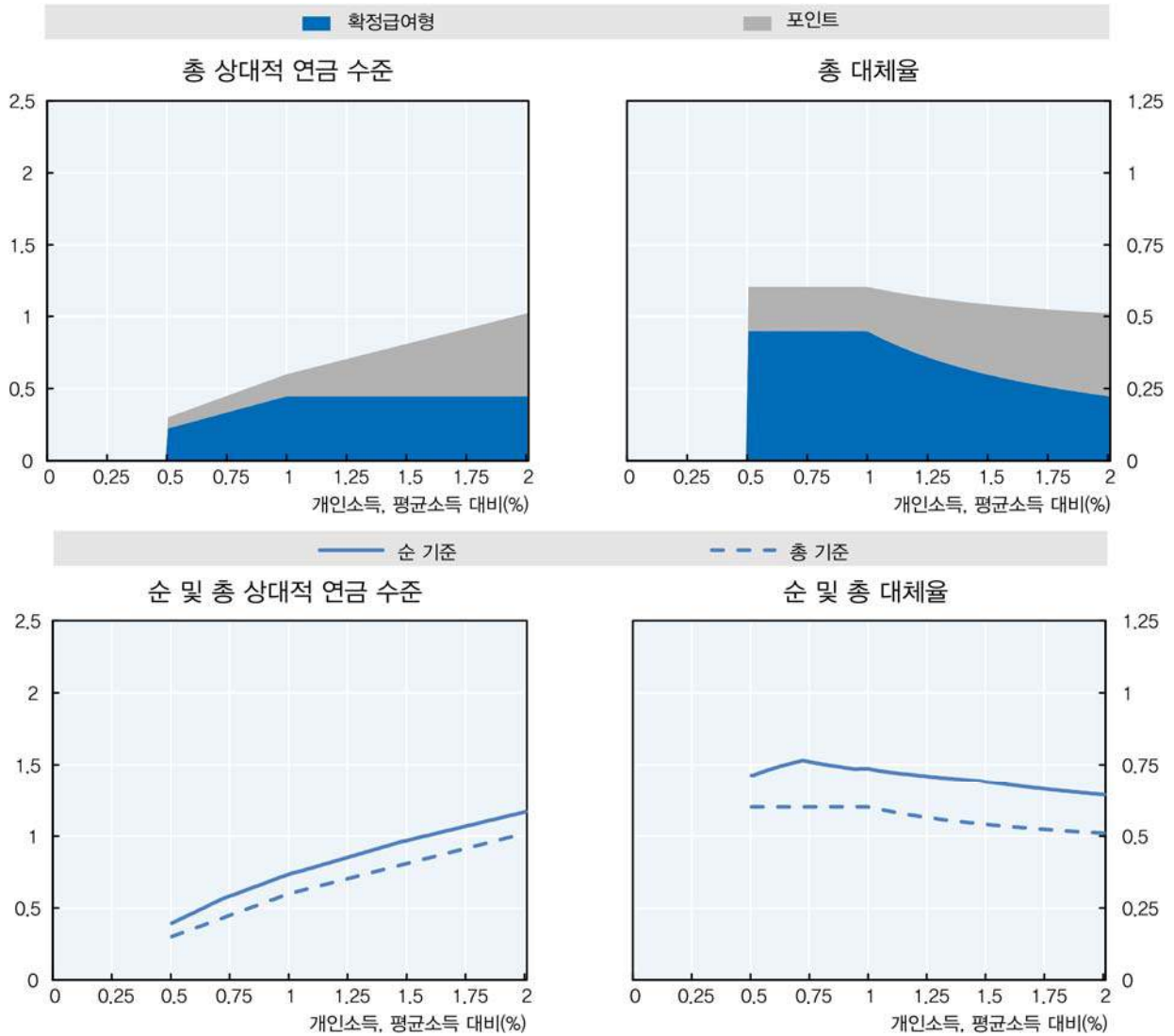
- 총 소득이 첫 번째 기준 미만인 연금소득자의 연금액에는 CSG, CRDS, CASA가 부과되지 않는다. 첫 번째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1,030유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1,580유로이다.
- 총 소득이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 사이인 연금소득자의 연금액에는 3.8%의 CSG가 부과된다. 두 번째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1,350유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2,070유로이다.
- 총 소득이 두 번째 기준과 세 번째 기준 사이인 연금소득자의 연금액에는 6.6%의 CSG가 부과된다. 세 번째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2,090유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3,210유로이다.
- 총 소득이 세 번째 기준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자의 연금액에는 8.3%의 CSG가 부과된다.

CSG가 면제되지 않는 연금소득자에게는 0.5%의 CRDS가 부과된다.

6.6%나 8.3%의 CSG를 납부하는 연금소득자에게는 2013년 4월 1일부터 0.3%의 CASA(*contribution addi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가 부과된다.

강제적 퇴직연금에는 1%의 사회보장기여금(질병)이 적용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프랑스, 2062년, 수급연령 66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0.1	45.1	60.1	81.0	102.0	144.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9.4	58.5	73.6	97.1	116.9	156.6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0.2	60.2	60.1	54.0	51.0	48.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1.4	76.0	73.6	69.0	64.4	60.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0	11.0	11.0	9.9	9.3	8.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0	13.9	13.5	12.6	11.8	11.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093>


## 독일

### 독일: 2018년 연금제도

법정 공적연금체계는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비례 부과방식제도이다. 연금 산정은 연금포인트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는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 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핵심 지표: 독일

		독일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50,546	35,230
	USD	59,664	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0.1	8.0
기대수명	출생 시	81.1	80.7
	65세 시점	19.8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6.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112>

## 수급요건

현재 일반 노령연금은 최소 기여년수가 5년 이상이면 65세 6개월/7개월(연금수급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결정)부터 수급할 수 있다. 기여년수가 5년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은 꾸준히 증가 중이며, 1964년 및 그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67세가 될 것이다. 1964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65세 기준 45년 이상 기여한 사람에게는 특별 장기가입 연금이 지급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가입자가 평균소득 수준으로 1년간 기여하면 1연금포인트가 확보된다. 평균소득은 국민소득계정상의 평균소득과 거의 비슷하며, 2018년 기준 37,873유로였다. 기여의 근거소득이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얻게 되는 연금포인트도 1보다 크거나 작아진다. 기여금은 2018년 기준으로 연 소득 최대 78,000유로까지만 부과된다.

은퇴 시에는 매년 취득된 연금포인트가 합쳐진다. 연간 연금액 산정 시 연금포인트의 합계에 ‘연금포인트 가치’를 곱하는데, 이 가치는 2018년에 378.36유로였다. 연금포인트 가치는 신규 퇴직자 및 기존 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연금포인트 가치는 기본적으로 총 임금상승에 비례해서 매년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기여 계수 (contribution factor)’는 법정 연금제도와 보조금을 받는 (자발적)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 변화를 반영한다. 기여율이 증가하면 연금포인트 가치의 조정이 줄어들게 된다. 표준화된 연금 수급자 수 대비 표준화된 기여자 수 변화를 측정하는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는 연금포인트 가치를 법정 연금제도의 부양률 변화에 연계시키게 된다. 이 부양률은 기여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다. 연계산식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조정의 규모를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1인당 총 임금 대비 연금포인트 가치 증가율을 차츰 낮추게 된다.

연금포인트 가치뿐만 아니라 연금포인트 산정을 위한 관련 평균소득은 구 동독 지역 연금에서는 약간 다른 값이 적용된다. 2017년, 동독 연금의 가치를 서독 수준과 맞추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독 연금의 가치는 2024년까지 서독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연금 규정에 차이가 없게 된다.

### 사회부조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는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개인의 기본적 필요 충족이 목적이다. 자산 조사형 급여는 개인의 필요와 해당 가구소득(연금 급여를

포함)간의 차액이다. 이러한 필요의 평균은 자산조사형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2017년 기준 1인당 9,768유로로 설정되었다.

## 자발적 사적연금

은행, 보험사 또는 투자펀드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자발적 사적연금(소위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도 존재한다. 리스터연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모형에서는 기여율을 4%로 가정하고 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입기간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급여액은 영구 차감에 의해 감액되는데 법정 은퇴연령이 증가하면서 차감폭도 커진다. 법정 연금수급연령(196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7세) 이전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급여는 연금 수급자가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까지 매년 3.6%씩 영구 감액된다. 그리고 63세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는 67세에 개시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연금 수급액이 훨씬 낮아지는 데 근로 연수가 4년 짧고 추가 연금포인트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45년의 가입기간을 완료했다면 감액 없이 63세에 연금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고용기간, 10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 또는 육아기간, 혹은 단기실업(UB1)기간 등은 모두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61-62세 사이의 실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이 연령은 1964년 출생자에 대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조기수급은 63세 4개월/6개월부터 가능하다.

### 수급연기

연금수급연령을 연기하면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한 달에 0.5%씩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 육아

1992년 또는 그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한쪽 부모가 3년간 연 1포인트씩 연금포인트를 취득한다.(평균소득에 근거한 기여기간과 동일하게 취급) 1992년 이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2포인트를 취득한다. 이러한 혜택은 부모의 근로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며 부모가 나눠가질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이러한 양육 관련 혜택은 세금을 통해 재원이 충당된다. 또한 1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기간은 연금 수급요건에 필요한 기간(*Berücksichtigungszeit*)으로 인정되며 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1명 이상의 10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하거나 2명 이상의 10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근로 여부 무관) 이 기간에 대한 연금 수급액은 50% 증가한다. 보너스는 연 0.33연금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총 누적 보너스는 연 1연금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실업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을 대신해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1단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UB1, *Arbeitslosengeld I*) 중에는 실업직전 총 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기여금이 납부된다. 1단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 및 기여년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된다. 그 이후에는, 자산조사적이며 더 낮은 비율이 지급되는 두 번째 유형의 실업급여(UB2, *Arbeitslosengeld II*)로 넘어가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실업보험이 연금제도에 어떤 재정적 기여도 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노인에 대한 (구체적)별도 혜택은 없다. 법정 한도(*Grundfreibetrag*) 이하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법정 한도는 2018년 독신 개인 기준 9,000유로다. 이 조항은 연금수급연령과 생산가능연령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된다.

### 연금 소득의 과세

과세 제도가 TTE에서 EET로 변경되고 있는 중이다. 소득 중 과세소득의 비율은 개인이 처음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퇴직년도에 따라 상이하다. 2018년 기준 연금의 76%가 과세 대상이었다. 연금소득 중 과세소득의 비율은 2020년 까지 연 2%p, 2020년~2040년에는 연 1%p씩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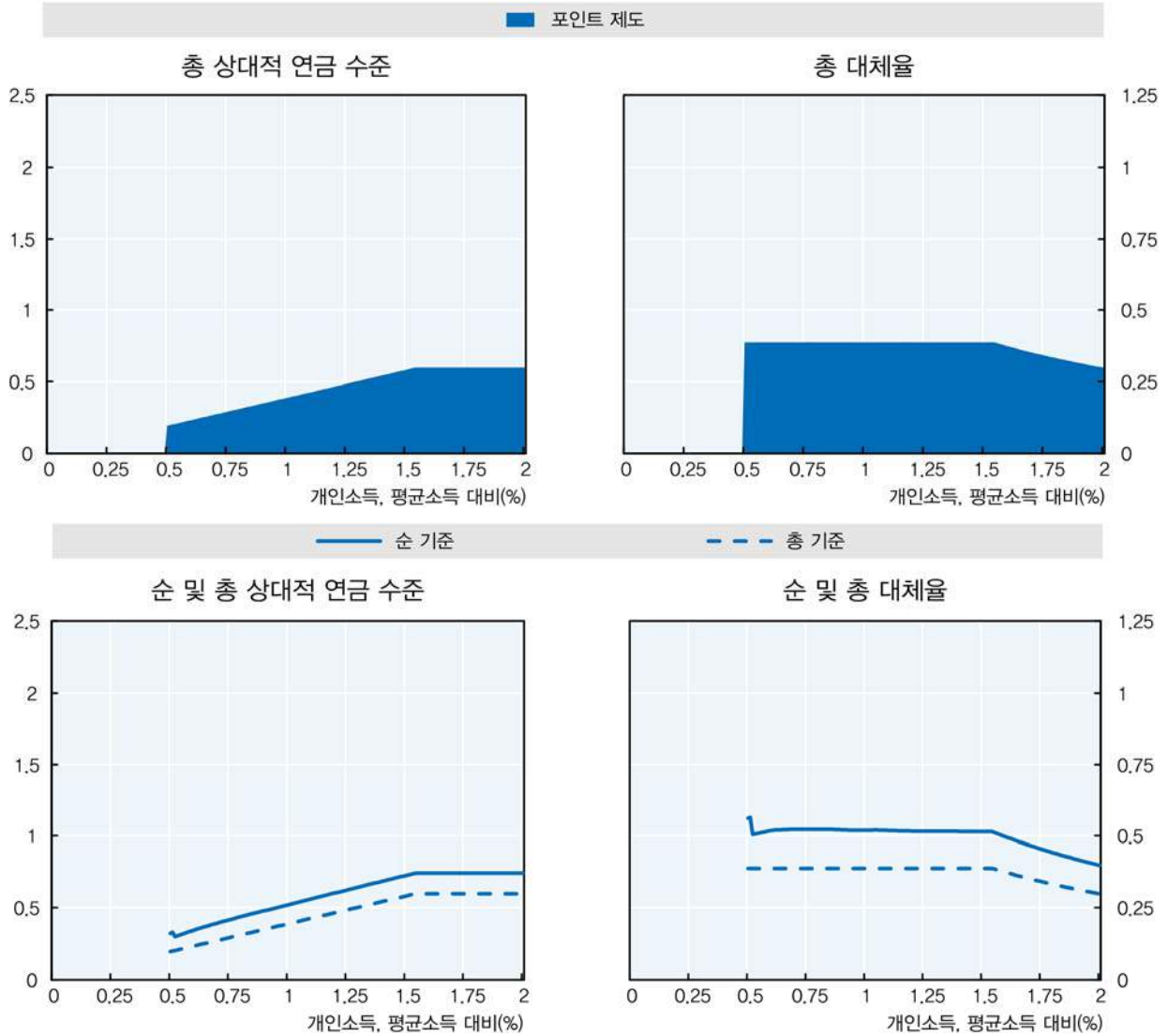
연령과 무관하게 수급하는 연금 중 총 138유로에 대해 추가 면세가 적용된다. 또한, 국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연금수급자의 경우 이들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면세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연금소득으로부터 건강보험 제도(2018년 기준 8.3%)와 장기요양 제도(2018년 기준 2.55%)에 사회 보장기여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연금수급자는 연금제도와 실업 보험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독일, 2063년, 수급연령 67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9.3	29.0	38.7	58.0	59.7	59.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1	41.4	51.9	72.3	74.0	74.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8.7	38.7	38.7	38.7	29.8	19.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6.1	52.2	51.9	51.4	39.7	26.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7	7.7	7.7	7.7	6.0	4.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2	10.5	10.4	10.3	8.0	5.3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131>


## 그리스

## 그리스: 2018년 연금제도

연금은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되며,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국가연금)과 기여형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충적 보조연금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OECD에서 모델화하지 않는다.

## 핵심 지표: 그리스

		그리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21,214	35,230
	USD	25,04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6.9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0	80.7
	65세 시점	20.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7.8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150>

## 수급요건

수급개시연령은 4,500일 이상의 기여이력(15년에 해당)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공히 67세이다. 12,000 근로일(40년)의 기여이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62세에 급여를 전액 수급할 수 있다. 고되거나 비위생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부양자녀나 장애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는 혜택이 있다. 최저 노령연금은 15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소득과 연계되지 않은 국가연금으로, 국가 예산으로부터 직접 재원을 조달한다. 그리스 내 거주 기간을 바탕으로 한다.(가령 15세 이후 연금수급 제한연령까지 40년 이상 그리스에 거주하였으며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384유로)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이 15년까지 1년씩 줄어들 때마다 이 금액은 2% 감소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 15년에 대한 국민 연금은 345.60유로이다.

## 소득비례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기여형 연금이다. 지급률은 0.77%부터 시작해 15년까지 매년 상승하며, 가입 후 39번째 해 이후로는 2%이다. 과거 소득은 그리스 통계청(Greek Statistical Authority)이 결정하는 평균 근로자 소득에 따라 재평가된다.

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의 상한선은 월 5,860.80유로다.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보조연금(auxiliary pension)은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무적 부과식 확정급여형 제도이다. 2012년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보조연금 기금이 ETEA라는 단일 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이 개정법의 목적 중 하나는 NDC 규정에 따라 ETEA 연금을 운영하려는 것이었으나 아직 이 부분은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조 연금은 OECD에서 모델화하지 않는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남녀 모두 62세에 가능하며,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67세까지 매달 1/200이 감액된다. 12,000일 이상 기여한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 2015년 8월 19일 이후 감액된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연금수급연령인 67세가 될 때까지 10%의 추가 감액이 적용된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불가능하다.

### 육아

규정화된 비기여 기간은 자녀의 수(첫째의 경우 300일, 이후 자녀 한 명당 600일, 최대 자녀 3명에 대해 1,500일까지 거래 가능)를 바탕으로 한다. 이 기간은 연금 수급 및 산정을 목적으로 되살 수 있다.

육아 기간을 되살려면 2011년 1월 1일 이후로 유효한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근로 기간 3,600일이나 가입 기간 12년을 마쳐야 한다.

### 실업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엄격한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의제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업 기간을 되살려면 2011년 1월 1일 이후로 유효한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근로 기간 3,600일이나 가입 기간 12년을 마쳐야 한다. 최초 청구자의 경우 실직 전 14개월 동안 125일 이상의 근로 기간, 또는 실직 전 2년 동안 200일 이상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두 달은 기준 기간에서 제외된다.

최초 청구자에게는 신청 전 2년 동안 연 80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시작 전 4년에 대하여 400일의 실업급여 수급 제한이 적용된다. 직전 4년 동안 이미 400일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청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수급 기간이 400일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연금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전체 의제 인정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노인을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이나 크레딧은 없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급여액은 일반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상이 군인, 전쟁 피해자 및 그 가족, 시각장애인, 하지 마비 환자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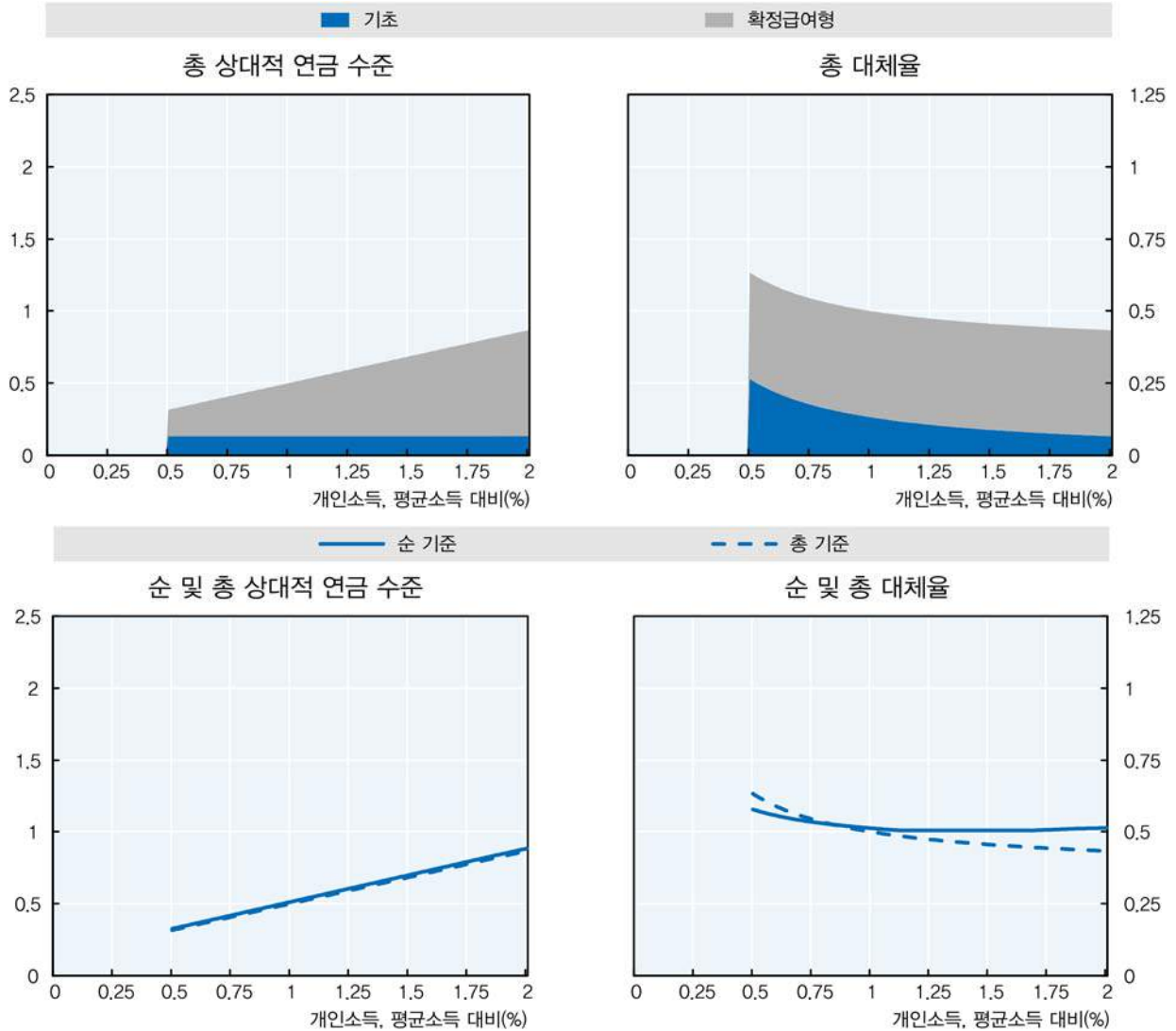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2010년 8월 1일부터 연금수급자는 매월 연금수급자 연대 기여금을 납부한다. 이 금액은 연금 급여액에서 공제되며 연금수준에 따라 3%(연금 급여액 1,400.1유로~1,700유로)에서 14%(급여액 3,500.01유로 이상)까지 상이하다.

연금수급자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위해 7.10%의 기여금을 납부한다. 또한, 연금수급자는 근로하는 한 (추가 고용이 새로운 연금으로 인정되든, 기존 연금의 재산정에 해당하든 무관하게) 노령연금 기여금을 납부한다.

그리스 정부와 EC/IMF/ECB가 합의한 양해 각서에 따라 (총)노령연금액에는 일정 비용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그리스, 2058년, 수급연령 62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1.6	40.7	49.9	68.2	86.4	121.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5	41.8	51.1	69.7	88.2	121.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3.1	54.3	49.9	45.5	43.2	40.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7.6	53.3	51.1	50.3	51.3	53.5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8	11.0	10.2	9.3	8.8	8.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7	10.9	10.4	10.2	10.4	10.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169>


## 헝가리

### 헝가리: 2018년 연금제도

헝가리 연금체계는 최저연금을 결합시킨 소득 비례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비례연금은 강제적이며, 일원화되어 있고 확정급여형(DB) 부과식 제도이다.

### 핵심 지표: 헝가리

		헝가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HUF(백만)	4.1	11.2
	USD	15,316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9.2	8.0
기대수명	출생 시	76.5	80.7
	65세 시점	16.9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3.4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188>

## 수급요건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최소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한다.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2018년 기준 63.5세로, 2022년 65세까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또한 소득비례연금과 최저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모두 최소 20년의 근속 기간이 필요하다. 15년 근로한 경우 최저연금에 대한 수혜자격은 없고 부분연금만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 공적연금은 강제적 확정급여형제도다. 소득비례연금은 가입 첫 10년 평균소득의 33%로 산정된다. 가입 11년에서 25년까지 1년당 2%, 26년에서 36년까지 1년당 1%, 37년에서 40년까지 1년에 1.5%, 그 이후에는 2%씩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월별 순 임금(총 소득에서 기여금과 세금을 제함)이다. 과거 소득은 은퇴 직전 연도의 국가 전체 평균 소득에 맞춰서 재평가된다. 연금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액은 월 28,500포린트이다. 증가분은 정부가 결정한다. 액수는 2008년 1월 이래 변경되지 않았다.

표준 연금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기타 충분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조사 노령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수당은 사회부조제도의 일환이며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이 옵션은 연령에 관계없이 적격기간이 최소 40년이고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적격 기간에는 소득활동기간 외에도 산모수당, 육아안심급여, 재가 아동양육수당, 양육지원금, 개호급여 등의 수급기간도 포함된다. 최소 32년(개호급여의 경우 30년)의 소득활동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적격기간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 한 명당 1년(최대 7년)씩 줄어든다.

## 수급연기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은 추가적 근무기간 1개월당 0.5%씩 증액된다. 최종 연금액은 연금 수급연령 이후 근속기간이 충분한 경우 은퇴 전 월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있다.

## 육아

1998년부터 육아안심급여, 양육수당 및 육아지원금 등과 같은 급여에 대하여 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급여액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 연금기준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육아안심급여(*gyermekgondozási díj*)는 유아양육수당(*infant care allowance*)이 만료된 이후 부모 중 한쪽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모의 보험기간만큼 제공되지만 자녀가 두 살이 될 때까지(최대 84주) 수급이 가능하다. 자녀가 6개월이 된 이후 부모는 시간 제한 없이 소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급여액은 전년도 일 평균소득의 70%로 최저 임금의 두 배까지이다.(2018년 193,200포린트) 개인부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2018년에는 10%였다. 육아안심급여는 과세 대상이다.

재가 아동양육수당(*Gyermekgondozást segítő ellátás*)은 부모 중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최대 36개월) 또는 쌍둥이의 경우 초등학교 의무 입학년도 말까지, 중증장애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경우 열 살이 될 때(최대 120개월)까지 해당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수급은 보편적이다. 월 금액은 가족 내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08년 1월부터 28,500포린트로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다. 다둥이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곱해진다.(쌍둥이의 경우 2배, 세 쌍둥이의 경우 3배 등) 2014년 1월 1일 이후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급여에 대한 자격을 다시 획득하거나, 자녀가 둘 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면 양육수당은 최대 두 자녀에 대해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쌍둥이 등 동일 임신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 자녀가 태어날 때 한 자녀에 대한 수당 수급자격을 창출하며 수당은 다음 자녀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다.) 자녀의 첫 돌 이후에는 조부모도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6개월이 된 이후 부모는 시간 제한 없이 소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부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2018년에는 10%였다.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해당 가구의 구성과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단기간의 합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급여액은 부가되지 않는다.

육아지원금(*gyermeknevelési támogatás*)은 부모 중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수당으로 막내의 세 번째 생일과 여덟 번째 생일 사이 기간에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수급한다. 수급은 보편적이다. 수혜자는 재가 시간의 제한 없이 주 30시간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 월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다. 급여액은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부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2018년에는 10%였다.

## 실업

실업자는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실업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실업기간에 대한 소득지표는 (i)실업급여액 또는 (ii)실업 전후 근로소득의 평균 중 유리한 것으로 한다.

## 구직급여

구직자가 되기 직전 3년 동안 360일 이상 근로한 구직자는 근로일 10일당 1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즉, 최소 수급 기간은 36일이며 최대는 90일이다.

법적으로 구직급여는 최장 90일간 지불되며, 수당은 기존 평균 급여의 60%이나 최저임금의 100%(2018년 기준

138,000포린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구직급여액은 실업 직전 4분기의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구직자가 해당 기간 동안 두 명 이상의 고용주 밑에서 근로한 경우, 수급액은 모든 고용을 합한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 연금수급 전 구직보조금

구직급여와 더불어, 고령실업자들은 45일간 구직급여를 받고 구직급여수급권을 소진했거나 구직급여가 고용으로 인해 종료되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갖지 못하는 경우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구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보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급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하여야 하며 구직급여 종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 연금수급에 필요한 기여 기간(부분 수급 15년, 전액 수급 20년)이 충족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에서는 구직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연금수급 전 구직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충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 최저임금의 40%(2018년 기준 55,200포린트)이다. 구직급여 산정이 상기 합계보다 적은 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구직보조금도 이 낮은 금액과 동일해진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 세금 혜택은 없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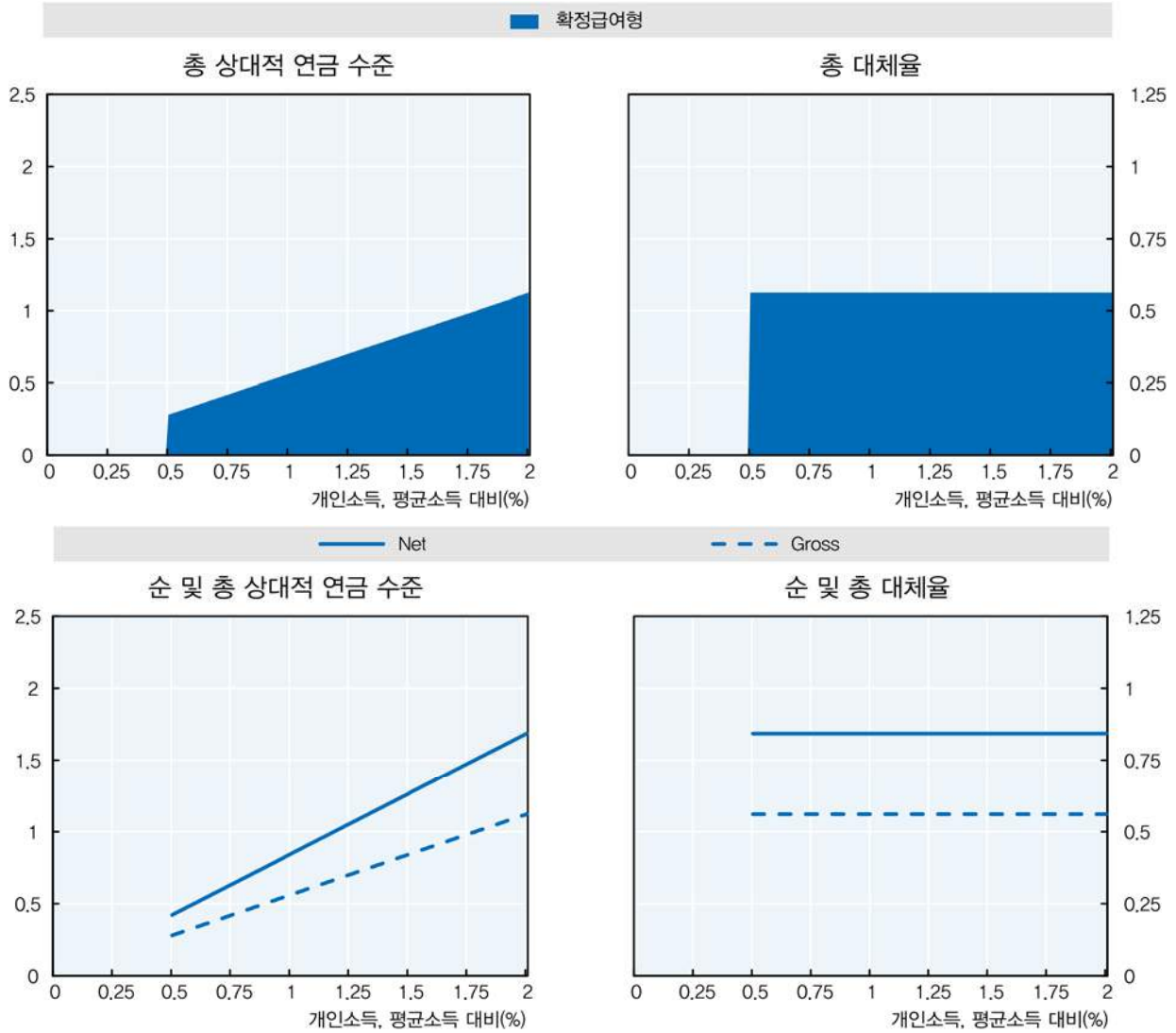
연금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연금 수혜자가 수령하는 소득은 연금 및 건강보험 기여금 납부 대상이다.(2007년 이래 연금 기여금 납부대상에 포함)



연금 모형화 결과: 헝가리, 2061년, 수급연령 65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3	44.0	58.7	88.0	117.4	176.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4.8	67.2	89.6	134.4	179.2	268.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8.7	58.7	58.7	58.7	58.7	58.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9.6	89.6	89.6	89.6	89.6	89.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4	9.4	9.4	9.4	9.4	9.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4	14.4	14.4	14.4	14.4	14.4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207>


##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2018년 연금제도

소득조사에 기반을 둔 기초연금(국민 연금)과 강제가입의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ISK(백만)	9.2	4.5
	USD	84,51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2.1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8	80.7
	65세 시점	20.4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6.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226>

## 수급요건

정상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7세이다. 전액 기초연금은 40년간 거주해야 수급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비례적으로 감액되며 16세에서 67세 사이에 최소한 3년은 거주해야 한다. 민간부문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연금수급연령은 67세이나 해상에서 25년 이상 일한 어부의 경우는 60세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연금을 보장하며 연기금에 납부해 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완전 기초연금액 가치는 연 478,344크로나로 평균 근로자소득의 6%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며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완전 환수된다. 이때 사회보장급여, 보충연금이나 사회 부조는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근로소득 혹은 자본소득)이 258만 크로나 또는 평균소득의 31%를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되고 449만 크로나 또는 평균소득의 53%를 초과하면 지급액이 없다. 기초연금은 물가 혹은 임금에 연동될 수 있다. 모형에서는 물가 연동을 가정했다.

### 선별적 연금

두 번째 요소는 보충연금이다. 이 급여의 최대 가치는 독신자의 경우 연 151만 크로나로 평균 소득의 약 18% 정도이다. 이 급여는 근로소득이 연 132만 크로나(평균소득의 약 16%), 기업연금이 328,800크로나, 자본소득이 98,640 크로나를 초과하면 감액된다. 보충연금에서 소득조사에 따른 감액율은 258만 크로나까지는 38.35%,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13.35%이다.

사회부조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거나 수급자가 사회부조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에 다양한 사회부조급여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 대한 가구보충수당 등 추가적인 보충 및 지원을 위한 특별 보충수당이 있다.

### 강제적 퇴직연금

모든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을 위해 이들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16세에서 70세까지의 국민들에게 강제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최저 기여율은 소득의 12%이다. 근로자는 총 임금의 4%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8%를 납부한다. 공공부문과 그 외 특정 부문에서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더 크다.

법에서는 기여년수 40년의 경우 대체율 56%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재직년당 지급률이 1.4%가 된다.

연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생애평균소득이다. 연금대상소득에는 한도가 없다. 과거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3.5% 금리를 더하여 재평가된다. 모형화에서 과거 소득은 소득성장률에 의거하여 재평가된다고 전제한다.

연금지급은 6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수급개시를 65세로 앞당길 수도 있고 70세로 연기할 수도 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상 조기퇴직규정은 기금, 나아가 기금 가입자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상 수급개시연령이 67세이며 6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급하는 경우 연 7%씩 연금이 감액된다. 기초연금이나 선별적 연금은 조기수급이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최대 72세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급여는 매월 0.5%씩 인상된다. 최대 30%까지의 인상이 가능하다.

강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 수급을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시 급여액은 연 8%정도씩 인상된다.

### 육아

국가사회부조제도는 장기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세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 학업 중인 저소득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근로도 학업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급여가 그것이다.

### 실업

최소 10%의 기여가 부과되는 기여기준(contribution base)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급여도 포함되지만 그 외 모든 급여는 제외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는 생산가능인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추가 혜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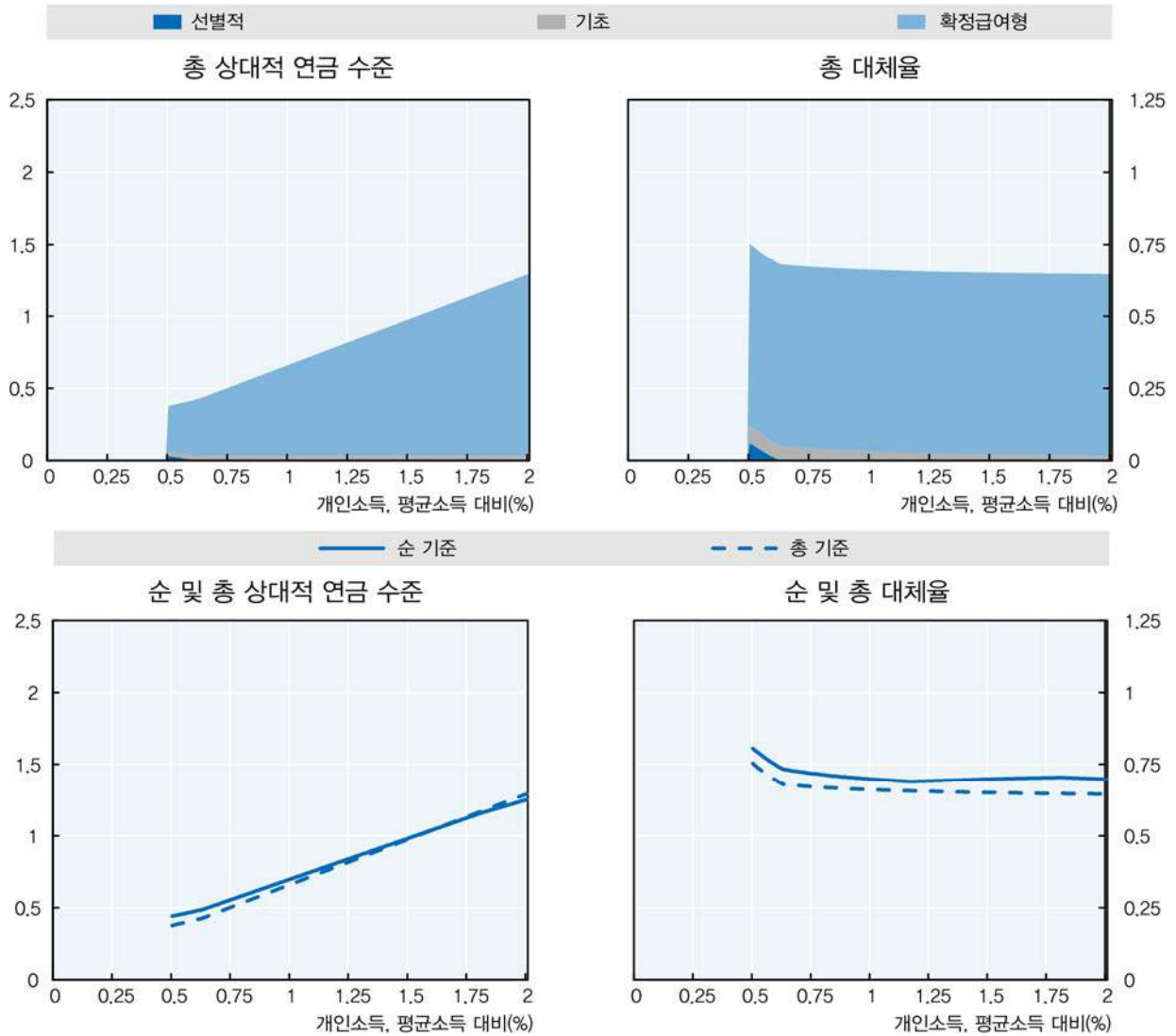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구체적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아이슬란드, 2063년, 수급연령 67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7	50.4	66.1	97.6	129.1	192.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4.2	55.6	69.8	98.3	125.2	173.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5.3	67.1	66.1	65.1	64.6	64.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0.5	71.8	69.8	69.8	69.8	67.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7	12.1	11.9	11.6	11.5	11.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7	12.9	12.5	12.5	12.5	12.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245>


## 인도

### 인도: 2018년 연금제도

근로자는 EPFO(근로자퇴직기금운영 기구)가 운영하는 소득비례 근로자연금과 확정기여형(DC) 근로자퇴직기금, 사용자가 운영하는 근로자퇴직기금에 가입되어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신연금제도(NPS)에 기반한 확정기여형(DC)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핵심 지표: 인도

	인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INR	105,963	2,843,935
USD	1,54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69.3	80.7
65세 시점	14.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1.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264>

## 수급요건

근로자연금제도(Employees' Pension Scheme)의 소득비례연금 급여에 대한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기여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58세이다. 소득비례 근로자퇴직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의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55세이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12%(약 5천 8백만 명)가 다양한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된 개인들은 조직화된 부문에 속하며 정부, 공기업,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업에 의해 고용된 상태로 모두 EPFO(근로자퇴직기금운영기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20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들은 EPFO에 의해 보장된다.

나머지 88%의 근로자는 주로 비조직화된 부문(자영업, 일당 근로자, 농부 등)에 속하며 일부는 조직화된 부문에 고용되어 있지만 EPFO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이 부문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 공공퇴직기금(PPF)과 우체국저축(Postal Savings Schemes)이 전통적으로 주된 장기저축 수단이며, 해당 인구 중 극히 일부만에게만 동 서비스가 제공된다.

## 급여 산정

### 근로자적립기금제도(EPF, 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1개월에 기본급이 15,000루피 이하인 피고용인은 월 급여의 12%를 기금에 납부하고 고용주는 3.67%를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15.67%가 누적된다.

1개월 기본급이 15,000루피 이상인 종업원은 월 급여의 12%를 납부하고 고용주도 12%를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24%가 누적된다.

연금형태의 급여는 제공되지 않으며, 55세 도달하고 퇴직 시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급여는 성별 사망률표에 근거한 물가연동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 근로자연금제도(EPS, Employees' Pension Scheme)

2014년 9월부터 월 기본급이 15,000루피 이상인 신규 가입자는 더 이상 EPS에 기여할 옵션을 갖지 못한다. 여태까지 이전의 6,500루피를 임금 상한선으로 기여해왔던 기존 가입자들은 15,000루피로 증액된 임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속 기여할 옵션을 갖지만, 상한선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선 1.16%의 정부보조금도 내야 한다.

15,000루피의 새 기본급 상한선 내에 속하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들을 위해 고용주는 기본급의 8.33%에 해당하는

금액을 EPS기금에 기여하며 중앙정부가 임금의 1.1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EPS에 기여한다. 이 누적액은 퇴직 시 또는 조기퇴직 시 다양한 연금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EPS 제도에서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종류는 퇴직 연령과 유자격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다.

$$\text{월 연금액} = (\text{연금대상 급여} \times \text{연금대상 근무 연수}) / 70$$

연금대상 임금은 마지막 60개월(예전에는 퇴직직전 12개월이었음) 기여기간의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능한 최대 대체율은 대략 50%이다.

2014년 9월부터 1개월당 1,000루피의 최저연금이 EPS제도에서 지급되고 있다.

## 선별적 사회안전망

인구 전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EPS는 기여연수 10년인 경우 50세부터 수급할 수 있고 조기수급의 경우 급여액은 연 3%씩 감액 된다. 가입자가 근무 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가능 금액은 퇴사일 기준 월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비율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이 중단된 경우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PF의 경우, 누적액의 조기수급을 허용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결혼, 주택자금, 생명보험 가입, 가입자 및 가족의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분수급이 허용되며 은퇴 1년 전 등의 사유로도 수급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다양한 부분인출 외에 가입자는 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조기퇴직을 결정한 경우 계좌를 폐쇄하고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5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없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세금 계산 시 EPFO와 NPS의 퇴직기금 및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최대 총 150,000루피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 한도에는 생명보험, 공공퇴직기금(자발적 제도) 등 기타 기여금이 포함된다.

NPS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신의 계정으로 납부되는 고용주의 기여금에 대하여 급여(기본 급여 + 실질 임금 감소 보상(Dearness Allowance))의 최대 10%까지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S에만 제공되는 이 혜택은 앞서 언급한 최대 150,000루피에 더하여 추가로 제공되며 회계연도 2011-12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고소득층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들은 NPS 계정에 추가 저축을 할 여력이 크고 최고 한계세율 30% 내에서 더 큰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 보험료는 최대 15,000루피까지 공제된다.(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통비는 월 800루피까지 면세된다.(모형에 포함)

추가 공제(모형에 포함되지 않음): 부모를 위해 납부한 의료 보험료. 최대 15,000루피 공제. 의료보험정책에 가입된 부모가 노령일 경우, 공제 금액이 20,000루피로 상향 조정.

### 근로자 소득 과세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된다. 2016년에는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모든 수입원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INR)	60세 미만 남녀 소득세율	교육세
250,000 미만	없음	없음
250,001 ~ 500,000	5%	4%
500,001 ~ 1,000,000	20%	4%
1,000,001 이상	30%	4%

총 소득이 1천만 루피를 초과하면 10%가 추가 적용된다.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65세 이상 노령자에게는 최대 2만 루피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 연금 소득의 과세

퇴직기금 계정 및 EPPO 연금에 대한 만기 급여는 세금이 완전히 면세된다. NPS의 경우 일시불 급여와 정기 연간 지급금 수령 시 과세된다. EPFO는 기여, 증식, 인출 단계에서 비과세하는 EEE(면제, 면제, 면제)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NPS는 만기 급여에 과세하는 EET(면세, 면세, 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새로 제안된 직접세법(Direct Tax Code)이 발효되면 변경될 예정이다. NPS는 아직 초창기 제도이므로 인출에 대한 과세 규정은 실질적 영향이 없다. 첫 가입자들이 인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65세를 넘은 노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며 총 세액에 교육세 3%가 부과된다.

모든 수입원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연득 (INR)	노령자에 대한 소득세		교육세
	60~80세	80세 초과	
300,000 미만	없음	없음	없음
300,001~500,000	5%	없음	4%
500,001 ~ 1,000,000	20%	20%	4%
1,000,001 이상	30%	30%	4%

NPS에서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면 NPS 계정에 누적된 잔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잔액은 60세에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연기했다가 70세 이전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연금 보험 가입도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60세 이전에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출 시점에서 누적된 총액의 80% 이상을 활용하는 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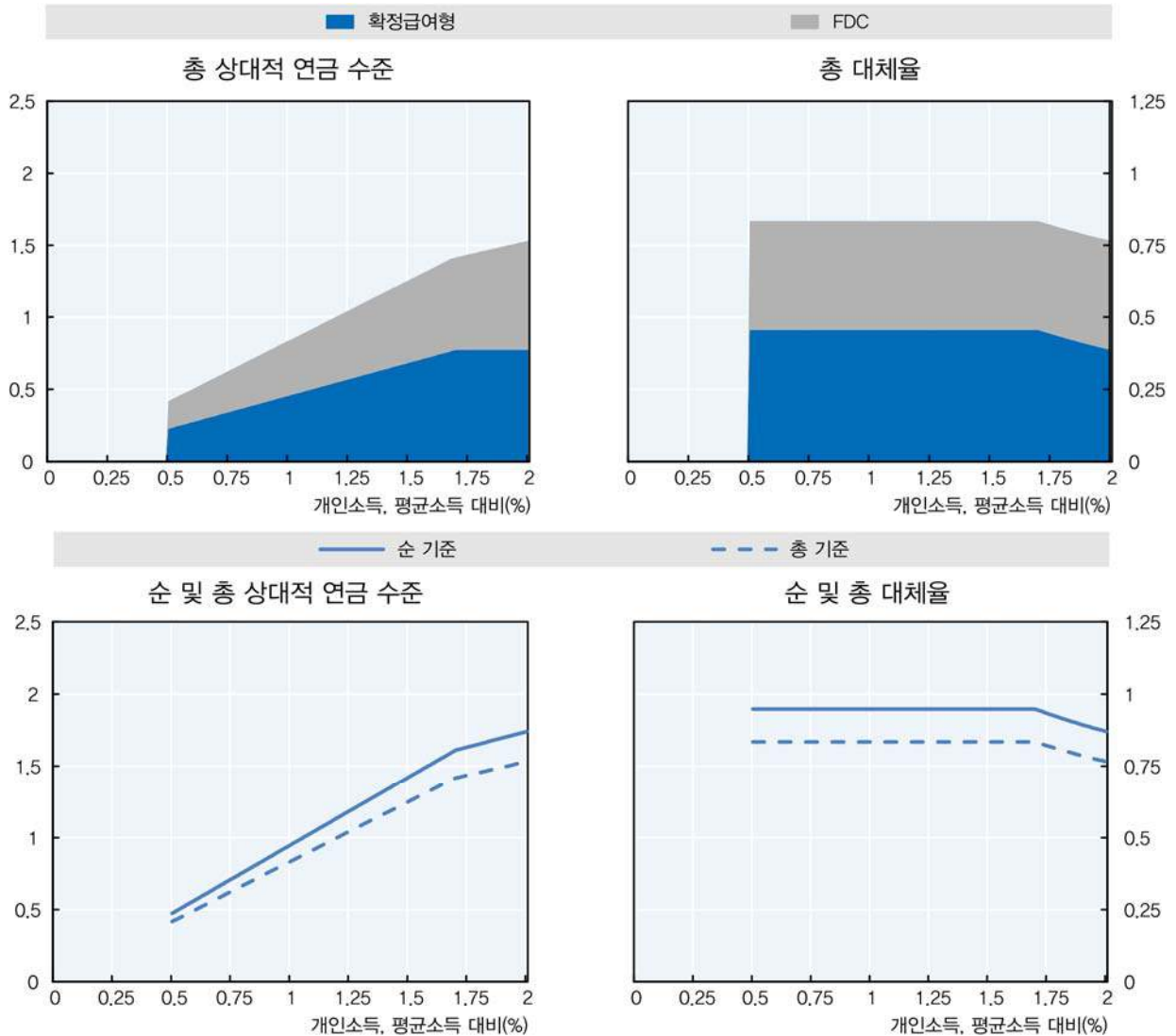
NPS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지명된 사람이 계좌 보유자 사망 당시 누적된 총액을 인출할 수 있다. 지명된 자 또는 법적 상속자가 받는 금액은 완전히 면세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인도, 2054년, 수급연령 58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1.7	62.6	83.4	125.2	153.2	191.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7.4	71.1	94.8	142.2	174.1	217.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3.4	83.4	83.4	83.4	76.6	63.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4.8	94.8	94.8	94.8	87.0	72.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9	14.9	14.9	14.9	13.7	11.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7.0	17.0	17.0	17.0	15.6	13.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283>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2018년 연금제도

피고용인은 소득비례 사회보험제도와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의 보장을 받는다.

### 핵심 지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IDR(백만)	31.8	592.0
	USD	2,234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71.5	80.7
	65세 시점	14.7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0.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302>

## 수급요건

2018년 기준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56세로, 3년에 1세씩 올려 2043년에는 65세에 도달할 계획이다. 은퇴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15년 이상 기여한 근로자는 정기적인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여년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일시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2015년 7월 1일부터 민간 부문의 피고용인은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는다. 현재 연금 급여 지급률은 1%이다. 과거 소득은 물가 상승에 따라 재평가된다. 기여금은 최대 810만 루피아까지 납부 가능하다. 15년 기여한 뒤 최저연금액은 월 331,000루피야로, 월 최대 급여액은 397만 루피야다.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 확정기여형 연금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란 1993년부터 2013년까지는 근로자 사회보장프로그램들(PT Jamsostek) 중 하나였으며, 여기서는 JHT(Jaminan Hari Tua) 또는 OAS(노령보장: Old Age Security)를 의미한다. JHT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퇴직자는 급여액을 사망 시까지 부분 일시불과 부분 정기연금의 조합 형태로 수령하거나 전체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의 2%를 기여하며 고용주는 3.7%를 납부한다. 연금 잔액이 3백만 루피야가 넘으면 연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최대 5년까지 매달 지급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급여는 성별 사망률표에 근거한 물가연동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5년 이상 기여한 사람으로서 실업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 어떤 연령에서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연령 제한 없이 급여액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독신 개인에 대하여 54,000,000루피아가 공제된다. 더불어, 근로 관련 비용도 소득의 5%, 최대 6백만 루피아까지 공제된다. 연금 지급액 또한 5%, 최대 240만 루피아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사회보장기여금도 공제 가능하다.

### 근로자 소득 과세

아래 표는 근로자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연간 소득(백만 IDR)	세율
50 이하	5%
50~250	15%
250~500	25%
500 초과	30%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피고용인은 급여의 1%를 연금제도에, 1%를 의료보험에 납부한다.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 세금 혜택은 없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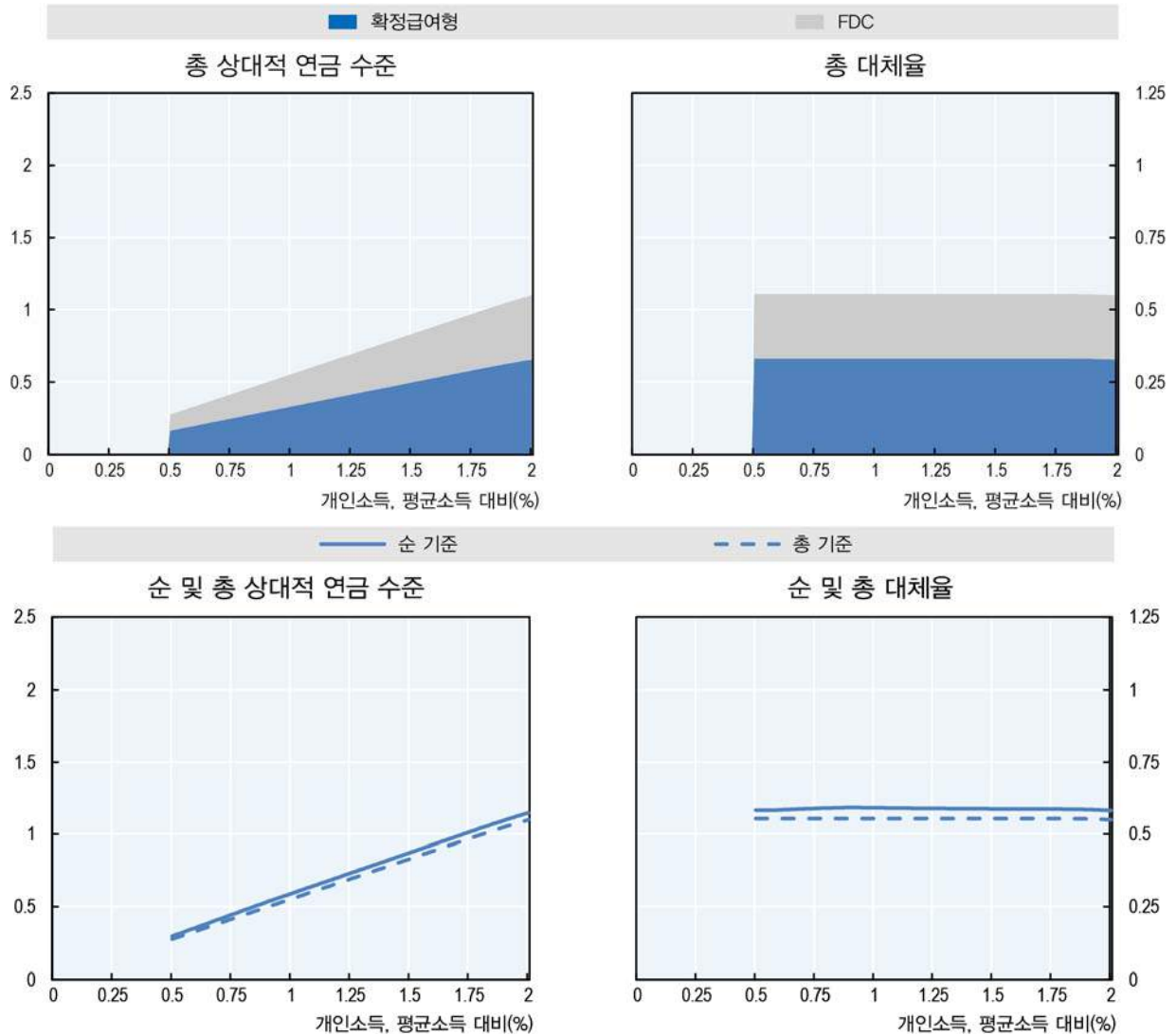
아래 표는 연금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연간 소득(백만 IDR)	세율
25 이하	0
25~50	5%
50~100	10%
100~200	15%
200 초과	25%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인도네시아, 2061년, 수급연령 65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7.6	41.5	55.3	82.9	109.7	143.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9.6	44.5	59.0	87.1	114.5	148.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5.3	55.3	55.3	55.3	54.9	47.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8.2	58.8	59.0	58.6	58.0	51.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8.2	8.2	8.2	8.1	7.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6	8.7	8.8	8.7	8.6	7.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321>


## 아일랜드

### 아일랜드: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기여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자산조사형 연금도 있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는 가입률이 높으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있다.

### 핵심 지표: 아일랜드

		아일랜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46,774	35,230
	USD	55,211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3.6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0	80.7
	65세 시점	20.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5.0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340>

## 수급요건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6세로, 2021년 67세, 2028년 68세로 상향 조정 중이다.

공적연금(기여형)에서 전액 수급하려면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연 평균 48주 이상의 기여 또는 크레딧이 필요하다. 기여이력이 그보다 적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된다. 2018년 1월,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2년 9월 1일 이후인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총 기여금 접근법’ 자격 제도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40년간 기여하거나 그와 동일한 가치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최소 총 납부(크레딧의 반대 개념) 기여기간은 520주(10년의 완전가입에 해당)이다.

또는, 자산조사형 공적연금(비기여형)제도를 66세부터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 총 기여금 접근법 자격 제도에서 받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공적연금(기여형) 급여는 주당 243.30유로이고 수급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10유로가 추가로 매주 지급된다. 연금 수급자가 독신인 경우 주 9유로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부양하는 성인이 있을 경우 218유로(66세 이상), 또는 162.10유로(66세 미만)의 자산조사형 수당(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이 주어진다.

### 선별적 연금

자산조사형 공적연금(비기여형)의 최대 급여액은 독신의 경우 주 232유로이며, 66세 미만의 성인 피부양자에게 153.30유로가 추가 지급된다. 피부양자가 66세 이상인 경우 해당 피부양자가 이 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면 추가 지급액은 주당 최대 232유로이다. 자산조사에서는 주 30유로와 더불어 추가 소득(근로 소득) 200유로가 무시된다. 재산조사(assets test)도 있는데 2만 유로 이상의 자본(거주용 주택 제외)은 표준산식을 이용해 자산으로 평가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10%로 가정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여형 및 비기여형 공적연금 모두 66세부터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수급 할 수 없다.

### 수급연기

연금 수급 연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 육아

1994년부터 전체 근로기간 중 최소 520주의 기여금이 납부되었다면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돌봄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수급액 결정에 사용되는 평균 기여액 산정 시 자녀와/또는 장애를 가진 성인을 돌본 기간(최대 20년)은 고려하지 않는다. 2018년 1월 도입된 ‘총 기여금 접근법’ 자격 제도의 절차에 따라 자녀(12세 이하) 양육 및 기타 돌봄에 소요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금 전액 수급에 필요한 40년의 일부로 인정한다.(이 제도에서는 ‘1994년 이후’라는 규정은 없다.)

### 실업

전체 근로기간 중 최소 520주의 기여금이 납부되었다면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평균 기여계산법을 사용했을 때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 크레딧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총 기여금 접근법’ 제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크레딧 인정이 가능하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독신 가입자에게는 245유로의 추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 혜택은 2018년 개인당 1,650유로에 해당하는 일반 혜택에 더하여 제공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면세 한도(이 밑으로는 과세되지 않음)가 높다. 65세 이상 독신 개인은 2018년 기준 18,000유로까지 면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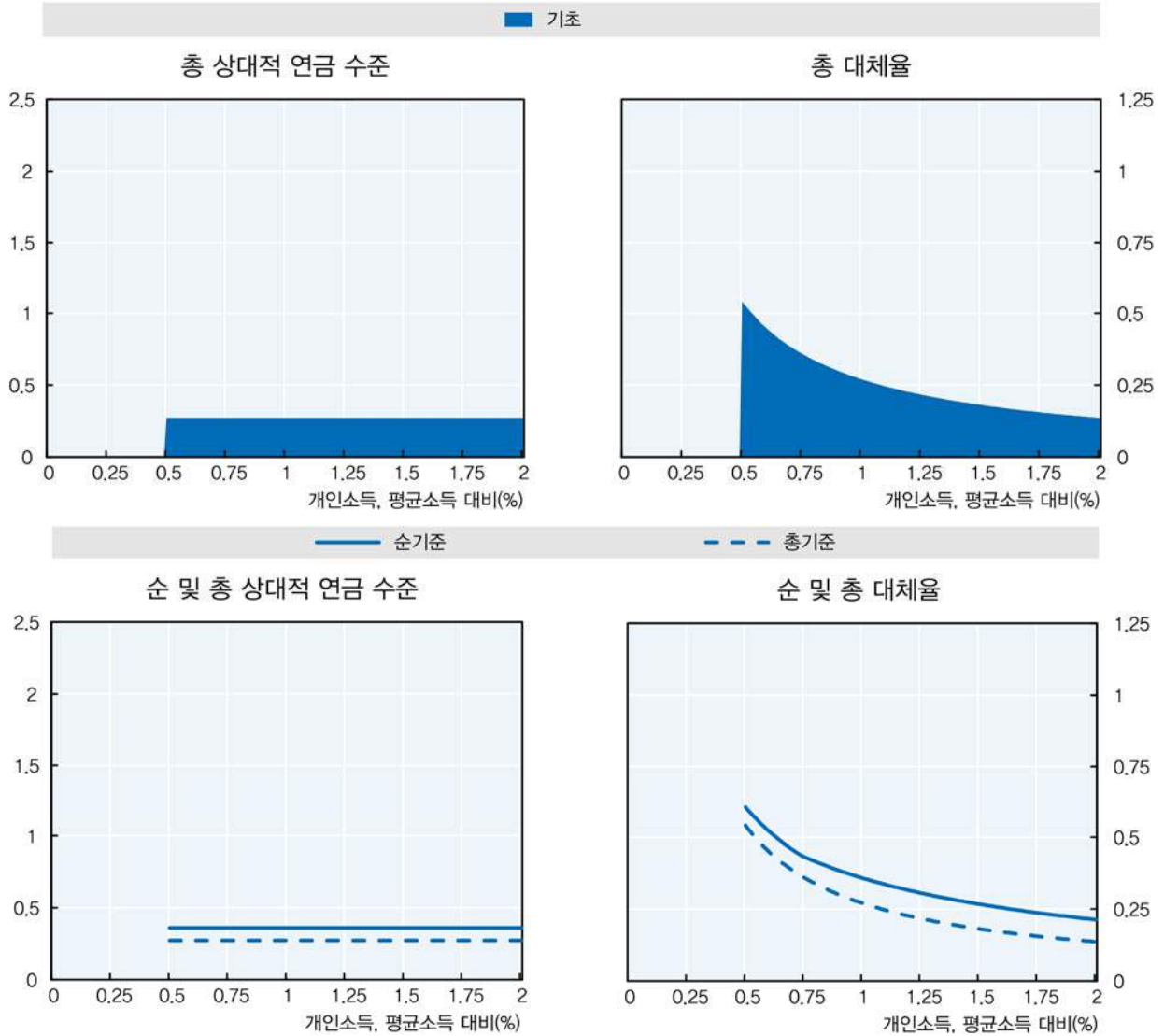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 기여금(Health Contribution)과 소득 부담금(Income Levy)이 통합사회요금(Universal Social Charge)으로 통합되었다. 이 요금은 12,012유로 미만의 소득에 대해 1%, 그 다음 6,656유로까지는 3%, 그 다음 51,376유로까지는 5.5%, 70세 미만의 경우 잔액의 8%이다. 2018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당해 총 소득이 6만 유로 이하인 경우 잔액의 3%를 납부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아일랜드, 2064년, 수급연령 68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7.0	27.0	27.0	27.0	27.0	27.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5.9	35.9	35.9	35.9	35.9	35.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4.1	36.1	27.0	18.0	13.5	9.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0.5	43.3	35.9	26.7	21.3	15.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6	7.1	5.3	3.5	2.6	1.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9	8.5	7.0	5.2	4.2	3.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359>


## 이스라엘

### 이스라엘: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보편적 연금보험과 자산 조사에 기초하는 소득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 연금기금에 대한 의무 기여제가 도입되었다.

### 핵심 지표: 이스라엘

	이스라엘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ILS	153,221	149,311
USD	42,673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4.8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7	80.7
65세 시점	20.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3.9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378>

## 수급요건

거주민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국민보험기구로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 연금수급연령은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남성은 65세에서 67세로, 여성은 60세에서 62세로 올랐다. 남성은 2009년에 67세에, 여성은 62세에 도달했다. 남성 연금수급자의 경우 70세까지는 근로소득 한도가 존재한다. 여성의 경우 이 연령은 현재 69세 이나 2020년까지 70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급여 산정

### 사회보험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는 노령기초액은 2018년 월 8,674세켈이다. 기본노령연금은 독신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18,420세켈인데, 이는 노령기초액의 17.7%에 해당하며 부부의 경우 연 27,684세켈이다.

80세 이상 노인인에 대한 기본노령연금은 독신인 경우 19,404세켈이고 부부인 경우 28,644세켈이다.

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연 2%의 가산금이 있으며, 한도는 연금액의 50%이다.

기여 목적의 최대소득은 2018년 1월 1일 기준 노령기초액의 5배였다. 기본노령연금은 물가에 연동된다.

노령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는 기본노령연금과 동일한 특별 자산조사형 급여를 받게 된다.

### 선별적 연금

소득보충은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 생계유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다. 급여액은 개인의 연령, 결혼여부와 가구 크기에 좌우된다. 2018년 기준 지급률은 월 노령기초액의 36.77%에서 75.40% 사이이며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금액은 7% 인상되었다.

확정기여형 연금 소득의 경우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비례하여 소득지원액이 감액된다.

또한 노인은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난방보조를 받을 수 있다.

### 확정기여형 연금

2008년 1월부터 모든 피고용인은 국가 평균까지의 소득에 대해 의무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국가 평균 근로자 소득은 OECD 평균 근로자 소득 추정치의 약 80%에 해당한다. 제도 초기에는 총 기여율이 2.5%정도에 그쳤으나



2013년까지 15%로 인상되었다.(5%는 근로자, 10%는 고용주가 부담) 기여율은 더욱 상승하여 2014년에는 17.5%(5.5%는 근로자, 12%는 고용주가 부담), 2018년 1월부터는 18.5%(6%는 근로자, 12.5%는 고용주가 부담)까지 올랐다. 고용주 부담분 가운데 6%p는 퇴직보험(severance insurance)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 그 만큼 확정기여형 연금이 줄어든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수급을 연기하는 매년 연금액이 5%씩 인상된다.

### 육아

출산 전 일했던 여성은 15주의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유급기간은 노령연금에 대한 자격기간 산정 시 고려된다.

### 실업

실업자는 노령연금(1층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령 연금은 고정된 액수이고 임금과 함수관계에 있지 않다. 동일한 자격기간이 축적된 사람은 동일한 급여를 받을 것이다(고용 지위와 관련 없음).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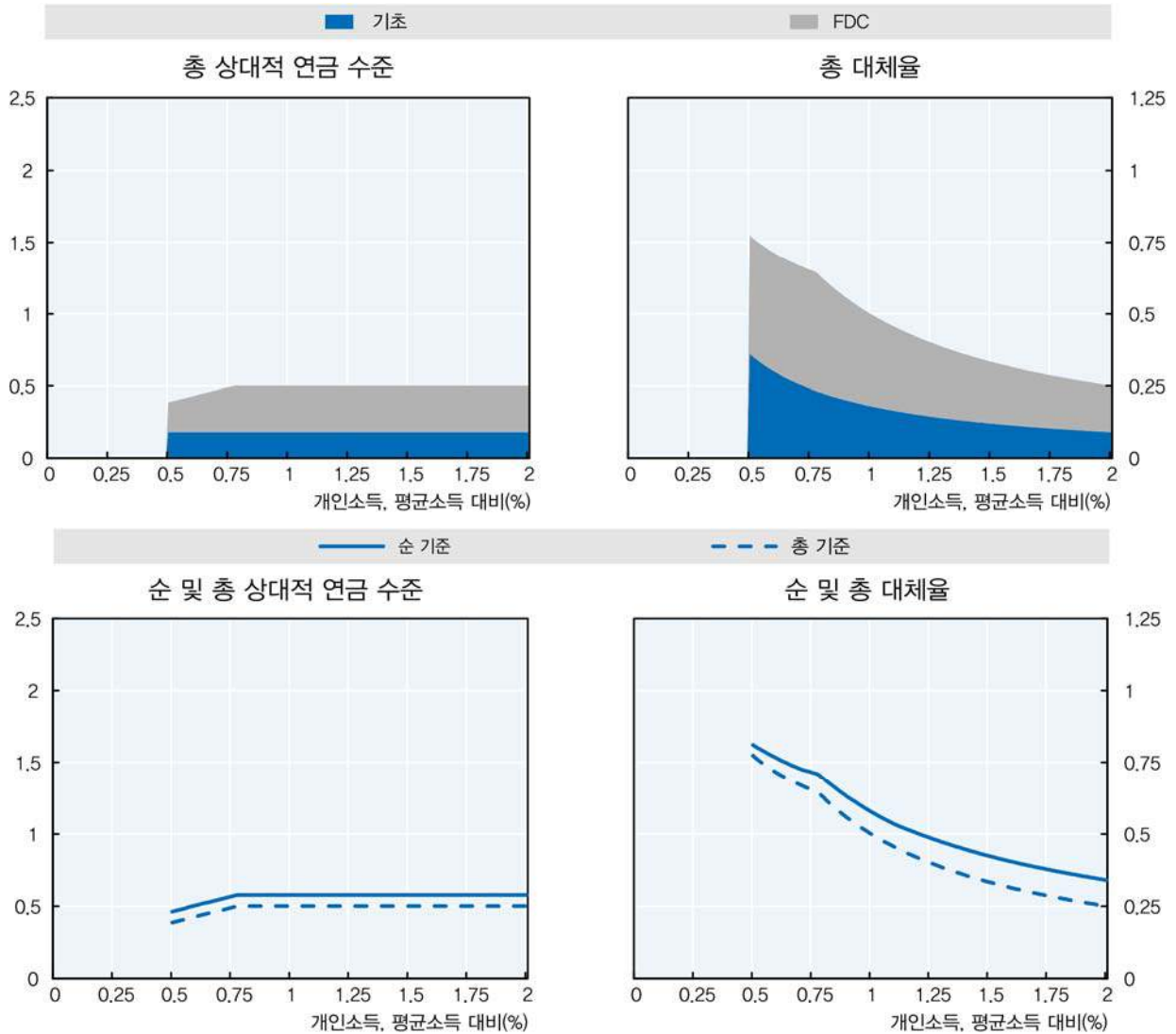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특별한 세금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2018년 1월 1일 기준 노령연금 중 독신 개인은 197세켈, 부부는 284세켈이 건강보험 기여금으로 공제된다. 독신과 부부 모두 소득보충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공제 금액이 103세켈로 줄어든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이스라엘, 2063년, 수급연령 67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8.7 33.4	49.0 41.0	50.1 41.8	50.1 41.8	50.1 41.8	50.1 41.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6.2 39.5	56.7 48.2	57.8 49.0	57.8 49.0	57.8 49.0	57.8 49.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7.4 66.7	65.4 54.7	50.1 41.8	33.4 27.9	25.0 20.9	16.7 13.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1.1 69.2	71.5 60.8	57.8 49.0	42.4 35.9	34.0 29.0	24.5 21.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9 14.6	11.8 12.0	9.0 9.2	6.0 6.1	4.5 4.6	3.0 3.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6 15.2	12.9 13.3	10.4 10.8	7.6 7.9	6.1 6.4	4.4 4.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397>


## 이탈리아

### 이탈리아: 2018년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에 기초한다. 기여금은 GDP 성장에 연계하여 수익률을 얻는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자본은 은퇴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전환된다.

### 핵심 지표: 이탈리아

		이탈리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31,292	35,230
	USD	36,937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6.2	8.0
기대수명	출생 시	83.2	80.7
	65세 시점	20.9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9.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416>

## 수급요건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의 2018년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6세 7개월로, 기여년수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새로운 연금제도에 따라 정상 연금 수급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연금 수급연령은 65세 기대여명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데, 2019년까지는 3년마다, 2021년부터는 2년마다 조정된다. 2018년 이후부터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되면서 2019년에는 67세 이상에 이를 예정이다. 2011년 연금개혁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를 62세부터 70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명목계정제도로 완전히 계산되는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기여년수가 최소 20년이어야 하며, 연금액이 명목 GDP의 5년 평균에 연동되는 2012년 노령사회수당의 1.5배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제도

명목계정제도는 기여율이 33%이며 그 중 1/3은 근로자가, 2/3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은퇴 시 연금급여는 명목 GDP 성장률(5년 이동평균)과 연금전환계수로 재평가한 평생 누적 기여액으로 산정된다. 전환계수는 주로 사망확률, 배우자를 남길 확률, 유족급여 지급 기간에 근거한 함수이다. 따라서 급여는 은퇴연령과 관계가 깊다. 은퇴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액도 감소한다.

연금전환계수는 2019년까지 3년마다 재검토되며 2021년부터는 2년마다 재검토된다. 연금전환계수는 57~70세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가장 최근 설정된 계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령	제수	값	연령	제수	값	연령	제수	값
57	23,550	4.256%	62	20,593	4.856%	67	17,544	5.700%
58	22,969	4.354%	63	19,991	5.002%	68	16,922	5.910%
59	22,382	4.468%	64	19,385	5.159%	69	16,301	6.135%
60	21,789	4.589%	65	18,777	5.326%	70	15,678	6.378%
61	21,192	4.719%	66	18,163	5.506%			

할인율 = 1.5%

출처: Ministerial Decree 22.06.2015 - Gazzetta Ufficiale n. 154/2015.

2016년 기여 목적의 최저임금은 주당 EUR 200.76(최저연금의 40%)였다.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 100,324유로이다.

연금 지급액의 연동은 누적적이며 연금액이 낮을수록 좀더 관대한 연동이 이루어진다. 2018년 연금 지급액 연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연금의 3배까지는 “생계비(cost-of-life)” 지수의 100%, 최저연금의 4배까지는 “생계비” 지수의 95%, 최저연금의 5배까지는 “생계비” 지수의 75%, 최저연금의 6배까지는 “생계비” 지수의 50%, 최저연금의 6배 이상은 “생계비” 지수의 45%에 연동한다.

## 최저연금

기존 확정급여형(DB) 제도 하에서는 연금액이 오로지 기여금만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에 기여형 연금액이 최저 수준(2016년 월 507.42유로) 미만인 사람에게 사회급여(최저연금 보조금, Minimum Pension Supplement)를 지급하여 연간 연금 소득이 EUR 6,596.46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연금 보조금은 기여금에 따라 산정된 연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선별적 제도

기여형 연금 급여가 없는 사람은 65세부터 자산조사에 기초한 비과세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 노령사회 수당)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연령은 2018년 66세 7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상승한다. 2018년 독신자에 대한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 금액은 연 5,889.00유로였으며 연 13회(월 453.00유로) 지급된다. 70세 이상의 사회부조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90.86유로까지 추가로 지급받으며 연간 급여가 8,370.18유로에 이르게 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자발적인 추가 보충적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개방형 기금과 폐쇄형 공동 합의 기금으로 구성된다. 폐쇄형 기금은 고용주 및 근로자가 재원을 조달하거나 TFR(private severance pay, 개인 퇴직금)의 전환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개방형 기금은 기여금에 기초해 연금을 제공한다. 현재 TFR 기여율은 총 급여의 6.91%이다. 투자된 기금은 고정 비율 1.5%과 가변 요소를 적용하여 매년 자본화하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연 인상분의 75%에 상당한다. 개인 연금 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2018년 기준, 남성의 경우 기여금을 42년 10개월 이상 납부하고 여성의 경우 41년 10개월 이상 납부하면 62세부터 감액 없이 조기 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간 요건은 기대여명에 맞춰 증가한다. 법 232/2016호(2017 균형법, balance law)에 따라 62세 이전 조기수급에 대한 모든 감액 페널티가 폐지되었다.

기여형 또는 혼합형 제도상에서는 수급자가 기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령에 따른 페널티 없이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연금 액수가 명목 GDP의 5년 평균에 연동된 2012년 노령사회수당의 2.8배 이상이면 63세 7개월에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 수급연기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육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보다 관대한 전환계수가 적용된다. 자녀가 1~2명인 여성에게는 연금수급액 산정 시 더욱 유리한 전환계수가 적용된다. 사용되는 연령은 실제 은퇴연령에 1년을 더한 것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은 실제 연령에 2년을 더한 연령이 적용된다.

또는, 기여형 제도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자녀 1명당 4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 실업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부조가 가입해 CIG(*Cassa Integrazione Guadagni*)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 CIG는 임원, 실습생/전습생, 재택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다양하지만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또는 24개월간 지급된다. 금액은 마지막 임금의 80%이지만 한도가 있다. 2018년에 최대 급여 한도액은 임금이 월 2,125.36유로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 982.40유로였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수당은 월 1,180.76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급액에서 사회기여금 5.84%가 차감되며 최대 월 순 급여액은 각각 925.03유로와 1,111.80유로였다. 이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의도치 않게 실직한 사람의 경우 NASpI(*Nuova 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라는 월정 수당이 제공된다. 실직 직전 4년 중 13주 이상 기여금을 납부하고 실직 직전 2년 이내에 유효한 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건설이나 농업 부문의 실습생/전습생에게는 요건이 완화된다. NASpI는 최근 4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지급된다. 수당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고정 한도(2018년 1,208.15유로)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해고되기 전 2년간 월 평균 임금의 75%이다.
- 2018년 기준 1,208.15유로의 75%에 월 평균 임금과 한도액 간 차액의 25%를 더한 값이다.

2018년에 실업수당 상한선은 월 1,314.30유로였다. 실직 4개월 이후에는 월 수당이 매월 3%씩 감소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기여형 공적연금은 과세된다. 2018년 소득계층 구분과 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연금소득 15,000유로까지는 23%, 15,001~28,000유로는 27%, 28,001유로~55,000유로는 38%, 55,001유로~75,000유로는 41%, 75,000유로를 넘으면 43%이다. 연 7,500유로 미만(75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8,000유로)의 연금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적연금제도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세전 소득에서 완전히 공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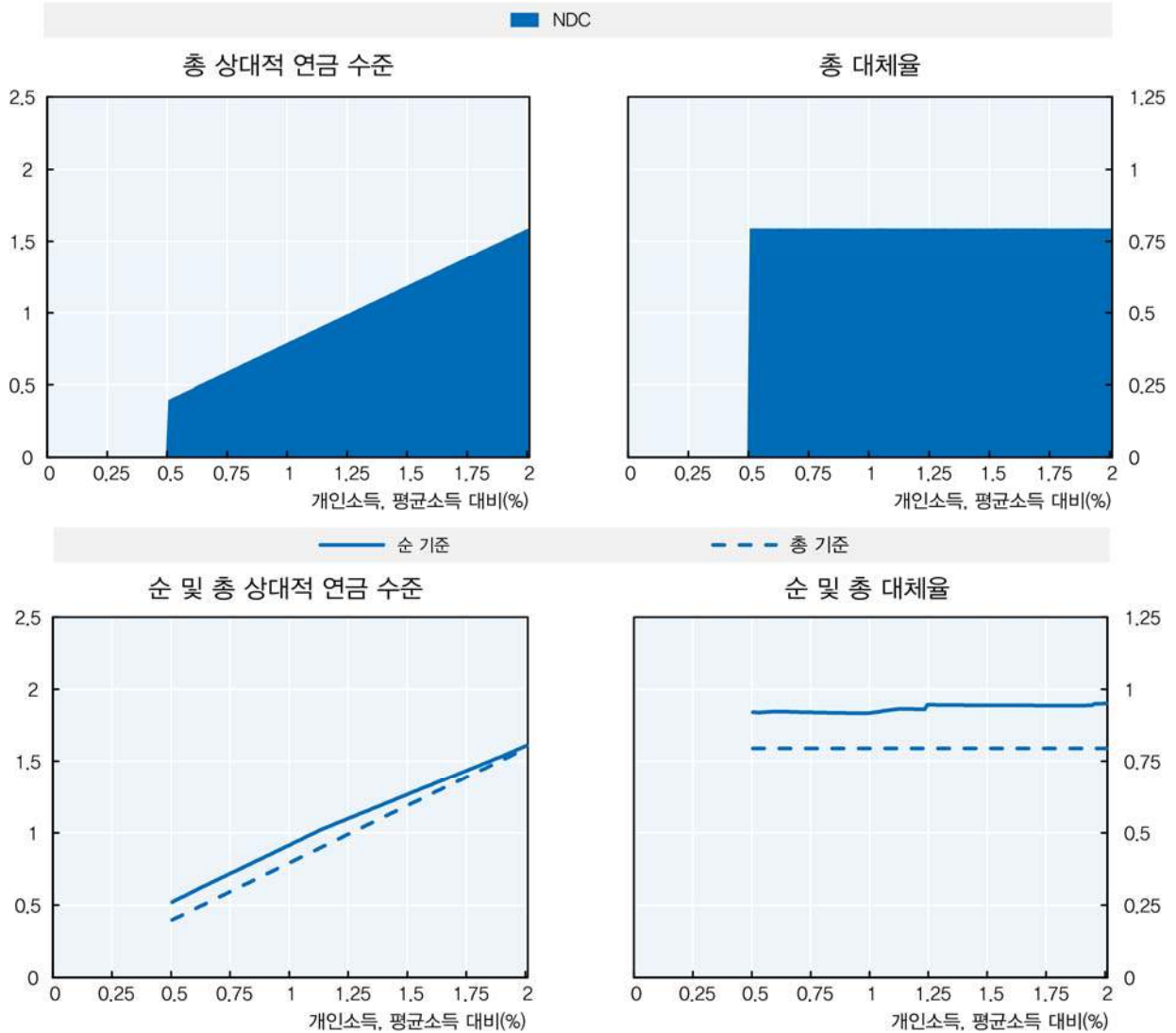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특별 감면은 없다. 개인연금 소득은 연금 기금이 투자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반영해서 부분적인 과세만 가능하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이탈리아, 2067년, 수급연령 71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7	59.6	79.5	119.2	159.0	238.5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2.0	72.1	91.8	126.9	160.9	230.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9.5	79.5	79.5	79.5	79.5	79.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2.0	92.0	91.8	94.4	95.1	96.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5	12.5	12.5	12.5	12.5	12.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1	14.1	14.1	14.1	14.1	14.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4	14.4	14.4	14.8	14.9	15.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3	16.3	16.3	16.8	16.9	17.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435>


## 일본

## 일본: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체계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기초정액제도이며 2층은 소득비례제도(피용자연금)이다.

## 핵심 지표: 일본

	일본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JPY(백만)	5.11	4.28
USD	43,692	36,622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0.2	8.2
기대수명 출생 시	84.0	80.9
65세 시점	22.0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46.2	27.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454>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기여년수가 최소 10년 이상일 때 65세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기여년수 40년이 필요하며 기간이 짧거나 길면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급여액이 조정된다.

피용자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피용자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고 있다면 최소 1개월에 해당하는 기여를 충족했을 때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특별제공’ 피용자연금 급여는 현재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 급여에 대한 연금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정책부분의 연금수급연령은 65세이다. 소득비례제도의 수급연령은 현재 남성 62세, 여성 61세이며 남성은 2025년까지, 여성은 2030년까지 모두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2018년 완전 기초연금 급여액은 연 779,300엔이다.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67세까지는 순 임금에 연동되고 68세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된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액은 보수와 기여년수에 따라 조정된다.<sup>3)</sup> 기여액 상한선은 월 620,000엔이다.

남성은 2025년까지, 여성은 2030년까지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은 60-64세에 부분 지급이 가능하다.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은 정책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액 급여액은 출생년도에 따라 결정된다.<sup>4)</sup>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은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피용자연금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가 67세가 될 때까지는 순 평균소득에 연동되고 그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된다.

3) 평균 연금대상 보수월액 × 0.7125% × (2003년 3월까지의 기여기간) +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 연금대상 보수월액) × 0.5481% × (2003년 4월 이후의 기여기간) 1,676엔 × (출생일에 따른 비율) × (기여기간) × 0.961.

4) JPY 1625 × (생년월일에 따른 비율) × (기여 기간)

## 사회부조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부조 제도가 존재한다. 사회부조는 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자산과 능력을 이용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준다. 2018년 기준 도쿄에 거주하는 65~69세 노인에 대한 연간 최소 기준액은 인당 954,600엔이다. 이는 주택 지원, 의료 지원, 기타 급여를 제외한 생활비용이다.

## 적용제외(Contracting out)

최소 1,000명 이상 피용 근로자를 가진 사용자는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비례 제도에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약 6%가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적용제외 되려면 공적 소득비례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최소 150%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한다. 적용 제외에 필요한 연금 산정은 생애 평균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액의 연동과 과거 소득의 재평가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ing-out)제도의 기여율은 해당 근로자의 연령 구조와 계리적 가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다. 2005년 이후 기여율은 총 보수의 2.4%에서 5% 사이로 다양하다.

2001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소득연계 기업퇴직연금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와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2014년 4월부터 새로운 소득연계 퇴직연금 제도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 자발적 사적연금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급여형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5.06%로 가정하며,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경우 지급률은 0.5144%이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급여의 감액을 감수한다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모두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급여는 월 0.5%씩, 즉 연 6% 감액된다. 개별 수급자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피용자연금의 정액부분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수급자가 67세가 될 때까지 순 소득에 연동되며 68세 이후부터는 물가에 연동된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며 연기함으로써 연금 수급액을 1개월 당 0.7%씩, 즉 연 8.4%씩 증가한다. 수급권은 매년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생한다.

2004년부터 65세 이후에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단 총 소득(근로소득과 연금을 합친 소득)이 46만 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절반이 소득비례 연금에서 삭감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전액 지급된다. 7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육아

육아를 위해 유급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3년씩 그리고 막내가 3살이 될 때까지 소득비례제도에 크레딧으로 반영된다. 이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금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체 기간이 기여기간으로 인정된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여액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연금 수급액은 이전



근무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산휴가는 사회보험 보험료가 면제된다.

## 실업

실업상태가 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개인은 소득비례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기초연금에는 납부해야 한다. 실업인 경우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기여금의 전부, 3/4, 절반 혹은 1/4만큼 기여금이 면제될 수 있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57만 엔 미만인 독신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연 소득이 78만 엔 미만인 경우 기여금의 1/4, 118만 엔 미만인 경우 절반, 158만 엔 미만은 3/4을 납부한다.

완전 면제의 경우 기초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1/4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5/8를 받을 수 있다. 기여금을 절반을 납부하는 기간 중에는 기초연금의 3/4을 받으며 3/4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7/8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을 평가할 때는 면제기간도 전부 가입기간으로 계산된다. 은퇴 시 받을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미납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는 기여금을 추납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모든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과세연금소득으로부터 50만 엔이 정액 공제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고정 공제율은 소득 360만 엔까지는 25%(정액 공제 후), 720만 엔까지는 15%(정액 공제 후), 그 이상은 5%이다. 마지막으로, 120만 엔의 연금소득에 대한 최소 공제 보장이 모든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적용된다. 65세 미만 연금수급자의 경우 70만 엔이 공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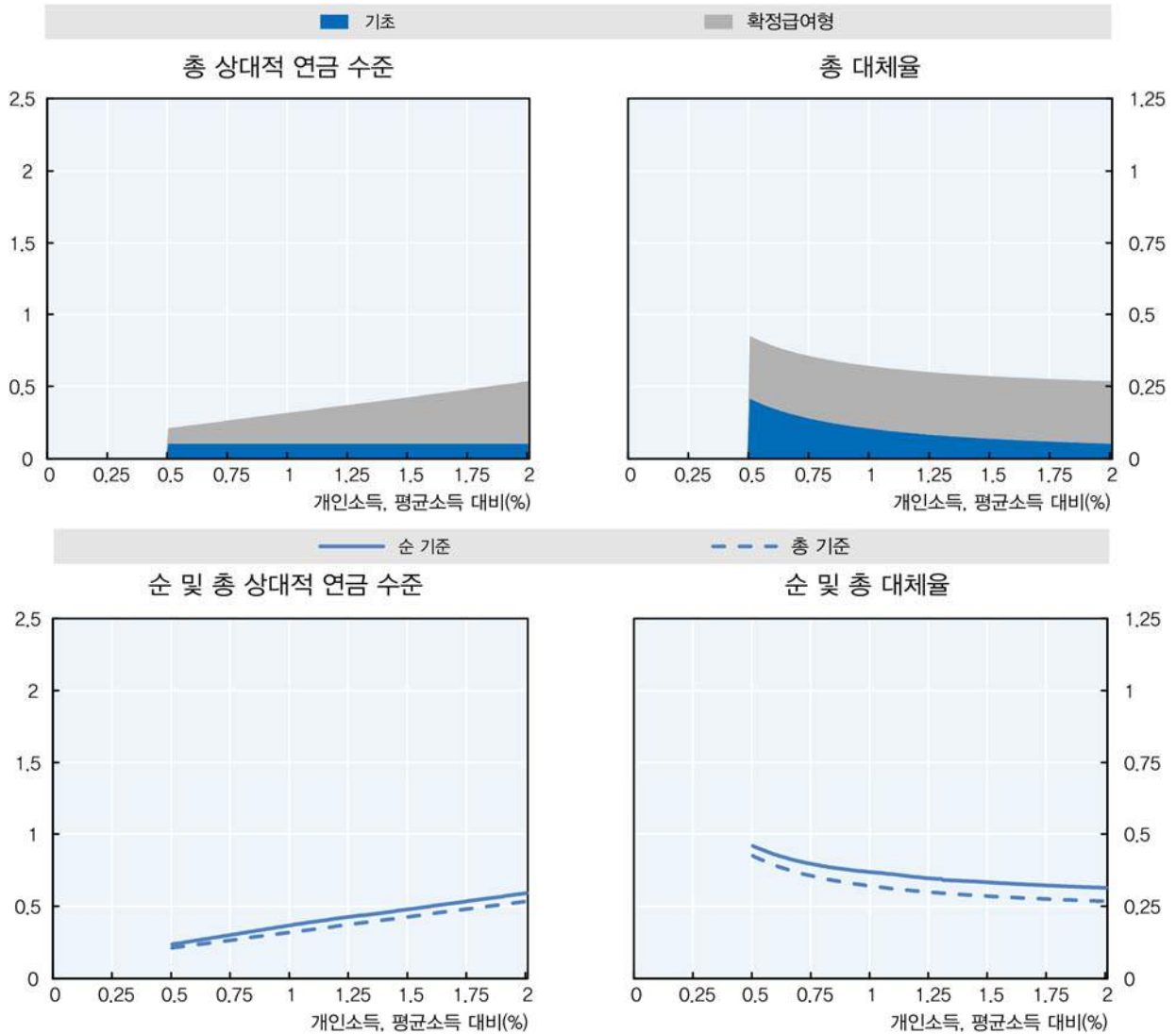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기여금이 부과된다. 장기요양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며, 기여액은 서비스 비용, 수혜자 수, 수혜자의 시내 소득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2018년 평균 기여금은 70,428엔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일본,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1.2	26.6	32.0	42.7	53.5	59.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3.7	30.2	36.8	47.9	59.1	6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2.5	35.5	32.0	28.5	26.7	20.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45.9	39.6	36.8	33.3	31.4	25.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1	6.8	6.1	5.4	5.1	3.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8	7.6	7.0	6.4	6.0	4.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473>


## 한국

### 한국: 2018년 연금제도

한국의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며 누진적 산식을 사용하는데, 급여가 개인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모두 연금산정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 핵심 지표: 한국

	한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KRW(백만)	48.2	45.8
USD	43,766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2.9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7	80.7
65세 시점	20.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3.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492>

##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이다. 조기수급의 경우 57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가 되며, 조기수급연령도 2033년까지 60세로 늘어날 것이다.

## 급여 산정

### 기여형급여

소득비례연금의 목표 대체율은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으로 45%이고, 이는 2028년에 40%가 될 때까지 2008년부터 매년 0.5%p씩 줄어들고 있다. 연금 수급액은 명목 임금인상에 따라 재평가되는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절반과 물가에 따라 환산되는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A값)에 각각 목표대체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후자는 기여 기반의 기초연금 성격을 갖는다. 연금대상소득의 상한선은 2018년 기준 월 468만원으로 A값의 206%이다. A값은 2018년에 2,270,516원이었다.

연금 급여액의 최대수준은 개인소득의 100%이다. 지급되는 급여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60세를 넘은 사람은 기여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 연령 이후에는 급여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선별적(‘기초’) 연금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포함한 인정소득이 수급자격 한도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선별적 연금 급여의 수급 자격은 신청자의 연령과 (독신 또는 부부 기준)소득 및 자산만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그 자녀의 소득과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인정소득이 월 375,000원 이하이며 수급 자격이 되는 노인은 2018년 9월부터 최대 25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인정소득이 월 375,000원보다 많고 수급 자격이 되는 노인은 다음 산식의 결과값이 양수이면 급여를 받는다.

$$375,000\text{원} - 2/3 * \text{인정 소득}$$

부부의 경우 개인별 지급율은 독신자 지급액의 80%이다. 기초 연금 급여액의 수준은 연간 물가지수에 따라 상승한다.

## 사회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부조)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급 가구의 인정소득액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수급 자격이 되는 가구는 가구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생활, 의료, 주택, 교육에 있어 다른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급여에는 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출산지원금, 장례지원금 등 7가지 급여가 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연령은 현재 55세에서 2033년에 60세로 연장된다. 조기수급 시 연금 급여액은 조기수급 1년마다 6%p씩 감액된다. 5년 일찍 받는 경우 조기수급액은 노령연금 정상액의 70% 수준이 된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가 가능하다. 정상 수급연령보다 1년 늦어질 때마다 7.2%의 연금이 증액된다. 연금 수급은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가입자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특정 금액을 제한 만큼의 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다.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연금 수급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수급연기’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육아

육아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근로활동 재개 이후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첫째를 제외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입 여성이나 자녀의 아버지에게는 육아 크레딧이 부여된다.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부여된다.

### 실업

실업자는 기여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활동을 재개한 후 면제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실업 크레딧은 2016년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까지 기여금의 75%를 지원하며 실업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추가된 기간은 노령연금 급여액에 반영되며, 장애 급여와 유족 연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별도 과세 규정은 없다.

70세 이상 노인은 표준 세금 혜택(각 납세자 또는 부양자당 150만 원)에 더하여 1백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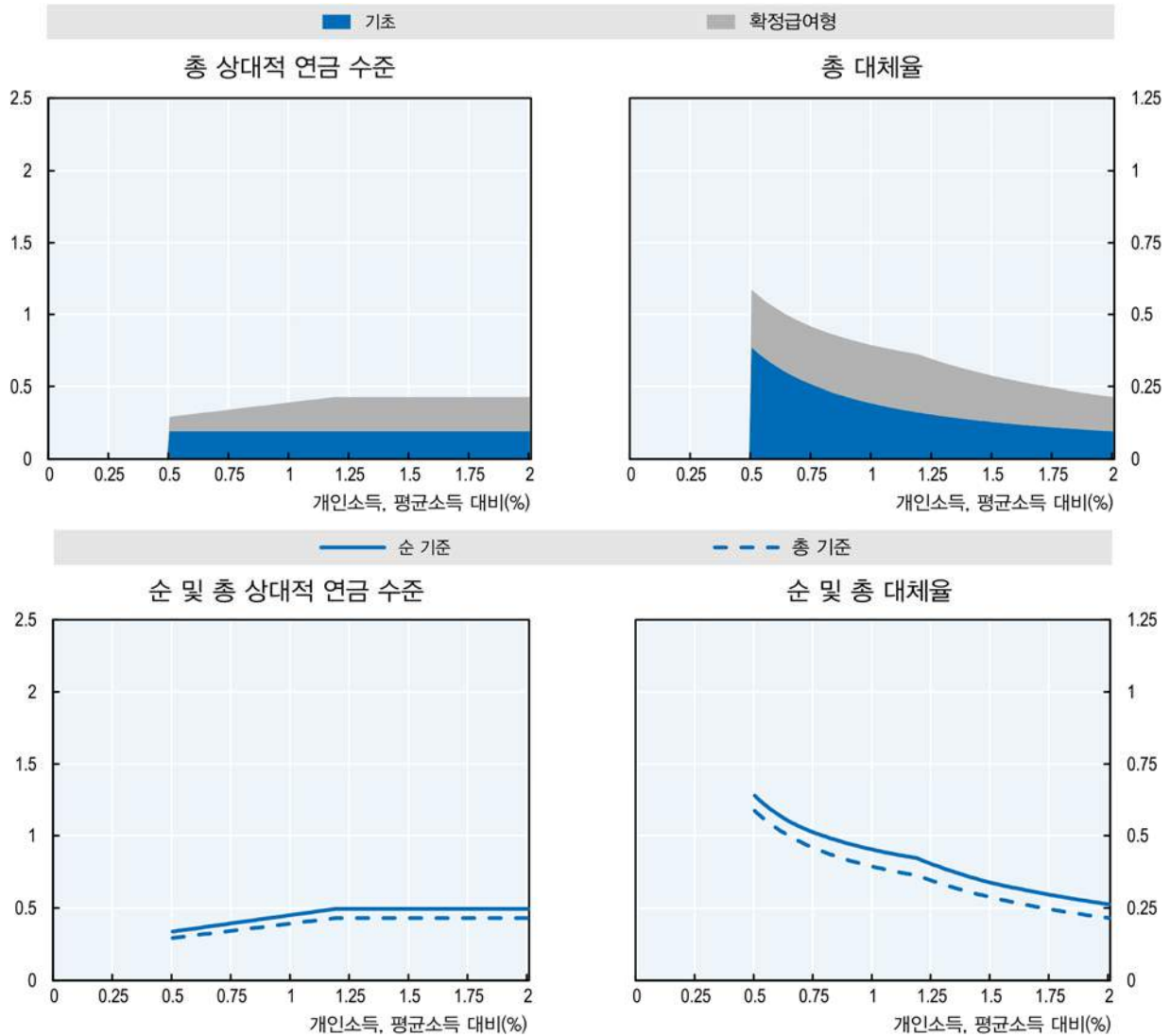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다.(2002년 이후 누적된 모든 수급권에 적용) 그러나 연금소득 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350만 원 이하의 모든 연금 소득은 세금 공제된다.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한계세율이 40%, 20%, 10%까지 떨어진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연 9백만 원이다.

하한선(원)	0~350만	350만~700만	700만~1,400만	1,400만 이상
공제 대상(원)	총액	350만	700만	2,700만
한계공제율	100%	40%	20%	10%
공제(원) =	350만	140만	140만	270만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지역가입자인 연금수급자는 연금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 기여금을 납부한다. 건강보험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연금 소득의 경우 20%만 기여금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한국,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3	34.3	39.3	43.0	43.0	43.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3.7	39.4	45.1	49.4	49.4	49.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8.5	45.7	39.3	28.7	21.5	14.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3.8	51.1	45.1	33.7	26.3	18.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0	8.6	7.4	5.4	4.0	2.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0	9.6	8.5	6.3	4.9	3.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511>


## 라트비아

### 라트비아: 2018년 연금제도

신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에 기초한 소득비례 공적연금과 적립식 연금에 대한 강제적 기여금이 결합된 형태이다. 안전망 연금도 있다.

### 핵심 지표: 라트비아

		라트비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11,881	35,230
	USD	14,025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7.0	8.0
기대수명	출생 시	74.9	80.7
	65세 시점	16.8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5.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530>

## 수급요건

63세 3개월에 도달하고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남녀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연금 수급연령이 매년 3개월씩 증가하여 2025년 1월 1일에는 65세에 도달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최소 가입 기간도 15년 연장되었고 2025년부터는 20년으로 늘어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새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에 기초한다. 연금 가치는 은퇴 시 명목자본 합계(가입 임금액에 맞춰 업데이트된 기여금)를 'G 값'(남녀 구분 없는 수명표를 적용한 은퇴 시 예상 기대수명을 사용해 매년 산정)으로 나눈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실질 임금증가분의 75%를 더한 값에 맞추어 반영한다. 2018년 10월부터 새로운 연동 방식이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의 연동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1.0720의 연동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30~39년인 경우 1.0655의 연동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29년 이하인 경우 1.0590의 연동이 적용된다. 2018년, 연동 상한선은 382유로(전년도 평균 보험 기여 임금 수준에 맞추어 설정)였다.

명목계정에 대한 기여율은 2016년에 14%에 도달한다. 그 중간에는 확정기여형(아래 참조)에 명목계정 기여금을 더해 소득의 총 20%가 되도록 비율을 높였다.

### 선별적 연금

최저 보증 노령연금은 사회보장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2018년에는 월 64.03유로였다. 이 연금 가치는 다음과 같이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	<20	20-30	30-40	>41
최저연금의 배수	1.1	1.3	1.5	1.7

### 확정기여형 연금

2001년 7월 1일 기준으로 30세 미만인 사람은 새로운 적립식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1년 7월 1일에 30~49세인 사람은 공적 부과식 연금제도에 계속 가입한 상태로 있거나 공적연금과 적립식 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적립식 연금에의 기여율은 소득대비 6%이다.

은퇴 시 누적된 자본은 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부과식 연금제도에서 누적된 명목자본에 기금 잔액을 더하고, g값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둘째, 생명 보험사에서 종신 연금에 가입한다.(연동 또는 유족 급여 제공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경력 차이

### 육아

연령이 1년 6개월에 이르지 않은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국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다(해당자는 1~1.5년 사이에서 휴직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실업

T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 장애인을 대신하여 국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다. 크레딧은 실업급여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 조기수급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2년 전에 조기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급연기

공식 연금 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을 연기할 수 있다. 공식 연금 수급연령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이 증가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1996년 1월 1일 이전 ‘국가연금(On State Pensions)’ 법에 따라 지급된 연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국가연금’ 법에 따라 연금을 받거나 재산정된 사람의 과세 최소 금액은 연 3천 유로다.

### 연금 소득의 과세

2018년부터 누진적 개인소득세율이 도입되었다. 연간 소득이 2만 유로 이하인 경우 20%, 2만~5만 5천 유로인 연간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23%, 5만 5천 유로를 초과하는 연간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3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2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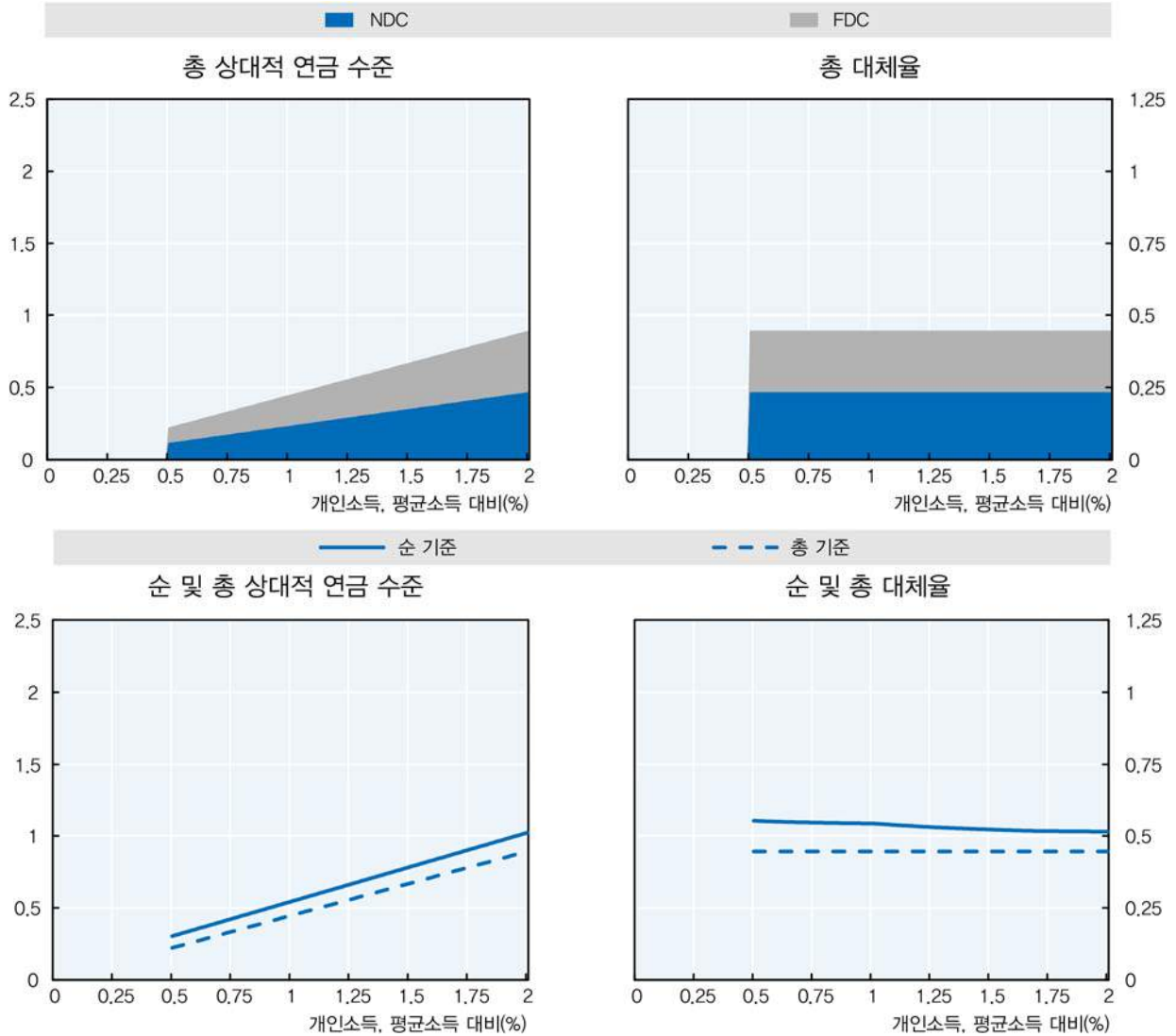
근로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경우, 2018년 기준 사회보험 기여율이 30.87%이다.(근로자 9.56%, 고용주 21.31%)

납부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세가 감면된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연금보험, 산업재해, 직업병보험, 출산 및 질병보험, 육아보험에 대해 사회보험 기여금을 납부하고, 폐질보험 및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근로하지 않는 연금 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라트비아,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2.3	33.4	44.6	66.8	89.1	133.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0.4	42.3	54.3	78.2	102.1	149.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4.6	44.6	44.6	44.6	44.6	44.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5.2	54.6	54.3	52.2	51.4	50.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8	6.8	6.8	6.8	6.8	6.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7.9	7.9	7.9	7.9	7.9	7.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5	8.4	8.3	8.0	7.9	7.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8	9.6	9.6	9.2	9.1	9.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549>


##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 2018년 연금제도

리투아니아는 소득비례 급여와 정액 급여를 가진 이원구조의 새로운 공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층인 적립형 연금 제도에 대한 자발적 기여도 존재한다.

### 핵심 지표: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14,334	35,230
	USD	16,92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6.7	8.0
기대수명	출생 시	75.5	80.7
	65세 시점	17.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4.7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568>

## 수급요건

2018년 기준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이 63세 8개월, 여성이 62세 4개월이다. 연금수급연령은 여성의 경우 연 4개월, 남성은 연 2개월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둘 모두 65세가 될 것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기여년수를 채울 때 기여금은 적어도 최저임금(2018년 기준 평균 월 400유로)과 동일해야 한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연금의 기본 부분은 정액 기여형 급여다. 2018년 기준 전액을 받는 데 필요한 기여년수는 30.5년으로, 이 기간은 연 6개월씩 증가하여 2027년에 35년이 될 것이다. 기여 기간이 그보다 짧거나 긴 사람들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감액 또는 증액된다. 2018년, 완전경력에 대한 전액 기초연금은 월 152.92유로였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 부분은 포인트 기반 제도이다. 연금 포인트는 리투아니아의 평균 사회보장 연금 기여금 대비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 기여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상한선은 평균 임금의 5배다. 포인트 산정은 1994년 이후의 소득만을 바탕으로 하지만 근로 기간은 1994년 전후 모두를 고려한다. 최고 소득 25년을 적용했던 이전과 달리 1994년 이후의 모든 경력 기간이 포함된다.

연금 개혁 이전(1994~2017)의 보장 소득 계수(insured income coefficients)에는 0.78을 곱해 연 포인트로 변환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평균 소득자는 연 1포인트를 받는다.

기초연금액과 연금 포인트 가치는 과거 3년, 당해, 향후 예상 3년의 국내 임금 기금의 성장률 평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 확정기여형 연금

적립형 연금제도는 자동가입 제도로, 40세 미만의 피고용인들은 특정 기간 내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과 함께 제도에 가입된다. 자동가입 절차는 3년마다 반복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여율은 근로자 3%, 국가 1.5%이다.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제도이므로 모델화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경력 차이

### 육아

2008년 1월부터 3년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성(부성)수당이나 수당을 받지 않는 기간의 경우 최저 임금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보장연금 전액이 보장된다.

모성(부성)수당은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의 육아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다.

2011년 7월 1일부터 모성(부성)수당의 수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1년을 선택하면 수당으로 수혜자의 보수를 모두 충당할 수 있고, 2년을 선택하면 첫 해에는 70%, 두 번째 해에는 40%를 충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에는 육아 수당의 감액 없이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둥이의 경우 수당 금액은 동시에 태어난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출산 및 육아 기간은 1층 연금(2층에 누적되므로 감액 없음)과 2층 연금에 대한 기여금 모두 보장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는 3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출산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가의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 누적 계정으로 재작년 평균 임금의 2%(2019년부터 1.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지급한다.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부모 중 한 명에게 각 자녀에 대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 실업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인정되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실업 보험 급여는 정액 부분과 변액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액 부분은 급여가 지급되는 달 최저 월 임금의 30% (2019년 1월 1일부터 23.27%)이다. 2018년 기준 이 금액은 120유로(2019년 1월 1일부터 129.15유로)였다. 가변 부분은 고용센터(Employment Service)에 실업 사실을 등록한 날짜로부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직전 30개월(소득이 없는 달 포함) 동안 당사자가 수령한 보장소득(insured income)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보장소득에는 실업 보험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모든 개인 소득(실업 보험 급여, 부분 근로 급여, 질병 급여, 모성급여, 부성급여, 육아 수당, 산업재해 수당 포함)이 포함된다.

실업 보험 급여의 변액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지급 1~3개월차: 평균 월 보장소득의 50%(2019년 1월 1일부터 38.79%)
- 지급 4~6개월차: 40%(2019년 1월 1일부터 31.03%)
- 지급 7~9개월차: 30%(2019년 1월 1일부터 23.27%) 실업 급여는 리투아니아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에서 분기별로 공개하는 국내 평균 월 보장소득의 75%(2019년 7월 1일부터 58.18%)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 12월 급여는 695유로였다. 연금수급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지급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 조기수급

조기수급 시 연금액은 연금수급연령까지 남은 기간(최대 5년) 동안 매월 0.4%씩 감액된다. 연기금에서 일시불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기수급을 선택한 뒤 연금 수령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 수급연기

표준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소득비례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액은 연기하는 매년 8%씩 증액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근로자와 근로하는 연금수급자에게는 동일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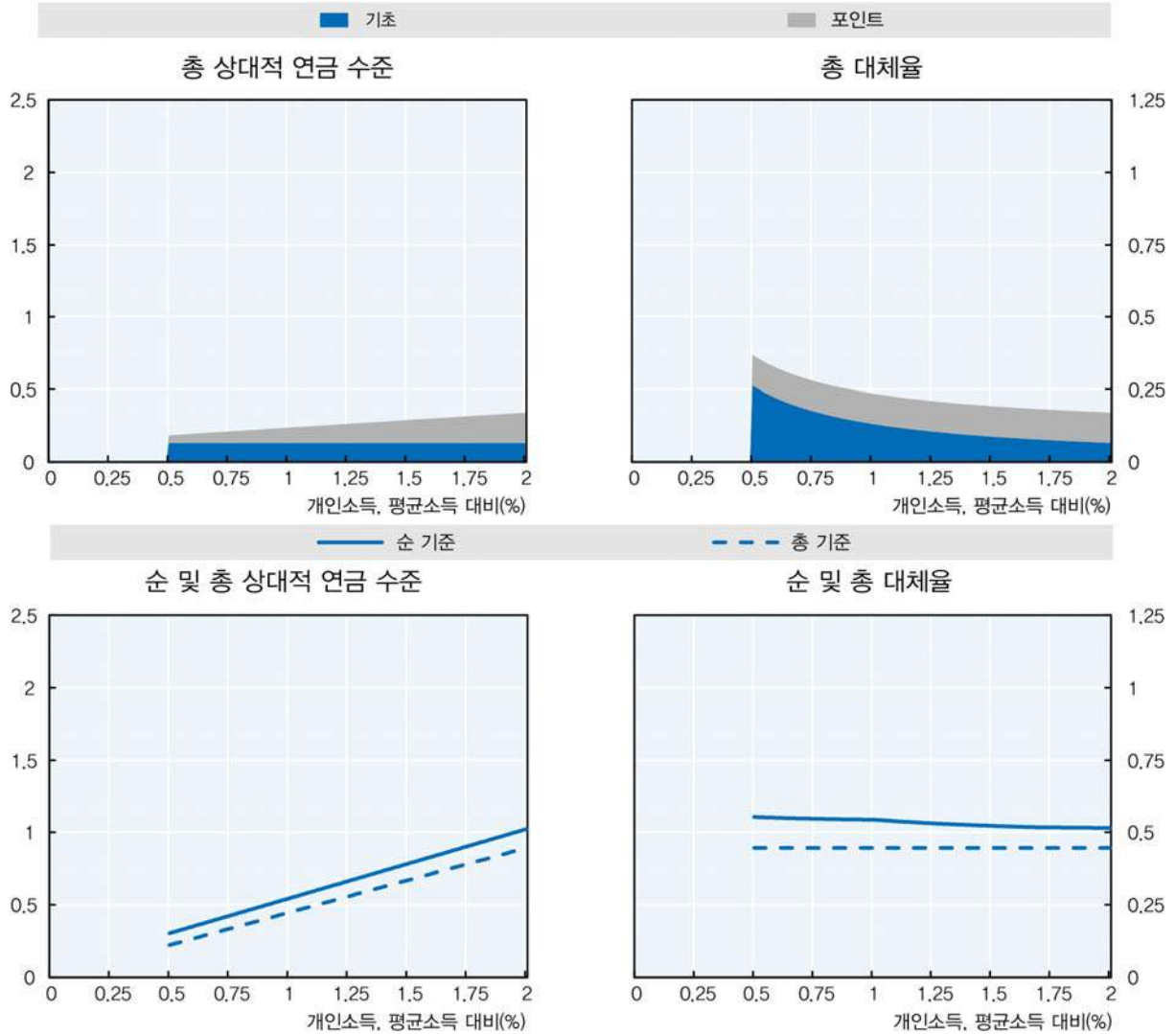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공적 연금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리투아니아, 2061년, 수급연령 65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8.4	21.0	23.6	28.8	34.0	44.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4.2	27.6	31.0	37.9	44.8	58.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6.8	28.0	23.6	19.2	17.0	14.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48.4	36.8	31.0	25.3	22.4	19.5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0	4.6	3.8	3.1	2.8	2.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7.9	6.0	5.1	4.1	3.6	3.2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587>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정액)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최저연금도 있다.

### 핵심 지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59,497	35,230
	USD	70,22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4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0	80.7
	65세 시점	20.2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2.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606>

## 수급요건

65세 생일에 도달한 가입자는(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120개월 이상의 기여 기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노령연금을 수급 할 수 있다. 60세 생일에 도달한 가입자는(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기여 기간과 비기여 기간을 합쳐 480개월의 기여 기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노령연금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단, 기여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7세 생일을 맞은 가입자는 의무적 기여 기간 480개월을 증명할 수 있으면 노령연금을 조기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2018년 기초균등연금은 40년 가입한 경우 월 490.20유로였다. 가입 기간이 미달하는 경우 급여액은 그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공식적으로 기초연금 수준은 기준소득의 일정 비율 지표로 표현되며, 2018년 이 비율은 24.175%, 기준 소득은 2,027.72유로였다.

기초연금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연말수당’도 있는데 기여년수가 40년인 경우 월 64.96유로가 추가된다. 기초 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이 짧으면 부족한 가입 기간 1년당 약 월 1.62유로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지급률은 일정 비율지표로 표현되며, 가입 1년당 1.813%(2018년)가 적용된다. 이는 총 누적 소득에 적용된다.

기여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지급률이 높다. 개인의 연령과 기여년수의 합이 94를 초과하면 지급률이 연 0.013%p씩 증가한다. 두 변수는 2018년에 적용된 가치를 나타낸다. 최대 지급률은 연 2.05%이다.

2018년 기준 최대 연금액은 월 8,448.85유로였다.(공식적으로 기준 금액의 25/6로 규정)

급여는 생계비(물가 연동)와 실질 임금 상승(연간 재조정)에 모두 연동된다. 실질 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 수준은 연금제도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강제적, 자발적 기여기간 또는 크레딧 기간을 포함하여) 기여년수가 40년인 경우 월 1,824.95유로(기준 금액의 90%)이다. 최소 총 가입 기간이 20년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줄면 그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 사회부조

안전망 수준은 2018년 독신자의 경우 월 1,436.20유로이며 2명의 성인이 있는 가정은 월 2,154.34유로이다.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25세 이상의 합법적 룩셈부르크 거주자여야 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여금 납입 기간이 40년이면 57세에, 자발적 또는 크레딧(비기여) 기간을 포함한 총가입 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60세에 조기퇴직(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조기 수급자는 근로를 병행할 수 있으나, 소득이 미미하거나 총 소득이 경력 기간 중 최고 소득 5년간의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기수급 시 급여액에 대한 추가적인 계리적 조정은 없다.

그 밖에 여러 조기수급 프로그램이 있다. 교대 근무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나 노령 근로자는 구조조정이나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 57세부터,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3년 전부터 조기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년간 지급되는 조기수급 급여액은 1년차에는 이전 소득의 85%,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5%이다. 소득 기준은 직전 12개월 임금이다.

고령 근로자는 누적적 조기수급 프로그램을 통해 57세부터,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3년 전부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기수급 연대 제도는 2017년 중 폐지되었다.

### 수급연기

연금급여는 해당 날짜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65세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급여액의 삭감 없이 근로와 연금수급을 병행할 수 있다.

### 육아

최대 6개월(여러 가지 시간제 육아 휴직 옵션이 있음)까지 전일제 육아휴직(congé parent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수급자는 이전 급여에 기초해 월 수당(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체 소득)을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금 수급자격에 반영되고, 개인연금의 기초(정액) 및 소득비례 부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육아 기간(baby years)은 자녀가 4세가 될 때까지 1명당 24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유급근로를 하지 않는 이 기간은 의무적 납부기간, 즉 육아 기간으로 크레딧이 제공된다. 육아 기간은 연금 수급자격에 반영되고, 개인 연금의 기초(정액) 및 소득비례 부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육아기간을 신청하기에 기여년수가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은퇴 시 자녀 한 명당 86.54유로의 특별 월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 기간(Périodes d'éducation)은 비기여 기간으로, 연금 수급 요건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기초(정액)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실업

실업급여는 대체 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여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금 수급자격에 반영되고, 개인 연금에서 기초(정액) 부분 및 소득비례 부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수급자는 세금 공제(연 300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는 연 300유로의 금액을 취득비(frais d'obtention)로 공제받고 연 480유로 이상을 특별 경비(dépenses spéciales)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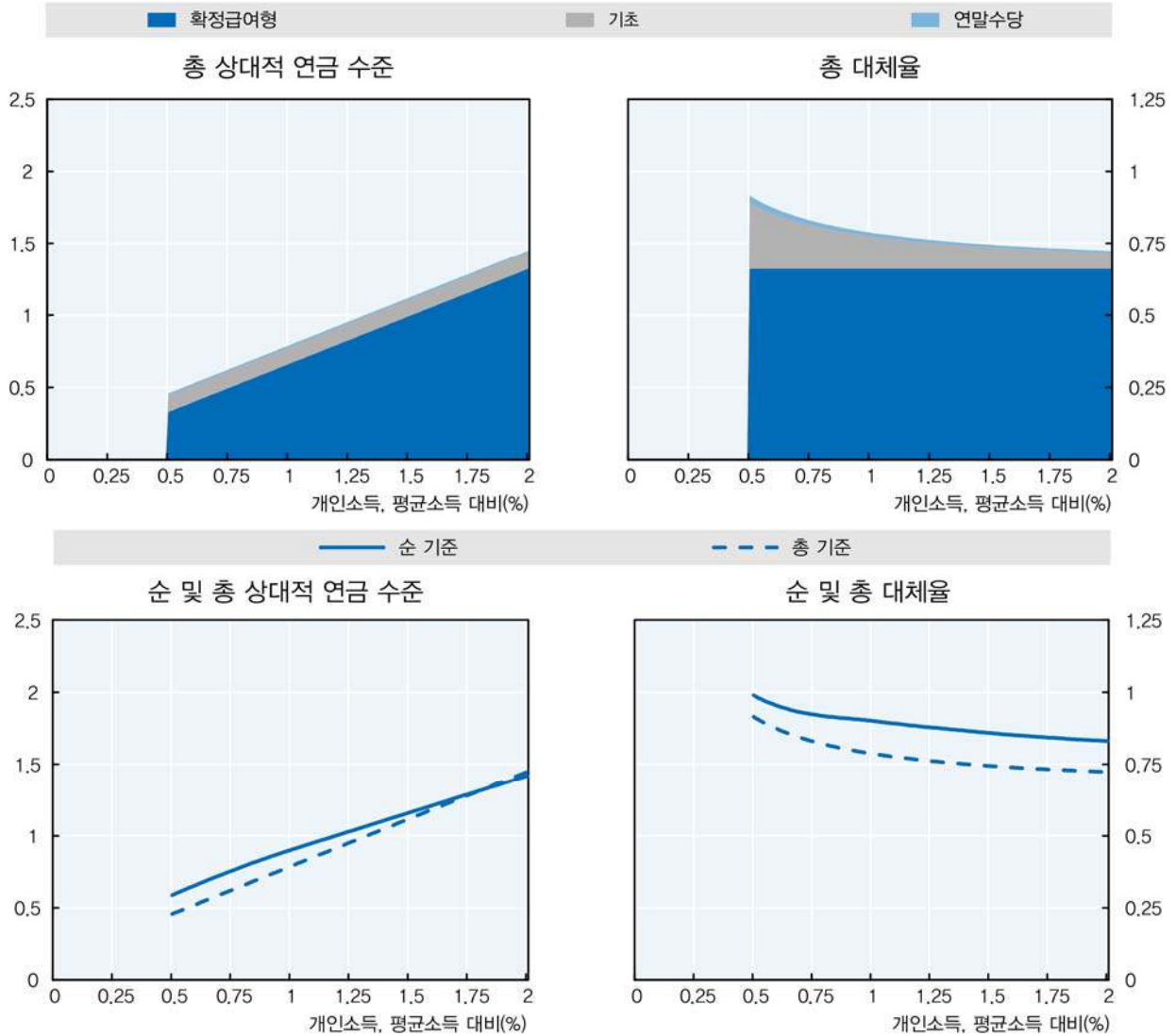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은 건강보험료(5.60%) 및 장기요양보험료(1.40%) 납부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는 수급자(근로자 부분)와 연금 제공자(고용자 부분)가 균등(각 2.80%)하게 납부한다. 또한, 수급자는 소득세 부담분 중 7~9%의 연대 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실업보험 제도에도 기여금을 납부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룩셈부르크, 2058년, 수급연령 62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5.8	62.3	78.8	111.8	144.8	183.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8.8	75.7	90.1	116.0	141.9	171.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1.5	83.0	78.8	74.5	72.4	61.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9.0	92.3	90.1	85.9	83.1	69.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1.7	19.7	18.7	17.7	17.2	14.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3.5	21.9	21.4	20.4	19.8	16.5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625>


## 멕시코

### 멕시코: 2018년 연금제도

멕시코의 연금제도는 세 가지 형태, 즉 65세 이상을 위한 자산조사형 노령연금, 최저연금이 포함된 강제적 확정기여형 연금, 기타 개인 및 기업의 사적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또한 주정부, 지방정부 및 국립대학교에는 각자의 독립적인 연금제도가 있다.

### 핵심 지표: 멕시코

		멕시코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MXN	122,208	800,264
	USD	6,35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2.2	8.0
기대수명	출생 시	75.0	80.7
	65세 시점	17.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3.2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644>

## 수급요건

기여 기간이 1,250주(약 24년)인 민간부문 근로자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다.

## 확정기여형 연금

개인 계정에 개인소득의 총 6.5%를 기여하는데, 그 중 근로자가 1.125%, 고용주가 5.150%, 정부가 0.225%를 각각 기여한다. 근로자주택기금계좌(INFONAVIT)를 통해 고용주가 추가로 5%를 기여하고, 개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계정으로 들어간다. 기여액의 상한선은 측정개선지표(UMA)의 25배이다.<sup>5)</sup>

또한, 정부가 기여일 마다 누진적 금액을 개인 퇴직연금계정에 납부하는데, 이를 사회할당(cuota social), 즉 사회 급여라고 한다. 2018년 12월 기준 사회급여는 다음과 같다.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MXN 5.63710, 최저임금의 1.01~일일 UMA의 4배인 경우 MXN 5.40222, 일일 UMA의 4.01~7배인 경우 MXN 5.16734, 7.01~10배인 경우 MXN 4.93246, 마지막으로 소득이 일일 UMA의 10.01~15배인 경우는 MXN 4.69758이다. 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급여가 없다. 사회급여는 분기별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 급여 산정

은퇴 시, 개인은 누적된 계좌 잔액(유족급여 보험료 할인)을 사용하여 물가연동연금 또는 프로그램화된 지급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률(annuity rate)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하며 성별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화된 지급을 선택한 연금수급자는 월 종신연금액이 보장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 언제든지 종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5) 측정개선지표(Unit of Measurement and Upgrade, UMA)는 페소 단위를 사용하는 경제 기준이다. 멕시코시티와 각 주에 적용되는 연 방법과 지역별 법적 조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가정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2018년 12월 기준 일일 UMA는 80.60 페소, 월 UMA는 2450.24페소(일일 값에 30.4를 곱하여 계산), 연 UMA는 29,402.88페소(월별 값에 12를 곱하여 계산)였다.

## 최저연금

은퇴하는 근로자가 65세이고 민간 부문에서 1,250주(약 24년) 이상 기여했으나 개인 계정에 누적된 잔액이 최저 연금에 상당하는 연금을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최저연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이 최저보장연금은 개인 계정의 기존 잔액에서 시작하고, 잔액이 모두 소진되면 연방 예산에서 지급한다.

최저(보장)연금은 연간 36,617.16페소(2018년 12월)이며 매년 물가에 연동된다.

## 연금 지급불가 고지(Negativa de pension)

은퇴 시 기여기간이 1,250주 미만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없으며 ‘연금 지급불가 고지(negativa de pension)’를 받는다. 이 때 퇴직자는 자신의 계정에 누적된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다.

## 비기여 자산조사형 노령연금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안전망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1,902.00페소를 초과하는 기여형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은 65+라는 노령연금의 대상이 된다. 각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580페소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60세부터 64세까지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단, 고용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1,250주 이상의 기여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자는 개인 계정에 누적된 잔액으로 최저연금보다 최소 30% 높은 종신연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수혜자 보험의 유족연금 지급 이후 60세 이전에 언제든지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소 1,250주의 기여 기간을 채워야 한다.

### 수급연기

65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실업

실직한 근로자는 5년에 한 번 본인의 노령연금/퇴직연금 계정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권리를 가진다.

실직이 발생하기 5년 이전에 개인 계정이 개설되었다면 직전 기여금 납부 기간 250주간 평균 임금의 90일분 또는 노령연금/퇴직연금 계정 잔액의 11.5% 중 낮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급여는 최대 6번의 월 할부로 지급될 수 있다. 개인 계정을 실업 기간에 앞서 최소 3년 전에 개설했고 2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최대 1개월분의 임금(한도: 월 최저임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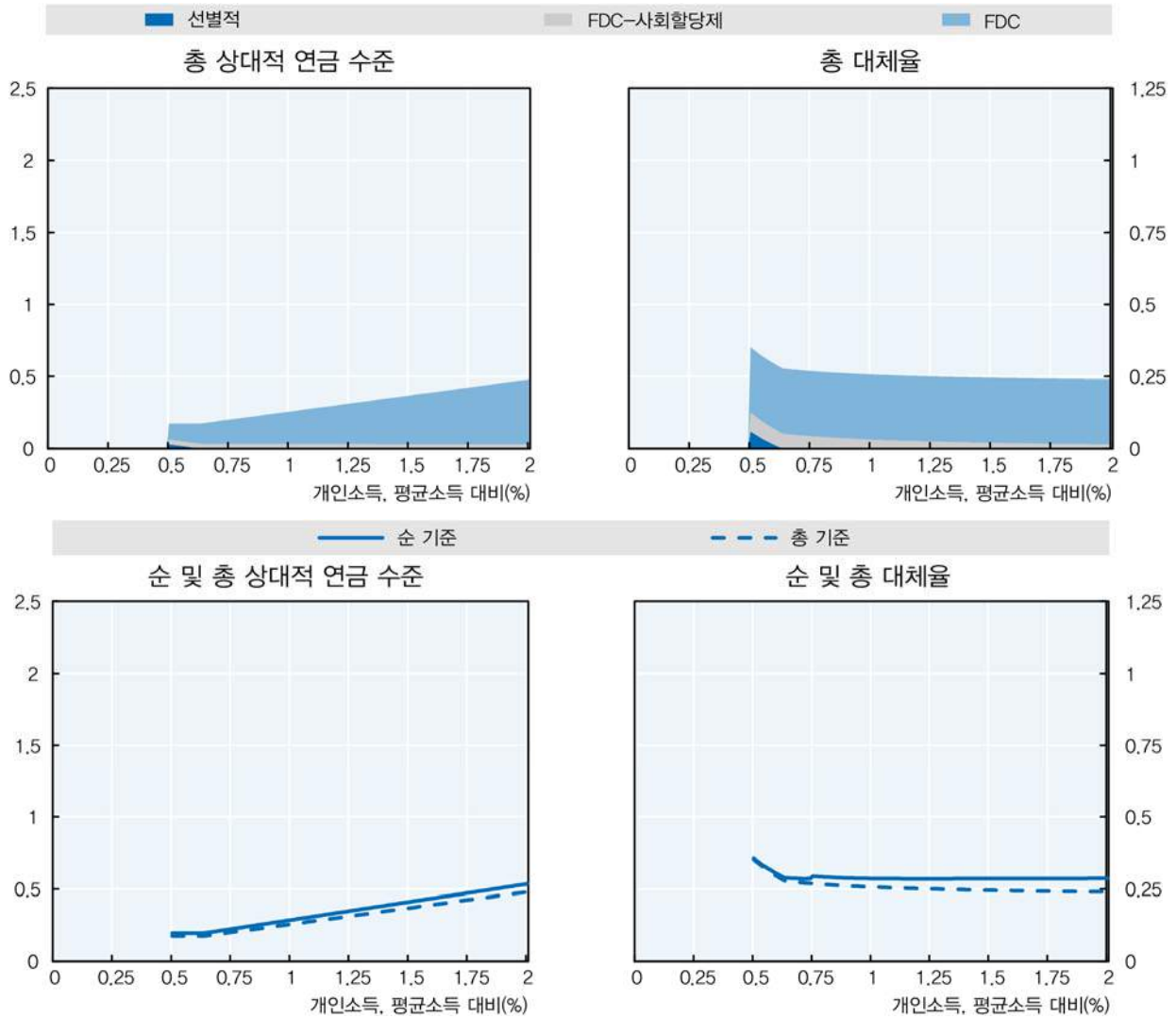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수급액은 일일 UMA의 15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즉 이 수준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시불 인출의 경우, 기여금을 납부한 각 1년에 대해 UMA 90일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상한보다 높은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멕시코, 2061년, 수급연령 65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7.6	20.1	25.7	36.8	48.0	69.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19.6	22.4	28.6	41.0	53.5	76.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5.1	26.8	25.7	24.6	24.0	23.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35.6	29.4	28.6	28.6	28.6	28.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5.8	4.5	4.3	4.1	4.0	3.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5.9	4.9	4.8	4.8	4.8	4.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663>


## 네덜란드

### 네덜란드: 2018년 연금제도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3층, 즉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급여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정액의 국가연금(AOW), 적립형 기업연금제도, 개인 저축제도로 구성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산업별 노사협약 덕분에 근로자의 91%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제도는 준 강제적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핵심 지표: 네덜란드

		네덜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51,567	35,230
	USD	60,868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5.4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0	80.7
	65세 시점	20.0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4.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682>

## 수급요건

2018년 기초노령연금은 66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모든 거주자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21년에 67세가 된다. 그 이후에는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기대수명의 증가에 연계될 것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독신자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8년 기준 월 1,173.33유로였다. 또한 1인당 71.42유로의 추가 휴가수당이 있었다. 따라서 독신자의 경우 총 1,244.75유로, 부부의 경우 1,717.78유로를 받는다. 급여액수는 격년마다 조정되는 순 최저임금의 변화에 연동된다.

기초급여는 근로자가 네덜란드에서 살거나 일하는 기간의 매 1년에 대해 전액의 2% 수준으로 지급된다. 네덜란드 거주기간이 50년 미만이고 기타 다른 생계수단이나 자산이 없는 노인 혹은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조사형 사회부조급여가 제공된다. 이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된 급여액을 보충하는데, 최대 금액은 순 기초연금과 동일하다.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약 94%(2012년 초 기준)는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나머지는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제도 가입자의 99% 이상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지표가 생애 평균소득에 근거하며 1% 미만은 최종 임금에 근거하거나 생애 평균 소득과 최종 임금 두 가지를 결합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최종임금제도의 최대 지급률은 근무 1년당 소득의 1.657%이다. 즉, 42년 가입 시 목표 소득대체율이 약 70%에 달한다. 평균임금제도에 대한 최대 지급률은 근무 1년당 1.875%로, 최대 101,519유로의 소득까지만 보장한다. 이 보다 높은 소득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 기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상향 조정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지만 대부분의 연금 지급액은 매년 상향 조정된다. 연금 지급액의 거의 56%가 (산업별)임금 인상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금의 약 28%는 물가에, 1%는 임금과 물가 인상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직 시에도 연금 수급권의 100% 이전이 보장된다. 이때 은퇴후 수급하는 연금이 연동되는 것과 동일한 식으로, 은퇴 전에 연금제도를 떠나는 사람들의 연금수급권도 연동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수급권 부여를 위한 최소재직요건(vesting period)은 매우 짧다. 현 세법에서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모두 65세에 최종 임금의 최대 100%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총 대체율 목표를 최종 임금의 70%로 잡고 있어서 사적 급여는 기초 국가연금에 해당하는 권리액(franchise amount) 만큼 감액하고 지급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초연금은 66세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조기수급이 가능하지만 급여가 조정된다.

### 수급연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을 66세(2021년 67세까지 점차 상승)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 수급연기 규정은 퇴직연금제도마다 다르다.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하면서 동일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육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자동적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육아를 위해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없지만, 연금 수급권 발생은 남은 근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제도에서 육아로 인한 근로중단기간에도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허용한다.

### 실업

퇴직연금제도에서 실업 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실업 기간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기금(FVP)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 발생(pension accrual)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과 공식적 관련이 없다. FVP기금은 현재 청산 중이며 새로운 기능은 일체 맡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66세 이상 연금에 대한 기본 세금 혜택은 1,145유로다. 소득이 35,949유로 미만인 경우 이 세금 혜택은 1,413유로 증가한다. 또한, 1인 가구 연금수급자는 436유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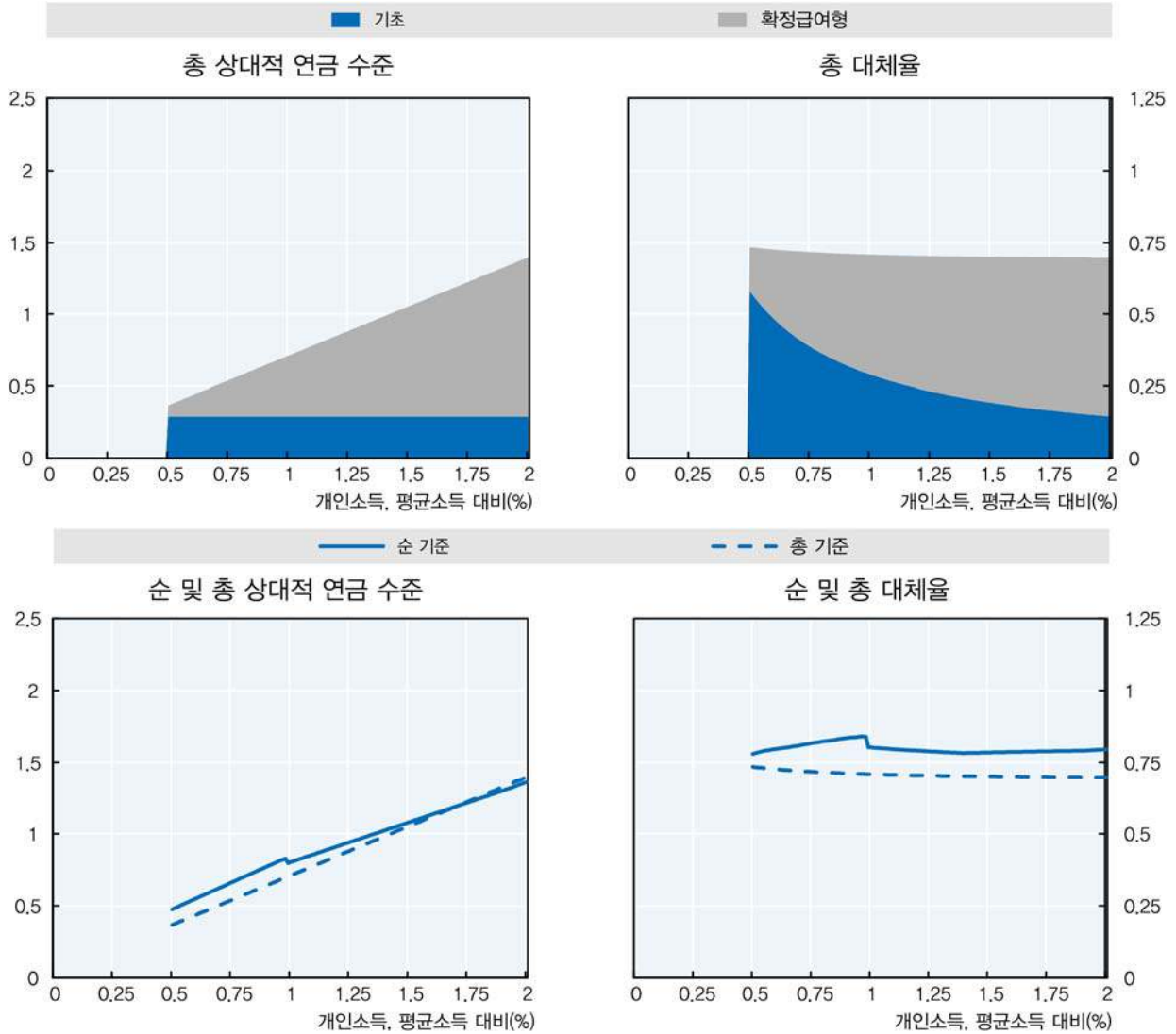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과 유족연금보험을 위해 과세소득의 10.25%를 납부한다.(Wlz, ANW, 소득 33,715 유로까지) 또한 소득사정에 따라 사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66세 미만의 수급자가 납부하는 기여금보다 적다.(66세 미만 수급자는 노령연금, 실업보험 등을 납부)



연금 모형화 결과: 네덜란드, 2067년, 수급연령 71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6.7	53.8	70.9	105.1	139.3	207.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7.5	66.1	80.2	107.8	136.0	185.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3.5	71.8	70.9	70.1	69.7	69.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8.0	81.7	80.2	78.5	79.6	78.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7	12.5	12.3	12.2	12.1	12.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9	13.6	13.4	13.2	13.2	13.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7	15.4	15.2	14.8	15.0	14.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701>


## 뉴질랜드

### 뉴질랜드: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거주조사와 연령 요건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정액 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발적 직장저축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핵심 지표: 뉴질랜드

		뉴질랜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NZD	60,360	60,100
	USD	25,04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4.9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0	80.7
	65세 시점	20.6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8.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720>

## 수급요건

20세부터 10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50세 이후 5년 포함) 6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1인 가구 독신자의 연금은 2018년 4월 1일부터 주당 총 463.04뉴질랜드달러였다. 2017/18년에는 450.10뉴질랜드달러였다. 이렇게 연금액이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할 정상 연간조정 프로세스, 그리고 역시 아래에서 설명할 정부의 공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 연금액은 평균 총 소득의 약 40%에 해당하는 24,078뉴질랜드달러가 된다.

지급될 공적연금 산정 시 다른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 수급액을 고려한다.

공적연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지만, 평균 세후 주급과의 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 둘 모두 수급자격을 갖춘 부부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매년 4월 1일 기준 세후 연금액이 (이전 12월 분기에 대한)세후 주급 조사 지표의 65%~72.5%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신자의 세후 연금액은 부부의 세후 연금액의 65%(혼자 사는 경우)와 60%(주거지 공유 시)로 설정되어 있다. 물가 변동이 조사된 세후 주급의 변동보다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후 주급의 변동이 연금의 연동지수가 된다.

현 정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세후 부부 연금액이 세후 소득 지표의 65%가 아니라 최소 66%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1인 가구 독신자와 주거지를 공유하는 독신자의 하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절기 에너지 급여(Winter Energy Payment)는 2018년 도입되었다. 이 급여는 동절기(2019년부터 5월 1일~10월 1일을 가리킴)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연금수급자와 수혜자에게 자동 지급된다. 부양 자녀가 없는 독신자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급여는 주당 20.46뉴질랜드달러(비과세)였다.

재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은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을 수급할 수 있다. 주거 보조금은 일정 기준(혼자 사는 독신 임차인 연금수급자의 경우 2018년 4월 1일 기준 주당 100뉴질랜드달러)을 초과하는 주거비의 70%를 보조하는데, 한도는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다.

## 자발적 사적연금

기업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한동안 하락해왔다. 고용된 근로자 중 고용주가 후원하는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3년 13.89%에서 2012년 9.98%로 떨어졌다. 이들 제도는 세제나 기타 장치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정부가 보조하는 자발적 퇴직저축제도로서 200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31일 기준 18~64세 뉴질랜드인의 약 80%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키위세이버의 기본 최저 기여율은 6%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납부한다. 근로자는 4%, 6%, 8%, 또는 10%의 더 높은 개인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연 최대 521뉴질랜드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2015년 5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 시 1,000뉴질랜드달러의 기여금을 받았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은 65세부터 연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의 형태로 수급하지는 않는다. 기금은 대개 65세까지 ‘묶여(locked-in)’ 있지만 생애 첫 주택 구매, 재정적 어려움, 사망, 심각한 질병, 영구 이민 등의 경우 지원을 위해 기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도입된 지 비교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 잔액이 적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수급연령에 도달’한 키위세이버 가입자 19,300명은 평균 37,900뉴질랜드달러를 인출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강제적 수급개시연령은 없다. 하지만 정상 수급개시연령인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다.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의 총 소득이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

### 수급연기

공적연금 수급은 은퇴 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금과 고용을 병행할 수 있다.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24.1%가 유급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반드시 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을 연기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이득은 없으며 연금의 소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 육아

최종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를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실업

최종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뉴질랜드는 노령자를 위한 세금 감면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골드카드 (SuperGold Card) 보유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잡 시간대가 아닐 경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4,000개가 넘는 소매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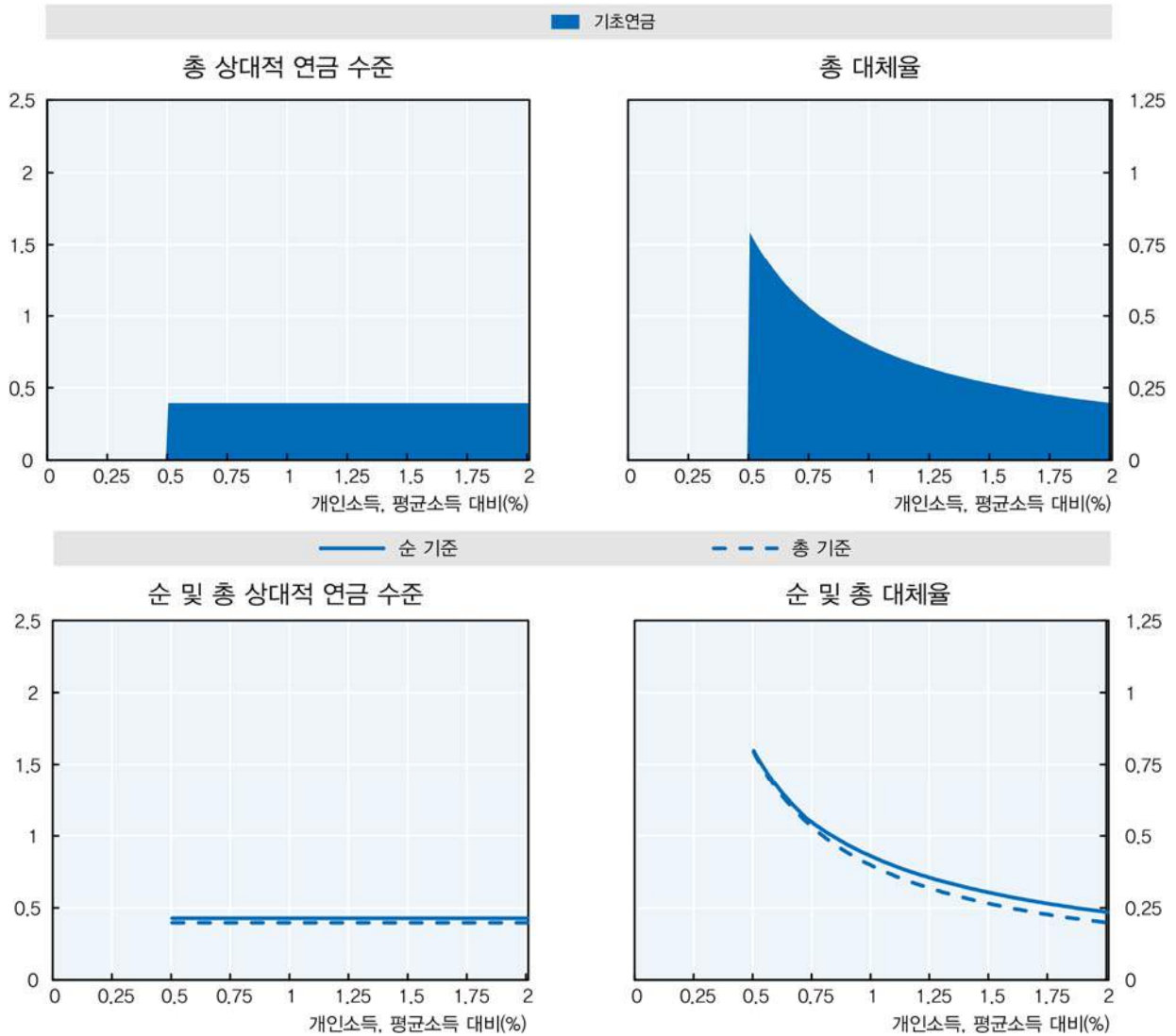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공적연금은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다른 연금소득과 과세 방식은 동일하다. 근로자의 세금 산정은 OECD의 임금 과세(Taxing Wages)에 보고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 산정에 2016년 4월 1일부터 1.39%로 규정된 사고 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부담금이 포함되는데, 연금수급자는 연금 소득에 대해 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제도의 보장은 받는다. 따라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연금수급자보다 평균 실효 세율이 다소 높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세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특정한 사회보장기여금이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뉴질랜드, 2061년, 수급연령 65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7	39.7	39.7	39.7	39.7	39.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2.8	42.8	42.8	42.8	42.8	42.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9.3	52.9	39.7	26.4	19.8	13.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9.8	54.5	42.8	30.3	23.5	16.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7.4	11.6	8.7	5.8	4.3	2.9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7.5	11.9	9.4	6.6	5.1	3.5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739>


## 노르웨이

### 노르웨이: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연금과 이 연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최저보장연금으로 구성된다. 최저보장연금은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소득조사형 연금제도이다. 2006년에는 공적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강제적 퇴직 연금이 도입되었다.

### 핵심 지표: 노르웨이

		노르웨이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NOK	596,477	338,185
	USD	73,345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6.6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2	80.7
	65세 시점	20.2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9.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758>

## 수급요건

16세에서 66세(포함) 사이에 노르웨이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새 제도의 최저보장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발생한다. 거주 기간이 40년이면 최저보장연금은 전액 지급되며, 거주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새 제도에서 연금 수급액은 13~75세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다른 유형의 소득을 통해 누적된다. 개인은 연금 대상 소득의 18.1%부터 상한선까지의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을 매년 적립한다. 연금 수급권은 매년 임금 상승률에 맞춰 증액된다.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의 여러 급여는 기초금액(G)에 연동하여 결정되며, 이는 2016년 95,800 크로네였다. 새로운 소득 연금제도의 상한은 기초금액의 7.1배이다. 2018년 노르웨이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은 OECD 추정치를 기준으로 약 596,488 크로네였다. 그러므로 연금소득 상한액은 평균 임금의 약 114%가 된다.

2011년부터 계리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는 62~75세 연령집단의 유연퇴직이 공적연금제도에 도입되었다. 62세 부터 소득조사 없이 근로와 연금 수급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신규 노령 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의 기대수명 조정이 도입되었다. 기대수명의 제수(divisor)는 주로 기대여명에 근거하여 인구집단 별로 설정된다. 제수는 인구집단이 61세가 되면 결정되고, 이후에는 조정되지 않는다. 각 인구 집단에는 62세부터 75세까지 일련의 기대수명 제수가 별도로 부여된다. 은퇴 시 연간 연금액은 누적된 기여금 적립액을 기대수명 제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은퇴 후 받는 소득비례연금은 임금과 연동되어 연 0.75%의 고정계수를 차감한 값으로 인상된다.

### 최저보장연금

보장연금은 기존 연금제도의 최저연금을 대체하게 된다. 이는 소득조사 시 소득비례 연금을 80%까지 반영한다.

독신 연금수급자의 경우 보장연금은 2018년 평균 192,383 크로네였으며, 이는 평균 소득의 약 32%에 해당한다.

최저보장연금은 임금에 연동되지만 67세에 기대여명 요인의 영향에 따라 조정된다.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의 장기 전망에서는 67세의 기대여명이 약 0.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전망에 따라 최저보장 연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조정된 후 기대여명 조정으로 대략 연 0.5%의 계수를 차감한다.

### 확정기여형 제도

2006년부터 고용주는 근로자 소득의 2%에 해당하는 최소 기여금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확정기여형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액은 2%의 강제적 기여금에 의한 예상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여금은 기초 금액과 기초금액의 12배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62세부터 적용되는 유연퇴직이 2011년부터 확정기여형 제도에 도입되었다. 급여는 종신 연금 형태로 인출하거나 최소 77세까지는 인출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이 급여는 남녀 공용 사망률 표를 이용해 산정된 물가연동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 자발적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자발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경력의 차이(공적 제도)

### 조기수급

전체 근로자의 약 2/3가 AFP(근로 계약에 의한 조기 수급 제도)에 참여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서는 62세부터 연금 수급을 허용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민간부문의 AFP 제도는 공적 노령연금제도의 종신 보충연금에 해당한다. 공적 노령 연금에 더해 소득조사 없이 근로와 AFP 보충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다. 보충연금은 연금 대상 소득의 약 4.2%에 해당하며 최대 62세까지 누적될 수 있다. 보충연금은 계리적 중립성과 기대수명 조정을 토대로 62~70세에 인출할 수 있다.

민간부문 AFP연금에는 일정한 수급요건이 있다. 첫째, 근로자는 62세에 지난 5년 중 3년간 사적 AFP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인출 연령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AFP 제도에 가입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은퇴 직전 연간 소득이 기초 금액(G)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연기

67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 육아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득비례연금에 연 기초 금액의 4.5배 또는 2018년 기준 431,100크로네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을 적립할 수 있다. 이는 평균 전일제 임금의 약 72%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정에서 장애인, 환자 또는 노인을 무급으로 돌보는 개인이다.

연 소득이 기초 금액의 4.5배 미만인 부모는 이 금액까지 소득이 인정된다. 연 소득이 기초 금액의 4.5배를 넘는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은 가족 단위로 신청하며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수급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특정 연도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기타 인구 집단의 경우 연금소득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여 수급한다.

## 실업

실업 직전 소득을 근거로 연금소득을 적립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기초 금액의 7.1배이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적게 과세된다. 특별 세제에 따라 최저연금 수급자 및 최저연금을 약간 초과하는 수급자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는 2011년에 연금 개혁에 맞춰 세제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연금을 인출할 때 근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 노령 및 조기 연금수급자

노령 및 조기 연금수급자는 연금소득에 따라 특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최대 세금 공제액은 29,950크로네였다. 541,369크로네의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는 점점 축소되다가 2016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018년 기준 197,706크로네 미만의 연금소득(노령 및 조기 퇴직연금)은 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 장애연금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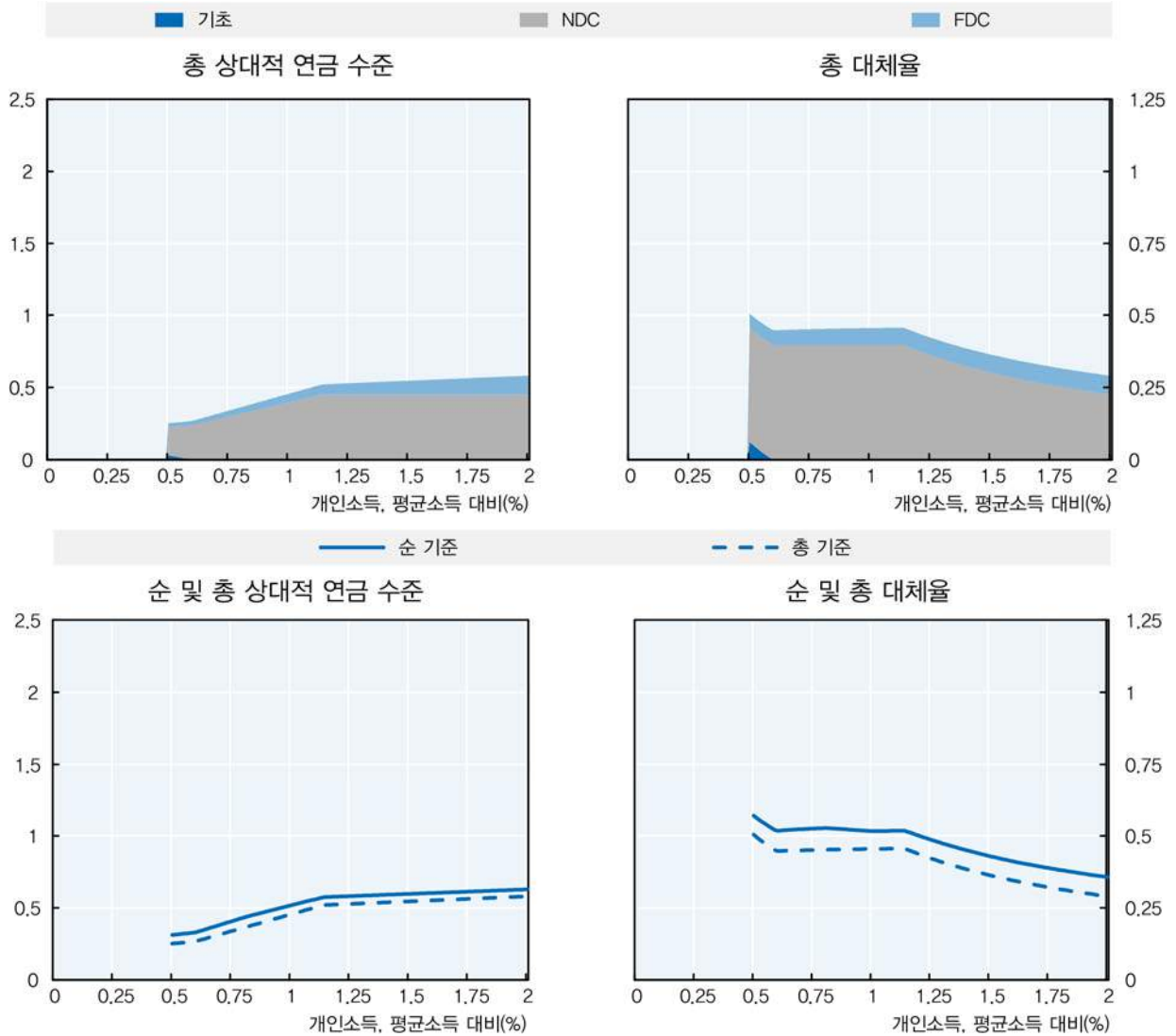
장애급여는 임금 소득처럼 과세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지만, 임금 소득(8.2%)보다 그 비율이 낮다(5.1%).



연금 모형화 결과: 노르웨이, 2063년, 수급연령 67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5.2	33.8	45.4	54.5	58.0	58.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1.2	40.6	51.6	59.7	62.8	63.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0.4	45.1	45.4	36.3	29.0	19.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7.0	52.5	51.6	43.0	35.7	25.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6	8.6	8.6	6.9	5.4	3.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5	10.0	9.8	8.1	6.7	4.8
	11.9	10.9	10.7	8.9	7.3	5.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777>


## 폴란드

### 폴란드: 2018년 연금제도

새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체계에 기초한다. 개혁 당시 30세 미만(1969년 이후 출생자)은 적립식 제도 가입이 의무였으며, 30~50세(1949~1968년 출생자)는 적립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1999년에 완료해야 했으며 조기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철회가 불가능했다. 2014년 이후로 적립식 제도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

### 핵심 지표: 폴란드

		폴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PLN	54,191	150,191
	USD	15,004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1.1	8.0
기대수명	출생 시	78.4	80.7
	65세 시점	18.5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0.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796>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이다. 남녀 모두에 대하여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11월, 의회에서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치를 되돌리기로 결정하면서 장기적 연금수급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가 되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소득의 19.52%(1948년 이후 태어나 적립식 2층 연금에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한 근로자는 16.6%)가 개인 명목계정에 적립된다. 명목금리는 연금대상임금 상승률의 100%로 정의되었으며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았다. 이 명목금리는 2000년부터 계정에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금(ZUS)에는 하위 계정도 있다.(이 변경 내용은 아래의 ‘확정기여형’에 설명하였다) 기여금을 하위 계정에 적립하는 것은 기존 ZUS 계정에 기여하는 것과 다르다. 또한,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 자본을 ‘g값’으로 나누어 연금 급여액이 산정된다. g 값은 은퇴연령 당시 평균 기대수명이다. 이 과정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연금화 과정과 동일하다. g 값은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발간하는 수명표를 이용해 산정한다.

기여 및 연금대상소득의 상한선은 전년도의 평균 기본액의 2.5배로 설정되었다. 2019년 기준 상한선은 142,950 즈워티였다.

연금 급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정에 정기적으로 연동된다.

### 최저연금

부과식 제도에는 최저연금이 있다. 2019년 3월 1일 이후 보장된 최저 노령연금은 1,100.00즈워티였다.

연동방식은 부과방식제도로부터 얻는 연금과 동일하다.

새 연금제도에서는 최저은퇴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며, 총 강제적 노령연금이 최저연금 보다 낮을 경우에 지급한다. 최저연금은 각각 최소 25년과 20년 이상 기여한 남성과 여성에게 보장된다.

## 확정기여형 연금

2014년 이후 공적 NDC제도가 기본 옵션이 되었다. 근로자는 총 임금의 2.92%를 사적으로 운용되는 DC 제도 (OFE)에 할당할 수 있다.

2014년 2월, 사적으로 운용되는 연기금 순 자산의 51.5%가 사회보장기관(ZUS)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사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사람의 자산은 은퇴연령 10년 전부터 공적제도로 점차 이전된다.

사적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의 기능이 변경된 것 외에도, 해당 기금에 누적된 자산 지급 메커니즘도 설정되었다. DC 연금은 사회보장기관에서 산정되어 NDC 부분과 함께 결합해 지급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일반 연금제도에는 조기수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수급연기

연령 제한 없이 명목 확정기여형 연금 및 적립식 확정기여형 연금 모두 연기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공식 연금 수급연령 이후로 연기하는 경우 기여를 계속하면서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전액을 수급하기 전에 고용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계속하면서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현재 근로 중이며 법정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분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병행해서 신청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다. 모든 소득(연금 급여 포함)은 과세 대상이다.

### 육아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출산급여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에서 납부되는데, 이 출산 급여는 지난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값이다. 2009년부터 지급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1명의 경우 20주, 2명의 경우 31주, 3명의 경우 33주, 4명의 경우 35주, 5명 이상의 경우 37주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1명당 최대 6주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추가적인 출산휴가 중인 부모는 시간제로 근로할 수 있다.(단, 최대 50%) 이 경우 출산 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축소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아버지가 2주간 육아수당을 수급할 권리가 생겼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6개월 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가입자로 있는 제도에 연금 기여금이 납부되며 사회복지급여가 연금, 장애 및 보건 기여금에 대한 기준(420즈워티)으로 사용된다. 2009~11년에는 기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약 40%)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평균임금의 60%이다(그러나 이 기준은 지난 12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휴직 중인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기여금을 납부한다.

폴란드의 법적 제도에서 육아휴직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최대 기간은 기초(20주)와 추가(6주) 휴직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 번의 출생에서 태어나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휴직은 최대 26주다. 기초 및 추가 출산휴가를 합하면 출생 시 52주가 주어진다. 이처럼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누리려면 모든 휴직을 이어서 최대한 길게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일시에, 또는 나누어서 쓸 수 있다. 나누는 경우 최대 3번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각 분할 기간은 8주 이상이어야 한다.(주 단위로 사용 가능) 이 기간은 반드시 연이어 사용해야 한다. 기여금이 납부되는 모든 기간은 최저연금 보장 자격요건 사정 시 고려된다.

## 실업

정리 해고된 사람들(청산, 파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전 수당제도가 있다. 은퇴 전 수당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데 여성은 55세부터, 남성은 60세부터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들 규정은 2004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전의 은퇴 전 급여는 여성은 50세, 남성은 55세부터 지급되었다. 은퇴 전 급여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의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정부는 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여금이 납부된 모든 기간은 최저연금보장 자격요건 사정 시 고려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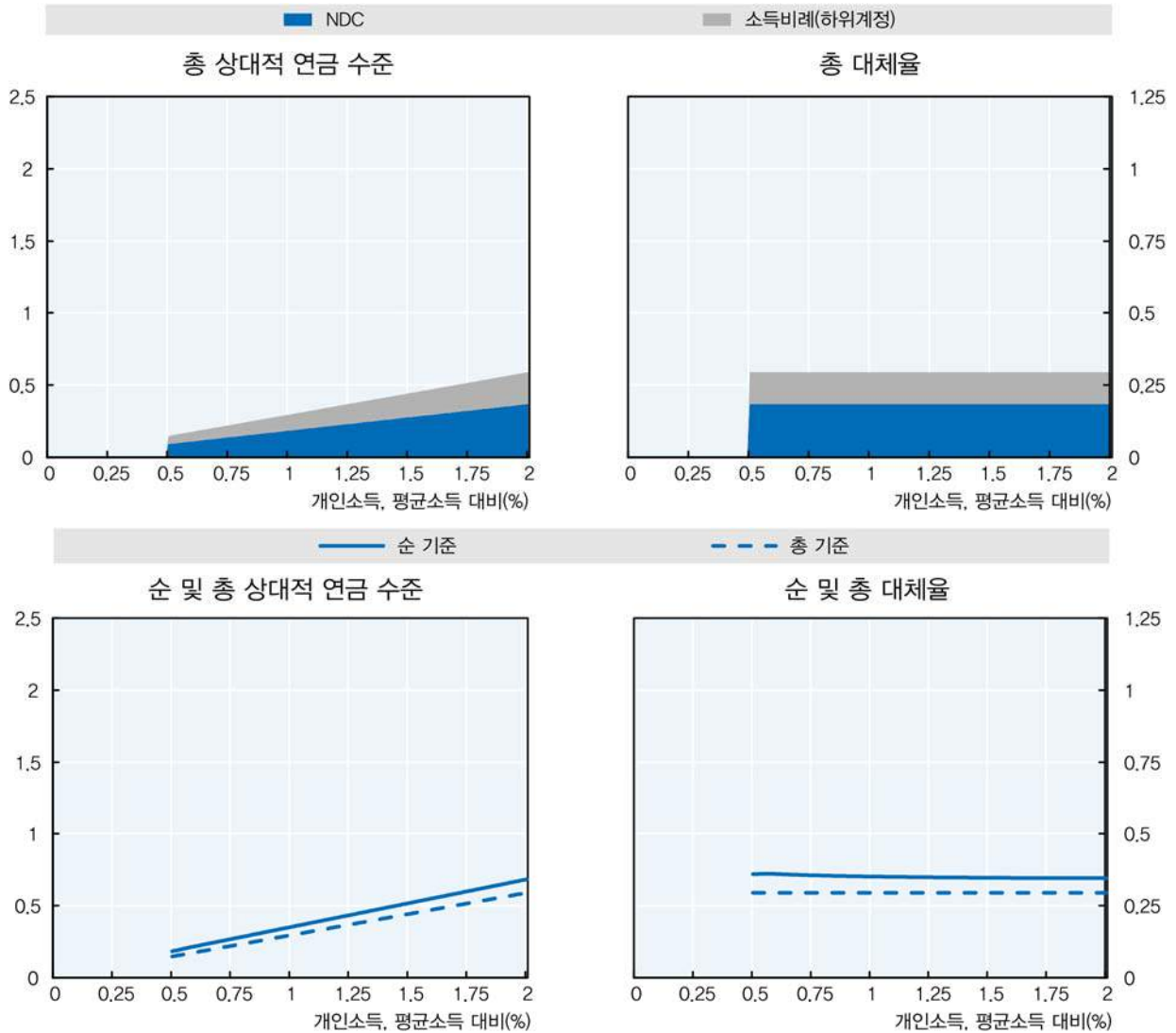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 연금, 실업 보험 등에 대한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공제혜택이 있는 9%의 건강보험료는 부담해야 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폴란드, 2061년, 수급연령 65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4.7	22.1	29.4	44.1	58.9	77.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18.3	26.8	35.1	51.6	68.2	89.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29.4	29.4	29.4	29.4	29.4	25.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35.9	35.5	35.1	34.7	34.5	29.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5.0	5.0	5.0	5.0	5.0	4.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6.1	6.1	6.0	5.9	5.9	5.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815>


## 포르투갈

### 포르투갈: 2018년 연금제도

포르투갈은 자산조사형 사회 안전망과 소득 비례 공적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 핵심 지표: 포르투갈

		포르투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18,343	35,230
	USD	21,652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3.3	8.0
기대수명	출생 시	81.7	80.7
	65세 시점	20.2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8.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834>

## 수급요건

노령연금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2014년과 2015년에 66세였다. 이 연령은 2016년에 66세 2개월로, 2017년에 66세 3개월로, 2018년에 66세 4개월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이전 2년간 증가한 65세 기대여명 평균의 2/3만큼 연장시키는 자동 프로세스에 따른 것이다. 정상 연금 수급연령은 수혜자가 65세가 되면 40년이 넘는 기여 기간 1년당 4개월씩 줄어들 수 있다.

연금수급자는 매년 7월과 12월에 자신의 월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노령연금의 최소 기여 기간은 15년(1994년 이전에 완료된 경우 10년)이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연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text{연금액} = \text{기준소득}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지속가능성 계수}$$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고 기준 소득 산정(RE)에 반영된 연 소득은 주택 가격이 제외된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따라 조정된다.

전체 기여 이력에 따라 연금을 산정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소득 금액은 CPI의 75%, 그리고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기여금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평균 변화가 CPI보다 클 경우 이 변화의 25%의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된다. 연간 조정 지수는  $CPI + 0.5\%$ 보다 높을 수 없다.

조정은 고려대상인 각 연도에 해당하는 계수를 기준소득 산정에 고려된 연 소득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산정 기준 조정을 위한 지수는 재평가될 예정이다.

소득 등록기간이 4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은 조정된 최고소득 40년간의 연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연금은 기여년수 20년 미만인 경우 기여 기간의 각 1년에 대해 소득기준의 2% 수준에서 지급되며 하한선은 30%이다. 기여년수가 21년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지급률의 범위는 소득에 따라 2%에서 2.3% 사이에 있다. 지급률 스케줄은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 사회적 지원 지수, 2017년 421.32유로, 2018년 428.90유로)의 값에 비례한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다. 소득 계층별로 서로 다른 비율로 연금 수급액을 발생시킨다. 연금은 최대 40년간 발생한다.

기준 소득/IAS	≤1.1	>1.1 - 2.0	>2.0 - 4.0	>4.0 - 8.0	>8.0
지급률(%)	2.3	2.25	2.2	2.1	2

연금 대상 소득 지표는 최종 15년 중 최고 소득을 올리는 10년간이었다. 현재 이 기준은 연장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애평균소득이 되었다. 2002년 이후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새 규정에 따라 완전한 보장을 받는다. 기여년수가 40년 이상인 경우 급여 산정 시 최고 40년만 반영된다.

지속가능성 계수는 수명 변동에 대한 연금제도의 적응 장치이다. 이 지수는 2000년(이전에는 2006년) 65세 인구의 평균 기대여명과 연금 청구 직전 연도의 평균 기대여명 간의 관계를 통해 산정된다.

정상 수급연령은 현재 수명 증가에 연동된다. 매년 초에 연금 수급일 이전 3년 중 첫 2년에 대해 평균 65세 기대여명 간 비율을 반영한 조정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계수는 현재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고려된다. 2017년 10월 이후로는 장애연금 및 장기 경력자의 경우에 대해 지속가능성 계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하여 2017년 지속가능성 계수는 0.8612(페널티 13.88%), 2018년에는 0.8550(페널티 14.50%)였고, 장애연금에서 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2017년 10월까지만 적용)에는 0.9291(페널티 7.09%)이었다.

연금 지급액 발생에 대한 물가 연동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며 연금액이 적을수록 많이 증가하는 형태로 물가에 연동되었으나, 이 메커니즘은 2013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월 628.83유로 미만 연금에 대해 다시 부분 적용되었다. 2017년, 이미 지급되고 있는 연금액의 연동 규정이 다시 부활했다. 연동 규정의 첫 번째 기준값은 SSI의 1.5배에서 2배로 변경되었다.

2017년과 2018년, 총 연금액이 SSI(사회적 지원 지수, 각각 631.98유로와 643.35유로)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연금액이 크게 상승했다.(규정된 상승분과 10유로 사이의 격차만큼 상승, 또는 해당하는 연금액이 2011~2015년 사이 이미 크게 변경된 경우 6유로 상승에 불과)

노령연금과 함께 소득 축적을 하는 경우 연간 연금액은 등록된 총 근로소득의 2%씩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매년 1월 1일 발효되며 전년도에 등록된 근로소득을 참조한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소득비례제도를 수급할 수 있으나 수급액이 특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액은 기여기간에 따라 다르며, 31년 이상 기여해야 전액을 획득할 수 있다. 2018년에 적용된 값은 다음과 같다.

기여 기간	연간 최저연금액
10~15년	EUR 3,767.12(평균 근로자 소득의 21%)
15~20년	EUR 3,951.64(평균 근로자 소득의 22%)
21~30년	EUR 4,360.58(평균 근로자 소득의 24%)
31년 이상	EUR 5,450.76(평균 근로자 소득의 30%)

연금은 연 14회 지급된다. 기준은 매년 IAS 지수, 즉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 선별적 연금

2017년 기준 소득비례제도의 수급 자격이 없는 66세 3개월(또는 2018년 기준 66세 4개월) 이상 인구가 수급할 수 있는 이 사회연금(Pensão Social de Velhice)은 월 203.35유로(207.01유로)였다. 이것은 독신자의 총 연금이 IAS의 40%, 부부의 경우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월별 지급은 14회 이루어진다. 사회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외에 추가연대보충수당(CES)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급여의 월 지급액은 2017년 기준 70세 미만인 경우 17.70유로, 70세 이상인 경우 35.38유로였으며, 2018년 기준 70세 미만인 경우 17.54유로, 70세 이상인 경우 35.06유로였다. 사회연금과 CES의 급여 수준은 매년 IAS 지수, 즉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노인 빈곤에 대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요 선별적 급여인 노인연대보충급여(CSI, Solidarity Supplement for the Elderly)는 수급자격을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08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추가적 조건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고(자산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저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국민들 역시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음) CSI의 매우 포괄적인 자산조사를 충족해야 한다.

CSI는 사회부조급여(Social Insertion Income)와 비슷한데, CSI는 수급자의 소득과 주어진 기준 간의 차이와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보충수당이며 이는 곧 자산조사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SI는 수급자의 소득과 다음의 기준금액(RA, Reference Amounts) 간의 차이와 같다. 2017년 기준은 연 5,084.30유로, 2018년 기준은 5,175.82유로였다. 급여 수준은 재량적으로 조정된다. 모형에서는 물가 연동을 가정했다.

수급자의 소득은 본인 소득, 배우자 소득,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라고 불리는 자녀가구의 소득 일부로 구성된다. ‘가족연대’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CSI의 수급권과 수급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가족연대’ 소득은 각 아들/딸 가구의 총 연 소득을 구한 후 해당 가구에 속하는 성인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균등화 척도: 첫 번째 성인은 1, 이후 성인 1명당 0.7, 미성년자는 0.5). 그리고 다음 표에 따라 가족연대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의 비율로 결정된다. 자녀의 가구 균등화소득이 네 번째 층에 속하는 경우 CSI를 수급할 수 없다.

계층	가구 균등화 소득	가족 연대 (균등화 소득의 %)
1층	2.5 x RA	0%
2층	> 2.5 x RA 및 ≤ 3.5 x RA	5%
3층	> 3.5 x RA 및 ≤ 5 x RA	10%
4층	> 5 x RA	CSI에서 제외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장기 기여 이력에 따른 조기수급은 2012년부터 일시 중단되었다. 이전에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소득 등록 기간이 55세 시점에 30년 이상이면 조기수급이 가능했다. 고된 일을 하는 특정 직종에 속한 근로자들은 조기수급이 가능하다.(규정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음, 장기 실업으로 인한 조기 수급에 대한 아래의 실업 섹션 참고)

2015년에 기여 이력이 4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재정비한 임시 조기 수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조기수급에 대한 페널티는 동일했는데, 공식 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0.5%씩 감액된다. 기여년수가 40년이 넘으면 65세까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페널티가 4개월씩 줄어든다. 2016년 이후에 2012년 조기수급 중단 이전의 규정이 재도입되었고 3월에 다시 중단되었다.



장기 기여 이력에 따른 조기수급(일시 중단됨)으로 탄력적 연금수급 연령을 제공하는 제도 덕분에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금액은 1개월 앞당겨 조기 수급할 때마다 0.5%씩 감액된다.

장기 가입자의 경우, 예상 개월 수는 예상되는 연금 수급일과 정상 수급연령 사이에서 결정된다. 감액된 예상 연금을 수급하고 활동을 중단한 가입자는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감액 요인의 적용 없이 예상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으나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연금은 해당 요인이 충족된 달과 노령연금을 수급한 날 사이의 개월 수에 0.65%를 적용하여 증액된다.

2017년 10월 이후로 장기 경력을 가졌거나 조기 근로(60세에 48년 이상의 기여 경력 기간, 또는 14세 미만에 근로를 시작해 경력 기간이 46년 이상인 경우)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지속가능성 계수를 포함한 일체의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8년 10월, 장기 경력 근로자의 범위가 60세 이상이며 경력 기간이 46년 이상인 사람까지 확대되었다.

## 수급연기

가입자가 정상 수급연령을 초과한 시점에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그 연령 시점에서 표준 수급 자격이 있다면, 연금액은 각 월별 증액 지급율에 연금 수급 시작 월부터 정상 수급연령 도달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증액된다. 연령 상한은 70세이다.

월 증액률은 연금 수급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자가 완료한 소득 등록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연령	기여 이력(년)	월 증액률
65세 초과	15~24년	0.33
	25~34년	0.5
	35~39년	0.65
	40년 초과	1

전체적인 증액률을 산정할 때는 유효 근로에 따른 소득 개월 수가 고려된다. 증가한 연금액은 법정 연금 산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던 기준 소득 중 최고 기준 소득의 92%를 초과할 수 없다. 수급자가 연기된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수급 연기에 대한 보너스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족연금 산정에 사용될 것이다.

## 육아

출산휴가 기간(완전한 휴가 및 시간제 근로)은 연금 수급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수급 요건을 따질 때 포함된다. 이 기간의 연금 대상 소득은 휴가가 시작되기 두 달 이전의 6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02년 부터 12세 미만 자녀를 돌보며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전일제 근로기간으로 간주한다.

## 실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금 수급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 기간의 연금 대상 소득은 실업 기간이 시작되기 두 달 이전 6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실업보험급여 및 사회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다. 오랜 기간 실업 상태인 57세 이상인 사람은 62세에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최저 기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업 급여 수급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실직 당시 52세 이상이고 22년간 기여했다면 57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은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의 감액 기간이 적용된다. 다음 표는 실직된 날을 기준으로 한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		연금액에 대한 페널티/감액
실직 날짜	연금 수급일	
50세 이상, 최소 20년간 소득 등록(50세)	57세 이상 실업급여/실업부조급여 지급이 종료되었고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상태	62세까지 매월 0.5% 감액 예상
57세 이상	62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15년간 소득 등록) 실업급여/실업부조급여 지급이 종료되었고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상태	감액 없음

실업이 합의된 근로 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연금액은 추가 감액률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는 연금수급자가 공식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등록 기여 기간이 실업 전 12개월 중 180일을 초과하고 실업 전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라면 자산조사형 실업부조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수급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50세인 경우, 조기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장기 실업에 대한 새로운 급여가 도입되었다. 개인이 여전히 실업 상태이고 자산조사와 같은 나머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 급여를 모두 받고 1년 후에 실업부조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간 연금소득 7,070유로에 대하여 특별 세금 혜택이 있다. 해당 연도에 수령한 개인 과세 소득에서 국가 최저임금 1년분(14개월)을 뺀 금액에 3.5%의 특별 세율을 적용한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65세 이상이고 기여 기간이 40년 이상인 근로자는 감액된 사회 기여세를 납부한다. 고용주는 17.3%, 근로자는 8%(합계 = 25.3%)를 납부한다.

근로 중인 연금수급자는 감액된 사회기여세를 납부한다. 고용주는 16.4%, 근로자는 7.5%(합계 = 23.9%)를 납부한다.

### (새로운) 적격 기간 - 연금 산정과 연관된 연수 산정

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적격 연수는 다음과 같다.

- 1년, 소득이 등록된 일수가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120일 이상이어야 함<sup>6)</sup> - 유효 근로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상황의 소득 - (기여 밀도).

- 소득이 등록된 기간 중 120일 미만으로 해당 연도에서 남는 기간을 합쳐서 하나의 적격 년도로 완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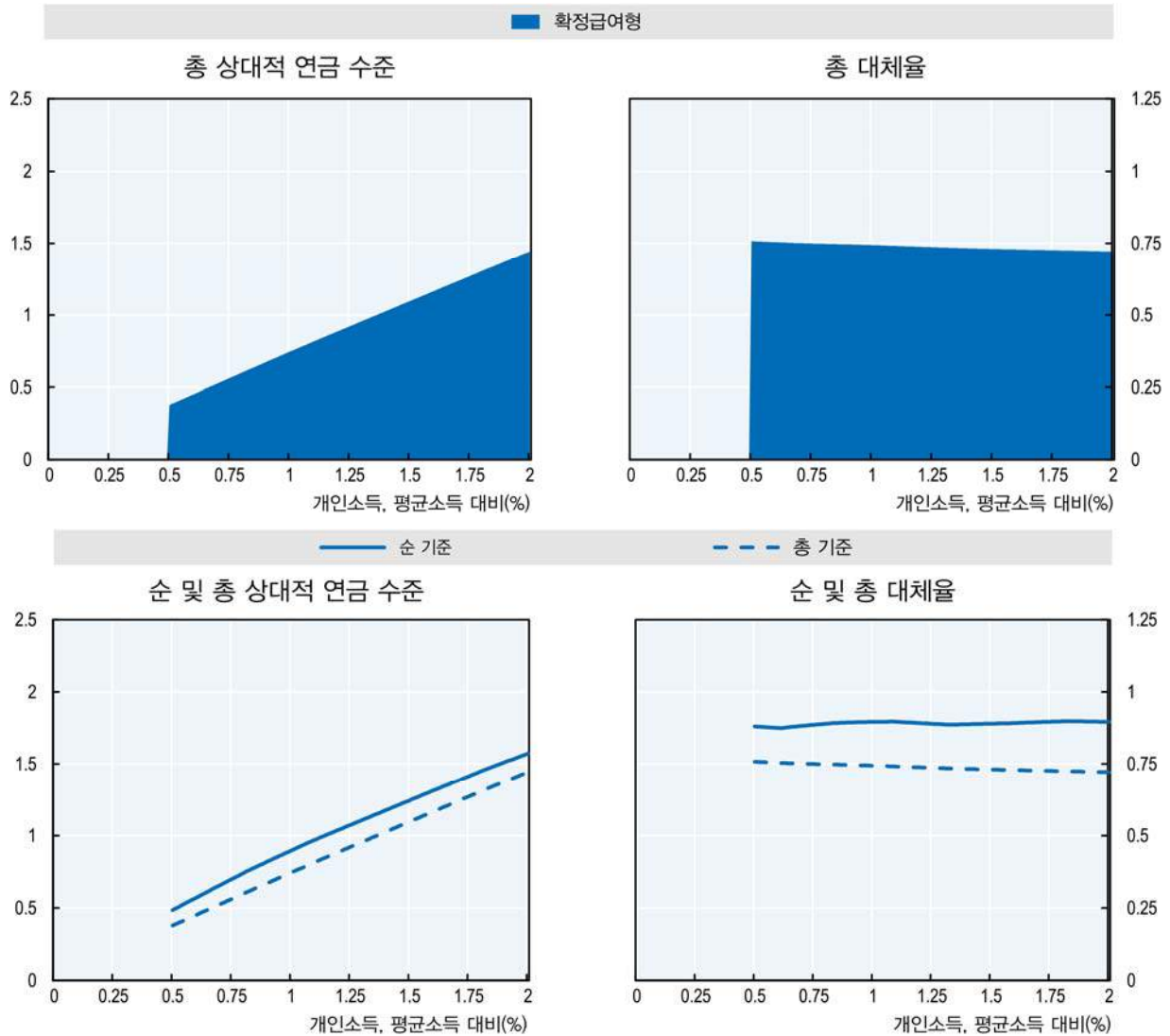
이외에도 연금 지급 시 고려되는 다른 적격 기간(이전에 발효된 법률에 따라 산정)이 있다. 보험 가입자가 이전 법령에 따른 필수 적격 기간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1994년 이전에 완료된 보험 가입 기간에서 소득이 등록된 기간이 12개월이 되면 적격 년도 1년으로 간주한다.

적격 기간은 다른 국내외 사회보장제도에서 완료된 보험 가입 기간을 집계하여 산정한다. 단, 일반 제도에 따른 소득 등록 기간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

6) 특정 연도에 등록된 일수가(개별적 또는 다른 날과 합쳤을 때) 120일 이상이면,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다른 적격 년도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포르투갈, 2064년, 수급연령 68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9	56.2	74.4	109.6	144.3	211.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8.6	70.0	89.6	124.3	157.1	215.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5.8	75.0	74.4	73.1	72.2	70.4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8.0	88.6	89.6	89.0	89.6	88.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9	11.8	11.7	11.5	11.1	10.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9	14.0	14.1	14.0	13.8	13.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853>


## 러시아

### 러시아: 2018년 연금제도

법정 의무 연금보험제도가 제공하는 노령 보험연금은 정액 연금과 포인트제 연금, 그리고 1967년 이후 출생자를 위한 개인계정연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정 사회연금과 비국가(사적) 연기금에서 운용하는 자발적 적립식 사적연금도 있다.

### 핵심 지표: 러시아

		러시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RUB	470,000	2,606,016
	USD	7,50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72.2	80.7
	65세 시점	15.7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5.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872>

## 수급요건

2018년에 노령보험연금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가입 기간이 9년 이상인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이며 2024년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매년 1년씩 늦춰져 남성은 60세에서 65세, 여성은 55세에서 60세가 될 것이다. 연금수급연령 변경이 특정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 42년 이상 기여한 남성과 37년 이상 기여한 여성은 정상 연금수급연령보다 2년 앞서(단,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전에 은퇴할 수 없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사회연금은 해외로 지급되지 않는다. 은퇴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는 없으나 이들의 연금은 연간 조정되지 않는다.

## 급여 산정

연금 급여는 의무적 연금보험 제도에 대한 기여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2018년 고용주의 기여율은 1,021,000 루블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22%, 1,021,000루블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10%였다.

## 기초연금

기초정액급여는 2018년 기준 월 4,982.9루블이었다. 80세 이상 수급자들에게는 정액 '급여'의 2배를 지급한다.

## 소득비례연금

노령보험연금은 포인트 기반 제도이다. 월 포인트 비용은 2019년 기준 9,580루블이다. 연 최대 한도는 8.7포인트로 이는 2021년부터 연 10포인트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2018년 1포인트의 가치는 81.49루블이다.

연금포인트의 비용과 가치는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

공식적으로 규정된 최저 또는 최대 월 연금은 없다.

## 안전망 급여

모든 범주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사회부조급여가 있지만(예: 교통비, 의료비 등) 그 유형과 액수는 러시아 연방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급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하지 않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사회부조급여는 국가(연방)와 지역 단위로 나뉘는 러시아 내 최저 생활수준을 기반으로 한다. 2018년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연방 생계비 수준은 월 5,180루블이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총 소득이 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보다 적은 비근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 급여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방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을 위한 연방 보충 사회부조(연방 생계비 수준까지), 러시아연방 연기금(Pension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지급.
2. 연금수급자가 받는 지역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을 위한 지역 보충 사회부조(지역 생계비 수준까지), 연방 부조보다 액수가 높고 지방 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

비근로 연금수급자의 총 소득에는 연금(또는 부분 연금), 보충 현금 급여, 월 현금 급여(사회적 서비스 금액 포함), 지방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 기타 사회부조 급여(일시불로 지급된 사회부조 제외), 전화, 주거, 전기/수도/가스, 대중 교통비에 대한 사회부조 급여의 현금 등가물이 포함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정 집단의 가입자는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의 필요 근무 기간은 근로조건과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8년 기준 특수한 조건을 가진 직종의 고용주와 조기연금 수급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은 강제적 연금보험제도에 추가 보험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추가 기여율은 근로조건 분류에 따라 6% 또는 9%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 고용주의 기여율은 0%부터 8%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수급연기

노령보험연금에서는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예상 연금 지급 기간이 1년씩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급여액(보험연금 및 정액 급여)이 증가한다. 최저 예상 연금 지급 기간은 14년(234개월)이다.

### 육아

18개월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 기간이 보험 적용 기간에 포함된다.

**육아수당:** 지역별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 소득 가정에 지급된다. 자녀가 해당 가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육아수당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고 생후18개월부터 18세(전일제 학생의 경우 23세)까지 각 자녀에 대해 지급된다. 이혼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편부모는 육아수당을 두 배로 받는다.

**가족(모성지원)보조금:** 200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셋째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여성에게 지급된다. 특별한 경우에 따라 두 자녀를 입양한 남성이 수급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지급액은 453,026루블이었다. 법률로 정해진 자본 투자에 대한 4가지 옵션 중 하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의무적 적립식 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 실업

국가고용청의 제안이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실업자에게 최대 60세(남성)와 55세(여성)까지 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공식 수급연령 2년 앞선 시점부터만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기간이 남성은 25년, 여성은 20년을 넘어야 하고 회사나 사주의 파산, 직원 감축의 경우 조기수급의 근로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액은 노동 노령연금 보험 부분의 경우 러시아 연방의 노동연금법(Law on Labour Pensions)에 따라 결정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일반 소득세가 과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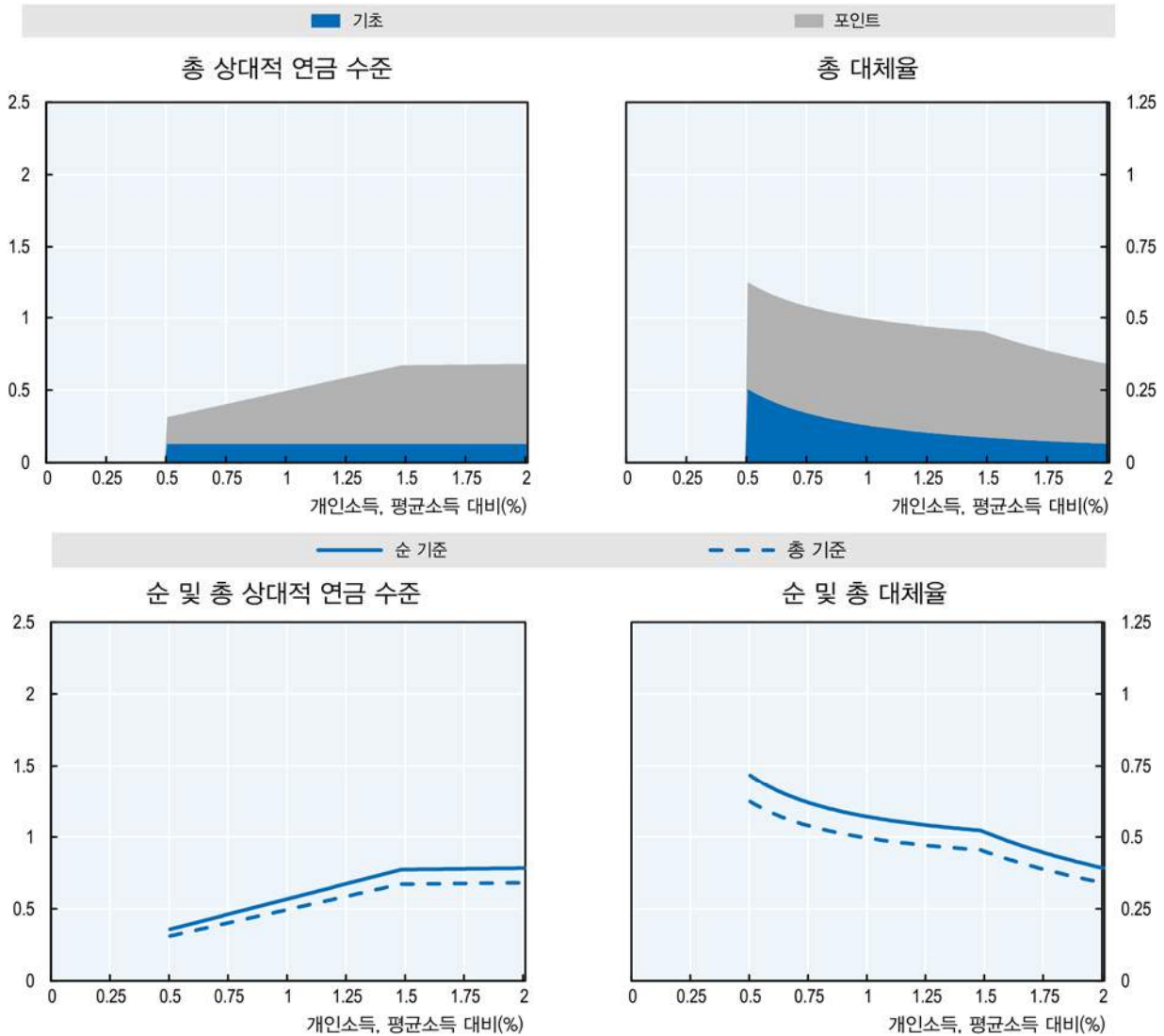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지급액은 비과세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다.(이혼수당, 과도하게 지급된 연금 회수, 세금 청구액 포함 기타 청구액 회수) 이러한 목적에 따른 최대 감면액은 연금의 50% 이하여야 한다.(예외적인 경우 최대 70%)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근로를 병행하는 연금수급자와 이들의 고용주는 의무적인 연금보험 기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법정 세금 및 조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러시아, 2060년, 수급연령 64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1.2	40.4	49.6	67.3	68.2	68.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5.8	46.4	57.0	77.4	78.4	78.6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2.3	53.9	49.6	44.9	34.1	22.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1.7	61.9	57.0	51.6	39.2	26.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5	8.2	7.6	6.8	5.2	3.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9	9.4	8.7	7.9	6.0	4.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891>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2018년 연금제도

강제적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 노령연금,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령일시금(Old-age settlement)으로 구성된다.

### 핵심 지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SAR	99,802	155,941
	USD	26,614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75.1	80.7
	65세 시점	15.1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5.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910>

##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이며 납부 기간 또는 크레딧 인정 기여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00개월(25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어느 연령이든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노령연금

연금은 매 기여년수에 대해 가입자의 은퇴 직전 2년간 월 평균 소득의 2.5%에 기초하며, 최대 소득대체율은 100%이다.

급여 산정을 위한 최저 월 소득은 1,500리얄이고, 최대 월 소득은 45,000리얄이다.

급여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소득은 최종 5년의 기여기간 시작 시점에서 가입자 월 소득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입자의 월 소득이 은퇴 전 마지막 2년간 감소한다면 급여 산정 목적으로 사용된 월 평균 소득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최저연금은 월 1,984리얄이다.

### 노령일시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노령일시금을 수급한다. 기여기간 첫 5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은퇴 직전 2년간 월 평균 소득의 10%를, 추가 개월에 대해서는 12%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기여기간이 300개월 이상이고 더 이상 연금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불가능하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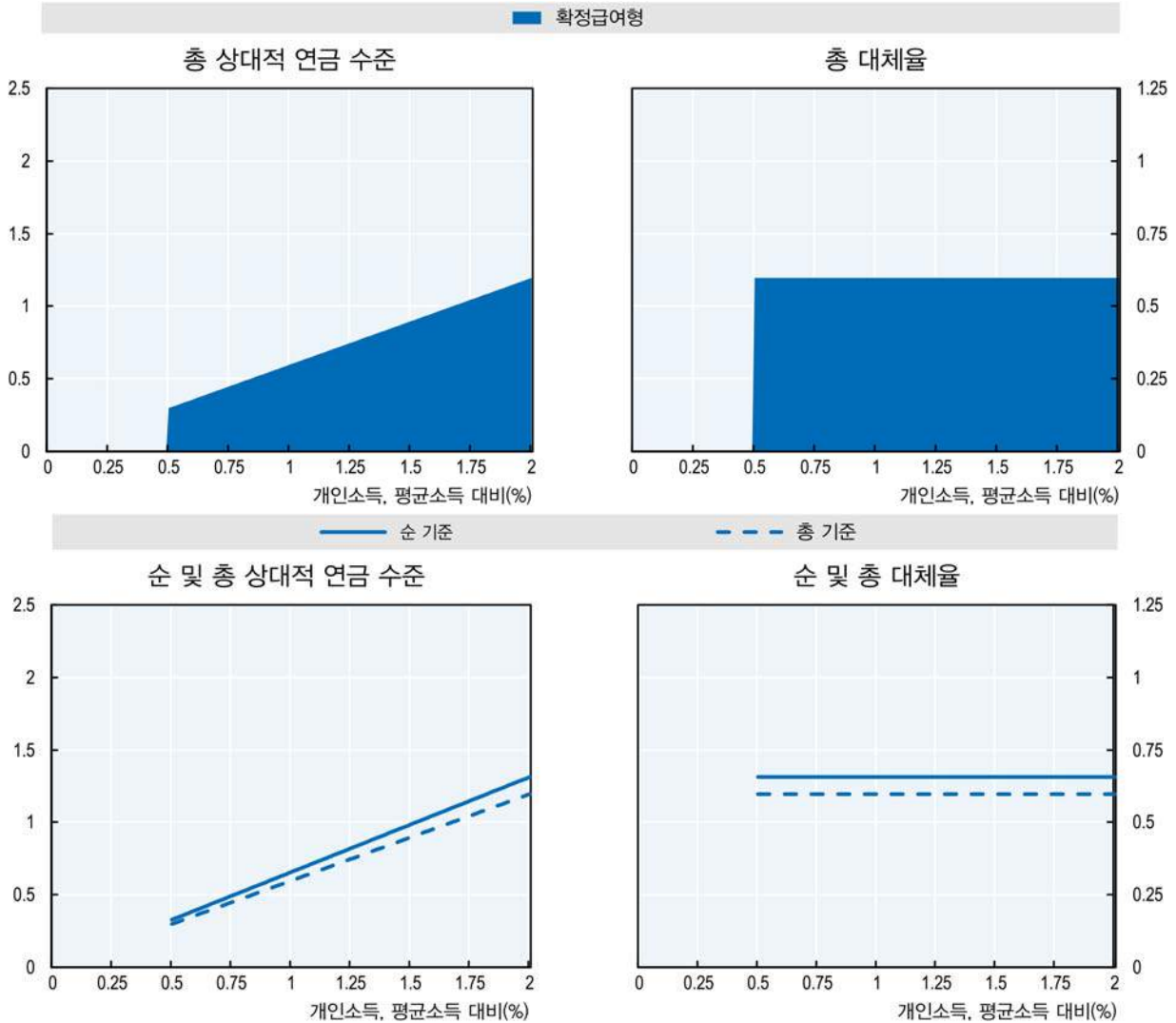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2043년, 수급연령 47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8	44.7	59.6	89.3	119.1	151.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7	49.1	65.4	98.2	130.9	166.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9.6	59.6	59.6	59.6	59.6	50.4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5.4	65.4	65.4	65.4	65.4	55.3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7	14.7	14.7	14.7	14.7	12.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2	16.2	16.2	16.2	16.2	13.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929>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2018년 연금제도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는 평균 소득 대비 개인 소득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포인트 제도다. 저소득 근로자는 연금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 소득 금액을 통해 보호받는다. 모든 연금수급자는 사회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5년에 자발적 확정기여형 제도가 도입되었다.

### 핵심 지표: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12,131	35,230
	USD	14,319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7.3	8.0
기대수명 출생 시	77.3	80.7
	65세 시점	17.2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6.5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948>

## 수급요건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62세 139일이며, 기여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 이상인 여성은 2018년 기준 59.75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모든 여성의 수급연령이 62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17년부터 법정 연금 수급연령은 은퇴연령 시점의 기대수명 증가에 연동되었다. 실제 증가는 기준 기간 대비 평균 기대수명의 변화로 산정되며 결과는 일수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9년부터 법정 연금수급연령 상승은 월 단위로 계산된다. 2019년 법정 연금수급연령은 62세 6개월이 된다. 2019년 3월 개혁에 따라 연금수급연령 상향 한도가 64세로 정해졌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 연금 급여액을 수급하려면 10년 이상의 기여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삭제되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연금포인트는 전국 평균 소득 대비 개인 소득의 비율로 산정된다. 또한 평균 연금포인트가 1.25를 초과하면 감액하는 ‘연대 요소(solidarity element)’가 존재한다. 감액 계수는 2013년 84%에서 2016년 68%로 점차 하락하였다. 1 미만의 포인트 가치는 유사한 방식으로 증액되었다. 증액 계수는 같은 기간 16%에서 20%로 점차 증가했다.

은퇴 시 연금급여액은 기준 기간(일반적으로 1984년 이후)의 모든 연금 포인트 평균에 총 연금 가입 기간과 은퇴 시점의 연금포인트 가치를 곱한 값이다. 2018년 연금포인트는 11.9379유로였다. 연금 포인트 가치는 매년 3분기 평균 소득 증가율에 연동된다. 2017년 전국 평균 소득은 월 954.00유로였다. 포인트 가치를 소득으로 나누면 확정기여형 제도의 지급률이 나오는데, 이는 1.25%에 불과하다.

기여소득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2017년 평균소득의 5배에서 7배로 상승했다. 소득 자료는 그보다 뒤쳐져 있다. 즉 상한이 평균 소득의 7배에 다소 못 미친다는 의미이다.

연금지급액은 평균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하여 연동된다. 2013~2017년 동안 연금 급여액은 고정 금액만큼 증액되었다. 연금 연동에 사용되는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비율은 2014년 40:60에서 2015년 30:70, 2016년 20:80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 연금은 최저 비율인 2%에 연동되었다. 이는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비율이 10:90일 때보다 높은 비율이다. 각 유형의 연금(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장애연금, 고아 연금,

유족 배우자연금 등)은 별도의 고정(명목) 금액을 산정하여 여러 연금 유형에서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2018년부터 연동은 연금수급자 가구에 대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따른다. 2018~2021년에는 각 연금 유형별 평균 연금액의 2%인 고정 금액을 사용한 최저 연동 보장을 적용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공적 소득비례제도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된 급여를 받는다.

## 최저연금

2015년 7월 1일부터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인 및 취업 불능 연금수급자를 위한 최저연금 급여가 마련되었다. 수급자가 연금액을 최저 연금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적격 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한다.<sup>7)</sup>
2. 총 연금소득 금액이 최저연금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3.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적격 기간 30년의 최저연금액 수준은 1.36 x 최저생계비(2018년 기준 월 271.30유로)를 의미한다.

적격 기간 중 기초 수준을 넘는 때 1년마다 최저연금이 증액된다.

- 31~39년에는 1년마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2%p 증액
- 그 이후부터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3%p 증액.

최저연금 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동된다. 그 외에 자영업자의 경우 기여금 납부에 대한 최저 평가 기준이 있는데, 2년 전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전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480.00유로였고, 자영업자의 연금 가입에 대한 최저 평가 기준은 456.00유로였다.

## 사회부조

저소득층 지원(Assistance in Material Need)은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보편적이고 비기여형이며 일반 과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최저 소득 보장은 다음과 같다.

- 1) 월 급여액: 61.60유로(독신 연금수급자) 및 107.10유로(무자녀 부부 연금수급자)
- 2) 월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55.80유로(독신 연금수급자) 및 89.20유로(무자녀 부부 연금수급자)
- 3) 월 보호수당(Protection Allowance): 63.07유로(독신 연금수급자) 및 126.14유로(무자녀 부부 연금수급자)

총 월 급여액은 180.47유로(독신 연금수급자) 및 322.44유로(무자녀 부부 연금수급자)이다.

연금 급여가 적은 개인은 저소득층 지원을 받지만 지원 자격을 따질 때 연금액의 25%는 고려하지 않는다. 연금 가입 기간 25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1%p가 추가로 고려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연금을 40년간 납부하면 연금 소득의 40%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급여액이 연금수급자에게 주는 최대 금액이 아니며, 급여액은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적격 연금 가입 기간: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기간, 또는 개인 임금 포인트가 최소 0.241 수준(연간 소득이 평균 임금의 24.1% 이상)에 도달했을 경우 1993년 1월 1일부터 완료된 기간.

## 자발적 확정기여형 제도

자발적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기여율은 소득의 4.5%이다. 2012년 9월 1일에 기여율이 총 임금의 9%에서 4%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여율이 매년 0.25%p씩 인상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목표 수준인 6%에 도달하게 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다른 근로자는 2006년 6월 1일까지 혼합형 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공적 연금제도에 잔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혼합형 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의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 이 제도는 2년 이내에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동 가입 제도로 변경되었다. 자동 가입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자발적 가입은 35세 미만이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종신연금, 정기연금 또는 단계적 인출 형태로 수급할 수 있다. 종신연금 산정을 위해 남녀 공통 세대간 사망률표가 있는 현금 흐름 모형을 사용하고 제도의 비용을 고려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으로부터 최대 2년 전부터 가능하며 연금 급여는 30일마다 0.5%(연 6.5% 수준)씩 감액된다. 조기수급 연금액은 성인 최저생계비의 1.2배에 해당하는 237.71유로보다 높아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198.09유로였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인상되지 않았으나 2017년 7월 1일에 199.48유로로, 다시 2018년 7월 1일에는 205.07유로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면서 강제적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 급여를 조기에 수급하면서 고용 관계 이외의 계약에 따라 근로하여 최대 연 2,400유로의 소득을 벌 수 있게 되었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고 연금급여는 30일마다 0.5%씩(연6%) 증액된다. 매년 또는 신청 시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지속하는 이들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취득한 포인트의 절반을 추가하여 실제 은퇴 시점에 연금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 육아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국가가 납부하는 연금 크레딧을 받는다. 연금 기여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육아 휴직 전 평균 소득의 60%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평가 기준이 일반 상한선 규정과 휴직 기간 2년 전 연 평균임금에 따라 조정되었다. 동일한 규정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노령연금 저축제도)에도 적용된다.

### 실업

실업기간은 연금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 이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이나 크레딧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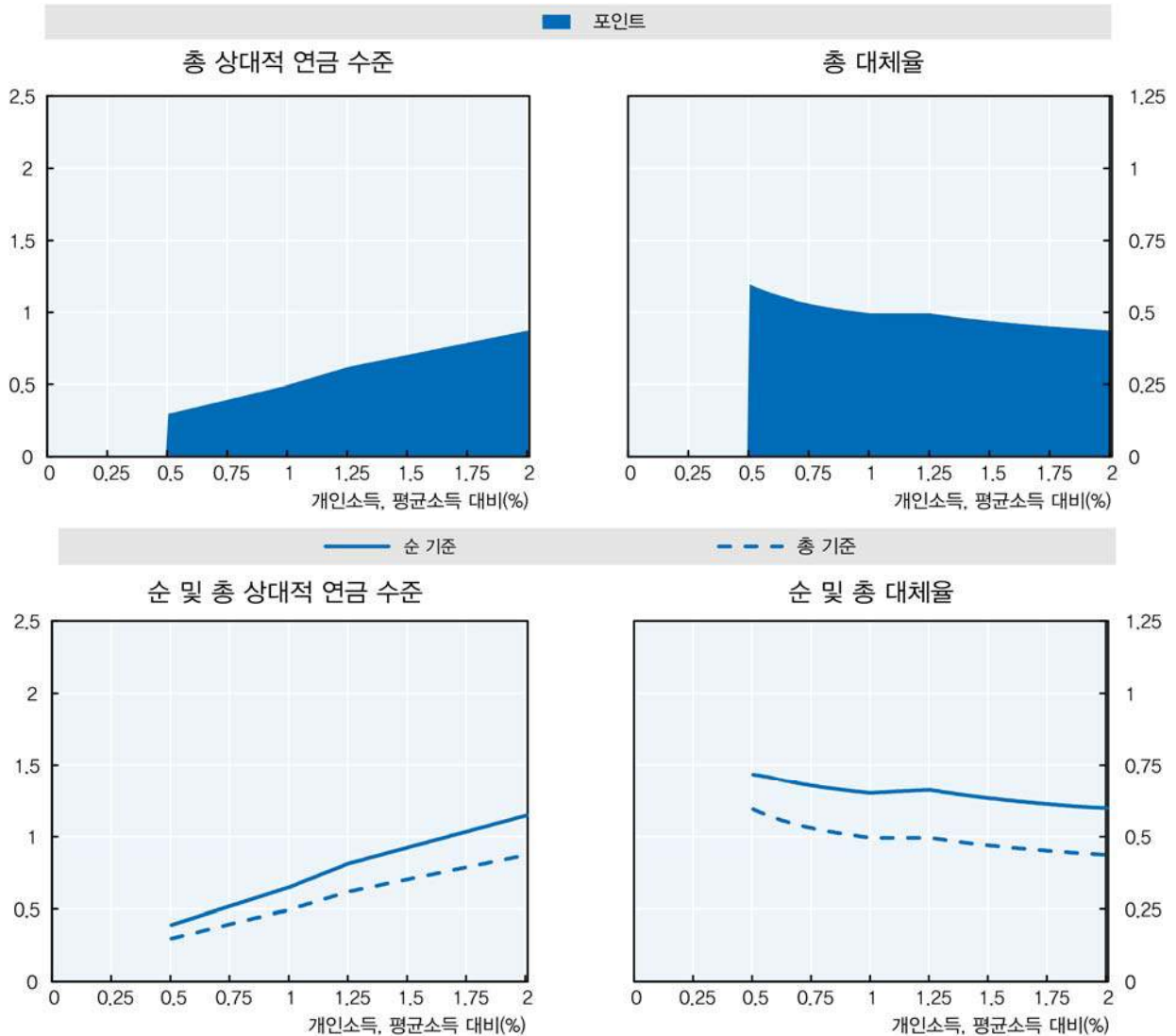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은 기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슬로바키아, 2060년, 수급연령 64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8	39.7	49.6	70.4	87.3	121.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9.1	52.1	65.1	92.5	114.6	158.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9.5	52.9	49.6	47.0	43.6	40.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1.7	67.7	65.1	63.3	59.8	57.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2 11.3	9.1 10.1	8.5 9.4	8.0 8.9	7.5 8.3	6.9 7.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3 13.6	11.6 12.9	11.2 12.4	10.8 12.0	10.3 11.4	9.8 10.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967>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2018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와 최저 연금 그리고 선별적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19,671	35,230
	USD	23,220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1.1	8.0
기대수명	출생 시	81.0	80.7
	65세 시점	19.5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4.7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3986>

## 수급요건

2013년~2019년 기준 65세부터 연금 급여를 수급하려면 20년의 기여 기간이 필요하다. 2020년 이후로는 15년의 가입으로 충분하다.

2018년 기준 40년간 기여한 경우 감액 없이 연금액을 받으려면 남성은 60세, 여성은 59세 8개월이 되어야 한다. 여성의 연령 및 기여년수 요건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0년에는 각각 60세, 40년이 될 예정이다.

남성(2018년)	기여년수	20	40
	연금수급연령	65세	60세
여성(2018년)	기여년수	20	40
	연금수급연령	65세	59세 8개월
여성(2020년)	기여년수	15	40
	연금수급연령	65세	60세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노령연금 급여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산정된다.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는 최저 수급 요건(기여년수 15년)이 충족되면 남성은 연금 평가 기준의 26%를, 여성은 29%를 지급한다. 그 이후 남성의 지급률은 연 1.25%이다. 여성은 2016년에 지급률이 연 1.38%였다. 여성의 지급률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 목표율인 1.25%에 도달한다. 40년간의 기여 이후 총 지급률은 2016년 기준 남성은 57.25%, 여성은 63.5%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총 지급률이 1.25%에 이르고, 40년 기여에 대한 지급률은 60.25%가 된다. 연금 평가 기준은 순 임금의 최고 24년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과거의 순 임금은 명목 순 임금의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소득 측정은 1970년 이후 최고 연속 기간을 바탕으로 한다. 평가 기간은 2013년 이래 연장되어 2018년에 24년이 되었다.

모든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최저연금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최저연금 평가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설정 되는데, 평균 월 임금의 76.5%이다. 2018년 12월에 이 임금은 세금과 기여금 공제 후 730.35유로였다. 연금 대상 소득에 대한 상한도 있는데, 이는 최저연금 평가 기준의 4배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기준 월 3,321.40 유로였다. 지급되는 연금 급여액은 총 평균 임금 상승률 60%와 소비자 물가 40%를 고려하여 연동된다. 연금액은

2018년 1월에는 2.2% 연동되었고, 2018년 4월(비정기 연동)에 추가로 1.1% 연동되었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남성의 경우 최저연금 평가 기준의 26%, 여성의 경우 29%로 규정된다. 2017년에는 연금 수급에 필요한 법적 근로 기간을 모두 채워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관련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500유로(2018년 기준 516유로)의 보장 연금액이 도입되었다.

## 선별적 연금

(2011년 12월 31일까지)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형 사회보장수당이 있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수당은 사회보장법(social protection legislation)으로 이전되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40년 이상 채운 가입자는 60세에 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다. 새로워진 영구적 공제 제도로 인해 조기수급은 최종 수급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획득한 연금 수급자격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조건보다 1개월 부족할 때마다 연금액은 매달 0.3%(최대 부족 기간 5년의 경우 18%)씩 감액된다. 연금 급여액 감액은 최고 65세까지 이루어진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며 연금급여액은 연기된 기간에 따라 조정된다.

새로운 연금 급여 보너스는 개인이 연금 수급에 대한 연령 조건을 충족한 후 3개월 근로할 때마다 지급된다. 현재 수급연령은 60세이고 연금 수급 자격 기간(구매된 기간 없이)은 40년이다. 연금 수급 연기에 대한 최대 보너스는 12%(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지급률(남성 1.25%, 여성 1.38%)이 적용된다.

2018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은 남성의 경우 최저연령 60세, 수급자격 기간(구매된 기간 없이) 40년이다. 여성의 경우 최저연령은 59세 8개월(2019년부터 60세로 균등화), 수급자격 기간은 40년이다. 이 요건을 만족한 사람이 수급을 연기하면 전액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 년도가 추가될 때마다 지급률이 높아진다.

### 육아

연금제도에서는 최대 1년의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한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어머니의 기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자녀가 3세 이하일 때 부모 중 한 쪽이 근로 형태를 시간제로 변경한 경우 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여금 납부 기준은 수급할 보상액 또는 급여액에 따른다. 휴직 기간에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육아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함)

## 실업

실업보험급여의 수혜자는 연금 크레딧을 받는다. 이때 기여금은 고용청(Employment Agency)이 납부한다. 25년간 가입한 50세 이상은 19개월, 25년간 가입한 55세 이상은 2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진된 실업자를 위해서 국가는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실업 연장 기여금)과 크레딧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가치(보험 및 부조 지급 모두 포함)는 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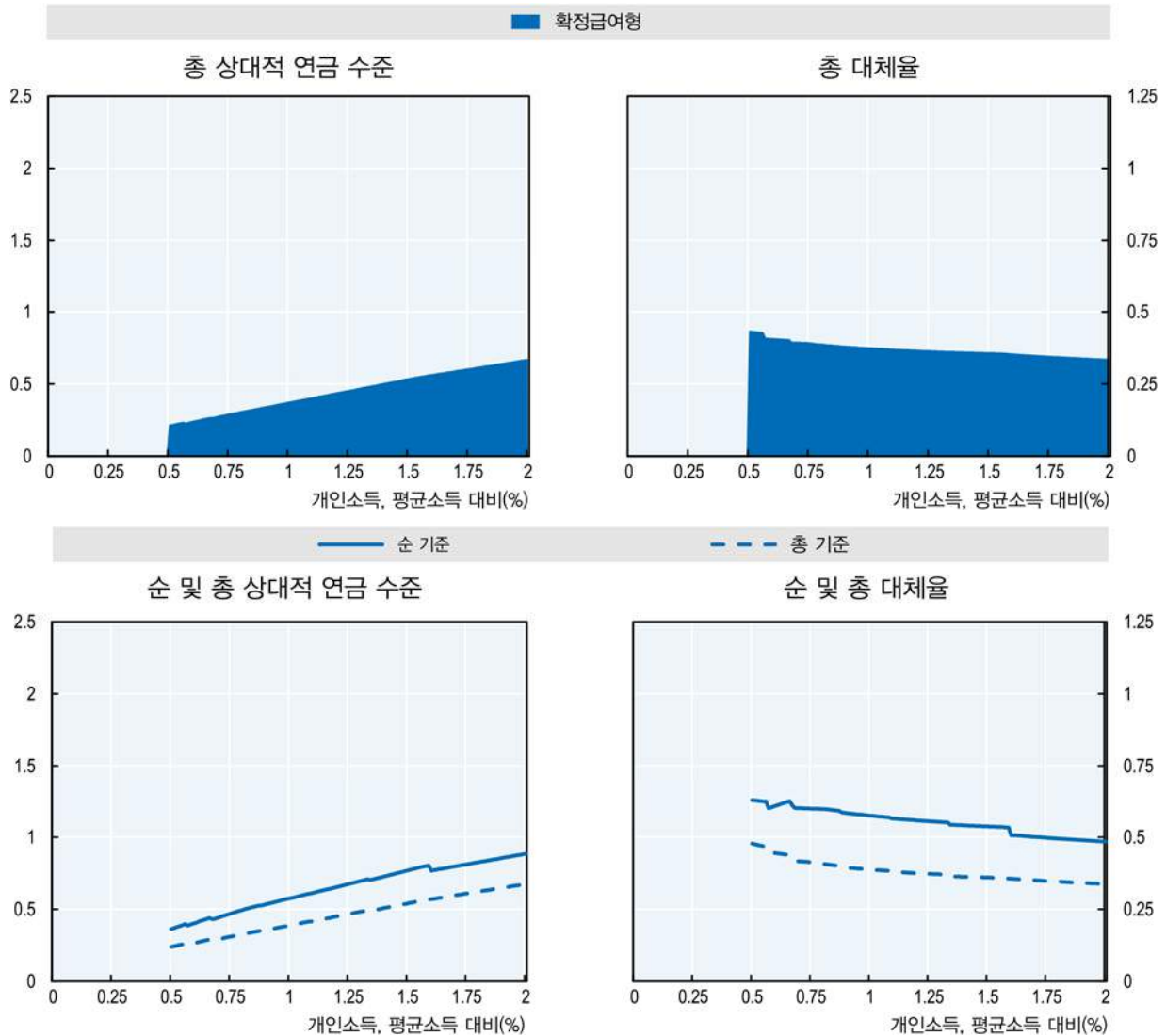
개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된다. 과세소득에는 연금 수령 형태의 모든 소득(필수 사회보험, 보조금 성격의 자발적 노령보험, 해외 연금)이 포함된다. 거주자는 세금 기준에 대한 공제의 형태로 일반 세금 혜택을 받는다. 2018년에는 3,302.70유로였다. 과세소득이 11,166.37유로 미만이면 6,519.82유로의 저소득층 일반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소득이 11,166.37유로~13,316.83유로이면 3,302.70유로의 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는 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는 필수 연금 및 장애보험 외에 수령한 연금의 13.5%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받는다. 동일한 보험에서 산재 보상을 받은 거주자와 필수 보충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에게도 같은 크레딧이 부여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필수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다. 필수 연금 및 장애보험제도의 연금수급자는 사회보험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슬로베니아 공화국 연금 및 장애보험기관(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Institute)이 슬로베니아 건강보험기관(Health insurance Institute)에 기여금(총 연금의 5.96%)을 납부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슬로베니아, 2058년, 수급연령 62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3.9	30.9	38.8	54.0	67.4	63.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6.2	47.0	57.5	76.9	88.4	83.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7.8	41.2	38.8	36.0	33.7	21.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2.8	59.9	57.5	53.7	48.4	32.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9	9.4	8.9	8.2	7.7	4.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4	13.7	13.2	12.3	11.1	7.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005>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거주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액 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 또한 다수 존재 하지만 저소득층 가입률은 높지 않다.

### 핵심 지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ZAR	119,977	550,615
	USD	9,061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8.0
기대수명	출생 시	63.7	80.7
	65세 시점	13.1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9.6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024>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은 남녀 모두 60세이다.

## 급여 산정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다.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73,800랜드, 부부의 경우 147,600랜드 미만이고, 재산이 독신자의 경우 1,056,000랜드, 부부의 경우 2,112,000랜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급여액은 독신자의 경우 월 1,695랜드, 부부의 경우 3,390랜드까지 지급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급여액이 1,620랜드로 증가한다.

### 자발적 사적연금

퇴직제도의 평균 기여율은 소득의 약 15%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는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 수급연기

노령연금 수급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다. 그러므로 수급자의 소득이 자산조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연기에 따른 이점은 없다.

### 육아

최종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를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실업

최종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생산가능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 더 높은 세금 환급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13,257랜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급자의 경우 추가로 7,407랜드를 환급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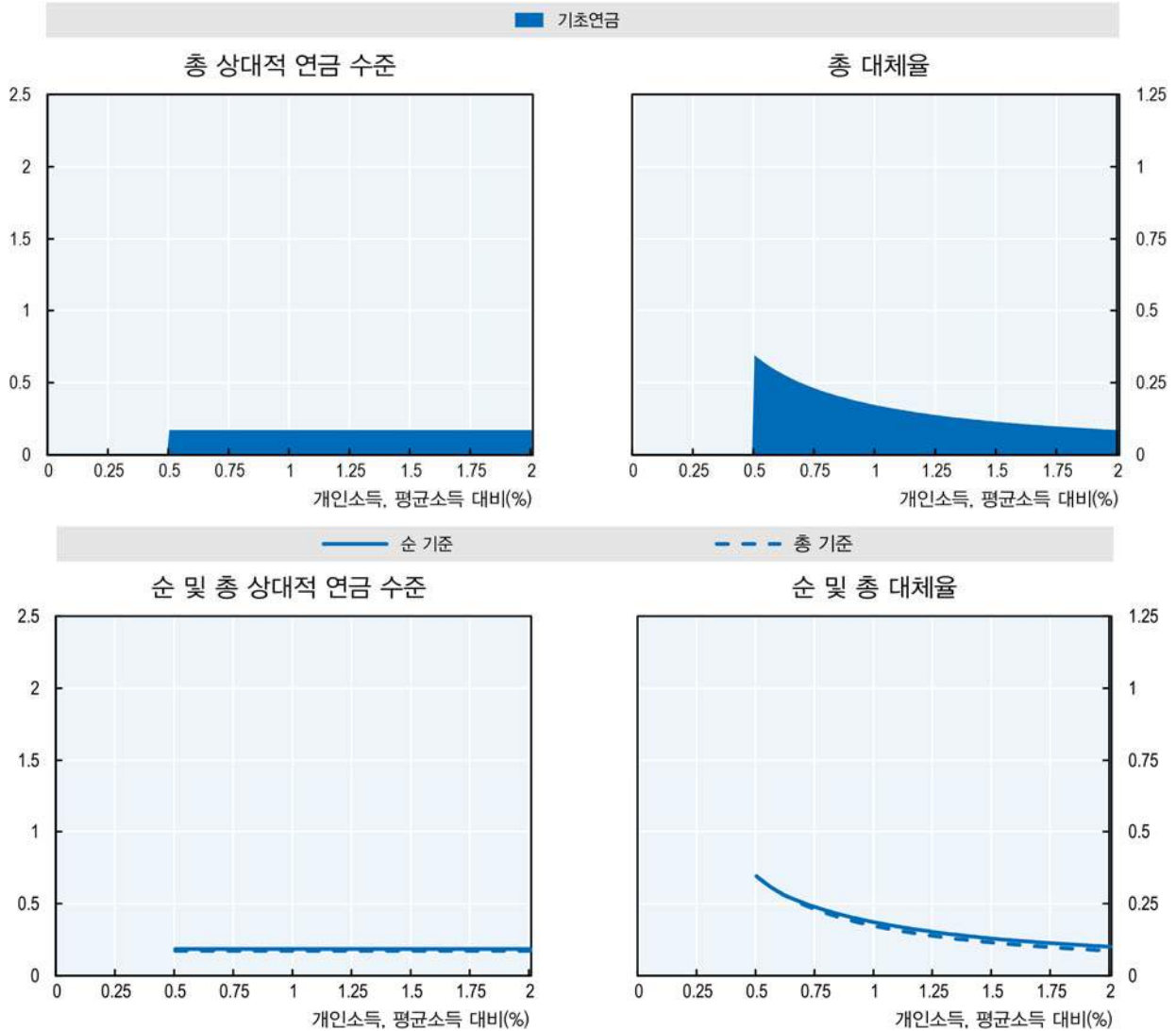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과세 상한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금제도는 일반 과세 제도를 통해 재원이 조달되므로 별도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2056년, 수급연령 60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7.2	17.2	17.2	17.2	17.2	17.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18.5	18.5	18.5	18.5	18.5	18.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4.5	23.0	17.2	11.5	8.6	5.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34.5	23.8	18.5	12.9	10.0	7.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3	6.2	4.7	3.1	2.3	1.6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3	6.4	5.0	3.5	2.7	1.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043>


## 스페인

### 스페인: 2018년 연금제도

스페인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 소득비례 연금과 자산조사형 최저 연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비기여 자산조사형 연금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존의 특별사회 부조 제도를 대체한다.

### 핵심 지표: 스페인

		스페인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EUR	26,923	35,230
	USD	31,779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11.0	8.0
기대수명	출생 시	83.3	80.7
	65세 시점	21.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2.8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062>

## 수급요건

(계리적 감액 없는)전액연금 급여의 2018년 수급개시연령은 기여기간이 36년 6개월 미만인 경우 65세 6개월이다. 법정 수급개시연령은 202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38.5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전액 연금의 수급이 65세부터 가능하다.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2011년 개혁에 따라 지급률은 처음 15년 기여 시 50%이다. 37년 이상 기여하면 지급률이 100%에 도달한다. (15년 이후 1~248개월까지는 기여 기간이 1개월 추가될 때마다 지급률이 월 0.19%씩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월 0.18%씩 증가한다. 그래서 최대 지급률은 소득 기준의 100%가 된다.)

2014~2017년에는 모든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연금조정지수(Adjustment Pensions Index, IRP)가 적용되었다. 2018년 1월 1일, 총 국가예산안이 2018년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전 년도의 예산이 자동으로 연장되었고, 재평가율은 0.25%가 되었다. 이후 2018년 예산이 마침내 승인되면서 IRP가 정지되었고, 이례적으로 최저연금과 비기여형 연금에 대한 재평가율이 2.75% 추가되었다. 다른 연금제도의 재평가율은 2018년 1월 재평가에 더하여 1.35% 상승했다.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도 중단(법률 6/2018, 7월 3일, 2018년 총 국가예산안)되었다. 톨레도 협약 감시 평가위원회(Commission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Agreements of the Pact of Toledo)는 2023년 전까지 제도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모델화에서는 지속가능성 계수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2061년에 대해 장기적 지속가능성 계수 0.88을 사용하였다.

소득 기준은 2018년 기준 퇴직 전 최종 21년간의 과거 소득이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은 최종 2년을 제외한 과거 25년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에 따라 재평가된다.

이는 실질 임금상승률이 양수였을 때 최종 급여 대비 최대 대체율이 100% 미만임을 의미한다.

2018년에 기여금과 급여 목적의 소득 상한은 45,644.4유로였다.



## 최저 및 최대연금

65세부터 지급되는 최저연금은 독신 수급자의 경우 월 657.6유로,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811.4 유로이다. 연금은 연 14회 지급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미망인을 위한 월 760.7유로의 최저 연금과 고아를 위한 최저연금이 있다.

최대연금은 2018년 기준 월 2,617.53유로이며 연 14회 지급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기여년수가 33년이면 수급연령 4년 전에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자발적 실업인 경우 기여년수가 35년이면 법적 수급연령 2년 전부터 가능하다. 조기수급에 대한 연금 급여의 계리적 감액은 기여 기간에 따라 분기당 2%에서 1.5%까지 다양하다.

조기수급자에 대한 최저연금은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615.2유로,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760.7 유로이다. 최저연금 급여는 65세 이후 증가한다.

신규 근로자의 경우 2018년 기준 61세 6개월부터 부분 수급이 가능하다. 2027년에 개혁이 완료되면 36년 6개월 기여한 경우 63세, 33년 이상 36년 6개월 미만 기여한 경우 65세에 부분 수급이 가능하다. 신규 근로자와 부분 수급 근로자 모두 연금제도에 완전하게 기여하게 된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기여년수가 15~25년이고 67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은 추가된 1년당 산정 기준의 2%씩 증가한다. 기여년수가 25~37년이면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산정 기준의 2.75%, 37년이면 4% 증가한다.

67세부터는 부분 수급과 시간제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근로시간을 대체할 의무는 없다.

2013년 3월 이후 공식 수급연령이 지난 개인은 연금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금 급여는 50%까지 삭감된다.

### 육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반영된다. 퇴직연금, 영구장애연금, 미망인 및 고아연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해 3년간 크레딧기간이 인정된다.

출산휴가의 경우, 2016년 1월 기준으로 퇴직, 미망인, 영구장애에 대한 기여형 연금에 보조금이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5%, 3명인 경우 10%, 4명 이상인 경우 15%의 추가 비율이 기여형 연금에 적용된다.

## 실업

실업수당 지급기간 중에 정부는 고용주의 기여분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개인의 기여분을 납부한다. 기여금에 대한 기준임금은 실직 전 6개월의 평균임금이다. 실업수당 기간은 실직 전 6년간의 기여일수에 따라 다르며, 4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다. 이후 지급되는 실업부조는 기여금을 정부가 연금수급연령까지 납부해주는 55세 이상 개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연금 크레딧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정부기여금은 2018년 월 858.6유로인 최저 기준의 100%에 대해 부과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급여는 과세된다. 새로운 세제 하에서는 연금액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매월 미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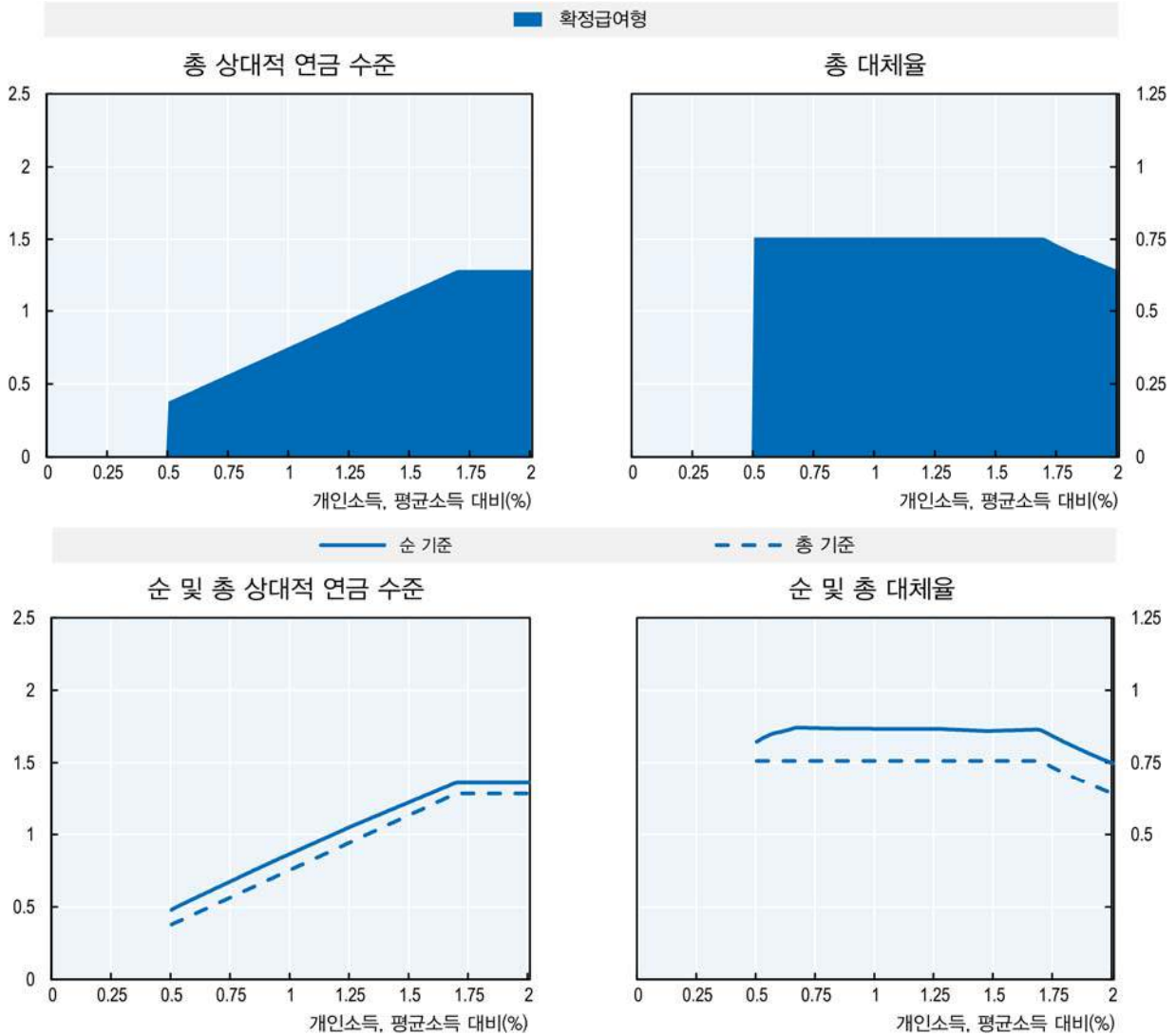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소득에는 특별 공제가 없으나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감면이 있고 75세 이상인 자는 더 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페인, 2061년, 수급연령 65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8	56.7	75.6	113.5	128.2	128.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7.9	67.8	86.7	122.4	135.8	13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5.6	75.6	75.6	75.6	64.1	42.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2.3	87.0	86.7	86.0	74.7	52.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4	14.4	14.4	14.4	12.2	8.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6	16.6	16.6	16.6	14.0	9.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5.6	16.5	16.5	16.3	14.2	10.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8.0	19.1	19.0	18.8	16.4	11.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081>


## 스웨덴

### 스웨덴: 2018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부과식 명목계정제도, 강제적 적립식 확정기여형 연금, 소득조사에 기초하는 확정급여형 보충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요소를 갖춘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이 높다.

### 핵심 지표: 스웨덴

		스웨덴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SEK	453,539	361,473
	USD	52,176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7.2	8.0
기대수명	출생 시	82.6	80.7
	65세 시점	20.4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5.9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100>

## 수급요건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61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보장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3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고, 최저보장급여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보장연금 최고액은 거주 기간이 40년이면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보다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연금수급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연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61세에서 62세로 증가한다. 2023년에는 63세, 2026년에는 64세까지 상승할 것이다.

고용보호법 적용 연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68세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까지 69세로 늘어날 것이다. 향후 수년 내로 연금에 관한 연금단체협의(Pension Groups agreement on Pensions)에 따라 추가 변경 사항이 법제화될 것이다.

## 급여 산정

기여율은 연금 대상 소득의 18.5%이며, 동 소득은 전국 평균 소득의 3년 이동 평균에 맞춰서 조정된다. 연금 대상 소득은 소득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을 제한 것(명목계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 모두)인데, 근로자 기여분은 총 소득의 7%이며 총 소득에 대한 유효 기여율은 17.21%이다. 여기에서 14.88%는 명목계정 제도에 대한 기여이고 2.33%는 확정기여형 적립식 연금(FDC, PPM(Premium Pension System)으로도 불림)에 대한 기여이다. 2018년 기준 기여금은 연 소득이 2016년 평균 소득의 4%를 약간 넘는 19,246크로나보다 높은 경우에만 납부한다. 소득이 하한선보다 높은 모든 국민들에게는 소득 전체에 대해 기여금이 부과된다. 연금 대상 소득 측면에서 산정된 급여에 상한이 있으며, 이는 2016년 기준 468,750크로나이다. 총 소득 대비 실질 상한은 2016년에 504,375크로나(평균 소득의 약 111%를 소폭 상회)였다. 고용주 기여분은 상한까지만 부과된다. 65세까지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있으며, 이 세금은 연금 기여금과 비율이 동일하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제도는 명목계정을 이용한다. 명목계정은 생존자와 같은 연령의 사망자 연금 잔액의 분포만큼 매년 증가(상속이익)한다. 이때 상속이익(inheritance gains)은 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저연령(61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 연령 이후의 상속이익 요소는 이전 기간 동안 관찰된 사망률을 기준으로 추정된다.(5년 단위 남녀 공통 사망률 표로 산정)

은퇴 시 누적된 명목자본이 연금으로 전환된다. 산정 시에는 개인 은퇴연령과 당시 기대여명(이전 5년간 남녀 공통 사망률 표에 근거)에 따른 계수를 사용한다. 연 1.6%의 실질할인율도 연금 산정에 포함된다.

은퇴 후 연금은 명목 평균 소득증가율에서 연금 계수의 귀속 이자율 1.6%를 뺀 값에 맞춰 조정된다. 또한 '재정 균형 메커니즘(balance mechanism)'이 있는데, 이는 자산(완충기금(buffer fund)에 향후 기여 수입의 추정치를 합산한 금액)이 부채(발생한 명목 연금 자본과 향후 지출될 연금의 추정치)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연금 연동율과 명목계정에 반영되는 수익률을 자산 대비 부채 비율만큼 감소시킨다. t년에 대한 균형비는 t+2년에 균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값 또는 균형값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활성화된 균형 메커니즘은 공적 연금의 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지만 연금 재정이 회복되고 균형값이 높아지면 더 좋은 결과가 산출된다.(균형 지수는 회복 기간 중 소득 지수를 초과할 수 있다) 2018년 균형비는 1.0505이다. 모형화를 위해서 연금 계수는 위의 규칙과 UN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서 산정했다. 또한, 균형 메커니즘이 급여 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최저보장연금'은 명목계정에서 낮은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소득조사형 보충연금을 제공한다. 1938년 이후 출생한 독신자에 대한 2018년 기준 완전 보장 급여는 96,912크로나였으며, 이는 총 평균 소득의 24%에 해당한다.

최저보장연금은 2018년 소득 기준으로 독신자의 경우 소득비례연금이 57,336크로나까지는 100% 감액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8% 감액된다. 이 기준선은 평균 소득의 13%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이 평균 소득의 32%에 해당하는 139,800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저보장연금 지급권이 소진된다. 최저보장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된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최저보장연금은 연동에 더하여 2,400크로나 증가한다.

또한, 독신 연금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5,560크로나의 주택급여가 제공된다. 이 수당은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자산조사형 급여는 모형화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주택 비용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월 7,000크로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최대 연 24,000크로나의 공제 한도(free area)가 도입될 예정이다.

### 확정기여형 연금

연금 대상 소득의 추가 2.5%(총 소득에 대한 실질 기여율은 2.33%)가 기금 투자처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강제적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에 납부된다.

은퇴 시점에서 급여 인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누적된 연금 계정은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펀드매니저가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금급여 산정 원칙은(추정 평균 기대수명에 근거하여) 계정의 가치를 연금 제수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급여에는 추정된 미래 금리 3%에서 관리비를 뺀 값이 추가된다. 수익률이 3%를 초과하면 추가 지급이 있거나 계정 잔액이 높아져 연간 연금 산정에 대한 기준선도 높아진다.

## 준강제적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90%에 달한다. 주요 퇴직연금제도는 4개뿐이다. 모형화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ITP제도를 사용하는데, 이 제도는 197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적립식 확정기여형 급여이다.

### ITP1

2007년 1월 1일부터 1979년 이후에 출생한 임금 근로자의 경우 25세부터 새로운 ITP1 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이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완전한 확정기여형 제도이다. 기여율은 임금의 4.5%이며 상한은 소득 기본액의 7.5배(2018년 기준 468,750크로나)이다. 소득 기본액의 7.5배를 초과하는 임금 부분(12로 나누어 1개월분 산출)에 대한 기여율은 30%이다. 연금 대상 소득은 실비 보상을 제외한 현금성 임금 총액이다. 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대해 부과된다.

근로자는 저축 형태와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여금의 최소 절반은 전통적인 연금보험에 투자된다. 또한 근로자는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연간 물가 기준액의 1배, 2배, 3배 또는 4배의 상환 보장과 가족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 보장이나 가족 보장 없이 전통적 연금보험에 투자된다. 모형화에는 이 기본 선택이 반영되었다.

근로자의 연봉이 소득 기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2018년 기준 625,000크로나)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전통적인 ITP2 제도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대안적 ITP 제도를 선택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소득비례 연금 인출은 국민연금제도에서 61세부터 가능하다. 정해진 수급연령은 없다. 명목계정과 연금 산정은 수급연령에 따라 자동 계리적 감액을 제공한다.

소득조사형 최저보장연금은 65세 이전에는 수급할 수 없다. 명목계정 연금을 65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인출하는 경우 최저보장연금은 65세에 인출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명목계정 연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새로운 ITP1 제도에서는 연금급여가 일반적으로 65세에 지급되지만 55세부터 일부 지급될 수도 있다. 연금은 평생 전액 지급되거나 5년 이상의 한정된 기간 동안 부분 지급될 수 있다. 모형화에서는 평생 지급하는 경우를 반영하였다. 연금의 규모는 납부된 보험료 금액과 수익률, 수수료와 세금, 연금 지급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수급연기

명목계정 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은 연령 상한 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 계리적 조정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부분적(연금 전액의 25%, 50%, 75%)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최저보장연금은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다른 연금 및 외국의 유사한 공적연금에 맞춰 조정되지만 임금소득, 자본소득, 퇴직연금 또는 사적연금보험에 따라 감액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최저보장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65세 이후로 ITP1 퇴직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고용주와 특별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65세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육아

4세 이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은 공적연금제도에 반영된다. 두 부모 가구의 경우 특별히 선택하지 않았다면 크레딧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간다. 크레딧 산정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첫째, 소득이 없거나 이전 소득보다 낮을 경우 크레딧은 자녀 출생 전년도 소득에 근거한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나 육아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크레딧은 경제 전반 평균 소득의 75%에 근거한다. 셋째, 육아 책임이 시작되면서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크레딧은 소득 기준액의 100% 수준에 설정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정부가 소득비례 국가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전액 납부한다.(명목계정과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 모두 보장)

또한, 지급된 육아급여도 연금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수혜자는 육아급여 소득의 7%를 근로자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정부는 육아급여가 포함된 사회보장으로 인한 소득의 10.21%인 '고용주 기여금'을 전부 납부한다.

육아급여는 다음과 같이 480일간 지급 가능하다.

- 부모 연 소득의 80% 수준에서 390일. 한도는 물가 기준액의 10배(2018년 기준 연봉 455,000 크로나)에 해당하는 금액.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일 180크로나의 정액으로 90일

육아급여는 일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낮거나 전혀 없는 부모는 일일 180크로나의 최저보장급여를 받는다. 480일의 현금 급여 지급일은 부모 양쪽에 똑같이 나누어 적용된다.(부모 1명당 240일씩) 부모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최대 180일까지 양도할 수 있다.

ITP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을 통해 최대 1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권고하며 대부분은 이 권고를 이행한다.

## 실업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활동지원금은 연금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정부는 '고용주' 기여금을 납부한다. 소득비례 실업급여는 처음 200일 동안은 이전 소득의 80% 수준이다. 201일 부터 300일까지는 이전 소득의 70% 수준이 된다. 그 이후에는 급여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급여 수혜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급여는 150일 동안 이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연장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처음 100일간 하루 최대 910크로나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760크로나가 지급된다. 최저 지급액은 일 365크로나이다.(수급자가 실직 전 12개월간 전일제로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

급여 기간이 종료되면 수급자는 직업개발보장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직업개발보장프로그램 참가자는 활동지원금 또는 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개발보장프로그램 등록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이 수당은 실업 전 소득의 65%(최대 일 760크로나) 수준이 된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구직자는 하루 223크로나를 수급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65세 이상인 개인은 연초에 추가 기초 공제를 받는다. 기초 공제는 평가된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 기초 금액은 소득원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 혜택으로 인해 일정소득구간의 경우 연금에 대한 세금보다 낮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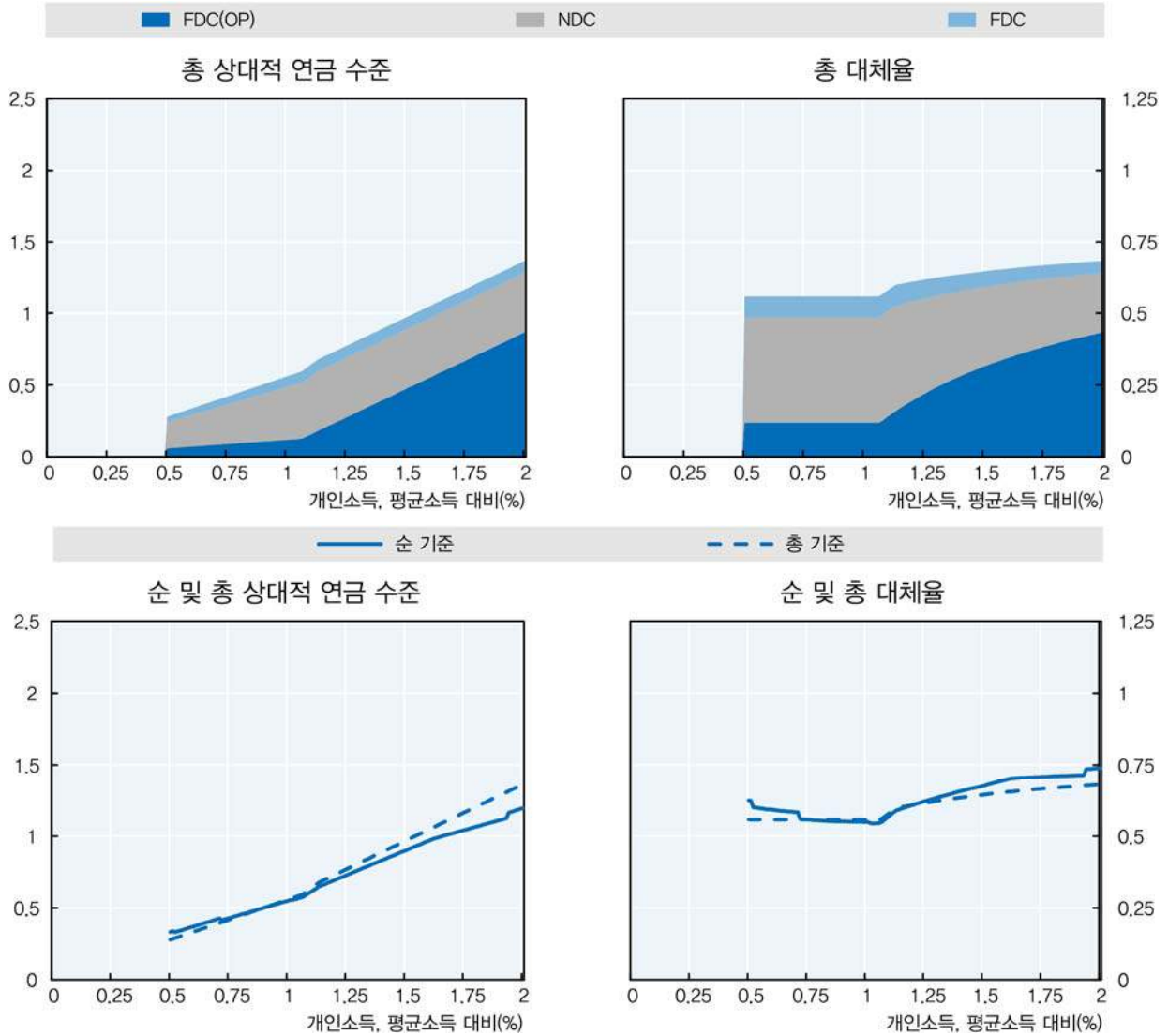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938~1943년 출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은 10.21%(일반 기여율 31.42%)와 같다. 1938년 이전 출생자는 근로소득에 사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웨덴, 2061년, 수급연령 65세



남성 <i>여성(남성과 다른 경우)</i>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7.9	41.8	55.8	96.7	136.2	215.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3.2	42.9	54.9	90.0	119.4	16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5.8	55.8	55.8	64.5	68.1	71.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2.4	55.7	54.9	67.6	73.9	75.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4	10.4	10.4	12.2	12.9	13.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7	10.4	10.3	12.8	14.0	14.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119>


## 스위스

### 스위스: 2018년 연금제도

스위스의 연금제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소득비례 제도)이며, 누진적 산식을 사용한다. 또한, 소득조사형 보충급여가 존재한다. 강제적 퇴직연금제도는 1985년에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자발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 핵심 지표: 스위스

		스위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CHF	90,908	40,665
	USD	92,964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6.5	8.0
기대수명	출생 시	83.5	80.7
	65세 시점	21.3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1.3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138>

## 수급요건

공적연금과 강제적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남성 65세, 여성 64세이다. 금액 없이 연금 전액을 수급하려면 남성은 44년, 여성은 43년의 기여 기간이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공적 소득비례연금은 생애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생애 평균 소득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과 20세부터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이 두 기준 사이에서는 'two-branch' 급여 산정방식이 평균소득자를 유리하게 한다. 급여 산정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재분배되는 경향이 있다. 전체 기여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급여액은 14,100~28,200프랑이다. 이는 각각 평균 소득의 16%와 31%에 해당한다. 최대 급여는 생애 평균 소득이 국가 평균 소득의 93%에 해당하는 84,600프랑일 때 수급할 수 있다. 부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독신에게 지급되는 최대 급여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2년에 한 번씩 조정되는데, 물가와 명목소득에 대해 각각 50%씩 적용된다.

### 강제적 퇴직연금

강제적 퇴직연금 보험제도는 1985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의 연금 계정에 대한 '확정 크레딧'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연 21,150프랑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확정 크레딧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연령	25-34	35-44	45-54	55-64/65
노령 크레딧 (조정된 급여의 비율(%))	7	10	15	18

은퇴 시 누적된 크레딧의 가치는 초기 년도의 기여금에 적용된 필수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는 현재 1.00%이다. 노령 크레딧은 매년 조정된 급여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는 총 연간 소득에서 조정된 공제액(24,675프랑)을 뺀 것으로, 최대 59,925프랑이다. 금리가 조정된 급여의 인상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 완전 경력의 65세 수급자는 조정된 급여의 500%에 해당하는 누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조정된 급여의 인상률을 초과하면(밑돌면) 더 높은(낮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모형에서는 크레딧에 적용된 금리가 조정된 급여의 인상률과 장기간 동안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노령 크레딧의 절반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이 나머지를 납부한다.

개인 연금 계정은 은퇴 시 연간 퇴직급여로 전환되며,

6.80%의 전환율이 적용된다. 또한, 퇴직자는 퇴직 자산의 25% 이상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강제적 연금제도는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 최저연금을 제공한다. 등록된 연금기관은 법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액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 급여를 ‘의무초과(over-obligatory)’ 급여라고 한다. 강제적 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대부분이 이러한 종류의 ‘의무초과’ 급여를 받는다.

## 선별적 연금

기초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AVS와 AI 급여 외에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소득비례 급여와 기타 소득원으로는 기초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자산조사형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 급여는 인정된 지출액과 산정된 소득액(급여, 근로소득, 자산 수익 등)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인의 경우 인정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보충급여(PC)산정 시 고려요인	연 금액 (집에서 거주하는 개인)
생필품	19,290프랑
총 집세 한도액	13,200 프랑
질병 및 장애 비용 환급 한도액	25,000 프랑

보충급여는 공적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동된다.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별로 재량적 부가 수당이 있다. 이 부분은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사회부조

연방헌법에서는 어려운 상황일 때 사회부조를 수급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도는 주에서 시행하고 재정을 충당한다.

## 자발적 연금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자발적 연금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기여금은 은행 계좌에 저축하거나 전용 보험 증권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투자 가능한 최대 금액은 근로자 6,768프랑, 자영업자 33,840프랑이었다. 공식 연금수급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발적 사적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이전 최대 5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자발적 사적연금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공적연금은 남성 63세, 여성 62세에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전체 급여액은 조기수급 기간 1년당 6.8%씩 감액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이 가능하며, 58세부터 청구할 수 있다. 조기수급의 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연금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연금급여의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연금자산에 적용되는 전환율은 조기수급 기간 1년당

0.15~0.2%p씩 감소한다. 0.2%p 감소는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했을 때 조기수급 기간 1년당 2.95%(조기수급 기간에 따라 증가)의 계리적 조정에 해당한다. 조기수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여금과 크레딧 손실분도 반영하면, 이론적 급여액은 조기수급 기간 1년당 6.8%(1년)에서 6.1%(5년)씩 낮아진다. 연금 수급과 유급 근로는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다.

### 수급연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공식 연금 수급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다음 표에 따라 증액된다.

연기	1년	2년	3년	4년	5년
조정	5.2 %	10.8 %	17.1 %	24.0 %	31.5 %

소득이 연 16,800프랑 미만인 경우 남성은 65세, 여성은 64세부터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기여금은 부과되지만 연금 수급권은 추가 취득할 수 없다. 퇴직연금 급여는 70세까지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금이 독립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연방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의 권고에 따라 연기된 기간에 대해 0.2%p(66~67세) 또는 0.25%p(68~70세)씩 전환율이 증가한다. 수급연기 시 기여금을 포함한 이론적 급여는 연 7.1%(1년)~7.9%(5년) 더 높다. 기여금이 없을 경우, 수급연기 시 이론적 급여는 연 4.05%(1년)~4.4%(5년) 더 높다. 원칙적으로는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육아

16세 미만 자녀의 육아 기간은 육아 크레딧의 취득이 가능하며, 육아 크레딧의 소득 인정액은 부모가 은퇴하는 연도 최저연금의 3배를 기준으로 한다. 2016년 육아 크레딧 소득 인정액은 42,300프랑이었다. 위탁부모가 이 육아 기간 중 결혼하는 경우 크레딧은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와 똑같이 나누어 취득하게 된다. 육아에 대한 크레딧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 실업

실업급여는 사회보장기여금 대상이며, 본 급여는 공적연금 계산 시 소득으로 인정된다. 실업보험에서는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피부양 자녀가 없고 하루 140프랑을 초과하는 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보장 급여의 70%를 수급한다. 실업보험 기간은 90일에서 640일까지 다양하다. 사회부조를 받는 개인은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지방정부가 최저 기여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일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의 경우, 사망 및 장애 위험에 대비해 계속 퇴직연금제도의 보장을 받는다.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업자는 노령연금 기여금(근로자분과 고용주분 모두)을 납부할 수 있다.

질병/사고로 인해 수급한 일일 수당도 마찬가지로 기여금의 대상이 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스위스의 주들은 대개 연금수급자에게 추가 공제를 제공하지만, 연방 소득세에는 추가 공제가 없다. 모헨화에서는 취리히 주의 취리히시 거주자를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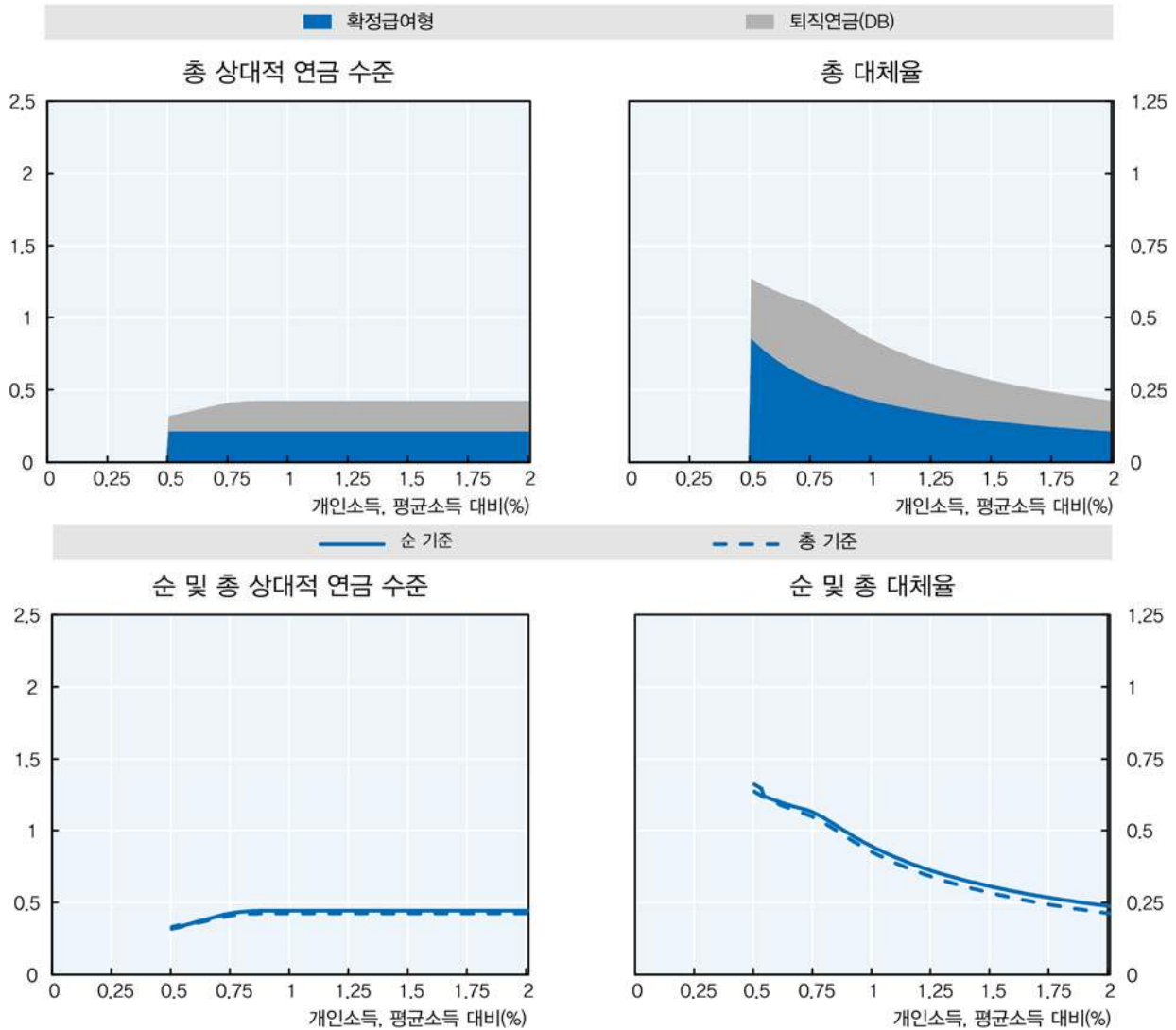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 사회보장기여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연금수급자는 강제적 건강보험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위스, 2061년, 수급연령 65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1.7	40.9	42.4	42.4	42.4	42.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9	42.5	44.3	44.3	44.3	44.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3.4	54.5	42.4	28.3	21.2	14.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5.9	56.1	44.3	30.5	23.7	16.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8	10.9	8.5	5.7	4.2	2.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3	11.2	8.9	6.1	4.7	3.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157>


## 터키

### 터키: 2018년 연금제도

터키의 연금제도는 소득조사형 안전망 및 정액 보충연금이 통합되어 있는 소득비례 공적 연금 제도이다.

### 핵심 지표: 터키

		터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TRY	46,921	200,785
	USD	9,718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7.1	8.0
기대수명	출생 시	77.3	80.7
	65세 시점	17.9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15.2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176>

## 수급요건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기여일이 7,200일 이상이면 남성은 60세, 여성은 58세이다. 연금 수급연령은 점차 상승하여 남녀 모두 2036~2044년에 65세가 된다. 1999년 9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 연금제도 신규 가입자는 기여 기간이 7,000일 이상이면 남성은 60세, 여성은 58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또는, 기여일이 4,500일이고 가입기간이 25년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08년 10월 이후 기여기간이 최소 5,400일이면 65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자산 조사형 연금 급여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없고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연금은 생애 평균 소득에 근거하며 실질 GDP 증가율과 CPI 변동에 따라 재평가 $[(1 + \text{CPI} + 30\% \text{ GDP})]$ 된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년당 2%이며, 소득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기여금 하한은 2,029.50리라, 연금 대상 소득의 상한은 15,221.40리라다.

연금은 이전 6개월간의 CPI에 연 2회(1월, 7월) 연동된다. 연금은 2018년 상반기에 5.69%, 하반기에 9.17% 증가했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 수준은 근로자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 TRY 1,509.1리라, 하반기에 1,647.5리라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 보다 낮은 상반기 1,063.8리라, 하반기 1,161.4리라였다.

### 선별적 연금

자산조사형 연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2018년 연금은 상반기 월 265.8리라, 하반기 543.27리라였다.

## 조기수급

특정 산업(광산업 등)의 근로자나 장애인은 조기수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 근로자는 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 수급연기

연금 수급을 정상 연금 수급연령 이후로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금 지급률은 동일하다.

## 육아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명까지 육아기간이 반영된다.

## 실업

고용 계약의 종료 직전 3년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한 일수에 따라 최소 180일, 최대 300일의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실업 급여는 마지막 총 임금과 직전 3년 중 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급여가 높고 가입일이 길수록 실업 급여액도 높아진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다.

### 연금 소득의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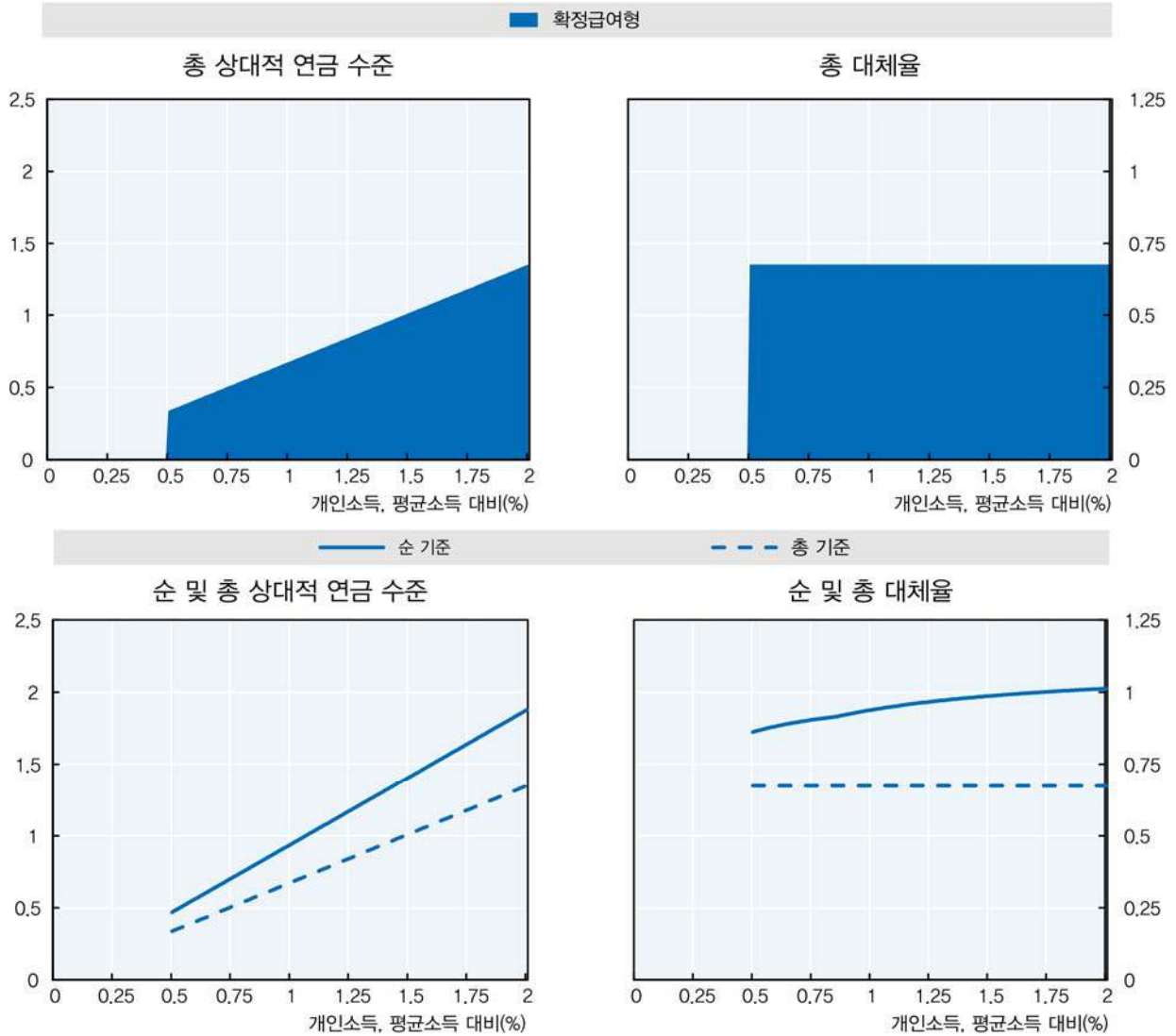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터키, 2058년, 수급연령 62세(남성)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3.7	50.6	67.4	101.1	134.8	202.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6.9	70.4	93.8	140.8	187.7	281.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7.4	67.4	67.4	67.4	67.4	67.4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6.2	90.4	93.8	98.7	101.3	104.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0	13.0	13.0	13.0	13.0	13.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6	17.5	18.1	19.0	19.5	20.1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195>


## 영국

### 영국: 2018년 연금제도

영국은 2016년 4월 6일에 해당 날짜 이후 국가연금(State Pension)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가연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정액제도로, 일부 경과 조항이 있다. 해당 날짜 이전에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2층 구조의 공적연금(정액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 부가연금)을 받는다. 두 연금은 모두 대규모의 사적연금 부문으로 보완된다. 소득 연계 급여(연금 크레딧)는 극빈층 연금 수급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목표로 한다.

### 핵심 지표: 영국

		영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GBP	39,328	31,171
	USD	52,467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6.2	8.0
기대수명	출생 시	81.1	80.7
	65세 시점	19.8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32.0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214>

## 수급요건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남녀 모두 약 65세 3개월이며,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20년에는 66세, 2026~2028년에는 67세가 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기대수명과 기타 관련 요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 제도(2016년 이전)에서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근로기간 중 30년간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금을 i) 납부하거나, ii) 납부했던 것으로 취급되거나, iii)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취득함으로써 기초 국가연금 전액을 수급할 자격을 얻게 된다. 2010~2016년에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의 근로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액된 기초 국가연금이 지급되며, 기여 또는 크레딧에 대한 최소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이다. 2016년 4월 6일 이전에 국가연금 기록이 없는 사람이 2016년 4월 6일 이후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새로운 국가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35년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소 자격 유지 기간은 10년이 된다. 2016년 4월 6일에 기존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전 기록과 이후 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경과 조항을 적용한다.

## 급여 산정

### 기초 및 새로운 국가연금

2018/2019년에 독신자의 전액 기초 국가연금은 주 125.95파운드였다. 새 국가연금의 전체 금액은 2018/19년에 주 164.35파운드였다.

### 직장 사적연금제도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부는 직장연금제도에 대한 자동가입 도입을 완료했다. 이제 모든 고용주는 2018/19년 기준 10,0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는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를 직장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최저 기여금은 2018/19년 기준 6,032~46,350파운드 소득 범위의 5%이다. 2019년 4월, 최저 기여금은 소득 범위의 8%로 상향되었다.

모든 고용주가 양질의 저비용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탁 기반 확정을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국민고용저축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을 설립했다. NEST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를 받아들일 공공 서비스의 의무를 가진다.

## 선별적 연금

연금 크레딧은 저소득층을 위한 비과세 주간 급여이며,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특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연금 크레딧은 소득비례 급여로, 국가보험 기여금에 기반하지 않는다. 연금 크레딧에는 보장 크레딧과 저축 크레딧이 있다. 보장 크레딧은 적격 연령(아래 참조)에 도달했고 소득이 ‘적정 금액’ 미만인 사람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적정 금액은 표준 최저 보장액(Standard Minimum Guarantee)과 같다. 2018/2019년 기준, 이 금액은 독신자의 경우 주 163.00파운드, 부부의 경우 248.80파운드였다. 중증 장애, 돌봄 책임 또는 특정 주거 비용이 있는 사람의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

저축 크레딧은 비교적 소액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사람들이 수급하는 추가 금액이다. 저축 크레딧은 저축 크레딧 기준(Savings Credit Threshold)을 초과하는 소득 1파운드당 0.6파운드 비율로 지급한다. 2018/2019년 기준, 이 금액은 독신자의 경우 주 140.67파운드, 부부의 경우 223.82파운드였다. 최대 금액은 저축 크레딧 상한(Savings Credit Maximum)까지이다. 2018/2019년 기준, 저축 크레딧 상한은 독신자의 경우 주당 13.40파운드, 부부의 경우 14.99파운드였다. 소득이 ‘적정 금액’을 초과(즉 보증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적정 금액’을 1파운드를 초과할 때마다 저축 크레딧이 0.4파운드씩 감소한다.(저축 크레딧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시점까지)

2018년 11월, 연금 크레딧의 적격 연령은 여성의 국가연금 수급연령 상승과 함께 65세로 연장되었으며, 국가연금 수급연령이 남녀 모두 65세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저축 크레딧은 2016년 4월 6일 이후에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즉 새로운 국가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한 인구집단)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국가연금의 조기수급은 불가능하다. 자발적 연금 급여는 제도에서 허용하는 연령부터 청구 가능하다.

### 수급연기

국가연금 추가 증액을 위한 수급연기는 항상 가능했다. 이러한 추가 국가연금은 해당 수급자가 최초로, 또는 다시 연금을 수급할 때 공식 국가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 금액은 국가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016년 4월 6일 이전에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더 높은 주당 종신 국가연금(국가연금을 5주 이상 연기하는 경우). 2005년 4월 6일부터 국가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10.4%(또는 5주에 1%)씩 증액된다.
- 일회성 과세 대상 일시불 지급(국가연금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기된 경우). 일시불 금액은 연기된 기간 중 받지 못한 국가연금액에 (영국은행)기준금리보다 최소 2%p 높은 보장금리를 더한 값이다.

이 옵션은 국가연금을 최종 수급할 때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4월 6일 이후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일시불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더 높은 주당 종신

국가연금을 받으려면 국가연금을 9주 이상 연기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연금에서는 수급을 연기하면 1년 늦게 수급할 때마다 약 5.8%(또는 9주마다 1%)씩 증액된다.

### 육아

새 국가연금에 대한 국가보험 크레딧은 육아 기간에 보호를 제공한다. 유급 근로를 중단한 사람과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LEL) 미만이어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 모두 보장된다.

### 실업

새 국가연금에서 보험금이나 부조급여를 수급하는 실업 기간의 경우 개인의 국가보험 기여 기록에 크레딧이 반영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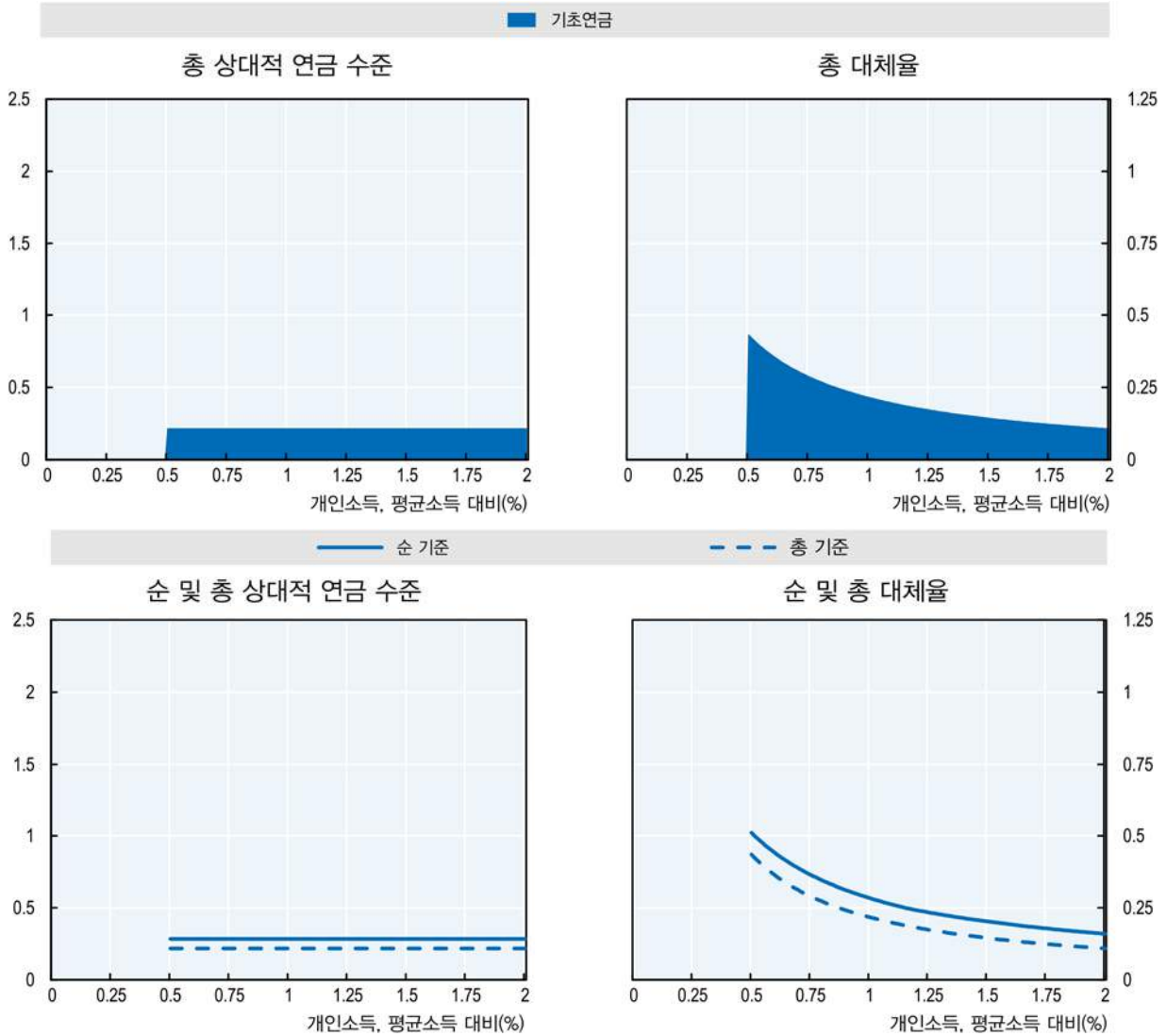
### 연금 소득의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국가보험 기여금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초과한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보험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영국, 2064년, 수급연령 68세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1.7	21.7	21.7	21.7	21.7	21.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8.4	28.4	28.4	28.4	28.4	28.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3.5	29.0	21.7	14.5	10.9	7.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1.0	36.5	28.4	20.2	15.9	11.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5.5	4.1	2.7	2.1	1.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7	6.9	5.4	3.8	3.0	2.2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233>


## 미국

### 미국: 2018년 연금제도

사회보장으로 알려진 공적연금은 누진적 급여 산식을 적용한다. 또한,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는 자산조사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된다.

### 핵심 지표: 미국

		미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USD	54,951	41,584
	USD	54,951	41,584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	7.1	8.0
기대수명	출생 시	78.8	80.7
	65세 시점	19.7	19.7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	28.4	3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252>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정상 은퇴연령 - NRA)은 2018년 기준 62세인 근로자의 경우 66세 4개월이며, 2022년 기준 62세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67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연금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은 기여년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0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 급여 산식은 누진적이다. 2018년 기준, 해당 소득 중 월 소득의 처음 895달러에 대해서는 이 소득의 90%가 연금산정 시 반영된다. 월 895~5,397달러의 소득 범위에 대한 반영율은 32%이다. 이 기준선은 각각 2018년 국가 평균 임금 지수의 20%와 118%에 해당한다. 5,397달러부터 소득 상한까지는 15%의 반영율이 적용된다. 부부에게는 50%의 피부양자 추가 연금이 제공되는데, 이는 부소득자의 수급액이 더 적고 자격 요건을 갖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전 소득은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국가의 평균 소득 증가에 맞춰 재평가된다. 60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 조정이 없다. 기본연금은 62세 지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이후 기본연금은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된다. 급여는 재평가된 최고 소득 35년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이 전무한 기간도 35년에 포함시킨다.

2018년 기준 기여금과 급여에 대한 소득 상한선은 연 128,400달러이며, 이는 2018년 국가 평균 임금 지수의 234%에 해당된다. 이 지수는 경제 전반의 임금 증가율을 따른다.

연금지급액은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된다.

### 선별적 연금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으로 알려진 노인에게 대한 자산조사형 급여가 존재한다. 2018년 기준 수급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개인은 재산 및 기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9,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급여액은 13,500달러(개인보다 50% 높음)이다. 이 급여율은 각각 2018년 국가 평균 임금 지수의 약 16%와 25%에 해당한다. 최대 급여액은 물가 상승에 연동된다.

자산조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적격 배우자가 없는 개인은 최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로 자산이 제한되며 개인 소유물, 주택, 자동차, 장래보험, 생명보험(2개 보험 모두 최대 1,500달러까지) 등 특정 자산은 제외된다. 급여 산정 시 대부분의 소득 유형에 대해 소규모(월 20달러)의 ‘공제’가 적용된다. 월 65달러의 소득과 나머지 소득의 절반에 대해 또 다른 공제가 제공된다. 해당 공제가 모두 적용된 후 급여액은 이 수준을 초과하는 총 소득에 대해 100%의 비율로 감액된다.

연방에서 결정한 이 최저연금에 각 주들과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는 보충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복잡해진다. 6개 주에서는 연방 최저연금만 지급하는 반면, 33개 주는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6개 주에서는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6개 주에서는 주와 연방 사회보장국 모두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들 12개 주에서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평균 보조금은 적격 배우자가 없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연방 급여의 20%, 부부 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4%이다. 모형에서는 이들 추가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자발적 사적연금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9%로 가정한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62세부터 가능하며, 계리적 감액 대상이 된다. 정상 수급연령 이전의 조기수급 기간 중 급여액은 연 6.75%씩 감액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감액률이 5%로 하락한다. 이는 65세 이상인 정상 은퇴연령(NRA)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 수급연기

연금의 최초 수급은 정상 은퇴연령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크레딧은 최대 70세까지 연기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2012년 및 그 이후 62세에 도달한 경우, 계리적 증액은 연기 기간에 대해 연 8%가 적용된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으며,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 공식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연도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은 17,04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50%까지 감액된다. 공식 은퇴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소득에 근거한 급여액 감액이 없다.

### 육아

육아 기간 크레딧에 대한 조항은 없다.(단, 젊은 나이에 장애인이 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산정 시 육아 기간을 배제한다)

### 실업

실업 기간 크레딧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급여 산정 시 최고 소득을 얻은 35년의 기간을 고려하므로 실업 기간은 급여 목적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 기간은 고려 대상이 되는 소득 기간 35년에서 제외된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노령자는 연방 소득세에서 추가적인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가능 연령의 독신자는 12,000달러를 공제받고, 65세 이상인 자는 13,600달러를 공제 받는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26,6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생산가능 연령의 부부는 같은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이 24,000달러이다.

### 연금 소득의 과세

사회보장(공적연금) 급여의 일부에 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급여의 1/2 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소득의 1/2(급여의 1/2 포함) 중 적은 금액이 된다. 기준 금액은 독신의 경우 25,000달러(부부의 경우 32,000달러)이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소득(급여의 1/2 포함)이 상향 조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85%까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상향 조정된 기준 금액은 독신의 경우 34,000달러(부부의 경우 44,000달러)이다. 소득(사회보장 급여의 1/2 포함)이 조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는 (A) (1) 조정된 기준 금액을 넘는 소득 초과분의 85%(급여의 1/2 포함)에 (2) 85%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포함 가능한 금액 또는 4,500달러(부부의 경우 6,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더한 값이나 (B) 사회보장 급여의 85%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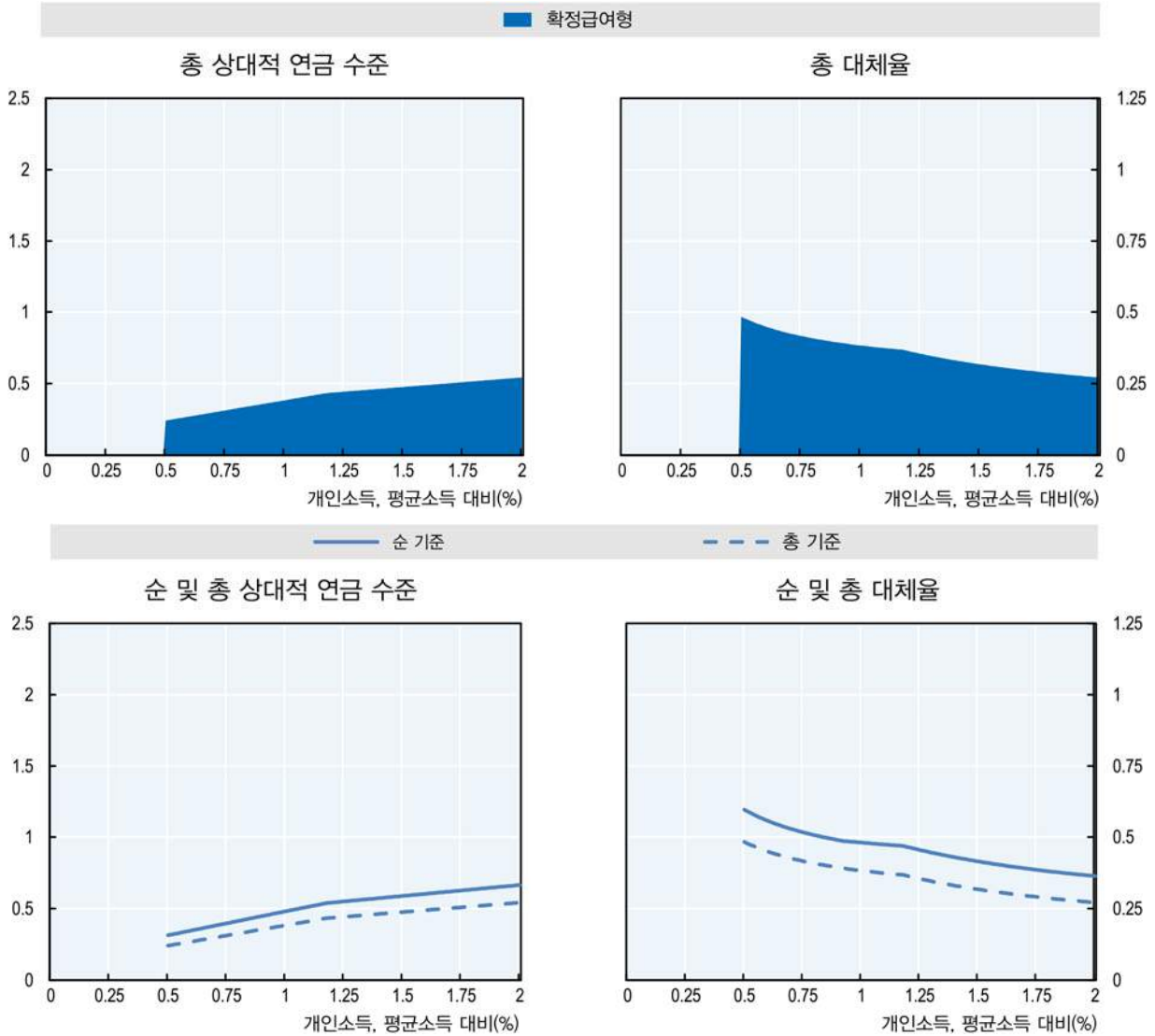
미국은 주별로 개인소득세 구조가 달라서 분석이 복잡하다. 주요 실증적 분석 결과의 경우,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는 OECD 표준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미시간 주의 주 소득 세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2,10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4,200달러)의 비과세 공제를 추가로 제공한다. 공적연금은 주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며, 사적연금에서 얻는 소득 또한 처음 40,920달러까지 면세된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 금액으로 면세 금액 40,920달러를 상쇄한다. 모든 연금소득은 디트로이트 소득세가 면제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미국, 2063년, 수급연령 67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4.1	31.2	38.3	47.6	54.2	58.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1.4	39.7	48.0	58.8	66.4	71.6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8.3	41.6	38.3	31.7	27.1	19.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9.5	51.7	48.0	41.5	36.3	26.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4	7.3	6.7	5.5	4.7	3.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4	9.0	8.4	7.2	6.3	4.6

가정 :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90%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8년, 22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8년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4044271>

한 눈에 보는 연금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발 행 일 : 2020년 8월  
원     저 : OECD  
번역·발행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5 Fax. 02 3210 1313  
인     쇄 : [www.oecdkorea.org](http://www.oecdkorea.org)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9

##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 눈에 보는 연금 2019년 판은 지난 2년 동안 OECD 국가들이 시행한 연금 개혁에 주목합니다. 특히 두 개의 특별 장을 통해 OECD 국가의 비표준 노동과 연금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비표준 노동자들의 연금을 정리해 보고, 비표준 노동으로 인해 연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본 뒤 연금 환경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번 판에서는 OECD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의 주요 특징을 업데이트하고 오늘날의 노동자를 위한 연금제도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번 판은 연금제도 설계, 연금수급액, 연금제도가 운영되는 인구학적/경제적 환경, 노인의 소득 및 빈곤, 퇴직소득 제도와 사적연금의 재정과 관련한 여러 지표를 포함합니다.

본 출판물은 온라인 페이지 <https://doi.org/10.1787/b6d3dcfc-en>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판물은 OECD의 모든 서적, 정기 간행물,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놓은 OECD iLibrary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ecd-ilibrary.org](http://www.oecd-ilibrar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